

형사정책연구 30년의 성과와 과제 (I)

범죄학 연구

최영신 외 17명



발간사

올해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개원 30주년을 맞이합니다. 본 '연구원'은 1989년에 범죄현상 및 형사정책 분야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기반을 닦고, 합리적 형사정책을 수립하여 범죄예방과 인권보장을 이룩하자는 사명을 띤 국책 연구원으로 출범했습니다. '민생치안의 실태와 대책'을 필두로 하여, 수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었습니다. 연구기관의 꽃은 바로 수십 년간 축적된 연구보고서 그 자체입니다.

이번 기회에 일차적으로 해야 할 것은 지난 30년 동안의 연구업적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30년간의 총목록을 만들고, 주제별로 분류하는 준비작업을 통해 확인해보니, 2018년까지 수행된 연구보고서의 총수는 1,084종에 달합니다. 범죄학 분야가 523종이고, 형사법 분야가 558종입니다. 그밖에 수탁과제의 총수는 446종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탁과제를 제외하더라도 매년 연구보고서가 평균 36종 이상 발간되고 있는 셈입니다.

연구보고서는 누군가 읽어야 합니다. 학술적이고 어려운 내용도 적지 않기에 정성껏, 잘 읽어내야 합니다. 이 연구보고서를 종합적으로 함께 읽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한 방법으로 크게 범죄학 분야와 형사법 분야로 나누어서, 주제별로 나누었습니다. 연구의 책임자로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최영신 선임연구위원이, 법학 분야에서 탁희성 선임연구위원이 이 중책을 맡았습니다. 두 책임연구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유관 학회의 도움을 받아 내부 연구진 이외에도 총 30인의 역량 있는 외부 전문가들이 집필진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집필자는 중견 연구자 뿐 아니라 소장 연구자들을 충분히 포함시키도록 했는데, 이는 보다 신선한 시선으로 기존의 연구업적들을 자유롭게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제별로 집필자 한 분이 각각 25~55종의 연구보고서를 분석하고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구원' 으로서는 외부 전문가들의 따뜻하면서도 냉정한 분석을 통해, 지금까지의 성과를 정리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발견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지침을 삼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연구성과의 평가결과를 이제 「형사정책연구 30년의 성과와 과제(I): 범죄학 연구」 및 「형사정책연구 30년의 성과와 과제(II): 형사법연구」로 묶어 내놓습니다. 이 두 권의 책자는 총 1,200쪽 이상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이 책자는 기왕의

성과를 정리함과 함께 앞으로의 형사정책연구에서 하나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이 책자를 발간하면서 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5월 30일 <형사정책연구 30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모두 함께 형사정책연구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탐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연구에 연구진의 일원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동준, 노성훈, 강지현, 이정주, 김연수, 윤상연, 장안식, 최지선, 장현석, 박현호, 윤옥경, 박선영, 조운오, 박미랑, 이승호, 김성돈, 최병각, 한상훈, 이원상, 강우예, 선종수, 안수길, 차종진, 배상균, 문희태, 도규엽, 류부곤, 최준혁, 박경규, 김성규 박사님이 그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연구에 참여하고 지원한 최민영, 한민경, 허황, 라광현 박사님과 이다미 전문조사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첫 기획부터 마지막 작업까지 연구책임을 맡아 이끌어온 최영신, 탁희성 선임연구위원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의 성과를 정리함은 자찬이나 자축을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를 통해 미래로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재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내·외의 모든 연구역량을 결집하여, 우리 '연구원'의 주인인 국민에게 성실히 봉사하려는 자세를 다시 가다듬겠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머리말

2019년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으로 함)이 개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형사정책 관련 국책연구기관으로서 1989년 3월 16일 개원한 이래 범죄의 실태와 원인, 그리고 그 대책을 분석하고 연구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 수립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했으니 강산이 세 번이나 변할 만큼의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때를 맞이하여 한인섭 원장님께서서는 지난 30년 동안 ‘연구원’에서 수행해온 연구성과물을 총정리해보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셨습니다. 연구자들 역시 그러한 작업을 통해 그동안 수행해온 연구물의 성과를 드러내고 그 한계를 점검함으로써 ‘연구원’의 역할을 성찰하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 비전을 모색해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연구원’에서는 2018년도 9월 ‘30주년 기념 KIC 연구성과 분석 TF’를 구성하였고, 이 TF팀에서는 그동안 수행해온 연구성과물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구보고서의 연구성과를 ‘범죄학 분야’와 ‘형사법 분야’로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지난 30년 동안 ‘연구원’이 수행해온 ‘범죄학 분야’ 연구보고서의 연구성과를 총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범죄학 분야’ 연구보고서는 주로 형사정책 관련 연구주제에 대한 범죄사회학, 범죄심리학, 교정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교육학적 접근을 위주로 한 연구보고서로서, 지난 30년 동안 발간된 ‘범죄학 분야’ 연구보고서는 모두 523종입니다. 이는 전체 연구보고서 1,084종(수탁연구보고서 제외)의 절반 정도에 해당됩니다. 연구성과를 정리하기 위하여 523종의 ‘범죄학 분야’ 연구보고서는 연구주제의 영역에 따라 13개의 소주제 영역으로 분류하였고, 13개의 소주제 영역은 다시 범주화가 가능한 대주제 영역으로 구분하여 4개의 연구영역(범죄실태, 소년범죄, 범죄피해, 범죄예방 및 대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보다 객관적이면서 비판적인 관점에서 연구성과를 정리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들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여 연구보고서의 성과를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13개의 소주

제 연구영역별로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가 각각의 연구주제를 맡아 연구보고서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비전을 제안하도록 하였습니다. 각 소주제영역별로 평가대상 연구보고서는 25종~55종 정도입니다. 또한 별도로 전체 '범죄학 분야' 연구보고서 523종의 연구 동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조망하는 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내부 연구진은 전체 '범죄학 분야' 연구보고서의 연구영역 구분 및 연구 추세, 수탁연구과제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앞으로 「형사정책연구 30년의 성과와 과제(I): 범죄학 연구」가 한국사회 범죄학 연구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되고 지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 연구평가서가 기반이 되어 범죄학 연구에 대한 논의의 장이 보다 활성화되고 학문적 발전을 이루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연구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연구진을 독려해주신 한인섭 원장님의 관심과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외부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여 열성을 다해 각 소주제별로 상당히 많은 분량의 연구보고서를 읽으면서 정리하고 평가해주신 신동준, 노성훈, 강지현, 이정주, 김연수, 윤상연, 장안식, 최지선, 장현석, 박현호, 윤옥경, 박선영, 조윤오, 박미랑 박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부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여 방대한 연구보고서의 목록을 수차례 살펴보면서 연구 영역을 분류하고 다시 수정하는 지리한 작업을 함께 해주신 한민경, 라광현 박사님, 그리고 이를 매번 엑셀파일에 정리하고 여러 집필진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연락을 맡아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다미 전문조사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0년 동안 523종 '범죄학 분야' 연구보고서를 집필하는 데 함께 해주신 모든 연구자 분들께 깊이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8년 12월

연구진을 대표하여

선임연구위원 최 영 신

장 목차

제1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학 연구 30년의 주요 동향	1
제1장 범죄학 연구 30년의 주요 연구영역 및 추세	3
제2장 수탁과제의 연구동향	29
제3장 범죄학 연구 30년의 연구동향 및 과제	63
 제2부 범죄발생의 실태 연구의 성과와 과제	97
제1장 범죄발생의 추세 및 원인 관련 연구	99
제2장 범죄현상과 대책(Ⅰ) : 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 관련 연구	123
제3장 범죄현상과 대책(Ⅱ) : 경제·부패범죄 관련 연구	171
제4장 범죄현상과 대책(Ⅲ) : 마약 및 조직범죄, 기타범죄 관련 연구 ...	203
 제3부 소년범죄 및 범죄피해 연구의 성과와 과제	245
제1장 소년범죄의 발생추세 및 원인 관련 연구	247
제2장 소년사법정책 관련 연구	275
제3장 범죄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연구	311
제4장 소수집단의 범죄와 범죄피해 관련 연구	353

| 제4부 | 범죄예방 및 대책 연구의 성과와 과제 385

제1장 범죄예방 관련 연구 387

제2장 교정정책(Ⅰ) : 행형 관련 제도 및 정책 관련 연구 417

제3장 교정정책(Ⅱ) : 시설 내 처우 관련 연구 451

제4장 교정정책(Ⅲ) : 사회 내 처우 관련 연구 481

제5장 재범예방 관련 연구 505

[부록 1] 형사정책연구 30년 범죄학 분야 연구보고서 목록(연도별) ... 535

[부록 2] 형사정책연구 30년 범죄학 분야 수탁보고서 목록(연도별) ... 552

[부록 3] 형사정책연구 30년 번역물 및 기타자료 목록(연도별) 558

세부 목차

제1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학 연구 30년의 주요 동향	1
--	---

제1장 범죄학 연구 30년의 주요 연구영역 및 추세 • 최영신·라광현	3
---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성과물의 분류	5
제2절 범죄학 연구의 주요 연구영역	8
1. 범죄학 연구의 주요 연구영역 구분	8
2. 범죄학 연구의 연구영역별 연구주제 및 내용	10
제3절 범죄학 연구 30년의 추세 분석	17
1. 분석 개요	17
2. 연구보고서 발간 추세	18
3. 주제 유형별 보고서 발간 추세	20
4. 연구보고서 집필인원 추세	24
5. 논의 및 소결	25
참고문헌	27

제2장 수탁과제의 연구동향 · 한민경	29
------------------------------	----

제1절 수탁 연구과제의 특성과 수행 현황	31
1. 수탁 연구과제의 특성	31
2. 수탁 연구과제 수행 현황	33
제2절 수탁 연구과제 수행현황 메타분석	42
1. 분석방법 개관: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	42
2. 분석결과: 기관별·토픽별 수행 현황	43

제3절 범죄학 분야 기간별·토픽별 주요 수탁 연구과제	50
1. [토픽 1] 성범죄 및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	52
2. [토픽 2] 형사사법제도	53
3. [토픽 3] 아동·여성 안전	54
4. [토픽 4] 피해자지원과 보호	55
5. [토픽 5] 형사사법 정책 및 개선방안	56
6. [토픽 6] (신종)범죄 방지	56
7. [토픽 7] 양형 및 평가	57
8. [토픽 8] 제도도입 및 활용	58
9. [토픽 9] 참여와 인권	58
10. [토픽 10] (인터넷 관련) 실태조사	59
제4절 수탁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평가와 전망	60
참고문헌	62

| 제3장 | 범죄학 연구 30년의 연구동향 및 과제 · 신동준 ... 63

제1절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한국 범죄학	65
제2절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의 방향	69
1. 기술적 연구	70
2. 설명적 연구	72
3. 응용 연구	73
제3절 연구 주제의 경향과 제언	74
1. 연구주제의 포괄성과 균형성	74
2. 연구주제와 관련한 이론적 초점	75
제4절 연구 방법에 대한 제언	78
제5절 향후 과제에 대한 기타 제언	81
참고문헌	84

| 제2부 | 범죄발생의 실태 연구의 성과와 과제 97

| 제1장 | 범죄발생의 추세 및 원인 관련 연구 · 노성훈 99

제1절 범죄발생 추세	101
1. 한국의 범죄발생 추세연구	101
2. 범죄추세연구 평가 및 연구방향	104
제2절 범죄발생 원인과 특성	106
1. 범죄발생의 사회적·상황적·개인적(심리적) 원인	106
2. 범죄원인연구 평가 및 연구방향	110
제3절 범죄통계 구축 및 활용	112
1. 한국 범죄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2
2. 범죄통계연구 평가 및 연구방향	117
참고문헌	120

**| 제2장 | 범죄현상과 대책(Ⅰ) : 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
 관련 연구 · 강지현 123**

제1절 목적	125
제2절 분석대상의 선정기준	126
제3절 선정논문의 특성분석을 위한 기준	126
제4절 폭력·강력범죄의 연구경향	127
1. 연구시기를 중심으로	127
2. 연구주제에 따른 분류	128
3. 연구방법의 특성	131
4.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133
제5절 성폭력범죄의 연구경향	144
1. 연구시기를 중심으로	144

2. 연구내용 및 주제에 따른 분류	145
3. 연구방법의 경향	146
4.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148
제6절 가정폭력의 연구경향	155
1. 연구시기를 중심으로	155
2. 연구내용 및 주제에 따른 분류	155
3. 연구방법의 경향	156
4.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158
제7절 결론	163
1. 연구내용과 방법의 진화, 연구주제에 따른 차이	163
2. 연구 방법 관련 특성 및 보완	164
3. 연구결과와 활용	165
참고문헌	168

| 제3장 | 범죄현상과 대책(Ⅱ) : 경제·부패범죄 관련 연구

• 이정주	171
-------------	-----

제1절 연구개요	173
1. 연구목적	173
2. 연구방법	174
제2절 연구대상 분야 관련 국내·외적 흐름분석	174
제3절 분석 대상 및 분석모형	177
1. 분석 대상 논문의 선정	177
2. 연구경향의 분석모형	178
제4절 분석결과	181
1. 이론적 투입면	181
2. 방법론적 전개면	188
3. 지식산출	191

제5절 향후 연구과제	195
1. 외부연구진의 공동 참여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시각 보완	196
2. 주기적 연구과제 필요성에 대한 사전검토제도 도입을 통한 추이 분석 강화	196
3. 다양한 연구분석 방법의 시도	196
4. 부패 및 경제·재산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강화	197
5. 부패분야 연구과제의 사각지대 보완	197
참고문헌	199

Ⅰ 제4장 | 범죄현상과 대책(Ⅲ) : 마약 및 조직범죄, 기타범죄 관련 연구 · 김연수 203

제1절 개관	205
제2절 범죄연구의 경향 분석을 위한 논의	207
1. 형사정책연구의 특성	207
2. 마약범죄의 의의와 동향	208
3. 조직범죄의 의의와 동향	210
4. 사이버범죄의 의의와 동향	211
5.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의 의의와 동향	212
제3절 연구방법	213
1. 분석틀	213
2. 분석범위	214
제4절 연구동향	214
1. 마약범죄 연구	214
2. 조직범죄 연구	222
3. 사이버범죄	226
4.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 연구	228
제5절 결론 : 연구의 성과와 전망	230
1. 마약범죄 연구의 성과와 전망	230

2. 조직범죄 연구의 성과와 전망	233
3. 사이버범죄 연구의 성과와 전망	236
4.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 연구의 성과와 전망	238
참고문헌	240

| 제3부 | 소년범죄 및 범죄피해 연구의 성과와 과제 245

| 제1장 | 소년범죄의 발생추세 및 원인 관련 연구

• 윤상연	247
-------------	-----

제1절 소년범죄 연구동향 개관	249
1. 소년범죄 연구의 의의	249
2. 연구 동향 변화의 개관	251
3. 시대적 환경의 변화	252
제2절 소년범죄 발생추세 분석	254
1. 발생추세 연구의 흐름	254
2. 청소년 비행의 변화 양상	256
3. 결과 종합 및 비판	260
제3절 소년범죄 발생원인 분석	261
1. 발생원인 연구의 흐름	261
2. 주요원인의 변화 양상	261
3. 연구결과 종합 및 비판	266
제4절 요약 및 추후 연구 방향	267
1. 연구의 의의	267
2. 연구의 한계	268
3. 추후 연구 방향	269
참고문헌	271

| 제2장 | 소년사법정책 관련 연구 · 장안식 275

제1절 소년사법 정책 일반 278

1. 소년사법 정책 일반에 대한 탐색 279
2.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과 소년사법 개혁 281
3. 특정 사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 모색 283
4. 소결 285

제2절 소년보호 286

1. 소년보호의 생활과 실태 (1990~1994) 288
2. 소년원과 이후의 보호처분 (2002~2004) 291
3. 다양한 소년보호처분 (2010~2018) 293
4. 소결 298

제3절 소년사법 실무 및 제도 행정 298

1. 분류 및 위험성 평가 299
2. 제도 운영 및 평가 301
3. 소결 303

제4절 결론 및 향후 연구 전망 304

1. 선도적인 연구와 장기과제의 필요성 305
2. 연구성과의 축적 305
3. 해외사례 검토의 체계화/표준화 그리고 방법론적 다양화 305
- 참고문헌 307

| 제3장 | 범죄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연구

· 최지선 311

제1절 범죄피해조사 313

1. 범죄피해조사 개념 도입 313
2. 범죄피해 및 실태조사 314
3. 공간·상황별 피해조사 325

4. 청소년 피해조사	328
5. 소결	331
제2절 피해대상별 연구	332
1. 아동	332
2. 특수상황 피해	335
3. 해외체류 내국인	338
4. 소결	339
제3절 피해자보호 및 지원방안 연구	340
1. 피해자 지원 제도 및 정책	340
2. 아동·청소년 피해 지원	344
3. 성범죄 피해지원	345
4.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346
5. 재외국민 피해지원	347
6. 소결	347
제4절 결론 및 제언	348
참고문헌	350

| 제4장 | 소수집단의 범죄와 범죄피해 관련 연구

• 장현석	353
-------------	-----

제1절 서론	355
제2절 소수집단 범죄 및 범죄피해의 개념	356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분석의 틀	357
제4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소수집단 범죄 및 범죄피해 연구 검토	359
1. 여성 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359
2. 노인 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363
3. 장애인 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정신장애인을 중심으로	367
4.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370
5. 외국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372

제5절 결론 및 제언	376
참고문헌	381
 제4부 범죄예방 및 대책 연구의 성과와 과제	385
 제1장 범죄예방 관련 연구 · 박현호	387
제1절 서론	389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분석방법론	390
1. 범죄예방의 이론적 분류	390
2. 분석방법	391
제3절 범죄예방 연구의 특징 및 동향	394
1. 범죄예방 연구의 개괄적 특징 및 동향	394
2. 공공-민간 협력범죄예방 및 민간경비 연구의 동향	398
3.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연구의 동향	398
4. 안전 관련 연구의 동향	399
5. 범죄예방 정책 및 프로그램 연구의 동향	399
제4절 범죄예방 연구의 성과 평가	400
1. 공공-민간 협력방법 및 민간경비 연구의 성과 평가	400
2.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연구의 성과 평가	401
3. 안전 관련 연구의 성과 평가	403
4. 범죄예방 정책 및 프로그램 연구의 성과 평가	405
제5절 범죄예방 연구의 전망과 방향	406
1. 공공-민간 협력방법 및 민간경비 연구의 전망과 방향	406
2.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연구의 전망과 방향	407
3. 안전 관련 연구의 전망과 방향	409
4. 범죄예방 정책 및 프로그램 연구의 전망과 방향	409
제6절 결론	410
참고문헌	411

| 제2장 | 교정정책(Ⅰ) : 행형 관련 제도 및 정책 관련

연구 · 윤옥경	417
제1절 서론	419
제2절 행형 관련 제도 및 정책 연구 보고서 분석	420
1. 분석대상과 방법	420
2. 연구보고서 분석	420
제3절 교정정책의 변화로 살펴 본 연구의 성과	438
1. 형 집행법 개정내용으로 본 연구성과	438
2. 교정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본 성과	440
제4절 향후 연구전망 및 과제	444
참고문헌	448

| 제3장 | 교정정책(Ⅱ) : 시설 내 처우 관련 연구 · 박선영 ··· 451

제1절 교정연구 동향	453
1. 1990년대: 1990년~1999년	454
2. 2000년대: 2000년~2009년	458
3. 2010년대~현재	460
제2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분석	462
1. 교정처우 전반 및 특정처우: 13종	463
2. 특정집단 처우 : 18종	465
3. 특정제도 및 특수주제 : 9종	467
제3절 연구성과	469
1. 학문적 기여	469
2. 정책적 기여	470
제4절 연구의 한계	473
1. 방법론적 한계	473

2. 교정연구에 대한 ‘연구원’의 관심과 이해 부족	474
제5절 연구제언	474
1. 중장기적 연구 계획의 수립	475
2. 대규모 정기적 조사 연구 시행의 필요성	476
3. 종단연구의 실시	476
4. 연구 주제의 다양화 모색	477
참고문헌	478

| 제4장 | 교정정책(Ⅲ) : 사회 내 처우 관련 연구 · 조윤오 · 481

제1절 서론	483
제2절 보호관찰을 통한 사회 내 처우의 발돋움	484
제3절 수감명령제도를 통한 사회 내 처우의 전문화	489
제4절 사회봉사명령제도를 통한 사회내 처우 다양화	491
제5절 전자감독제도를 통한 사회내 처우 과학화	492
제6절 중간처우(개방처우)를 통한 사회내 처우 개별화	495
제7절 기타 형벌 정책을 통한 사회내 처우 확대	497
제8절 결론 및 제언	498
참고문헌	503

| 제5장 | 재범예방 관련 연구 · 박미랑 · 505

제1절 서론	507
제2절 재범연구	508
1. 재범의 정의	508
2. 연구의 구조	509
3. 연구 내용	511

제3절 재범 예방 및 재사회화에 연구	513
1. 연구의 구조	513
2. 연구방법론	517
3. 연구의 내용	519
제4절 청소년범죄 재범	522
1. 연구의 구조	522
2. 연구의 내용	525
제5절 연구성과의 확산	528
1. 학술적 확산	528
2. 정책적 기여	529
제6절 결론	530
참고문헌	532

부록 535

[부록 1] 형사정책연구 30년 범죄학 분야 연구보고서 목록(연도별)	535
[부록 2] 형사정책연구 30년 범죄학 분야 수탁보고서 목록(연도별)	552
[부록 3] 형사정책연구 30년 번역물 및 기타자료 목록(연도별)	558

표 차례

[표 I-1-1] 형사정책연구 30년 연구성과물의 유형구분	6
[표 I-1-2] 형사정책연구 30년 연구보고서의 연구분야 분류	7
[표 I-1-3] 범죄학 분야 연구보고서(1989~2018년)의 연구영역 구분	9
[표 I-1-4] ‘범죄실태’ 연구보고서의 소주제 영역별 주요 연구내용	11
[표 I-1-5] ‘소년범죄’ 연구보고서의 소주제 영역별 주요 연구내용	13
[표 I-1-6] ‘범죄피해’ 연구보고서의 소주제 영역별 주요 연구내용	14
[표 I-1-7] ‘범죄예방 및 대책’ 연구보고서의 소주제 영역별 주요 연구내용	15
[표 I-1-8] 연도별 연구보고서 발간 추세	19
[표 I-1-9] 기간별 연구보고서 발간 추세	20
[표 I-1-10] 소주제별 연구보고서 발간 추세	23
[표 I-1-11] 기간별 연구보고서 집필진 평균 인원	25
[표 I-2-1] 수탁 연구과제 발주기관	36
[표 I-2-2] 수탁 연구과제 10대 토픽 및 토픽별 핵심어	44
[표 I-2-3] 기간별·토픽별 수탁 연구과제 수행현황	48
[표 I-2-4] 범죄학 분야 토픽별 주요 수탁 연구과제명	51
[표 II-1-1] 2005년까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발생 추세분석 보고서	101
[표 II-1-2] 범죄발생의 원인 및 특성에 관한 연구(1991~2017)	107
[표 II-1-3] 범죄통계 DB 구축사업의 주요 추진사항(2014~2018년)	116
[표 II-2-1] 연도별 폭력·강력범죄 연구실태	128
[표 II-2-2] 폭력·강력범죄 연구 세부 주제	129
[표 II-2-3] 폭력·강력범죄 연구 세부 주제와 연구내용	131
[표 II-2-4] 폭력·강력범죄연구 연구방법	132
[표 II-2-5] 폭력·강력범죄연구 연구방법- 연구주제별	132
[표 II-2-6] 연도별 성폭력범죄 연구실태	144
[표 II-2-7] 성폭력범죄 연구 세부 주제 분류	146
[표 II-2-8] 성폭력범죄 연구 연구방법	147
[표 II-2-9] 성폭력범죄 연구 연구방법-연구주제별	148
[표 II-2-10] 연도별 가정폭력범죄 연구실태	155
[표 II-2-11] 가정폭력범죄 연구 세부 주제 분류	156
[표 II-2-12] 가정폭력범죄 연구 세부 주제 분류 - 연도별	156
[표 II-2-13] 가정폭력범죄 연구 연구방법	157

[표 II-2-14] 가정폭력범죄 연구 연구방법 - 세부 주제별	157
[표 II-3-1] 경제·부패범죄 분석대상 연구과제	178
[표 II-3-2] 경제·부패범죄 연구 분석모형	180
[표 II-3-3] 경제·부패범죄연구 주저자의 전공분야(전체)	182
[표 II-3-4] 경제·부패범죄연구 주저자의 전공분야(연구 분야별)	182
[표 II-3-5] 경제·부패범죄연구 총 저자의 수(전체)	182
[표 II-3-6] 경제·부패범죄연구 총 저자의 수(연구 분야별)	183
[표 II-3-7] 경제·부패범죄연구 외부 공동연구 여부(전체)	183
[표 II-3-8] 경제·부패범죄연구 외부 공동연구 여부(연구 분야별)	184
[표 II-3-9] 경제·부패범죄연구 공동연구자의 전공(전체)	184
[표 II-3-10] 경제·부패범죄연구 공동연구자의 전공(연구 분야별)	185
[표 II-3-11] 경제·부패범죄연구 연구목적(전체)	185
[표 II-3-12] 경제·부패범죄연구 연구목적(연구 분야별)	186
[표 II-3-13] 경제·부패범죄연구 연구시점(전체)	186
[표 II-3-14] 경제·부패범죄연구 연구시점(연구 분야별)	187
[표 II-3-15] 경제·부패범죄연구 연구대상(전체)	187
[표 II-3-16] 경제·부패범죄연구 연구대상(연구 분야별)	188
[표 II-3-17] 경제·부패범죄연구 분석방법(전체)	188
[표 II-3-18] 경제·부패범죄연구 분석방법(연구 분야별)	189
[표 II-3-19] 경제·부패범죄연구 분석단위(전체)	189
[표 II-3-20] 경제·부패범죄연구 분석단위(연구 분야별)	190
[표 II-3-21] 경제·부패범죄연구 자료수집(전체)	190
[표 II-3-22] 경제·부패범죄연구 자료수집(연구 분야별)	191
[표 II-3-23] 부패연구에서 부패 개념 초점	191
[표 II-3-24] 부패연구에서 부패 개념 변화	192
[표 II-3-25] 부패연구에서 부패의 이론적 배경 반영 여부	192
[표 II-3-26] 부패연구의 부패통제시기	193
[표 II-3-27] 부패연구에서 초점을 맞추는 행정이념	193
[표 II-3-28] 부패연구의 부패통제수단	193
[표 II-3-29] 부패연구의 정책제안방식	193
[표 II-3-30] 경제·재산연구의 이론적 배경 반영 여부	194
[표 II-3-31] 경제·재산연구의 통제수단	194
[표 II-3-32] 경제·재산연구의 정책제안방식	194
[표 II-3-33] 경제·부패범죄연구 주기적(유사) 연구유무(전체)	195

[표 II-3-34] 경제·부패범죄연구 주기적(유사) 연구유무(연구 분야별)	195
[표 II-4-1] 사이버범죄 발생현황	212
[표 II-4-2] 제1기 마약범죄 연구 현황	215
[표 II-4-3] 제2기 마약범죄 연구 현황	218
[표 II-4-4] 제3기 마약범죄 연구 현황	220
[표 II-4-5] 시기별 조직범죄 연구동향	223
[표 II-4-6] 시기별 사이버범죄 연구동향	226
[표 II-4-7] 시기별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 연구동향	229
[표 III-1-1] 소년법상 소년범의 분류	250
[표 III-1-2] 청소년 문제와 위험요인	251
[표 III-1-3] 시대별 청소년 관련 대표적 현상	254
[표 III-1-4] 1990년대 소년범죄 동향연구	257
[표 III-1-5] 2000년대 이후 소년범죄 동향연구	258
[표 III-1-6] 1990년대 소년범죄 원인연구	263
[표 III-1-7] 2000년대 이후 소년범죄 원인연구	265
[표 III-2-1] 소년사법 정책에 대한 탐색	279
[표 III-2-2]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과 소년사법 개혁	281
[표 III-2-3] 특정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	284
[표 III-2-4] 소년보호의 생활과 실태	288
[표 III-2-5] 소년원과 이후의 보호처분	291
[표 III-2-6] 다양한 소년보호처분	294
[표 III-2-7] 분류 및 위험성 평가	299
[표 III-2-8] 소년사법 제도 운영 및 평가	301
[표 III-4-1] 여성 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들	361
[표 III-4-2] 노인 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들	365
[표 III-4-3] 장애인 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들	368
[표 III-4-4]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에 대한 연구들	371
[표 III-4-5] 외국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들	374
[표 IV-1-1] 범죄예방 연구방법별 분류	393
[표 IV-1-2] 범죄예방 연구주제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394
[표 IV-1-3] 범죄예방 연구의 시대 주기별 특징	396
[표 IV-1-4] 범죄예방 관련 연구총서 종수의 추세	397
[표 IV-2-1] 교정관련 법, 규범 연구	424
[표 IV-2-2] 수용자 처우 관련 정책과 제도연구	429

[표 IV-2-3] 교정 관련 제도 및 교정현안	436
[표 IV-2-4] 형 집행법 주요 개정내용	439
[표 IV-3-1] 1990년대(1990~199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시설내 처우 연구물	455
[표 IV-3-2] 2000년대(2001~200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시설내 처우 연구물	458
[표 IV-3-3] 2010년대(2010~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시설내 처우 연구물	461
[표 IV-3-4] 교정정책 시설내 처우 소분류와 연구 편수	463
[표 IV-3-5] 소분류 1: 교정처우 전반 및 특정처우	464
[표 IV-3-6] 소분류 2: 특정집단 처우	466
[표 IV-3-7] 소분류 3: 특정제도 및 특정주제	468
[표 IV-3-8] 시설 내 처우 연구보고서의 정책반영 사례	471
[표 IV-5-1] 재범연구 보고서 구조	509
[표 IV-5-2] 재범연구 보고서별 측정 재범기간	510
[표 IV-5-3] 재범연구 활용 이론	511
[표 IV-5-4] 재범 예방 및 재사회화 연구 보고서 구조	514
[표 IV-5-5] 재범예방 및 재사회화 연구 방법	518
[표 IV-5-6] 청소년 범죄 연구 구조	523
[표 IV-5-7] 청소년 범죄 연구 방법	525
[표 IV-5-8] 재범 연구분야별 인용지수	528

그림 차례

[그림 I-1-1] 연도별 연구보고서 발간 추세	18
[그림 I-1-2] 기간별 연구보고서 발간 추세	20
[그림 I-1-3] 연구보고서 주제 유형별/기간별 발간 추세	21
[그림 I-1-4] 기간별 연구보고서 집필진 평균 인원	24
[그림 I-2-1] 연도별 수탁연구과제수(1989~2018): 자체 연구과제수 대비	34
[그림 I-2-2] 연도별·기관별 수탁 연구과제수(1989~2018): 상위 발주기관을 중심으로 ...	37
[그림 I-2-3] 연도별 수탁 연구과제 계약금액 합계(1989~2018)	38
[그림 I-2-4] 연도별 수탁 연구과제 계약금액 평균값 및 최소·최대값(1989~2018) ...	39
[그림 I-2-5] 연도별 수탁 연구과제 평균 수행기간(1989~2018)	41
[그림 I-2-6] 수탁 연구과제 10대 토픽-단어 관계	46
[그림 I-2-7] 기간별·토픽별 수탁 연구과제 수행현황: 절대건수	48
[그림 I-2-8] 기간별·토픽별 수탁 연구과제 수행현황: 상대적 비중	49
[그림 II-3-1] 국가별 공직윤리제고방식	176
[그림 II-4-1] 연도별 마약류사범 추이(1989년~2017년)	209
[그림 II-4-2] 사이버범죄 언론보도 트렌드	236
[그림 III-1-1] 성인 및 소년 범죄발생 추세(1966~1999)	255

제 1 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학 연구
30년의 주요 동향

제 1 장

범죄학 연구 30년의 주요 연구영역 및 추세

최영신·라광현

범죄학 연구 30년의 주요 연구영역 및 추세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성과물의 분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으로 함)은 1989년 3월 16일 개원한 이래 매년 자체 연구사업을 통하여 연구보고서, 수탁연구보고서, 번역물, 교과서 및 자료집 등 다양한 형태의 연구성과물을 발간하여 왔다. ‘연구원’은 2019년 개원 30주년을 맞이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지난 30년 동안 ‘연구원’이 수행해온 연구성과물을 정리하고 평가함으로써 국내 유일의 형사정책 관련 국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인하고 그 역할을 점검해야 한다는 요청에 마주하고 있다.

이에 ‘연구원’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수행해온 연구성과물을 정리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2018년도 9월 ‘30주년 기념 KIC 연구성과 분석 TF’를 구성하고 연구성과물의 정리와 평가를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 TF팀에서는 그 첫 단계의 기초작업으로서 연구성과물의 유형을 분류하여 정리 및 평가가 필요한 연구성과물의 대상을 확정하고, 연구보고서의 연구 분야를 분류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우선 그동안 수행된 연구성과물의 목록을 수집하고, 그 목록을 분류하는 작업을 통해 평가가 필요한 연구성과물과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연구성과물을 구분하였다. 다음의 [표 I-1-1]은 그동안 ‘연구원’이 수행해온 연구성과물을 단행본을 기준으로 그 유형을 구분한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수행해온 ‘연구원’의 연구성과물은 단행본을 기준으로 그 유형을 크게 연구보고서, 수탁연구보고서, 번역물, 교과서 및 자료집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¹⁾. 이 네 가지 연구성과물 중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연구보고서로서

1) 단행본 이외에 소식지나 학술지 등의 연구성과물에 대해서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6 형사정책연구 30년의 성과와 과제(I) : 범죄학 연구

1,084종(68.9%)이며, 그 다음으로는 수탁연구보고서가 446종(28.3%), 다양한 형태의 번역물²⁾이 41종(2.6%), 이외에 교과서와 자료집이 3종(0.2%)이다.

‘30주년 기념 KIC 연구성과 분석 TF’에서는 이 네 가지 연구성과물 중에서 연구성과의 정리 및 평가 대상으로 연구보고서만을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며, 연구보고서의 연구분야를 ‘범죄학 연구’와 ‘형사법 분야’로 구분하고 각 연구분야별로 연구보고서를 정리하고 평가하기로 하였다. 수탁연구보고서는 연구원의 자체 연구사업비를 사용하지 않고 외부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아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이므로 해당 연구성과물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수탁연구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기로 하였다. 다만 그동안 수행된 수탁연구보고서의 전반적인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³⁾ 또한 이외의 번역물, 교과서 및 자료집 역시 연구물로서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지만, 연구보고서와는 다른 성격의 성과물이라고 판단하여 연구성과물의 평가작업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⁴⁾. 지난 30년 동안 수행한 연구성과물은 1,574종인데, 이 중에서 연구보고서는 1,084종으로서 전체 단행본의 약 69% 정도를 차지한다.

[표 I -1-1] 형사정책연구 30년 연구성과물의 유형구분

연구성과물의 유형		연구성과물 편수
1. 연구보고서		1,084종(68.9%)
2. 수탁연구보고서		446종(28.3%)
3. 번역물	① 번역 연구과제	3종(0.2%)
	② 번역총서	21종(1.3%)
	③ 해외 유관기관(유엔 등) 번역총서	7종(0.4%)
	④ 연구물 외국어(영어/독일어) 번역	10종(0.6%)
	소 계	41종(2.6%)
4. 교과서 및 자료집		3종(0.2%)
합 계		1,574종(100.0%)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체 연구보고서 중에서 범죄학 분야의 연구보고서를 대상으로 그 성과를 정리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연구보고서는 [표 I -1-2]와 같이 연구분야를

2) 지난 30년 동안 발간된 번역물은 연구과제로서 수행된 번역물, 번역총서, 유엔 등 해외유관기관 발간물의 번역, ‘연구원’ 연구성과물의 외국어 번역 등으로 구분된다.

3) 제1부 제2장 참조.

4) <부록3> 형사정책연구 30년 번역물 및 기타 자료 목록(연도별) 참조.

4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범죄학’, ‘형사정책 일반’, ‘형사법’, ‘기타’가 여기에 해당한다. ‘범죄학’은 주로 형사정책 관련 연구에 대한 범죄사회학, 범죄심리학, 교정학, 행정학, 교육학적 접근을 위주로 한 연구과제들이 포함되며, ‘형사법’에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기타 법학적 연구주제를 다룬 연구과제들이, ‘형사정책 일반’은 대체로 형사정책 전반에 걸친 주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법학과 사회학적 접근방법을 모두 다룬 연구과제들이 포함된다. 나머지 ‘기타’에는 3종의 연구보고서가 포함되었는데, 직접적으로 형사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루었다고 보기 어려운 연구과제로서 ‘연구원’의 기관 평가나 특정 분야의 연구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들이 해당된다⁵⁾. ‘기타’에 포함된 연구보고서는 직접적으로 형사정책 관련 문제의식을 다루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연구성과의 평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결국 ‘범죄학 분야’는 ‘범죄학’으로 분류된 연구보고서를 대상으로, 그리고 ‘형사법 분야’는 ‘형사정책 일반’과 ‘형사법’으로 분류된 연구보고서를 대상으로 연구성과를 정리하기로 한다.

[표 I-1-2] 형사정책연구 30년 연구보고서의 연구분야 분류

	범죄학	형사정책 일반	형사법	기타	합계
연구보고서	523종(48.2%)	114종(10.5%)	444종(41.0%)	3종(0.3%)	1,084종(100.0%)

지난 30년 동안 ‘연구원’에서 발간된 범죄학 분야의 연구보고서는 [표 I-1-2]에서와 같이 모두 523종이며⁶⁾, 전체 연구보고서 1,084종의 48% 정도를 차지한다. 그 동안 범죄학 관련 연구인력 및 연구사업비 등 ‘연구원’을 둘러싼 연구환경의 변화에 따라 매년 수행된 연구과제의 숫자와 규모가 달라져 왔지만, 지난 30년 동안 범죄학 분야의 연구보고서는 매년 평균적으로 15~20종 정도 발간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고객만족도 조사」(주)기술과 가치, 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법교육사업수행을 위한 중·장기 Action Plan」(김은경 외, 2007), 「형사정책 연구보고서의 정책기여도 제고 방안: 정책과정 및 정책네트워크 관점에서」(박경래 외, 2008).

6) <부록1> 형사정책연구 30년 ‘범죄학 분야’ 연구보고서 목록 참조.

제2절 범죄학 연구의 주요 연구영역

1. 범죄학 연구의 주요 연구영역 구분

이 연구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연구원’에서 발간된 범죄학 분야 연구보고서의 성과를 정리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범죄학 분야 연구보고서의 연구영역을 연구주제에 따라 구분하고 이를 분류하였다. [표 I-1-3]은 523종의 연구보고서를 연구주제 영역별로 분류한 것이다.

연구진은 우선 지난 30년 동안 발간된 연구보고서의 제목, 연구진, 발간연도 등 연구보고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 자료목록을 보면서 비슷한 연구주제를 찾아서 [표 I-1-3]의 소주제에 해당하는 연구영역을 정리하였다. 소주제에 해당하는 연구영역은 모두 13개인데, 이것은 몇 차례 주제영역을 수정하고 재분류하는 과정을 거쳐 확정된 것이다. 연구보고서를 분류하는 소주제를 13개 영역으로 확정한 것은 다분히 지난 30년 동안의 연구보고서를 정리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편의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즉 범죄학의 학문체계나 연구주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고서를 분류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연구원’에서 수행해온 연구보고서의 연구주제와 주요 연구내용에 초점을 두어 연구보고서를 분류하고 해당 연구보고서를 범주화할 수 있도록 연구주제의 이름을 부여한 것이다. 소주제의 연구영역 개수도 제한된 연구비의 범위 내에서 리뷰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몇몇 주제는 필요에 의해서 하나의 소주제로 묶어 포함시켰다. 일정 숫자의 연구보고서가 각 소주제에 묶일 수 있도록 범주화한 것이다.

예컨대, ‘소수집단의 범죄와 범죄피해’라는 소주제 영역의 경우, 소수집단의 범죄는 ‘범죄실태’에, 그리고 소수집단의 범죄피해는 ‘범죄피해’에 해당하는 연구주제이지만, 그동안 해당 주제를 다룬 연구보고서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이를 소주제 영역으로 따로 분류하지 않고 평가의 편의를 위하여 ‘범죄피해’ 영역으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범죄현상과 대책(Ⅲ)’은 마약범죄, 조직범죄, 기타범죄를 하나의 소주제 영역으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마약범죄와 조직범죄가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고, 기타 나머지 2-3종 정도의 연구가 이루어진 개별 범죄현상(음주운전

등) 관련 연구보고서를 여기에 포함시켰다.

[표 I-1-3] 범죄학 분야 연구보고서(1989~2018년)의 연구영역 구분

범죄학 연구보고서의 주제영역		보고서수(%)
대주제	소주제	
발간 연구보고서 총수		523종
범죄실태	1. 범죄발생의 추세 및 원인	41종(7.8%)
	2. 범죄현상과 대책(Ⅰ) : 폭력범죄	49종(9.3%)
	3. 범죄현상과 대책(Ⅱ) : 경제·부패범죄	30종(5.7%)
	4. 범죄현상과 대책(Ⅲ) : 마약 및 조직범죄, 기타범죄	37종(7.0%)
	소 계	157종(29.8%)
소년범죄	5. 소년범죄 발생추세 및 원인	47종(8.9%)
	6. 소년사법정책	40종(7.6%)
	소 계	87종(16.5%)
범죄피해	7. 범죄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	55종(10.5%)
	8. 소수집단의 범죄와 범죄피해	27종(5.1%)
	소 계	82종(15.6%)
범죄예방 및 대책	9. 범죄예방	53종(10.1%)
	10. 교정정책(Ⅰ) : 행형 관련 제도 및 정책	34종(6.5%)
	11. 교정정책(Ⅱ) : 시설 내 처우	40종(7.6%)
	12. 교정정책(Ⅲ) : 사회 내 처우	25종(4.8%)
	13. 재범예방	48종(9.1%)
	소 계	200종(38.0%)
합 계		526종(100.0%)*

※ 3종의 보고서가 중복 분류되어 발간 연구보고서수보다 3종 많아짐.

그리고 13개의 소주제 연구영역은 다시 범주화가 가능한 대주제로 분류하여 4개 연구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대주제 연구영역의 명칭은 형사정책 및 범죄학계 전문가 자문회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결과적으로 범죄학 분야 연구보고서 523종의 연구영역은, [표 I-1-3]에서와 같이, 대주제 연구영역이 ‘범죄실태’, ‘소년범죄’, ‘범죄피해’, ‘범죄예방 및 대책’의 4개 분야로, 그리고 그 하위 연구영역은 13개의 소주제로 구분된다. [표 I-1-3]에서 4개의 연구영역에 포함된 연구보고서는 모두 526종인데, 이는 3종의 연구보고서가 중복으로 서로 다른 소주제 영역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⁷⁾

4개의 연구영역 중에서 ‘범죄실태’에 포함되는 연구보고서는 157종으로 전체 연구보고서의 29.8% 정도를 차지하며, ‘소년범죄’는 87종(16.5%), ‘범죄피해’는 82종(15.6%), ‘범죄예방 및 대책’은 200종(38.0%)이다. ‘범죄예방 및 대책’ 연구영역의 비율이 38%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범죄실태’가 30%, 그 다음으로는 ‘소년범죄’가 17%, ‘범죄피해’가 16% 정도를 차지한다.

2. 범죄학 연구의 연구영역별 연구주제 및 내용

여기에서는 4개의 연구영역별로 주요 연구주제가 무엇이며, 각 연구주제가 포함하고 있는 주요 연구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가. ‘범죄실태’ 관련 연구보고서의 주요 연구주제 및 연구내용

[표 I-1-4]는 ‘범죄실태’ 관련 연구보고서를 주요 연구영역별로 분류하여 각각의 소주제 영역별로 다루어진 주요 연구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7)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효과적인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권수진 외, 2017)는 ‘소년사법정책’과 ‘소수집단의 범죄와 범죄피해’의 두 개 연구영역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정신질환자 범죄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내 관리방안」(안성훈 외, 2018)은 ‘소수집단의 범죄와 범죄피해’와 ‘재범예방’의 두 개 연구영역에서, 그리고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최영신 외, 2017)는 ‘범죄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와 ‘소수집단의 범죄와 범죄피해’ 양쪽 연구영역에서 모두 평가하도록 하였다.

[표 I-1-4] '범죄실태' 연구보고서의 소주제 영역별 주요 연구내용

소주제	주요내용	보고서수(%)
1. 범죄발생의 추세 및 원인	범죄발생 추세	6종(3.8%)
	범죄발생의 원인 및 특성 (사회환경, 사회변화, 지역, 공간 등)	21종(13.4%)
	범죄통계 구축 및 활용	14종(8.9%)
	소 계	41종(26.1%)
2. 범죄현상과 대책(Ⅰ) : 폭력범죄	폭력범죄·강력범죄	22종(14.0%)
	성폭력·가정폭력	27종(17.2%)
	소 계	49종(31.2%)
3. 범죄현상과 대책(Ⅱ) : 경제·부패범죄	경제·부패범죄	24종(15.3%)
	재산범죄	6종(3.8%)
	소 계	30종(19.1%)
4. 범죄현상과 대책(Ⅲ) : 마약 및 조직범죄, 기타범죄	마약범죄	21종(13.4%)
	조직범죄, 사이버범죄	10종(6.4%)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	4종(2.5%)
	기타범죄	2종(1.3%)
	소 계	37종(23.6%)
합계		157종(100.0%)

‘범죄실태’에는 ‘범죄발생의 추세 및 원인’, ‘범죄현상과 대책(Ⅰ): 폭력범죄’, ‘범죄현상과 대책(Ⅱ): 경제·부패범죄’, 그리고 ‘범죄현상과 대책(Ⅲ): 마약 및 조직범죄, 기타범죄’라는 4개의 소주제 연구영역이 포함된다.

157종의 ‘범죄실태’ 관련 연구보고서 중에서 ‘범죄발생의 추세 및 원인’을 연구한 보고서는 41종(26.1%)이고, ‘범죄현상과 대책(Ⅰ): 폭력범죄’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49종(31.2%), ‘범죄현상과 대책(Ⅱ): 경제·부패범죄’는 30종(19.1%), ‘범죄현상과 대책(Ⅲ): 마약 및 조직범죄, 기타범죄’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37종(23.6%)이다.

‘범죄발생의 추세 및 원인’ 관련 연구보고서에서 주로 다루어진 연구내용으로는 범죄발생추세, 범죄발생의 원인 및 특성(사회환경, 사회변화, 지역, 공간 등), 범죄통계의 구축 및 활용 등이 포함된다. 연구내용별로 각각 14종, 21종, 14종의 연구보고서가 해당된다.

‘범죄현상과 대책(Ⅰ): 폭력범죄’에서는 다양한 폭력범죄 전반을 다루고 있는데, 크게 강력범죄, 폭력범죄, 성폭력, 가정폭력으로 대별해볼 수 있다. 지난 30년 동안

폭력범죄를 연구한 보고서는 모두 49종인데, 이중에서 강력범죄 및 폭력범죄는 22종, 그리고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27종이다.

‘범죄현상과 대책(Ⅱ): 경제·부패범죄’로 분류된 연구보고서의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경제 및 부패 범죄, 재산범죄가 포함된다. 경제 및 부패 범죄 관련 연구보고서는 모두 24종으로서 전체 ‘범죄실태’ 관련 연구보고서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외 비하여 전통적인 재산범죄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단지 6종에 불과하다.

‘범죄현상과 대책(Ⅲ): 마약 및 조직범죄, 기타범죄’에 포함되는 연구보고서는 ‘마약 범죄’에 대한 것이 21종(13.4%)이고, ‘조직범죄 및 사이버범죄’가 10종(6.3%),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4종(2.5%), 이외에 기타 범죄가 2종이다.

요컨대, ‘범죄실태’ 관련 연구보고서는 크게 범죄발생의 추세 및 원인, 그리고 각 범죄유형별 범죄현상 및 대책에 대한 연구보고서로 대별된다. 이중에서 ‘범죄발생의 원인 및 특성’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21종(13%)을 차지하고, 범죄유형별로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27종, 17%), 경제 및 부패범죄(24종, 15%), 마약범죄(22종, 14%), 폭력범죄(강력범죄 포함)(22종, 14%)에 대한 연구가 각각 20종을 넘고 있어 범죄실태에 대한 연구에서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소년범죄 관련 연구보고서의 주요 연구주제 및 연구내용

‘소년범죄’ 관련 연구보고서의 소주제 연구영역별 주요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I-1-5]와 같다. 지난 30년 동안 발간된 ‘소년범죄’ 관련 연구보고서는 모두 87종인데, 이중에서 ‘소년범죄 발생추세 및 원인’과 관련한 연구보고서가 47종(54%)이고, ‘소년사법정책’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40종(46%)이다.

‘소년범죄 발생추세 및 원인’을 연구주제로 한 연구보고서의 세부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 범죄발생의 추세’에 대한 것이 12종(14%), ‘비행 발생의 원인 및 특성’이 35종(40%)이다. ‘소년사법정책’ 관련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년사법정책 일반’에 대한 것이 11종(13%), ‘소년보호’가 19종(22%), ‘소년사법 실무 및 제도 행정’이 10종(12%)을 차지한다.

[표 I-1-5] '소년범죄' 연구보고서의 소주제 영역별 주요 연구내용

소주제	주요 연구내용	보고서수(%)
1. 소년범죄 발생추세 및 원인	청소년 범죄발생 추세	12종(13.8%)
	비행 발생의 원인 및 특성	35종(40.2%)
	소 계	47종(54.0%)
2. 소년사법정책	소년사법정책 일반	11종(12.6%)
	소년보호	19종(21.8%)
	소년사법 실무 및 제도 행정	10종(11.5%)
	소 계	40종(46.0%)
합계		87종(100.0%)

[표 I-1-5]에서 '소년범죄' 관련 연구보고서에서 다루어진 주요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소년범죄 발생추세 및 원인에 대한 연구가 소년사법정책에 대한 연구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수행되었으며, 특히 '비행 발생의 원인 및 특성'(35종, 40%)과 '소년보호'(19종, 22%)에 대한 연구가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2절에서 연구수행시기를 고려하여 주요 연구내용의 변화를 분석해보면 최근 소년범죄 연구동향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범죄피해' 관련 연구보고서의 주요 연구주제 및 연구내용

'연구원'이 지난 30년 동안 발간한 '범죄피해' 관련 연구보고서는 모두 82종으로 전체 범죄학 분야 연구보고서의 16% 정도를 차지한다. [표 I-1-6]에서 '범죄피해' 관련 연구보고서의 주요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범죄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가 55종(67%), '소수집단의 범죄와 범죄피해'가 27종(33%)을 차지한다.

[표 I-1-6] ‘범죄피해’ 연구보고서의 소주제 영역별 주요 연구내용

소주제	주요 연구내용	보고서수(%)
1. 범죄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	범죄피해조사(청소년 포함)	27종(32.9%)
	아동 및 재외국민 등의 범죄피해	11종(13.4%)
	피해자 보호 방안	17종(20.7%)
	소 계	55종(67.1%)
2. 소수집단의 범죄와 범죄피해	여성	5종(6.1%)
	외국인	10종(12.2%)
	북한이탈주민	4종(4.9%)
	정신장애인	5종(6.1%)
	노인	3종(3.7%)
	소 계	27종(32.9%)
합계		82종(100.0%)

‘범죄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연구보고서에는 ‘범죄피해조사(청소년 포함)’가 27종(33%), ‘아동 및 재외국민 등의 범죄피해’가 11종(13%), ‘피해자 보호방안’이 17종(21%) 포함되어 있다.

‘소수집단의 범죄와 범죄피해’ 관련 연구보고서에는 여성,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정신장애인, 노인 등 소수집단의 범죄, 또는 범죄피해를 함께 다룬 연구보고서가 포함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연구보고서 27종 중에서 19종은 소수집단의 범죄 발생, 그리고 소수집단의 범죄피해에 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었으며,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정신장애인, 노인의 범죄피해를 다룬 연구보고서는 8종에 불과하다. 그동안 ‘연구원’에서 수행된 소수집단의 범죄에 대한 연구는 범죄피해보다는 범죄 발생에 보다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소수집단에 대한 연구 역시 범죄 발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소수집단의 범죄 발생과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범죄실태’에 포함시키지 않고, ‘범죄피해’의 하위 범주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는데, 이는 앞으로 소수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수집단에 대한 범죄학 분야 연구의 방향이 범죄 발생보다는 범죄피해 쪽으로 보다 관심이 모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라. ‘범죄예방 및 대책’ 관련 연구보고서의 주요 연구주제 및 연구내용

지난 30년 동안 수행된 ‘범죄예방 및 대책’과 관련한 연구보고서는 모두 200종으로 범죄학 분야 연구보고서의 38% 정도를 차지한다. 이는 ‘연구원’이 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게 범죄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는 데 가장 우선적으로 연구역량이 모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I-1-7]을 보면, ‘범죄예방 및 대책’은 크게 범죄예방의 하위 범주 2개와 대책의 하위 범주 3개로 구분된다. ‘범죄예방’과 ‘재범예방’, 그리고 ‘교정정책(I), (II), (III)’이 여기에 해당한다. ‘범죄예방’에 포함되는 연구보고서는 53종(26.5%)이고, ‘재범예방’은 48종(24.0%), ‘교정정책(I): 행형 관련 제도 및 정책’이 34종(17.0%), ‘교정정책(II): 시설 내 처우’가 41종(20.0%), ‘교정정책(III): 사회 내 처우’가 25종(12.5%)으로서 ‘범죄예방’과 ‘재범예방’을 합하면 102종(50.5%)으로 ‘교정정책(I), (II), (III)’의 99종(49.5%)과 비슷한 비율을 차지한다. 범죄예방과 대책에 대한 연구가 비슷한 비중으로 연구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표 I-1-7] ‘범죄예방 및 대책’ 연구보고서의 소주제 영역별 주요 연구내용

소주제	주요내용	보고서수(%)
1. 범죄예방	경찰역할, 방범활동, 민간경비 등	14종(7.0%)
	CPTED	22종(11.0%)
	「안전」 관련 연구	7종(3.5%)
	범죄예방 정책 및 프로그램	10종(5.0%)
	소 계	53종(26.5%)
2. 교정정책(I) : 행형 관련 제도 및 정책	교정관련 법, 규범 연구	7종(3.5%)
	수용자의 처우 관련 정책과 제도 연구	12종(6.0%)
	교정관련 제도 및 교정조직, 교정현안	15종(7.5%)
	소 계	34종(17.0%)
3. 교정정책(II) : 시설 내 처우	교정처우 전반 및 특정처우	13종(6.5%)
	특정집단 처우	18종(9.0%)
	특정제도 및 특수주제	9종(4.5%)
	소 계	40종(20.0%)
4. 교정정책(III) : 사회 내 처우	보호관찰	9종(4.5%)
	수강명령제도	3종(1.5%)

16 형사정책연구 30년의 성과와 과제(I) : 범죄학 연구

소주제	주요내용	보고서수(%)
	사회봉사명령	1종(0.5%)
	전자감독제도 등	7종(3.5%)
	중간처우, 개방처우 일반	3종(1.5%)
	기타	2종(1.0%)
	소 계	25종(12.5%)
5. 재범예방	재범 관련 연구	9종(4.5%)
	재범예방 및 재사회화	26종(13.0%)
	비행청소년의 재범예방 등	13종(6.5%)
	소 계	48종(24.0%)
합계		200종(100.0%)

[표 I-1-7]에서 소주제 연구영역별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범죄예방’에는 경찰역할, 방법활동, 민간경비 등(14종, 7%), CPTED(22종, 11%), 「안전」 관련 연구(7종, 3%), 범죄예방 정책 및 프로그램(10종, 5.0%)이 포함된다. ‘범죄예방’ 영역에서 CPTED 관련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재범예방’에는 ‘재범 관련 연구’(9종, 4%), ‘재범예방 및 재사회화’(26종, 12.8%), ‘비행청소년의 재범예방 등’(13종, 6.4%)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포함되는데, 여기에서는 ‘재범예방 및 재사회화’와 관련된 연구보고서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교정정책’ 관련 연구보고서는 행형 관련 제도 및 정책, 시설 내 처우, 사회 내 처우로 구분하였다. ‘교정정책(I): 행형 관련 제도 및 정책’에는 ‘교정관련 법, 규범’(7종, 3.4%), ‘수용자 처우 관련 정책과 제도’(12종, 5.9%), ‘교정관련 제도 및 교정조직·교정현안’(15종, 7.9%)과 관련된 연구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교정관련 제도 및 교정조직·교정현안’을 다룬 연구보고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교정정책(II): 시설 내 처우’ 관련 연구보고서는 ‘교정처우 전반 및 특정처우’(13종, 6.4%), ‘특정집단 처우’(18종, 9.0%), ‘특정제도 및 특수주제’(9종, 4.4%)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교정정책(III): 사회 내 처우’에는 여러 가지 사회 내 처우 프로그램별로 ‘보호관찰’(9종, 4%), ‘수강명령제도’(3종, 2%), ‘사회봉사명령’(1종, 1%), 전자감독제도 등’(7종, 3%), ‘중간처우 및 개방처우 일반’(3종, 2%), 기타(2종, 1%)로 구분하였는데, 상대적으로 전자감도제도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많고, 수강명령제도나 사회봉사명령제도에 대

한 연구보고서는 적은 편이다.

‘교정정책(I), (II), (III)’에서 세부 연구주제별 연구보고서의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교정시설 및 시설 내 처우에 대한 연구가 사회 내 처우에 대한 연구에 비하여 더 큰 비중으로 다루어져왔음을 알 수 있다.

제3절 범죄학 연구 30년의 추세 분석

1. 분석 개요

이 절에서는 1989년도부터 2018년까지 30년간 ‘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의 추세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범죄학 분야 보고서는 총 526종으로 수탁연구보고서는 이 절의 분석에서는 제외하였으며, 제2장에서 검토하였다. 연구추세 분석은 연구 보고서 주제의 유형과 기간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책에서는 전체보고서의 주제를 범죄실태(157종), 소년범죄(87종), 범죄피해(82종), 범죄예방 및 대책(200종)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다만, 전체보고서의 분량 및 소주제 등을 고려하여, 이 절의 추세분석에 한하여 전체보고서 주제를 범죄실태, 소년범죄, 범죄피해, 예방 및 대책, 교정정책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범죄예방 및 대책을 예방 및 대책(101종)과 교정정책(99종)으로 나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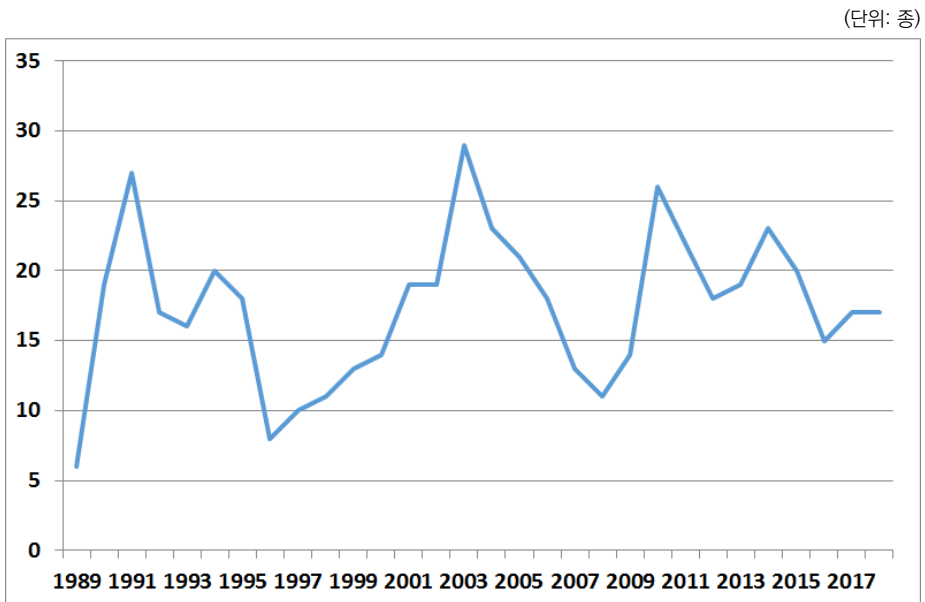
연구보고서 추세분석을 위해 1989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연구보고서를 5년 단위로 구분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체 기간을 총 6개의 기간으로 재구성하였다(1989-1993년, 1994-1998년, 1999-2003년, 2004-2008년, 2009-2013년, 2014-2018년).

분석의 목적을 위해, 3종의 연구는 복수의 유형에 포함하였다.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효과적인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권수진·유진, 2016)는 “소년사법정책”과 “소수집단의 범죄와 범죄피해”에 중복 산입하였다.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최영신·장다혜·오경석, 2017)는 “범죄피해실태” 및 “피해자보호와 소수집단의 범죄와 범죄피해”에 중복 산입하였고, 「정신질환자 범죄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내 관리방안」(안성훈·정진경, 2018)은 “소수집단의 범죄와 범죄피해” 및 “재범예방”에 중복 산입하였다.

이 절에서, 전체 추세 분석에서는 중복되는 연구를 1종으로 처리하였으며, 주제유형별 추세 분석에서는 주제 중복을 허용하여 전술한 과제들은 연구 1종이 2개의 과제로 처리되었다.

2. 연구보고서 발간 추세

‘연구원’의 범죄학 분야 연구보고서는 1989년도⁸⁾ 6종 발간된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인 1990년 19종으로 증가하여 이후 매년 20종 내외의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최근인 2016, 2017, 2018년도에는 각각 15, 17, 17종이 수행되었다. 1989-2018년까지 30년간 총 523종의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개원 첫해인 1989년 6종과 1996년 8종을 제외하면, 매년 10종 이상의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보고서의 수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I-1-1] 연도별 연구보고서 발간 추세

8) 1989년도의 경우, 3월 16일 개원하여 7월 1일자로 1기 연구원이 임용되어, 실질적으로 연구가 가능했던 기간은 최대 평년의 절반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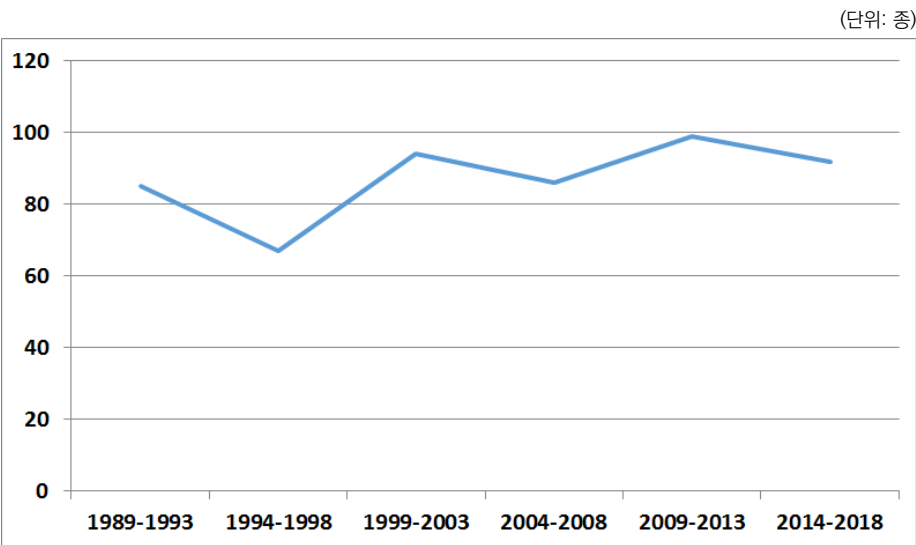
[표 I-1-8] 연도별 연구보고서 발간 추세

(단위: 종)

연도	발간 추세	비율	누적비율
1989	6	1.15	1.15
1990	19	3.63	4.78
1991	27	5.16	9.94
1992	17	3.25	13.19
1993	16	3.06	16.25
1994	20	3.82	20.08
1995	18	3.44	23.52
1996	8	1.53	25.05
1997	10	1.91	26.96
1998	11	2.10	29.06
1999	13	2.49	31.55
2000	14	2.68	34.23
2001	19	3.63	37.86
2002	19	3.63	41.49
2003	29	5.54	47.04
2004	23	4.40	51.43
2005	21	4.02	55.45
2006	18	3.44	58.89
2007	13	2.49	61.38
2008	11	2.10	63.48
2009	14	2.68	66.16
2010	26	4.97	71.13
2011	22	4.21	75.33
2012	18	3.44	78.78
2013	19	3.63	82.41
2014	23	4.40	86.81
2015	20	3.82	90.63
2016	15	2.87	93.50
2017	17	3.25	96.75
2018	17	3.25	100.00

5년 단위 분석에 따르면, 연구보고서는 1989-1993년 85종, 1994-1998년 67종, 1999-2003년 94종, 2004-2008년 86종, 2009-2013년 99종, 2014-2018년 92종 발간 되었다(표 I-1-9) 참조). 연도별 추세와 동일하게, 5년 단위 분석에서도 연구보고서

발간 편수가 기간에 따라 증감을 거듭하며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1-2] 기간별 연구보고서 발간 추세

[표 I-1-9] 기간별 연구보고서 발간 추세

(단위: 종, %)

기간	발간 종수	비율	누적비율
1989-1993	85	16.25	16.25
1994-1998	67	12.81	29.06
1999-2003	94	17.97	47.04
2004-2008	86	16.44	63.48
2009-2013	99	18.93	82.41
2014-2018	92	17.59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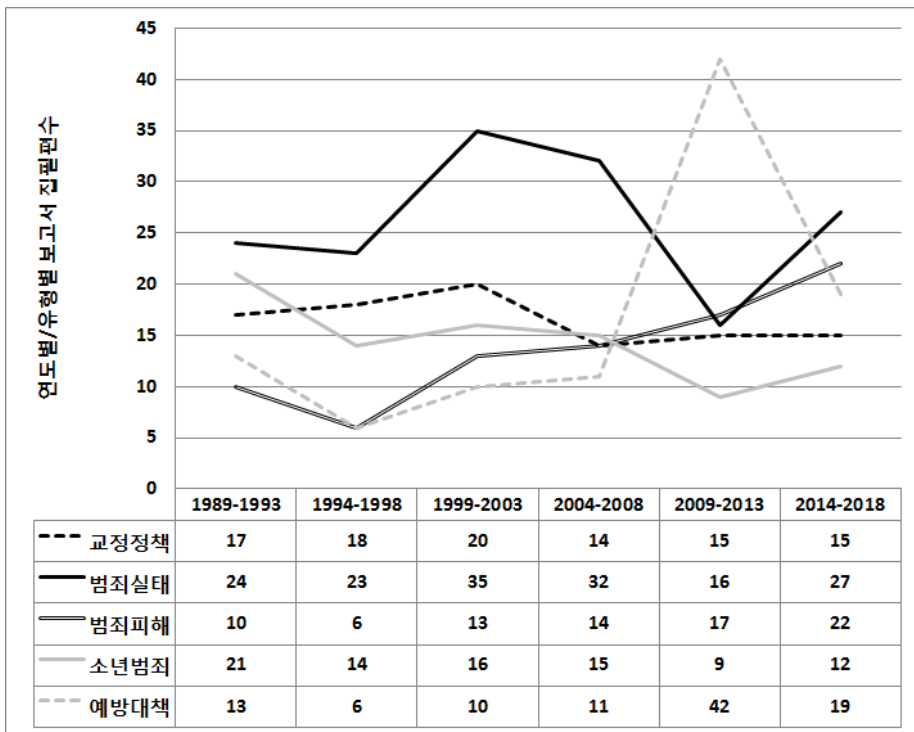
3. 주제 유형별 보고서 발간 추세

가. 주제 유형별 보고서 발간 추세

연구보고서 발간 편수를 유형별로 분류하였을 때, 유형간 연구추세의 차이가 나타났다. 범죄실태의 경우, 다른 연구보고서 유형보다 발간되는 편수가 많았으며, 매

기간 25종 이외의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소년범죄의 경우, 개원 이후 5년간 21종으로 발간편수가 많았으나, 점차 발간 편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범죄피해의 경우, 개원 이후 5년간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가장 적은 10종 밖에 발간되지 않았으나, 점차 발간 편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범죄예방 및 대책의 경우, 개원 이후 각 기간 별로 10종 이외의 보고서가 발간되었으나, 2009-2013년도의 경우 42종이 발간되는 등 2000년대 후반부터 보고서 발간 편수가 급증하였다. 교정정책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각 기간 별로 20종 이외의 보고서가 발간되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매 기간 15종 가량이 발간되는 등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단위: 종)



주: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효과적인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권수진·유진, 2016)는 “소년범죄”와 “범죄피해”에 중복 산입되었다. 「정신질환자 범죄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내 관리방안」(안성훈·정진경, 2018)은 “범죄피해” 및 “예방대책”에 중복 산입되었다. 이에 따라, 분석된 전체 연구보고서 편수는 526종이다.

[그림 I-1-3] 연구보고서 주제 유형별/기간별 발간 추세

전반적으로, 범죄실태 분야 연구가 각 기간별로 전체 연구보고서의 1/3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소년범죄와 교정정책 분야의 연구는 개원 초기에 비하여 적은 편수의 보고서가 발간되고 있으며, 범죄피해와 범죄예방 및 대책의 경우 개원 초기에 비해 많은 편수의 보고서가 발간되는 추세에 있다. 한편, 범죄예방 및 대책 분야의 연구보고서가 2009-2013년 사이에 급증하여 동기간 동안 42종 발간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나. 소주제별 연구보고서 발간 추세

연구보고서를 소주제로 분류하여 기간별 집필 추세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소주제별 보고서 집필 추세는 대주제 추세와 유사하지만, 세부적으로 주목할 만한 부분이 발견되었다.

이 분석에서 대주제 “소년범죄”는 “소년범죄 발생추세 및 원인”과 “소년사법정책”으로 분류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소년범죄 연구보고서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소주제인 “소년범죄 발생추세 및 원인” 발간 편수 감소에 영향을 받은 것이며, 소주제 “소년사법정책”의 경우 일정 편수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대주제 “예방 및 대책” 관련 연구보고서는 2009-2013년에 급증하였다. 대주제 “예방 및 대책”은 소주제 “범죄예방”, “재범예방”으로 분류되었는데, 두 소주제 모두 2009-2013년 사이에 발간편수가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주제 “교정정책”의 경우, 1989-2003년 동안은 기간 평균 20종 가량이 발간되었으나, 2004-2018년 동안은 기간 평균 15종 가량이 발간되었다. 소주제를 분석한 결과, “시설 내 처우” 연구보고서가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행형 관련 제도/정책”과 “사회 내 처우” 연구보고서는 매 기간 일정 편수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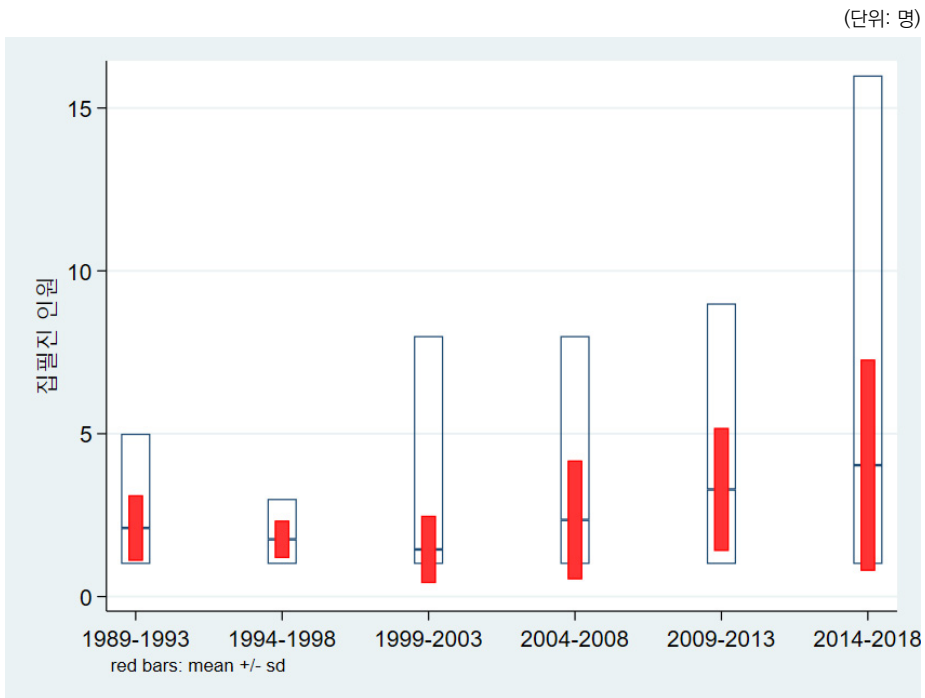
[표 I-1-10] 소주제별 연구보고서 발간 추세

소주제		89-93	94-98	99-03	04-08	09-13	14-18	Total
범 죄 실 태	범죄발생의 추세 및 원인	4 0.05	6 0.09	8 0.09	6 0.07	5 0.05	12 0.13	41 0.08
	범죄현상과 대책(Ⅰ): 폭력범죄	11 0.13	4 0.06	12 0.13	8 0.09	8 0.08	6 0.06	49 0.09
	범죄현상과대책(Ⅱ): 경제부패범죄	2 0.02	9 0.13	8 0.09	3 0.03	3 0.03	5 0.05	30 0.06
	범죄현상과대책(Ⅲ): 마약, 조직, 기타범죄	7 0.08	4 0.06	7 0.07	15 0.17	0 0.00	4 0.04	37 0.07
	소년범죄 발생추세 및 원인	15 0.18	11 0.16	9 0.10	6 0.07	5 0.05	1 0.01	47 0.09
소 년 범 죄	소년사법정책	6 0.07	3 0.04	7 0.07	9 0.10	4 0.04	11 0.12	40 0.08
	범죄피해실태 및 피해자보호	6 0.07	3 0.04	11 0.12	10 0.12	11 0.11	14 0.15	55 0.10
범 죄 피 해	소수집단의 범죄와 범죄피해	4 0.05	3 0.04	2 0.02	4 0.05	6 0.06	8 0.08	27 0.05
	범죄예방	9 0.11	2 0.03	4 0.04	6 0.07	19 0.19	13 0.14	53 0.10
예 방 및 대 책	재범예방	4 0.05	4 0.06	6 0.06	5 0.06	23 0.23	6 0.06	48 0.09
	교정정책(Ⅰ): 행형 관련 제도/정책	8 0.09	4 0.06	5 0.05	5 0.06	4 0.04	8 0.08	34 0.06
교 정 정 책	교정정책(Ⅱ): 시설 내 처우	8 0.09	9 0.13	9 0.10	6 0.07	6 0.06	2 0.02	40 0.08
	교정정책(Ⅲ): 사회 내 처우	1 0.01	5 0.07	6 0.06	3 0.03	5 0.05	5 0.05	25 0.05
	전체	85 100.00	67 100.00	94 100.00	86 100.00	99 100.00	95 100.00	526 100.00

주: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효과적인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권수진·유진, 2016)는 “소년사법정책”과 “소수집단의 범죄와 범죄피해”에 중복 산입되었다.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최영신·장다혜·오경석, 2017)은 “범죄피해실태” 및 “피해자보호와 소수집단의 범죄와 범죄피해”에 중복 산입되었고, 「정신질환자 범죄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내 관리방안」(안성훈·정진경, 2018)은 “소수집단의 범죄와 범죄피해” 및 “재범예방”에 중복 산입되었다. 이에 따라, 분석된 총 과제수는 526종이다.

4. 연구보고서 집필인원 추세

다음으로 연구보고서 집필 인원을 분석하였다. 「범죄통계·정보DB시스템 구축사업」 등 사업성 과제 9종을 제외한 517종의 연구를 분석하였다. 연구보고서의 집필 인원은 개원 이후 감소하다가 1999-2003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개원 후 첫 5년간은 연구보고서 당 집필자가 평균 2.1명이었으나, 1994-1998년 1.7명, 1999-2003년 1.5명으로 감소하였다. 이 시기까지는 연구자 1인 혹은 2인 집필이 일반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집필진의 수가 점차 증가하여, 2004-2008년 2.4명, 2009-2013년 3.3명, 2014-2018년 4.0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2014년도 10명 이상의 집필진이 참여한 연구가 최초 수행되었으며, 이후 매해 1종 이상의 연구에서 10명 이상의 집필진이 참여하고 있다.



주1: 진한색 바는 표준편차 ± 1 , 박스는 최소/최대값, 박스의 절단 지점은 평균을 의미한다.

주2: 집필진 평균 인원의 분석에는 「범죄통계·정보DB시스템 구축사업」 등의 사업성 과제 9종을 제외한 517종의 연구를 분석하였다.

[그림 I-1-4] 기간별 연구보고서 집필진 평균 인원

[표 I-1-11] 기간별 연구보고서 집필진 평균 인원

기간	집필진 평균 인원	표준편차	연구보고서 빈도
1989-1993	2.09	1.01	85
1994-1998	1.73	0.57	67
1999-2003	1.45	1.03	94
2004-2008	2.35	1.82	85
2009-2013	3.29	1.89	97
2014-2018	4.03	3.24	89
전체	2.53	2.06	517

주: 집필진 평균 인원의 분석에는 「범죄통계·정보DB시스템 구축사업」 등의 사업성 과제 9종을 제외한 517종의 연구를 분석하였다.

5. 논의 및 소결

1989-2018년까지 30년간의 ‘연구원’ 연구보고서의 발간 추세를 검토한 결과, 범죄학 분야 연구보고서는 1989년 6종 발간된 이래로 증감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매년 20종 내외 발간되고 있으며 시간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연구보고서의 주제는 시기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범죄피해, 범죄예방 및 대책 등의 주제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시설 내 처우, 소년범죄 발생추세 및 원인 등의 주제는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죄 예방 및 대책 연구는 2009-2013년에 급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추세의 변화는 크게 ‘연구원’ 내부와 외부에서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먼저, 연구원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범죄현상의 변화와 형사정책 이념의 변화가 연구원의 연구주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동인이 될 수 있다. 즉, 사회적/학술적/정책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점차 시설 내 처우보다 사회 내 처우를 강조하는 형사정책 이념의 변화는 연구보고서 주제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한편, 2000년대 초반 이후 소수 집단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가 다소 증가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소수 집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과도 맥락이 닿아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원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내부 연구자 구성의 변화, 개별 연구자들의 연구관심 변화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년범죄의 발생추세 및 원인 연구는

개원 후 첫 5년 동안 15종 발간된 이후 계속하여 감소하였는데, 이는 개원 초기에 연구원에서 과제를 수행하였던 김준호, 이동원 등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던 소년범죄 발생원인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2009년에서 2013년 사이 예방 및 대책 분야의 연구 수행이 크게 증가한 것은 대형 과제의 수행에 따른 것이다. 즉, 이 기간 동안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Ⅰ)」,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Ⅱ)」,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Ⅲ)」,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CPTED)의 제도화 방안(Ⅲ)」,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CPTED)의 제도화 방안(Ⅳ)」,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Ⅰ)」,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Ⅱ)」,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방안 연구(Ⅰ)」,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방안 연구(Ⅱ)」 등의 연구보고서들이 각각 매년 5종 내외의 소주제로 나뉘어 발간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의 연구보고서 편당 집필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범죄학 분야의 일반적인 흐름과도 일치한다. Tewksbury와 Mustaine(2011)의 연구에 따르면, 범죄학 분야 학술지 논문의 평균 저자수는 1964년 1.47명에서 2007년 2.48명으로 증가하였다. 평균 2명 이하였던 저자는 1990년대로 들어서며 2명을 넘어서 매년 2명 내외를 유지하다가, 2000년대 이후로는 한 해도 빠지지 않고 2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구 1종당 집필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범죄학 연구의 다학제적 특성 및 이론과 분석방법의 세밀화 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연구원에서도 전술한 대형과제들은 범죄학/사회학뿐만 아니라, 법학, 행정학, 건축학, 과학기술 등 여타 학문들과의 협업을 통해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의 경우도 단순한 기초분석과 더불어 다변량분석, 공간분석, 질적 연구방법 등 다양한 기법이 활용되고 있고, 이러한 연구추세를 반영하여 다수의 집필진이 투입되었다.

참고문헌

연구보고서 목록 : 〈부록 1〉 형사정책연구 30년 범죄학 분야 연구보고서 목록(연도별)
참조.

Tewksbury, R., & Mustaine, E. E.(2011). How many authors does it take to write an article? An assessment of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research article author compositio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Education, 22(1), 12-23.

제 2 장



수탁과제의 연구동향

한 민 경

수탁과제의 연구동향

이 장에서는 지난 30년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으로 함)이 수행한 총 446건의 수탁 연구과제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¹⁾ 먼저 자체 연구과제와 비교하였을 때 수탁 연구과제가 갖는 특성을 개관하고, 연도별·발주기관별 수탁 연구과제 수행 현황 및 계약금액 및 수행기간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어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방식에 따른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을 통해 수탁 연구과제들이 다뤄 온 중심 주제 10가지를 추출하고, 범죄학 분야 수탁 연구과제(192건) 가운데 해당 토픽의 특성이 잘 드러나 있는 연구과제를 세부적으로 언급하였다.

제1절 수탁 연구과제의 특성과 수행 현황

1. 수탁 연구과제의 특성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은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그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관 제2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유형의 하나이다.

1) 자체 연구과제와는 달리 계약을 기준으로 시작되는 수탁 연구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제의 수를 세는 단위를 ‘건’으로 설정하였다.

가. 외부로부터의 과제 제안

유관 정부부처, 기관 내지 단체의 ‘의뢰’나 ‘부탁’²⁾에 따라 연구과제가 시작된다는 점은 수탁 연구과제를 ‘연구원’ 자체재원으로 이루어지는 연구과제(기본/일반/협동/수시/적립금 과제, 이하 ‘자체 연구과제’)와 구분짓는 대표적인 특성이다. ‘연구원’ 내·외부로부터 과제를 공모한 후 ‘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정하는 자체 연구과제와는 달리, 수탁 연구과제는 연구과제 수행을 요청하는 외부기관, 즉 ‘발주처’가 주도적으로 ‘과업’의 대상(연구주제)과 비용(계약금액)을 설정한다.

‘연구원’이 정부부처의 현안에 대해 자문하는 과정에서 심층적·추가적인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수탁 연구과제 발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도 연구 수행이 필요한 주제를 발굴하고 심사하기 위한 내부적인 절차를 두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유관 외부기관이 연구과제 수행을 요청해 왔을 때 해당 수탁 연구과제에 대해 인지하게 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 과업을 수행할 연구진이 확정되고 계약이 체결된 후 발주처와 협의하는 단계에서 세부적인 연구범위와 내용은 조정될 수 있지만, 연구주제 및 계약금액 설정은 전적으로 발주처에 달려있다.

나. 계약에 따른 과제 수행

수탁 연구과제는 발주처를 ‘갑’, ‘연구원’을 ‘을’로 하는 계약의 체결을 요한다. 이 계약에는 연구과제 수행기간·최종보고서 공개 여부 등 과제 수행과 관련된 발주처의 여러 세부적인 요청이 문서화된 형태로 포함된다. 사회적 이슈 등 현안에 대한 연구과제는 급박하게 요청되는 경우가 잦은데, 이는 곧 과제 수행기간의 단축 내지 촉박함으로 이어진다. 조직운영 등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종보고서의 일부만을 공개하거나 비공개하기도 한다. 온-나라 정책연구 시스템(PRISM)이 정착된 지금은 계약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온라인상으로 어떠한 연구과제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나, ‘연구원’이 수탁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시작한

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idx=452923>, 2018년 11월 30일 최종 접속)에 따르면 수탁은 ‘다른 사람의 의뢰나 부탁을 받음. 또는 그런 일’을 뜻한다.

초창기만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들 간의 ‘오프라인’ 서류를 통해 수탁 연구과제가 개시되고 종료되었다. 과제의 성격에 따라 보고서 작성 및 발간과 같은 ‘최종 산출물’ 없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 활동만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이 과제 발굴 및 선정과정에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발주처의 필요(needs)를 반영한 계약에 따라 과제가 수행된다는 수탁 연구과제의 특성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수탁 연구과제 수행 현황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2. 수탁 연구과제 수행 현황

가. 수탁 연구과제수 연도별 추이

‘연구원’이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로부터의 외부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 최초의 수탁 연구과제는 진로문화재단(현 하이트문화재단)에서 발주한 「마약류 통제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김상희 외, 1991) 이다. ‘진로’ 소주를 생산하는 기업(주)진로가 1988년 설립한 재단법인이었던 진로문화재단은 5천만원이라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큰 금액의 연구과제를 개원 3년차를 맞은 ‘연구원’에 발주했다.³⁾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수탁 연구과제는 자체 연구과제와 구분 없이 수행, 관리될 정도로 수행 빈도가 잦지 않았으나,⁴⁾ 1999년 11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⁵⁾ 1999년은 ‘연구원’이 국무조정실 소속 연구기관으로 전환된 시점과도 일치한다. 이는 ‘연구원’이 수탁 연구과제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된 것이 국무조정실 소속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즉, 1999년 1월 29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한국형사연구원법은 폐지되고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당시 인문사회연구회)로 ‘연구원’ 소관이 이관되면서 기존에 ‘연구원’ 예산으로 배정되던 정부출연금의 일부(당시 연구사업

3) 진로문화재단은 총 4개년도에 걸쳐 마약류 등 약물남용과 관련한 수탁 연구과제를 발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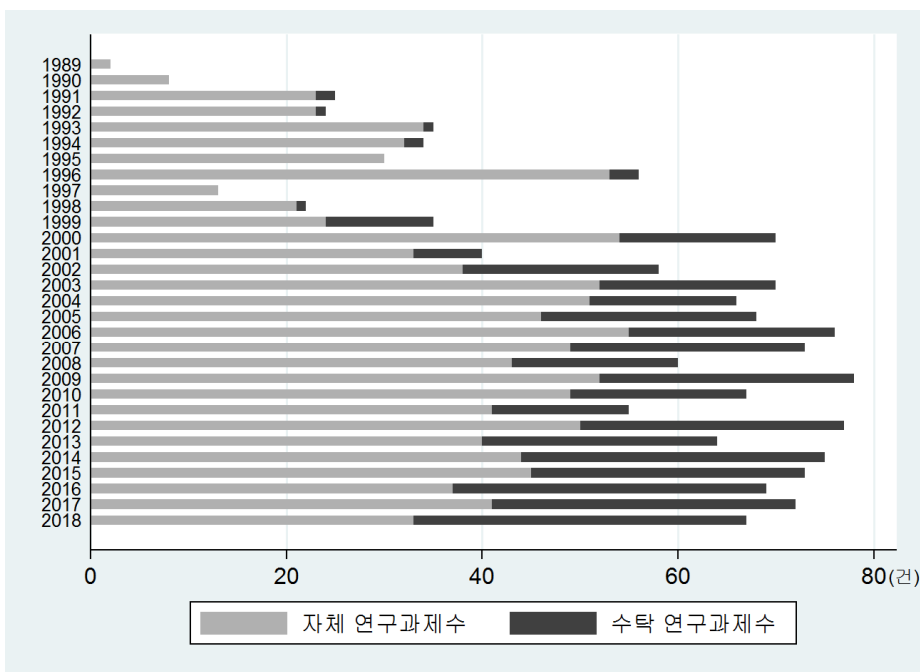
4) 1991년만 하더라도 수탁 연구과제 수행은 드물었고, 이에 수탁 연구과제 계약에 따른 금액을 ‘연구원’ 전체 연구비에 포함시켜 관리하였다. 이에 진로문화재단(4건) 및 SBS(1건)가 발주한 수탁 연구과제는 당시 자체 연구과제와 구분 없이 수행, 관리되었다.

5) IMF로 인해 ‘연구원’ 인원감축, 급여삭감, 연봉제 시행 등 구조조정이 있었던 1997년의 경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31) 내부 연구과제수도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수탁 연구과제도 수행한 바 없었다.

비의 30%)가 유관 정부부처인 법무부 정책연구비로 배정되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31-32). 이에 종래 ‘연구원’ 예산이던 정책연구비로 법무부는 수탁 연구과제를 발주하게 되었으며, ‘연구원’ 역시 다른 기관과의 경쟁 하에 수탁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쟁’ 시스템에 노출되었다.

[그림 I-2-1]은 지난 30년간 ‘연구원’이 수행한 수탁 연구과제수를 자체 연구과제수와 대비하여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10건 내외에 불과하였던 수탁 연구과제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2018년 한 해 ‘연구원’에서 수행한 수탁 연구과제수는 34건으로 자체 연구과제수(33건)를 초과하는 규모가 되었다. 개원 이래 지난 30년간 ‘연구원’이 수행한 수탁 연구과제수는 총 446건에 이른다.

한편, 수탁 연구과제수는 지속 증가하던 중 2010년과 2011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신설되면서 상당수의 연구직이 이직함에 따라 수탁 연구과제 수행에도 영향을 미쳤던 데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I-2-1] 연도별 수탁연구과제수(1989~2018): 자체 연구과제수 대비

나. 수탁 연구과제 발주기관

수탁 연구과제 수행 요청이 있는 경우 ‘연구원’은 내부 절차를 거쳐 수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국가의 형사정책수립 내지 범죄방지와의 관련성 등이 인정된다면 진로문화재단·SBS·SK텔레콤 등 민간기관의 수탁 연구과제 수행 요청도 받아들였으나, 최근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권고에 따라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수탁 연구과제에 한정하여 수행하고 있다.

1989년부터 2018년까지 총 85개 기관 및 단체가 ‘연구원’에 수탁 연구과제를 발주하였다.⁶⁾ 이 중 수탁 연구과제를 2건 이상 발주한 기관은 44곳, 3건 이상 발주한 기관은 31곳으로 ‘연구원’에 수탁 연구과제를 빈번하게 발주하는 기관은 다소 한정되어 있는 편인데, 이는 ‘연구원’이 수탁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형사정책수립 내지 범죄방지와의 관련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까닭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⁷⁾

[표 I-2-1]은 ‘연구원’이 수행한 수탁 연구과제 상위 발주기관을 정리한 것이다. 이들 15개 기관에서 발주한 수탁 연구과제는 325건으로, 전체 수탁 연구과제의 72.9%를 차지한다. 그 중 법무부에서 발주한 수탁 연구과제는 140건으로, 전체 수탁 연구과제의 31.4%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다. 그 뒤를 이어 대검찰청에서 발주한 수탁 연구과제수가 82건(18.4%)으로 나타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두 기관에서 발주한 수

6) 법무부의 경우 연구주제와의 관련성, 가용 연구예산 등의 이유로 서울보호관찰소, 안양교도소, 치료감호소 등을 통해 ‘연구원’과 수탁 연구과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모두 법무부에서 발주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여성부/여성가족부와 같이 시기에 따라 부처명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같은 기관으로 분류하되, 본문에는 현재의 기관명으로 제시하였다.

7) 수탁 연구과제 4건 발주 기관(6곳, 이하 가나다순):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진로문화재단,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마사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수탁 연구과제 3건 발주 기관(10곳): 고용노동부, 교통안전공단, 국가청소년위원회, 국방부, 동작구, 법원행정처, 스포츠도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한국청소년개발원;

수탁 연구과제 2건 발주 기관(13곳): 감사원, 교육부, 국회, 금융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안산시,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국민재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해양경찰청;

수탁 연구과제 1건 발주 기관(41곳): (※)솔트룩스, KT, SBS, SK텔레콤, UNODC, 건설교통부,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가보훈처,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국토해양부, 그린피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웅제약, 대통령비서실, 대한건설협회, 범죄예방연합회, 부산대학교,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원자력안전위원회, 육아정책연구소, 인성실업, 자녀안심이서울협의회,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치안연구소(현 치안정책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환경부

탁 연구과제수는 222건으로, 전체 수탁 연구과제의 절반가량(49.8%)에 달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다음으로 ‘연구원’에 발주한 수탁 연구과제가 많은 기관은 여성가족부다(23건, 5.2%).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여성과 아동의 안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연구원’에 수탁 연구과제를 발주하는 것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I-2-1】 수탁 연구과제 발주기관

연번	발주기관명	건수	비율	연번	발주기관명	건수	비율
1	법무부	140	31.4	7	국가인권위원회	6	1.3
2	대검찰청	82	18.4		법무연수원	6	1.3
3	여성가족부	23	5.2		통일연구원	6	1.3
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3	2.9	8	경찰청	5	1.1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	2.2		국무조정실	5	1.1
6	관세청	7	1.6		서울특별시	5	1.1
	한국행정연구원	7	1.6		손해보험협회	5	1.1
					한국법제연구원	5	1.1

‘연구원’을 소관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경우 타 연구기관과의 협동 연구과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연구원’에 과제 수행을 요청하고 있다(13건, 2.9%).⁸⁾ 경제·인문사회연구회뿐만 아니라 한국행정연구원(7건, 1.6%), 통일연구원(6건, 1.3%), 한국법제연구원(5건, 1.1%) 등 국무조정실 산하 유관 연구기관에서도 형사정책수립 내지 범죄방지와 관련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원’에 공동연구의 형태로 과제 수행을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세청은 ‘연구원’에 각각 10건(2.2%)과 7건(1.6%)의 수탁 연구과제를 발주하였는데, 이는 두 기관이 법률 위반사항을 수시로 다루어야 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 한편, 경찰청 역시 법무부와 대검찰청과 함께 형사사법기관으로 분류되지만 ‘연구원’에 수탁 연구과제 수행을 요청한 것은 5건(1.1%)에 그쳐 법무부나 대검찰청과 비교할 때 크게 드문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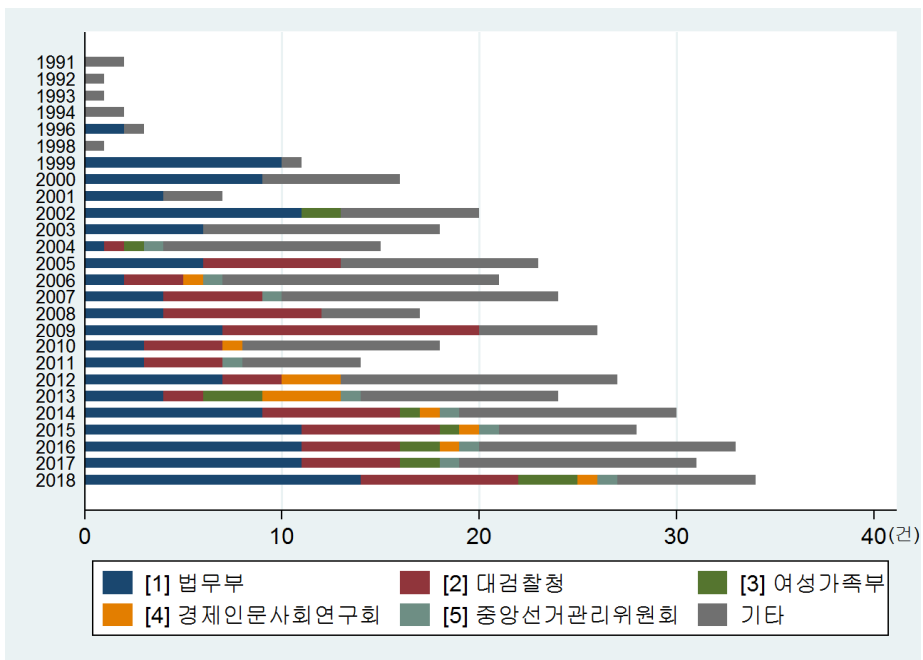
서울특별시(5건)는 ‘연구원’에 빈번하게 수탁 연구과제를 발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다. 이는 서울특별시가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을 전개하면서 ‘연구원’에 사전·사후

8)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상위 기관인 국무조정실 역시 같은 이유에서 ‘연구원’에 연구과제 수행을 요청하고 있다.

평가를 위한 수탁 연구과제를 정기적으로 요청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⁹⁾

[그림 I-2-2]는 그간 ‘연구원’이 수행한 수탁 연구과제수를 발주한 기관별로 집계하여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상위 발주기관 5곳(법무부, 대검찰청, 여성가족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을 제외한 나머지 발주기관은 ‘기타’로 처리하였을 때, 상위 발주기관 수탁 연구과제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4건의 수탁 연구과제가 수행된 2018년의 경우, 5개 상위 발주기관이 요청한 수탁 연구과제는 27건(79.4%)이었던 데 반하여 기타 기관에서 요청한 수탁 연구과제는 7건에 그쳤다. 5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할 때, 24건의 수탁 연구과제 중 14건(58.3%)은 5개 상위 발주기관이, 10건은 그 외 기관에서 발주한 바 있었다. ‘연구원’의 수탁 연구과제 수행이 안정화되면서 상위 발주기관과의 정책연구를 통한 협력관계가 강화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몇몇 정부부처로 수탁 연구분야가 점차 한정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쉬운 측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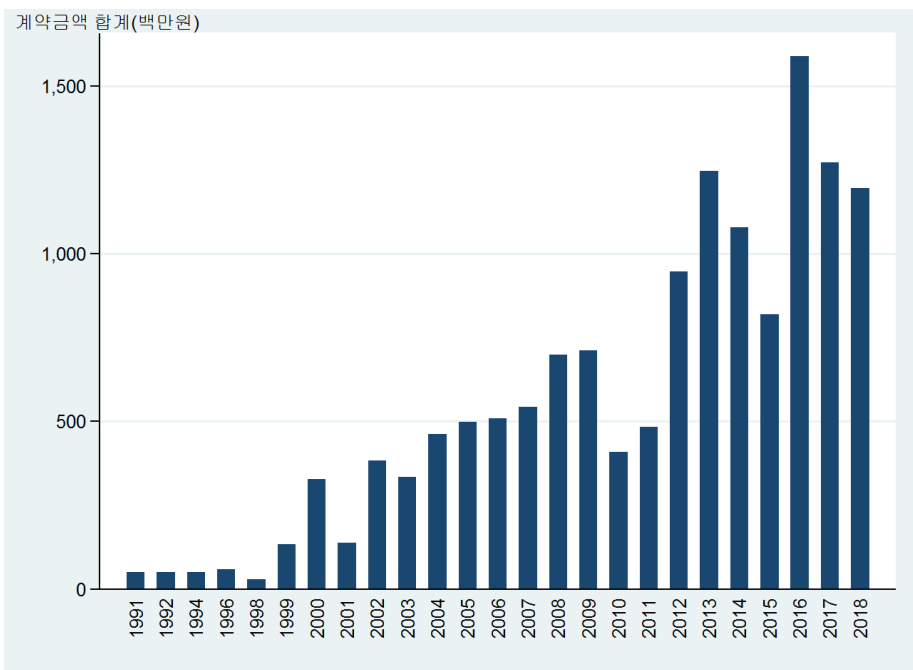
[그림 I-2-2] 연도별·기관별 수탁 연구과제수(1989~2018): 상위 발주기관을 중심으로

9) 광역자치단체 중 ‘연구원’에 수탁 연구과제를 발주한 것은 서울특별시 유일하며,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동작구(3건), 안산시(2건)가 ‘연구원’에 수탁 연구과제를 발주한 바 있다.

다. 수탁 연구과제 계약금액

외부 기관은 '연구원'에 연구과제 수행을 의뢰하며 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그림 I-2-3]은 지난 30년간 수행된 수탁 연구과제의 계약금액 합계를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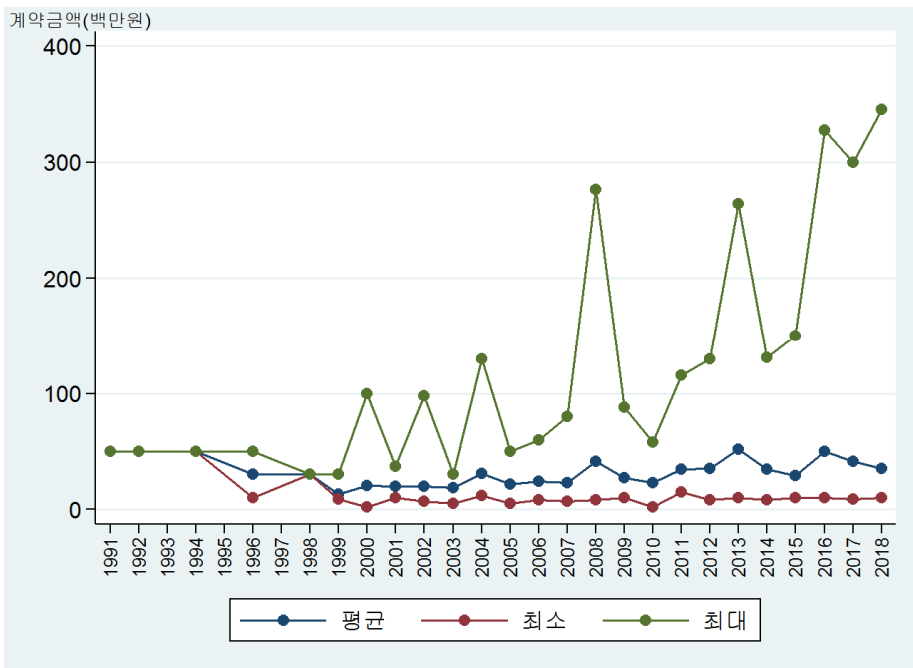
수탁 연구과제가 본격적으로 수행되기 시작한 1999년 수탁 연구과제 계약금액의 합계는 1억 3,292만원이었다. 2006년 수탁 연구과제 계약금액의 합계가 처음으로 5억원을 초과하였으며(5억 780만원), 이로부터 8년 뒤인 2013년에는 수탁 연구과제 계약금액의 합계가 처음으로 10억원을 초과하였다(12억 4,687만원). 최대 15억 8,914만원(2016년)에 이르기도 하였던 수탁 연구과제 계약금액의 총액은 2018년에는 11억 9,740만원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비고: 총 5건의 수탁 연구과제(1991년 1건, 1993년 1건, 1996년 1건, 1999년 1건, 2002년 1건)의 경우 계약금액이 확인되지 않아 이 분석에서 제외됨.

[그림 I-2-3] 연도별 수탁 연구과제 계약금액 합계(1989~2018)

수탁 연구과제 수행에 따라 ‘연구원’은 자체 연구과제에 배정된 정부출연 예산과는 별도의 연구비를 확보하게 된다. 이때 ‘연구원’의 수탁 연구과제 수행을 단순히 이윤창출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연구원’이 수행한 수탁 연구과제 계약금액의 평균값, 최소값, 최대값을 함께 나타낸 [그림 I-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 연구과제 계약금액의 평균값은 3천만원 전후로 낮은 수준이며, 1999년 이래 20년간 큰 변동이 없다. 수탁 연구과제 계약금액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던 2013년의 경우에도 5,195만원으로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¹⁰⁾



비고: 총 5건의 수탁 연구과제(1991년 1건, 1993년 1건, 1996년 1건, 1999년 1건, 2002년 1건)의 경우 계약금액이 확인되지 않아 이 분석에서 제외됨.

[그림 I-2-4] 연도별 수탁 연구과제 계약금액 평균값 및 최소·최대값(1989~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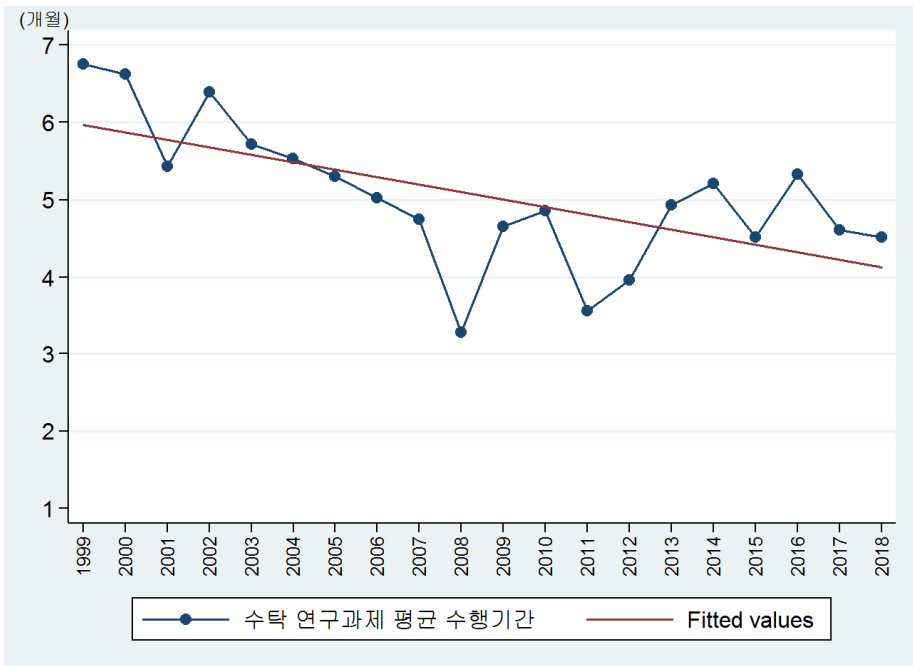
10) 한편, 1990년대 초반에는 수행된 수탁 연구과제 수가 1건에 그쳐(계약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1991년 및 1993년 제외) 계약금액의 평균값, 최소값, 최대값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수탁 연구과제 계약금액의 최대값이 2018년 3억 4,545만원을 기록하는 등 점진적으로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평균값은 계속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계약금액이 큰 수탁 연구과제는 한두 건에 그치는 반면, 계약금액이 1천만원~2천만원을 전후한 수탁 연구과제가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2018년의 경우 계약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수탁 연구과제는 10건으로, 2018년 수탁 연구과제의 29.4%에 이른다.

이와 같이 계약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수탁 연구과제는 매년 전체 수탁 연구과제의 30% 내외로 나타나고 있다. 계약금액이 크지 않은 수탁 연구과제가 많고 지난 30년간 수탁 연구과제의 평균 계약금액이 사실상 ‘동결’되어 있는 상황은 ‘연구원’이 공익적 목적에서 수탁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적은 연구비로 발주기관의 요청에 부응하여야 하는 열악한 수탁 연구과제 수행 여건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라. 수탁 연구과제 수행기간

[그림 I-2-5]는 수탁 연구과제 수행에 주어진 기간의 평균값을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수탁 연구과제 수행 초기였던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평균 반년가량의 기간이 주어졌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수탁 연구과제 평균 수행기간은 짧아지는 추세를 나타내며(붉은색의 fitted values 추이 참조), 2007년과 같이 평균 수행기간이 3개월 남짓한 경우도 있었다.



비고: 총 9건의 수탁 연구과제(1991년 2건, 1992년 1건, 1993년 1건, 1994년 1건, 1996년 2건, 1999년 1건, 2002년 1건)의 경우 계약기간이 확인되지 않아 이 분석에서 제외됨.

[그림 I-2-5] 연도별 수탁 연구과제 평균 수행기간(1989~2018)

[그림 I-2-5]의 분석에 포함된 435개 과제의 평균 수행기간은 4.9개월로 나타난다. 34건의 수탁 연구과제가 수행된 2018년의 경우 수탁 연구과제의 평균 수행기간은 채 5개월이 되지 않았으며, 이 중 13건(38.2%)은 3개월 이하의 '초'단기간 내 수행되어야 했다. 자체 연구과제 중 5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 수행되어야 하는 것은 수시 연구과제에 한한다. 수탁 연구과제를 발주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예산상의 문제와 적시의 정책대응을 위해 과제가 빠른 시일 내 신속하게 수행되는 것이 이상적이겠으나, 과제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과제를 통해 요청되는 사안을 짧은 기간 동안 다루기에 물리적인 무리가 따른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제2절 수탁 연구과제 수행현황 메타분석

1. 분석방법 개관: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

여기에서는 그간 ‘연구원’이 수행한 수탁 연구과제들의 주제에 대한 문헌연구(review) 내지 메타연구(meta analysis)¹¹⁾의 방법으로서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 기법 중 하나인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을 적용하였다. 토픽모델링은 방대한 양의 비정형 텍스트 자료(unstructured text documents)로부터 확률적 방식을 통해 중심되는 주제(topic)를 추출하고 각 주제에 대응되는 문서를 식별하여 제시하는 방법이다. 이때 문서는 여러 개의 토픽으로 구성되고, 토픽은 복수의 단어들과 연관되어 있으며, 문서 내의 단어들은 무작위적(random)으로 선택되는 것이 아님을 전제한다. 즉, 토픽은 사용된 단어들로 표현되며, 이는 실제 관찰되는 문서 내 단어를 이용하여 확률적으로 모델링함으로써 도출될 수 있는 ‘숨겨진’(latent) 변수로 상정된다.

토픽의 단어분포와 문서의 토픽분포를 추정(inference)하기 위한 토픽모델링의 알고리즘으로는 생성·확률모델(generative probabilistic model)에 따라 Blei, Ng, 그리고 Jordan(2003)이 고안한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방식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¹²⁾ LDA 토픽모델링은 특정 분야의 연구동향을 분석하는데 널리 활용되고 있어 LDA 토픽모델링을 수행할 경우 ‘연구원’의 수탁 연구과제 동향을 파악하는 데 유의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었다. 예컨대,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 연구과제는 강도·살인 등 ‘전통적인’ 범죄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보다는 형사사법기관이 새롭게 맞닥뜨리는 신종범죄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것이 보다 많을 것이라고 상정하였을 때, LDA 토픽모델링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여기에서는 수탁 연구과제명을 대상으로 한 LDA 토픽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하여 NetMiner 4.4.1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특정 단어를 필터링하기 위한 유의어

11) 특정 분야에서 이루어진 여러 연구결과를 종합, 요약할 목적으로 각각의 결과를 수집하여 통계적으로 재분석하는 방법을 통칭하여 메타연구(meta analysis)라고 일컫는다. 여기에서 수행된 분석은 수탁 연구과제명을 분석대상으로 한 이차연구라는 점에서 메타연구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 있다.

12) LDA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특정 학문분야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한 최근 국내 연구로는 박자현·송민(2013), 신규식 외(2015), 진철아·송민(2016), 윤지은·서창진(2018) 등을 들 수 있다.

(thesaurus)¹³⁾·지정어(definded words)¹⁴⁾·제외어(exception list)¹⁵⁾ 사전을 작성하였다.¹⁶⁾

2. 분석결과: 기관별·토픽별 수행 현황

가. 10대 토픽 및 토픽별 핵심어 추출

수탁 연구과제명을 대상으로 한 LDA 토픽모델링 수행을 통해 [표 I-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탁 연구과제들이 다루는 중심 주제(이하 ‘토픽’) 10가지를 추출하고 각 토픽별로 할당확률이 높게 나타난 단어 7개를 순서대로 제시하였다.¹⁷⁾ 토픽별 주요 단어 및 그 특징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직접 토픽명을 지정하였다.¹⁸⁾

13) 유의어 사전은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을 같은 것으로 처리하여 추출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는 ‘UN, 유엔’ 등이 포함되었다.

14) 여기에서는 단어가 분절되지 않도록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어 사전을 작성하였으며, 그 예로는 ‘21세기’, ‘영유아’, ‘주요국’ 등이 있다.

15) 분석에 의미가 없거나 모호함을 주는 단어를 제외어 사전에 포함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서는 많은 수탁 연구과제명이 ‘...에 관한 연구’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라는 명사는 토픽 추출시 포함되지 않도록 제외어 사전에 등록하였다.

16) LDA 토픽모델링의 특성 및 그 수행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김강민(2018) 참조.

17) 토픽 분석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1글자 단어(word length), 문서에 흔하게 등장하는 단어(TF-IDF)를 제외하기 위한 노드 필터링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재량에 따라 필터링의 기준을 선택하게 되는데, NetMiner의 경우 word length는 2, TF-IDF는 0.1이 기본값(default)으로 설정되어 있다. 나아가 한 문서에 모든 토픽이 비슷하게 할당되도록 하는 alpha값은 0.1, 한 토픽에 모든 단어가 비슷하게 할당되도록 하는 beta값은 0.01을 기본값으로 한다. 이하의 토픽 분석은 토픽 개수 외에 본래 분석 프로그램이 설정하고 있는 기본값을 그대로 따라 수행되었다.

18) 토픽별 네트워크를 도출함에 있어 NetMiner는 window size는 3, link frequency threshold는 1을 기본값(default)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변경 없이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I -2-2] 수탁 연구과제 10대 토픽 및 토픽별 핵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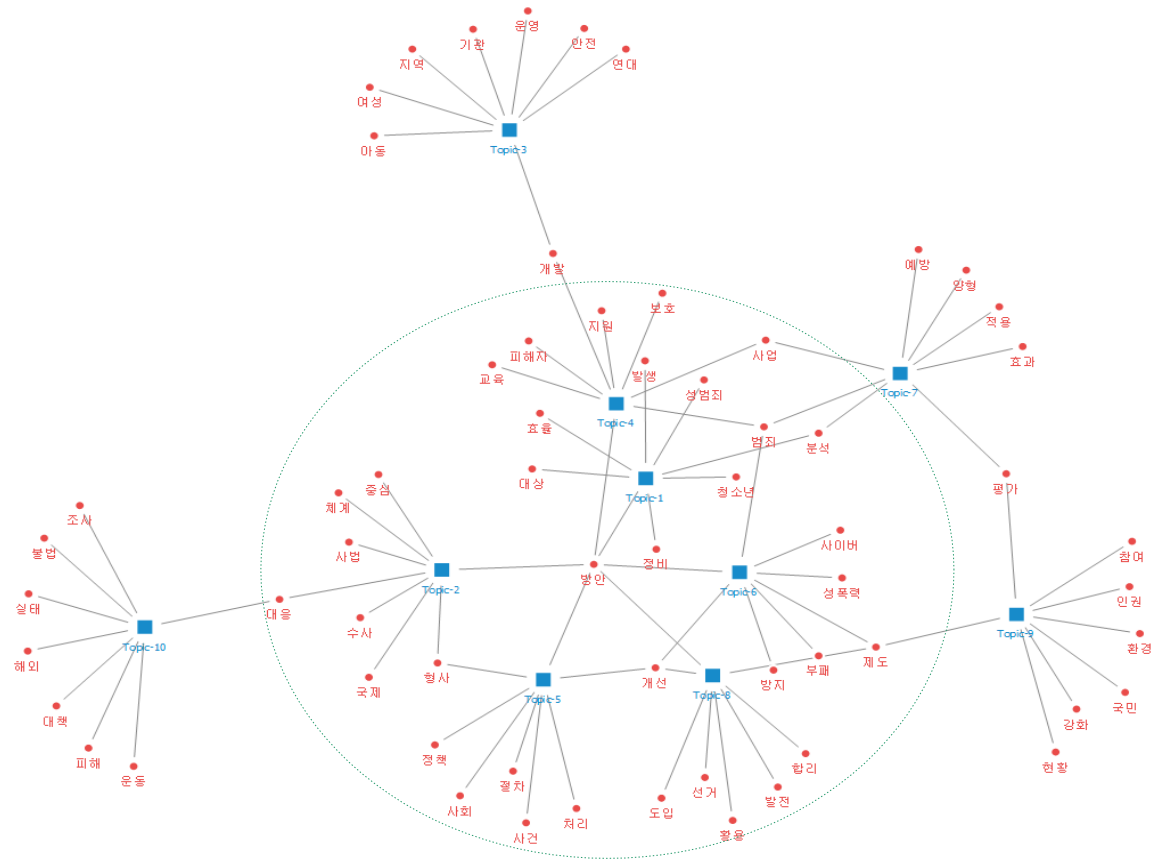
구분	토픽1	토픽2	토픽3	토픽4	토픽5
토픽명	성범죄 및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	형사사법제도	아동·여성 안전	피해자지원과 보호	형사사법 정책 및 개선방안
핵심어	방안 분석 정비 대상 효율 성범죄 발생	형사 사법 방안 수사 대응 체계 국제	아동 안전 여성 운영 지역 연대 기관	피해자 범죄 지원 교육 보호 방안 사업	방안 형사 사회 개선 절차 정책 사건
과제건수	45	57	35	51	47
구분	토픽6	토픽7	토픽8	토픽9	토픽10
토픽명	(신종)범죄 방지	양형 및 평가	제도도입 및 활용	참여와 인권	(인터넷 관련) 실태조사
핵심어	범죄 방안 방지 성폭력 부패 사이버 제도	범죄 분석 예방 효과 평가 양형 사업	방안 개선 제도 발전 합리 선거 활용	제도 국민 현황 강화 참여 인권 환경	실태 조사 불법 대책 피해 해외 대응
과제건수	40	28	55	38	45

일례로, ‘방안, 분석, 정비, 대상, 효율, 성범죄, 발생’을 7대 핵심어(keywords)로 하는 [토픽 1]의 경우 성범죄 발생 추이에 대한 분석과 효율적 대응방안 모색에 대한 수탁 연구과제들이 해당함을 유추할 수 있는데, 핵심어 및 해당 연구과제 목록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면 [토픽 1]은 성범죄를 비롯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연구 역시 포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픽 1]은 ‘성범죄 및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이라고 명명하였다. [토픽 2]의 경우에는 ‘형사, 사법, 방안, 수사, 대응, 체계, 국제’가 7대 핵심어로 나타나, 형사사법제도 중에서도 특히 수사와 관련된 이슈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토픽-단어 관계

[그림 I-2-6]은 수탁 연구과제들이 다룬 중심 주제인 토픽과 수탁 연구과제명이 포함하고 있는 단어 간의 관계를 네트워크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수탁 연구과제들이 다룬 토픽에서 주로 쓰인 단어들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역으로 주요 단어를 살펴봄으로써 각 토픽이 의미하는 연구의 범위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I-2-6]에서 토픽과 토픽 사이의 거리는 토픽 간의 연관성을 의미한다. 즉, 토픽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토픽들의 연관성이 높고 거리가 멀수록 토픽들의 연관성이 낮으며, 이는 토픽과 단어, 단어와 단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토픽 1] 성범죄 및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과 [토픽 4] 피해자 지원과 보호는 여러 핵심어를 공유하는, 관련성이 깊은 토픽임을 알 수 있다. '연구원'이 기본적으로 수행해 온 [토픽 1]로부터 [토픽 4]로 수탁 연구과제의 분야가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탁 연구과제의 한 축은 [토픽 2] 형사사법제도와 [토픽 5]의 형사사법 정책 및 개선방안이다. 이 두 토픽은 법률안 등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토픽 6] (신중)범죄 방지와 [토픽 8] 제도도입 및 활용 역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지만, 주로 수사와 관련하여 형사사법기관의 운영에 좀 더 주목한 [토픽 2]와 [토픽 5]와는 달리, [토픽 6]과 [토픽 8]의 경우 범죄발생 현상에 기초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림 I-2-6] 수탁 연구과제 10대 토픽-단어 관계

위 6개 토픽이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 연구과제들의 주된 흐름이라면(초록색 점선 원 참조), 나머지 4개 토픽은 6개 토픽과 다소 거리를 두고 나타나 있어 이들 6개 토픽과는 다소 이질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수탁 연구과제의 10개 토픽간의 관계는 전형적인 ‘중심-외곽(core-periphery)’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중심되는 토픽들과의 거리가 가장 먼 주제는 [토픽 3]의 아동·여성 안전이다. 실제 이 토픽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 수탁 연구과제들은 주로 여성가족부에서 발주되었으며, 보고서 형태의 ‘정적’인 과제 수행보다는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를 컨설팅하고 주민들을 교육하는 ‘동적’인 측면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다른 수탁 연구과제들과 구분되는 성질이 다수 확인된다.

가. 기간별·토픽별 수탁 연구과제 수행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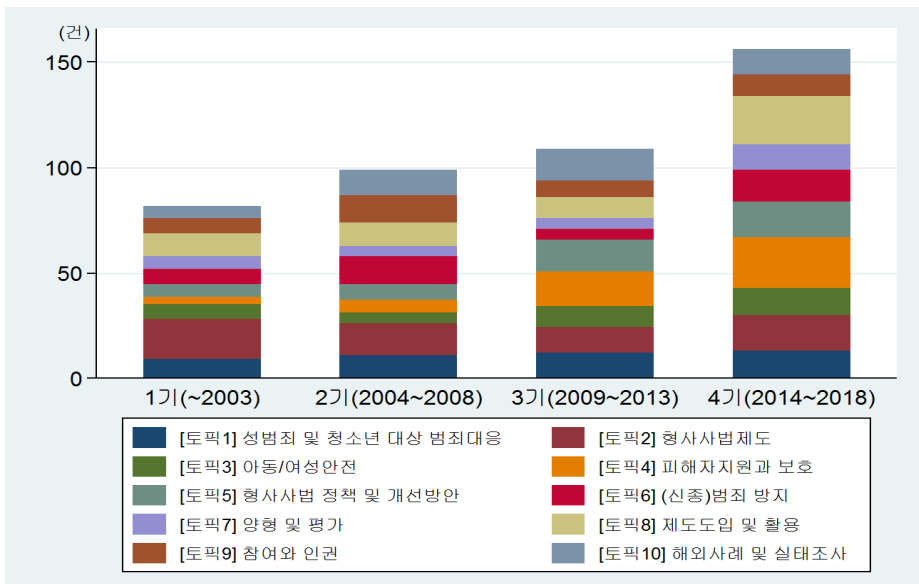
[표 I-2-3]은 5년 단위로 연도를 크게 4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다시 수탁 연구과제를 연구책임자의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하여 범죄학과 형사법으로 구분한 후, 토픽별로 수탁 연구과제 수행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총 446건의 수탁 연구과제는 연구책임자의 전공분야에 따라 범죄학 192건, 형사법 254건으로 나눌 수 있다.

토픽별로 살펴보았을 때 토픽당 수탁 연구과제수는 전반적으로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10개 토픽 중에서는 [토픽 2] 형사사법제도 관련 수탁 연구과제수가 57건으로 가장 많고 [토픽 7] 양형 및 평가에 대한 수탁 연구과제수가 28건으로 가장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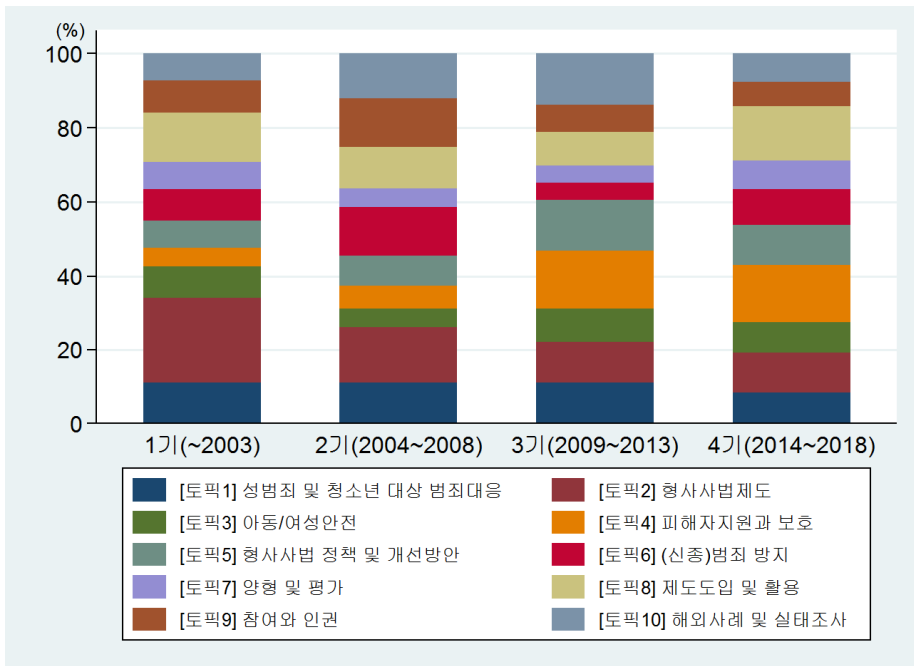
[표 I-3-3]을 통해 연구책임자의 전공, 즉 범죄학과 형사법의 구분에 따라 수행하게 되는 수탁 연구과제의 주제에도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범죄학 분야에서는 [토픽 3] 아동·여성 안전과 [토픽 4] 피해자지원과 보호에 대한 수탁 연구과제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형사법 분야에서는 [토픽 5] 형사사법 제도개선과 [토픽 8] 제도 도입 및 활용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최근 학제간 융·복합연구가 장려되고 단일한 분야의 전공자만으로 꾸려지는 수탁 연구과제가 많지 않은 가운데, 범죄학과 형사법으로 수탁 연구과제의 주제를 양분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르나, 범죄학과 형사법이 각기 다르게 장점 내지 강점을 가지는 주제(토픽)가 있음은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표 I-2-3] 기간별·토픽별 수탁 연구과제 수행현황

구분	토픽명	1기 (~2003)		2기 (2004~2008)		3기 (2009~2013)		4기 (2014~2018)		소계		전체
		형사법	범죄학	형사법	범죄학	형사법	범죄학	형사법	범죄학	형사법	범죄학	
토픽1	성범죄 및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	3	6	4	7	5	7	6	7	18	27	45
토픽2	형사사법제도	11	7	7	8	9	3	14	3	41	21	62
토픽3	아동·여성 안전	3	4	2	3	1	9	2	11	8	27	35
토픽4	피해자지원과 보호	0	4	2	4	8	9	6	18	16	35	51
토픽5	형사사법 정책 및 개선방안	6	0	9	0	11	4	16	1	42	5	47
토픽6	(신종)범죄 방지	3	4	9	4	3	2	12	3	27	13	40
토픽7	양형 및 평가	4	2	4	1	1	4	5	7	14	14	28
토픽8	제도도입 및 활용	9	2	9	2	9	1	18	5	45	10	55
토픽9	참여와 인권	5	2	8	5	6	2	5	5	24	14	38
토픽10	(인터넷 관련) 실태조사	3	4	4	7	3	12	9	3	19	26	45
소계		47	35	58	41	56	53	93	63	254	192	446



[그림 I-2-7] 기간별·토픽별 수탁 연구과제 수행현황: 절대건수



[그림 I-2-8] 기간별·토픽별 수탁 연구과제 수행현황: 상대적 비중

한편, 네 개 구간별로 토픽별 수탁 연구과제의 절대적 수행건수를 나타낸 [그림 I-2-7]과 토픽별 수탁 연구과제의 상대적 비중을 나타낸 [그림 I-2-8]을 살펴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토픽별 비중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다시 말해, 시기별로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 연구과제의 주제도 변화한다. [토픽 1] 성범죄 및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대해서는 2003년 이전의 <1기>부터 <4기>까지 수행된 절대적인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전체 수탁 연구과제에서는 비중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토픽 9] 참여와 인권 역시 전체 수탁 연구과제에서 그 비중이 크지 않은 주제다. [토픽 9] 참여와 인권에 있어서는 시기에 따라 수행된 수탁 연구과제수의 편차도 발견된다. <2기>에 13건이던 참여와 인권에 대한 수탁 연구과제는 <3기>에 8건으로 감소하였다가 <4기>에 10건으로 다시 소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탁 연구과제를 발주하는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영향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짐작된다.

[토픽 5] 형사사법 정책 및 개선방안의 경우에는 절대적인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상대적 비중으로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절대적 건수로 보았

을 때는 [토픽 5] 형사사법 정책 및 개선방안에 대한 수탁 연구과제 수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나, 전체 수탁 연구과제의 맥락에서 본다면 [토픽 5] 형사사법 정책 및 개선방안에 대한 수탁 연구과제의 비중은 여전히 크지 않다.

[토픽 2] 형사사법법제에 대한 수탁 연구과제는 <1기>에 비해 <2기>에 크게 증가한 측면이 있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그리고 [토픽 10] (인터넷 관련) 실태조사에 대한 수탁 연구과제는 <1기>에서 <3기>까지는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도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4기>에는 소폭 감소하였다.

이와 비교할 때 [토픽 4] 피해자지원과 보호에 대한 수탁 연구과제는 <1기>부터 <4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4기>에서는 전체 수탁 연구과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범죄의 원인과 통제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으로 범죄학의 영역이 확장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지원과 보호에 대한 정책적 수요도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촉발된 것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인다.

[토픽 4]에 해당하는 수탁 연구과제수의 증가는 [토픽 3]과 관련된 수탁 연구과제수의 증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된다. [그림 I-2-5]에서 '연구원'이 주로 수행하는 수탁 연구과제와는 다소 이질적으로 나타난 바 있는 [토픽 3]은 수탁 연구과제가 수행되던 초기인 <1기>만 하더라도 본래 전체 수탁 연구과제에서 [토픽 4]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였으나, 직접적으로 범죄에 노출되어 정책적 개입이 시급한 특정 대상에 초점을 두는 [토픽 4]에 대한 수탁 연구과제가 크게 증가하면서 아동·여성 등과 같이 일반적이고 잠재적인 범죄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토픽 3]의 연구도 함께 증가하게 되었다.

제3절 범죄학 분야 기간별·토픽별 주요 수탁 연구과제

[표 I-2-4]는 5년 단위로 수탁 연구과제가 수행되어 온 연도를 크게 4개의 기간으로 구분하고, 기간별로 해당 토픽의 특성이 잘 드러나 있는 수탁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정리한 것이다. 연구책임자의 전공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을 때 범죄학 분야의 수탁

연구과제 총 192건¹⁹⁾ 중 37건의 과제명(동일한 제목의 연속과제 미포함)이 [표 I -2-4]에 포함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기간별·토픽별 주요 수탁과제를 중심으로 범죄학 분야의 수탁 연구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표 I -2-4] 범죄학 분야 토픽별 주요 수탁 연구과제명

구분	토픽명	대표 수탁 연구과제명(범죄학 분야)
토픽1 (27건)	성범죄 및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	[1기] 보호관찰대상자의 과학적 분류처우에 관한 연구(1999, 법무부) [2기] 제12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자료 분석(2007, 국가청소년위원회) [3기]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연구(2009, 보건복지부) [4기] 성범죄 원인 및 발생환경 분석을 통한 성범죄자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2015, 법무부)
토픽2 (21건)	형사사법제도	[1기] 주요국의 마약류 통제체제에 대한 연구(2003, 국무조정실) [2기] 제16차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2007, 법무부) [3기] 국제적인 범죄예방과 형사사법정책방향 등 연구: 제19차 UNCCPCJ 연구(2010, 대검찰청) [4기] 국제표준범죄통계분류체계(ICCS)의 국내적용방안 기초연구(2015, 대검찰청)
토픽3 (27건)	아동·여성 안전	[1기] 여성수용자 직업훈련에 관한 연구(2000, 법무부) [2기]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운영 타당성 조사(2007, 여성가족부) [3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매뉴얼 개발(2012, 여성가족부) [4기] 셉테드(CPTED) 위탁교육(2014, 법무부)
토픽4 (35건)	피해자지원과 보호	[1기] 청소년보호연령에 관한 국민의식조사(1999, 법무부) [2기] 친족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보호지원체계 점검(2008, 보건복지부) [3기] 범죄피해자지원 교육사업을 위한 기본교육과정 교재개발 연구 및 교육 운영사업(2011, 법무부) [4기] 범죄피해자 지원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2014, 법무부)
토픽5 (5건)	형사사법 정책 및 개선방안	[3기]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공생의 사회구현 실행방안 연구: 수형자 사회복귀에 대한 국민의 인식조사(20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4기] 도박범죄의 사회적 비용추계 연구(201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토픽6 (13건)	(신종)범죄 방지	[1기] 자금세탁 범죄수익 몰수기금의 설립과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2003, 재정경제부) [2기] UN Virtual Forum against Cybercrime(2008, UNODC) [3기] 건축·건설 분야 부패실태 조사·분석(2011, 대검찰청) [4기] 반부패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등 민관협력형 부패방지 체계 연구(2017, 국민권익위원회)
토픽7 (14건)	양형 및 평가	[1기] 성폭력범죄의 양형실태에 관한 연구(1999, 법무부) [3기] 보험범죄 형사판례 연구(2012, 손해보험협회) [4기] 범죄예방디자인 적용대상지 사전·사후 평가(2014, 서울특별시)
토픽8 (10건)	제도도입 및 활용	[1기] 4호처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2002, 법무부) [2기] 교정공무원의 직무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 방안(2006, 법무부)

19) 법학 분야의 수탁 연구과제는 254건이다. [표 I -2-3] 참조.

구분	토픽명	대표 수탁 연구과제명(범죄학 분야)
		[3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대상자의 특성분석 연구(2012, 법무부) [4기] 사행산업 전자카드제도 시행 모델 검증 연구(201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토픽9 (14건)	참여와 인권	[1기]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평가연구(1998, 대검찰청) [2기] 경찰관서 인권상황 평가지표 개발연구(2007, 국가인권위원회) [3기] 인권침해 신고센터의 발전방안(2015, 법무부) [4기]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중 주민참여형 역량강화 프로그램(2016, 법무부)
토픽10 (26건)	(인터넷 관련) 실태조사	[1기] 법무부 대친절운동 여론조사 보고서(1996, 법무부) [2기] 인터넷 성매매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2007, 국회) [3기] 인터넷 도박의 증가원인과 대처방안 연구(2011, 대검찰청) [4기] 보험범죄의 발생 실태와 대책(2016, 법무연수원)

1. [토픽 1] 성범죄 및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

[토픽 1] 성범죄 및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대한 수탁 연구과제는 큰 증감 없이 매해 한 건 이상 수행되고 있는, 고정적인 성격의 토픽을 다루고 있다고 평할 수 있다. 성범죄 및 청소년 대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대부분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의 과학적 분류처우」(진수명 외, 1999)〈1기〉와 같은 보호관찰 관련 수탁 연구과제도 [토픽 1]로 분류된다.

〈2기〉에 수행된 「제12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자료 분석」(김지선, 2007)은 2004년 당시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발주한 「신상공개대상 범죄자료 종합분석 연구」(김지선·박형민, 2004)를 그 출발점으로 한다.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국가청소년위원회로 그 명칭이 변경된 후 ‘연구원’은 2007년 제12차와 제13차, 두 차례에 걸쳐 성범죄자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되고 정립 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

〈2기〉에 수행된 일련의 성범죄자 자료 분석연구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연구였다면 〈3기〉에 수행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연구」(김지영·박경래, 2008)는 성범죄가 발생하는 ‘상황’과 ‘맥락’에 대한 연구다. ‘연구원’은 같은 제목의 연구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총 4회 수행하였다.²⁰⁾ 2008년은

20) 같은 제목의 연구이나 2010년 여성가족부 (재)신설을 계기로 2008년과 2009년은 보건복지부가, 2010년과 2011년은 여성가족부가 발주하였다.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한 사건이 발생한 해였다. 많은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위 사건으로 인해 당시 그만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긴요하였으며 이에 ‘연구원’은 수탁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이 나타난다.

〈4기〉에 수행된 「성범죄 원인 및 발생환경 분석을 통한 성범죄자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윤정숙 외, 2015)는 법무부에서 발주하였다. 성범죄 및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이라는 토픽에 해당한다는 점은 동일하나 〈2기〉와 〈3기〉에 수행된 수탁 연구과제는 전반적인 실태파악에, 〈1기〉와 〈4기〉에 수행된 수탁 연구과제는 성범죄자에 대한 ‘과학적’〈1기〉이고 ‘효율적’〈4기〉인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탁 연구과제를 발주하는 기관이 어디인지에 따라 동일한 이슈를 대하는 기관의 역할과 관점에도 미세한 차이를 가져오며, 그 차이가 발주하는 수탁 연구과제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2. [토픽 2] 형사사법제도

범죄학 분야에서 수행한 [토픽 2]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수탁 연구과제는 21건으로, 형사법 분야에서 수행된 것의 절반 수준이다. 범죄학 분야에서 다른 [토픽 2] 수탁 연구과제는 마약, 인신매매 등 초국가적·조직범죄에 대한 대응과 관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UNCCPCJ: The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의 동향 및 관련 논의를 다루는 수탁 연구과제가 [토픽 2]의 다수를 차지한다.

‘연구원’은 UN 마약범죄국(UNODC: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산하 형사사법프로그램 네트워크기관(UNPNI: U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me Network Institute)으로서 「UNCCPCJ를 중심으로 한 유엔 형사사법 동향 연구」(장준오, 2006)〈2기〉와 같은 수탁 연구과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정책의 선진화 및 국제화를 위하여 국제적인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관련 논의를 적극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 및 그 의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는 11건으로, 초기에는 주로 법무부에서 발주하다가 2008년 이후에는 대검찰청에서 발주하였다.

〈4기〉에 수행된 「국제표준범죄통계분류체계(ICCS)의 국내적용방안 기초연구」(황

지태 외, 2015)는 이와 같이 ‘연구원’이 국제적인 형사사법정책의 동향에 주목한 결과, 국제표준범죄통계분류체계를 마련하려는 UNODC의 최근 움직임이 우리의 범죄통계 산출 시스템과 얼마나 정합하는지를 살펴보고 그 도입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수탁 연구과제로 이어진 것이다.

3. [토픽 3] 아동·여성 안전

[토픽 3] 아동·여성 안전에 대한 27건의 범죄학 분야 수탁 연구과제는 ‘연구원’이 주로 수행하는 수탁 연구과제와는 과제 수행방식 등에 있어 다소 이질적인 면이 있으며 이는 토픽 모델링 분석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토픽 3]의 수탁 연구과제는 상당수 여성가족부에서 발주한 것인데, 그 세부주제는 특히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에 대한 구상이 수탁 연구과제를 통해 본격적으로 드러난 2012년을 전후하여 양분된다. 2012년 이전인 <1기>에는 여성범죄자에 대한 지원방안, <2기>에는 아동성폭력전담센터(2007년), 해바라기 아동센터(2009년), 여성·학교 폭력 원스톱 지원센터(2009년) 등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된 센터의 역할과 활동성과를 분석하는 수탁 연구과제가 주로 수행되었다.

그러다 2012년 이후인 <3기>와 <4기>에는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센터가 범지역 사회를 위한 기구인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로 거듭나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컨설팅으로 [토픽 3]의 연구 방향이 전환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기>에서 다루어진 여성범죄자에 대한 지원방안 논의는 성매매와 같이 유관된 주제에 흡수되거나²¹⁾ 수탁 연구과제의 형태로는 더 이상 다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연구원’은 여성가족부의 위탁으로 2012년에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고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중앙지원센터를 운영, 아동·여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일조해 왔다. 아동·여

21) 이는 여성범죄자의 절대적인 규모가 크지 않은데다, 성매매를 처벌하는 현행법상 많은 성매매 여성이 여성범죄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성매매에 대한 비범죄화 논의, 범죄 및 범죄자 특성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치우(추구) 경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여성범죄자에 대한 지원방안 논의가 축소되고 성매매 여성이 범죄를 저지른 다른 여성들과 ‘한데 뒤섞여’ 논의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성안전 지역연대 중앙지원센터 운영은 안산시와 같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여성안전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개발 및 적용 연구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질서 확립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2012년)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을 교육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2014년)을 ‘연구원’에 위탁한 바 있는데, 이 역시 지역 단위로 범죄예방에 대한 시민의식과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토픽 3]의 수탁 연구과제로 분류되었다.

4. [토픽 4] 피해자지원과 보호

[토픽 4] 피해자지원과 보호에 대한 수탁 연구과제는 ‘연구원’이 주로 수행하는 수탁 연구과제의 중심축을 이루며, [토픽 1] 및 [토픽 3]과 더불어 범죄학 분야의 연구진이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해 왔다는 특징을 보인다. [토픽 4]에 대한 범죄학 분야 수탁 연구과제수는 35건으로, 범죄학 분야 수탁 연구과제를 토픽별로 살펴보았을 때 가장 많다.

[토픽 3]의 초기에 다루어진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연구는 지원센터와 같이 지역에 거점을 둔 물리적 환경, 즉 ‘하드웨어적’인 것이라면, [토픽 4]에서 논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은 심리치료프로그램 개발(2013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2017년)과 같이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토픽 1]과 [토픽 4]는 연구과제명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토픽 4]에 해당하는 수탁 연구과제는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소년 본인과 그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에 비해 [토픽 1]에 해당하는 수탁 연구과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한 가해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토픽 4]에 해당하는 수탁 연구과제에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당대 우리 사회의 관점과 학문적 발전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1기>에 수행된 「청소년보호연령에 관한 국민 의식조사」(최인섭 외, 1999)는 청소년의 신체적 위해, 착취·학대 문제와 관련하여 볼 때 청소년보호연령 기준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당시 사회적으로 논의가 활발하였던 데 따른 것이다. 청소년보호법제에서 연령기준이 갖는 법적 기능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었는데, 이러한 가운데 수행된 국민 의식조사는 법적인 차원에서 먼저 문제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경험적인 방식으로 답을 찾는 과정이었다.

이후 <2기>부터 범죄학 분야에서 수행된 [토픽 4]의 연구는 서비스 제공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보다 실증적인데, 이는 <2기> 이후의 수탁 연구과제 대다수가 법무부 인권구조과에서 발주되었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 특히 [토픽 4]의 수탁 연구과제를 통해 ‘연구원’은 범죄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평가·개선하고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에 기여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원’은 2008년에 친족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보호지원체계를 점검하고, 2011년에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을 검토하였다. 이어 ‘연구원’은 2013년에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였으며, 2014년부터 3년간 범죄피해자 지원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였다.

한편, [토픽 4]의 수탁 연구과제 중에는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지급되는 구조금과 관련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범죄피해자 운영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김지선·김한균, 2011),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원사업」(최영신, 2014), 「과실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확대 방안 연구」(전영실·최민영, 2018) 등이 그 예로,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연구원’의 전문성이 인정되어 타 기관과의 협업연구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겠다.

5. [토픽 5] 형사사법 정책 및 개선방안

[토픽 5]의 수탁 연구과제는 범죄학 분야에서 수행된 것이 5건인데 비해 형사법 분야에서 수행된 것은 42건으로, 형사법 분야에서 수행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토픽 5] 형사사법 정책 및 개선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수탁 연구과제가 범죄학 분야에서 수행되는 것은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공생의 사회구현 실행방안 연구: 수형자 사회복귀에 대한 국민의 인식조사」(박선영, 2012)나 「도박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 연구」(홍영오 외, 2014)와 같이 조사방법론적 접근을 요하는 드문 경우에 한한다.

6. [토픽 6] (신종)범죄 방지

[토픽 6] (신종)범죄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수탁 연구과제는 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등장하였거나 종래에도 발생하였으나 관점이나 사회적 변화 등으로 새롭게 주목하게 된 범죄현상에 대한 것으로, 특히 부패범죄에 대한 수탁 연구과제가 [토픽 6]으로

분류되었다.

부패범죄가 다차원·다부처·다국가적 접근을 요하는 만큼, 관련 수탁 연구과제를 발주한 기관 역시 다양하다. <1기>에 수행된 「자금세탁 범죄수익 몰수기금의 설립과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장준오 외, 2003)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가, <3기>에 수행된 「건축·건설 분야 부패실태 조사·분석」(황지태 외, 2011)은 대검찰청이, <4기>에 수행된 「반부패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등 민관협력형 부패방지 체계 연구」(황지태·강태경, 2017)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주하였다.

한편, <2기>에 수행된 「UN Virtual Forum against Cybercrime」(장준오, 2008)은 UNODC와 공동으로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발도상국에 공급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된 것으로, 유엔과의 협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연구원'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높이고 사이버범죄와 같은 신종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7. [토픽 7] 양형 및 평가

[토픽 7]에는 범죄에 대한 형량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된 양형인자에 대한 수탁 연구과제와 범죄예방디자인(CPTED) 사업 결과 평가에 대한 수탁 연구과제가 함께 분류되었다. LDA 토픽모델링에 따르면 양형인자 내지 범죄구성요소가 최종 형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과 사업 실시에 대한 사전·사후 분석이 논리적으로 동일한 구조로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구성²²⁾에서도 알 수 있듯 우리나라에서 양형은 실증적인 접근보다 법률체계에 따른 접근을 위주로 하고 있어 범죄학 분야에서는 양형에 대한 수탁 연구과제 수행이 그리 활발하지 않다. <1기>에 수행된 「성폭력범죄의 양형실태에 관한 연구」(노성호 외, 1999)는 대법원에 양형위원회가 설치되기 이전에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선도적이었다고 평할 수 있으나 일회적이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양형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수탁 연구과제의 형태로는 한동안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3기> 「보험범죄

22) 대법원 양형위원회 조직은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 외에 양형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http://sc.scourt.go.kr/sc/krsc/intro/greet/organization.jsp>, 2018년 11월 30일 최종 접속). 11인의 양형위원 중 비법조인은 1명에 그치며, 전문위원 13명은 전원 법조인 내지 법학 전공자다. 자문위원 15인 중에도 절반에 해당하는 7명은 법조인 내지 법학전공자다.

형사판례 연구」(이명희 외, 2012)를 통해 보험범죄의 경우 피해자 없는 범죄로 생각되어 일반 사기범죄에 비해 양형이 관대해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4기〉에는 양형을 주제로 한 범죄학 분야의 수탁 연구과제가 축소된 데 반하여 사업결과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수탁 연구과제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대상지 사전·사후 평가가 [토픽 7]에 해당하는 수탁 연구과제 중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 등 범죄예방과 주민안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구원' 간의 협력관계가 긴밀해졌다.

8. [토픽 8] 제도도입 및 활용

[토픽 8] 제도도입 및 활용에 대한 수탁 연구과제는 형사법 전공 연구자를 중심으로 수행된 경우가 많은데, 실태분석을 기초로 하여 제도 개선과 확대를 논의하고자 할 때에는 범죄학 전공 연구자를 중심으로 수탁 연구과제가 수행되었다. 실증적인 분석에 기반하여 논의가 전개되어야 하는 만큼 범죄학 분야에서 수행된 [토픽 8]의 수탁 연구과제들은 시범운용 중인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 내지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4기〉에 수행된 「사행산업 전자카드제도 시행 모델 검증 연구」(박준휘 외, 2016)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2012년부터 시범실시 되고 있는 전자카드제 시행의 효과를 검증하여 향후 전자카드제 도입 추진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9. [토픽 9] 참여와 인권

[토픽 9] 참여와 인권은 전체 수탁 연구과제에서 그 비중이 크지 않은 주제로, 시기에 따라 수행된 수탁 연구과제수의 편차도 발견된다는 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토픽 9]의 수탁 연구과제는 시민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래 경찰·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을 중심으로 한 형사사법정책 운용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독려하는 한편,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상황을 파악하고 시민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내용상 특성으로 인해 [토픽 9]의 수탁 연구과제는 형사사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에서 발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

의 요청에 따라 수행된 「경비교도대 인권상황 실태조사」(박경래·김지영, 2006)나 「경찰관서 인권상황 평가지표 개발연구」(박경래·이승현, 2007)가 그러한 예이다.

한편, 2016년 수행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중 주민참여형 역량강화 프로그램」(박형민 외, 2016)은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인권옹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법무부의 노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2015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연구원’에 위탁하였던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는 2016년 이를 주민참여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확대발전시켰다. ‘연구원’은 2016년부터 3년간 주민참여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수탁 연구과제의 형태로 수행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4기>부터는 [토픽 10]에 해당하는 수탁 연구과제의 내용이 인권보다는 참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10. [토픽 10] (인터넷 관련) 실태조사

[토픽 10] (인터넷 관련) 실태조사에 해당하는 수탁 연구과제는 실증적인 분석을 주된 과업으로 하는 만큼 형사법 분야에 비해 범죄학 분야에서 수행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다른 토픽에 해당하는 수탁 연구과제와 비교할 때 당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됨에 따라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이를 달리 말하면, [토픽 10]에 해당하는 수탁 연구과제는 당시 그 연구과제가 발주·수행되었던 시기의 사회적 이슈를 잘 반영하고 있다.

<1기>에 ‘연구원’은 「법무부 대친절운동 여론조사 보고서」를 1996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발간하였다. 이는 그 해 법무부 산하 각 기관을 방문한 민원인 전수를 대상으로 민원업무처리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한 면접조사였다. 당시 정부는 법무부와 같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민선자치’ 1년차를 맞이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정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마다 기관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여론조사를 수행하였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그 결과를 묶어 「정부여론조사 자료집」으로 발간하였다.

<2기> 이후 수행된 실태조사는 인터넷 성매매(2007, 국회)·(불법)사설경마(2009·2012, 한국마사회)·불법스포츠 베팅 내지 도박(2011·2013, 스포츠토토(주))·인터넷 중독(2013,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등 주로 인터넷과 관련되어 있는 범죄 내지 일탈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 온라인을 통한 범죄 내지 일탈행위가 사회적인 문제가 부각됨

에 따라 ‘연구원’에서 선도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고 하겠다.

제4절 수탁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평가와 전망

1989년 설립 이래 ‘연구원’은 총 446건의 수탁 연구과제 수행을 통하여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그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였다.

지난 30년간 ‘연구원’이 수행한 수탁 연구과제 중 법무부에서 발주한 것이 140건(3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법무부의 업무영역과 ‘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영역이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탁 연구과제 중 법무부에서 발주한 비중이 높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연구원’에 수탁 연구과제를 빈번하게 발주하는 기관이 다소 한정되어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연구원’이 수탁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형사정책수립 내지 범죄방지와 관련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까닭에 발주기관의 폭이 좁혀진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연구원’에 수탁 연구과제를 발주하는 기관의 범위가 법무부 외 기관, 특히 지방자치단체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범죄예방 및 시민안전에의 욕구가 중앙정부 단위의 정책을 넘어 지역단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올해부터 자치경찰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아울러, ‘연구원’이 수탁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유효한 연구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연구환경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수탁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주어져야 한다. 34건의 수탁 연구과제가 수행된 2018년의 경우 수탁 연구과제의 평균 수행기간은 채 5개월이 되지 않았으며, 이 중 13건(38.2%)은 3개월 이하의 ‘초’단기간 내 수행되어야 했다. 수탁 연구과제를 발주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예산상의 문제와 적시의 정책대응을 위해 과제가 빠른 시일 내 신속하게 수행되는 것이 이상적이겠으나, 과제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과제

를 통해 요청되는 사안을 짧은 기간 동안 다루기에 물리적인 무리가 따른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수탁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예산 또한 충분히 주어질 필요가 있다. 2018년의 경우 계약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수탁 연구과제는 10건으로, 수탁 연구과제 3건 중 1건은 계약금액이 2천만원 미만에 해당한다. 이처럼 지난 18년간 수탁 연구과제의 최소 및 평균 금액이 사실상 ‘동결’되어 있는 상황은 ‘연구원’이 공익적 목적에서 수탁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적은 연구 비로 발주기관의 요청에 부응하여야 하는 열악한 수탁 연구과제 수행 여건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셋째, 한 해에 얼마나 많은 수탁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원’ 내부의 논의 내지 고민이 요청된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10건 내외에 불과 하였던 수탁 연구과제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2018년 한 해 ‘연구원’에서 수행한 수탁 연구과제수는 34건으로 자체 연구과제수(33건)를 초과하는 규모가 되었다. 상시 연구인력이 채 50여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수탁 연구과제의 증가는 곧 연구부담 가중으로 직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탁 연구과제 역시 자체 연구과제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여기에서의 분석을 위하여 과거의 계약내역을 참조하여 수탁 연구과제 수행 목록을 재작성하는 등 자료수집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시일과 노력이 수반되었음을 부연해 둔다.²³⁾ 이와 관련하여 다른 국책 연구기관과 같이 ‘연구원’ 홈페이지에 수탁 연구과제 결과보고서를 게시하는 등 자체 연구과제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수탁 연구과제 수행을 관리·홍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수탁 연구과제 수행환경이 개선되어 ‘연구원’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범ぞ실태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실효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23) 1990년대 초반에 수행되었던 일부 수탁 연구과제의 경우 계약금액이나 연구기간에 대한 정보를 찾지 못해 최종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림 I-3-19]·[그림 I-3-4]·[그림 I-3-5] 참조.

참고문헌

수탁보고서 목록 : 〈부록 2〉 형사정책연구 30년 범죄학 분야 수탁보고서 목록 (연도별)
참조.

김강민(2018). “NVivo 및 NetMiner를 이용한 텍스트 분석의 기초”,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방법론 공개특강 자료집(2018년 5월 18일).

박자현·송민(2013).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분석”, 정보관리
학회지 30(1): 7-32.

신규식·최희련·이홍철(2015). “신재생에너지 동향 파악을 위한 토픽 모형 분석”, 한국
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9): 6411-6418.

윤지은·서창진(2018). “토픽모델링과 예고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스마트 헬스케어
연구동향 분석”,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19(5): 981-993.

진철아·송민(2016). “토픽 모델링 기반 정보학 분야 학술지의 학제성 측정 연구”, 한국
정보관리학회 33(1): 7-32.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년사: 1989-2009,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Blei, D. M., Ng, A. Y. & Jordan, M. I.(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 993-10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idx=452923>, 2018년 11월 30일 최종 접속).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sc/krsc/intro/greet/organization.jsp>, 2018년 11월 30일 최종 접속).

제 3 장



범죄학 연구 30년의 연구동향 및 과제

신 동 준

범죄학 연구 30년의 연구동향 및 과제

제1절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한국 범죄학

1989년 우리나라 범죄학의 척박한 환경에서 출범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으로 함)은 지난 30년간 명실상부한 범죄학 연구의 중심이자 범죄학 연구자의 요람으로서 우리나라 범죄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 장에서는 그러한 ‘연구원’의 연구 방향과 성과에 대해 개략적이고 전반적인 검토와 평가를 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그에 바탕을 두고 향후 ‘연구원’의 연구 방향과 과제를 나름대로 제안해 보려고 한다.

우리나라 범죄학이 결음마 단계를 지나 본격적인 부흥기로 접어들 시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연구원’의 설립이었다고 할 수 있다(김준호·이성식, 2011: 8). 우리나라 범죄학 연구의 든든한 인적·물적 토대로서 초창기부터 양질의 연구결과를 꾸준히 산출해왔다. 그리고 그 연구결과들은 많은 영역에서 우리나라 형사정책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어왔다. 그야말로 “각종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그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¹⁾한다는 설립 목적에 충실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범죄학(criminology)을 1) 범죄화 과정, 2) 범위반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3) 범위반에 대한 반응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할 때(Sutherland & Cressey, 1966: 3), 그리고 학문 영역으로서 형사사법(criminal justice)을 범죄자를 다루는 범죄통제 기관(agency), 즉 경찰, 법원, 교정 기관에 대한 연구라고 볼 때(Siegel, 2018: 4-5), ‘연구원’은 범죄학뿐만 아니라 형사사법학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1) <https://www.kic.re.kr/info/purpose/purpose.jsp>(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연구원소개. 설립 목적, 2018년 11월 30일 최종 접속).

‘연구원’의 역사는 한국 범죄학 발전의 역사와 같이 한다는 표현이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먼저 ‘범죄학’이라는 학문 영역의 정체성과 학문적 의의, 그리고 정책적 활용성을 우리나라의 학계와 관련 실무자, 더 나아가서 대중들에게 뚜렷이 각인시키는데 ‘연구원’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소위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소수의 우수한 범죄학 연구자들이 일찍이 6~70년대부터 국내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범죄학이 아닌 다른 영역의 연구로 관심을 점차 돌렸다(김준호·이성식, 2011). 이는 그 당시 우리나라의 학계에서 범죄학이 가지고 있었던 위상과 척박한 범죄학 연구 환경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의 범죄학 연구자들은 사회학을 전공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1964년부터 출간된 한국사회학회의 공식학술지인 『한국사회학』을 살펴보면, 1960년대에 범죄학 관련 논문은 단 2편만 발견된다(한완상, 1966; 이장현, 1968). 80년대에 들어서서는 1981년에 단 1편만 발표되었을 뿐(심영희, 1981), 그 이후 1989년까지 본격적인 범죄학 연구 논문이라고 할 만한 논문은 『한국사회학』에서 단 한편도 발견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범죄학과 가장 밀접하다고 할 수 있는 기초학문 분야인 사회학이 우리나라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준 현실이 이러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후 범죄학이 ‘부흥기’에 접어들어 본격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1989년에 개원한 ‘연구원’이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때로는 우리나라 범죄학 연구를 선도하였으며, 범죄학 연구 인력의 안정적 기반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학제적이라는 범죄학의 본래 학문적 속성에 부합하는 협업 연구를 다수 수행해 왔다. 주요 학술지를 통해서 살펴본 국내 범죄학계의 연구 주제와 성과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연구원’의 연구결과들은 학계의 경향에 매우 잘 발맞추어 가고 있으며, 오히려 때로는 학계에서 다루지 못하던 영역과 주제를 선도적으로 다루어 왔다.

‘연구원’은 범죄 추세와 원인, 범죄 실태와 대책, 범죄 피해 실태와 피해자 보호, 소년 범죄, 범죄예방과 교정정책 등 범죄학의 다양한 분야들을 망라하는 충실한 연구 보고서들을 지속적으로 산출해 왔다. 그리고 실용성이라는 범죄학의 주요한 정체성 요소를 누구보다 충실한 구현해온 곳이 바로 ‘연구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크게 범죄학의 연구 영역을 1) 범죄화 과정,

2) 범죄의 실태와 원인, 3) 범죄 대책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Sutherland & Cressey, 1966: 3), 지금까지 ‘연구원’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영역에 주로 주목하면서 첫 번째 영역, 즉 범죄화 과정에 대한 연구는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는 학계 전반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현상이다. ‘범죄화 과정’에 대한 연구는 어떤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는지, 혹은 어떤 범죄가 비범죄화가 되는지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법사회학적인 연구임과 동시에 형법적 연구가 되기도 한다. ‘연구원’은 이 두 분야에 충분한 연구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계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범죄학 영역인 범죄화/비범죄화의 과정을 그 사회적 요인들을 고려하며 입법과 법개정의 과정과 함께 분석하는 연구를 앞으로 수행하기를 기대해 본다.

형사사법(criminal justice) 분야도 범죄학이 포괄한다고 할 때, 경찰, 법원, 교정시설에 대한 연구는 ‘연구원’의 주요 연구대상이 될 것이다. ‘연구원’에서 교정과 관련된 연구는 다른 어떤 영역 및 주제와 비교해 보아도 많이 이루어진 편이라고 볼 수 있다.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연구원’의 연구들 중 유독 경찰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부분이 눈에 띈다. 학계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발견된다. 물론 경찰 관련 학회들과 학술지들이 학계에 다수 존재하며, 수많은 경찰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경찰학과 범죄학 사이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가 그어져서, 범죄학 관련 학술지에서 범죄학적 관점으로 경찰을 연구한 논문은 매우 드물게 발견된다(예를 들어, 이훈 외, 2016).

하지만 범죄학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주요 범죄학 학술지에 경찰 관련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3년 동안의 연구들만 살펴봐도, 범죄다발 지역 경찰활동의 범죄예방효과(Weisburd et al, 2017; Ariel & Partridge, 2017), 특정 유형의 범죄에 대한 경찰활동의 효과(Xie & Lynch, 2016), 인종과 에스니시티에 따른 차별적 경찰 활동의 문제(Slocum and Wiley, 2018; Kramer & Remster, 2018; Claus et al., 2018), 경찰 문화(Stuart, 2016; Paoline & Gau, 2018; Ingram et al., 2018), 경찰의 태도와 인식(Nix, 2017a; 2017b; Shjarback et al., 2018), 특정 유형의 경찰활동이 경찰에 대한 신뢰나 인식에 미치는 영향(Perry et al., 2017; Sahin et al., 2017),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영향과 효과(Rukus et al., 2018, Tillyer, 2018), 경찰관의 카메라 착용이 경찰활동에 미치는 영향(Wallace et

al., 2018) 등 매우 다양한 주제로 범죄학적 관점의 경찰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Justice Quarterly의 경우는 2017년에 34집 7호 전체를 “Policing and Minority Communities”이라는 제목의 특집으로 꾸미기도 했다.

‘연구원’의 초기에는 경찰에 대한 시민의식(최인섭·김효정, 1990), 경찰순찰활동의 실태(김형청, 1990), 미국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이기현·기광도, 1994) 등에 대한 관련 연구가 소수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후 범죄학적 관점, 더 넓게는 사회과학적 관점의 경찰 관련 연구는 2000년대에 5종 정도에 머무르고 있고, 2011년 지역경찰 치안활동에 대한 연구(조병인·이윤, 2011) 이후에는 사실상 관련 연구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다.

물론 치안정책연구소 등 경찰청 산하의 관련 연구기관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분업 차원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경찰청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는 행정조직과 법규 차원의 접근이 지배적이다. 경찰활동과 관련하여 사회과학적 시각에서 현상의 규칙성과 그 이면의 인과관계를 연구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연구들이 좀 더 많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연구원’이 그동안 수행해 온 경찰 관련 연구들도 이러한 조직 내부적 관점에서 연구가 수행되어온 경향이 발견된다. 하지만 조직을 연구할 때 조직 외부로부터의 다양한 환경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입장이 대두된 지 이미 오래이다(Selznick, 1948; Powell & DiMaggio, 1991). ‘연구원’은 연구인력의 구성이나 연구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연구에서 장점을 보일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해당 분야의 일종의 공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관련 학계는 물론 경찰 관련 연구기관들 사이의 조율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법원에 대한 연구도 미진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형사법의 관점에서 다수의 관련 연구보고서가 있고, 양형에 대한 연구들도 이루어져 왔지만²⁾, 범죄학적 관점의 실증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의 경우에는 법원 관련 실증연구들이 주요 범죄학 학술지에 자주 게재된다. *Law & Society Review*처럼 해당 분야와 직접 연관된 학술지를 제외하고 최근 3년 동안의 경향만 보아도, 양형을 포함한 법원 판결의 인종

2) 관련 연구로는 2011년에 출간된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IV)-양형기준제 시행에 따른 양형합리화정책 성과분석 및 평가-』(탁희성 외, 2011), 그 5년 후에 출간된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IX) : 양형기준제 시행 이후 운용 및 적용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평가』(박성훈·최이문, 2016) 정도가 있다.

격차와 성별 격차 등에 관한 연구들이 여전히 많이 발표되고 있고(Clair & Winter, 2016; Pinchevsky & Steiner, 2016; Freiburger & Romain, 2017; Franklin et al., 2017; Nicosia et al., 2017; Metcalfe & Chiricos, 2018), 그 외 양형에 미치는 범외부적 영향 요인(Wingerden et al., 2016; Hester, 2017; Lowery et al., 2018), 소년범의 기소와 양형(Peck et al., 2016; Leiber et al., 2017; Zane, 2017; Lehmann et al., 2018), 성범죄자의 양형(Rydberg et al., 2018), 환경범죄의 양형(Cochran et al., 2018), 군사법원의 사건처리와 양형(Breen & Johnson, 2018) 등 다양한 주제의 법원 관련 연구들이 산출되고 있다.

이처럼 국외의 범죄학 연구 경향들과 비교해 볼 때 ‘연구원’의 연구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눈에 띄기도 한다. 물론 우리의 범죄학 연구가 무조건 외국의 경향을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정책’을 지향하는 연구의 경우 그 사회의 현실에 기반해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그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우리가 참고해야 할 만안 외국 학계의 경향이 분명히 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후의 절에서는 ‘연구원’의 연구 동향을 세부 영역별로 점검해 보고, 향후 개선점 내지는 과제를 제언해 보려고 한다.

제2절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의 방향

범죄학 연구는 다른 사회과학 연구와 마찬가지로 탐색(exploration), 기술(description), 설명(explanation),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목적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Maxfield & Babbie, 2009: 22-25). 먼저 탐색적 연구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는 주제에 대한 연구를 의미한다. 주제의 특성상 잘 짜여진 연구방법과 논문 구조를 따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탐색적 연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연구원’은 기관의 특성상 이러한 목적의 연구를 수시로 수행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문제의 시급성, 그에 따른 정책적 변화의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연구원’은 학계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주제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연구원’에서 지금까지 이러한

성격의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유형의 연구에서 ‘연구원’이 전체 학계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에서는 기술, 설명, 그리고 응용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순서대로 ‘연구원’의 연구 경향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

1. 기술적 연구

기술적 연구는 현상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묘사하는 연구로서, ‘연구원’의 강점이 특별히 부각되는 연구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탐색적 연구와는 다소 다른 이유로, 학계에서는 기술적 연구 역시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주장과 발견이나 가설 검증이 있어야 학술 논문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상의 정확한 기술이 새로운 주장이나 발견, 혹은 가설 검증보다 학술적으로, 그리고 특히 정책적으로 훨씬 더 가치 있는 경우도 많다. 무엇보다도 학술 연구의 진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기술적 연구의 성과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원’은 한국범죄학에 특별한 기여를 해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시리즈와 『범죄통계 DB 구축사업』 시리즈, 그리고 『전국범죄피해조사』 시리즈이다. 특히 전국범죄피해조사는 2008년에 국가공식통계로 승격되는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들은 ‘연구원’의 역량이 매우 잘 드러나는 훌륭한 기술적 연구의 성과물들로서 학계뿐만 아니라 실무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일반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관련하여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홈페이지는 특히 이러한 기술적 연구 결과의 정리와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고 본다.³⁾

‘연구원’의 기술적 연구 성과는 기초자료의 수집 및 축적, 그리고 대중친화적 연구 결과물이라는 특히 두 가지 측면에서 학계와 일반 국민에게 각각 기여할 수 있다. 먼저 학계에 대한 기여의 측면을 보면, 개개인의 연구자들이 수집하고 축적하기 어려운 자료들을 주기적으로 수집하여 축적하고 공개함으로써 범죄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3) <http://www.crimestats.or.kr>(2018년 11월 30일 최종 접속).

하고 있다. 특히 교정시설이나 법원과 검찰 등과 같이 일반 연구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의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는 역량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그리고 전국범죄피해조사처럼 일반 연구자들이 수행하기 거의 불가능한 조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하며 매우 귀중한 자료들을 축적하고 있다. 또한 공식 범죄통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제 개선을 이루어 낸 사례는 ‘연구원’의 큰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연구결과물의 대표적인 유형이 기술적 연구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앞서 언급한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홈페이지가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슈통계”나 “주요 지표 인포그래픽스”, 그리고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등은 매우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연구원’이 훌륭한 연구결과를 산출하는 것이 물론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와 함께 그러한 연구결과물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범죄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중친화적 접근은 ‘연구원’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아쉬운 점도 있다. 기술적 연구는 그 속성상 새로운 연구가 나오기 쉽지 않다. 학계에서 기술적 연구를 기피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새롭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연구원’은 학계와는 달리 ‘새로움’에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본다. 물론 최신 경향을 주시하면서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중요성’을 기준으로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살인, 폭력, 재산범죄, 성범죄 등 주요 범죄들의 실태에 대한 조사와 분석은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살인범죄의 경우 1991년에 첫 실태 연구(김상희·이태원, 1991) 이후 10년이 넘게 지난 2003년에야 다음 실태 연구가 이루어졌다(박형민, 2003). 5년 후에 또 관련 연구보고서가 나왔지만(강은영·박형민, 2008), 그 이후로는 살인범죄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나오고 있지 않다. 청소년범죄 추세에 대한 분석도 1999년에 단발성으로 그쳤다(김성언·노성호, 1999). 재산범죄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그동안 단 6종에 불과하고, 그나마 각각 세부 유형들에 대한 단발성 연구들이다. ‘연구원’은 새롭고 참신한 연구에 연연하지 않고, 기본적인지만 중요한

주제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리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주기적으로 연구성과물을 발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패널 데이터는 인과관계의 확인에 특별한 장점을 갖는 데이터 유형이지만, 학계의 일반 연구자들은 행정적·재정적 한계로 인해 수집하기 어려운 성격의 데이터이다. 이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아동·청소년 패널 데이터를 수집해 오고 있고, 비행 관련 항목들이 다수 포함됨으로써 범죄학계에서도 잘 활용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청소년비행에 국한되지 않는, 혹은 청소년비행에 대한 항목을 다루더라도 좀 더 범죄학 영역의 전문성을 갖춘 패널 데이터가 요구되는 측면이 있다. ‘연구원’에서도 2005년에 청소년비행 연구를 위한 패널 설계 연구 보고서가 있었지만(연성진, 2005), 이후로는 패널 데이터와 관련하여 뚜렷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갈수록 악화되어가는 설문조사 환경과 주제의 민감성 등으로 ‘연구원’으로서도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인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범죄학과 형사사법 분야의 패널 데이터를 ‘연구원’에서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재범 연구와 관련된 패널 데이터가 구축될 수 있다면 범죄학 연구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설명적 연구

인과관계 파악을 목적으로 하고 이론 검증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설명적 연구의 경우는 다른 모든 사회과학 영역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범죄학에서도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설명적 연구는 이론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연구원’은 설립 초기에 특히 청소년비행의 원인과 관련하여 훌륭한 연구보고서들을 다수 출간하였다. 기관의 특성상 ‘연구원’이 범죄학 이론과 관련된 설명적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이 지점에서는 ‘연구원’이 학계의 연구 동향과 이론 발전 경향을 긴밀하게 관찰하여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이론적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타당한 설명모형을 구성하고, 이에 따라 정책적 활용도가 높은 연구 결과를 산출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설명적 연구와 이론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 절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한 가지만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비판 범죄학 이론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 연구의 특성상 비판적 관점의 이론이 활용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비판 범죄학 이론이 제공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시대 변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정체되지 않도록 하며, 근본적인 차원에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젠더와 환경 등 사회의 변화에 따라 주요한 이슈가 되고 형사정책적 함의도 커지고 있는 분야들에서 특히 비판 범죄학은 주요한 이론적 자원이 된다.

3. 응용 연구

이처럼 탐색, 기술, 설명, 이 세 가지가 주된 연구 목적이기는 하지만, 특히 범죄학이라는 학문적 특성과 ‘연구원’이라는 기관의 정체성에 비추어 더 중요할 수 있는 연구 목적이 있다. 그것은 응용(application) 목적의 연구로서 특히 평가(evaluation)와 정책 분석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Maxfield & Babbie, 2009: 25). ‘연구원’은 특히 이 분야에서 의미 있는 연구 보고서들을 다수 산출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일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출간된 범죄학 분야 연구보고서 중 약 40%가 “범죄예방 및 대책” 관련 보고서로 집계된다. 특히 이러한 보고서들은 최근 들어 2000년대 후반 이후에 많이 출간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매우 바람직하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특히 평가연구가 체계적으로 축적될 때 증거기반 형사정책 (evidence-based criminal justice policy)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주로 방법론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4절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관련하여 한 가지만 간단히 지적하고 넘어가려 한다. 평가나 정책분석 목적의 연구 보고서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부분이 외국의 제도, 정책, 프로그램의 소개와 비교이다. 이는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매우 중요한 부분임이 틀림이 없으며, 특히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활용도가 매우 높을 수 있는 정보가 될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형식적이고 단편적인 정보 전달에 그치는 경향이 발견된다.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참조할 수 있는 사례가 되는 국가인지도 불분명한 경우가 있고, 우리나라의 상황과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거나 그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는 부분도 대체로 미진한 편이다. 앞으로 이 부분에서 좀 더 내실 있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제3절 연구 주제의 경향과 제언

앞 절에서는 범죄학과 형사사법학의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유형별로 ‘연구원’의 연구 경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범죄학 연구 영역을 좀 더 세분화해 보고 구체적인 연구 주제에 초점을 두어 ‘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검토·평가해보도록 하겠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최근 범죄학 연구 경향과 비교해 보면서 문제점 내지는 개선점을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다. 먼저 ‘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서 나타난 연구 주제의 포괄성과 균형성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겠다.

1. 연구주제의 포괄성과 균형성

‘연구원’은 그동안 다양하고 포괄적인 주제에 대해서 꾸준히 양질의 연구보고서를 생산해 왔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연구 주제의 공백과 불균형성이 부분적으로 발견된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의 경우 1991년에 아동학대 문제를 다룬 연구보고서가 처음 나왔으나(연진영, 1991), 그 후 9년이 지난 2000년에야 아동 성학대를 다룬 보고서가(강은영, 2000), 그리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5년에 마지막으로 실태와 보호법제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다(강은영·김한균, 2015). 2000년 보고서는 아동 성학대에 제한되어 있다고 볼 때, 아동학대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보고서는 사실상 15년 만에 나온 것이다.

‘연구원’의 수탁연구보고서로 시작하여 여성가족부에서 2010년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분석 보고서를 꾸준히 발간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는 성범죄에만 제한되어 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가정 내 아동학대를 범죄원인론적 관점에서 ‘연구원’이 정책적 전문성을 발휘하여 연구하고 정책적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

‘연구원’은 국민의 관심과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시의성 있는 연구를 적시에 수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등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주요 범죄학 학술지에 해당 주제를 원인론적 측면에서(Hayes, 2016; Cochran et al., 2017;

Armenti et al., 2018), 그리고 대책의 측면에서(Durfee and Fetzer, 2016; Xie & Lynch, 2016; Weitzman, 2018) 다양한 관점으로 다루는 논문들이 꾸준히 게재되고 있다. 하지만 ‘연구원’에서는 2015년에 발간된 보고서가 전부이다(홍영오 외, 2015).

관련하여 최근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보고서가 2012년과 2016년에 각각 한 종씩만 발표되었다. 또한 최근 노인범죄 증가의 뚜렷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관련 연구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범죄피해에 대한 우수한 연구보고서가 다수 산출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는 여성범죄 피해에 주목한 연구보고서도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화이트칼라 범죄 연구의 공백도 눈에 띈다. 부패 관련 연구들은 꾸준히 이루어져 오고 있는 편이나, 지금까지 화이트칼라 범죄를 다룬 연구보고서는 7~8종 정도에 불과하며, 그나마 2012년 이후에는 관련 연구보고서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시기적인 불균형이 눈에 띄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마약범죄 관련 연구보고서는 2001년부터 2006년 사이에 13종이 집중적으로 발간되었다가, 이후로는 2014년과 2017년에 각각 한 종씩만 발간되었다. 청소년비행의 원인과 특성에 대한 연구의 경우에는 초기에 집중적으로 많은 연구보고서가 쏟아져 나왔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그 수가 급속히 감소하여 2012년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마지막으로 관련 연구보고서가 나오지 않는다. 교정정책과 관련하여 시설내 처우에 대한 연구도 초기에는 상당히 활발히 발표되다가 2013년 이후에는 단 세 종의 연구보고서만 발간되었다. 재범 예방 및 재사회화에 대한 연구보고서도 2010~2013년 사이에 한 해 평균 5종 정도로 집중적으로 많이 발간되다가 그 이후로는 한 해 한 종 정도로 그 수가 급감하였다.

다음으로는 이론과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연구원’ 연구보고서의 성과를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미국 범죄학계의 최근 추세를 참고하여 개선점을 위주로 평가해보겠다. 사실 이론과 연구방법은 같이 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서술의 편의상 일단 나누어서 제시하겠다.

2. 연구주제와 관련한 이론적 초점

이론 자체의 우수성과는 별개로 정책적 활용도가 높은 이론이 있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이론이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생물학적 요인에 주목하는 흥미로운 연구들이 예전보다 미국 범죄학계에서 눈에 띄게 자주 등장하고 있지만(Pratt et al., 2016; Choy et al., 2017, Wells et al., 2017; Sampson & Winter, 2018)⁴⁾, 이러한 연구결과와 정책적 활용도는 의심스럽거나 최소한 지나치게 논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정책’이 어떤 정책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일단 일반적인 형사정책의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이론들에 중점을 두려 한다.

먼저 합리적선택이론/기회이론/일상활동이론에 근거한 연구들이 최근 미국 범죄학계에 두드러지게 발견된다. 범죄의 이득과 손해에 따른 합리적 선택의 이론적 유용성(Loughran et al., 2016; McGloin & Thomas, 2016; Pogarsky et al., 2017; Pickett, 2018), 범죄의 공간적 패턴에 대한 이론(Hipp, 2016), 범행장소의 선택(Menting et al., 2016; Sabine et al., 2018), 스토킹에 대한 일상활동이론의 적용(Reyns & Scherer, 2018)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적 범죄이론의 관점은 형사정책적으로 특히 직접적인 함의를 갖는다. 2017년에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는 “The Law of Crime Concentration at Places”라는 제목으로 33집 3호를 특집호로 발간하였다. 특집에서 정책적 함의가 특히 큰 논문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연구원’도 이러한 연구 경향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우리나라의 형사정책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관련하여 지역공동체 혹은 이웃공동체 단위의 메커니즘에 주목하는 연구들과 함께 공간의 측면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미국에서는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Barton, 2016; Boggess & Hipp, 2016; Wo et al., 2016; Vogel & South, 2016; Hipp, 2016; Hipp & Steenbeek, 2016; Wo, 2016; Nobles et al., 2016; Zhang et al., 2017; Browning et al., 2017; Wickes et al., 2017; Xie & Baumer, 2018; Brunton-Smith et al., 2018; Johnson & Kane, 2018; Kim & Hipp, 2018). 이 연구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중국 등 다른 국가의 데이터도 분석하고 있다. 구도심 공동화 현상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이론적 관점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이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

4) 물론 이 연구들 중에는 생물학적 원인론을 반박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연구들도 있다.

고 이민자 공동체가 형성되어 가는 상황에서 이러한 관점은 형사정책적으로도 매우 유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민 관련 범죄학 연구도 역시 여전히 활발하게 미국 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Ferraro, 2016; Gutierrez & Kirk, 2017; Xie & Baumer, 2018; Light & Miller, 2018; Kubrin et al., 2018; Ousey & Kubrin, 2018). 물론 사회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이민과 범죄에 대한 미국의 연구 결과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미국에서 풍부하게 이루어져온 관련 연구들이 우리나라의 상황에 시사하는 바를 무시할 수는 없다(김정규·신동준, 2011). 이러한 미국 학계의 현황과 달리, 그리고 우리 국민이 느끼는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민자나 외국인 범죄에 대해 ‘연구원’이 많은 연구결과를 산출하고 있지 못한 점은 아쉽다.

도시의 지역공동체 관련 연구로는 ‘연구원’ 초기에 도시별로 범죄율을 분석하고 지역특성에 따른 범죄발생을 살펴보는 보고서들이 있었다(최인섭·박순진, 1993; 최인섭·진수명, 1998). 신도시의 범죄발생 상황에 대한 연구도 관련 연구라고 할 수 있겠다(진수명, 2000). ‘연구원’에서 2010~2014년에 활발히 진행된 CPTED 관련 연구들이 이웃공동체와 공간에 주목하는 연구 경향에 가장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관련 연구들이 미진해 보이며, 특히 범죄원인론적으로 사회해체이론이나 집합효율이론에 기반을 둔 연구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웃공동체 단위나 공간 중심의 범죄원인론적 관점의 연구들이 수행되면 바람직하겠지만, 관련하여 도시 단위의 지역별 범죄실태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대도시의 범죄 실태를 조사하고 주기적으로 분석·비교하는 연구나, 범죄율이 특히 높은 도시를 선정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대도시-중소도시-농촌 단위로 범죄 실태를 비교·분석하는 작업도 ‘연구원’에서 주기적으로 수행할만하다고 생각한다.

범죄중지(desistence)와 연령-범죄 관계를 포함한 발전범죄학/생애과정범죄학 이론과 관련된 연구들 역시 최근까지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Schubert et al., 2016; Widdowson et al., 2016; Piquero et al., 2016; Denver et al., 2017; Apel & Horney, 2017; Steffensmeier et al., 2017; Pyrooz et al., 2017; Rocque et al., 2017; Boman et al., 2018; Widom et al., 2018).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에서는 2016년에 “Criminal Careers and Career Criminals Report, 30th Anniversary”이라는 제목의 특집으로 53집 3호 전체를 Blumstein, Sampson and Laub, Farrington, Gottfredson and Hirschi 등 저명한 범죄학자들의 발전범죄학/생애과정범죄학에 관한 논문들로 꾸미기도 하였다. 반면 ‘연구원’에서는 관련 연구들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최근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고서에서 발전범죄학적 관점과 연구방법을 택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지만(박성훈 외, 2017; 박성훈 외, 2018), 간접적으로 관련된다고 할 수 있는 재범 관련 연구들도 매우 미미한 편이다.

최근 미국 범죄학계에서는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연구원’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또 다른 분야는 여성범죄이다. 페미니스트 범죄학이 최근 특히 각광을 받으면서 여성 범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연구들이 상당히 축적되고 있으나(예를 들어, Kruttschnitt, 2016; Chon, 2016; Savolainen et al., 2017), ‘연구원’의 관련 연구보고서는 낙태 관련 연구 2종을 제외하면 1992년과 2003년에 각 한 종씩에 불과하다(최인섭·전영실, 1992; 전영실, 2003). 여자청소년의 비행 실태(김준호·김은경, 1994), 성매매 청소년의 비행 실태(김지선, 2001), 여자청소년의 비행과 처우(최영신, 2005)를 포함해도 매우 소수에 불과하며, 특히 최근의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제4절 연구 방법에 대한 제언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방법과 학계에서 사용하는 연구 방법이 다를 이유는 없다. 실제로 ‘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대체로 방법론적 기반이 탄탄하며, 자료의 질을 포함해서 오히려 학계의 연구들보다 방법론적으로 뛰어난 부분들이 눈에 띈다. 여기에서는 오히려 ‘연구원’의 연구에서 방법론적 측면에서 기대하는 지점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어보려고 한다.

먼저 반복 연구(replication)에 대한 요구이다. 실증 과학의 발전 모형에 비추어 볼 때, 반복 연구의 중요성은 너무도 자명하며, 특히 정책적 지향점을 갖는 범죄학 연구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Pridemore et al.,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했듯이 새로움과 참신함만을 강조하는 학계에서는 반복 연구가 수행될 여지가 불행하게도 거의 없다. 기존 연구결과를 다른 데이터나 조건들에서 재검증하려 하지 않으며,

그러한 분석을 수행하더라도 기존 연구를 반박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에만 발표가 된다. ‘연구원’은 이러한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주요한 연구주제에 대한 반복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주요 주제에 대한 주기적 연구의 필요성과 연결하여 반복 연구가 충실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범죄학 연구 성과의 축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관련하여 meta-analysis와 systematic review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연구보고서가 많이 나왔으면 한다. 이러한 방법에 따른 연구 역시 학계에서 수행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정책 지향적인 연구에 meta-analysis와 systematic review는 특히 강점이 있다고 본다. 새로운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좋지만, 해당 주제에 대한 학계의 연구들을 대상으로 meta-analysis와 systematic review를 수행한다면 오히려 더 타당하고 생산적인 연구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Welsh & Farrington, 2009; Braga & Weisburd, 2012; Braga et al., 2014; Braga et al., 2015). 이러한 연구 성과는 장기적으로 증거기반 형사사법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박철현, 2014).

증거기반 형사사법 정책을 지향하는 연구 성과를 산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책의 효과와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를 엄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 요구된다. 실험연구는 그 대표적인 방법이다. 물론 사회과학적 연구에서 활용하기에는 큰 제한이 따르기는 하지만, 적절한 대상과 주제에 대해서는 유사 실험이나 모의 실험 등의 형태로 범죄학 연구에 사용되기도 한다(Denver et al., 2017; Sahin et al., 2017; Hyatt & Barnes, 2017; Brazão et al., 2018; Pickett, 2018). ‘연구원’에서도 청소년비행(김준호·노성호, 1992), 소년 사법(김은경·이호중, 2006; 김은경 외, 2007; 김은경·평화여성회갈등해결센터, 2008), 위험성평가도구 개발(이수정 외, 2010) 등의 연구에서 다양한 형태의 실험 연구가 수행되기도 하였다.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주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이나 부서의 협조하에 ‘연구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유사 실험이나 모의 실험을 포함한 참신한 실험연구방법을 사용한 보고서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질도 혁신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데이터 출처들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구원’은 일반 연구자들이 접근하기 힘든 데이터 출처를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므로, 이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범죄학과 형사정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예를 들어,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도 2018년에 55집 1호 전체를 “Crime Caught on Camera”라는 제목으로 특집 논문들에 할애하였다. 여기에서는 경찰관이 착용한 카메라나 CCTV에 기록된 시각적 자료가 어떻게 범죄의 분석과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이는 사회전반의 기술 발전과 응용에 따른 범죄학 연구를 위한 데이터 활용의 확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형사정책적으로도 특히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학문 전분야에 걸쳐 ‘빅데이터’는 주요한 화두이다. ‘연구원’도 특히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 주제라고 생각한다. 빅데이터의 활용은 크게 두 방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구체적인 형사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이고, 또 하나는 범죄학 연구의 데이터로서 활용하는 방향이다. 이 두 가지 방향 모두에서 ‘연구원’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해당 분야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관련 연구자들의 협업의 장을 마련하면서, 빅데이터의 정책적·학문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실제로 활용하는 연구를 ‘연구원’이 선제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수행했으면 한다. 수년 전에 이미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예비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있다(윤해성 외, 2014; 탁희성 외, 2015). 그 흐름을 다양한 방향으로 깊이를 더해 가면서 계속 활발하게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 ‘연구원’은 빅데이터의 정책적 활용에 있어서의 문제점(김한균, 2017), 그리고 범죄학 데이터로서의 가치에 대한 비판적 입장(Lynch, 2018)들도 충분히 고려할 것으로 믿는다.

마지막으로 질적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범죄는 사회적 행위로서 행위자의 주체성과 주관성, 그리고 정체성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범죄 행위에 행위자가 부여하는 의미와 그러한 행위의 드러난 의도와 숨겨진 의도 등이 본질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특히 생애과정 범죄학의 관점에서 심층면접을 위시한 질적 연구 방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Bersani & Doherty, 2018). ‘연구원’은 그동안 참여관찰이나 심층

면접 방법을 사용한 좋은 연구보고서들을 산출해 왔다(예를 들어, 김영찬, 1990; 임재표, 1999; 강은영, 2001; 전영실, 2002; 박형민, 2011; 강은영 외, 2013; 최영신·장현석, 2016; 권수진 외, 2017). 특히 심층면접은 다양한 주제에서 비교적 자주 활용되어 온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관련 기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이 다수를 차지하고, 연구의 중심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전체 보고서 내용과 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보조적인 방법으로 쓰이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연구원’은 특히 재소자와 소년원생에 대한 연구 접근성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연구로 범죄학계에 큰 기여를 할수 있다고 본다. 질적 연구방법과 심층면접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그동안 우리나라 범죄학계에서 산출해내지 못했던 성격의 연구 성과를 ‘연구원’이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5절 향후 과제에 대한 기타 제언

마지막으로 그 외 ‘연구원’에 바라는 점들을 몇 가지 언급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한다. 먼저 적어도 10년 주기로는 우리나라 범죄발생 추세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서가 나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현재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보고서가 매년 나오고 있다. 물론 매우 의미있는 보고서이지만 지나치게 개괄적인 면이 있다. 물론 이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범죄에 대해 범죄학의 시각에서 포괄적이면서도 상세하게 분석한 보고서들이 표준화된 형태로 규칙적으로 산출되었으며 한다. 그에 더해서 범죄발생 추세에 대한 국제비교 분석 보고서가 표준화된 포맷으로 제한적인 범주 내에서나마 역시 주기적으로 출간되면 좋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범죄발생 추세에 대한 보고서가 영문으로 발간되어 공개된다면 국제 교류의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연구원’에서 범죄학의 모든 주제와 분야를 매년 골고루 다룰 필요는 없을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시대적 상황과 정책적 수요에 맞는 주제에 연구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연구원’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때로는 ‘연구원’이 선제적으로 그러한 주제를 발굴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회적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고 더 나아가서 미래에 대한 예측까지도 시도해 보면 좋을 것이다. 가능하다면 이를 하나의 연구보고서 주제로 삼아 주기적으로 발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연구는 ‘연구원’ 자체의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지침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정책적으로도 상당히 유용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한다. 관련하여 범죄피해 조사에서 2016년에 난폭/보복운전 피해를 특별주제로 조사 문항 추가하고, 분석 대상과 단위가 전혀 다른 상업범죄 피해조사 별도 진행하는 등의 노력은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더 나아가서 시기별로 범죄피해조사의 특별주제로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범죄는 물론 개인의 행동이기도 하지만 이를 사회현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범죄학의 학문적 정체성에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Sutherland and Cressey, 1966: 3; Siegel, 2018: 4). 따라서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범죄의 정도와 성격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범죄 유형들을 고려하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도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방향은 ‘형사정책’과 다소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연구원’이 수행해야 할 연구 영역으로 봐야 한다. “최고의 형사정책은 사회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변화에 따른 범죄추세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는 연구도, 가능하다면 국제비교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학계의 연구와 ‘연구원’의 연구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어야 할 것이다. 전반적인 범죄학의 추세에 학계와 ‘연구원’ 모두 발맞춰가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연구원’의 연구는 학계의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 방향으로 보완을 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먼저 연구 분야와 관련하여, 학계의 연구는 일반 국민의 관심에 빠르게 부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연구원’은 조직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맞게 범죄와 관련된 일반 국민의 궁금증과 알 권리를 시의적절하게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원’은 범죄학 연구를 선도하는 위치에 설 수 있으며, 학계의 연구를 중요한 측면에서 보완해 줄 것이다. 관련하여 그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언론에게 유용한

관련 자료와 전문적 견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연구원'은 수시 과제를 통해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하지만 양적으로나, 주제의 다양성, 그리고 시의성의 측면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 사회적 요구에 시의적절하게 부응하여 수시로 필요한 연구를 단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더 충분히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끝으로 학계와의 협업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학계의 학자들이 추진하기 어려운 연구들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점은 '연구원'의 큰 장점이다. 예를 들어, 어느 학자가 흥미로운 이론적 가설을 세우더라도 이를 검증하기 위해 경험적 연구를 수행할 재정적·인력적·행정적 역량이 부족할 수 있다. 특히 신진 연구자들에게 이러한 역량을 보완해줄 수 있는 역할을 '연구원'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계의 연구동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상시화 되어야 할 것이며, 물론 지금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학계의 연구자들로부터의 연구 제안 접수와 피드백, 그리고 그들과의 공동 작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성화했으면 한다.

'연구원'이 산출하는 연구보고서의 학문적인 기여에 대한 간접적 척도 중 하나는 학술논문에서의 인용 정도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범죄학 분야 학술논문에서 꾸준히 인용되어왔지만, 연구보고서의 학문적 활용도를 더욱 높일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방법은 학계의 연구자들에게 '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대한 평가와 활용도를 좀 더 깊고 자세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개선점을 찾는다면 '연구원'의 연구 활동에 적지 않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연구보고서 목록 : 〈부록 1〉 형사정책연구 30년 범죄학 분야 연구보고서 목록 (연도별)
참조.

강은영(2000). 아동 성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은영(2001). 노인 수형자의 특성 및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은영·권수진·원혜옥(2013).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수형자 처우방안,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강은영·김한균(2015). 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형
사정책연구원.

강은영·박형민(2008). 살인범죄의 실태와 유형별 특성: 연쇄살인, 존속살인 및 여성살
인범죄자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권수진·한민경·권창모·주영수(2017).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XI): 교
정시설 의료처우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상희·이태원(1991). 살인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성언·노성호(1992). 학교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연구원.

김성언·노성호(1999). 청소년범죄 추세분석: 1966~199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영찬(1990). 소년원 교육에 대한 참여 관찰 연구 - 직원의 직무와 원생의 생활을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은경·이호중(2006). 학교폭력의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소년사법 실험연구(I),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김은경·김지선·이승현·김성언·원혜옥·이호중·평화여성회갈등해결센터(2007). 21세
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I): 제Ⅱ부 새로운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사법의 실제와 전망 - 회합 실험연구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은경·평화여성회갈등해결센터(2008).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II): 회
복적 소년사법 실천모델의 효과성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정규·신동준(2011). “이민사회와 범죄: 쟁점과 전망”, 사회이론 39: 113-158.

김준호·김은경(1994). 여자청소년의 비행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이성식 (2011). “사회학에서의 범죄와 비행연구 회고와 전망”, 범죄와 비행 1: 5-22.
- 김지선(2001). 성매매 청소년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한균(2018). “형사사법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법조 67(4): 249-284.
- 김형청(1990). 경찰순찰활동의 실태와 발전적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Maxfield, M. G. & Babbie, E. R.(2009). 범죄학연구방법론, 박정선 외 공역. Cengage Learning. [원서: *Research Methods for Criminal Justice and Criminology, 5th edition.*]
- 박성훈 외(2017).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 (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성훈·조영오·김정숙·황여정·이주영(2018).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성훈·최이문(2016).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IX) : 양형기준제 시행 이후 운용 및 적용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평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철현(2014). “증거에 기반한 형사정책의 발전과 국내 적용방향”, 형사정책연구 25(2): 123-157.
- 박형민(2003). 살인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형민(2011). 낙태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심영희(1981). “한국의 “숨은 비행”의 사회학적 연구: 근로청소년과 고교학생과의 비교 분석”, 한국사회학 15: 73-108.
- 연성진(2005). 청소년비행의 종단적 연구를 위한 패널설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진영(1991).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윤해성·전현욱·양천수·김봉수·김기범(2014). 범죄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기현·기광도(1994). 미국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수정·황의갑·박선영(2010).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대한 연구(I) - 위험성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장현(1968). “일탈행위와 사회학적이론: 문화전승이론과 아노미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

- 이훈·노성훈·조준택(2016). “가정폭력사건 경찰신고의향 영향요인: 서울특별시 가정 폭력 빈발지역의 지역사회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0(1): 3-38.
- 임재표(1999). 교도소내 수용자폭력행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영실(2002). 여자비행청소년의 교정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영실(2003). 여성의 폭력범죄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병인·이윤(2011). 우리나라 지역경찰의 치안활동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진수명(2000). 신도시지역의 범죄발생상황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영신(2005). 여자 청소년의 비행과 처우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영신·장현석(2016). 외국인 폭력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김효정(1990). 경찰에 대한 시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박순진(1993). 도시성장과 범죄 - 범죄율의 도시별 분포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전영실(1992). 여성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진수명(1998). 지역특성과 범죄발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탁희성·김한균·김성언·최석윤(2011).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IV)-양형 기준제 시행에 따른 양형합리화정책 성과분석 및 평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탁희성·박준희·정진성·윤지원(2015). 범죄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완상(1966). “Levels of Aspiration and Perception of Opportunity”, *한국사회학* 2: 1-11.
- 홍영오·연성진·주승희(2015).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Apel, R. & Horney, J.(2017). “How and Why Does Work Matter? Employment Conditions, Routine Activities, and Crime among Adult Male Offenders”, *Criminology* 55(2): 307-343.
- Ariel, B. & Partridge, H.(2017). “Predictable Policing: Measuring the Crime Control Benefits of Hotspots Policing at Bus Stops”,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33(4): 809-833.
- Armenti, N. A., Snead, A. L., & Babcock, J. C.(2018). “The Role of Trait Anger in the Relation Between Juvenile Delinquency and Intimate Partner

- Violence in Adulthood.” *Crime & Delinquency* 64(5): 587-605.
- Barton, M. S.(2016). “Gentrification and Violent Crime in New York City”, *Crime and Delinquency* 62(9): 1180-1202.
- Bersani, B. E. & Doherty, E. E.(2018). “Desistance from Offending in the Twenty-First Century”, *Annual Review of Criminology* 1: 11.1-11.24.
- Boggess, L. N. & Hipp, J. R.(2016). “The Spatial Dimensions of Gentrification and the Consequences for Neighborhood Crime”, *Justice Quarterly* 33(4): 584-613.
- Boman, IV, J. H. & Mown, T. J.(2018). “The Role of Turning Points in Establishing Baseline Differences Between People in Developmental and Life-Course Criminology”, *Criminology* 56(1): 191-224.
- Braga, A. A. & Weisburd, D. L.(2012). “The Effects of Focused Deterrence Strategies on Crim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the Empirical Evidenc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9(3): 323-358.
- Braga, A. A., Papachristos, A. V., Hureau, D. M.(2014). “The Effects of Hot Spots Policing on Crime: An Updated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ustice Quarterly* 31(4): 633-663.
- Braga, A. A., Welsh, B. C., Schnell, C.(2015). “Can Policing Disorder Reduce Crim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52(4): 567-588.
- Brazão, N., Rijo, D., Salvador, M. C., & Pinto-Gouveia, J.(2018). “The Efficacy of the Growing Pro-social Program in Reducing Anger, Shame, and Paranoia over Time in Male Prison Inmate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55(5): 649-686.
- Breen, P. D. & Johnson, B. D. (2017). “Military Justice: Case Processing and Sentencing Decisions in America’s “Other” Criminal Courts”, *Justice Quarterly* 35(4): 639-669.
- Browning, C. R., Calder, C. A., Boettner, B. & Smith, A.(2017). “Ecological Networks and Urban Crime: The Structure of Shared Routine Activity

- Locations and Neighborhood-Level Informal Social Control Capacity”, *Criminology* 55(4): 754-778.
- Brunton-Smith, I., Sturgis, P. & Leckie, G.(2018). “How Collective is Collective Efficacy? The Importance of Consensus in Judgments about Community Cohesion and Willingness to Intervene”, *Criminology* 56(3): 608-637.
- Chon, D. S. (2016). “A Spurious Relationship of Gender Equality With Female Homicide Victimization: A Cross-National Analysis”, *Crime and Delinquency* 62(3): 397-419.
- Choy, O., Raine, A. Venables, P. H., Farrington, D. P.(2017). “Explaining the Gender Gap in Crime: The Role of Heart Rate.” *Criminology* 55(2): 465-487.
- Clair, M. & Winter, A. S.(2016). “How Judges Think about Racial Disparities: Situational Decision-Making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Criminology* 54(2): 332-359.
- Claus, R. E., Vidal, S. & Harmon, M.(2018). “Racial and Ethnic Disparities in the Police Handling of Juvenile Arrests”, *Crime & Delinquency* 64(11): 1375-1393.
- Cochran, J. C., Lynch, M. J., Toman, E. L. & Shields, R. T.(2018). “Court Sentencing Patterns for Environmental Crimes: Is There a “Green” Gap in Punishment?”,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34(1): 37-66.
- Cochran, J. K., Maskaly, J., Jones, S. & Sellers, C. S.(2017). “Using Structural Equations to Model Akers’ Social Learning Theory With Data on Intimate Partner Violence”, *Crime & Delinquency* 63(1): 39-60.
- Denver, M, Pickett, J. T., Bushway, S. D.(2017). “The Language of Stigmatization and The Mark of Violence: Experimental Evidence on The Social Construction and Use of Criminal Record Stigma”, *Criminology* 55(3): 664-690.
- Denver, M., Siwach, G., & Bushway, S. D.(2017). “A New Look at the Employment and Recidivism Relationship through The Lens of A Criminal Background Check”, *Criminology* 55(1): 174-204.
- Durfee, A. & Fetzer, M. D.(2016). “Offense Type and the Arrest Decision in Cases

-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Crime & Delinquency* 62(7): 954-977.
- Ferraro, V.(2016). “Immigration and Crime in the New Destinations, 2000-2007: A Test of the Disorganizing Effect of Migration”,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32(1): 23-45.
- Franklin, T. W., Dittmann, L. & Henry, T. K. S.(2017). “Extralegal Disparity in the Application of Intermediate Sanctions: An Analysis of U.S. District Courts”, *Crime & Delinquency* 63(7): 839-874.
- Freiburger, T. L. & Romain, D.(2018). “An Examination of the Impacts of Gender, Race, and Ethnicity on the Judicial Processing of Offenders in Family Violence Cases”, *Crime & Delinquency* 64(13): 1663-1697.
- Gutierrez, C. M. & Kirk, D. S.(2017). “Silence Speaks: The Relationship between Immigration and the Underreporting of Crime”, *Crime & Delinquency* 63(8): 926-950.
- Hayes, B. E.(2016). “Impact of Victim, Offender, and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on Frequency and Timing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using Life History Calendar Data”,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53(2): 189-219.
- Hester, R.(2017). “Judicial Rotation as Centripetal Force: Sentencing in the Court Communities of South Carolina”, *Criminology* 55(1): 205-235.
- Hipp, J. R.(2016). “General Theory of Spatial Crime Patterns”, *Criminology* 54(4): 653-679.
- Hipp, J. R. & Steenbeek, W.(2016). “Types of Crime and Types of Mechanisms: What Are the Consequences for Neighborhoods Over Time?” *Crime and Delinquency* 62(9): 1203-1234.
- Ingram, J. R., Terrill, W. & Paoline III, E. A.(2018). “Police Culture and Officer Behavior: Application of A Multilevel Framework”, *Criminology* 56(4): 780-811.
- Hyatt, J. H. & Barnes, G. C.(2017). “An Experimental Evaluation of the Impact of Intensive Supervision on the Recidivism of High-Risk Probationers”, *Crime and Delinquency* 63(1): 3-38.

- Johnson, L. T. & Kane, R. J.(2018). “Deserts of Disadvantage: The Diffuse Effects of Structural Disadvantage on Violence in Urban Communities”, *Crime and Delinquency* 64(2): 143-165.
- Kim, Y. & Hipp, J. R.(2018). “Physical Boundaries and City Boundaries: Consequences for Crime Patterns on Street Segments?” *Crime and Delinquency* 64(2): 227-254.
- Kramer, R. & Remster, B.(2018). “Stop, Frisk, and Assault? Racial Disparities in Police Use of Force During Investigatory Stops”, *Law & Society Review* 52(4): 960-993.
- Kruttschnitt, C.(2016). “The Politics, and Place, of Gender in Research on Crime”, *Criminology* 54(1): 8-29.
- Kubrin, C. E., Hipp, J. R., & Kim, Y.(2018). “Different than the Sum of Its Parts: Examining the Unique Impacts of Immigrant Groups on Neighborhood Crime Rates”,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34(1): 1-36.
- Loughran, T. A., Paternoster, R., Chalfin, A., & Wilson, T.(2016). “Can Rational Choice Be Considered a General Theory of Crime? Evidence from Individual-Level Panel Data”, *Criminology* 54(1): 86-112.
- Lehmann, P. S., Chiricos, T. & Bales, W. D.(2018). “Juveniles on Trial: Mode of Conviction and the Adult Court Sentencing of Transferred Juveniles”, *Crime & Delinquency* 64(5): 563-586.
- Leiber, M. J., Peck, J. H., Lugo, M. & Bishop, D. M.(2017). “Understanding the Link Between Race/Ethnicity, Drug Offending, and Juvenile Court Outcomes”, *Crime & Delinquency* 63(14): 1807-1837.
- Light, M. T. & Miller, T.(2018). “Does Undocumented Immigration Increase Violent Crime?” *Criminology* 56(2): 370-401.
- Lowery, P. G., Burrow, J. D. & Kaminski, R. J.(2018). “A Multilevel Test of the Racial Threat Hypothesis in One State’s Juvenile Court”, *Crime & Delinquency* 64(1): 53-87.
- Lynch, J.(2018). “Not Even Our Own Facts: Criminology in the Era of Big Data”, *Criminology* 56(3): 437-454.

- McGloin, J. M. & Thomas, K. J.(2016). "Incentives for Collective Deviance: Group Size and Changes in Perceived Risk, Cost, and Reward", *Criminology* 54(3): 459-486.
- Menting, B., Lammers, M., Ruiter, S., & Bernasco, W.(2016). "Family Matters: Effects of Family Members' Residential Areas on Crime Location Choice", *Criminology* 54(3): 413-433.
- Metcalfe, C. & Chiricos, T.(2018). "Race, Plea, and Charge Reduction: An Assessment of Racial Disparities in the Plea Process", *Justice Quarterly* 35(2): 223-253.
- Nicosia, N., MacDonald, J. M. & Pacula, R. L.(2017). "Does Mandatory Diversion to Drug Treatment Eliminate Racial Disparities in the Incarceration of Drug Offenders? An Examination of California's Proposition 36",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33(1): 179-205.
- Nix, J.(2017a). "Do the Police Believe That Legitimacy Promotes Cooperation From the Public?", *Crime & Delinquency* 63(8): 951-975.
- Nix, J.(2017b). "Police Perceptions of Their External Legitimacy in High and Low Crime Areas of the Community", *Crime & Delinquency* 63(10): 1250-1278.
- Nobles, M. R., Ward, J. T., & Tillyer, R.(2016). "The Impact of Neighborhood Context on Spatiotemporal Patterns of Burglar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53(5): 711-740.
- Ousey, G. C. & Kubrin, C. E.(2018). "Immigration and Crime: Assessing a Contentious Issue", *Annual Review of Criminology* 1: 63-84.
- Paoline III, E. A. & Gau, J. M.(2018). "Police Occupational Culture: Testing the Monolithic Model", *Justice Quarterly* 35(4): 670-698.
- Peck, J. H., Leiber, M. J., Beaudry-Cyr, M. & Toman, E. L. "The Conditioning Effects of Race and Gender on the Juvenile Court Outcomes of Delinquent and "Neglected" Types of Offenders", *Justice Quarterly* 33(7): 1210-1236.
- Perry, G., Jonathan-Zamir, T., & Weisburd, D.(2017). "The Effect of Paramilitary

- Protest Policing on Protestors' Trust in the Police: The Case of the "Occupy Israel" Movement", *Law & Society Review* 51(3): 602-634.
- Pickett, J. T.(2018). "Using Behavioral Economics to Advance Deterrence Research and Improve Crime Policy: Some Illustrative Experiments", *Crime and Delinquency* 64(12): 1636-1659.
- Pinchevsky, G. M. & Steiner, B.(2016). "Sex-Based Disparities in Pretrial Release Decisions and Outcomes", *Crime & Delinquency* 62(3): 308-340.
- Piquero, N. L., Piquero, A. R., & Weisburd, D.(2016). "Long-Term Effects of Social and Personal Capital on Offending Trajectories in a Sample of White-Collar Offenders", *Crime and Delinquency* 62(11): 1510-1527.
- Pogarsky, G., Roche, S. P., & Pickett, J. T.(2017). "Heuristics and Biases, Rational Choice, and Sanction Perceptions", *Criminology* 55(1): 85-111.
- Powell, W. W. & DiMaggio, P. J. (eds.)(1991). *The Institutionalism in Organizational Analysi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ratt, T. C., Turanovic, J. J., & Cullen, F. T.(2016). "Revisiting the Criminological Consequences of Exposure to Fetal Testosterone: A Meta-Analysis of the 2D:4D Digit Ratio", *Criminology* 54(4): 587-620.
- Pridemore, W. A., Makel, M. C., & Plucker, J. A.(2018). "Replication in Criminology and the Social Sciences", *Annual Review of Criminology* 1: 17.1-17.20.
- Pyrooz, D. C., McGloin, J. M., & Decker, S. H.(2017). "Parenthood as A Turning Point in The Life Course for Male and Female Gang Members: A Study of Within-Individual Changes in Gang Membership and Criminal Behavior", *Criminology* 55(4): 664-690.
- Reyns, B. W. & Scherer, H.(2018). "Stalking Victimization Among College Students: The Role of Disability Within a Lifestyle-Routine Activity Framework", *Crime and Delinquency* 64(5): 650-673.
- Rocque, M., Jennings, W. G., Piquero, A. R., Ozkan, T., Farrington, D. P.(2017). "The Importance of School Attendance: Findings From the Cambridge Study in Delinquent Development on the Life-Course Effects of Truancy", *Crime and Delinquency* 63(5): 592-612.

- Rukus, J., Warner, M. E., & Zhang X.(2018). "Community Policing: Least Effective Where Need Is Greatest", *Crime & Delinquency* 64(14): 1858-1881.
- Rydberg, J., Cassidy, M. & Socia, K. M.(2018). "Punishing the Wicked: Examining the Correlates of Sentence Severity for Convicted Sex Offenders",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34(4): 943-970.
- Sabine, E. M., van Sleeuwen, Ruiter, S., & Menting, B.(2018). "A Time for a Crime: Temporal Aspects of Repeat Offenders' Crime Location Choice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55(4): 538-568
- Sahin, N., Braga, A. A., Apel, R., & Brunson, R. K.(2017). "The Impact of Procedurally-Just Policing on Citizen Perceptions of Police During Traffic Stops: The Adan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33(4): 701-726.
- Sampson, R. J. & Winter, A. S.(2018). "Poisoned Development: Assessing Childhood Lead Exposure as a Cause of Crime in a Birth Cohort Followed through Adolescence", *Criminology* 56(2): 269-301.
- Savolainen, J., Applin, S., Messner, S. F., Hughes, L. A., Lytle, R., and Kivivuori, J.(2017). "Does the Gender Gap in Delinquency Vary by Level of Patriarchy? A Cross-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Criminology* 55(4): 726-753.
- Schreck, C. J., Berg, M. T., Ousey, G. C., Stewart, E. A., Miller, J. M.(2017). "Does the Nature of the Victimization-Offending Association Fluctuate Over the Life Course? An Examination of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Crime and Delinquency* 63(7): 786-813.
- Schubert, C. A., Mulvey, E. P., & Pitzer, L.(2016). "Differentiating Serious Adolescent Offenders Who Exit the Justice System from Those Who Do Not", *Criminology* 54(1): 56-85.
- Selznick, P.(1948). "Foundations of The Theory of Organiz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3(1): 25-35.
- Shjarback, J. A., Nix, J. & Wolfe, S. E.(2018). "The Ecological Structuring of Police Officers' Perceptions of Citizen Cooperation", *Crime & Delinquency*

64(9): 1143-1170.

Siegel, L. J.(2018). *Criminology: Theories, Patterns and Typologies, 13th edition*.
Boston, Cengage Learning.

Slocum L. A. & Wiley S. A.(2018). ““Experience of the Expected?” Race and
Ethnicity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Police Contact on Youth”,
Criminology 56(2): 402-432.

Steffensmeier, D., Zhong, H. Lu, Y.(2017). “Age and Its Relation to Crime in
Taiwan and The United States: Invariant, or Does Cultural Context
Matter?” *Criminology* 55(2): 377-404.

Stuart, F.(2016). “Becoming “Copwise”: Policing, Culture, and the Collateral
Consequences of Street-Level Criminalization“, *Law & Society Review*
50(2): 279-313.

Sutherland, E. H. & Cressey, D. R.(1966). *Principles of Criminology, 7th edition*.
Philadelphia, J. B. Lippincott Company.

Tillyer, R.(2018). “Assessing the Impact of Community-oriented Policing on
Arrest”, *Justice Quarterly* 35(3): 526-555.

van Wingerden, S., van Wilsem, J. & Johnson, B. D.(2016). “Offender’s Personal
Circumstances and Punishment: Toward a More Refined Model for the
Explanation of Sentencing Disparities”, *Justice Quarterly* 33(1): 100-133.

Vogel, M. & South, S. J.(2016). “Spatial Dimensions of the Effects of Neighborhood
Disadvantage on Delinquency”, *Criminology* 54(3): 434-458.

Wallace, D., White, M. D., Gaub, J. E., & Todak, N.(2018). “Body-Worn Cameras
as A Potential Source of Depolicing: Testing for Camera-Induced
Passivity”, *Criminology* 56(3): 481-509.

Weisburd, D, Braga A. A., Groff, E. R., & Wooditch A.(2017). “Can Hot Spots
Policing Reduce Crime in Urban Areas? An Agent-Based Simulation”,
Criminology 55(1): 137-173.

Weitzman, A.(2018). “Does Increasing Women’s Education Reduce Their Risk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Evidence from an Education Policy Reform”,
Criminology 56(3): 574-607.

- Welsh, B. C. & Farrington, D. P.(2009). "Public Area CCTV and Crime Prevention: An Updated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ustice Quarterly* 26(4): 716-745.
- Wells, J., Armstrong, T. Boisvert, D., Lewis, R. Gangitano, D., & Hughes-Stamm, S.(2017). "Stress, Genes, and Generalizability across Gender: Effects of MAOA and Stress Sensitivity on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55(3): 548-574.
- Wickes, R., Zahnow, R., Shaefer, L., Sparkes-Carroll, M.(2017). "Neighborhood Guardianship and Property Crime Victimization", *Crime and Delinquency* 63(5): 519-544.
- Widom, C. S., Fisher, J. H., Nagin, D. S., & Piquero, A. R.(2018). "A Prospective Examination of Criminal Career Trajectories in Abused and Neglected Males and Females Followed Up into Middle Adulthood",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34(3): 831-852,
- Widdowson, A. O., Siennick, S. E., Hay, C.(2016). "The Implications of Arrest for College Enrollment: An Analysis of Long-Term Effects and Mediating Mechanisms", *Criminology* 54(4): 621-652.
- Wo, J. C.(2016). "Community Context of Crime: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the Effects of Local Institutions on Neighborhood Crime", *Crime and Delinquency* 62(10): 1286-1312.
- Wo, J. C., Hipp, J. R. & Boessen, A.(2016). "Voluntary Organizations and Neighborhood Crime: A Dynamic Perspective", *Criminology* 54(2): 212-241.
- Xie, M. & Baumer, E. P.(2018). "Reassessing the Breadth of the Protective Benefit of Immigrant Neighborhoods: A Multilevel Analysis of Violence Risk by Race, Ethnicity, and Labor Market Stratification", *Criminology* 56(2): 302-332.
- Xie, M. & Lynch, J. P.(2016). "The Effects of Arrest, Reporting to the Police, and Victim Services on Intimate Partner Violenc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54(3): 338-378.

Zane, S. N.(2017). "Do Criminal Court Outcomes Vary by Juvenile Transfer Mechanism? A Multi-Jurisdictional, Multilevel Analysis", *Justice Quarterly* 34(3): 542-569.

Zhang, L., Messner, S. F., & Zhang, S.(2017). "Neighborhood Social Control and Perceptions of Crime and Disorder in Contemporary Urban China", *Criminology* 55(3): 631-663.

<https://www.kic.re.kr/info/purpose/purpose.jsp>(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연구원소개. 설립목적, 2018년 11월 30일 최종 접속).

<http://www.crimestats.or.kr>(2018년 11월 30일 최종 접속).

제 2 부



범죄발생의 실태 연구의 성과와 과제

제 1 장



범죄발생의 추세 및 원인 관련 연구

노 성 훈

범죄발생의 추세 및 원인 관련 연구

제1절 범죄발생 추세

1. 한국의 범죄발생 추세연구

장기간에 걸친 범죄발생 추세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이유는 범죄현상이 어떻게 사회변동과 조응하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범죄발생양상을 예측하여 보다 효과적인 범죄통제정책을 수립하는데 있다. 전반적인 범죄발생 추세를 분석한 최초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으로 함) 보고서는 1993년에 발표된 「범죄발생의 추세분석: 1964-1991」(이상철·기광도)이다. 이후 2005년까지 '연구원'에서는 5종의 범죄발생 추세연구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그러다가 2006년부터는 연례보고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의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에서 지난 10년 동안의 범죄발생 및 범죄자 특성 추세분석이 발표되고 있다.

[표 II-1-1] 2005년까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발생 추세분석 보고서

	1993	1997	2002(2003)	2005
분석 기간	1964~1991년	1964~1996	1964~2001 (1964~2002)	1964~2004
분석 자료	범죄분석	범죄분석	범죄분석	범죄분석 외국 공식범죄통계
범죄 유형 및 구분	형법범죄 - 재산범죄 : 절도, 강도, 사기 - 폭력성범죄 : 폭행, 상해, 강간, 살인, 폭처법범죄	형법범죄 - 재산범죄 : 절도, 사기, 횡령, 배임, 장물, 손괴 - 폭력성범죄 : 살인, 강도, 강간,	형법범죄 - 재산범죄 : 절도, 사기, 횡령, 배임, 장물, 손괴 - 폭력성범죄 : 살인, 강도, 방화,	- 강력범죄 : 살인, 강도, 강간, 폭행(상해), 방화 - 재산범죄 : 절도, 사기, 횡령

	1993	1997	2002(2003)	2005
	특별법범죄 • 병역법, 도로교통법, 향군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업무상 과실치사상	폭행/상해, 방화, 약취/유인, 폭처법 • 기타 범죄 : 뇌물	강간, 폭행, 상해, 협박, 공갈 특별법범죄	
범죄 특성	지역 •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 •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 시간 • 계절, 월, 요일, 시간대 장소	범죄발생관련특성 • 범행동기 • 범죄자 전과 • 범죄발생지와 범죄자 주거지	범죄발생관련 특성 • 범행시 정신상태 • 범행동기 • 공범유무 • 범죄자 전과 • 재범종류, 재범기간 • 범행 후 은신처 • (범죄자와 피해자 관계) • (마약류 상용여부)	
범죄자 특성	성, 연령, 교육수준, 사회계층수준,	성,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직업, 생활수준, 종교	성,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직업, 생활수준, (내/외국인)	
범죄 처분		피의자 구속/불구속, 범죄자 자백, 검찰처분결과	피의자 구속/불구속, 범죄자 자백, 검찰처분결과 (발생부터 인지까지 기간, 발생부터 검거까지 기간)	
비교 국가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주: ()은 2003년 보고서 내용

※ 'Crime in Korea'(2004, 장준오)는 제외됨.

2005년까지 발표된 '연구원'의 범죄발생 추세분석 보고서는 검찰이 생산하는 「범죄 분석」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범죄는 기본적으로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로 구분하였고 형법범죄는 재산범죄와 폭력성범죄로 나누었는데 보고서에 따라 범죄분류항목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범죄유형에 다소 간의 차이가 있었다. 범죄특성에 있어서 1993년 보고서는 지역, 시간, 장소적 특징만 제시하였다가 1997년 보고서는 범행동기, 범죄자 전과 등을 추가하였고 2002년과 2003년 보고서는 범행시 정신상태, 범행동기, 공범유무 등 보다 상세한 특징들까지 범위를 확대하였다. 범죄자 특징으로는 성, 연령, 교육수준이 모든 보고서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었다. 범죄처분 관련 내용은 1997년 보고서부터 추가되었는데 피의자 구속·불구속, 자백여부, 검찰처분 등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연구들은 한국의 범죄발생 추세와 주요 선진국의 추세를 비교하고 있다. 1993년 보고서에서는 비교대상을 일본으로 한정하였지만 2002년과 2003년에는 영국, 미국, 독일을 추가하였다. 특히 2005년 보고서는 국가 외에 국가별 주요 도시의 범죄발생 추세도 비교하였다.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의 범죄 발생율은 1964년 이래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197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까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1980년부터 강도, 강간 등 폭력범죄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사회의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인구증가의 결과로 해석된다. 지역별 범죄발생양상을 분석한 결과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범죄율이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 점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또한 경제가 발전하면서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자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위반이 현저하게 증가한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이상철·기광도, 1993). 범죄자의 특성 관련 변화추세에 있어서는 남성 범죄자에 비해 여성 범죄자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형법범 중 여성범죄자 비율이 1966년에 13%였으나 1996년에는 20%로 증가하였다. 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서 1990년대에는 40대 이상의 범죄자가 전체 형법범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박승진 외, 1997). 20대 초반 청년층 범죄자 비율이 가장 높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차이를 보이는 주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징병제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사회의 범죄발생 추세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한 사건은 1997년 IMF 외환위기다. '연구원'의 2002년과 2003년 보고서는 이러한 역사적 사건이 한국의 범죄현상에 미친 영향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폭력범죄의 경우 IMF 외환위기 직후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 증가세가 계속 유지되었다. 재산범죄 발생율 역시 IMF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였는데 특히 절도는 한 해 동안 거의 두 배 가량 증가하기도 하였다. 여성범죄자 비율도 크게 증가하여 IMF 원년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특히 사기에서 여성범죄자 비율이 30%대까지 증가하였다. 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중·장년층, 특히 40대의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범죄추세연구 평가 및 연구방향

‘연구원’의 범죄추세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1993년 범죄추세연구부터 최근의 연례보고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까지 ‘연구원’은 한국 사회의 변화에 따른 범죄현상을 지속적으로 조망해왔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들과 범죄·형사정책 분야 전문가들이 범죄현상에 대해 나무가 아닌 숲을 볼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 기여가 있다. 둘째, 분석 방법론적으로는 검찰이 생산하는 공식범죄통계인 「범죄분석」의 범죄유형 구분에 있어서 의미 있는 개선을 이루었다. 예를 들어, 1993년 보고서에서는 특별법 범죄 중 형법 범죄 성격을 가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형법범죄에 산입하여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범죄유형 분류방식은 이후 발표된 보고서에서 그대로 유지되었고 나중에는 검찰의 「범죄분석」과 경찰의 「범죄통계」에도 동일한 분류방식이 적용되었다. 또한 1993년 보고서에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이전에 형법범죄인 교통사고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특별법 범죄에 포함시켜 특별법범죄율을 재구성하였다. 2002년과 2003년 보고서에서는 전체범죄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교통사고 관련 특별법 범죄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범죄를 제외한 전체 범죄 수정치를 병행하여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단순히 형법전이나 특별법전의 조문에 의존하는 기존의 방식을 극복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죄유형 분류와 통계치 제시를 통해 범죄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의 범죄발생 추세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였다. 특히 2005년 보고서에서는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범죄발생 추세를 비교하기 위해 각 국가 및 도시의 형법규정과 범죄통계를 재가공하는 쉽지 않은 작업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현재 범죄발생 추세연구는 연례보고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안에 포함되어 발표되고 있다. 검찰의 「범죄분석」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선진외국과의 비교분석을 하는 등 예전의 범죄발생 추세연구와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추세분석기간을 지난 10년으로 한정하는 점과 2016년 보고서부터 범죄피해동향 및 특성이 추가된 점 등이 다르다. 앞으로 ‘연구원’이 진행할 범죄발생 추세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들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범죄자 특성분석에서 인구규모 대비 범죄자 비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범죄자 특성분석은 각 특성별 집단이 전체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구성비를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체 발생범죄 중 10대 연령층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제시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비율계산에 있어서 집단별 기준인구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집단 간 비교가 불가능하다. 더욱이 한국 사회는 출산율 저하, 노령인구 증가, 외국인민자 증가, 혼인율 감소, 경제적 양극화 심화 등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다. 한국 사회가 현재 당면하고 있으며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경제구조의 변화가 범죄자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집단별 범죄자 비율의 변화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미혼자 10만 명 당 범죄자 비율의 변화, 70세 이상 노인 10만 명 당 범죄자 비율의 변화 등은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범죄추세를 파악하기에 필요한 통계치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이원분석결과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추세연구는 범죄유형별로서, 연령, 교육수준, 생활수준 등 요인에 따른 발생빈도와 구성비를 제시하는 일원분석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런데 범죄통계 수요자 입장에서는 단일 요인을 넘어 두 개 이상의 요인과 범죄발생 간의 복합적인 관련성도 궁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혼 남성과 미혼 여성의 범죄율 추세, 폭력범죄의 범행동기에 있어서 남녀 간의 차이 등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원분석 또는 다원분석을 하려면 공식범죄통계 원자료 확보가 선결조건이 될 것이다.¹⁾

셋째, 지역별 범죄발생 추세분석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1993년 보고서에는 광역시도, 대도시·중소도시·농촌 등 지역별로 범죄발생 추세가 제시된 바 있으나 이후 보고서에는 제외되었다.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범죄발생 추세에 특별히 관심이 많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범죄추세 보고서를 웹문서 형태로 제공하고 사용자 가이드도 추가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범죄발생 추세보고서는 종이책자로 발간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PDF문서 형태로 제공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1) 범죄통계 원자료 제공과 관련된 주요 쟁점은 노성훈·탁종연(2013)의 “자료공개와 법제도덕 개선을 통한 범죄통계 활용 활성화 방안”(『한국범죄학』, 7권 2호)에서 다루고 있다.

자가 보고서에 포함된 표와 그래프만을 별도로 추출하여 자신의 용도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다. 보고서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원’ 웹사이트를 통해 웹문서 형식의 보고서를 제공하고 표와 그래프는 별도로 엑셀파일 또는 이미지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²⁾ 아울러 사용자가 보고서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자 가이드가 제공되어야 한다. 가이드에는 분석에 사용된 통계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및 자료의 생산·집계·분석과정에 대한 설명, 분석결과 해석 시 주의사항, 각종 통계용어에 대한 해설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절 범죄발생 원인과 특성

1. 범죄발생의 사회적·상황적·개인적(심리적) 원인

범죄학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범죄발생의 원인과 특성을 규명하는데 있다.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범죄학은 범죄현상을 정확히 기술하고 범죄의 원인에 대한 경험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범죄발생의 특성을 밝히는 것은 범죄학 연구의 기술적 목적에 해당하고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설명적 목적에 부합된다. 동일한 요인이 범죄의 특성을 기술하는데 사용되기도 하고 범죄의 원인으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범죄율을 비교하는 것은 범죄발생의 특성을 기술하는 것에 해당하고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인의 범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면 범죄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시도라고 하겠다.

2) 영국에서는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 ‘Crime in England and Wales’라는 범죄발생 연간 추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보고서가 웹문서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내용에 포함된 표와 그래프를 별도로 엑셀, 텍스트, 또는 이미지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II-1-2] 범죄발생의 원인 및 특성에 관한 연구(1991~2017)

연구보고서	설명요인	관련이론	분석자료
박순진·최인섭 (1991)	도시화, 경제성장, 취업기회구조	아노미이론	공식범죄통계자료
최인섭·박순진 (1993)	도시화, 단독가구율·이혼률, 실업률, 청년인구비	하위문화이론, 사회해체이론, 아노미이론, 기회이론	공식범죄통계자료
김두섭·민수홍 (1994)	자기통제력, 부모 자녀감독·난폭한 언행, 부모애착, 교육관여	자기통제이론, 사회통제이론	설문조사자료
이성식 (1995)	범행기회, 일상생활유형, 대상 매력성, 주위의 압력	기회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설문조사자료
최인섭·기광도 (1996)	사회계층	사회해체이론, 아노미이론, 학습이론, 비행하위문화이론, 사회통제이론, 낙인이론, 맑스주의 범죄학	공식통계자료분석 설문조사자료
최인섭·진수명 (1998)	지역 SES, 밀도, 인구이동, 인구구성, 지역해체, 범죄통제	사회해체이론, 일상활동이론, 아노미이론	각종 공식통계자료
기광도 (1998)	사회변동, 사회해체, 빈곤·실업, 사회불평등, 사회통제	아노미이론	문헌자료 공식범죄통계자료
기광도 (1999)	사회변동(IMF 금융위기), 사회해체, 빈곤·실업, 사회불평등	아노미이론	문헌자료
박순진 (1999)	범죄자·피해자 특성, 범죄발생장소, 범행동기, 범행도구, 공격개시자, 피해자대응방식, 제3자의 존재	기회이론, 생활양식이론, 일상활동이론	수사·재판기록
기광도·최영신 (1999)	실직	생활양식이론, 일상활동이론, 일반긴장이론, 아노미이론	설문조사자료
진수명 (2000)	일상활동, 이웃관계, 무질서, 범죄문제관심	사회해체이론, 일상활동이론,	공식범죄통계자료 설문조사자료
성한기·박순진 (2003)	정신장애, 뇌손상, 자아존중감, 자아정체성, SES	심리학적 범죄학	공식범죄통계자료 수사/재판기록 면접조사자료
김기득·곽대훈 (2003)	인종이질성, 청년인구비, 빈집비율, 지역SES	사회해체이론, 일상활동이론, 기회이론, 환경적범죄학	문헌자료 사례
박철현 (2005)	갈등	갈등이론	언론보도자료 (내용분석)
박형민 (2007)	인구통계학적 특징, 사회경제적지위 등	아노미이론, 사회해체이론, 하위문화이론	공식범죄통계자료 수사기록
장준오 외 3인 (2011)	양심의 가책, 범죄충동, 범행정당화	중화이론, 차별적접촉이론	면접조사자료

연구보고서	설명요인	관련이론	분석자료
강지현·김슬기 (2013)	범행동기, 범행도구, 사전준비	합리적선택이론	공식범죄통계자료 수사·재판기록 면접조사자료
박형민 (2014)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인구학적, 개인적 지표	아노미이론	각종 공식통계자료
박형민·서주연 (2015)	인구고령화(노인빈곤, 건강악화, 사회적 소외, 세대갈등)		설문조사자료
박형민 외 2인 (2016)	외국인 차별·혐오, 빈곤, 문화부적응	집단위협이론, 사회해체이론, 지역사회통제이론	설문조사자료
홍영오 외4인 (2017)	경제적 양극화	머튼 아노미이론	공식범죄통계자료 설문조사자료 면접조사자료

그동안 ‘연구원’이 발표한 범죄발생 원인 및 특성에 관한 연구들은 범죄의 설명요인에 따라 크게 사회적 요인, 상황적 요인, 개인적(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들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적 요인을 다룬 연구들은 한국 사회 전체의 인구구조, 경제구조 등에 있어서의 변화를 다루는 거시적 수준(macro - level)의 연구들과 지역사회 단위의 인구통계학적·경제적·사회적 특성과 변화를 다루는 중시적(meso - level) 연구들로 나눌 수 있다. 거시적 수준 연구들은 주로 뒤르켐의 아노미이론, 머튼의 아노미이론, 마르크스주의 범죄학 등을 배경이론으로 하고 있다. 반면 중시적 수준 연구들은 시카고 학파의 사회해체이론, 하위문화이론 등에 기반하고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연구들로 IMF 외환위기 이전에 발표된 박순진·최인섭(1991)과 최인섭·박순진(1993), 최인섭·기광도(1996)의 연구는 주로 도시화, 산업화, 인구구조 변화, 사회계층 등의 요인들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국 사회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특징으로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 도시화가 범죄율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한국에서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지만 도시화의 부작용을 상쇄할 정도의 경제성장이 동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 직후에 발표된 거시적 수준의 연구로는 기광도(1998, 1999)의 두 보고서가 있는데 사회변동, 경제적 불평등, 빈곤, 실업 등과 같이 경제적 위기로 인해 초래된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주목하고 있다. 21세기 들어서면서 한국 사회 내의 갈등이 정치적, 경제적 차원을 넘어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소수자 권리를 둘러싼

갈등 등 보다 다양해지고 광범위해졌다. 박철현(2005)의 사회갈등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당시 시대적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발표된 3종의 보고서는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갈등요소를 테마별로 다루고 있다. 고령화(박형민·서주연, 2015), 다문화(박형민 외, 2016), 그리고 경제적 양극화(홍영오 외, 2017)가 범죄현상에 미치는 영향이 조사되었다.

중시적 수준의 사회적 요인 연구들은 주로 지역사회의 사회해체적 특징과 비공식적 통제기제가 범죄의 지역적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여기에는 빈곤, 인종적 이질성, 빈집, 무질서 등 사회해체적 특징에 관한 연구들(최인섭·진수명, 1998; 기광도 1998, 1999; 김기득·곽대훈, 2003; 박형민, 2014)과 이웃 간의 관계, 범죄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같은 지역사회통제 요인에 관한 연구(진수명, 2000)가 있다.

상황적 요인을 다룬 연구들은 범행기회와 실행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대해 조사하였다. 범죄학 배경이론으로는 기회이론, 일상활동이론, 합리적선택이론, 생활양식이론 등이 있다. 이성식(1995)의 연구에서 범죄기회구조와 범죄유발 요인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다. 범죄기회구조에는 지역 내 존재하는 범행기회, 일상생활 속 범행기회에 노출되는 정도 등이, 범죄유발요인에는 범행대상의 매력성, 주위사람들로부터의 압력과 유혹, 상황 자체가 제공하는 스틸과 재미 등이 포함되었다. 박순진(1999)의 연구는 범죄사건이 진행되는 역동적 과정에 주목하여 범죄에 참여하는 행위주체로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역할 및 상호작용을 현상학적 접근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피해자의 행동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치명적으로 상해를 입게 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광도·최영신(1999)의 연구는 IMF 외화위기 이후 실직자가 증가한 상황 속에서 실직경험이 개인의 일상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범죄피해 및 범죄행위의 가능성에 관해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실직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악화되고 배우자 및 자녀와의 대화시간이 감소하게 되어 자녀와의 대립·불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수명(2000)의 연구는 신도시지역 내의 범죄취약요인을 조사하였다. 신도시지역이 침상도시 또는 소비도시로서의 기능만을 하게 되면서 밤과 낮에 비어 있는 집들이 증가하여 범행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김기득·곽대훈(2003)의 연구는 범행기회의 공간분포를 분석하여 범죄의 공간적 집중화, 즉 핫스팟의 형성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강지현·김

슬기(2013)의 연구는 강·절도에 있어서 공범사건과 단독범사건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공범사건일수록 사전에 범행 장소를 답사하고, 범행도구를 사용하고, 차량을 이용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여 범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들로는 세 종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김두섭·민수홍(1994)의 연구는 갓프레드슨 & 허쉬의 자아통제이론을 바탕으로 자아통제력의 수준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조사하였다. 자아통제력이 클수록 재산범죄, 폭력범죄 그리고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한기·박순진(2003)의 연구는 2003년 발생한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에 대한 사례기술적 설명을 시도하였다. 방화범의 개인적 차원의 정신질환과 이로 인해 야기된 사회를 향한 분노와 적개심이 주된 범죄원인이라고 결론지었다. 마지막으로 장준오 외(2011)의 연구는 노숙인들을 상대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일탈행위에 대한 정당화 심리를 파헤쳤다. 노숙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나 일탈행위를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결과로 묘사하거나 단지 술 때문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로 정당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2. 범죄원인연구 평가 및 연구방향

‘연구원’의 범죄원인 및 특성에 대한 연구들은 범죄학 이론적 측면과 연구 방법적 측면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연구원’의 연구들은 일찍이 서구의 범죄학 이론들을 한국에 소개하고 실증적 연구를 통해 이론들을 한국의 범죄현상에 적용하여 한국의 범죄학 발전을 선도하였다.³⁾ 1990년대 초반 아노미 이론, 사회해체이론 등의 거시적 차원의 사회학적 범죄이론을 시작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는 기회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등 상황적 범죄이론들이 연구되었다. 2000년대에는 중화이론, 차별적 접촉이론 등 사회학적 이론과 함께 심리학적 범죄이론에 바탕을 둔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다양한 범죄학이론들이 한국 학계에 소개되었다. 둘째, ‘연구원’의 연구들은 다양한 양적·질적 연구방법으로 범죄학 연구의 수준을 방법론적으로도 향상시켰다. 1990년 초반 공식범죄통계나 설문조사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는 수사·재판기록, 언론보도자료를 활용하거나 심층면접을 포함한 면접조사가 실시

3) 범죄학 분야의 대표 학술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형사정책연구」가 1990년에 창간되었고, 대한범죄학회의 ‘한국 범죄학’ 창간호는 2007년에 발행되었다.

되었다. 또한 단일 연구에 다양한 조사방법을 혼용하여 조사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론적 다각화(methodological triangulation)가 다수의 연구에서 시도되었다(성한기·박순진, 2003; 강지현·김슬기, 2013; 홍영오 외, 2017).

향후 범죄원인 및 특성 관련 연구의 방향과 관련해서도 이론적 측면과 방법론적 측면으로 구분해서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 범죄학 이론적 측면에서 그동안의 연구들은 지나치게 사회학적 실증주의에 편중되어왔다. 기존의 연구들이 거의 대부분 사회학적 이론들만을 검증한 반면 생물학적 범죄학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연구되지 않았다. 심리학적 범죄학의 경우에도 방화범의 정신장애와 관련하여 단 한 차례 연구 주제로 다루어졌을 뿐이다(성한기·박순진, 2003). 더욱이 사회학적 범죄이론 중에서도 소수의 몇몇 이론에만 연구가 집중되었다. 예를 들어, 1991년부터 2017년 사이에 발표된 21종의 연구보고서에서 가장 빈번히 다루어진 이론은 10종의 연구에서 이론적 배경이 된 아노미이론이고, 그 다음은 7종의 사회해체이론이다. 사회학 이론의 3대 패러다임은 기능주의,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그리고 갈등주의이다. 그런데 그동안 '연구원'의 사회학적 실증주의 연구는 주로 보수적 색채의 기능주의적 패러다임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반해 상징적 상호작용과 갈등주의 패러다임에 속하는 연구는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앞으로는 나머지 두 패러다임에 속한 낙인이론, 갈등이론, 마르크스주의 범죄학, 페미니스트 범죄학 분야의 실증연구들이 보다 활발히 시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판적 범죄학의 관점에서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의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불평등 문제를 다룬 연구들도 필요하다. 그동안 사회경제적 계층 또는 경제적 양극화를 주제로 한 연구들은 빈곤이나 경제적 불평등을 단순히 범죄발생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만 다루었다. 반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개인 또는 집단이 국가의 형벌정책과 형사사법시스템에 내재한 불평등적 요소로 인해 보다 쉽게 범죄자화(criminalization)되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둘째, 연구방법론적으로는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횡단적 연구방법에만 의존해 온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공식범죄통계를 활용한 몇몇 범죄추세분석이 종단적 연구에 해당할 뿐 코호트연구나 패널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종단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 연구대상에게 발생하는 변화와 경향을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발달범죄학의 연구주제인 특정

행위자나 하위집단이 성장발달과정에서 겪게 되는 비행·범죄 관련 경험과 변화에 대한 관찰은 종단적 연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아직까지 ‘연구원’에서 인생향로이론 등 발달범죄학 연구가 실시되지 못한 원인도 결국 종단적 연구의 부재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그동안 실험설계연구가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못한 점 역시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범죄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설명요인과 범죄행위 간의 인과관계가 검증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모든 ‘연구원’의 연구들은 다변량분석을 통해 외생변수의 영향을 통제하는 방식에만 의존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변수가 시간적으로 결과변수에 선행해야 한다는 인과관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인과관계의 규명이 아닌 상관관계를 검증하는 수준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반해 잘 설계된 실험연구(또는 유사실험연구)는 대부분의 외생변수의 영향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설명변수의 시간적 선행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설명변수와 결과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다

제3절 범죄통계 구축 및 활용

1. 한국 범죄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의 공식범죄통계는 경찰과 검찰에 의해서 수집·관리되고 있다. 경찰의 범죄통계자료는 전국의 경찰관서에서 취급한 형사사건에 대해 사건담당자가 발생원표, 피의자원표, 검거원표 등 3종의 범죄통계원표 입력항목에 기입한 내용을 취합하는 방식으로 수집되고 있다. 검찰의 범죄통계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경찰로부터 전송되는 범죄원표통계, 특별사법경찰이 작성한 범죄원표통계, 그리고 검찰이 자체적으로 처리한 사건의 통계정보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수집된다. 공식범죄통계에 대해서는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신고하지 않은 ‘숨은 범죄’가 원천적으로 집계과정에서 배제되고 범죄유형에 따른 신고율 역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범죄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범죄통계는 국가기관이 수집하는 범죄관련 통계이며 범죄발생의 전반적인 규모, 성격, 추세 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

료이자 시민들의 치안수요와 삶의 질을 전체적으로 가늠하는 중요지표이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의 공식범죄통계는 통계의 수집·관리·활용 차원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첫 번째, 공식범죄통계는 정책입안자, 전문연구자, 그리고 일반대중 등 통계이용자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일차적인 원인으로 범죄통계 수집도구인 범죄통계원표가 내포한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1960년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입력항목에 있어서 큰 변화 없이 시대에 뒤떨어진 입력항목들이 유지되고 있고, 강도와 절도 중심의 항목으로 구성된 통계원표를 특별법 범죄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범죄에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필요한 정보가 수집에서 누락되거나 관련성이 없는 정보들이 수집되고 있다. 두 번째, 통계자료의 수집체계, 수집방법, 그리고 자료처리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때문에 범죄통계의 부정확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수사관들에게 정확한 통계입력에 대한 동기나 부담이 없고 입력오류를 검증하는 절차나 기능이 거의 전무하다. 또한 범죄통계 관리업무의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상세한 통계입력기준과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점도 원인이다. 마지막으로, 범죄통계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료 활용도가 떨어지고 국민의 알 권리가 제약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범죄통계 원자료 제공인데 경찰과 검찰은 사생활침해, 지역낙인효과, 부동산 가치하락, 범죄통계 오남용 등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가공된 형태의 요약통계만 제공하고 있다(노성훈·탁종연, 2013).

그동안 '연구원'에서는 한국의 공식범죄통계의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연구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크게 범죄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내용과 범죄통계자료 활용에 관한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범죄통계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내용으로 김준호·이동원(1990)의 연구는 검찰이 발간하는 「범죄분석」 책자를 중심으로 범죄통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범죄분류와 관련하여 범죄성격상 형법범죄이지만 특별법으로 되어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중 강도, 절도, 약취유인, 체포 및 감금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위반을 형법범죄로 분류했다. 또한 「형법」 상 '아편에 관한 죄'와 특별법 상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마약법」 중 마약사범을 합쳐서 마약범죄로 분류했다. 범죄통계원표의 개선안도 제시하였는데 우선적으로 불필요한

입력항목, 중복되는 항목들을 삭제하거나 조정했다. 또한 내용적으로 거의 유사한 피의자통계원표와 피의자환경조사표를 하나의 원표로 통일할 것을 제안했다. 범죄통계원표 작성 및 입력에 대해서는 원표 입력내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담당 형사가 직접 원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작성법에 대한 교육을 강조했다. 그 당시에는 경찰통계와 검찰통계가 연계되지 않고 입력양식도 통일되지 않았다고 경찰에서 검찰로 범죄통계원표가 전달되는 과정에 누락되는 일도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고서에서는 경찰과 검찰의 범죄사건 처리과정을 시스템적으로 연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⁴⁾

박정선(2007)의 미국 NIBRS(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연구는 선진외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범죄통계자료 수집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의 공식범죄통계를 수집·관리하는 연방수사국은 요약통계인 UCR(Uniform Crime Report)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건 단위 기반의 새로운 범죄통계보고체계를 마련하였다. NIBRS는 분석단위로 가해자, 피해자, 위반행위 및 사건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차원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반면 한국의 공식범죄통계는 아직까지도 요약통계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통계자료 활용에 있어서 결정적인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범죄통계수집 및 처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범죄를 분류하고 발생건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장다혜 외(2016)의 연구는 이러한 범죄분류와 산정기준이 국제적 표준에 부합되도록 만들기 위한 기초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 2015년 국제연합은 국가 간 범죄통계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표준범죄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이하 ICCS)를 승인하였다. 장다혜 외의 연구는 한국의 ICCS 이행을 위해 ICCS에 기준한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를 통해 한국범죄통계분류의 기초단위인 죄명코드를 ICCS에 따라 분류하여 연계성을 검토하고 그 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쟁점을 도출하였다. 연계가 되지 않는 죄명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규칙성을 발견하는 등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4) 2010년에 이르러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 4개 형사사법기관의 독립적 시스템이 표준화된 공통시스템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연계되면서 이러한 제안이 현실화된다.

둘째, 범죄통계자료 활용에 관한 내용으로 김준호·이동원(1990)의 연구는 검찰의 「범죄분석」 내용과 구성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범죄분석」에 범죄유형별 10년 또는 5년간의 추세분석과 지역별 분석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박정선(2007)은 NIBRS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의 공식범죄통계 발표방식과 관련하여 제언을 했다.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유형의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를 망라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지표범죄 중심으로 제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통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범죄발생의 시간 및 공간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강지현 외(2012)의 연구는 범죄통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경찰의 「범죄통계」 책자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1년 ‘연구원’과 경찰청은 범죄통계 개선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다음 해에 양 기관이 참여하는 ‘범죄통계 분석활용 추진팀’을 구성하였다. 2011년 범죄통계 책자를 공동발간하기로 합의하고 ‘연구원’의 연구진들은 경찰청으로부터 범죄통계 원자료를 제공받아 분석을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범죄현상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해졌고 각종 통계적 오류를 수정하여 보다 정확한 통계정보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범죄통계 책자의 구성을 활용도 향상이라는 목표에 맞게 획기적으로 개편하였다. 먼저 범죄통계의 죄명 분류를 기존의 형법전의 장 중심이 아니라 ‘위반행위속성 및 법익침해유형’을 기준으로 하여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를 통합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 형법범죄의 법정형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특별법의 위반행위는 형법범죄와 통합하였다. 나머지 특별법범죄는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경제범죄, 약물범죄, 보건범죄, 환경범죄, 교통범죄 등이 이에 속한다. 책자의 구성방식에 있어서도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개선된 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에는 책자의 내용을 범죄개요, 범죄분석, 범죄통계표로 나누었는데 이를 범죄개요, 범죄발생·검거 및 처리, 범죄발생상황 관련 특성, 범죄자 특성, 피해자 특성, 범죄자 유형별 특성 등으로 변경하였다.

김지선 외(2014)의 연구는 법무연수원에서 발간하는 「범죄백서」의 개편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법무연수원과 ‘공동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먼저 「범죄백서」 편집체계의 개편에 있어서 ‘범죄피해자편’, ‘소년범죄의 동향 및 소년범죄자 처우편’, ‘재범 장’, 범죄자 처우에서 ‘민간의 참여 장’, ‘폭력범죄의 동향과 처리’ 항목 등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또한 편, 장, 절의 제목과 하위영역에 포함된 내용 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것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통계자료의 적절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계자료의 내용 및 표시를 수정하고 일러두기 내용을 보강하며 용어 해설집의 제작을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형사사법통계의 수집·분석·발간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형사사법통계시스템을 통한 원자료 수집과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 확보 등을 제안하였다.

‘연구원’은 경찰청, 법무부 등 타 기관을 지원하는 방식 외에도 범죄통계자료의 활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2006년에 처음으로 구축된 ‘범죄와 형사사법통계시스템’(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 이하 CCJS)은 경찰, 검찰, 법무부,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과 ‘연구원’이 직접 생산·집계한 통계자료에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범죄통계 DB 구축사업’은 2006년 ‘범죄통계 활용기반 구축’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13년째 이어오고 있다. 다년연구사업을 통해 그동안 CCJS 웹사이트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제공되는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현재까지 CCJS에서 제공하는 통계정보에는 ‘범죄분석’DB, ‘검찰연감’DB, ‘사법연감’DB, ‘범죄피해조사’DB, ‘범죄통계’DB, 그리고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DB가 포함된다.

[표 II-1-3] 범죄통계 DB 구축사업의 주요 추진사항(2014~2018년)

DB 구축사업연도	주요 추진사항
2014	• CCJS 홈페이지 리뉴얼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Open API를 활용하여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메뉴 신규 개발 • ‘범죄분석’ DB 시스템 UI 개선 및 범죄분류체계 정비 • ‘사법연감’ DB 데이터 업데이트 • ‘검찰연감’ DB 서비스 제공
2015	• CCJS 디자인 및 구조 개편 • ‘범죄통계’ DB 신규개발 • ‘범죄분석’ DB ‘2014년 이전’DB와 ‘2014년’DB 구분 • ‘범죄분석’ DB, ‘검찰연감’DB, ‘사법연감’DB 통계 업데이트 • 영문 홈페이지 개발 • 데이터 시각화 메뉴 개발

DB 구축사업연도	주요 추진사항
2016	• CCJS 콘텐츠 강화 • 이원화 되어 있는 '범죄분석' DB 통합 • '검찰연감' DB의 데이터 수록범위 보완 • CCJS 4대 보고통계 DB에 대한 Open API 서비스 구축 • RSS 기능 추가로 이용자 편의 강화
2017	• '전국범죄피해조사' DB 전면 재구축 •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DB 신규 개발 • CCJS 메뉴 구조 및 수록 콘텐츠 개편 • 국가승인통계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에 대한 정기통계품질진단에 참여 • '굿 콘텐츠서비스' 인증 • 관계기관들과의 정책실무협의회 개최
2018	• 반응형 웹 기반 CCJS 전면 개편 • 통합 통계DB 구축 및 서비스 • KIC 조사연구자료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 영문 서비스 강화

2. 범죄통계연구 평가 및 연구방향

그동안 '연구원'은 범죄통계관련 연구들을 통해 범죄통계자료의 수집·관리·분석·활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왔다. 경찰, 검찰, 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은 행정편의주의와 통계 비전문성 때문에 정확하면서 합목적적이고 활용도 높은 범죄통계를 생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연구원'은 형사사법기관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범죄통계의 개선작업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연구원'과 경찰청이 공동으로 발간한 2011년 「범죄통계」에서는 기존에 발견하지 못한 다수의 통계적 오류가 연구진들의 노력을 통해 수정되었다. 또한 연구진은 이용자의 편의성과 활용도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범죄통계 구성안을 마련했는데 현재까지도 경찰청은 이때 마련된 책자구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김지선 외(2014) 연구에서 제안한 「범죄백서」 편집체계 개선안 중 상당 부분이 반영되었고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보고서의 제안내용에 따라 '범죄피해자 편', '소년범죄의 동향 및 소년 범죄자 처우 편', 그리고 '범죄자 처우'에서 '민간의 참여 장'이 신설되었다.

또한 '연구원'은 범죄통계 DB 구축사업을 통해 범죄 및 형사사법 영역의 통계자료 종합 플랫폼을 형성하였다. 기존에 각 형사사법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통계자료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여기에 '연구원'이 자체 연구를 통해 축적한 자료를 추가하였다. 자료이용자들은 CCJS에서 다양한 범죄 관련 통계자료를 손쉽게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료와 분석결과를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를 추가하여 '연구원'이 과거에 수행한 연구에서 수집된 원자료를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밖에 CCJS 웹사이트에는 시각화된 범죄통계정보, 범죄동향 리포트, 이슈통계 등 다양한 범죄통계 관련 정보가 게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다년간에 걸친 범죄통계 DB 구축사업으로 '연구원'은 일반국민들이 범죄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범죄현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귀중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여 학문의 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보다 효과적인 형사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범죄통계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첫째, 연구대상이 되는 범죄통계에 112 신고통계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실시된 연구는 대부분 경찰과 검찰이 발생·피의자·검거원표에 의해 수집·관리되는 공식범죄통계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범죄분석을 위한 자료로서의 가치에 비해 그동안 연구되지 않는 자료가 112 신고통계이다. 112 신고통계 속에는 시민들이 범죄 또는 무질서와 관련하여 발생사실을 신고하고 경찰조치를 요구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112 신고통계는 경찰의 의사결정과정이거나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식범죄통계에 비해 왜곡의 가능성이 적은 장점이 있다.⁵⁾ 또한 무질서행위처럼 향후 범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거나 범죄와의 경계에 놓여있는 행위들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112 신고통계를 공식범죄통계, 피해통계와 함께 범죄연구의 3대 통계자료로 취급하고 있을 만큼 중요도와 활용도가 높은 통계다.

둘째,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또 다른 범죄통계로 재범통계를 들 수 있다.⁶⁾ 재범통계

5) 출동경찰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지나치게 경미하거나, 법적 범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당사자들이 화해에 이르러 다툼의 여지가 없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입건하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범죄통계에서 누락된다. 또한 경찰의 범죄예방정책에 따라 특정 범죄행위에 대한 강력단속 등을 실시하는 경우 실제 범죄발생규모와 상관없이 범죄통계가 증가할 수 있다(노성훈·탁종연, 2015: 80).

6) 재범통계와 관한 '연구원'의 연구로서 「범죄인의 재범률 재정립 방안 연구」(김지선 외, 2014)가 있는데 주로 선진국의 재범통계 실태를 고찰하고 앞으로 한국 재범통계의 개선방안을 개괄적으로 다루었다.

는 범죄행위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집중되는 정도를 파악하여 범죄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형벌제도와 형사사법기관의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이다.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재범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재범통계를 생산·관리·활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경찰과 법무부가 다른 기준에 따라 제각각 재범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나마 통계적 오류와 해석상의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⁷⁾ 이상적으로는 경찰의 범죄발생정보와 법무부의 재판 및 형집행 정보를 연계하여 단일한 공식재범통계를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연구원’과 같은 제3의 기관에서 각 형사사법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취합하여 재범통계를 산출할 수도 있다. 앞으로 재범통계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그리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ICCS 기준을 적용한 범죄통계 제공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015년 국제연합이 ICCS를 채택함에 따라 한국은 범죄분류체계 개발의 의무를 지고 현재까지 다년간 연구사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연구원’은 2016년 통계청, 치안정책연구소와 함께 ‘한국범죄분류 개발 기초연구’에 참여했고 2017년과 2018년에는 통계청에서 발주로 1차, 2차 개발연구가 진행되었다. 앞으로 ICCS 기준에 의한 범죄분류체계가 완성되면 국제 기준을 적용한 새로운 범죄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생산·관리·활용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나의 방안으로 CCJS 웹사이트에 ICCS 기준에 의한 한국과 외국의 범죄통계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국제범죄통계 DB 시스템’(가칭)을 구축할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7) 한국 재범통계의 문제점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노성훈·조준택(2015)의 논문에서 다루고 있다.

참고문헌

- 강은영·조영오·박희정(2018). 2018년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강은영·최수형·박희정(2017), 범죄통계 DB 구축사업(X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강은영·최수형·박희정(2018), 범죄통계 DB 구축사업(XI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강지현·김슬기(2013). 공범이 있는 범죄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 강·절도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강지현·김지선·김한균·박형민·안성훈·이원상·최수형·홍영오(2012). 경찰 「범죄통계」 활용도 제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기광도(1998). 체제통합에 따른 사회변화와 범죄양상 -독일통일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기광도·최영신(1999). 실직자의 일상활동 및 범죄행위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기득·곽대훈(2003). 지리정보시스템과 공간분석을 활용한 범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두섭·민수홍(1994). 개인의 자기통제력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신의기·홍승희·강은영(2007), 범죄통계 활용기반 구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이동원(1990). 범죄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박미숙·홍영오(2014). 범죄백서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안성훈·박성훈·윤옥경·노성훈(2014). 범죄인의 재범률 재정립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지선·장다혜·추지현·박희정(2016). 범죄통계 DB 구축사업(X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영·최수형·황지태·김유근·최걸·박희정(2015). 범죄통계 DB 구축사업(X),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노성훈·조준택(2015). 한국 재범통계의 개선방안, 한국범죄학, 9권 1호, pp.93-126.
- 노성훈·탁종연(2013). 자료공개와 법제도적 개선을 통한 범죄통계 활용 활성화 방안, 한국범죄학, 7권 2호, pp. 127-174.
- 노성훈·탁종연(2015). 112신고통계 개선방향: 입력항목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한국경

- 찰학회보, 17권 5호, pp.75-103.
- 박순진(1999). 범죄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살인과 폭행, 상해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순진·최인섭(1991). 사회구조와 범죄 -경제발전과 인구성장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승진·이동원·박순진(1997). 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1964-199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정선(2007). NIBRS의 소개와 범죄통계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철현(2005).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형민(2007). 한국의 자살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형민(2014). 한국의 자살 발생의 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 자살교사, 자살방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형민·서주연(2015).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I) : 인구고령화와 형사정책의 변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형민·조성현·김선희(2016).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II): 다문화사회의 확산과 형사정책의 변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성한기·박순진(2003).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과 피의자의 방화행위에 대한 범죄·심리학적 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상철·기광도(1993). 범죄발생의 추세분석 : 1964-199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성식(1995). 범죄의 상황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다혜·임석순·지유미(2016). 한국범죄분류 개발 기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준오(2004). Crime in Korea,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준오·유홍준·정태인·이완수(2011).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 경계인으로서의 노숙인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진수명(2000). 신도시지역의 범죄발생상황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2002). 한국의 범죄발생 추세분석 : 1964-200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2003). 한국의 범죄추세 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2005). 세계 주요도시의 범죄발생추세 비교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기광도(1996). 사회계층과 범죄발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기광도(1999). "IMF" 시대에 따른 범죄양상과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인섭·박순진(1993). 도시성장과 범죄 -범죄율의 도시별 분포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인섭·진수명(1998). 지역특성과 범죄발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0), 범죄통계·정보 DB시스템 구축사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1), 범죄통계·정보시스템구축(Ⅳ),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홍영오·박준희·금현섭·박성민·김빛나(2017).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Ⅲ)
: 경제적 양극화와 형사정책의 변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황지태·최수형·김유근·박희정(2014). 범죄통계 DB 구축사업(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 2 장

범죄현상과 대책(Ⅰ) : 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 관련 연구

강 지 현

범죄현상과 대책(I) : 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 관련 연구

제1절 목적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으로 함)은 법무, 형사정책분야의 국책연구기관으로 그 설립목적은 국가의 형사정책수립 및 범죄방지에의 기여에 둔 말 그대로 한국의 형사정책관련 연구를 선도하는 기관이다. 특히, ‘연구원’의 보고서들은 다양한 범죄의 실태와 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한국 사회의 범죄발생 실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를 토대로 발생범죄가 거치는 다양한 형사사법절차와 기관에 대한 평가 및 연구, 그리고 교정기관과 다양한 범죄예방 정책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자료들이다.

여기에서는 지난 30년간 ‘연구원’에서 발표한 폭력·강력범죄와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폭력·강력범죄와 성폭력·가정폭력은 가장 대표적인 신체 대상 범죄로 직·간접적인 노출빈도가 비교적 높고, 사회의 변화나 사람들 사이의 갈등해결양상의 변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은 우리사회의 성인식 및 기존의 가부장적인 성문화, 가족문화 등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범죄라는 점에서 지난 시간의 연구를 살펴볼 의의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오랜 기간의 연구결과를 짧은 시간에 검토·정리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당시 연구자가 처한 다양한 연구환경을 세세히 고려하여 분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원고는 단지 지난 30년의 폭력범죄 관련 연구들을 시간순서별로 혹은 내용에 따라 구분해 보는 일차원적인 정리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밝혀 둔다.

제2절 분석대상의 선정기준

총 49종의 논문이 초기에 ①폭력·강력범죄와 ②성폭력·가정폭력으로 구분되었으나,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이질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①폭력·강력범죄, ②성폭력, ③가정폭력으로 재분류하였다. 최초에 연구진이 분류한 기준과의 차이점으로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구분하였다는 것과 「존속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최인섭 외, 1995)를 폭력·강력범죄가 아닌 가정폭력으로 구분하였다는 점이다. 해당 연구는 상해와 폭행을 다루는 폭력관련 연구이기는 하나, 가-피해자의 가족관계라는 특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재구분하였다.

이 장의 집필목적이 지난 30년간 ‘연구원’에서 실시한 기본·수시·협동연구를 정리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용역과제나 수탁과제는 따로 분석된다는 점에서 폭력이나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한 연구들을 모두 포함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분석대상의 완전성에 문제가 있다. 특히, 용역이나 수탁의 형태로 실시된 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연구들에는 시의성이 높고 정책적 의미가 높은 연구들이 더 많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본과제를 중심으로 지난 30년간 ‘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과제들 가운데 폭력과 성폭력, 가정폭력을 다룬 연구들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들의 추세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여기에서 검토된 보고서들도 주제별로 구분함에 있어 중복분류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완전성의 문제가 남는데, 이는 검토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지 않은 점에서는 큰 장점으로 작용하나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주의를 요한다 할 것이다.

제3절 선정논문의 특성분석을 위한 기준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논문을 정리하거나 특정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논문을 정리한 선행연구들이 차용한 다양한 분류기준이 이미 존재하는데, ‘연구원’의 보고서를 검토, 정리하는 작업은 특정한 특정분야 학술지를 개별 주제별로 분류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인다. 유사한 선행연구에서 차용한 분류방식이나 기준은 주로 연구시기, 연구주제

와 내용, 연구방법, 연구결과 및 활용용도, 연구자 등이 있다(박재풍, 2011; 이운호·김순석, 2006). 이를 고려하여 분류의 기준으로 연구시기와 주제, 연구방법 및 내용 등을 활용하기로 한다. 이들 각각의 장점과 선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①**연구시기**의 경우, 본 보고서의 집필 목적이 지난 30년간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추세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시기별 분석 필요성이 있다. ②**연구주제와 내용**의 경우, 연구주제와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구경향을 파악하고 학문적 발전의 균형성을 점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③**연구방법**의 경우에는, 방법의 경향성 및 변화, 각 방법론의 장단점 및 보완책 등을 고려하여 향후 연구발전을 위한 제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여 포함하였다. ④**연구내용과 결과**의 경우에는, 내용이나 동일, 혹은 유사 주제에 대한 연구결과의 시기별 변화 등을 살펴볼 수 있어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주제나 경향 특성 파악하고 보다 다양하고 균형적인 연구를 위한 저변확대의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러한 기준들을 활용하되 느슨하게 분류하고 연구결과나 세부 분야의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기로 한다. 분류를 느슨하게 하고 자유로운 기술방식을 택한 것은, 주제 내의 연구과제들이 매우 이질적이고 다양한 세부주제 및 목적을 가지고 있어 세세한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얻는 실익이 크지 않고,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자유롭게 살펴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구자의 경우에는, 기본과제가 대부분이라 많은 연구들이 공동연구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연구자는 대부분 범죄학, 사회학, 심리학 등 사회과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분류기준으로서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고려하지 않았다.

제4절 폭력·강력범죄의 연구경향

1. 연구시기를 중심으로

폭력·강력범죄의 연구시기별 분포는 아래와 같다. 대략적으로 1990년대에 6종, 2000년대에 10종, 2010년 이후로 5종이 발표되었고, 숫자로만 본다면 2000년대에 가장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런 연구발간 실태는 과거에

비해 ‘연구원’이 매년 수행하는 전체 연구과제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앞서 언급한 분석논문의 선정기준에 영향받은 결과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전체적으로 수행과제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폭력·강력범죄 관련 연구가 늘어났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고, 중복분류를 허용하지 않은 선정기준의 문제로 인해 폭력관련 연구가 다른 범주에 속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완전한 추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표 II-2-1] 연도별 폭력·강력범죄 연구실태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1991	2	9.5	9.5
1992	3	14.3	23.8
1995	1	4.8	28.6
2002	1	4.8	33.3
2003	3	14.3	47.6
2004	3	14.3	61.9
2005	1	4.8	66.7
2008	2	9.5	76.2
2010	1	4.8	81.0
2011	1	4.8	85.7
2012	1	4.8	90.5
2013	1	4.8	95.2
2014	1	4.8	100.0
전체	21	100.0	

2. 연구주제에 따른 분류

연구주제를 기준으로 폭력범죄를 포괄적으로 다룬 일반연구와 폭력 및 강력범죄의 세부 범죄유형에 주목한 연구로 구분하였다. 연구주제로 먼저 구분한 것은 폭력이나 강력범죄에 속하는 범죄의 세부 종류들이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인 점을 반영하였다.

먼저 폭력·강력 범죄를 다룬 총 21종의 연구들 가운데 6종이 ①일반적인 폭력범죄 문제에 주목한 연구들이었고, 나머지 15종은 세부 범죄유형에 주목한 연구들이었다. 이들 15종은 다시 그 주제에 따라 5가지로 구분되었는데, ②살인, ③강도, ④방화, ⑤인신매매 및 유괴, ⑥새로운 범죄유형으로 구분되었다. 각 주제별 분포는 아래와 같다.

[표 II-2-2] 폭력·강력범죄 연구 세부 주제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폭력/강력범죄 일반	6	28.6	28.6
살인	3	14.3	42.9
강·절도	4	19.0	61.9
방화	3	14.3	76.2
인신매매 및 유괴	3	14.3	90.5
새로운 범죄유형	2	9.5	100.0
전체	21	100.0	

먼저 ①폭력·강력범죄의 일반연구는 다시 그 연구대상에 따라 범죄실태에 주목한 연구와 한국사회의 폭력문화에 주목한 연구로 구분되었다. 먼저 포괄적인 폭력범죄의 실태를 분석한 연구로는 「폭력범죄의 유형 및 특성에 관한 연구」(박형민 외, 2010)와 「주요국가의 강력범죄발생추세를 비교분석한 연구」(최인섭, 2004)가 대표적이다. 한국사회의 폭력문화에 주목한 연구로는 「한국인의 폭력태도에 관한 연구」(김준호 외, 1991), 「한국사회의 폭력에 관한 연구」(최인섭 외, 2003), 「한국인의 갈등해소방식: 폭력을 중심으로」(최인섭 외, 2005), 「한국사회 폭력문화의 구조화에 관한 연구」(연성진 외, 2008)가 있다.

다음으로, 세부 폭력유형에 주목한 연구들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②살인을 다룬 연구는 총 3종으로 일반론적인 실태조사 2종(김상희 외, 1991; 박형민, 2003)과 가해자의 특성에 주목한 세부유형을 분석한 연구(강은영 외, 2008)가 1종 있었다. ③강·절도에 관한 연구들은 총 4종이었는데, 강·절도의 실태에 관한 일반론적 연구(심영희 외, 1992)와 가해자 특성 가운데 범행대상 선택(황지태, 2004)이나 연쇄강도(김지영 외, 2014)에 주목한 연구, 그리고 범행수법 및 도구에 주목하여 총기강도를 분석한 연구(황지태, 2002)로 구분된다.

④방화의 경우에도 총 3종의 연구 가운데 2종은 실태분석(최인섭 외, 1992; 박형민, 2004), 1종은 가해자 특성에 주목하여 연쇄방화를 분석한 연구(박형민 외, 2012)였다. ⑤인신매매 및 유괴, 납치 관련 연구도 총 3종이었는데 실태를 분석한 1종의 연구(차중천 외, 1992)와 납치를 다룬 연구 1종(이동진 외, 2003), 피해자의 특성을 기초로 어린이 대상 유괴범죄에 주목한 연구 1종(최인섭 외, 1995)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2종의 연구가 ⑥새로운 범죄유형을 다루었는데 2011년과 2014년에 각각 실시된 「중오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김지영 외, 2011), 「묻지마 범죄자에 관한 연구」(윤정숙 외, 2014)이다. 이들은 전통적인 방식의 법률규정 중심 범죄하위유형에서 벗어나 최근 사회문제로 거론되는 범죄를 분석한 연구로 분류된다.

세부 폭력범죄 유형별로 주로 어떤 연구내용을 다루었는지 살펴보았는데, ①폭력·강력범죄의 일반연구 6종은 사건 및 범죄자 특성을 다룬 연구와 인식/피해조사 연구가 각각 3종씩이었다. 세부 유형의 폭력범죄를 다룬 ②살인, ③강도, ④방화, ⑤인신매매 및 유괴의 경우에는 모두 사건과 범죄자 특성에 주목한 연구로 나타났고, ⑥새로운 범죄유형을 다룬 연구 2종은 사건과 범죄자 특성을 다룬 연구가 1종, 인식과 피해조사에 주목한 연구가 1종이었다. 이를 통해 세부유형에 주목한 연구들(살인, 강도, 방화, 인신매매 및 유괴)은 모두 가해자와 사건특성에 주목하여 일반인의 피해와 인식에 주목한 연구들은 거의 수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아마도 범죄피해조사에서 이러한 폭력피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주제별 연구경향은 연구수준 측면에서는 일반연구보다는 범죄유형별 분석이 많았고 범죄유형별 세부주제의 선정은 실태조사가 주를 이루었으며 다음으로는 범행 및 가해자 특성(연쇄, 여성)이나 수법 등에 주목하는 경향 있었다. 피해자 관련 특성에 주목하여 폭력범죄 실태를 분석한 연구는 어린이 대상 유괴(최인섭 외, 1995)가 유일하였다. 연구주제 관련하여 최근 경향으로 이해되는 것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주목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유형의 범죄가 형법이나 법률상의 범죄유형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관심주제로 포함하여 분석하였고, 실제 수사재판기록을 통해 해당 유형의 범죄특성을 분석해보거나 피해조사를 통해 피해율과 피해자특성 등을 살펴본 시도들이었다. 이는 시의성 있는 연구주제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회적 용어에 주목하여 폭력범죄의 새로운 유형을 반영하며 법률적 개념정의를 선도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표 II-2-3】 폭력·강력범죄 연구 세부 주제와 연구내용

	사건/범죄자 특성	인식/피해 조사	전체
폭력/강력범죄 일반	3	3	6
살인	3	0	3
강도	4	0	4
방화	3	0	3
인신매매 및 유괴	3	0	3
새로운 범죄	1	1	2
전체	17	4	21

3. 연구방법의 특성

연구방법의 분류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 그리고 혼합 연구방법(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을 모두 사용)의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하고, 양적연구의 경우에는 자료수집 방식을 다시 세세하게 분류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다. 그러나 살펴본 결과 이러한 대분류로 구분할 경우 1-2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양적인 연구와 질적 연구를 모두 사용한 연구방법으로 구분되어 이러한 분류는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오히려 세세하게 조사방법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각 연구에서 언급한 연구방식을 모두 상세하게 중복표시하고 동일한 집단에 대한 조사라도 방식이 다르면 이질적인 조사방법으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재소자 심층면접과 재소자 설문조사의 경우, 통칭하여 재소자 조사로 하지 않고 일일이 구분하여 재소자 심층면접과 재소자 설문조사로 나누었다. 이처럼 조사방법을 상세히 살펴보는 것이 지난 30년간의 연구방법의 변화나 진화를 잘 보여줄 것으로 생각한다.

먼저, 21종의 폭력·강력범죄에 대한 연구에서 언급한 연구조사 방법은 총 12가지였고, 이들 중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은 공식통계 분석(11종)으로 전체 약 52%에서 사용되었다. 주로 대검의 「범죄분석」을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추세나 가해자 특성, 사건 특성 등의 요약정보를 기술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음으로는, 수사재판 기록조사(9종),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5종), 재소자 대상 설문조사(5종) 등이었다.

[표 II-2-4] 폭력·강력범죄연구 연구방법

	N	퍼센트	케이스 중 %
해외입법례	3	6.4%	14.3%
보도분석	2	4.3%	9.5%
사례분석	1	2.1%	4.8%
내부자료	2	4.3%	9.5%
일반인 설문조사	5	10.6%	23.8%
공식통계분석	11	23.4%	52.4%
수사재판기록조사	9	19.1%	42.9%
재소자 기록조사	2	4.3%	9.5%
재소자 설문조사	5	10.6%	23.8%
재소자 심층면접	4	8.5%	19.0%
경찰관 설문조사	2	4.3%	9.5%
현장 관찰조사	1	2.1%	4.8%
전체	47	100.0%	223.8%

다음으로, 세부 주제별로 연구방법에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았는데, 폭력·강력범죄 일반연구들은 주로 설문조사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살인과 강·절도, 방화, 인신매매 및 유괴에 관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공식통계와 재소자 설문조사, 재소자 기록조사 및 수사재판기록조사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난 공통점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범죄유형을 살펴본 연구들은 해외의 입법사례와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수사재판기록조사를 연구방법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5] 폭력·강력범죄연구 연구방법-연구주제별

	폭력/강력 범죄일반	살인	강도	방화	인신매매 및 유괴	새로운 범죄유형	전체
해외입법례	1	0	0	1	0	1	3
보도분석	1	0	1	0	0	0	2
사례분석	0	0	0	1	0	0	1
내부자료	0	0	1	1	0	0	2
일반인 설문조사	4	0	0	0	0	1	5
공식통계분석	2	3	2	2	2	0	11
수사재판기록조사	1	2	2	1	2	1	9
재소자 기록조사	0	2	0	0	0	0	2
재소자 설문조사	0	3	2	0	0	0	5
재소자 심층면접	0	0	1	2	1	0	4
경찰관 설문조사	2	0	0	0	0	0	2
현장 관찰조사	1	0	0	0	0	0	1
전체	6	3	4	3	3	2	21

4.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가. 폭력/강력범죄 일반연구

총 6종인 이들 ①일반연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범죄실태에 주목한 연구 2종과 한국사회의 폭력문화에 주목한 연구 4종으로 구분되었다. 먼저 포괄적인 폭력범죄의 실태를 분석한 연구로는 「주요국가의 강력범죄발생추세를 비교분석한 연구」(최인섭, 2004)와 「폭력범죄의 유형 및 특성에 관한 연구」(박형민 외, 2010)가 있다.

「주요국가의 강력범죄발생추세를 비교분석한 연구」(최인섭, 2004)는 당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던 한국의 강력범죄 문제에 주목하여 이러한 지속적인 증가와 심각해져가고 있던 폭력성 범죄(강력범죄)의 추세가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현상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10개 강력범죄(살인, 방화, 강도, 강간,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의 발생추세를 정리하고 이를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유사범죄유형에 대한 추세와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개별 범죄유형별로 우리나라와 외국의 범죄 발생 추세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음을 밝혔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영국과 더불어 강간범죄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과 폭행, 상해, 폭처법이 2000년대 초까지 크게 증가한 점 등이 인상적인 차이로 지적되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 전체범죄율은 우리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일본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 영국과 미국 독일 등에 비해 월등히 낮은 편이었으나 강력범죄가 전체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국제비교연구는 그 법률의 규정과 이에 따른 통계집계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하지만 우리의 범죄발생 실태를 양적·질적인 면에서 새롭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큰 장점이 있다. 다만, 이러한 국제비교 연구, 특히 범죄통계를 활용하여 발생·보고되는 범죄의 양적, 질적 차이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는 연구는 그러나 이 연구 이후로는 수행된 적이 없다는 점은 다소 아쉽게 느껴진다.

「폭력범죄의 유형 및 특성에 관한 연구」(박형민 외, 2010)에서는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폭력범죄의 유형과 실태파악을 목적으로 공식통계 분석, 폭력사건에 대한 수사재판기록 분석, 현장 관찰조사, 경찰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2002년

이후로는 공식통계상 폭력범죄가 조금씩 감소했으며, 폭력범죄가 구체적인 폭력행위를 규제한 법률에 따라 특성이 규정되기보다는 가해자의 성별과 가-피해자의 관계(아는 사람인지 여부)와 음주여부가 중요한 변수임을 밝혔다. 범죄의 발생관련 특성 뿐 아니라 경찰서 현장에서의 관찰조사 및 경찰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경찰관들의 폭력범죄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도 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 경찰관들은 화해중재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며 인지 사건 가운데 정식폭력사건으로 처리되는 비율은 20% 이하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들 두 연구, 폭력범죄의 실태에 주목한 일반연구인 최인섭(2004)의 연구와 박형민 외(2010)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증가추세를 보이던 우리나라의 폭력범죄는 2002년 이후로는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박형민 외(2010)의 연구에서는 현장관찰조사를 활용하여 실제 폭력사건의 처리방식이나 경찰관의 태도 등을 분석한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현장관찰조사는 이 연구에서 유일하게 사용한 연구방법이었다. 이들 두 연구들은 각각 해외의 통계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폭력·강력범죄의 발생특성을 살펴보고 폭력범죄의 유형과 처리과정 상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한국사회의 폭력문화에 주목한 연구 4종은 「한국인의 폭력태도에 관한 연구」(김준호 외, 1991), 「한국사회의 폭력에 관한 연구」(최인섭 외, 2003), 「한국인의 갈등해소방식: 폭력을 중심으로」(최인섭 외, 2005), 「한국사회 폭력문화의 구조화에 관한 연구」(연성진 외, 2008)이다.

먼저, 처음으로 이루어진 「한국인의 폭력태도에 관한 연구」(김준호 외, 1991)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집단(법조인과 경찰)과 법 집행의 대상이 되는 집단(일반인과 대학생)의 폭력에 대한 허용도와 태도, 법 태도 등을 비교하였다. 집단별로 폭력에 대한 태도, 법에 대한 태도가 폭력행위에 대한 허용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폭력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특히 우리사회에서는 폭력전반에 대해 수용하는 태도를 보일수록 폭력행위에 대한 허용도가 높은 반면, 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와 법에 대한 태도는 이중적인 태도가 있었다. 즉, 전반적이고 보편적인 폭력은 거부하나 훈육적인 폭력은 수용하며 효율성을 인정하였다. 법에 대한 태도와 폭력행위 허용도와와의 관계에도 이중적인 태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방어적 폭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소외감을 크게 느끼거나 악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등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더 허용하는 한편, 질서유지적인 폭력에 대해서는 더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성별과 나이를 제외하고는 폭력에 대한 태도나 허용도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사회에서의 폭력을 둘러싼 가치갈등은 수입 등의 경제적인 면에 기인하기 보다는 나이와 성별 등 문화갈등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국사회의 폭력에 관한 연구**」(최인섭 외, 2003)에서는 한국사회의 폭력 현상의 현주소 진단 및 폭력과 방지대책마련이라는 목적으로 정치·공권력, 가족과 여성, 청소년·교육, 직장 및 작업장, 매체와 여가, 사이버 폭력, 일상생활과 폭력 등 사회 각 분야별로 폭력현상과 대책을 기술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통계와 시대사적 사건 등을 토대로 폭력의 현상을 파악하고 분야별 대책을 논하였다. 이처럼 전체 사회의 폭력 현상을 종합적인 형태로 분석하고자 한 시도는 이 연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한국인의 갈등해소방식: 폭력을 중심으로**」(최인섭 외, 2005)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현상을 분석하고 갈등상황에서 해결의 수단으로 폭력을 동원하는 현상을 파악하고 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전국 7대 도시 20세 이상 성인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 결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겪는 갈등은 가족 간의 갈등이었다. 또한, 지속적인 상호작용 관계와 일시적인 상호작용 관계는 각각 갈등의 양상과 폭력적 대응방안을 선택하게 되는 요인들이 서로 상이하였다. 지속적인 상호작용 관계에서는 주로 개인의 감정이나 태도특성에 따라, 일시적인 상호작용 관계에서는 주로 상대방의 특성에 따라 폭력적인 대응방식의 선택여부가 결정되었다. 이러한 차이에 따라 지속적인 상호작용 관계에서는 사소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하고 폭력을 절대로 금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반면, 일시적인 상호작용 관계에서는 상황 의존적인 대응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는 폭력의 발생원인을 보다 근본적으로 탐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특히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적 갈등해결의 선택을 막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통해 폭력감소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연구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사회 폭력문화의 구조화에 관한 연구**」(연성진 외, 2008)에서도

한국사회의 폭력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을 위한 방안제시에 주목하였는데, 특히 가정폭력의 문제와 함께 학원스포츠, 의료현장 및 외국인 근로현장에서의 폭력문제를 다루었다. 전국 7대 광역시 1,505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가정에서의 폭력경험과 폭력에 대한 태도 등을 조사하였고, 중·고등·대학교의 운동선수 81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델파이 및 심층면접, 서울시 소재 종합병원의 간호사, 의사를 비롯한 의료행정직 등 150명에 대한 설문조사, 수도권 제조업 생산직 외국인노동자 150명에 대한 일대일 면접 등을 통해 각각 스포츠와 의료계, 외국인 노동자의 폭력문제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이전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분야를 다루어 폭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상에서 살펴본 일반적인 폭력에 대한 연구들은 사회 안에서 폭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와 관련한 다양한 집단들의 이질적인 위험정도 및 이에 따른 대책 등을 논한다는 점 등에서 기초연구의 성격이 강하며 필요성도 큰 주제들이다. 다만, 이들 일반론적인 폭력현상이나 태도 등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와 2000년대에 활발히 이루어진 반면 2010년 이후로는 거의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유사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지난 연구결과들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완전하게 우리사회의 폭력양상이나 실태, 변화 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 세부 폭력범죄 유형 연구

연구된 주제는 앞서 분류한 것과 같이, ②살인, ③강·절도, ④방화, ⑤인신매매와 유괴, 그리고 ⑥새로운 범죄유형이다.

먼저 ②살인을 다룬 연구들은 총 3종이었는데 비교적 초기에 실시된 2종의 연구에서는 일반론적인 실태조사가, 이후 가해자 특성에 주목한 세부유형분석연구가 이루어졌다. 먼저, 「**살인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김상희 외, 1991)에서는 형법상의 단순살인과 존속살인, 영아살해를 연구범위로 두고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를 통해 1980년부터 1989년까지의 추세를 분석하였고, 이와 함께 서울지검, 마산지검, 대전지검 홍성지청에서 처리한 살인사건 153건의 수사 및 재판기록을 검토하였으며, 부산·광주·대전·청주 교도소의 살인범죄 재소자 348명에 대한 신분장 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살인범죄자의 일반적 특성을 밝혔는데 주로 20대가 많고 기혼

자와 저학력자의 비율이 높으며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이 많았다. 또한, 전체 사건의 약 30%가 여름에 발생하고, 밤(20-24시)과 심야(0-04시), 저녁(16-20시) 순으로 발생률이 높고 주택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약 50% 정도이며 흉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약 79%로 대부분이었다. 특히, 발생동기에 있어서 성별 차이도 발견하였는데 남성은 사소한 시비나 모욕감으로 인한 살인이 각각 30%와 23%로 가장 많았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시비나 모욕감으로 인한 살인이 각각 13%와 17%에 불과했으며 남성에 비해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본인의 비관으로 인한 살인의 비중이 높은 차이가 있었다.

이후, 2003년에 수행된 후속연구인 「살인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Ⅱ」(박형민, 2003)에서는 앞선 연구와 동일하게 대검의 「범죄분석」 자료를 활용하였을 뿐 아니라 수사 및 재판기록조사, 재소자 대상 설문조사를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다만, 앞의 연구와 비교하여 나타난 차이점들이 있었는데, 1980년대에 비해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전체적인 살인범죄의 증가추세와 함께 10-20대 살인범의 비율이 줄어들고 대신 30-40대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특성이 있었다. 또한, 전체적인 고학력자의 인구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살인범죄자 중에서도 고학력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늘어났으며 무직자의 비율은 여전히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전과가 있는 범죄자들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범죄통계원표 분석을 통해 살인, 강도살인, 강도강간 등을 포함하는 살인범죄와 치사범죄(상해치사 및 과실치사 등)를 비교하여 살인에서는 흉기를 사용하여 사람을 죽게 한 사건의 비율이 높고 흉기를 사건 전부터 소지한 경우가 많다는 차이 등을 밝힘으로써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장한 특성도 있었다.

수사 및 재판기록조사를 통해 나타난 특성들 가운데에서도 존속살해의 경우 정신질환자가 많다는 점, 살인은 다른 폭력성 범죄에 비해 여성피해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 일반살인의 피해자는 30대가 가장 많았으나, 존속과 강도살인 피해자는 연령대가 높은 피해자가 많다는 차이 등도 밝혔다. 이와 함께, 사건의 다양한 특성과 가·피해자 관련 특성들이 살인사건의 세부유형별 차이도 이전 연구에 비해 상세하게 밝힌 차이가 있었는데, 교도소 수감 중인 재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남성은 처음 보는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았으나 여성은 과반수가 배우자에게 가해한 것으로 나타난 차이를 발견하였다. 또한, 사건의 동기와 상호분쟁여부, 사건 당시 및 이후의 느낌이나

후회 등, 이전 연구에 비해 더 다양하고 세분화된 조사항목을 포함하여 분석한 점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살인범죄의 실태와 유형별 특성: 연쇄살인, 존속살인 및 여성살인 범죄자를 중심으로**」(강은영 외, 2008)에서는, 앞의 두 연구와 동일하게 일반적인 살인 범죄의 특성을 살펴봄과 동시에 연쇄살인과 존속살인 및 여성범죄자로 연구대상을 좁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당시에도 살인의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체로 가·피해자 모두에서 남성이 많고, 30대의 범죄자 비율이 높으며, 단독범이 많다는 특성 등을 밝혔다. 또한,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폭력이나 논쟁이 있는 경우가 약 절반정도인데 이는 주로 피해자가 유발하거나 상호적으로 유발되는 경우가 많았고, 주로 흥기로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는 특성 등을 발견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던 다수살인과 존속살인, 그리고 여성살인의 유형과 특성을 소개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이 있다.

다음으로, ③강·절도에 관한 연구들은 총 4종이었는데, 먼저 「**강·절도의 범죄실태에 관한 연구**」(심영희 외, 1992)에서는 발생실태에 주목하여 강도나 절도를 1회 이상 행한 사람들의 태도, 범행동기,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을 경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강도와 절도문제를 다루었다. 공식통계를 통한 추세 분석과 함께, 성인 및 소년 강·절도 재소자 96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를 통해 유형분류를 시도하였다. 범행의 횟수, 범행동기, 범행의 준비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직업적 유형, 기회주의적 유형, 그리고 일회적인 유형으로 분류하여 특성을 분석하였다.

「**총기강도 사건의 실태와 대책**」(황지태, 2002)에서는 강도의 범행수법 및 도구에 주목하여 총기강도 사건의 실태와 대책을 분석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총기강도를 다른 유일한 연구로써,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발생한 총기강도 총 99건의 수사재판 기록을 분석하고 신문보도와 경찰청 내부자료 등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총기강도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총기는 가스총(73.7%)이었고, 다른 강력사건에 비해 농촌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으며, 도주 중 체포 면탈을 목적으로 사람에게 발포할 위험이 가장 컸고 약 50% 정도는 총기 이외의 흉기, 주로 칼을 휴대하였음을 밝혔다. 피의자들은 평균 29-30세로 전체 강도사건에 비해 연령대가 높았으며, 범행 동기는

채무변제 혹은 유흥비 마련이 대부분이었다. 사무실 대상 범죄에서의 공범비율이 높았고 오히려 은행 강도의 경우에는 단독범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총기강도 피의자의 약 40%가 현행범이었으며, 가스총 강도 피의자들이 남녀에 상관없이 범행대상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공기총이나 엽총 강도피의자들은 주로 남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피해자들의 저항정도와 관련해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저항정도가 강한 성별차이는 발견되었으나, 총기종류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피해자 신체피해는 가스총의 경우 상해정도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반면 금속탄환 총기강도의 경우에는 최소한 중상 혹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수가 총기별로 차이는 없었고, 예상과 달리 은행 강도의 피해액도 더 높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연구에서는 총기유통과 관련한 정책과 금융기관 대상 총기강도 예방책 등을 제시하였다.

「강·절도의 범행대상 선택에 관한 연구」(황지태, 2004)는 범행의 미시적 조건을 밝히고 이를 통해 범죄예방의 중·단기적 대책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특히, 침입강·절도범의 피해자 선택이라는 두 가지 부분에 집중하여 강·절도범의 유형을 기본적인 수법의 차이에 따라 침입강도, 대인강도, 침입절도, 대인절도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강·절도범들은 반드시 합리적인 선택 이론의 가정에 따라 범죄이익을 극대화하고 범죄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나, 연령이나 범죄경력 등에 따라서 범행대상을 선택하는 합리성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자 선택과 관련해서, 점차 여성 강도피해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특히 침입강도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이 많을수록 통제가 쉽다고 여겨지는 여성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난 차이 등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연쇄 강력범죄 실태조사 III: 연쇄 강도」(김지영 외, 2014)에서는 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전 연구들에서 주목받지 못한 연쇄강도의 실태를 분석하였는데 수사재판기록조사와 수용자 심층면접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범행 전에 치밀한 사전준비로 도구나 흉기를 써서 피해자들을 제압하는 특성을 가진 ‘계획형’의 연쇄강도가 ‘기회형’의 범죄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장소를 답사하는 등 수법에 있어서 치밀함이 두드

러지고 신원을 감추기 위한 노력을 하며 도구를 사용하는 등 검거를 막기 위한 법적 인식력을 보이는 ‘계획형’ 사건들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은 사건 발생 시 수사 및 범인검거가 더 어려워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계획형’ 범죄자의 경우에는 범행당시 연령이 비교적 높고 동종전과 및 실행전과가 상대적으로 더 많으며, 특히 강도 범죄 체포횟수가 더 많다는 점은 동종의 범죄유형 연계분석을 통한 수사와 검거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반면 ‘기회형’ 범죄자의 경우에는 주로 상업지역 노상에서, 술 취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볼 때, 강도빈발 지역 순찰 및 환경개선 등을 통한 범죄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④방화의 경우에도 총 3종의 연구 가운데 2종은 실태분석(최인섭 외, 1992; 박형민, 2004), 1종은 가해자 특성에 주목하여 연쇄방화를 분석한 연구(박형민 외, 2012)였다. 먼저 「**방화범죄에 대한 연구**」(최인섭 외, 1992)는 80년대 후반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인 방화범죄에 대한 최초 연구로써 공식통계와 사례연구를 통해 사건 특성과 가해자 특성을 분석하였다. 방화의 발생원인은 ‘원한분노’, ‘가정불화’와 같은 감정적 요인이 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시 방화의 증가는 우발적 범죄의 증가로 인한 것이었다. 또한, 새벽시간대에 많이 발생하고 주택방화와 노상방화가 많으며, 주로 도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방화범죄자의 경우에는 남성이 90%이며 20대가 가장 많았고 무직자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대검의 「범죄분석」에서 발표된 인명피해정도는 내부부의 「화재통계연보」와 차이가 있었는데, 「화재통계연보」가 방화에 의한 인명피해나 피해자의 인원이 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약 10여년 뒤 이루어진 「**방화범죄 실태에 관한 연구**」(박형민, 2004)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방화범죄는 여전히 남성범죄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무직자의 비율은 증가하였으며, 30대 범죄자가 많으나 40대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밝혔다. 특히, 하류층의 범죄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알코올 상용자의 비율과 전과 4범 이상의 범죄자 범행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방화범죄의 유형별 특성도 밝혔는데, ‘실화’의 경우에는 여성 가해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현주건조물 방화’와 ‘실화’의 경우에는 40대 범죄자가 많았다. 방화의 대부분은 단독범죄이지만 ‘공용건조물방화’의 경우에는 약 50%가 공범과 함께 범행을 했으며, 인명피해가 나는 경우에는 친구나 가족, 애인 등 정서적으로

가까운 피해자가 많았다. 또한, '실화'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방화는 우발적 동기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재산범죄의 성격을 띄기 보다는 공공위험범적 성격과 함께 일종의 폭력성 범죄의 성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연구에서 밝힌 방화의 특성을 보다 자세히 분석한 것과 함께 이 연구에서는 방화범죄자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면접조사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방화범죄자들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낮은 자존감'이었으며, 특히 이들은 사회적 자원이 부족하고 분노나 충동조절이 어려우며 알코올의존성이 높은 특성이 있었다. 이러한 특성들에 기초하여 폭력성 범죄의 성격을 보이는 방화범죄에 대한 대책도 제시하였다.

「연쇄 강력범죄 실태조사 I 연쇄강도」(박형민 외, 2012)에서는 피해심각성에 비해 주목을 덜 받았던 연쇄방화를 다루었는데 수사재판기록조사와 재소자 면접을 하였다. 연쇄방화범은 남성이 절대다수이며 30대 이하가 약 60%였고, 교육수준이 낮고 단순노동직 종사자가 많았다. 어린 시절 원만하지 않은 가족관계를 가진 경우가 많았고, 전과를 가진 경우가 약 60%였으며, 연쇄성 방화범은 비연쇄성 방화범에 비해 연령이 낮고 미혼이며 어릴 적 학대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연쇄와 비연쇄성 방화는 처리과정과 결과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연쇄방화는 범인검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구속수사와 구공판 비율이 높았으며 2심과 3심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또한, 범행특성에서도 연쇄성 방화는 비연쇄에 비해 새벽발생 비율과 범행당시 술을 먹지 않은 비율이 높았고, 범행장소가 가깝고 친밀한 장소인 경우가 더 많아 범행 시 걸어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범행 이후 사건현장을 바로 이탈하는 비율과 후회하고 반성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범행 사이의 심리적 냉각기 유무로 구분한 연쇄방화와 연속방화의 차이도 발견하였는데, 연쇄방화의 경우 연속방화에 비해 연령이 낮고 어릴 적 학대경험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검거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길었다. 심층면접을 통해서는 이들 연쇄방화범들이 스트레스와 긴장을 많이 경험한다는 점과 사회적 지지체계가 취약하다는 점, 어린 시절 불우한 경험을 가진 경우가 많고 학업 중단자가 많다는 것도 밝혔다. 또한, 성격적 측면에서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방화 및 연쇄방화의 특성 분석과 함께, 민간의 화재조사 기능이 취약하며 공공조사기관 상호간의 협조체계가 부족하며 전문조사요원의 능력과 과학적 연구가 부족하여

화재조사의 신뢰성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방화수사체계 개선방안도 논하였다.

⑤인신매매 및 유괴, 납치 관련 연구는 총 3종이었는데 실태를 분석한 1종의 연구(차종천 외, 1992)와 납치를 다룬 연구 1종(이동진 외, 2003), 피해자의 특성을 기초로 어린이 대상 유괴범죄에 주목한 연구 1종(최인섭 외, 1995)이 있었다.

먼저 「인신매매의 실태에 관한 연구」(차종천 외, 1992)에서는 당시 큰 사회적 문제였으나 막연히 정의되어 오던 ‘인신매매’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사회불안의 대표현상인 ‘인신매매’의 실태를 구체적 자료를 통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의 「약취 및 유인에 관한 죄」 중 인신매매 사건들의 수사재판기록을 분석하였는데, 인신매매 실태는 ‘강제납치, 폭행, 강제매매’ 등으로 상징되던 일반적인 관심과는 달리, 매춘이나 비합법적인 직업소개 등의 범주에서 비합리적, 비합법적 사회과정의 성격이 더 강했다. 특히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신매매는 유흥·매춘업소 업주의 사주에 의해 점조직 형태로 전개되거나, 아니면 즉흥적인 비전문적 범죄자들에 의해 자행되는 두 가지 방향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주요 피해대상은 10대의 가출소녀 및 향락유흥업소 종사자로 추정되었고, 최초 유인방법으로는 취업소개를 발미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즉, 이 연구에서는 인신매매가 하나의 독자적인 범죄과정으로 성립되기 보다는 매춘사회에 대한 전략적 충원기제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매춘사회의 주도하에 그 의지에 따라 종속적 내지 부차적으로 전개되는 범죄현상으로 정의하였다.

「어린이 유괴범죄에 관한 연구」(최인섭 외, 1995)에서는 12세 이하의 아동 약취·유인죄로 처리된 사건 107건의 수사 및 재판기록 자료와 공식통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공식통계에서 나타난 어린이 유괴는 발생건수는 큰 변화가 없으나 특가법에 적용되는 범죄의 비중은 높아지는 특성이 있었다. 하위유형은 ‘양육형’, ‘몸값 요구형’, ‘협박 이용형’, ‘불분명한 목적’ 등으로 구분되며, ‘영리 목적형’과 ‘성적욕구 충족형’은 비교적 빈도가 낮은 하위유형이었다. 주로 어린이의 일상적인 공간에 범죄자가 침입함으로써 발생하며, 일반인의 인식과는 달리 어린이 유괴 가운데 ‘몸값 요구형’ 범죄는 많지 않았다. 어린이 유괴범죄는 다른 일반 범죄나 인신매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 범죄자 비율이 높은 차이가 있었으며 피해자는 남자어린이와 여자어린이가 각각 절반 정도씩이었다.

「**납치범죄에 관한 연구**」(이동진 외, 2003)에서는 공식통계분석과 함께 신문에 보도된 사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고전적인 납치범죄, 즉 ‘몸값 요구형’ 납치에 초점을 두고 납치범죄의 특징을 행위, 가해자, 피해자의 세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공식통계를 활용하여 납치범죄의 추세와 2002년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2003년 상반기 신문에서 보도된 34건의 납치범죄 사례를 통해 납치범죄가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을 살펴보고 예방책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발생사건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납치범죄의 예방대책을 피해발생 전의 잠재적 예방과 피해발생 후의 인질구출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납치 예방의 정책을 제도적(거시적) 수준과 범죄통제의 조건변수 통제 측면에서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⑥새로운 범죄유형을 다룬 연구 2종 가운데 「**증오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김지영 외, 2011)는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변화되어 가는 외중에 사회적 관심은 증가하였으나 실증연구가 부족하여 외국의 법제도 소개에만 머물렀던 증오범죄를 다루었다. 실태조사를 통해 현실을 파악하고 우리의 법체계 안에서 증오범죄를 어떻게 평가, 수용할 것인가를 논하였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편견에서 발생하는 증오범죄에 주목하여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유학생 6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내국인 대상 조사인 범죄피해조사 결과와 비교하였다. 조사표집의 수가 적고 편파표집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증오범죄 발생률이 낮지 않음을 발견하였고, 54.5%는 1회성 피해에 그쳤으나 나머지는 반복피해를 경험하여 평균피해 횟수는 3.2회로 나타났으며, 직장에서의 피해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중교통, 학교 등이었다. 이들의 범죄두려움도 분석하여 경제적 위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밝혔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 형법에서 증오범죄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논하였다.

「**묻지마 범죄자에 관한 연구**」(윤정숙 외, 2014)에서는, 당시 사회적 관심과 불안의 대상으로 자주 언급되던 ‘묻지마 범죄’를 다루었다. 개념상 범죄의 동기가 알기 어렵다는 점과 비면식 피해자를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특성을 토대로 2012년의 수사 재판기록조사를 통해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과 유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묻지마 범죄자는 30대와 40대의 무직자인 남자가 많았고, 약 75%가 전과가 있었는데 주로 폭력

전과가 많았다. 범행은 살인과 상해가 대부분이었고 범행당시 분노를 느낀 경우가 많았으며,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가 양호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과거 혹은 현재에 정신질환 상담을 받은 경우가 절반을 넘었으며 인지 및 사고에 심각한 문제를 가진 경우가 많았다. 특히, 감정적으로 충동성 조절에 문제가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 대인관계에서도 고립, 불신 등의 문제를 가진 경우가 많았다. 세부 유형구분도 실시하였는데, 지리적 공간상에서 크게 ‘현실불만형’, ‘정신장애형’, ‘만성분노형’의 세 가지로 구분되며 유형별 범행이나 범죄자 특성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대안이 제시되었는데, ‘현실불만형’ 묻지마 범죄자에 대해서는 지역과 사회가 대인관계의 극단적 회피 혹은 불만형 사람들의 발굴과 치료가, ‘만성분노형’을 위해서는 고위험군 범죄자 관리체계의 도입이, ‘정신장애형’을 위해서는 구금치료시설의 확대와 외래치료명령제도 도입 및 사후관리체계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제5절 성폭력범죄의 연구경향

1. 연구시기를 중심으로

성폭력 관련 연구는 총 18종이었는데 연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지난 30년간 비교적 꾸준히 성폭력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 이 분류에는 수탁이나 용역형태의 연구과제가 빠져있음을 고려하면 실제로 수행된 성폭력 관련 연구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표 II-2-6] 연도별 성폭력범죄 연구실태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1989	1	5.6	5.6
1991	2	11.1	16.7
1993	1	5.6	22.2
1997	1	5.6	27.8
1998	1	5.6	33.3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1999	1	5.6	38.9
2000	2	11.1	50.0
2002	1	5.6	55.6
2003	1	5.6	61.1
2004	1	5.6	66.7
2007	1	5.6	72.2
2009	1	5.6	77.8
2012	1	5.6	83.3
2013	1	5.6	88.9
2016	2	11.1	100.0
전체	18	100.0	

2. 연구내용 및 주제에 따른 분류

성폭력을 다룬 연구들은 세부 연구주제를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 몇몇 연구의 경우에는 1가지 이상의 주제를 다루는 경우도 있었으나, 연구의 주된 내용을 기준으로 중복분류하지 않고 구분하였다.

먼저 ①사건 및 가해자 특성에 주목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가정파괴범에 관한 연구」(김상희 외, 1991), 「강간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최인섭 외, 1991),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현황과 법적 대응방안」(김은경, 2002),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연구」(강은영, 2003),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전영실 외, 2007), 「연쇄 성폭력범죄자 프로파일링과 프로파일링 제도 연구」(김지영 외, 2009), 「연쇄 강력범죄 실태조사 II-연쇄 성폭력」(박형민 외, 2013) 등 총 7종이었다.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이들은 주로 사건의 발생 실태 및 아동대상 성폭력 가해자의 사건 특성이나 연쇄 범죄자, 가해자의 유형 구분 등을 다룬 연구들이다.

다음으로 ②일반인의 인식이나 피해자의 특성에 주목한 연구들이 총 6종으로 구분되었는데,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2종(심영희 외, 1989; 최인섭 외, 1997), 성희롱에 관한 연구 2종(전영실, 1999; 윤정숙 외, 2016), 스토킹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박철현 외, 2000), 그리고 성 상업화 및 성의식, 성폭력 등을 다룬 연구(김은경, 2000)이다.

마지막으로, ③형사절차 및 범죄에의 대응을 다룬 연구가 5종 있었는데 이들 중 3종은 음란물을 다룬 연구들이다. 먼저 「음란물의 유해성과 규제실태를 다룬 연구」(김준호 외, 1993)에서는 당시 시중에 유통되는 성인 비디오와 검찰에서 압수되고 기소된 음란비디오를 비교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고, 노성호(1998)의 연구는 특히 청소년에 주목하여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음란물의 접촉실태 및 관련 태도를 조사하고 각국의 규제정책과 대책을 다루었다. 2016년에 이루어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강은영 외, 2016)에서는 일반국민 5,000명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방안과 법률적 제언을 위해 국제기구와 해외사례 및 법학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성폭력 관련한 형사절차 및 대응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아동의 진술타당도를 분석한 연구(조은경, 2004)이나 법의학적 대응모델 개발연구(강은영 외, 2012) 등이 있다. 이들 두 연구는 연구 당시에 새로운 수사 및 실무기법을 우리의 수사 및 법률체계 안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논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표 II-2-7] 성폭력범죄 연구 세부 주제 분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사건/범죄자 특성	7	38.9	38.9	38.9
인식/피해 조사	6	33.3	33.3	72.2
형사절차 및 대응	5	27.8	27.8	100.0
전체	18	100.0	100.0	

3. 연구방법의 경향

먼저 성폭력을 다룬 연구 18종에서 언급된 상세 조사방법은 총 10가지 종류 37회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조사방법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9종)였고, 다음이 수사재판기록조사(8종)였다. 즉, 17종의 연구에서 각각 9번과 8번 사용된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와 수사재판기록조사이기 때문에, 약 2종 중에 1종 꼴로 이러한 조사방법을 사용한 셈이다. 다음으로는, 재소자 기록조사 및 설문조사, 해외의 입법례 소개 및 분석이 각각 4종의 연구에서 사용되었고, 공식통계 분석이 3종에서,

재소자 심층면접과 경찰관 등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심층면접은 각각 2종의 연구에서 사용되었으며, 비디오 내용분석이 1종이었다.

[표 II-2-8] 성폭력범죄 연구 연구방법

	N	퍼센트	케이스 중 %
해외입법례	4	10.8%	22.2%
일반인 설문조사	9	24.3%	50.0%
공식통계분석	3	8.1%	16.7%
수사재판기록조사	8	21.6%	44.4%
재소자 기록조사	4	10.8%	22.2%
재소자 설문조사	4	10.8%	22.2%
재소자 심층면접	2	5.4%	11.1%
내용분석_비디오	1	2.7%	5.6%
경찰관등 심층면접	2	5.4%	11.1%
전체	37	100.0%	205.6%

앞서 구분한 연구내용을 기준으로 연구방법을 다시 재분류해 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사건 및 가해자 특성을 다룬 7종의 연구들은 모두 수사재판 기록조사를 실시하였고 절반이 넘는 연구들이 재소자 설문조사와 재소자 기록조사를 각각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이나 피해실태에 주목한 연구 6종은 모두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처럼 가해 특성 관련 연구가 수사재판 및 재소자 조사를 실시하고 인식이나 피해실태를 분석한 연구들은 일반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연구주제를 고려한 당연한 선택이다. 형사절차 및 대응에 주목한 연구들 일반인 설문조사, 해외입법례 검토, 내용분석 및 경찰관 등 형사사법 기관 종사자 심층면접 등의 순서로 연구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9] 성폭력범죄 연구 연구방법-연구주제별

		사건, 가해자 특성	인식, 피해 실태	형사절차 및 대응	전체
해외입법례	빈도	0	2	2	4
일반인 설문조사	빈도	0	6	3	9
공식통계분석	빈도	3	0	0	3
수사재판기록조사	빈도	7	0	1	8
재소자 기록조사	빈도	4	0	0	4
재소자 설문조사	빈도	4	0	0	4
재소자 심층면접	빈도	3	0	0	3
내용분석_비디오	빈도	0	0	1	1
경찰관등 심층면접	빈도	0	1	1	2
전체	빈도	7	6	5	18

4.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가. 사건 및 가해자 특성 연구

사건과 가해자 특성을 다룬 7종의 연구는 「가정파괴범에 관한 연구」(김상희 외, 1991), 「강간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최인섭 외, 1991),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현황과 법적 대응방안」(김은경, 2002),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연구」(강은영, 2003),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전영실 외, 2007), 「연쇄성폭력범죄자 프로파일링과 프로파일링 제도 연구」(김지영 외, 2009), 「연쇄 강력범죄 실태조사 II -연쇄 성폭력」(박형민 외, 2013) 등이다.

초기 연구에서는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여 시의성 높은 주제를 선정한 「가정파괴범에 관한 연구」(김상희 외, 1991)가 출발이었는데 당시 언론과 실무에서 사용하던 ‘가정파괴범’이라는 용어를 ‘가족면전강도강간(家族面前強盜強姦)’이라는 용어로 대체할 것을 보고서에서 주장한 점이 인상적이다. 당시 연구자들은 ‘가정파괴범죄’라는 용어가 지칭 범위가 불분명하고 불가항력으로 강간을 당한 경우까지 가정파괴와 연계하는 것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서 비롯한 것으로 피해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용어변경을 제안하였다.

「강간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최인섭 외, 1991)에서는 당시 피해자를 중심으로 일부 논의만 이루어졌던 강간범죄에 대한 독립연구로서의 의미가 큰데, 특히 가해자

에 주목하여 재소자 대상 설문조사와 신분장 조사, 수사재판기록조사를 비교분석하여 전체적인 현상파악을 시도하였다. 강간범죄의 다양한 세부유형과 그 이질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단순강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근친강간이나 직장 내 강간 일부 사건도 포함하였다. 또한 주로 노상에서 일어나는 강간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우리가 흔히 강간발생에 관해 가지고 있는 다소 막연했던 지식들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특정 개별 범죄유형으로서의 강간범죄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고 가해자에 대한 직접조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현황과 법적 대응방안」(김은경, 2002)에서는 당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다루면서 강제된 성매매 및 이와 연관된 성매매의 실태를 밝히고, 현행 형사법적 대응실태와 처리과정상의 문제점을 진단·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전국 14개 지방검찰청에서 기소 처리되어 형이 확정된 사건 가운데 임의표집을 통해 추출된 인신매매관련 사건(91건), 출입국관리법 위반(99건),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236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144건), 직업안정법 위반(75건) 등, 총 647건에 대한 수사재판기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인신매매 사건처리의 사법동향을 분석하였고 관련 사건 인지율은 높아진 반면 공판활동의 적극성과 양형수준은 높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관련 법령과 제도적인 문제점(인신매매 개념정의의 어려움과 편견, 관련 법률 적용상의 문제점과 한계)과 법적 통제의 분절성과 비형평성(통일된 법률체계 부재, 처벌의 경미함, 국제적 인신매매 통제의 미미함), 인신매매와 성매매의 착취적 연결고리에 대한 통제 미비, 10대 청소년 성착취 규율의 비형평성을 지적하였고, 개선방안으로 인신매매의 범죄구성요건 확대, 관련법 정비 및 특별법 제정, 처벌과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연구」(강은영, 2003)는 아동성폭력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가해자의 특성에 따른 유형구분과 함께 피해자 연령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인 대상 성폭력 가해자로 나누고 각 유형별 범죄와 가해자의 인식특성을 비교하였다. 조사는 교도소, 보호관찰소, 소년원 14개 교정보호시설에 수용 또는 보호되고 있는 청소년과 성인 성폭력 범죄자 590명을 대상으로 기록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범죄대상 아동의 선택이나

범행이 이루어지는 상황적 요인 및 범행수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혔고, 피해자 연령별 성폭력 범죄의 특성(아동/청소년/성인 대상 성폭력)과 가해자 인식 특성도 밝혔고, 이를 토대로 아동성폭력 예방과 가해자 처우를 위한 쟁점을 제시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전영실 외, 2007)에서는 성폭력 가해자를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재범억제 방안을 모색하였다. 실태파악을 위해 공식통계자료 분석과 함께 수사재판기록조사(1,014건)와 성폭력 범죄로 보호관찰을 받거나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들에 대한 설문조사(658명)를 분석하였다. 공식통계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성폭력범죄는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여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가 15.1에서 27.7로 83.4% 증가하였다. 성폭력 범죄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야외나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심야와 새벽시간에, 우발적으로, 남성 20-30대에 의한 범행이 많고 피해자는 20대가 가장 많았다. 범죄자 유형별로 구별되는 특성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가해자 집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성인 대상 성범죄’는 유흥업소와 숙박업소가 많았다. 또한, 청소년 범죄자들은 야외에서 범행하는 경우가 높고 범행장소가 제한적이며 ‘호기심’이 범행 동기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피해자 관계에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낯선 관계가 가장 많고 안면 있는 동네사람 등도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아동에 대한 강간에 대해 왜곡된 인지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범행 및 범죄자 특성과 해외의 재범억제 대책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성폭력범죄 재범억제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법률규정의 정비, 범죄자 처우프로그램 개선, 범죄자 유형별 차별된 재범억제방안 마련 등이 대표적이다.

「연쇄성폭력범죄자 프로파일링과 프로파일링 제도 연구」(김지영 외, 2009)에서는 연쇄성폭력범죄자 프로파일링을 통해 학문적 발견을 수사현장을 접목시키고 한국형 연쇄성폭력범죄자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수사·재판기록조사와 재소자 심층면접을 통해 발견한 연쇄성폭력범죄자들의 특성으로는 이들 범죄자들 다수는 모르는 여성을 공격대상으로 하며 전형적인 접근방법은 가택침입과 덮치기를 사용한다는 점이었다. 또한, 피해자 특성, 피해자에 대한 접근방법, 흥기의 사용과 같은 범행의 수법은 가해자 안에서 일관성(consistency)이 높고 가해자간 다양성(variability)도 높아 범죄를 연계하고 동일범을 파악하는데 유용할 수 있으나, 성행위의 특성이나 범행 후 가해자

행동은 가해자간 다양성(variability)이 떨어지거나 가해자내 일관성(consistency)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범죄자 혹은 범행특성, 범행을 위한 이동 특성에 기초한 지리적 프로파일링 등을 통해 일회성 범죄자와 연쇄성폭력 범죄자의 분류 및 재범위험도의 예측결과로서의 활용가능성, 미제사건 검거와 범행패턴 분석 등을 위한 자료로서의 활용가능성 등을 다룬 점이 이 연구의 큰 의의로 생각된다.

「연쇄 강력범죄 실태조사 II -연쇄 성폭력」(박형민 외, 2013)에서는 수사재판 기록 조사와 재소자 면접조사 등을 활용하여 연쇄성폭력 범죄자의 일반적 특성을 비연쇄 성폭력 범죄자와 비교하였다. 일반적인 연쇄성폭력 범죄자의 특성을 연령, 학력, 장애 유무, 범죄경력과 전과 등을 중심으로 비교하고 사건 관련 특성인 발생시간, 접근방법, 음주여부, 피해자를 만나거나 물색하는 장소 및 범행장소,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동 등에서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하였고, 이를 반복성 범죄와도 비교하였다. 또한, 가해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미성년 가해자와 성인 가해자의 특성도 비교하는 한편, 면접조사에는 가·피해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면식/비면식 범죄로 구분하고 특성을 비교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다양하게 도입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책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사건과 가해자 특성을 다룬 이들 7종의 연구는 주로 일반적인 성폭력 범죄 및 범죄자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에서 출발하여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특정 목적(인신매매 등)이나 특정한 유형의 범죄자들을 구분하는 연구로 이어졌는데, 특히 최근에 연쇄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어 보다 위험한 범죄자 및 이들의 범행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재범억제 방안을 고민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나. 인식 및 피해 연구

성폭력 범죄 가운데 일반인의 인식이나 피해자의 특성에 주목한 연구들은 총 6종이었는데,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2종(심영희 외, 1989; 최인섭 외, 1997), 성희롱에 관한 연구 2종(전영실, 1999; 윤정숙 외, 2016), 스토킹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박철현 외, 2000), 그리고 성 상업화 및 성의식, 성폭력 등을 다룬 연구(김은경, 2000)이었다.

성폭력 범죄의 인식과 피해 관련 초기 연구인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심영희 외, 1989)에서는 성폭력의 개념을 법적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사회학적, 여성학적 개념으로 파악하여 숨은 범죄 파악에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에서는 성폭력을 음란전화, 성기노출, 성적희롱, 가벼운 추행, 심한 추행, 어린이 추행, 강간미수, 강간으로 규정하고 측정하였다. 당시 조사에서는 여성들이 전반적으로 강간인지도 낮고 강간통념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 강간경험 여부 등이 강간인지도에 영향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강간개념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회각개각층에 깊이 박혀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성폭력에 대한 불안감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또한, 추행 76.4%, 성기노출 74.5%, 희롱 48.6%, 음란전화 46.3% 등으로 매우 높았다. 반면 신고율은 2% 미만으로 매우 낮았으며, 가장 높은 강간 미수의 신고율도 1.9%에 불과했다. 이를 토대로 연구진은 공식통계와 비교하여 발견되지 않은 숨은 피해가 절도 71.5배, 강도 267.2배, 강간 44.6배, 강도강간 198.8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 II」(최인섭 외, 1997)에서는 성폭행 범죄의 지난 30년간 추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1966년부터 1995년까지의 기간 동안 성폭력 범죄는 3.5배 증가하였으며, 2인 이상 공모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도 늘어나 질적인 측면에서도 악화되었음을 밝혔다. 특히, 이 시기에 10대가 높은 가해율을 보였다는 점에서 저연령화가 우려되었고, 당시 설문조사에서 친고죄 폐지를 주장한 비율이 72.6%로 높게 나타난 특성이 있었다.

성희롱을 다룬 두 연구 「직장 내 성희롱의 실태와 대책」(전영실, 1999)과 「성희롱 실태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윤정숙 외, 2016)는 동일 혹은 유사한 주제에 대한 시간에 따른 연구결과의 차이를 크게 보여준다. 먼저 「직장 내 성희롱의 실태와 대책」(전영실, 1999)에서는 성희롱 개념정립, 피·가해 실태, 성차별 실태 등을 다루었고, 조사에서 나타난 피해율이 언어적 성희롱 63.5%, 신체적 성희롱 34.9%, 시각적 33.5%, 성적 서비스형 25.1%이었다. 또한, 남성의 가해경험 비율도 조사했는데, 언어적 성희롱 63.3%, 시각적 성희롱 41.7%, 신체적 성희롱 22.5%, 성적 서비스형 13.3%로 나타났다. 1999년에 이루어진 이 연구는 성희롱에 대한 초기 선도연구로써 성희롱의 개념정립, 피·가해 실태, 성차별 실태를 주 연구내용으로 다루었으며, 당시 사회적 문제로 언급되기 시작했으나 명확한 개념규정이 되지 않은 성희롱에 대한 개념정의를

연구의 주요 목적으로 두었다. 이후, 「성희롱 실태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윤정숙 외, 2016)에서는 현재 법률로 규율되어 있는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요건을 제시하고 이론적 설명모델(생물학적, 조직, 사회문화적, 개인차 모델, 시간 순서)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원 사건을 기초로 일반인 대상 시나리오 연구를 실시하여 성희롱 판단기준의 변화 혹은 차이,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1999년 초기 연구에 이어 성희롱에 대한 법률적 제도와 다양한 연구들이 실시되었고 이후 법률적 판단에 대한 논의까지 2016년의 연구내용이 확장되었음을 볼 수 있다.

연구내용의 차이 뿐 아니라 두 연구는 피해율과 가해율에서도 차이를 보인 특성이 있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의 실태와 대책」(전영실, 1999)에서는 남성 가해경험 비율이 언어적 성희롱 63.3%, 시각적 성희롱 41.7%, 신체적 성희롱 22.5%, 성적 서비스형 13.3%이었다. 「성희롱 실태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윤정숙 외, 2016)에서는 가해율이 남성 36% 여성 34%, 피해율은 남성 35% 여성 52%이었다. 2016년 연구는 현 직장에서의 경험을 연구한 것이고 두 연구의 조사항목 및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어 직접비교는 어려우나 피해율은 근소한 차이로 줄어드는 반면 가해율의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남성의 성희롱 가해율이 1999년 조사에 비해 2016년 조사에서 크게 낮아졌다는 점, 그리고 여성 가해율을 조사한 2016년의 결과가 남성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낮다는 특성 등이 인상적이다. 「성의 상업화가 성의식 및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김은경, 2000)에서는 성의식 실태를 조사하고 포르노그래피 등 상품화된 성문화접촉경험과의 연관성을 살펴봄으로써 성폭력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이 섹슈얼리티와 관련한 성문화적 모델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 형사정책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성폭력 관련한 실태 및 대책을 다룬 연구로 분류된 5종 가운데 3종이 음란물 관련한 연구들이었는데, 「음란물의 유해성과 그 규제실태에 관한 연구-음란비디오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김준호 외, 1993),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음란물 접촉실태와 대책」(노성호, 1998),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강은영 외, 2016)이다.

연도별로 연구의 내용과 결과에 차이가 있었는데, 초기연구 「음란물의 유해성과

그 규제실태에 관한 연구 -음란비디오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김준호 외, 1993)에서는 비디오의 형태로 유통되던 음란물의 음란성이나 유해성 기준의 논의를 실시하였다가, 이후 이러한 음란물이 컴퓨터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까지 유통되기 시작한 현실을 반영하여 온라인 상에서의 접촉경험 실태를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연구인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음란물 접촉실태와 대책」(노성호, 1998)이 실시되었다. 특히 초기 연구 「음란물의 유해성과 그 규제실태에 관한 연구-음란비디오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김준호 외, 1993)가 유해성의 판단기준과 관련한 법률적 혹은 제도적 규제에 초점을 둔 것과 달리 이후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음란물 접촉실태와 대책」(노성호, 1998)의 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아동포르노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나머지는 자율규제의 일환을 택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용자와 제공자 중심의 규제 및 책임을 강조하였다. 2000년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우리나라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법률적으로 강력히 제재하고 나머지는 자율규제의 다양한 방식을 택하였는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강은영 외, 2016)에서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주목하여 국민인식과 효과적 규제방안을 논함으로써 이러한 규제의 대상과 방식을 반영하였다.

이처럼 기존의 개인 간의 성폭력 외에 음란물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실태 및 대책을 다룬 연구 외에도, 성폭력 사건의 처리 및 대응방식에 대한 연구들이 2종 있었는데,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 타당도 분석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조은경, 2004)와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대응모델 개발연구」(강은영 외, 2012)이다. 특히,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가 소멸된다는 점에서, 아동피해 사건의 경우 아동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처벌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들 두 연구는 형사정책적, 실무적 기여가 크다고 할 것이다. 먼저,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 타당도 분석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조은경, 2004)에서는 외국에서 개발된 준거기반 내용분석(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을 국내 아동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진술에 적용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아동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진술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토대를 제시하였다.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대응모델 개발연구」(강은영

외, 2012)에서도 조사와 증거분석 단계에서 의료보건 및 피해자지원체계간의 공동대응이 가능한 통합적 대응전략을 제시하여 성폭력에 대한 사법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6절 가정폭력의 연구경향

1. 연구시기를 중심으로

총 10종의 가정폭력 관련 연구들의 연구시기를 살펴본 결과, 대략 10년 주기로 연구들이 실시되었고 2014년 이후 최근에는 이전과 비교해서 연구가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90년과 1991년, 1995년에 각각 1종씩의 가정폭력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고, 이후 2001년(1종)과 2003년(2종)에, 그리고 2010년에 1종이 수행되었으며, 2014년 이후 최근에 총 3종이 수행되었다.

[표 II-2-10] 연도별 가정폭력범죄 연구실태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1990	1	10.0	10.0
1991	1	10.0	20.0
1995	1	10.0	30.0
2001	1	10.0	40.0
2003	2	20.0	60.0
2010	1	10.0	70.0
2014	1	10.0	80.0
2015	1	10.0	90.0
2017	1	10.0	100.0
전체	10	100.0	

2. 연구내용 및 주제에 따른 분류

가정폭력 관련 연구 10종을 앞서 살펴본 성폭력 관련 연구와 동일하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한 가지 이상을 다루는 경우라도 주된 내용을 기준으로 중복분류하지

않고 구분하였다. 구분 결과, 사건 및 범죄자 특성을 다룬 연구가 총 3종이었고, 인식과 피해를 다룬 연구가 3종, 형사절차 및 대응에 주목한 연구는 4종이었다.

[표 II-2-11] 가정폭력범죄 연구 세부 주제 분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사건/범죄자 특성	3	30.0	30.0	30.0
인식/피해 조사	3	30.0	30.0	60.0
형사절차 및 대응	4	40.0	40.0	100.0
전체	10	100.0	100.0	

특히 이러한 주제는 연도별로도 차이를 보였는데, 90년대 초반에 가정폭력에 관한 인식 및 피해조사연구가 3종 실시되었고, 2000년 초반(2003년)과 2010년대 초반, 그리고 2017년에는 사건과 범죄자 특성 관련 연구, 형사절차 및 대응을 다룬 연구가 주로 수행되다가 최근(2015년)에 다시 인식 및 피해조사가 실시되었다.

[표 II-2-12] 가정폭력범죄 연구 세부 주제 분류 - 연도별

	사건/범죄자 특성	인식/피해 조사	형사절차 및 대응	전체
1990	0	1	0	1
1991	0	1	0	1
1995	1	0	0	1
2001	0	0	1	1
2003	1	0	1	2
2010	1	0	0	1
2014	0	0	1	1
2015	0	1	0	1
2017	0	0	1	1
전체	3	3	4	10

3. 연구방법의 경향

10종의 가정폭력 연구가 사용한 구체적 연구방법은 총 31가지였고, 가장 많은 것이 해외의 입법례 분석(5종)과 공식통계 분석(5종),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3종), 수사재판 기록조사(3종), 재소자 대상 심층면접(3종) 등의 순서였다.

[표 Ⅱ-2-13] 가정폭력범죄 연구 연구방법

	N	퍼센트	케이스 중 %
해외입법례	5	16.1%	50.0%
사례분석	1	3.2%	10.0%
내부자료	1	3.2%	10.0%
일반인 설문조사	3	9.7%	30.0%
공식통계분석	5	16.1%	50.0%
수사재판기록조사	3	9.7%	30.0%
재소자 기록조사	1	3.2%	10.0%
재소자 설문조사	1	3.2%	10.0%
재소자 심층면접	3	9.7%	30.0%
경찰관 설문조사	2	6.5%	20.0%
피해자 심층면접	1	3.2%	10.0%
경찰관등 심층면접	2	6.5%	20.0%
이차자료 분석(공식통계 제외)	1	3.2%	10.0%
피해자 설문조사	2	6.5%	20.0%
전체	31	100.0%	310.0%

연구주제에 따른 상세 연구방법에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았는데, 사건과 가해자 특성을 다루는 연구들은 주로 수사재판기록조사와 재소자 기록 및 심층면접을 많이 활용하였고, 인식과 실태조사에서는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가 가장 많아 전체 3종의 인식 및 실태조사에서 모두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절차 및 대응은 해외 입법례를 살펴본 방식과 공식통계분석이 주를 이루었고, 경찰관 및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피해자 면접 등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2-14] 가정폭력범죄 연구 연구방법 - 세부 주제별

	사건, 가해자 특성	인식, 피해 실태	형사절차 및 대응	전체
해외입법례	1	1	3	5
사례분석	0	0	1	1
내부자료	0	1	0	1
일반인 설문조사	0	3	0	3
공식통계분석	1	1	3	5

	사건, 가해자 특성	인식, 피해 실태	형사절차 및 대응	전체
수사재판기록조사	2	1	0	3
재소자 기록조사	1	0	0	1
재소자 설문조사	0	0	1	1
재소자 심층면접	1	1	1	3
경찰관 설문조사	0	0	2	2
피해자 심층면접	0	0	1	1
경찰관등 심층면접	0	0	2	2
이차자료 분석(공식통계 제외)	0	0	1	1
피해자 설문조사	0	0	2	2
전체	3	3	4	10

4.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가. 사건 및 가해자 특성 연구

사건 및 범죄자 특성을 다룬 연구가 총 3종이었는데, 「존속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최인섭 외, 1995), 「아내구타자의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조은경, 2003), 「남편 살해 피학대 여성의 사회심리적 특성에 따른 형법적 대응방안」(김지영 외, 2010)이다.

「존속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최인섭 외, 1995)에서는 존속범죄의 발생추세와 사법처리 현황,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 행위적 특성, 주요 범죄유형 등을 살펴봄으로써 존속범죄 전반에 걸친 정확한 실태파악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사회적 관심과 발생건수가 높은 존속상해범죄와 존속폭행범죄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공식통계자료와 수사재판기록조사를 활용하였다. 존속상해 및 폭행범죄의 발생은 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존속폭행은 매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사법처리 상 다른 살인이나 상해, 폭행에 비해 선고형량이 높은 특성이 있었다. 수사·재판 기록조사를 통해 살펴본 특성으로는 모든 존속살해범죄를 패륜이라는 도덕적, 윤리적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또한, 정신이상자에 의한 존속살해사건과 함께 부모로부터 심하게 학대받았거나 아버지가 어머니를 심하게 학대하는 것에 대한 누적된 분노로 인해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존속살해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존속상해와 폭행이 존속살해에 비해 오히려 더 패륜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 등을 밝혔다.

「아내구타자의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조은경, 2003)에서는 가정폭력의 가해자 특성에 주목하여 이들을 위험성에 따라 하위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맞는 처우방법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외국에서 개발된 아내폭력 위험평가 도구를 소개하였다. 「남편살해 피학대 여성의 사회심리적 특성에 따른 형법적 대응방안」(김지영 외, 2010)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가 가해남성을 살해하는 형태의 가정폭력 유형에 주목하여, 서구에서 찬반의견이 팽팽한 피학대여성증후군이론을 한국에서 실증적으로 검토해보고 그 결과에 대한 법률적 논의를 실시하였다. 특히, 피학대여성의 다양한 심리적, 상황적 현상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아내구타자의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조은경, 2003), 「남편살해 피학대 여성의 사회심리적 특성에 따른 형법적 대응방안」(김지영 외, 2010) 두 연구 모두 가정폭력 가해자의 유형 및 특성을 논하면서 서구에서 논의가 먼저 시작된 위험성 평가도구 및 면책요건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나. 인식 및 피해실태

가정폭력의 인식 및 피해실태를 다룬 연구는 총 3종이었는데,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심영희 외, 1990),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서울시의 남편의 아내폭력 현황을 중심으로」(김익기 외, 1991), 「여성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홍영오 외, 2015)이다.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심영희 외, 1990)에서는 일반인의 간통에 대한 실태와 의식조사를 함께 다루었는데 이는 간통의 특성이 자발적인 성적행위를 요구한다는 점과 혼인상태에 있는 기혼자의 지위에 따른 행위에 대한 비난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응답자들이 대체로 간통죄에 대한 인지도와 존치에 대한 찬성비율이 각각 80% 이상으로 높았으나 간통의 경험비율도 매우 높았고(매춘 제외, 남성의 약 20%가 간통 경험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배우자의 반복간통에도 실제로 간통죄를 활용할 의사를 가진 응답자가 매우 적은 것(12.3%)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서 연구자는 간통죄의 실효성은 미약하다고 결론 내렸으며 시간이 흘러 실제로 2016년 폐지되었다. 2016년 실제로 폐지된 간통죄에 대한 실효성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1990년에 이미 있었던 것은 결국 일반국민의 법인식이나 태도가 형사사법제도를

결정짓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서울시의 남편의 아내폭력 현황을 중심으로」(김익기 외, 1991)에서는 가정폭력의 유형을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폭력행위로 한정하여 총 8개 세부유형(상대방을 향해 물건 던지기, 밀치거나 몸 흔들기, 뺨 때리기, 발이나 주먹으로 때리기, 몽둥이 등으로 위협하거나 때리기, 두들겨 패기, 칼 등으로 위협, 칼 등을 사용하는 행위)을 측정하였다. 이후 가정폭력의 개념은 신체적인 폭행 뿐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폭력이나 성적 피해, 통제행동이나 강요 등으로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교제 혹은 동거 중인 관계에서의 데이트 폭력이나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등으로 확장되었다.

「여성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홍영오 외, 2015)에서는 최근 발생이 증가하고 심각성이 높아 사회문제로 여겨지는 데이트 폭력을 다루었다. 특히, 데이트 폭력이나 이별범죄로 불리는 이러한 유형의 범죄들의 실태에 대해 해외에서는 ‘클레어법’의 시행 등을 통해 적극적인 전과조회까지 가능한 반면 우리는 주로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데이트폭력 연구에 치중하였다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지적되었다. 이에, 친밀한 연인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의 유형별(신체폭력, 심리·정서적 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피해실태, 가해 및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폭력에 대한 태도와 순환성 포함)과 범행특성, 외국의 형사법적 대응정책 등을 분석하여 예방 및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식범죄통계, 상담소의 상담실적, 교제 경험이 있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파악하고, 공식범죄통계와 연인 대상 성폭력 및 살인 범죄를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위한 청구전조사서에 대한 기록조사 및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정폭력 혹은 여성대상 폭력의 개념과 범위확대를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다. 형사절차 및 대응

가정폭력의 형사절차 및 대응에 주목한 연구는 총 4종이었는데,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위기 개입 방안 연구」(김은경, 2001), 「가정폭력범죄 대응동향과 정책제언

」(김은경, 2003), 「현행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의 운용실태 및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김은경 외, 2014), 「가정 내 폭력범죄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관한 연구」(윤정숙 외, 2017)이다.

먼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위기 개입 방안 연구**」(김은경, 2001)에서는 가정폭력의 사회적 실상과 쟁점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형사법적 개입방안을 논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공식통계분석과 함께 법운영주체(경찰, 검찰, 판사, 보호관찰관, 사회복지사, 위탁기관 담당자 등) 및 피해자(12명), 가해자(11명)에 대한 심층면접, 그리고 사례와 기록조사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사회에서 부부 10쌍 중 3쌍이 가정폭력을 경험하나 신고율은 매우 낮으며 남성이 가해자에 의한 여성피해자가 핵심적 범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피해의 결과로 나타난 상해발생률은 약 6-7% 대로 심각한 폭력의 발생률과 유사했으며, 전통적인 남성중심의 가족주의와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성폭력피해자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없이 의처증을 비롯해 훨씬 더 강력한 수준의 통제행위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학구조상 폭력주기의 순환이 거듭될수록 폭력의 양상과 빈도는 심해지고 폐쇄적 관계로 발전되며 피해자의 '희생자와 과정'을 겪어 공식기관에의 노출 가능성은 훨씬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생특성과 역학구조를 고려하고 기존의 가정폭력 개입의 두 모델인 피해자 선택모델과 체포우선 모델의 문제점과 한계를 인식하여, 피해자 권한강화 모델을 제시하고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위한 요소로써 피해자의 욕구와 필요를 통해 현행 특례법의 정책방향과 법적 구조, 그리고 시행 실태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특히, 경찰과 검찰, 법원, 보호처분 등 형사절차의 각 단계별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이점을 보였다.

「**가정폭력범죄 대응동향과 정책제언**」(김은경, 2003)에서는 선진 각국의 가정폭력 대응입법 및 정책동향을 파악하였는데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뉴질랜드 등을 살펴보고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이들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피해자의 안전'에 최우선적 고려를 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 현실에 접목 가능한 여러 합법적 및 실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입법적으로는 임시조치이나 보호명령의 개선, 경찰의 위협예방조치를 위한 실무권한 강화, 검사선의주의에서 법원선의주의로의 전

환검토, 이원적 처우구조 개선과 사건처리과정의 적정성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형사 실무상 개선방안으로는 가정폭력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조사관 제도, 지역사회에 기반한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수사과정시 위험평가의 제도화, 유형별 분류처우를 위한 개입프로그램 평가, 연구활동에 친화적인 형사사법기관의 운영시스템 개선 등을 주장하였다. 이를 토대로 가정폭력에 응하는 주요 형사사법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별로 개입시 유의점 및 개선방안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현행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의 운용실태 및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김은경 외, 2014)에서는 1997년 12월에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범죄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15년간 수차례의 개정되었고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등 각종 제도도입에도 불구하고 실제적 장치의 부족이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2013년 정부가 가정폭력을 4대악 척결을 위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하였다는 배경에서 출발하였다. 연구목표를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의 운용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 및 처분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한 입법적 및 실무적 개선방안 제시에 두었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결과, 그리고 가정폭력처벌특례법 개정추이를 정리 및 분석하였고 새로운 입법방향과 정책모색을 위해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8개국의 입법동향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난 15년간의 가정폭력 관련 통계를 경찰청, 대검, 법원 등으로부터 수집분석하였고 피해자, 가해자, 관련실무자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제시된 입법적 개선방안과 정책제언을 간략히 살펴보면, 가정폭력특례법의 입법목적은 피해자보호의 기본원칙 및 우선성을 재확인하도록 변경, 가정폭력 대상범죄를 살인죄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전담제도를 도입하여 문제해결법원으로의 발전 및 형사절차의 단일화, 절차단계별 위험성 평가제도의 전문화와 다각화, 긴급임시조치의 내실화 및 현장적응성 제고, 피해자보호명령의 개선과 피해자의사존중규정 삭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수사기간 특례규정도입, 위탁감호시설 활성화를 위한 관련규정 제도화, 교정처분 불이행죄 및 피해자 보호명령 등 불이행죄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된다.

「**가정 내 폭력범죄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관한 연구**」(윤정숙 외, 2017)에서는 형사사법기관과 비형사사법기관(피해자 지원기관)이 가·피해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각 기관의 고유한 역할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설정하는 한편 서비스의 중복성을 없애고 접근성을 늘려 가·피해자의 사회복귀에 기여하는 안전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이 연구는 선행연구가 주로 부부간의 가정폭력 문제에 주목한 것과 달리 배우자폭력, 아동학대, 그리고 노인학대를 연구대상으로 확대하였고, 피해자지원기관과 법집행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대응현황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조사하고 외국의 입법 체계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가정 내 폭력감소 및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관련 입법규정의 유사·중복규정을 개선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경찰의 현행범체포제도의 명문화, 사후관리와 정보공유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처분 시 형벌과 수감명령의 병과,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교육 의무화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 강화, 피해자 변호사제도의 확대 등이 있다. 서비스 체계방안 또한 제시되었는데, 기초적 사회복지서비스 및 가정 내 폭력관련 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 아동과 노인 학대 지원에서의 공공성 강화, 거시적인 사회문화적 규범 개선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였고, 마지막으로 다기관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피해자 중심의 서비스, 주도기관의 정립, 서비스의 균등성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제7절 결론

1. 연구내용과 방법의 진화, 연구주제에 따른 차이

지난 30년간 수행된 폭력범죄와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몇 가지 특성이 발견되었다. 먼저, 시간에 따른 연구 내용과 범위의 진화를 발견했는데 초기 연구들이 실태조사나 현황파악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후 점차 유형구분이나 가해자의 세부특성, 가·피해자 관련 특성 등 보다 세분화된 연구가 진행된 점과 보다 종합적으로 실태와 대책을 아우르는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시간에 따른 연구방법과 내용이 세분화되고 구체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폭력범죄의 경우에, 가해자와 사건의 특성을 중심으로, 혹은 범죄에 대한 인식과 피해실태를 중심으로 사건의 발생양상을 이해하려는 연구들이 특히 많았다. 또한,

동일 혹은 유사 주제의 연구가 약 10년의 주기로 반복되는 특성도 발견되었는데, 1990년대에 이루어진 연구들이 주로 실태분석에 주목하였다면 이후 2000년대 혹은 2010년 이후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가해자의 의사결정과정이나 범행수법 및 도구 등 보다 구체화된 범행 및 가해특성에 주목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는 차이가 있었다. 동일 주제에 대한 반복연구 및 연구자의 특정주제에 대한 반복연구는 연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연구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큰 이점이 있다고 보인다.

폭력범죄의 연구방법은 주로 공식통계 분석과 수사재판기록조사,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가 주를 이루었는데, 이는 연구들이 주로 범죄의 특성분석 및 인식과 피해실태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이다. 또한, ‘묻지마 범죄’ 혹은 ‘증오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주제특성에 따라 수사재판기록조사를 통해 특성을 분석하거나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피해실태를 추정하고 해외 입법례 연구 등으로 입법방안과 대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폭력범죄를 다룬 연구들은 해당 유형의 범죄가 형법이나 법률상의 범죄유형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도 관심주제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법률적 개념정의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선도하였다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폭력범죄가 가해자와 사건특성 및 피해실태 등에 주목한 것과 대조적으로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형사정책이나 대응에 주목한 연구들이 특히 최근에 많이 실시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었다. 연구방법의 특성은 앞서 살펴본 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사건 및 가해자 특성에 주목한 연구들은 주로 수사재판기록과 재소자 기록 및 면접조사를 활용하였고, 인식과 실태에 주목한 연구들은 일반인대상 설문조사를 많이 활용하였으며, 형사절차 및 대응을 다룬 연구들에서는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와 해외입법례 소개에 의존한 특성이 있었다.

2. 연구 방법 관련 특성 및 보완

연구내용 및 방법과 관련하여, 특히 수사·재판 기록조사와 재소자 대상 조사를 활용한 의존하는 연구들이 많다는 점은 경찰과 검찰, 교정기관 등 형사사법기관과의 협력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 국책연구기관의 특성과 장점을 잘 활용한 것으로 보이고, 사건 관련한 상세기록들이 많이 포함된 기록조사의 장점도 잘 살리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수사재판 기록조사는 일반 연구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어 조사방법으로서의 수사·재판 기록조사 및 재소자 기록조사의 과정과 방법에 대한 후행 연구자 혹은 외부 독자를 위한 지침이나 소개서가 마련되면 연구의 내용과 방법을 상세히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폭력과 가정폭력, 성폭력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인 대상 인식이나 실태조사를 통해 발생실태 혹은 피해자 특성을 분석하고, 수사·재판 기록조사와 재소자 조사를 통해 형사사법기관에 인지 또는 보고된 사건을 중심으로 가해자 혹은 사건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사법처리 동향에 대한 언급이나 분석에 주목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초기 연구들 가운데는 사법처리 동향을 간략히라도 살펴본 연구들이 있었다(예, 김은경, 2002 등). 경찰 및 검찰, 법원, 교정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춘 국책연구기관의 성격을 고려할 때, 사법처리동향을 파악해 보는 연구의 수행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통해 인식과 피해 중심의 조사와 가해자 중심의 수사재판기록 등 조사의 간극을 매울 수 있어 보다 완전한 범죄현상에 대한 보다 완전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을 것이다.

최근의 연구경향 중 하나는 실태조사를 기초로 형사절차와 대응에 주목하는 연구들인데 이를 성폭력 및 가정폭력 관련연구들에서 발견하였다. 법원과 교정기관의 처분 과정을 포함하는 사법처리 동향이나 사건처리과정에서 누락되는 사건의 특성 분석 등을 실시한다면 보다 완전한 형사절차에 대한 이해와 이를 기초로 한 심화된 정책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이러한 형사절차 및 대응에 주목한 연구들 보다는 실태파악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는 점에서도 사법처리동향에 대한 연구가 보완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연구결과의 활용

연구의 결과활용 측면을 살펴보면, 선행연구의 결과들이 이후 정책이나 제도변화로 이어진 것을 많이 볼 수 있었다. 특히, 구체적으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수립 및 실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들을 볼 수 있는데,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대표사례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지마 범죄자에 관한 연구**」(윤정숙 외, 2014)에서는 문지마 범죄자 중 만성 분노형 범죄자는 다른 유형보다 전과를 가진 비율이 월등히 높아 수감 중에 폭력성행 개선을 위한 특별처우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치료감호소 출소 후 외래치료 횟수의 차이가 재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토대로 영미의 외래치료 명령제도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이후 실제로 법무부 산하에 분류센터가 신설(2016.09.04. 보도)되어 범죄자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통한 치료욕구 파악 조직이 신설되었고, 법무부 산하에 심리치료과가 신설(2016.10.11. 보도)되었으며, 외래치료 명령제도가 도입(2016.12. 보도)되어 지역 내에서 사법적 관리를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억제 효과를 기대하게 되었다.

둘째, 「**현행 가정폭력처벌특별법의 운용실태 및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김은경 외, 2014)에서도 보고서에서 제시한 입법 및 정책제언이 실제 법률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진 것을 발견하였다. 동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입법목적의 변경과 대상범죄의 확대는 실제 가정폭력처벌특별법 개정안(1912923)에 반영·의결되었고, 가정폭력 전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결과 또한 경찰청의 가정폭력 전담경찰대 발대로 이어졌으며(2014.03.07.), 긴급임시조치의 내실화, 피해자보호의 내실화 등도 각각 개정안에 반영되거나(1912515), 시행령이 제정(2015.06.22.)되는 변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구체적인 개별적인 입법적 효과 외에도 가정폭력의 문제는 가정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의 문제라는 사회적 인식전환의 계기를 제공하고, 전담제 등의 전문화제도를 통한 절차의 신속, 효율과 이를 통한 비용절감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이라는 행정적 효과 등의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여성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홍영오 외, 2015)의 연구결과도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0900 등)이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2537)으로 이어졌고, 경찰청의 ‘연인간 폭력 근절 특별팀’ 구성이나 국회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의 설치 추진 등으로 이어진 사례를 발견하였다. 이외에도 전과정보공개제도 일명 클레어법의 공론화라던가 데이트폭력의 심각성 및 행동통제를 포함한 데이트폭력의 범위나 유형에 대한 인식전환 등의 파급효과 또한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이 외에도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려우나, 앞서 살펴본 연구가 다양한 학문적, 사회적 관심을 주도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과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입법적 토대와 각종 정책 수립, 사회적 변화의 토대를 마련하였음은 부정할 수 없다. 어려운 연구 환경을 극복하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범죄실태 발생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다양한 정책연구의 밑거름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시의성 있는 주제의 반영과 연구결과들이 결국 이후의 법률과 제도개선의 기초자료가 되었다는 점에서 지난 30년간 해당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한 모든 연구진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참고문헌

- 강은영(2003). 아동 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강은영·김혜정·황태정(2016).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강은영·박형민(2008). 살인범죄의 실태와 유형별 특성 : 연쇄살인, 존속살인 및 여성살인범죄자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강은영·채종민·홍해숙(2012).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대응모델 개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상희·이태원(1991). 살인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상희·조병인(1991). '가정파괴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2000). 성의 상업화가 성의식 및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2001).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위기 개입 방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2002).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현황과 법적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2003). 가정폭력범죄 대응동향과 정책제언 -외국의 입법 및 정책동향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김혜정·박소현·유숙영(2014). 현행 가정폭력처벌특별법의 운용실태 및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익기·심영희·박선미·김혜선(1991).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시의 남편의 아내폭력 현황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김선애(1991). 한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김은경(1993). 음란물의 유해성과 그 규제실태에 관한 연구 -음란비디오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영·강우예·김성규(2010). 남편살해 피학대 여성의 사회심리적 특성에 따른 형법적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영·박지선·박현호(2009). 연쇄성폭력범죄자 프로파일링과 프로파일링 제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영·박혜석·박지선·김지연(2014). 연쇄 강력범죄 실태조사(Ⅲ) -연쇄 강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영·이재일(2011). 증오범죄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노성호(1998).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음란물 접촉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철현·이상용·진수명(2000). 스토킹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형민(2003). 살인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형민(2004). 방화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형민·김지영·김태명(2013). 연쇄 강력범죄 실태조사(II)-연쇄 성폭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형민·최수형·김재운(2012). 연쇄 강력범죄 실태조사(I) -연쇄 방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형민·황정인·탁종연(2010). 폭력범죄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심영희·김성연(1992). 강·절도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심영희·박선미·백월순·김혜선(1990).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심영희·윤성은(1989).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성진·김왕배·원영신·이경용·홍영오(2008). 한국사회 폭력문화의 구조화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윤정숙·박미숙(2016). 성희롱 실태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윤정숙·박지선·안성훈·김민정(2013).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윤정숙·이승현·김미숙·김유경·김지민·박미량(2017). 가정 내 폭력범죄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동진·김성연(2003). 납치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영실(1999). 직장내 성희롱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영실·강은영·박형민·김혜정·황태정·정유희(2007).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은경(2003). 아내구타자의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은경(2004).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 타당도 분석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차종천·김익기·김은경·진수명(1992). 인신매매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최인섭(2004). 주요 국가의 강력범죄 발생추세 비교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인섭·진수연(1992). 방화범죄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인섭·김성언(1997).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인섭·김지선(1995). 존속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인섭·박형민·이순래·노성호·조은경·박순진·박정선·박철현(2003). 한국사회의 폭력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인섭·이순래·노성호·박순진·박형민(2005). 한국인의 갈등해소방식 : 폭력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인섭·전영실·이종택(1991). 강간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인섭·최영신(1995). 어린이 유괴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홍영오·연성진·주승희(2015).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황지태(2002). 총기강도 사건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황지태(2004). 강·절도범의 범행대상 선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 3 장

범죄현상과 대책(Ⅱ) : 경제·부패범죄 관련 연구

이 정 주

범죄현상과 대책(Ⅱ) : 경제·부패범죄 관련 연구

제1절 연구개요

1. 연구목적

부패문제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심각성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모든 국가에 존재하며,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국제투명성 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국가별 부패 수준을 파악하는 국가청렴도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발표하는데, 2018년도 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 중 57점, 180개국 중 45위로 전년도에 비해 점수와 순위가 2점과 6단계 상승했지만, 과거와 별반 차이 없이 여전히 절대부패에서 갓 벗어난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에 청렴성 개선을 위해 반부패·청렴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으로 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패 분야 못지않게 과학정보통신기술 등의 발달로 절도 및 사기 범죄가 은밀하고 지능화되어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제·재산 범죄분야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이 장에서는 '연구원' 개원 이래 30년 동안 수행한 과제 중 부패 및 경제·재산 연구의 연구경향을 검토하고, 향후 유사관련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먼저 향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보완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탐색적으로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적인 흐름을 파악하도록 한다.

그런 다음 연구대상 과제의 연구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분석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크게 연구자특성, 연구목적, 연구시점, 연구대상을 분석기준으로 하는 이론적 투입면과 분석방법, 분석단위, 자료 수집을 분석기준으로 하는 방법론적 전개면, 그리고 지식의 성장, 지식의 지속화를 분석기준으로 하는 지식 산출면으로 구분하여 접근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연구과제는 부패연구 21종, 경제·재산연구 9종 등 총 30종이다. 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되, 빈도분석을 사용한다.

제2절 연구대상 분야 관련 국내·외적 흐름분석

분석대상인 총 30종의 과제 중 부패연구가 21종으로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권의 차이에 따라 연구수행의 빈도는 다르지만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연구됨에 따라 이를 중심으로 국내·외 흐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부패의 전반적인 국제적 흐름은 UN반부패 협약(UNCAC: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에 잘 드러나 있다.

첫째, 과거에는 부패를 범죄와 다른 개념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나,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부패를 곧 범죄로 규정한다는 점이다. 공무원의 재산형명, 착복 및 기타 유용, 영향력 행사에 의한 거래, 직권남용, 부정축재이외에 민간의 부패, 민간부문 재산의 횡령, 범죄수익의 세탁, 은닉, 사법방해 등도 부패행위에 의한 범죄로 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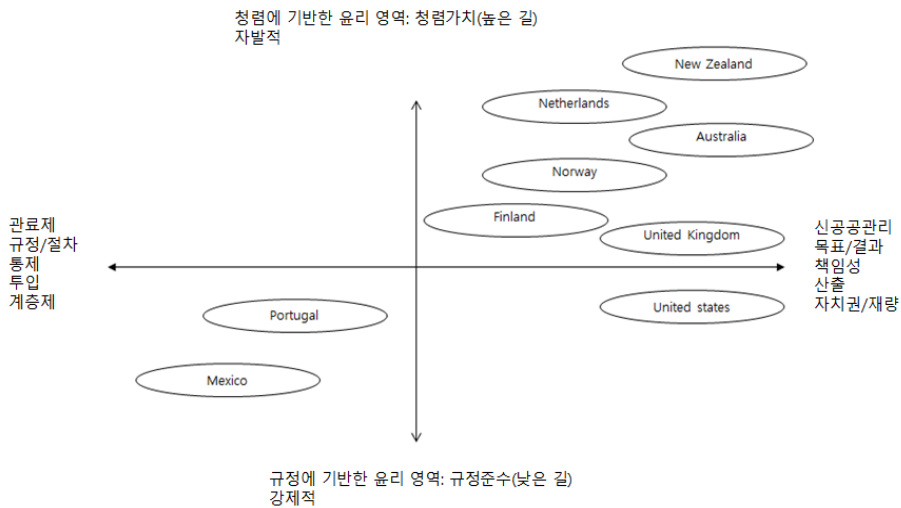
둘째, 부패 범위의 확산이다. 이제까지 부패는 '사적 이익을 위한 공권력의 남용'으로 정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UN 반부패협약은 민간부문의 부패문제를 다룸으로써 부패 범위를 최광의까지 확산시키고 있다. 부패를 공공부문 혹은 공직에 한정하는 경우 '협의', 공공재산 등 공익의 범위까지 넓히는 경우를 '광의', 민간부문까

지 부패의 범위를 넓히는 경우 ‘최광의’라고 이해한다. 즉 과거에는 공권력의 사적 남용과 같은 부패개념에 초점을 맞추진 반면 최근에는 부패개념정립보다 부패행위범위에 대한 관심을 두어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으로까지 확장시켜 민간부문 부패방지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¹⁾. 사적 영역이라 할지라도 공익적 성격이 강한 언론기관 종사자, 사립학교 교직원이 청탁금지법상 적용대상으로 합헌이라는 점도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민간부문은 시장의 자율성이 전제되어 국가가 청렴이나 윤리경영으로 적극 개입하기 어려워, 기업 스스로 청렴을 실천할 경우 제재보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패통제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후 적발과 처벌보다 사전 예방에 방점을 찍고 있다.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10가지 조치로서 부패방지정책 개발 및 시행, 부패방지 기구 설립, 공공부문의 노력, 공무원행동강령 적용, 투명한 공공조달 및 공공재정 운영, 공공행정에 있어 부패위험에 대한 보고, 사법부 및 소추관청의 독립과 부패척결 역할, 민간부문의 부패방지 및 회계심사표준 강화, 시민사회·비정부기구 등의 적극적 참여 조장, 자금세탁 방지 조치 마련을 적시하고 있다.

한편 OECD 국가의 부패통제경향은 규정 중심(타율성)의 낮은 길(low road)에서 청렴성(자발성)에 기반한 가치 중심의 높은 길(high road)로 나아가고 있다.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부패의 개념을 “개인적 이득을 위한 공적 혹은 사적 직위의 남용(abuse of public or private office for personal gain)”으로 정의하여 공공부문 이외에 민간부문의 부패행위까지도 확장시켜 접근하고 있다(이정주, 2017).



출처: OECD/PUMA(1996), Ethics in the Public Service, p.34; 이정주(2017: 84) 재인용.

[그림 II-3-1] 국가별 공직윤리제고방식

특히 부패방지위원회의 벤치마킹 대상국이었던 홍콩이 윤리제고방식을 잘못된 행위를 적발 및 처벌하는 제도 중심의 방식에서 탈피해, 청렴성에 기반한 바람직한 공직가치로 좋은 행위를 하도록 부패통제전략을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이정주, 2017 재인용, Scott, Ian. and Joan Y. H. Leung, 2012).

UN 반부패 협약(UNCAC)이나 OECD 부패통제경향과 유사하게 최근 이루어진 국내 연구(김은경 외, 2015)에서 한국부패연구동향 연결망분석(Network Analysis) 결과, 부패연구의 학술적 관심은 공적 영역에 대한 부패에서 기업, 조직 등 사적 민간영역에 대한 부패로 이동하고 있으며, 1998년 IMF 이후 부패의 구조분석에서 자율적·윤리적 통제로 연구관심이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 등 민간영역으로의 다변화 및 “윤리”에 의한 “통제”로 주요 연구관심이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경제·재산범죄는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부패범죄와 마찬가지로 시장 경제를 어지럽히는 주요 범죄라 할 수 있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또는 법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지능성과 전문성을 요한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유형과는 차별성이 존재한다.

특히 경제범죄는 범행수법이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 진화하기 때문에 기존 법률의

규제를 교묘하게 벗어나거나 새로운 과학적 수법으로 고도화되어 있어, 그 적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죄로서의 성질이 전통 범죄의 범주에 속하는 듯 하면서도 기존 법률로서는 처벌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이천현, 2002).

경제·재산 범죄의 대표적인 형태인 사기 및 절도행위는 최근 들어 IT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공간상에 지능화 되고 교묘하게 이루어져 이를 막기 위한 방안 제시에 있어 연구자의 법학적인 지식외에 정보기술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인 경제·재산범죄(사기·절도)의 연구 주제도 연구배경을 보면 그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기·절도 등을 대응하기 위해 연구되었지만, 2011년 이후 연구가 되지 않아 교묘해지고 지능화되는 사기·절도 범죄에 대한 연구 대응력이 약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마도 사기·절도 범죄보다 그 당시 상황에 있어 더 이슈화되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연구되거나, 연구원의 주요 관심 연구분야가 아니었던 것도 연구경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제3절 분석 대상 및 분석모형

1. 분석 대상 논문의 선정

분석대상 연구과제는 총 30종이며, 부패 관련 연구 21종과 경제·지식 연구 9종이며 구체적인 연구과제명은 다음과 같다.

[표 Ⅱ-3-1] 경제·부패범죄 분석대상 연구과제

분석대상	(연도_과제속성) 연구과제
부패연구 (21종)	(1991_기본) 한국의 환경오염 및 환경범죄의 실태와 대책 (1994_기본) 화이트칼라범죄에 관한 연구 -유형과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1997_기본)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와 대책 (1998_기본) 권력형 부정부패의 구조와 통제방안 (1998_기본) 법조비리에 관한 연구 (1998_기본) 부정부패에 대한 사회문화적 고찰 (1998_기본) 학원부조리 실태에 관한 연구 -춘지관행을 중심으로- (1999_기본) 공무원범죄의 추이에 관한 연구 (2006_기본) 공무원범죄의 추이에 관한 연구(Ⅱ) (1999_기본) 90년대 돈세탁 ; 국제적 추세와 국내 실태 (2001_기본) 규제개혁정책과 부정부패(Ⅰ) -경찰, 소방분야- (2001_기본) 규제개혁정책과 부정부패(Ⅱ) -건설, 건축, 환경분야- (2001_기본) 규제개혁정책과 부정부패(Ⅲ) -식품위생, 세무분야- (2001_기본) 부패 ; 1980-90년대 정경유착 (2007_기본) 부패사범 통제체계의 실효성 제고방안 (2010_기본)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 및 대책(Ⅱ) (2015_적립금) 최근 부패방지법의 쟁점에 관한 연구 ; 청탁금지법에 관한 법리적 검토 및 국민의식조사 (2015_협동)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Ⅰ) ; 한국사회 부패범죄 발생 구조 및 변화트렌드 분석 (2016_협동)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2017_협동)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Ⅲ) (2018_일반)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Ⅰ) -브로커형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
경제· 재산연구 (9종)	(1992_기본) 사기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1995_기본) 상점절도에 관한 연구 (1997_기본) 자동차절도의 실태와 대책 (1998_기본) 허위·과장광고의 규제실태 및 개선방안 (2001_기본) 농촌지역의 농작물, 가축, 그리고 농기계의 절도피해실태 및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2002_기본) 컴퓨터사용 사기범죄의 현황과 처리실태에 관한 연구 (2007_수시) 한국 근로자의 직장절도에 대한 태도 ; 경험과 인지 (2010_수시) 국내외 투자사기의 유형과 대책에 관한 연구 (2011_기본) 위조범죄의 실태 및 유형별 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2. 연구경향의 분석모형

이 장에서는 연구 관심 분야를 부패문제와 경제·재산범죄로 한정하여 그간 ‘연구원’의 연구과제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향후 추가·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연구경향에 대한 분석기준으로 연구 형태가 어떠한 간에 기존 선행연

구(김인철, 1992; 하태권, 1995; 김두섭 외, 2002; 우양호 외, 2004; 김상구, 2005; 이윤호 외, 2006; 박재풍, 2011)를 보면 대체로 연구시기, 연구영역, 연구목적, 연구초점,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자특성 등이 논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기준을 좀 더 체계적으로 담기 위해 정책학 분야의 연구 경향을 분석하였던 김인철(1992)의 연구와 공공갈등연구 경향을 분석하였던 하혜영(2009)의 연구, 공공감사를 연구했던 공병천(2018)의 연구에서 적용되었던 세 가지 측면인 이론적 투입면, 방법론적 전개면, 지식의 산출면을 연구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첫째, 이론적 투입면은 하혜영(2009)과 공병천(2018)의 연구에서 분석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연구자 특성과 연구목적 이외에 추가적으로 연구시점과 연구대상을 선정했다. 연구자 특성은 학제 간 연구 또는 연구의 협업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학문 분야의 범위가 넓거나 해결되기 어려운 주제를 연구하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하혜영, 2009: 170; 공병천, 2018: 16 재인용). 여기에서의 분석은 주저자의 전공 분야를 살펴보고, 공동연구 여부를 세부기준으로 적용하였다.

특히 공동연구는 외부공동연구자의 여부와 외부공동연구자의 전공분야를 추가하였다. 연구목적은 해당 연구가 이론적 및 이론형성에 기여하는지,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기타 의견(연구방법론 확장, 실태파악, 성과진단)인지로 구분하였다(하혜영, 2009: 171 재인용; 공병천, 2018: 16). 연구시점은 부패 문제에 대해 정권별로 관심도가 달라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은 최근 부패에 대한 연구가 공공분야에서 민간분야로 확대되어 이러한 사항이 연구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보고자 공공, 정치, 사법, 사회전반 분류이외에 기업분야를 추가하였다.

둘째, 방법론적 전개면으로 분석방법으로 계량연구의 여부, 분석단위 정도, 자료수집방식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하혜영, 2009: 171; 우양호 외, 2004, 공병천, 2018: 16). 특히 수집된 자료가 비계량적 연구일 경우 다시 서술적 연구(문헌연구, 법제도연구)와 질적 연구(내용분석연구, 사례연구)로 구체화 하였다.

셋째, 지식 산출면으로 지식의 성장과 지속화를 고려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지식의 성장이란 기존의 지식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면서 이루어진다는 점(하혜영, 2009: 171, 재인용)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연구 내용의 특성을 반영하여 부패연구와 경제 및 재산연구로 나누었다. 부패연구의 세부 기준으로 부패연구의 개념화, 이론화, 부패문제해결을 위한 부패통제전략을 제시하였다. 특히, 부패통제전략은 부패통제시기(사후 처벌과 사전예방), 행정이념(합법성,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등), 통제수단(처벌중심, 인센티브 중심, 제도개선), 정책제안방식(개인의 인식변화, 제도변화, 문화형성)을 통해 측정하도록 한다. 경제·재산연구는 이론화, 해결방안형태를 세부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또 다른 평가기준인 지식의 지속화는 연구과제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왔는지를 통해 측정하도록 한다.

[표 II-3-2] 경제·부패범죄 연구 분석모형

구분	분석 기준	세부 기준		측정 방법
이론적 투입면	연구자 특성	주저자의 전공분야		① 행정학, ② 사회학(범죄사회학), ③ 심리학, ④ 형사법, ⑤ 기타
		공동 연구 여부		① 총 저자 수, ② 외부 공동자 여부, ③ 공동연구자 전공분야
	연구 목적	연구기여		① 이론적 이론 형성 ② 실제적 문제해결 ③ 연구방법론 확장 ④ 실태파악 ⑤ 성과진단
	연구 시점	정권별		정권별(노태우(1988-1993), 김영삼(1993-1998), 김대중(1998-2003), 노무현(2003-2008), 이명박(2008-2013), 박근혜(2013-2017.3), 문재인(2017.5-))
방법론 전개면	연구 대상	연구대상 초점		① 공공분야. ② 기업분야. ③ 정치. ④ 사회전반. ⑤ 사법분야
	분석 방법	계량/비계량 연구		① 계량적 연구. ② 서술적 연구(문헌연구, 역사적 연구, 법·제도적), ③ 질적 연구(사례, 내용분석 등). ④ 절충형(계량연구+비계량연구)
	분석 단위	분석단위		① 개인, ② 집단/조직, ③ 정부, ④ 국가, ⑤ 기타
지식 산출	지식의 성장	부패	부패의 개념화	① 일차자료(설명, 관찰, 면담, 설문조사 등), ② 이차자료(기존 자료), ③ 기타(일차자료+이차자료 병행) ④ 해당사항 없음
				연구에서 사용된 부패의 개념

구분	분석 기준	세부 기준		측정 방법
			부패의 이론화	분석을 위해 사용된 주요 이론
			부패통제 전략	① 부패통제시기: 사후 통제적, 사전예방 ② 행정이념: 합법성,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등 ③ 통제수단: 처벌중심, 인센티브 중심, 제도개선(비현실적 규정의 합리화) ④ 정책제안방식: 개인의 인식변화, 제도변화, 문화형성
		경제 및 재산	이론화	분석을 위해 사용된 주요 이론
			해결방안 형태	① 통제수단: 처벌중심, 인센티브 중심, 제도개선(비현실적 규정의 합리화) ② 정책제안방식: 개인의 인식변화, 제도변화, 문화형성
	지식의 지속화	주기적 연구 유무		주기적인 시계열적 연구의 지속화 정도 유무

제4절 분석결과

1. 이론적 투입면

가. 연구자 특성

1) 주저자의 전공분야

전체 30종 연구과제 중 사회학의 전공분야의 사람이 83.3%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일부 심리학(4.8%) 및 법학(형사법)(4.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부패관련 22종 연구과제 중 90.5%가 사회학 연구전공자였으며, 경제·재산 연구도 역시 9종 연구과제 중 사회학 연구전공자가 66.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연구가 사회학적 관점에서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표 Ⅱ-3-3] 경제·부패범죄연구 주저자의 전공분야(전체)

주저자의 전공분야	빈도	퍼센트
사회학(범죄사회학)	25	83.3
심리학	2	6.7
법학(형사법)	2	6.7
미상	1	3.3
합계	30	100.0

[표 Ⅱ-3-4] 경제·부패범죄연구 주저자의 전공분야(연구 분야별)

주저자의 전공분야		빈도	퍼센트
부패연구	사회학(범죄사회학)	19	90.5
	심리학	1	4.8
	법학(형사법)	1	4.8
	합계	21	100.0
경제·재산연구	사회학(범죄사회학)	6	66.7
	심리학	1	11.1
	법학(형사법)	1	11.1
	미상	1	11.1
	합계	9	100.0

2) 공동연구여부

(1) 총 저자의 수

전체 30종의 연구과제는 대다수가 1인 위주의 연구(40%)가 많으며, 공동연구가 이루어지더라도 3인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Ⅱ-3-5] 경제·부패범죄연구 총 저자의 수(전체)

총 저자의 수	빈도	퍼센트
1명	12	40.0
2명	6	20.0
3명	7	23.3
4명	2	6.7
5명	2	6.7
6명 이상	1	3.3
합계	30	100.0

구체적으로 부패연구는 1인 연구가 38.1%, 3인 연구 23.8%, 2인 14.3%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재산 연구는 1인 연구 44.4%, 2인 연구 33.3%, 3인 연구 22.2% 등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3-6] 경제·부패범죄연구 총 저자의 수(연구 분야별)

총 저자의 수		빈도	퍼센트
부패연구	1명	8	38.1
	2명	3	14.3
	3명	5	23.8
	4명	2	9.5
	5명	2	9.5
	6명 이상	1	4.8
	합계	21	100.0
경제·재산연구	1명	4	44.4
	2명	3	33.3
	3명	2	22.2
	합계	9	100.0

(2) 외부 공동연구 여부

부패 및 경제·재산연구는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60%로, 주로 내부 연구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7] 경제·부패범죄연구 외부 공동연구 여부(전체)

외부 공동연구 여부	빈도	퍼센트
그려함	12	40.0
그려하지 않음	18	60.0
합계	30	100.0

구체적으로 부패연구는 61.9%가 경제·재산연구는 55.6%가 내부연구진에 이루어져 외부연구진과의 협업의 필요성이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

[표 Ⅱ-3-8] 경제·부패범죄연구 외부 공동연구 여부(연구 분야별)

외부 공동연구 여부		빈도	퍼센트
부패연구	그러함	8	38.1
	그러하지 않음	13	61.9
	합계	21	100.0
경제·재산연구	그러함	4	44.4
	그러하지 않음	5	55.6
	합계	9	100.0

(3) 공동연구자의 전공

공동연구자는 주 저자가 사회학이 많은 만큼 공동연구자도 사회학(범죄사회학)(33.3%)이 가장 많고 행정학(25.6%)과 법학(형사법)(23.1%)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Ⅱ-3-9] 경제·부패범죄연구 공동연구자의 전공(전체)

공동연구자의 전공	중복응답	
	N	퍼센트
행정학	10	25.6%
사회학(범죄사회학)	13	33.3%
심리학(범죄심리)	1	2.6%
법학(형사법)	9	23.1%
기타	4	10.3%
미상	2	5.1%
	39	100.0%

분야별로 부패연구는 사회학(범죄사회학)이 28.1%, 행정학 28.1%, 법학(형사법) 25.0% 전공자가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와 달리 행정학 전공자의 비율이 높아진 것은 2015년 이후 협동과제에 많이 참여하다 보니 행정학의 참여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재산 연구는 사회학(범죄사회학) 전공자의 참여비율이 43.3%로 사회학(범죄사회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3-10] 경제·부패범죄연구 공동연구자의 전공(연구 분야별)

공동연구자의 전공		중복응답	
		N	퍼센트
부패연구	행정학	9	28.1%
	사회학(범죄사회학)	9	28.1%
	심리학(범죄심리)	1	3.1%
	법학(형사법)	8	25.0%
	기타	3	9.4%
	미상	2	6.2%
	합계	32	100.0%
경제·재산연구	행정학	1	14.3%
	사회학(범죄사회학)	4	57.1%
	법학(형사법)	1	14.3%
	기타	1	14.3%
	합계	7	100.0%

나. 연구목적

각종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그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원’의 설립취지에 걸맞게 연구목적이 주로 실태파악(43.3%)과 실제적인 문제해결(40.0%)과 관련된 연구과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11] 경제·부패범죄연구 연구목적(전체)

연구목적	빈도	퍼센트
이론형성	1	3.3
실제적인 문제해결	12	40.0
연구방법론 확장	1	3.3
실태파악	13	43.3
성과진단	3	10.0
합계	30	100.0

다만, 부패연구는 실태파악에 관한 연구(42.9%)가 실제적인 문제해결 관련 연구(33.3%)보다 많으며 경제·재산 연구는 문제해결연구(55.6%)가 실태파악에 관한 연구

(44.4%)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3-12] 경제·부패범죄연구 연구목적(연구 분야별)

연구목적		빈도	퍼센트
부패연구	이론형성	1	4.8
	실제적인 문제해결	7	33.3
	연구방법론 확장	1	4.8
	실태파악	9	42.9
	성과진단	3	14.3
	합계	21	100.0
경제·재산연구	실제적인 문제해결	5	55.6
	실태파악	4	44.4
	합계	9	100.0

다. 연구시점

연구시점으로 김대중 정부 때 가장 많이 연구된 것(43.3%)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패를 다룬 21종 연구 중 10종이 김대중 정부에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도에 부패방지법 및 부패방지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반부패·청렴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고 부패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부각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표 Ⅱ-3-13] 경제·부패범죄연구 연구시점(전체)

정부	빈도	퍼센트
노태우 정부(1988-1993)	3	10.0
김영삼 정부(1993-1998)	3	10.0
김대중 정부(1998-2003)	13	43.3
노무현 정부(2003-2008)	3	10.0
이명박 정부(2008-2013)	3	10.0
박근혜 정부(2013-2017.3)	3	10.0
문재인 정부(2017.5- 현재)	2	6.7
합계	30	100.0

[표 II-3-14] 경제·부패범죄연구 연구시점(연구 분야별)

	정부	빈도	퍼센트
부패연구	김영삼 정부(1993-1998)	2	9.5
	김대중 정부(1998-2003)	10	47.6
	노무현 정부(2003-2008)	3	14.3
	이명박 정부(2008-2013)	1	4.8
	박근혜 정부(2013-2017.3)	3	14.3
	문재인 정부(2017.5-현재)	2	9.5
	합계	21	100.0
경제·재산연구	노태우 정부(1988-1993)	3	33.3
	김영삼 정부(1993-1998)	1	11.1
	김대중 정부(1998-2003)	3	33.3
	이명박 정부(2008-2013)	2	22.2
	합계	9	100.0

라. 연구대상

총 30종 중 특정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사회전반을 다루는 연구 분야(46.7%)에 이어 공공분야의 연구(36.7%)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부패 분야의 연구는 공공분야의 연구가 가장 많은 반면 경제·재산 연구는 사회전반을 다루는 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패연구의 경우 UN 반부패협약에서 공공부문 이외에 민간부문의 부패방지의 중요성을 다루는 점에서 향후 기업분야의 연구 필요성이 증대된다.

[표 II-3-15] 경제·부패범죄연구 연구대상(전체)

분야	빈도	퍼센트
공공분야	11	36.7
기업분야	1	3.3
정치분야	2	6.7
사회전반	14	46.7
사법분야	2	6.7
합계	30	100.0

[표 Ⅱ-3-16] 경제·부패범죄연구 연구대상(연구 분야별)

분야		빈도	퍼센트
부패연구	공공분야	11	52.4
	정치분야	2	9.5
	사회전반	6	28.6
	사법분야	2	9.5
	합계	21	100.0
경제·재산연구	기업분야	1	11.1
	사회전반	8	88.9
	합계	9	100.0

2. 방법론적 전개면

가. 분석방법

분석방법으로 총 30종의 연구 중 계량연구(30%)보다 서술적 연구 및 질적 연구를 포함한 비계량 연구(60%)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3-17] 경제·부패범죄연구 분석방법(전체)

분석방법	빈도	퍼센트
계량 연구	9	30.0
서술적 연구(문헌연구, 역사적 연구, 법·제도적)	4	13.3
질적 연구(사례, 내용분석 등)	14	46.7
절충형(계량연구+비계량연구)	3	10.0
합계	30	100.0

부패연구는 사례나 내용분석과 같은 질적 연구(52.4%)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 순으로 계량연구(33.3%)로 균형적인 연구를 위해 계량연구가 좀 더 이루어질 필요성이 보인다.

한편 경제·재산 연구는 질적 연구 및 서술적 연구가 각각 33.3%로 가장 많아 비계량 연구위주로 연구되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Ⅱ-3-18] 경제·부패범죄연구 분석방법(연구 분야별)

분석방법		빈도	퍼센트
부패연구	계량 연구	7	33.3
	서술적 연구(문헌연구, 역사적 연구, 법·제도적)	1	4.8
	질적 연구(사례, 내용분석 등)	11	52.4
	절충형(계량연구+비계량연구)	2	9.5
	합계	21	100.0
경제· 재산연구	계량 연구	2	22.2
	서술적 연구(문헌연구, 역사적 연구, 법·제도적)	3	33.3
	질적 연구(사례, 내용분석 등)	3	33.3
	절충형(계량연구+비계량연구)	1	11.1
	합계	9	100.0

나. 분석단위

분석단위로 부패연구이든 경제·재산 연구이든 간에 집단·조직(부패연구: 19.0%, 경제·재산연구: 22.2%) 보다 개인위주의 연구(부패연구: 61.9%, 경제·재산연구: 66.7%)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조사에서 조직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나 범죄통계분석에 있어 개개인의 범죄에 기초해서 분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Ⅱ-3-19] 경제·부패범죄연구 분석단위(전체)

분석단위	빈도	퍼센트
개인	19	63.3
집단/조직	6	20.0
정부/정권	1	3.3
기타(결합된 형태)	4	13.3
합계	30	100.0

[표 Ⅱ-3-20] 경제·부패범죄연구 분석단위(연구 분야별)

분석단위		빈도	퍼센트
부패연구	개인	13	61.9
	집단/조직	4	19.0
	정부/정권	1	4.8
	기타(결합된 형태)	3	14.3
	합계	21	100.0
경제·재산 연구	개인	6	66.7
	집단/조직	2	22.2
	기타(결합된 형태)	1	11.1
	합계	9	100.0

다. 자료수집

자료수집방식은 부패연구와 경제·재산 연구 모두 기존 2차 자료(기존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하는 형태가 많았으며(부패연구: 52.4%, 경제·재산연구: 55.6%), 그 다음으로 이차자료와 일차자료의 비중을 유사하게 반영하는 방식(부패연구: 33.3%, 경제·재산연구: 33.3%), 일차자료방식 순(부패연구: 14.3%, 경제·재산연구 11.1%)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인 조사의 형태보다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많아 연구의 목적에 맞는 기존 자료를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표 Ⅱ-3-21] 경제·부패범죄연구 자료수집(전체)

자료수집	빈도	퍼센트
일차자료(설명, 관찰, 면담, 설문조사 등)	4	13.3
이차자료(기존 자료)	16	53.3
기타(일차자료+이차자료 병행)	10	33.3
합계	30	100.0

[표 II-3-22] 경제·부패범죄연구 자료수집(연구 분야별)

자료수집		빈도	퍼센트
부패연구	일차자료(설명, 관찰, 면담, 설문조사 등)	3	14.3
	이차자료(기존 자료)	11	52.4
	기타(일차자료+이차자료 병행)	7	33.3
	합계	21	100.0
경제·재산 연구	일차자료(설명, 관찰, 면담, 설문조사 등)	1	11.1
	이차자료(기존 자료)	5	55.6
	기타(일차자료+이차자료 병행)	3	33.3
	합계	9	100.0

3. 지식산출

가. 지식성장

1) 부패연구

(1) 부패의 개념

현재까지 전반적인 연구는 부패의 개념을 공직자 중심의 공공분야에 초점(47.6%)을 맞추어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23] 부패연구에서 부패 개념 초점

부패개념	빈도	퍼센트
공공분야	10	47.6
공공분야+민간분야	4	19.0
명시되지 않음	7	33.3
합계	21	100.0

다만, 최근 2015년도 연구 이후부터 과거와 달리 UN 반부패협약 및 국제투명성기구의 반부패활동 등을 반영하여 부패의 개념이 공권력의 사적 남용이라는 공직중심의 정의에서 민간분야에서의 권력남용까지도 포괄하여 민간까지 확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II-3-24] 부패연구에서 부패 개념 변화

연구과제(연도)	부패의 개념
공무원의 부정부패의 실태 및 대책 연구(1997)	공직자가 사적인 이익(금전적 이득, 지위확보, 영향력의 행사)이나 기타 어떤 목적을 위해 공적인 역할을 남용하거나 그 지위와 관련된 법적·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이탈하는 행위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Ⅰ) 연구(2015)	“사익을 직·간접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공익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공중의 신뢰를 위배하며, 공공영역이나 민간영역에서 자신에게 위임된 권력과 권한을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라 행사하지 않고 남용하는 개인이나 조직의 행위

(2) 부패의 이론화

부패연구 21종 중 13종(61.9%)이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25] 부패연구에서 부패의 이론적 배경 반영 여부

부패의 이론적 배경	빈도	퍼센트
반영됨	13	61.9
반영되지 않음	8	38.1
합계	21	100.0

이론적 배경으로는 부패의 원인(근대화의 산물, 합리적 선택, 문화의 산물, 범죄성향의 표출로서의 부정부패), 부패의 유형 및 구조, 범죄통제이론, 교환이론, 부르디외의 하비투스 개념, 공무원 범죄의 원인(개인적 요인, 조직 내적 특성, 경제발전, 사회문화적 요인, 제도적 요인, 미온적 처벌), 정경유착 부패의 사회문화적/역사적 맥락, 화이트칼라범죄와 부패의 개념적·이론적 관련성 등으로 주로 범죄심리학적인 접근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자가 주로 사회학자이다 보니 사회학이나 심리학적 접근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3) 부패통제전략

부패통제시기로 사전예방(14.3%)보다 사후통제(38.1%)에 방식에 초점을 두었으며, 행정이념상 합법성(23.8%)을 많이 강조했다. 통제수단으로 비현실적 규정의 합리화

및 제도개선(38.1%)이 많았으며 인센티브 부여방식(4.8%) 보다 처벌중심의 수단(33.3%)을 많이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제안방식도 제도변화(57.1%)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3-26] 부패연구의 부패통제시기

부패통제시기	빈도	퍼센트
사후통제	8	38.1
사전예방	3	14.3
언급되지 않음	7	33.3
사후통제+사전예방	3	14.3
합계	21	100.0

[표 II-3-27] 부패연구에서 초점을 맞추는 행정이념

행정이념	빈도	퍼센트
합법성	5	23.8
투명성	1	4.8
공정성	2	9.5
기타	1	4.8
언급되지 않음	12	57.2
합계	21	95.2

[표 II-3-28] 부패연구의 부패통제수단

부패통제수단	빈도	퍼센트
처벌중심	7	33.3
인센티브 중심	1	4.8
제도개선, 비현실적 규정의 합리화	8	38.1
언급되지 않음	5	23.8
합계	21	100.0

[표 II-3-29] 부패연구의 정책제안방식

부패연구의 정책제안방식	빈도	퍼센트
제도변화	12	57.1
복합적(개인인식+ 제도변화)	4	19.0
언급되지 않음	5	23.8
합계	21	100.0

2) 경제·재산연구

(1) 이론화

경제·재산연구는 실태분석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다 보니 이론적 논의에 대한 반영이 떨어지는 것(이론적 반영: 33.3%, 미반영: 66.7%)으로 나타났다.

[표 Ⅱ-3-30] 경제·재산연구의 이론적 배경 반영 여부

경제·재산연구의 이론적 배경	빈도	퍼센트
반영됨	3	33.3
반영되지 않음	6	66.7
합계	9	100.0

(2) 해결방안 형태

통제수단으로 비현실적 규정의 합리화 및 제도개선(77.8%)이 많았으며, 정책제안방식도 제도변화(77.8%)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Ⅱ-3-31] 경제·재산연구의 통제수단

경제·재산연구의 통제수단	빈도	퍼센트
처벌중심	1	11.1
제도개선, 비현실적 규정의 합리화	7	77.8
해당사항 없음	1	11.1
합계	9	100.0

[표 Ⅱ-3-32] 경제·재산연구의 정책제안방식

경제·재산연구의 정책제안방식	빈도	퍼센트
개인의 인식변화	1	11.1
제도변화	7	77.8
해당사항 없음	1	11.1
합계	9	100.0

나. 지식의 지속화

전체 30종의 연구 중 한 차례에 연구에 그치는 연구가 70%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재산연구는 주기적인 연구가 전무하며, 부패연구도 57.1%가 한 차례에 그쳐 연구의 지속성·연속성 관점에서 실태에 대한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측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연구에 대한 중장기적인 플랜 부족도 원인이겠지만, 연구자의 학문적 관심이나 이직으로 인한 측면과 연구 분야에 대한 정권의 관심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표 II-3-33] 경제·부패범죄연구 주기적(유사) 연구유무(전체)

주기적(유사) 연구유무	빈도	퍼센트
해당	9	30.0
해당되지 않음	21	70.0
합계	30	100.0

[표 II-3-34] 경제·부패범죄연구 주기적(유사) 연구유무(연구 분야별)

주기적(유사) 연구 유무		빈도	퍼센트
부패연구	해당	9	42.9
	해당되지 않음	12	57.1
	합계	21	100.0
경제·재산연구	해당되지 않음	9	100.0

제5절 향후 연구과제

이상으로 부패문제와 경제·재산범죄를 다룬 연구보고서 30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원'에서 이와 유사한 연구 수행 시 좀 더 추가 및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외부연구진의 공동 참여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시각 보완

분석된 30종의 연구보고서는 주로 연구가 '연구원'의 연구자가 사회학을 많이 전공하다 보니 사회학적 관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의 비중이 60%로 상당히 높아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존 '연구원'의 인력풀 이외에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외부연구진의 참여가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주기적 연구과제 필요성에 대한 사전검토제도 도입을 통한 추이 분석 강화

총 30종의 연구 중 70%가 한 차례에 연구에 그쳐 연구과제가 주로 사회적 현안 과제나 연구자의 관심주제 위주로 연구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유사 연구 또는 시차를 달리하여 주기적 연구가 30%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분석에 대한 기준 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다 보니 연구 간의 변화추이를 통한 성과(개선사항)를 정확히 알기 힘든 측면이 존재한다.

몇 년을 주기하여 연구를 할지는 정책적인 판단이겠지만 매년 '연구원'에서 과제를 선정할 때 주기적 연구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다양한 연구분석 방법의 시도

앞선 연구결과를 보면 비계량 연구(사례, 내용분석 등)가 많으며, 주로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여 이루어지는 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분석 방법이 한 쪽 방향으로 많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연구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분석방법을 사용 시 연구의 패턴이 기존 연구와 별 차이가 없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분석방법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기존 부패연구는 주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여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분석단위를 국가나 조직(예: 청렴한 국가/조직과 부패한 국가/조직간의 차이점 분석)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수행할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비계량연구

구 이외에 최신 통계기법을 활용한 계량연구를 많이 활용해 부패실태와 해결책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본다.

4. 부패 및 경제·재산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강화

부패범죄이든 경제·재산 범죄이든 공히 범죄기법이 지능화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범죄가 발생하고 난 이후 이를 해결하고 사후 대응책을 마련되는데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 기술, 정책 도입 시 부패나 범죄로 연계될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연구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테면 연구원이 환경영향평가와 유사하게 사회적으로 이슈화될 수 있는 제도, 정책, 기술 등 도입 시 형사정책(부패 및 경제·재산범죄)에 부정적으로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사전에 영향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형사정책영향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부패분야 연구과제의 사각지대 보완

먼저 부패연구에서 분야별/대상별로 볼 때, 그동안의 부패연구가 공공부문 중 행정 분야에 치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사법 분야나 정치 분야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사법농단이나 정치권의 이해상충 문제가 사회이슈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공공부문 이외에 민간부문으로 확대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민간분야는 자율성이 담보된다는 점에서 국책연구기관인 '연구원'에서 접근하기 힘든 부분이라 민간분야 중 공익적인 성격이 큰 분야에 대한 부패연구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청탁금지법상 적용대상 기관인 언론기관이나 사립학교에 대한 부패문제에 대해 조명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이다.

또한 부패연구에서 최근 UN 반부패협약과 같은 국제협약이나 ISO 37001과 반부패 경영시스템에서 민간부문의 청렴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부문의 윤리경영

시스템에 관심을 좀 더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부패라는 문제가 우리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 힘들다. 정치, 경제, 시민사회의 협력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부패연구가 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패해결의 접근방식에 있어, 대다수 조직이나 조직인을 잠재적인 부패나 범죄의 통제대상이라는 기존 연구 시각에서 벗어나 자율성에 기반 한 윤리적 통제에 대한 확보방안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렴을 실천하면 개인, 조직, 더 나아가 국가까지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선순환적인 반부패 통제 시스템 구축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존 연구는 주로 부패가 발생한 이후 사후처벌 중심의 정책을 다루고 있어 사전 예방적인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국제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청렴교육, 공직자 행동강령, 부패방지기구 정비 등과 같은 사전 예방적인 정책과제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에서 부패의 해결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 중 처벌을 강화하고 보상을 강화해야 하는 등 다소 원론적이고 추상적이 많아 연구보고서 간의 차별성이 보이지 않아 문제해결에 대한 방식에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제시하여 개선할 수 있는 과제(예: 최근 부패방지법의 쟁점에 관한 연구; 청탁금지법에 관한 법리적 검토 및 국민의식조사)를 많이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공병천(2018). “공공감사 연구경향에 대한 시론적 연구 - 한국연구재단 행정학 분야 등재학술지를 중심으로”. 감사논집 (31): 5-33.
- 기광도(2001). 농촌지역의 농작물, 가축, 그리고 농기계의 절도피해실태 및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두섭·은기수(2002). “『한국사회학』 게재물의 구성과 변화, 1964-2002”. 한국사회학. 36(6). 215-234.
- 김상구(2005). “지방정부’에 관한 연구경향과 전망: <지방정부연구>에 게재된 논문 (1997~2003)을 중심으로”.
- 김성연(1998). 법조비리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신동준·이정주·이선중(2015).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 (I) : 한국사회 부패범죄 발생구조 및 변화트렌드 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익기·김성연(1991). 한국의 환경오염 및 환경범죄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인철(1992). “한국정책학 분야의 연구내용과 그 성격: 정치학회보와 행정학보 게재논문분석”. 한국행정학보, 11(1): 1049~1067.
- 김준호·차종천·김성연(1992). 사기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1998). 허위·과장광고의 규제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노성호(1995). 상점절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재풍(2011). 한국 형사사법 연구경향의 실증적 분석: 최근 3년간 한국형사정책연구총서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 93-120.
- 박철현(1998). 부정부패에 대한 사회문화적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형민(2002). 컴퓨터사용 사기범죄의 현황과 처리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성진(1998). 권력형 부정부패의 구조와 통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성진(1999). 공무원범죄의 추이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성진(2006). 공무원범죄의 추이에 관한 연구(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성진·김용세·김혁래·유홍준·추형관(2007). 부패사범 통제체계의 실효성 제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성진·김지선(1997).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성진·이민식·이천현(2001). 규제개혁정책과 부정부패(I) -경찰, 소방분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우양호·홍미영(2004). “「지방정부연구」의 실증적 분석(1997~2004): 행정학 분야 주요 학술지와 비교연구”. 지방정부연구, 8(2): 75-103.
- 유홍준·장준오(2007). 한국 근로자의 직장절도에 대한 태도 : 경험과 인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민식·연성진·이천현(2001). 규제개혁정책과 부정부패(III) -식품위생, 세무분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윤호·김순석(2006). “한국공안행정 분야의 연구경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기고논문(1991-2005)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5: 269-295.
- 이정주(2017). “청렴문화의 시작, 청탁금지법 정착화를 위한 제언”. 한국부패학회, 22(2): 75-96.
- 이천현(2002). 경제범죄의 새로운 양상과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02-03.
- 이천현·연성진·이민식(2001). 규제개혁정책과 부정부패(II)-건설, 건축, 환경분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준오(1999). 90년대 돈세탁: 국제적 추세와 국내 실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준오(2001). 부패: 1980-90년대 정경유착,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영실(1998). 학원부조리 실태에 관한 연구 -춘지관행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병인·전영실(1997). 자동차절도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최영신(1994). 화이트칼라범죄에 관한 연구 -유형과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하태권(1995). “한국인사행정의 실증적 연구에 관한 고찰: 연구경향과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9(4): 1463-1483.
- 하혜영(2009). “공공갈등연구의 경향과 과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2): 163-186.
- 홍영오·김범준·구현아(2010).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 및 대책(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황지태·김경찬·서울시립대학교(2016).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

(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황지태·김유근·박준희(2015). 최근 부패방지법의 쟁점에 관한 연구: 청탁금지법에 관한 법리적 검토 및 국민의식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황지태·류전철(2011). 위조범죄의 실태 및 유형별 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황지태·박정선·양승돈(2010). 국내외 투자사기의 유형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황지태·윤해성·김철·김혁·장진희·이선중·권우덕(2017).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I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황지태·정지혜·김정연·강우예(2018).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I) : 브로커형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OECD/PUMA. (1996). *Ethics in the Public Service*. Paper No. 14, p.34.
- Scott, Ian. and Joan Y. H. Leung. (2012). "Integrity management in post-1997 Hong Kong: Challenges for a rule-based system." *Crime Law Social Change*, 58: 39-52.

제 4 장

범죄현상과 대책(Ⅲ) : 마약 및 조직범죄, 기타범죄 관련 연구

김 연 수

범죄현상과 대책(Ⅲ) : 마약 및 조직범죄, 기타범죄 관련 연구

제1절 개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으로 함)은 ‘각종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그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1988년 8월 공포·시행)에 의해 설립되었다. 설립취지에 맞게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대책 제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범죄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연구원’은 범죄실태 파악을 위해 일반적 범죄추세와 더불어, 폭력범죄, 경제범죄, 부패범죄, 마약범죄, 조직범죄, 소수집단 범죄 등 범죄를 유형화하여 실태를 살펴보고 있다.

범죄의 유형화는 법률적, 사회적, 심리적, 행태적 기준은 물론, 기타 범죄 특징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유형화의 목적은 범죄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형사정책의 주요 목적인 범죄(자)에 대한 제재와 관리, 처우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하면, 범죄는 개인적 법익인 생명·신체 및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살인, 폭행, 성범죄, 절도 등)와 사회적 법익인 공공질서를 침해하는 범죄(도박, 성매매, 방화 등), 그리고 이외의 복합적 보호법익을 갖는 특수한 유형의 범죄(조직범죄, 약물범죄, 화이트칼라범죄, 증오범죄, 컴퓨터관련 범죄 등)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마약범죄 및 조직범죄는 전통적 범죄와는 다른 특수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형법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범죄로 부르고 인정하였던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범죄를 전통적 범죄라 한다면, 조직범죄, 화이트칼라범죄, 정치범죄, 성매매 혹은 마약범죄는 특수범죄라는 이름으로 분류하는 것이다(이운호, 2007).

이처럼 다양한 범죄유형 가운데, ‘연구원’ 설립 첫해인 1989년 수행된 범죄학 연구

는 총 6종으로 ‘연구원’의 설립배경 및 목적과 관련하여 매우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이 때 수행된 연구보고서 주제는 성폭력(심영희·윤성은, 1989), 메스암페타민(이정수 외, 1989), 소년비행(김준호 외, 1989), 민생치안범죄규제(신현주, 1989), 그리고 개방 교도소(이정수 외, 1989) 및 갱생보호사업(이정수, 1989) 등으로 범죄실태 관련 연구에 메스암페타민사범 실태연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전통적 범죄도 중요했지만,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당시의 사회적 관심이 지대했음은 물론, 마약범죄 대응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였음을 보여준다.

이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범죄현상은 마약범죄, 조직범죄, 그리고 사이버범죄와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이다. 마약범죄와 조직범죄, 그리고 사이버범죄는 전통적 범죄와 다른 특수범죄라는 점에서, 또 음주운전과 교통범죄 역시 현대사회에 새롭게 편입된 범죄개념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장을 구성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특히, 마약범죄와 조직범죄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고, 양자의 관계를 함께 연구한 사례도 많이 발견된다. 최근에는 마약공급을 다크웹(Dark-Web)이라고 하는 사이버공간을 활용한다거나, 사이버상의 범죄조직이 네트워크를 이루는 사례들도 발견되어, 이들 사이에 점이지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각각의 범죄유형이 갖고 있는 성격이 매우 상이하어 이들 범죄를 하나의 유형으로 묶어내기는 상당히 까다롭다.

여기에서는 ‘연구원’에서 수행된 마약범죄, 조직범죄, 사이버범죄, 그리고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에 대한 55종의 연구보고서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일부 연구보고서의 경우 순수하게 범죄실태로만 분류되지 않고 소년범죄 발생추세, 외국인범죄, 범죄피해조사, 교정처우의 영역에 속하여 다른 장에서 분석·논의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보고서를 누락하지 않고 4가지 범죄유형과 관련이 있는 보고서는 가급적 포괄하여 종합적 검토와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¹⁾

이 장에서는 시대구분과 연구방법 및 연구자유형을 기준으로 마약범죄, 조직범죄, 사이버범죄,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를 조망하고자 한다. 시대에 따라, 정권에 따라 현안 형사정책적 관심사와 국민적 요구가 상이하다고 본다. 따라서, 시대별 연구주제와 방법론 및

1) 본래 제2부 제4장의 주제로 분류된 연구보고서는 마약범죄 21종, 조직범죄·사이버범죄 10종,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 4종, 기타범죄 2종 등 총 37종이었다. 다만, 여기에는 마약범죄 32종, 조직범죄 9종, 사이버범죄 8종,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 6종 등 총 55종의 연구보고서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자 특성 등의 흐름을 통찰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각 시대별 연구주제의 변천과정은 시대적 요구에 ‘연구원’이 적절하게 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이나 소속에 따른 연구 주제 및 연구 방법 차이에 대한 시사점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범죄연구의 경향 분석을 위한 논의

1. 형사정책연구의 특성

형사정책은 넓은 의미로는 정책학의 한 영역으로 이해함이 타당할 것이다. 정책학의 학문적 분화에 기여한 Lasswell(1951)은 정책의 개념을 “사회변화를 전제로 한 문제해결 목적 정부활동”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결국, 형사정책은 범죄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활동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동시에 ‘형사정책’은 학문적 개념이기도 하다. 즉, 범죄에 관한 다양한 학문적 정보와 정부의 각종 대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과학으로 정부정책을 일컫는 범죄대책 또는 형법입법문제와는 구분되는 학문적 개념인 것이다(배종대, 2011: 3). 이는 형사정책이라는 용어 내에 ‘연구’의 개념이 내포된 것으로 보며, 범죄라는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형성과 실행 그 자체이자, 이를 위한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는 목적지향을 갖는 학술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한편, Lasswell(1970)은 정책학의 특성으로 맥락성(contextuality)과 문제지향성(problem-oriented), 분석방법의 종합성(synthesis of technique)을 꼽고 있다. 첫째, “맥락성”은 정책과정에 내재된 기능적 요소 즉, 정책환경이나 정책공동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특정 형사정책의 배경에 위치한 정치적 문화(정당, 사회경제적 배경 등), 범죄관련 정치 이슈(선거공약, 대중의 인식, 정책동향 등), 형사사법기관 간의 응집과 분열 등이 맥락성에 해당한다. 또, 정책공동체에는 정부기관(선출직 공무원, 주요 입법자, 주요 이해집단 등)이나 대중(미디어, 전문가집단, 압력단체, 비정부기구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Ismaili, 2006). 둘째, “문제지향성”은 당면 사회문제의 해결을 우선으로 축적된 지식을 집중하고자 하는 성격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명확한 목적설정, 추세파악, 과학적 방법 사용, 미래 가능성과 변화예측, 대안적 목표와 전략의 고안-평

가-선택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끝으로, “분석방법의 종합성”은 단편적 지식체계에 의존하기보다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의 시도를 의미한다. 이외에도 정책학은 가치 중립적이기 보다 공공성(publicness)이나 자유, 평등, 정의와 같은 현대국가의 가치를 추구하는 규범성 내지 목표지향성을 갖는 특징도 나타난다.

이 장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마약범죄, 조직범죄, 사이버범죄, 그리고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에 관한 ‘연구원’의 형사정책 연구성과물이다. 이들 형사정책 연구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책학의 특성인 맥락성, 문제지향성, 분석방법의 종합성 측면을 따라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에 앞서, 범죄유형의 법률적, 범죄학적 개념정의는 연구경향 이해를 위한 일차 관문의 성격을 갖는다. 법률적 범죄개념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기도 하지만, 범죄학적 관점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탐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정책연구에 있어 양자의 이해는 중요하다.

2. 마약범죄의 의의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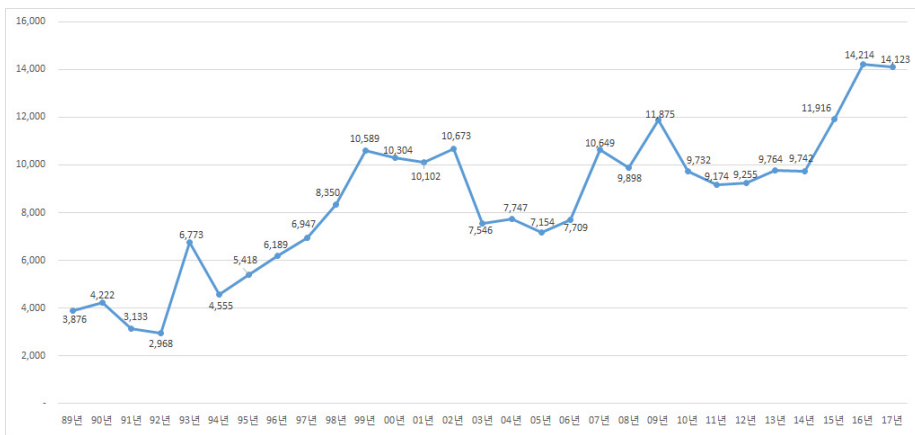
마약범죄에서 ‘마약’은 좁은 의미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총칭하는 의미로 혼용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제정하여 마약류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²⁾ 마약범죄는 이들 마약류의 생산(밀조 또는 밀경), 유통(밀수출입 또는 밀매), 사용(투약, 흡연 또는 소지) 등으로 구분된다(이민식, 2007: 232).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마약류를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의존성),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내성),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전지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며(금단증상),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사회적 해악성)로 정의하고 있다.

마약범죄 통제정책은 크게 공급차단 정책과 수요억제 정책으로 대별된다. 공급차단

2) “**마약**”은 일반적으로 마약원료인 생약으로부터 추출되는 천연마약과 화학적으로 합성되는 합성 마약으로 구분되는데, 천연마약에는 양귀비, 아편, 모르핀, 코데인, 헤로인, 코카인 등이 있다. 합성마약은 페치딘, 메사돈 등이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 시 인체에 현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대통령령에 규제대상으로 지정된 물질로 메스암페타민(히로뽕), MDMA(엑스터시), GHB(물뽕), 날부핀, 펜플루라민, 텍스트로메트로판, 카리소프로돌, 케타민 등이 있다. 끝으로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한다. 여기에는 대마초와 해쉬쉬(Hashish)가 있다.

정책은 공급조직 및 시장을 통제하는 전략과 합성마약의 원료물질의 유통을 통제하는 전략, 그리고 신종마약의 유통·확산을 억제하는 전략 등이 있다. 수요억제 정책은 마약사용자의 신규진입과 재범억제를 위한 전략으로 구분된다. 검거된 투약자들의 재범 억제를 위한 재활치료 및 교정처우와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이 재범억제전략이라면, 일반인의 마약사용 내지 약물중독을 차단하기 위한 체계적 계몽 및 예방교육이 신규진입 억제전략이다.



자료: 대검찰청. (1991~2018). 「마약류범죄백서」 1990~2017. 각년도 재구성.

[그림 II-4-1] 연도별 마약류사범 추이(1989년~2017년)

국내의 마약류사범은 1만명을 기준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데, 1999년~2002년까지 4년 연속 1만 명 이상 상회하다가, 2003년~2006년 4년간 7,000명 선으로 감소하였으나, 2007년부터 1만명 내지 9천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6년과 2017년은 1만 4천명을 넘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내 마약류사범은 2015년 이후 1만명 수준을 상회하여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2017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범죄는 SNS 등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 제조기술이 유통되어 소규모 마약류 제조사건이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발생하는 마약류 밀수사건과 외국인 마약류사범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외에도 신종마약류로 프로포폴이나 아산화질소 풍선(해피벌론) 등의 투약 및 흡입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대검찰청, 2018: 39-44).

3. 조직범죄의 의의와 동향

조직범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조직 내지 범죄단체와 관련한 법규정이 크게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의 조직)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고, 「폭처법」 제4조 제1항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또, 동조 제2항에는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규정된 죄를 범하였을 때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제2조의c에 따르면, 범죄집단(organized criminal group)이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경제적 이익이나 기타의 물질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동 조약이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행할 목적 하에서 일정기간 존속하면서 공동으로 범행을 도모하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조병인·윤해성, 2008: 235-236). UN협약의 개념과 유사하게 범죄학 관점의 조직범죄는 일종의 기업범죄로 분류되기도 한다. 즉, 범죄조직에 대해 불법수단을 통해 궁극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을 가진 범죄자의 기업집단으로 보고, 매춘·음화·도박·마약과 같은 기존시장은 물론 합법적 시장에서도 활동을 하는 집단으로 정의하는 것이다(Siegel, 2010: 414).

이상과 같이 국내법상 조직범죄의 개념은 폭력을 매개로 하는 점을 강조하고, 범죄학 관점의 개념은 경제적 이익추구를 강조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지만, 집단성을 강조하는 것은 공통적이다. 따라서 조직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연구는 조직범죄의 폭력성, 집단성은 물론 그 수익의 창구가 되는 불법수익원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고 있다.

조직범죄에 대한 공식통계를 확보하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이 있다. 조직범죄가 법률상 범죄개념이 아닌 까닭에 정확한 집계 불가능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2018년 경찰청의 조직폭력 100일 특별단속으로 1,385명을 검거한 사례를 통해 여전히 조직범죄가 국민의 일상 생활에 깊숙이 침투하여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경찰청 브리핑, 2018.6.25.).

4. 사이버범죄의 의의와 동향

사이버범죄는 ‘사이버공간을 범행의 수단, 표적, 장소로 삼는 범죄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학교폭력, 가정폭력, 직장폭력과 같이 일부 전통적 범죄 중 범행장소를 강조한 범죄유형과 유사한 설명방식이다(이윤희, 2007: 179). 다만, 전통적 범죄와 달리 사이버공간을 배경으로 발생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사이버범죄는 비대면성, 익명성, 전문성과 기술성, 시간적·공간적 무제약성, 빠른 전파성과 피해의 광범위성을 특징으로 한다(정완, 2009).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따르면 사이버범죄는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불법콘텐츠범죄 등으로 분류된다. 정보통신망 침해범죄는 해킹, 서비스 거부공격,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이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범죄는 인터넷 사기, 사이버금융범죄(피싱, 파밍, 스미싱 등), 개인·위치정보 침해, 사이버저작권 침해, 스팸메일 등이 있다. 끝으로 불법콘텐츠 범죄로는 사이버음란물, 사이버도박,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이버스토킹 등이 있다(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http://cyberbureau.police.go.kr/> 2019.1.17.검색).

하지만, 현행법상 사이버범죄 개념정의는 명확하지 않다. 대신, 그 유형별로 규제입법이 되거나 기존의 형법 등을 적용하는 등 관련 규정이 산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사이버범죄에 대한 규제 및 감독기관 역시 다원화된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정완, 2016).

국내의 사이버범죄 발생현황은 [표 II-4-1]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전체 사이버범죄 가운데 정보통신망 이용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불법콘텐츠범죄, 정보통신망 침해범죄의 순으로 발생하였다. 2018년 기준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가운데는 인터넷 사기가 112,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콘텐츠범죄는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이 10,8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통신망 침해범죄에서는 해킹이 2,17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해킹의 경우 침입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은 점에서 침해수준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Ⅱ-4-1] 사이버범죄 발생현황

(단위: 종)

구 분	총 계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불법컨텐츠 범죄
2014	110,109	2,291	89,519	18,299
2015	144,679	3,154	118,362	23,163
2016	153,075	2,770	121,867	28,438
2017	131,734	3,156	107,271	21,307
2018	149,604	2,888	123,677	23,039

자료: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범죄 통계자료(<http://cyberbureau.police.go.kr/> 2019.1.17. 검색).

5.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의 의의와 동향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은 교통범죄를 ‘교통사고 범죄’와 ‘기타 교통범죄’로 구분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 위험운전치사상) 등을 교통사고 범죄라 한다면, 기타 교통범죄는 형법상 교통방해의 죄,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 상 위반행위를 의미한다.

교통범죄 가운데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변화되어왔는데, 2018년 법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의 기준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에서 0.03%로 강화되기도 하였다. 이 밖에 최근 보복운전, 위협운전, 난폭운전 등 새로운 교통범죄행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2018년도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3,781명으로 1976년 이후 처음으로 4천명 이하로 감소하였다. 특히, 음주운전 사망자수는 6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부각되어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즉,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 강화(사망사고 시 기존 유기징역 1년 이상을 3년 이상 또는 무기로 처벌 강화), 면허 행정처분 강화(면허정지 기준 0.05%에서 0.03%로 강화, 3회에서 2회 적발시 면허취소), 음주운전 예방교육 및 홍보강화 등 음주운전 근절대책이 추진되었다(경찰청·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9.2.28.).

제3절 연구방법

1. 분석틀

이 장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원’의 범죄연구는 기본적으로 정책연구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학의 특성으로 꼽히는 문제지향성(problem oriented), 분석방법의 종합성(synthesis of technique), 그리고 맥락성(contextuality)을 분석의 핵심내용으로 삼고자 한다.

먼저, 문제지향성은 형사정책연구의 주제선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즉, 당시 정부와 사회에서 사회문제로 이슈화된 주제가 연구의 주제가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이는 역으로 해당 연구의 주제 내지 연구목적을 확인함으로써 문제지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범죄학 내지 형사정책학은 종합학문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점에서 분석방법의 종합성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이 장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연구가 갖는 분석방법의 종합성은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의 연구방법 내지 분석기법의 유형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분석방법은 연구목적 및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일단, 연구목적에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연구방법을 찾게 되는 점에서 연구방법은 연구목적에 종속된다. 또, 연구자의 학문배경 역시 주로 사용하는 연구방법의 선택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다양한 학문배경을 갖고 있는 연구자가 공동으로 연구를 하는 경우 분석방법의 종합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또, 연구자의 소속이 ‘연구원’ 내부인 경우와 외부인 경우에도 연구방법의 다양화를 꾀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끝으로, 형사정책연구의 맥락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구가 수행된 시기의 정치적·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구수행 당시의 정부 및 집권정당의 정치적 성향은 정책형성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따라서, 연구수행 연도를 중심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이 연구의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문제지향성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목적에 확인한다. 둘째, 연구방법의 종합성 파악을 위해 연구방

법을 확인하였다. 셋째, 연구자의 특성으로 연구자 수와 소속 등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개별연구의 성과와 전망은 시대적·정치적 맥락성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아 맥락성에 대한 검토를 최대한 투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분석범위

‘연구원’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연구성과물을 발간하고 있다. 분기별로 발간되는 Peer Review 형식의 학술논문지인 「형사정책연구」와 역시 계간지인 「형사정책연구소식」, 2014년부터 발간하고 있는 「KIC 이슈페이퍼」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연구원’의 주요 발간물은 기본과제, 협동과제, 수시과제, 일반과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발간된 「연구보고서」가 중심에 있다.

2019년 현재 ‘연구원’의 홈페이지에 탑재된 연구보고서는 총 1,084종에 이를 만큼 방대하다. 약 30년간의 연구성과물이 축적된 결과이다. 이 가운데 이 장에서는 범죄학 연구 파트에 속하는 연구 중에서 범죄발생의 실태에 해당하는 내용 중 일부를 다룬다. 범죄발생 실태 중에서도 마약범죄, 조직범죄, 사이버범죄,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 등 4가지의 범죄영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고서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이 장의 연구대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가운데 마약범죄 32종, 조직범죄 9종, 사이버범죄 8종,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 6종 등 총 55종의 연구보고서이다.

제4절 연구동향

1. 마약범죄 연구

가. 제1기 : 1989년~1997년

1) 연구주제

‘연구원’의 마약범죄 연구는 1989년 ‘연구원’이 설립되면서부터 주요 연구분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창기 마약범죄연구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진 시기

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마약범죄 연구는 실태파악에 주력했는데, 메스암페타민사범을 대상으로 한다든지(이정수 외, 1989), 유흥업소 주변의 약물오남용 실태 확인(김경빈, 1990) 등이 이루어졌다. 약물남용자의 치료와 재활에 대한 연구도 있었지만(이근후 외, 1991) 연구주제의 중심은 실태파악과 이를 토대로 한 강력한 공급억제 내지 수요억제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청소년의 약물남용문제가 성인 마약사범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 대상 약물남용실태와 원인 탐색(김준호·박정선, 1994) 및 약물남용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개발(김성이, 1991) 등과 관련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끝으로 기타연구로 1995년 중독범죄의 한 유형으로서 제주지역 중심의 도박 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도박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였다.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도박은 전통적 범죄로 보기 어려운 점, 다른 범죄유형에 비하여 사회적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공식통계 집계가 어려운 점 등 여러 이유를 추론해볼 수 있다.

[표 II-4-2] 제1기 마약범죄 연구 현황

no.	제목	연도	연구자 수	소속	학문 배경	연구목적	연구 방법	정부
1	메스암페타민사범의 실태와 대책	1989	4	내부/파견 ¹	법학/사회학	메스암페타민 실태파악	판결문조사, 설문, 면접	노태우
2	유흥업소 주변의 흡관중독성물질 오·남용 실태 연구	1990	1	외부	보건 의학	유흥업소 주변 약물오남용 실태 확인	설문	
3	청소년의 약물남용과정과정에 관한 연구 -소년원생을 중심으로-	1990	2	내부	사회학	청소년 약물남용과정 탐색	심층면접, 설문, 질적연구	
4	약물남용범죄와 약물공급범죄에 관한 연구	1991	3	내부	사회학	약물남용자와 약물공급자의 행위특성	설문	
5	약물남용의 실태와 통제방안 -미국의 경우-	1991	1	외부	사회학	미국사례 연구를 통한 교훈 확보	문헌	
6	약물남용자의 치료상 문제점과 대책 : 약물남용자의 심리사회적 요인과 치료자의 치료경험을 중심으로	1991	6	외부	정신 의학	약물남용 치료 전략과 정책수립	설문	
7	약물남용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1991	1	외부	사회 복지학	약물남용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문헌, 참여관찰, FGI	
8	약물남용과 범죄와의 관계	1992	2	외부	사회학	약물남용-범죄행위간 관계분석	2차자료 분석	
9	청소년의 약물남용실태에 관한 연구 -술, 담배를 중심으로-	1994	2	내부	사회학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원인 확인	설문	김영삼
X	도박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1995	1	외부	사회학	도박실태와 일반인의 태도 및 의식조사, 형사정책수립	설문	

제1기를 다시 노태우 정부(1988년~1992년)와 김영삼 정부(1993년~1997년)로 나누어 살펴보면 차이가 발견된다. 노태우 정부에서는 1990년 10월 13일 범죄와 폭력에 전쟁을 선포하여 민생치안 문제해결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노태우 정부 시절 활발했던 마약범죄 연구(8종)는 김영삼 정부 시기 1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1994년 마약범죄 연구가 재개된 것은 1993년의 마약류사범 검거인원이 마약류범죄 백서가 발간된 1989년 이래 최초로 6,000명이 넘어선 것과 무관하지 않다.

2) 연구방법

1989년부터 1996년까지 이루어진 9종의 마약범죄연구(도박 제외)는 국내에 관련 연구가 거의 없는 시점에 이루어진 선도적인 연구로, 선택적이면서도 심층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초기의 연구 가운데 유흥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경빈, 1990)나, 메스암페타민사범 및 약물남용 재소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정수 외, 1989), 약물중독자와 정신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근후 외, 1991)는 특정 집단을 선택, 집중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모색하기도 했다.

한편, 김상희와 최영신(1990)은 약물남용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청소년의 약물남용과정에 대해 미시범죄학적(micro criminological) 관점의 연구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는 초기 마약범죄연구의 도전적 연구기법 활용을 보여준다. 또, 이 시기 수행된 대다수의 연구(8종)가 설문조사, 참여관찰, 역학조사 등 실증적 분석이 시도되어 마약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 시기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전체 연구의 1/3(3종)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후 마약범죄 연구에서 청소년 대상 연구가 거의 사라진 것을 감안하면, 청소년 대상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초창기 연구의 특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3) 연구자 특성

이 시기에 수행된 마약범죄연구의 연구자는 44.4%(4종)가 내부연구원에 의해 수행되었고, 55.5%(5종)는 외부위탁 형태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내부연구원의 학문배경이 법학 및 사회학인 점에 비추어 외부위탁 연구의 연구자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갖고

있었다. 물론 사회학(사회복지 포함)을 배경으로 한 연구자의 연구가 77.8%(7종), 의학 연구자의 연구가 22.2%(2종)로 나타나, 사회학을 배경으로 한 연구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마약범죄 관련 형사정책연구 중 유흥업소 주변 향락업소에서의 약물문제에 대한 역학조사(보건의학), 약물남용자의 치료상 문제점과 대책(정신의학), 약물남용 청소년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사회복지학) 등의 연구가 외부연구자에 의해 수행된 것은 특징적이라고 하겠다.

나. 제2기 : 1998년~2007년

1) 연구주제

마약범죄연구는 제1기의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연구(김준호·박정선, 1994) 이후 2001년까지 약 6년간, 성인대상 연구로 제한하면 1991년 연구(김익기 외, 2001) 이후 약 10년간 공백기가 있었다. 마약범죄연구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수요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마약류사범이 급격히 증가하면서부터이다. 당시 마약사범 수는 1999년 처음으로 1만 명을 상회하였고, 이후 2002년까지 내리 4년간 1만 명 이상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의식이 반영되어 2000년대 초중반 마약범죄 연구는 마약통제정책의 구체화를 시도하였다.

대표적으로 2004년에는 약물남용실태 및 의식조사(강은영·이성식, 2004), 약물남용 예방교육 실태와 효율화(강은영, 2004), 약물사범 치료프로그램 개발·운영(김성이·김은아, 2004) 등을 주제로 마약류 사용예방과 관리체계에 대한 3종의 연구가 연구총서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또, 2005년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마약통제 정책이 연구되었다. 여기에는 집단별 약물남용 실태파악(강은영·이성식, 2005), 약물법원의 치료적 개입방안(김은경, 2005), 형사사법체계와 보건의료체계의 협력방안(황만성·한동운, 2005), 관련 예산정책(권오성 외, 2005), 입법정책(김한균·박장우, 2005) 등 마약류범죄와 관련한 실태연구, 사법정책, 치료정책, 예산정책, 입법정책 등이 고루 연구되었다. 이 시기 연구 중에는 마약범죄와 조직범죄와의 연계성을 검토한 연구(조병인, 2003; 신의기 외, 2006)나 마약류 및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방안을 통한 공급억제 전략 연구(신의기, 2003; 신의기·주호노, 2006) 등 기존 연구주제에서 보다 심층적인 정책개발 연구들도 시도되었다.

마약범죄 연구의 제2기를 김대중 정부(1998년~2002년)와 노무현 정부(2003년~2007년)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시기 가장 많은 마약범죄 연구(14종)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마약류사범 검거건수가 1998년 8,350명에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1만 명 이상으로 증가한 김대중 정부의 마약통제 정책 실패를 반성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집권기 마약류사범은 2003년 7,546명, 2004년 7,747명, 2005년 7,154명, 2006년 7,709명으로 7천 명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집권 마지막 해인 2007년 마약류사범은 다시 1만 명을 넘어섰다.

[표 II-4-3] 제2기 마약범죄 연구 현황

no.	제목	연도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자수	소속	학문배경	정부
1	마약류 확산실태와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	2001	마약통제정책 방향제시	문헌	2	내부/파견 ¹	법학	김대중
2	마약류관련 수용자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2001	마약류 수용자 교정처우 개선	문헌/설문	1	내부/파견 ¹	사회학	
3	마약류 사범 처리 실태 : 수사 및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2002	마약류 제조/유통사범과 남용사범의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사건기록 조사	3	내부	법학/사회학	
4	약물사범 보호관찰에 관한 연구	2002	보호관찰실태, 해외 프로그램 소개	공식통계/문헌	1	내부	법학	
5	마약류 지정기준에 관한 연구	2003	대마 등 마약류 지정기준의 적정성 검토	문헌	1	내부	법학	노무현
6	마약조직의 생존행태 연구	2003	마약조직(불법공급)의 효과적 규제방안 모색	문헌	1	내부	법학	
7	청소년 약물남용의 행태 변화	2003	청소년 약물남용과정 연구(1990)의 후속연구	2차자료/설문/면접	1	내부	사회학	
8	약물남용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2004	약물남용의 실태파악 및 시민의식조사	설문	2	내부	사회학	
9	약물남용 예방교육의 실태와 효율화 방안	2004	약물남용 예방교육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문헌/설문	1	내부	사회학	
10	약물사범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2004	치료프로그램 개발, 시설 설치기준, 전문인력 관리	문헌	2	외부	복지/행정	
11	마약류 사범 치료재활을 위한 형사사법체계와 보건의료체계의 협력활성화 방안	2005	치료재활목적 형사법체계 보건의료체계의 협력방안	문헌	2	내부	법학/의학	
12	마약류 사용사범에 대한 형사절차상 치료적개입방안	2005	약물법원의 치료적 개입모형의 국내도입방안	문헌	1	내부	사회학	
13	마약류 수요억제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2005	주요 국가의 입법동향에 대한 분석 비교평가	문헌	2	내부/파견 ¹	법학	

no.	제목	연도	연구목적	연구 방법	연구자 수	소속	학문 배경	정부
14	마약범죄 통제를 위한 예산정책 연구	2005	마약범죄 통제 예산정책 개관 및 정책과제 제시	문헌/사례/현장조사	3	외부	행정/재정	
15	집단별 약물남용 실태와 수요감소전략	2005	약물남용 실태파악	설문/집단비교	2	내부	사회학	
16	마약 및 조직범죄의 형사정책적 현안과 종합적 대응방안	2006	마약 및 조직범죄의 동향, 형사정책적 현안, 대응	공식통계/문헌/설문	6	내부/외부	법학/사회학	
17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실태와 효율적 관리방안	2006	마약원료물질 관리방안 검토	문헌	2	내부/외부	법학	
18	마약류감시원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2006	마약류감시원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문헌/설문	2	내부/외부	사회학/법학	

2) 연구방법

제1기에 수행되었던 마약범죄 연구의 방법론은 88.9%가 설문조사 등 실증연구였다면, 제2기의 마약범죄 연구는 50%(9종)가 문헌연구 중심의 정책연구였고, 38.9%(7종)가 설문조사나 심층면접 중심의 실증연구였으며, 나머지 2종은 사건기록조사나 사례 분석 연구였다. 특히, 해외의 선진제도를 소개하고, 보다 정교한 형태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연구가 많았다.

방법론적으로 의의가 있는 연구에는 수사 및 재판기록 2,485건을 분석한 신의기 등(2002)의 마약류 사범 처리 실태 연구가 있다. 마약사범 양형요인을 확인하고 주요 판례를 검토한 연구로서 법학과 사회학의 복합학문적 성격을 갖는다. 또, 전국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약물남용 실태와 의식을 조사한 약물남용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강은영·이성식, 2004)는 제1기의 메스암페타민사범이나 유흥업소 주변의 약물 오남용 실태연구(이정수외, 1989; 김경빈, 1990)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단위 실태를 조사하였다. 청소년 약물남용 행태 변화 연구(김상희·최영신, 2003) 역시 1990년 청소년 약물남용과정 연구와 비교함으로써 연구원의 장점을 살리고 있다.

3) 연구자 특성

마약범죄 연구의 제1기에는 ‘연구원’의 연구 인적자원이 풍부하지 못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다수의 연구진이 보강됨으로써 외부위탁보다는 내부연구원의 비중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원’ 소속의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는 이 시기 진행된 18종의 연구 중 72.2%(13종, 파견 검사 및 교정공무원 수행연구 포함)를 차지했고,

내부와 외부연구원의 공동연구는 16.7%(3종), 순수 외부위탁연구 11.1%(2종)로 나타났다. 제1기의 마약범죄 연구보다 외부위탁은 크게 감소하였고, 내부연구원의 연구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순수 법학자 또는 사회학자로만 구성된 연구진의 연구가 각 33.3%(6종), 법학과 사회학의 공동연구가 16.7%(3종), 행정학 연구 11.1%(2종), 법학과 의학의 공동연구 5.6%(1종)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변화는 특정 연구주제에 대한 형사정책적 수요도 있겠지만, 연구를 공급하는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에서 나타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이 시기 '연구원'의 연구인력 구성이 사회학 및 범죄학 전공자보다 법학자의 유입이 더 많은 점에서 그 원인을 짐작할 수 있다.

다. 제3기 : 2008년~2017년

1) 연구주제

제3기는 이명박 정부(2008년~2012년), 박근혜 정부(2013년~2016년), 문재인 정부(2017년~)로 구성된다. 이시기의 마약범죄 연구는 매우 위축되었다. 2004년 마약류 예방 및 관리 체계 연구총서와 2005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등 총 8종의 연구를 포함하여 2006년 3종의 연구까지 마약연구가 매우 광범위하게 진행된 까닭에 추가연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표 II-4-4] 제3기 마약범죄 연구 현황

no.	제목	연도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자수	소속	학문배경	정부
1	마약류사범 재활센터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2012	교도소 내 마약류사범 치료재활모형과 프로그램 소개와 개발	문헌	2	내부/외부	사회학/심리학	이명박
2	약물사용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II)	2014	93년, 04년 이후 대규모 실태조사 실시	공식통계/문헌/설문	2	내부	사회학	박근혜
3	신종마약류범죄 발생실태와 통제정책	2017	신종마약범죄 발생실태와 통제정책 제시	수사재판 기록조사	4	내부	사회학, 법학	문재인
4	마약류사범 보호관찰 확대 등 사후관리 방안 연구	2017	마약류사범 사후관리방안 제시	판결문 조사	2	내부	사회학/심리학	

그러나, 2008년 이후의 마약류사범 추이는 2009년 11,875명으로 전년 9,898명보다 급증했으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9천 여명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추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2015년 11,916명이 검거된 이후 2016년 14,214명, 2017년 14,123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제3기에 이루어진 마약범죄 연구는 마약류사범의 교도소 내 치료재활모형과 프로그램 소개 및 개발 연구(강은영·신성만, 2012), 2004년 연구의 후속연구로 전국 7대도시 성인 4,000명 대상 약물사용 실태 및 의식조사(강은영·조소연, 2014), 신종마약범죄 발생실태 및 통제정책(전영실 외, 2017), 마약류사범에 대한 부가처분 등 사후관리 현황 분석 및 효과적 사후관리방안 연구(전영실·김지영, 2017) 등 총 4종이다. 이처럼 이 시기의 연구는 신종마약에 대한 실태와 통제정책 검토와 재범억제 및 치료·재활 등에 관한 연구비중이 증가했으나, 근본적으로 노무현 정부 시기에 비해 연구 건수가 급감하였기 때문에 그 비중에 큰 의미를 두기에 어려움이 있다.

2) 연구방법

제3기에 수행된 연구의 방법은 기존 연구와 크게 차별적인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 연구주제에 부합하는 연구기법들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마약류사범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의 경우 문헌연구 중심으로 수행되었고, 신종마약범죄 발생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재판기록을 조사하여 신종마약범죄와 전통적 마약범죄를 비교하기도 하였다. 또, 마약류사범의 사후관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판결문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특징적인 것은 2004년 약물사용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강은영·이성식, 2004)가 수행된 이후 코호트 연구 성격으로 2014년 동일한 형태의 실태조사가 실시된 점이다. 약 10년 주기로 마약범죄에 대한 일반국민의 사용실태와 의식을 조사하여 거시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연구원’의 긍정적 기능이자 역할이라고 본다.

3) 연구자 특성

제3기에서 나타난 연구 4종의 연구수행자는 대부분 내부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었고, 이 중 1종이 외부의 공동참여로 진행되었다. 4종의 연구 모두 사회학을 배경으로

한 연구자가 집필진으로 포함되었고, 연구주제의 성격이나 분석기법 측면에서 심리학 및 법학 전공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제1기와 제2기 마약 범죄 연구의 연구진에는 파견검사 및 공무원의 연구참여가 활발했다면, 제3기에서는 이러한 형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 내부 연구자 가운데 일부가 은퇴 내지 이직을 하면서 관련 연구의 양도 축소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2. 조직범죄 연구

가. 연구주제의 변천

조직범죄와 관련한 ‘연구원’의 연구는 마약범죄에서의 시기구분과 동일하게 3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제1기(1988년~1997년) 노태우·김영삼 정부시기, 제2기(1998년~2007년) 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 제3기(2008년~2016년) 이명박·박근혜 정부시기가 그것이다.

제1기의 조직범죄 연구는 조직폭력을 이해하기 위한 시론적 성격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1989년 ‘연구원’ 개원과 함께 1990년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 선언은 우리나라 형사정책 역사상 획기적 전환기를 맞이한 사건이기도 하다.³⁾ 조직범죄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이 시기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시의성 있는 연구주제였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제1기의 조직범죄 연구는 ‘조직폭력의 실태와 대책’(문영희·정진수, 1991) 외에 전무하다. 당시 이 연구는 조직폭력집단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문헌조사를 통해 검토하였고, 수사기록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정책연구 성격이 강하였다.

하지만,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조직범죄에 대한 연구가 1991년 이후 10년 이상 없었다는 것은 다소 의외의 상황이다. 다만, 굳이 그 이유를 찾자면, 시기적으로 조직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과 검거가 ‘연구원’의 설립시기와 중첩되는데, 나름

3) ‘범죄와의 전쟁’ 선언은 1990년 10월 4일 국군보안사령부 탈영병의 ‘보안사 민간인사찰’ 폭로를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국면전환 전략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동아일보, 2017.10.12., <http://news.donga.com/List/3/0707/20171012/86722002/1>, 2019.2.28. 검색). 그 이유는 이미 1990년 6월 8일 법질서 확립에 관한 대통령 특별담화가 있었고, 이보다 앞선 1989년 3월에 경찰과 검찰은 1989년부터 5대 사회악(조직폭력, 가정파괴, 인신매매, 마약, 부정식품) 대응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국가기록원, <http://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publicSave.do/>, 2019.2.28. 검색).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이루어지던 시점에 조직범죄를 연구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본다.⁴⁾

[표 II-4-5] 시기별 조직범죄 연구동향

no.	제목	연도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자수	소속	학문배경	정부
1	조직폭력의 실태와 대책	1991	조폭 역사적 변천과정과 실태파악하고 대응방안 강구	문헌/수사 기록조사	2	내부/파견1	법학	노태우
2	청소년 폭력집단에 관한 연구	2003	중학교 폭력집단 발생 배경과 실태파악	심층면접/설문	1	내부	사회학	노무현
3	조직폭력배의 소득원에 관한 연구 : 재소자에 대한 설문 및 심층면접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2006	조직폭력배의 경제활동 실증	설문/심층면접	2	내부/파견1	행정학	
4	폭력조직의 서식환경 연구	2006	조직폭력배의 서식환경 (소득원, 규제환경, 수요) 실태	2차 자료분석	2	내부/외부	법학	
5	폭력조직의 하위문화 연구	2006	하위문화이론 관점에서 폭력조직 고찰, 폭력조직의 하위문화 파악	2차 자료분석	3	외부	법학/범죄학	
6	조직폭력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	2007	06년 연구의 후속으로 조폭근절 대책수립	설문/문헌	8	내부/파견1/외부	법학	
7	국내거주 외국인의 조직범죄 실태와 대책 연구	2010	국내거주 외국인의 조직범죄 실태 파악	문헌/공식통계	4	내부/외부	법학	이명박 / 박근혜
8	조직범죄단체의 불법적 지하경제 운영실태와 정책대안 연구(Ⅰ) -불법사행산업을 중심으로-	2014	불법사행산업 실태조사, 정책대안 모색	사례조사/설문/판결문분석/심층면접	10	내부/외부(해외)	형사정책/경제학/사회학	
9	조직범죄단체의 불법적 지하경제 운영실태와 정책대안 연구(Ⅱ) -전통적 소득원을 중심으로-	2015	전통적 조직범죄단체의 소득원(유형업, 성매매, 대부업) 운영실태와 정책대안 모색	설문/심층면접/판례분석	7	내부/파견1/외부	형사정책/경제학/사회학	

제2기, 엄밀하게 노무현 정부시기(2003년~2007년)의 조직범죄 연구는 폭력조직의 경제활동, 서식환경 및 하위문화 등이 주를 이루었다. 또, 성인의 조직범죄 형태가 청소년 집단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의식 하에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청소년 폭력집단의 발생배경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동진, 2003)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4)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된 지 2년 만(1992년)에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가 선포 전에 비하여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경(檢警)을 동원해 조직폭력배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을 벌여 1년간 1,923명을 검거했고, 단기적으로 폭력범죄조직의 와해를 이끌어내며 많은 지지를 받았다.”(국가기록원, “범죄와의 전쟁” 편)

구체적으로 보면, 조직범죄의 실태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으로 2006년에 협동과제의 형식으로 3종의 연구가 동시에 실시되었다. 조직범죄로 수형중인 재소자와 조직범죄 전담 수사관, 그리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진 이 연구들은 조직범죄의 발생실태, 조직폭력 규제의 절차와 과정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였다(박경래·손석천, 2006; 조병인·최응렬, 2006; 최응렬 외, 2006). 특히, 이 시기 연구의 의의는 과거 전통적인 조직범죄 활동영역이 진화하여 건설업, 금융업, 연예계, 유통업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한 것이다. 2006년의 실태연구를 바탕으로 2007년에는 조병인 등 8명의 연구진이 종합적 실천 대책을 수립·제시한 점에서 일련의 연구가 시리즈 성격을 가지면서도 2년여에 걸친 중기연구로서의 성격도 갖는 특징이 나타난다.

제2기 조직범죄연구가 활성화하게 된 배경에는 2005년 4월 28일 국무총리 훈령으로 대검찰청에 조직폭력대책단이 설치되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조직폭력사범 대응체제가 구축된 것을 꼽을 수 있다. ‘연구원’에서는 정부노력에 부응하여 “조직폭력연구사업단”을 편성하고 관련 정책개발 지원 및 연구를 수행하면서, 조직범죄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제3기의 조직범죄 연구는 국내거주 외국인의 급증으로 나타나게 된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한 연구(조병인 외, 2010)와 조직범죄단체의 소득원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박준휘 외 2014; 강석구 외, 2015). 먼저, 2010년 국내거주 외국인의 조직범죄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들의 범죄실태를 파악하는 연구가 추진되었다. 이어서 2014년과 2015년에 수행된 조직범죄단체의 불법적 지하경제 운영실태 및 대책 연구는 2006년 수행된 조직폭력배의 소득원 연구를 토대로 보다 심층적인 실태분석과 대책을 제시한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조직범죄단체가 불법사행산업 중심의 신규 소득원을 발굴·운영하는 것을 파악했고, 전통적 소득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유흥업, 성매매, 대부업에 대한 운영실태를 확인했다.

나. 시기별 연구방법 및 연구자 특성

제1기에 수행된 ‘조직범죄 실태와 대책’ 연구(문영호·정진수, 1991)는 문헌연구와 공소장 및 수사기록조사가 주된 연구방법이었다. 연구의 주목적이 조직폭력의 실태

파악이었고, 연구자의 학문배경이 법학이었기 때문이다. 또 연구진의 구성이 내부연구원과 파견검사로 구성되어, 검찰측 자료활용이 용이한 측면도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

제2기 조직범죄 연구의 중심이 되는 2006년, 2007년에 수행된 폭력조직의 소득원, 서식환경, 하위문화 및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박경래·손석천, 2006; 조병인·최응렬, 2006; 최응렬 외, 2006; 조병인 외, 2007)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대검찰청의 의뢰로 수행된 “조직폭력범죄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수집·분석된 2차 자료를 활용한 특징이 있다. 이 시기 연구는 내부연구원은 물론 파견검사의 적극적 동참 및 외부연구원과의 협업이 주를 이루었고, 파견공무원이 없는 내부연구원으로만 구성된 연구사례는 청소년 폭력집단 연구(이동진, 2003)를 제외하고 없었다.

제3기의 조직범죄 연구가운데, 국내거주 외국인 조직범죄 연구(조병인 외, 2010)는 각종 문헌과 공식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하지만, 조직범죄단체의 불법 지하경제 운영실태 및 대책 연구(박준휘 외, 2014; 강석구 외, 2015)는 광범위한 조사를 특징으로 한다. 즉, 경찰수사실태, 온라인 설문조사, 판결문 분석, 종사자 및 조직폭력배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해외사례조사 등이 연구 수행범위에 포함되었다. 이를 위해 2014년 10명, 2015년 7명 등 규모 있는 연구진의 구성이 이루어졌다. 또, 2014년 연구에는 미국거주 한국인 교수를 비롯해 북경사범대학과 길림대학 소속의 연구자를 연구진에 포함함으로써 국제적 관점의 실태와 정책대안 모색을 가능케 하였다. 2014년과 2015년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도 매우 다양한 특징이 있다. 법학, 형사정책, 경찰학, 경제학, 사회학 등 다양한 시각을 가진 연구자가 협업을 함으로써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전반적으로 조직범죄연구는 1991년 연구 이후 약 10년 이상 공백기를 가졌지만, 2006년 이후 본격적인 연구가 추진되면서 제3기에 이르러서는 광범위하면서도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점에서 학문적 성장이 가파르고, 정책대안 역시 수사적인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증분석을 토대로 한 객관적인 증거기반의 정책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사이버범죄

가. 연구주제의 변천

사이버범죄에 대한 연구는 '연구원'의 개원 이후 초기에는 거의 없었고, 2000년 이후 시작하게 되었다. 인터넷망의 확산과 보급 이후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대한 이해와 그 규제 필요성이 연구과제로 이어진 것이다. 이후 각 시기별 시대적 필요성은 연구주제의 변화를 가져왔다.

[표 II-4-6] 시기별 사이버범죄 연구동향

no.	제목	연도	연구목적	연구 방법	연구자 수	소속	학문 배경	정부
1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피해	2000	사이버범죄피해 실상 기초자료 제공, 예방대책 수립에 기여, 제도적 장치 마련의 관심 유도, 이론적 경험적 연구의 활성화	온라인 설문조사	1	내부	범죄학 및 피해자학	김대중
2	사이버경찰에 관한 연구 -사이버범죄의 규제를 중심으로-	2000	사이버경찰의 효과적 운용과 발전방향 모색	문헌연구, 전문가자문	1	내부	법학	
3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연구	2001	미시수준에서 개인정보의 수집과정과 침해에 대한 실증분석	설문조사 및 사건기록 조사	1	내부	사회학	
4	사이버상의 청소년 일탈에 관한 연구	2003	사이버상의 청소년 일탈 관련 실태파악	온라인 설문조사	1	내부	사회학	노무현
5	인터넷 유해사이트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2005	인터넷 유해사이트에 대한 대책 마련, 실태 파악, 유형별 특징 파악, 사회적 영향력 진단	정부자료, 온라인 설문조사	1	내부	사회학	
6	청소년 사이버범죄 유형별 원인 및 통제요소에 관한 통합적 연구	2007	청소년 사이버범죄의 설명요인 파악	설문조사	1	외부	사회학	
7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Ⅰ) -초등학생을 위한 사이버범죄 예방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2009	초등학생의 사이버범죄 가해자, 피해자 예방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문헌연구, 설문조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2	내부	사회학, 법학	이명박 / 박근혜
8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2015	청소년 사이버폭력실태를 유형별로 분석, 전문가 그룹 인식조사를 통해 정의개념, 유형별 대응방향 의견 취합, 국내외 정책 검토 후 유형별 대응책 제시	문헌조사, 설문조사, FGI 등	3	내부	법학, 범죄학	

먼저, 2000년과 2001년 초창기의 사이버범죄연구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실태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사이버분야에 대한 국가적 형사정책이

본격적으로 마련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공식통계를 활용한 실태분석보다는 피해조사의 형식으로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했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피해 연구(이민식, 2000)나 미시적 차원에서 접근을 시도한 개인정보 침해 연구(김성연, 2001)가 진행되었다. 사이버 범죄피해 연구는 실태파악과 대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이면서, 이 분야 최초의 포괄적·분석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개인정보 침해 연구 역시 기존 법률해석론적 연구에서 탈피하여, 수사기록과 설문조사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침해사례 및 과정에 대한 미시적 연구가 수행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사이버경찰에 관한 연구(조병인, 2000)는 1999년 12월 신설된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관련하여 사이버경찰의 치안상황, 단속환경, 발전방안(조직확대 및 규제강화) 등을 연구하였는데, 2000년 7월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사이버테러대응센터로 확대 개편되어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후 노무현 정부시기에는 사이버상의 청소년 일탈 실태파악을 위한 연구(장준오, 2003)에 이어 청소년 사이버범죄 원인 및 통제에 대해 범죄이론을 통합적으로 검증하는 연구(이성식, 2007)가 이루어졌다. 이는 단순 실태조사 수준에서 탈피하여 이론검증까지 시도함으로써 보다 객관적, 과학적 정책도출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후 2005년에는 자살조장, 폭탄제조, 도박, 성매매알선, 음란, 강절도 모의 등 인터넷 유해사이트의 실태와 유형별 특징 및 사회적 영향력을 진단하는 연구(박형민, 2005)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법이나 이론으로 정립되지 않은 새로운 범죄유형을 탐색하기 위해 언론이나 수사기관의 사례를 수집하여 유형분류를 시도한 점이 특징이다.

이명박 정부 및 박근혜 정부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가 축소되었다. 먼저,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였던 이명박 정부시기의 사이버범죄연구는 범죄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초등학생 법교육 연구(최수형·이원상, 2009)에 집중한 것도 국정연구원으로서의 역할과 한계가 공존하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가장 최근에 수행된 청소년 사이버폭력 유형분석 연구(이승현 외, 2015)는 2003년이나 2007년에 수행된 연구와는 또 다른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청소년 사이버폭력 실태와 그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였다. 급변하는 ICT 기술의 발달로 손안의 컴퓨터로 불리는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청소년 사이버폭력이 나타나고,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였다.

나. 시기별 연구방법 및 연구자 특성

사이버범죄 연구는 마약범죄나 조직범죄연구와 달리 사회학 및 범죄학을 학문적 배경으로 하는 연구자의 연구가 절대 다수(8종 가운데 7종)를 차지한다. 또, 연구자는 외부연구자가 아닌 ‘연구원’ 내부 소속이 대다수(7종)이며, 외부위탁 연구자 역시 ‘연구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 장에서 살펴본 범죄연구와는 다른 특징이 나타난다.

이러한 연구자의 소속이나 학문적 배경은 연구방법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주로 활용된 연구방법은 설문조사(7종)였고, 나머지 1종마저도 전문가 자문조사가 포함되어 실증연구를 기초로 한 정책연구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사이버상의 범죄실태를 연구·조사하는 측면에서 설문조사 역시 온라인설문조사 방식을 활용한 사례가 많았고, 연구대상도 연구주제에 따라 청소년과 성인으로 구분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4.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 연구

가. 연구주제의 개관

형사정책 및 범죄학에 있어서 음주운전과 교통범죄는 기타범죄로 분류되곤 한다. 음주운전과 교통범죄는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질서위반행위로 간주하는 등 사회적 심각성 인식수준이 낮을뿐더러, 우리사회의 관대한 음주문화로 이를 전통적 범죄에 비해 경미한 비행으로 치부해왔다. 하지만, 최근 음주운전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살인에 버금가는 범죄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또, 무고한 시민의 사망·상해로 인해 사회적 해악이 높은 범죄로 그 인식수준이 바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는 달리 ‘연구원’의 음주운전 연구는 2010년 음주운전 억제방안 연구(전영실·정진성, 2010)를 끝으로 더 이상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로 더 시급한 형사정책적 현안과제의 존재, 공식통계상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음주운전 사건 건수, 자동차 기술의 발달과 도로교통시스템의 개선에 따른 교통범죄 건수의 감소 등으로 연구과제 추진으로 연결되지 못했을 수 있다. 하지만, 2010년 이전에는 음주운전과 교통범죄는 중요한 형사정책의 연구대상으로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표 Ⅱ-4-7] 시기별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 연구동향

no.	제목	연도	연구목적	연구 방법	연구자 수	소속	학문 배경	정부
1	교통범죄 양형에 관한 실태분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건을 중심으로-	1995	교통범죄 선고형량에 미치는 양형인자 확인, 양형과정의 차별성 분석	공식통계, 사건기록조 사	2	초빙/ 내부	사회학	김 영 삼
2	음주운전의 규제에 관한 연구	1995	각국의 음주운전 규제법의 역사와 입법과정 검토, 음주운전 정책 및 단속방법 소개, 한국의 실태와 추기 시론적 검토	문헌연구, 공식통계를 통한 실태 및 추세 파악	2	내부	사회학	
3	서울시 자가운전자의 음주운전에 관한 연구	1996	음주운전 실태와 운전자 의식 검토, 음주운전 원인 파악, 규제정책의 기초자료 제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2	내부	법학/사 회학	
4	지하철 내 범죄에 관한 연구	2003	지하철 내 발생범죄만 집중적으로 연구	범죄피해조 사	1	내부	사회학	노 무 현
5	음주운전의 실태에 관한 연구	2004	음주운전 실태와 운전자 의식 검토, 음주운전 원인 파악, 규제정책의 기초자료 제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1	내부	사회학	
6	음주운전 억제방안 연구	2010	음주운전 태도, 실태, 외국의 대책, 억제방안 연구	설문조사, 문헌조사	2	내부/ 외부	사회학	이 명 박

먼저, 김영삼 정부에서는 교통범죄 선고형량에 미치는 양형인자를 확인하는 연구(김두섭·기광도, 1995)가 있었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사건 양형의 차별성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 공식통계와 문헌자료 연구를 통해 각국의 음주운전 규제의 역사 및 입법과정 분석을 통해 한국 상황을 검토하는 시론적 연구(최인섭·박철현, 1995)가 같은 시기 진행되었다. 이후 본격적인 실증조사로 서울시 자가운전자 대상 음주운전 실태와 의식수준을 파악하는 연구(조병인·박철현, 1996)가 진행되었다.

이후 약 6년간(김대중 정부시기)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 관련연구가 중단되었는데, 2003년과 2004년(노무현 정부시기)에 지하철 내 범죄 연구(황지태, 2003)와 음주운전 실태연구(전영실, 2004)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들은 서울시를 지역적 배경으로 한 연구라는 점에서 전국적 연구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다만, 지하철 내 범죄연구의 경우, 범죄피해조사 기법을 통한 가해 및 피해 측면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끝으로, 2004년 음주운전 연구에 대한 코호트 성격의 연구로 음주운전 억제방안 연구(전영실·정진성, 2010)가 가장 최근에 수행되었다. 2004년 연구와 동일하게 서울시 거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태도와 실태 및 의식수준을 확인하였다.

나. 시기별 연구방법 및 연구자 특성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 연구 역시 내부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과제가 수행된 특징이 나타난다. 또, 이들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이 대부분 사회학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문헌연구보다는 실증조사를 토대로 한 사실학적 연구방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물론, 초기의 연구에서는 해외 사례를 검토한 시론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2003년 이후 연구에서는 범죄피해조사, 자기보고식 조사 등 설문조사를 기초로 한 양적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범죄학이론의 검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것은 의미있는 점이다.

제5절 결론 : 연구의 성과와 전망

1. 마약범죄 연구의 성과와 전망

가. 정책적 성과와 평가

1989년 ‘연구원’ 개원 직후인 1990년 10월 13일 노태우 대통령의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 선포는 형사정책 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학문적 토양을 형성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특별선언이 아니어도 당시 심각한 범죄실태는 형사정책 연구에 대한 사회적 수요로 충분하였다. 1980년대 후반 우리나라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치르면서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던 시기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인신매매, 가정파괴, 조직폭력, 마약, 부정식품 등 소위 ‘5대 사회악’이 연일 뉴스와 신문지면의 톱을 차지했다.

특히, 마약범죄 문제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1989년부터 대대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1989년 치안본부는 5대 사회악 특별단속 강화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였고, 대검찰청도 1989년 민생치안문제를 전담하는 강력부를 신설하는 등 마약 등 범죄문제 해결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정부의 형사정책과 관련하여 각 시기별 ‘연구원’의 마약범죄 연구는 정책수립과

관련 입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 새롭게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기(1989년~1997년)의 마약범죄 연구는 1989년 대검찰청 마약과 신설, 1992년 대검찰청 마약감정실 설치, 1995년 마약수사직렬 신설, 1996년 서울지방검찰청 마약수사와 신설 등 강력한 마약통제정책이 펼쳐지는 시기 마약류범죄의 실태와 성격을 파악하는 연구에 집중하여 정부기관의 수사역량 강화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였다. 더불어 치료나 재활관련 정책보다는 처벌정책 연구에 우선하여 당시 보수정권의 형사정책에 부응하였다.

제2기(1998년~2007년) 마약범죄 연구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마약사범 급증에 대한 문제의식 하에 마약범죄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가 노무현 정부시기에 이르러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다른 어느 시기보다 노무현 정부시기의 마약범죄 연구건수가 많았고, 연구주제도 공급억제에서 수요억제까지, 처벌강화에서 예방교육까지 다양한 연구가 추진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마약범죄사범은 7,000명 선으로 감소하는 결실을 거두기도 하였다.

실제 2006년에 수행된 「마약 및 조직범죄의 형사정책적 현안과 종합적 대응방안」(신의기 외, 2006)은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의 효율화, 의료용 마약류관리에 대한 형사법적 통제 필요성, 마약류감시원제도에서 자율점검제의 보완, 마약류범죄신고 활성화 등을 위한 면책보장규정 도입 등을 정책으로 제시한바 있다. 이 정책대안은 2008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반영되어 마약취급 허가대상의 명확화(제6조제1항),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 등의 폐기절차(제12조 제2항 신설) 등의 정책마련에 기여하였다.

제3기(2008년~2017년)의 마약범죄 연구는 새롭게 변화한 마약범죄 환경에 적극 부응하지 못하였다. 즉,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마약범죄 연구가 중단된 반면, 1만명 내지 9천명 수준을 유지하던 마약범죄사범 수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1만 4천명을 넘어 마약통제 및 예방정책의 부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 대표적인 마약범죄 연구는 2004년에 이어 2014년 약물사용실태 및 의식조사 연구(강은영·조소연, 2014)였고, 2015년과 2016년에는 마약범죄 연구도 중단되었다. 다만, 2017년 문재인 정부시기에 이르러 신종마약 관련 연구(전영실 외, 2017)와 마약류사범 재범억제 관련 연구(전영실·김지영, 2017)가 수행되어 변화하는 마약범죄 추세를 뒤쫓고 있다.

나. 학문적 성과와 평가

지난 30년 동안 ‘연구원’이 수행한 마약범죄 연구의 학술적 가치는 매우 크다. 마약범죄 연구는 주로 대검찰청의 마약류범죄백서에 의존하여 공식통계가 갖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연구원’은 다양한 연구 및 조사기법을 통해 보다 정확한 마약범죄실태 파악을 도모할 수 있게 하였다.

제1기의 마약범죄 연구는 20세기 초 범죄학의 발달과정에서 범죄문제의 깊은 이해를 가능케 한 Shaw와 McKay의 민속학적 연구에 견줄만한 도전적인 연구가 다수 발견된다. 청소년 약물남용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나, 유흥업소 주변에서의 약물오남용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또, 내부 연구자원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신의학, 사회복지학, 보건의학, 사회학 등을 학문배경으로 갖고 있는 외부연구자를 적극 활용한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꼽힌다. 제2기의 마약범죄 연구는 내부연구자의 충원으로 다시금 활발한 연구가 추진된다. 하지만, 법학 등 규범학 중심의 연구가 50% 가까이 차지함으로써 별도의 법학 연구가 있음에도 연구방법이 실증적 접근보다는 규범학적 접근을 하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마약범죄 억제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수행되어 마약범죄 연구의 지평을 넓힌 점은 의미가 크다. 다만, 제3기의 마약범죄 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기존 내부 연구자원이 이탈하는 문제와 마약범죄가 정부의 관심에서 벗어난 문제가 중첩되어 나타난 결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마약범죄사범이 급증하고 있고, 과거와는 다른 양상의 마약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을 보면 ‘연구원’의 마약범죄 연구 소외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다. 마약범죄 연구의 전망

마약범죄 연구는 그 필요성, 즉 정책적 수요에서 그 전망을 밝혀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2년간의 마약범죄는 1989년 대검찰청에서 마약류범죄백서를 발간한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마약범죄에 대한 연구 필요성은 더 말할 나위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과거와 다른 마약범죄 환경에 대한 연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인터넷보급의 확산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20~30대의 젊은 층과 청소년들이

손쉽게 마약류를 구매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이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통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일명 다크웹 상에서 유통되는 마약류와 함께 신종마약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한편,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질환치료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의 자가치료 목적 구입을 허용함으로써 해당 의약품에 대한 감시와 관리대책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더불어 경찰, 검찰,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다.

끝으로, 마약범죄의 경우 높은 재범률을 고려하여 재범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은 꾸준히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과거의 연구성과가 현재와 미래에도 유효하다는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조직범죄 연구의 성과와 전망

가. 정책적 성과와 평가

‘연구원’의 설립초기 1990년 범죄와의 전쟁 선언은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직범죄 연구에 있어서 기폭제가 되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실제 연구로는 연결되지 못한 문제가 발견되었다. 특히, 1990년대 수행된 조직범죄 연구는 1991년의 조직폭력 실태와 대책 연구가 유일하였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이 시기 조직범죄 대응정책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던 당시에 관련 정책연구의 필요성은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시기에는 조직폭력배의 소득원, 서식환경, 하위문화 등이 협동 과제로 추진되면서 조직범죄 연구가 형사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되었다. 2005년 대검찰청 산하에 ‘조직폭력대책단’이 설치되고 ‘연구원’은 ‘조직폭력연구사업단’을 설치함으로써 관련연구의 활성화가 가능했다. 특히, 2007년 수행된 「조직폭력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조병인 외, 2007)는 증인보호대책, 수사정보관리 대책, 수사상 개인 정보이용 대책, 불법취득재산 박탈대책, 조직폭력 전담수사기구 창설방안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2008년 9월 청와대 제1회 생활공감정책 점검 회의에서 ‘범죄피해자·증인 신변보호과제’가 10개 과제 중 하나로 선정, 2008년 11월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범죄피해자구제소위원회 정책토론회 의제로 범죄피해자·증인 신변보호 채택,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경찰청의 조직폭력배 집중단속(2008년 9월)에서 폭력조직 자금 추적과 범죄수의 몰수 등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나. 학문적 성과와 평가

이명박 정부시기 이후 조직범죄연구는 사회변화에 적극 부응했다. 즉 국내거주 외국인 조직범죄 실태파악 연구와 함께 조직범죄단체의 전통적 소득원과 불법사행산업 등 신규소득원 발굴과 운영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2014년과 2015년에 이루어진 조직범죄단체의 불법 지하경제 연구는 각각 10명과 7명의 대규모 연구진으로 구성된 종합적 연구였다. 연구의 방법도 사례조사와 설문조사, 판결문분석, 심층면접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었고, 연구진의 구성 역시 ‘연구원’ 내외를 비롯해 해외 거주 연구자까지 포함하는 적극적 방법을 취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과 분석결과는 2006년과 2007년 수행된 폭력조직 소득원, 서식환경 및 하위문화 연구, 그리고 종합대책 연구에서 확인한 내용에서 진일보 한 탐구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일반 연구자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 연구가 수행되면서 국내 조직범죄 연구사에 키스톤 연구로서의 지위를 부여해도 좋을 방대한 자료가 수집·정리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본다.

다. 조직범죄 연구의 전망

조직범죄 연구는 일반연구자가 연구대상에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자료 확보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연구원’에서의 조직범죄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해보길 권한다.

첫째, 매년 꾸준히 수행되지는 못했지만 일정 기간의 주기를 두고 종단연구 성격의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예를 들어 약물사용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가 약 10년을 주기로 수행되는 것과 같이, 조직범죄의 서식환경 및 하위문화 연구나 불법 지하경제 운영실태 등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조직범죄의 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국내연구의 성격 상 조직범죄 연구는 ‘조직폭력’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접근한 특징이 있다. 전통적으로 조직범죄, 조직폭력, 폭력조직 등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라고 본다. 실제 우리나라 「형법」이나 「폭처법」상 법률개념에서도 폭력성과 단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학적 관점에서 조직범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경제적 이익추구’ 측면이다. 따라서, 끊임없이 확장해나가는 조직범죄의 경제적 활동영역을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다른 신종범죄와의 연계를 고려한 연구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연구원’에서는 2006년 마약 및 조직범죄의 형사정책적 현안과 종합적 대응방안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의 조직범죄는 사이버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일부 국가에서는 테러조직과의 연계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범죄활동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탐구할 필요가 있다.

매년 조직범죄 관련 간행물 리스트를 정리하여 발표하는 독일의 범죄학자 von Lampe의 연구결과(2018, 2019)를 보면, 조직범죄와 관련한 국제적인 연구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과 2018년 발간된 조직범죄 연구 가운데, 최근의 국제 조직범죄 단체가 불법수입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영국 할랄 양 공급망의 불법활동, 어업 및 해산물사기, 스포츠도박, 야생동물, 불법복제, 부정 항공권 거래, 불법상아무역, 불법 제약 네트워크, 암살, 의료사기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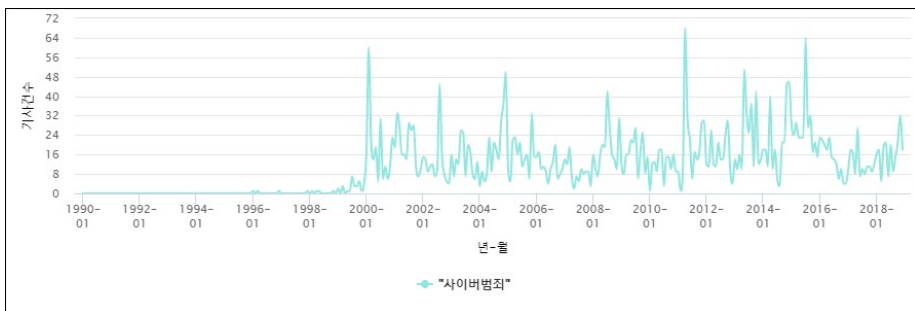
한편, 조직범죄와 사이버범죄의 연계에 관한 연구가 제시되는데, 사이버공간은 조직범죄의 활동공간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조직범죄활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 그 예로 소셜네트워크 분석이나 클라우드소싱 기반의 대마시장 분석, 토르 네트워크의 마약밀매 패턴의 지리적 분석, 다크넷 크립토마켓 상에서 오피오이드 분포의 네트워크 구조, 인신매매 과정에서의 인터넷의 역할, 디지털 마약시장 등에 관한 연구가 있다.

전통적 조직범죄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조직범죄를 이해하기위한 연구는 진화를 멈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3. 사이버범죄 연구의 성과와 전망

가. 정책적·학문적 성과와 평가

사이버범죄에 대한 연구는 ‘연구월’ 개원 이후 10여년간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만큼 전통적 범죄연구에 집중하였고, 사이버상의 범죄문제를 연구하기에 연구자원이 충분하지 못했다. 그러나 2000년 밀레니엄 시대가 열리면서 사이버공간상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자료: 빅카인즈 뉴스 시각화분석

[그림 II-4-2] 사이버범죄 언론보도 트렌드

[그림 II-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들어서 사이버범죄에 대한 언론보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00년 이전 사이버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정책적 고려의 필요성은 높지 않았던 것이다. 현재 사이버범죄에 대한 연구수요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연구의 주요 주제는 사이버범죄 전반에 대한 것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이버범죄 등의 주요 문제를 주로 연구하는 기관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망 침해범죄와 관련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신고·상담기관으로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매우 다양한 기관이 사이버범죄와 관련되어 있다.

또, 사이버범죄의 성격상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 일본 기존의 전통적 범죄의 성격도 일부 갖는다는 점에서 사이버범죄의 본격적 연구가 많지 않았을 것으로도

추론해볼 수 있다.

이처럼 ‘연구원’의 사이버범죄 연구는 다른 범죄유형에 비하여 특히 그 양적인 면에서 충분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정책적 성과 역시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언론보도 트렌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수요는 기대되나 이에 대한 ‘연구원’의 대응은 충분하지 않았다.

특히, 총 8종의 분석대상 연구보고서는 사회학과 법학 전공의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었고, 사이버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연구자의 참여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연구원’이 사이버범죄 연구의 수행을 지속 내지 확대하고자 한다면, 추후 사이버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연구원의 적극 활용과 관련 전공 연구자의 내부영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나. 사이버범죄 연구의 전망

사이버범죄가 갖고 있는 기본적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형사정책적 대응에 많은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화기술을 사용하는 범죄에 비해 수사과정의 자동화 불가능, 신고기피로 인한 범죄규모 확인의 어려움, 비전문가에 의한 사이버범죄의 확산, 범죄 실행기법 관련정보의 자유로운 접근가능성, 잠재적 범죄자인 인터넷 사용자의 급증 등은 형사사법기관의 도전 과제로 여겨진다.

사이버범죄의 연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사이버범죄의 위협은 조직범죄와의 결탁, 온라인에서만 운용되는 사이버범죄조직의 결성, 이념적 정치적 동기에 따라 IT기술을 사용하는 범죄조직 출현 등의 조직적 범죄가 예상된다. 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마약범죄 및 조직범죄의 경우 범죄자에 대한 심층적 인터뷰를 통해 질적 연구가 수행된 바 있는데, 사이버범죄자에 대한 질적 연구는 그간 수행된 바가 없다. 이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범행동기, 동료범죄자와의 관계 내지 하위문화 등을 연구해보는 것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최근 심각한 범죄의 온상으로 활용되고 있는 다크웹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다크웹 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유형, 이를 이용하는 범죄자의 특성, 이를 추적할 수 있는 기법 등도 연구가치가 있는 주제라고 본다. 끝으로, 인터넷의 보급과 확산으로 사이버

범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현대인의 삶에서 사이버범죄의 위협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볼 수 있는 탐색적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4.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 연구의 성과와 전망

가. 정책적·학문적 성과와 평가

‘연구원’에서 수행한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 연구는 대다수가 음주운전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마저도 2010년 이후 수행된 연구가 없다. 그러나, ‘연구원’이 수행한 약 세 차례의 음주운전 태도 및 실태에 관한 연구는 범죄학적 관점에서 억제요인을 탐색하는 연구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가치가 크다.

특히, 최근 시행된 일명 윤창호법의 통과과정에서 음주운전 규제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정책적으로는 물론 범죄학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가져왔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입법내용이 ‘연구원’의 연구결과 획득한 성과로 보기는 어려우나 관련실태를 시기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연구성과를 축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는 남다르다.

또,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다룬 연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지하철 내 범죄피해경험을 조사해봄으로써, 시민의 인식과 경험수준을 확인해볼 수 있는 자료라고 본다. 그러나,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 연구가 양적으로 많지 않았고, 매우 간헐적으로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범죄학의 관점에서 음주운전과 교통범죄를 탐구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연구원’의 역할에 더 기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추후 관련 분야의 연구를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 연구의 전망

음주운전과 관련한 문제는 음주문화와 밀접히 관련이 있다. 그런데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를 비롯해 음주운전 사고 추세를 보면,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음주운전은 곧 범죄이며, 사회적 비난 정도가 매우 거센 행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의 음주운전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확실히 다른 양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다면 이는 음주운전을 비롯한 유사한 범죄행위가 사회인식의 변화에 따라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시사점을 줄 것이며, 이는 범죄학 이론개발의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또, 음주운전에 대한 그간의 범죄학적 관심은 서구의 범죄학이론의 적용에 집중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서구와는 다른 음주문화를 갖는 우리나라에서 동양 전통의 사고방식이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보는 것도 범죄학이론의 확장 내지 새로운 정립의 차원에서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최근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과학기술의 영향이 교통범죄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자율주행기술 뿐 아니라 교통신호시스템의 개선이나 도로주행 간 차량안전기술의 진보는 교통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확산과 그에 따른 인간행동의 변화를 탐구한다는 측면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석구·김민영·조성현·조병인·박형아·송봉규·최성락(2015). 조직범죄단체의 불법적 지하경제 운영실태와 정책대안 연구(II)-전통적 소득원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강은영(2002). 약물사범 보호관찰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강은영(2004). 약물남용 예방교육의 실태와 효율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강은영·신성만(2012). 마약류사범 재활센터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강은영·이경재(2006). 마약류감시원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강은영·이성식(2004). 약물남용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강은영·이성식(2005). 집단별 약물남용 실태와 수요감소전략,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강은영·조소연(2014). 약물사용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권오성·서성아·김윤수(2005). 마약범죄 통제를 위한 예산정책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경빈(1990). 유흥업소 주변의 습관중독성물질 오·남용 실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두섭·기광도(1995). 교통범죄 양형에 관한 실태분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건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상희·최영신(1990). 청소년의 약물남용과정에 관한 연구 -소년원생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석준(1995). 도박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성언(2001).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성이(1991). 약물남용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성이·김은아(2004). 약물사범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2005). 마약류 사용사범에 대한 형사절차상 치료적개입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익기·류철원·주은우(1991). 약물남용범죄와 약물공급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박정선(1994). 청소년의 약물남용실태에 관한 연구 -술, 담배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한균·박장우(2005). 마약류 수요억제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대검찰청(1990-2018). 1991-2017 마약류범죄백서.
- 문영호·정진수(1991). 조직폭력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경래·손석천(2006). 조직폭력배의 소득원에 관한 연구 : 재소자에 대한 설문 및 심층 면접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준휘·윤해성·조성현·박정선·강소영·최성락·문병욱·인젠평·췌진난·로진(2014). 조직범죄단체의 불법적 지하경제 운영실태와 정책대안 연구(I) -불법사행산업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형민(2005). 인터넷 유해사이트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배종대(2011). 형사정책. 홍문사.
- 신의기(2003). 마약류 지정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신의기·강은영·이민식(2002). 마약류 사범 처리 실태 : 수사 및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신의기·김한균·이경재·강은영·권수진·주호노(2006). 마약 및 조직범죄의 형사정책적 현안과 종합적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신의기·주호노(2006).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실태와 효율적 관리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심영희(1991). 약물남용의 실태와 통제방안 -미국의 경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근후(1991). 약물남용자의 치료상 문제점과 대책 : 약물남용자의 심리사회적 요인과 치료자의 치료경험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동진(2003). 청소년 폭력집단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민식(2000).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피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민식(2007). “마약류범죄의 공범구조 및 연결망 분석”, 「형사정책연구」, 18(2): 231-263.
- 이성식(2007). 청소년 사이버범죄 유형별 원인 및 통제요소에 관한 통합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승현·강지현·이원상(2015).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윤희(2007). 범죄학. 박영사.
- 이정수·조병인·최영신·백월순(1989). 메스암페타민사범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준오(2003). 사이버상의 청소년 일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영(2004). 음주운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영실·김슬기·배상균·주현경(2017). 신종마약류범죄 발생실태와 통제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영실·김지영(2017). 마약류사범 보호관찰 확대 등 사후관리 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영실·정진성(2010). 음주운전 억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완(2009). “사이버범죄의 실태와 동향 및 대응책”, 『홍익법학』, 10(1): 195-224.
- 조병인(2000). 사이버경찰에 관한 연구 -사이버범죄의 규제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병인(2003). 마약조직의 생존행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병인·윤해성(2008). “‘조직폭력’·‘폭력조직’ 및 ‘범죄단체’ 개념의 재음미”,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1: 221-251.
- 조병인·박광민·최응렬·김종오(2010). 국내거주 외국인의 조직범죄 실태와 대책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병인·박철현(1996). 서울시 자가운전자의 음주운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병인·신의기·김광준·강석구·윤해성·최응렬·허경미·송봉규(2007). 조직폭력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병인·최응렬(2006). 폭력조직의 서식환경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은석·김광준(2001). 마약류 확산실태와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차종천·최영신(1992). 약물남용과 범죄와의 관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수형·이원상(2009).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I) -초등학생을 위한 사이버범죄 예방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영신(2003). 청소년 약물남용의 행태 변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응렬·송병호·김연수(2006). 폭력조직의 하위문화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박철현(1995). 음주운전의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홍남식(2001). 마약류관련 수용자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황만성·한동운(2005). 마약류 사범 치료재활을 위한 형사사법체계와 보건의료체계의 협력활성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황지태(2003). 지하철 내 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Ismaili, Karim(2006). Contextualizing the Criminal Justice Policy-Making Process, Criminal Justice Policy Review, 17(3): 255-269.
- Lasswell, Harold D(1970). The Emerging Conception of the Policy Sciences The Policy Sciences, 1(1): 3-14.
- Siegel, Larry J(2010). Criminology: Theories, Patterns, and Typologies(10th ed.), Wadsworth, Belmont, CA.
- UNODC(2018). World Drug Report 2018(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18.XI.9).
- von Lampe, Klaus(2018). Recent publications on organized crime(Publication Monitor 1-2018), Trends in Organized Crime, 21(1): 88-97.
- von Lampe, Klaus(2019). Recent publications on organized crime(2019-1), Trends in Organized Crime, 22(1): 123-140.
- 경찰청·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9.2.28.).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3,781명, 1976년 이후 첫 3,000명대”.
- 경찰청 브리핑(2018.6.25.). “조직폭력 등 생활주변폭력배 100일간 특별단속, 조폭 1,385명·생활주변폭력배 24,548명 검거”.
- 동아일보(2017.10.12.). “[백 투 더 동아] 1990년 위기 몰린 노태우, 범죄와 전쟁 선포”, <http://news.donga.com/List/3/0707/20171012/86722002/1>, 2019.1.17. 검색.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http://theme.archives.go.kr/>, 2019.2.28. 검색.
-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http://cyberbureau.police.go.kr/>, 2019.1.17. 검색.

제 3 부



소년범죄 및 범죄피해 연구의 성과와 과제

제 1 장

소년범죄의 발생추세 및 원인 관련 연구

윤 상 연

소년범죄의 발생추세 및 원인 관련 연구

제1절 소년범죄 연구동향 개관

1. 소년범죄 연구의 의의

기성세대들은 우려의 시각으로 청소년을 보는 경향이 있다. 그 바탕에는 청소년을 불안정한 존재로 바라보는 인식이 깔려있다(Hall, 1904). 실제로 청소년들은 과도기적 발달 단계에 있어 자기 조절능력이 부족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Jolliffe et al., 2009). 또한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사회적 경계선을 넘나드는 탐색적 행동을 하는 특성을 보인다(Erikson, 1968).

청소년기의 비행과 범죄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소년 범죄는 역사 이래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근대 이후 체계적 범죄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소년 범죄는 중요한 연구분야로 발전해 왔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으로 함)은 설립 초기부터 소년 범죄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소년 범죄는 발달 과정 중 일정 시기를 염두에 둔 범죄 유형이다.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범죄는 주요 범죄의 유형, 심각성, 발생 형태 등에서 성인 범죄와는 차이를 보인다. 특히 청소년들의 비행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자연스럽게 중단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Farrington, 1986; Hirschi et al., 1983),¹⁾ 소년 범죄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고 성인의 범죄와는 다른 관점에서 비행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1) 보통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감퇴과정(aging-out process), 탈비행(desistance), 자연완화(spontaneous remission) 등의 용어로 표현한다(Siegel et al., 2012: 60).

있다. 형사사법체계에서 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김준호 외, 2018).

청소년은 사회적·심리적 특성에 기초한 개념이지만 소년 범죄 개념에서는 생물학적인 연령을 기준으로 미성년자에 의한 범죄를 의미한다(Siegel et al., 2009). 소년을 규정하는 법적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소년법에서는 12세에서 20세 미만까지를 소년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소년의 범위를 10세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하였다. 연령이 하향 조정되었고, 10세 미만이 형사미성년자, 19세 이상은 형법의 적용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이전보다 낮은 연령의 청소년에 대해서 소년법의 적용이 필요한 것은 물론, 더 이른 나이에 형법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법적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I-1-1] 소년법상 소년범의 분류

유형	해당연령	형사책임 여부	형사법령 위반여부	가능한 처분
우범소년	10세 이상 19세 미만	없음	위반 안 함	보호처분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없음	위반	보호처분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있음	위반	보호처분 및 형사처분

※ 출처 : 소년법

소년범죄와 비교했을 때 ‘청소년 비행’은 대상 행위에 있어서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한다. 소년범죄에서는 중한 범죄이든 경한 범죄이든 형법의 위반을 전제로 하지만 청소년 비행에서는 이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의 일탈 행위를 포함한다. 이를 보통 지위비행(status offence)이라고 하며, 성인에게는 특별히 문제가 안 되지만 청소년이라는 지위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각종 일탈적 행위를 의미한다. 음주·흡연, 불복종(부모·선생님), 가출, 성관계 또는 비도덕적 행위 등이다.

‘연구원’에서의 연구는 청소년 비행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을 검증하는 사회학적인 배경에서 연구된 경우가 많고, 형사법 위반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일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비행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청소년 비행의 개념을 주로 사용하였고, 소년 범죄라는 용어는 형사법의 개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였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2. 연구 동향 변화의 개관

외국에서 청소년 비행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들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 비행에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고 사회학, 생물학, 심리학 등 경험적 학문을 중심으로 청소년 비행에 대한 연구결과를 축적하고 이를 이론화 하였다. 다양한 비행의 유형을 연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청소년 비행(론)이라고 하는 일정한 학문 분야를 구축하였다.

[표 III-1-2] 청소년 문제와 위험요인

위험요인	물질 남용	비행	십대 임신	학교 중퇴	폭력
지역환경					
약물 가용성	√				
화기 가용성		√			√
지역의 법·규정상 약물, 화기, 범죄 친화성	√	√			√
대중매체의 폭력성					√
교통 및 이동성	√	√		√	
이웃과 낮은 애착, 공동체의 와해	√	√			√
극단적 경제력 결핍	√	√	√	√	√
가족					
문제행동의 가족력	√	√	√	√	√
가족 관리 문제	√	√	√	√	√
가족 갈등	√	√	√	√	√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의 호의적 태도와 개입	√	√			√
학교					
초등학교 고학년 발발 학업 실패	√	√	√	√	√
학업에 대한 노력 결여	√	√	√	√	
친구 및 개인					
조발-지속되는 반사회적 행동	√	√	√	√	√
반항	√	√		√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친구들	√	√	√	√	√
범죄집단 가담	√	√			√
문제행동에 대한 호의적 태도	√	√	√	√	
문제행동 조기 발생	√	√	√	√	√
체질적 요인	√	√			√

출처: Burfeind et al., 2006, p.121; Catalano et al., Risk Focused Prevention, 2004, 재인용.

‘연구원’에서 수행된 범죄원인에 대한 연구는 직간접적으로 외국에서 정립된 이론들을 근거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연구 주제의 수준(거시적/미시적), 연구의 배경 이론²⁾에 따라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변화하면서 현상 설명에 적합한 이론이 변화하기도 하고,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이론에 따라서 다른 연구가 수행되었다.

시대별로도 청소년 문제에 대한 당시의 고민들이 담겨있다. 1990년대에는 약물남용, 비행집단, 도덕적 해이, 여성청소년 문제 등을 다루고 있고, 20세기를 마감하는 1999년에는 그간의 연구추세를 정리하기도 했다. 2000년대에는 1990년대의 연구주제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기도 했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새로운 도구의 사용에 주목하였다.

1990년대에는 범죄원인 연구 역시 활발하게 이뤄졌다. 대중매체의 폭력성, 또래집단(친구), 음주, 가출, 가정환경(가정교육, 가정폭력), 학교(중퇴, 유해환경), 음란물, 체벌 등 탈문화적인 보편적 원인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 공부압력이나 체벌의 효과에 관한 연구 등을 통해서 국내 청소년 비행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비행의 원인을 탐색하기도 했다.

2000년대 이후로는 ‘연구원’의 청소년 비행에 대한 연구가 상당부분 축소되었지만 학교폭력, 인터넷음란물, 사이버범죄, 다문화가정 청소년 문제 등 새로운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그 원인을 연구하는 등 시대에 따라 청소년 비행의 연구주제는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3. 시대적 환경의 변화

‘연구원’이 설립된 1989년부터 30년이 흐른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환경의 변화는 많은 행태적 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아노미 이론(Merton, 1938)에서 설명하듯이, 청소년들은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수단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런 수단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적응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소년

2) 대표적인 사회학적 청소년 비행 이론인 긴장이론, 사회학습이론, 사회통제이론, 낙인-갈등이론 등이다.

비행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 우리 사회가 겪었던 사회적 변화가 어땠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방 이후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큰 변화를 겪어 왔지만 지난 30년 간 경험한 변화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한국 사회는 한국 전쟁 이후에 급격한 성장을 이뤘고, 이러한 급성장은 1990년 중후반까지 계속되었다. 당시 산업화가 고도화 되고 도시화가 종착 단계에 이르렀으며, 정치적인 민주화도 상당히 진전되어 우리 사회는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7년 IMF의 구제금융을 겪게 되면서 우리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사회·문화적인 성숙보다 경제주도의 급성장을 이뤄왔던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공황의 여파로 많은 문제들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사회적인 활동이 위축되기 시작했고,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부모의 실업 등 일자리 문제가 발생하자 청소년들에게 학업 문제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내 자식을 남의 자식보다 더 나은 대학에 보내려는 학부모들의 기대는 촌지와 같은 부작용을 낳았고, 입시경쟁에서 탈락한 일부 학생들은 무선호출기, 휴대폰 등 새로운 기기를 앞 다투어 사용하며 일진회 등 자신들만의 문화를 구축하였다. 이 시기 한국사회는 과거의 영화와 현재의 결핍 사이에서 몸살을 앓았고, 청소년들 역시 자식에게 전이된 부모의 기대감 속에서 적절한 수단을 찾지 못하고 갈등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다.

2001년,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관심 속에 국가적 위기를 단시간 내에 극복하는 듯했지만, 2000년대 초반 발생한 세계 경제 위기의 여파로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직장인들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정책을 단행하였지만 그 효과는 기대를 밑돌았고, 사회적인 기회의 감소와 사회 보장 정책의 미비, 전통적인 가족주의와 지역 공동체의 붕괴 속 사회적 안전망의 부실이라는 불균형적 사회구조 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청소년들 역시 적극적인 문화 향유와 성숙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인터넷과 휴대폰의 보급에 힘입어 스타크래프트, 리니지 등 전략·RPG 게임을 하거나 싸이월드, 버디버디 등을 이용한 값싼 청소년 문화를 향유하였다. 또한 1990년대부터 문제시되었던

학교 폭력이 확대되면서 학교 안팎에서 집단적인 괴롭힘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전통적으로 신성시되었던 학교와 교사들의 권위가 실추된 상황이라 학교 문제에 외부의 기능이 개입하면서 교실문화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다행히 2010년대 들어 청소년 문제는 한풀 꺾인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여년 간의 큰 변화 이후 사회가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학교전담경찰관 등 그동안 겪었던 변화에 대한 대응 정책들이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Ⅲ-1-3] 시대별 청소년 관련 대표적 현상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사회	도시화 종착, IMF 구제금융, 남아선호사상, 청소년 자살	세계 금융위기 발생, 인터넷/휴대폰 대중화, 자살률 증가	촛불집회(청소년 참여), 인구절벽 본격화, 수도권 집중 심화
문화	무선호출기, 휴대폰 보급, 월드와이드웹	스마트폰 대중화(2007년 iPhone), 스타크래프트, 리니지(PC방), 싸이월드, 버디버디, 노래방	유튜브, 온라인콘텐츠(웹툰, 음악, 영화), 오디션 프로그램
학교	촌지, 일진회	놀토, 집단 따돌림, 학교 폭력	주5일제 수업, 야간 자율학습 폐지, 학폭위, 학교전담경찰관(SPO), 청소년 성매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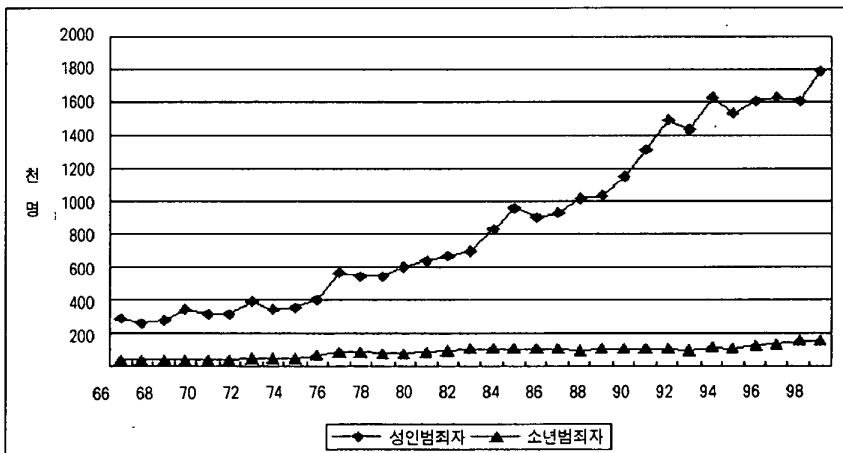
제2절 소년범죄 발생추세 분석

1. 발생추세 연구의 흐름

소년범죄 발생추세 연구는 청소년 범죄현상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과거 30년간 한국 사회가 겪은 변화는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를 유발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까지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비행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성언 등(1999)은 1966년(대검찰청 범죄분석 최초 발간)부터 1998년 사이 한국의 청소년 비행 연구동향 분석을 통해 90년대까지 청소년의 범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연구원’에서 수행한 소년범죄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90년대 이전의 1966년까지 확장되었다. 1966년(약 3만 5천 명) 이후 1999년(약 10만 명)까지 청소년 범죄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였다.³⁾ 성인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청소년 범죄는 우리 사회의 외연 확대와 함께 급속한 증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김성언 외(1999), 「청소년 비행 연구동향 분석: 1966-199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그림 Ⅲ-1-1] 성인 및 소년 범죄발생 추세(1966-1999)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청소년 범죄 발생특성을 도시화, 저연령화, 고학력화, 폭력화, 일반화 및 탈계급화로 요약하였다. 특히 큰 증가 추세를 보이는 범죄유형으로 폭력범죄를 꼽았다. 재산범죄에 비해서 폭력범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졌다는 주장의 주요한 근거도 폭력범죄의 증가이다.

청소년 비행의 심각성은 비행의 다양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재산범죄에서 절도 이외에 사기와 횡령의 증가추세, 약물범죄와 교통범죄에서 청소년 비율의 증가,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성폭행 범죄의 증가 등이 2000년대 이전 청소년 비행의 변화를 특징짓는 키워드들이다.

3)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서도 증가세를 멈추지 않던 소년 범죄는 2008년 약 12만 6천여 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대체로 감소추세에 있다. 전체 범죄의 감소 추세 속에 소년 범죄 역시 2017년 약 7만 2천여 건을 기록하여 소년범죄의 비정상적인 증가 등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196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범죄의 도시화’, 1970년대 초반의 중등교육 개혁의 완성으로 초래된 청소년 ‘범죄의 고학력화’ 등을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요인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 산업화 및 인구의 도시 이동으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 핵가족화로 인한 자녀의 사회화 및 사회통제의 약화 등도 청소년 비행을 유발한 중요한 사회적 변화로 지적하였다. 또한 폭력범죄를 중심으로 범죄의 저연령화, 여성 청소년 비행의 증가도 이 시기 나타난 중요한 변화로 확인되었다.

2. 청소년 비행의 변화 양상

‘연구원’에서 수행한 청소년 비행 발생 동향 연구는 각 시대별 청소년들의 대표적인 일탈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80년대까지 소년범죄에서 양적인 몸집 불리기를 해왔다면, ‘연구원’의 연구가 시작된 1990년대부터는 청소년 비행이 실질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기 시작하였다. 또는 이미 분화되어 발생하던 청소년 비행을 다양성의 관점에서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청소년 비행 발생추세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에 10종, 2000년대 이후에는 11종이 수행되었다. 1990년대에 수행된 청소년 비행 연구는 국외 청소년 비행 연구의 많은 연구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약물남용과 집단비행, 학교폭력 등이 이 시기 주요 연구 주제였다.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은 규제의 사각에서 본드와 가스 등 유기용제에서 시작하여 대마와 메스암페타민 등으로 심화되었다(김상희 외, 1990). 청소년들은 비행 집단을 결성, 성인들과 같은 조직적인 비행을 저지르기도 했다(김준호·노성호·곽대경, 1991). 이러한 청소년들의 일탈에 대해서 사회는 전통적인 잣대로 그들의 도덕성, 법의식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졌고, 법교육 등에 대한 공백을 문제 삼았다(문용린 외, 1992).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수행된 것도 이 시기이다. 주로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일으킨 말썽들에 관심을 가졌던 초기에 비해 90년대 중반이 되어 학교안 밖에서의 폭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성인들은 건전함과 순진함으로 표상되던 학교가 폭력으로 물드는 것에 대해서 커다란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 당시 괴롭힘, 금품갈취,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협박), 성적 피해 등 학교주변 폭력 실태를 살펴본 결과(김준호·박정선·김은경, 1996), 폭력 피해를 한 가지라도 경험한 학생이 전체 학생 중 57.1%에 달했고, 특히 신체적 폭력이 40.8%, 여학생의 경우 성적인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38.7%에 달했다. 이 당시 다수의 조사에서 예상을 웃도는 수준의 학교폭력 실태가 확인되면서 국민들이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

[표 III-1-4] 1990년대 소년범죄 동향연구

발간연도	연구 제목	범죄 유형	연구 대상자	연구 방법	연구자
1990	청소년의 약물남용과정에 관한 연구: 소년원생을 중심으로	약물 남용	소년원생	설문조사/ 심층면접	김상희/ 최영신
1991	한국의 청소년 비행집단에 관한 연구	집단비행	일반학생/ 불량서클 가입경험자/ 소년원생	설문조사/ 심층면접	김준호/ 노성호/ 대경
1992	청소년의 도덕성, 법의식 발달, 비행 경향성 및 법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도덕성, 법의식, 비행경향성, 법교육실태	일반청소년	설문조사	문용린/ 조영달/ 강윤정/ 박성혁
1994	여자청소년의 비행실태에 관한 연구	비행	남녀청소년	통계분석/ 설문조사	김준호/ 김은경
1994	청소년의 약물남용실태에 관한 연구: 술, 담배를 중심으로	약물 남용	일반청소년/ 소년원생	설문조사	김준호/ 박정선
1995	한국의 청소년 비행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비행요인	고등학생/ 비행소년	설문조사	김준호/ 이동원
1996	학교주변 폭력의 실태와 대책	범죄피해/ 가해원인	일반청소년	설문조사	김준호/ 박정선/ 김은경
1999	체벌의 실태와 영향에 관한 연구: 학교체벌을 중심으로	학교체벌	일반청소년/ 교사	설문조사	김은경
1999	청소년범죄 추세분석: 1966-1998	전체 범죄	청소년	문헌연구	김성언/ 노성호
1999	한국의 청소년비행 연구동향	불특정범죄	불특정 청소년	문헌연구	이동원/ 김지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청소년 비행은 기존에 비해서 더욱 다양한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약물남용, 집단 폭력 등 기본적인 형태는 유사하게 발생하였지만 사회적 규제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전에 비해서 더 복잡한 형태의 비행이 나타났다. 본드와

신나 등 환각물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구매가 어려워진 청소년들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약물들을 찾기 시작하면서 남용 약물이 다양해졌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이전에 비해서 술과 담배를 제외한 약물남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최영신, 2003), 이는 정책개선의 효과라기보다 90년대 중후반부터 보급된 인터넷 게임의 효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청소년의 약물남용에 대해서는 한숨을 돌리기는 했지만, 게임중독 등 보다 광범위한 청소년들이 겪는 행동중독의 문제를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권정혜, 2005; 김교현 외, 2008).

그리고 이 시기에는 소년범의 범죄화 과정 또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서 청소년 비행의 개인 내적인 발달 과정을 고려하여 연구가 수행되기도 했다(박정선, 2004; 연성진, 2005). 연구자들은 청소년이 범죄화라고 하는 특별한 과정을 거쳐 소년범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청소년 비행 연구를 위해 종단 연구 설계를 하게 된 것은 그만큼 국내 청소년 비행 연구가 축적되고 정교한 연구방법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III-1-5] 2000년대 이후 소년범죄 동향연구

발간연도	연구 제목	범죄유형	연구 대상자	연구 방법	연구자
2000	범죄에 대한 청소년의 가치관과 태도에 관한 연구	비행에 대한 가치관, 태도	일반청소년/ 소년심사분류 대상	설문조사/ 심층면접	김성연
2003	청소년 약물남용의 행태 변화	약물 남용	비행청소년	문헌연구/ 설문조사/ 심층면접	최영신
2003	청소년 폭력집단에 관한 연구	폭력	폭력집단	설문조사/ 심층면접	이동진
2003	사이버상의 청소년 일탈에 관한 연구	사이버 일탈 및 원인	일반청소년	(온라인) 설문조사	장준오
2004	소년범의 범죄화 과정 및 보호방안 연구	생활사, 발달사, 사건사	보호관찰 대상	설문조사	박정선
2005	청소년비행의 종단적 연구를 위한 패널설계 연구	유형별 비행, 유발요인	예상 대상: 초1,초4,중1 일반패널	연구설계	연성진
2005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학생 및 교사들의 인지도 연구	학교폭력 심각성 인식	일반청소년/ 교사	설문조사	황지태

발간연도	연구 제목	범죄유형	연구 대상자	연구 방법	연구자
2009	청소년의 휴대폰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 실태 및 원인에 관한 연구	음란물 유통	일반청소년	문헌연구/ 설문조사/ 통계분석	이창훈/ 김은경
2009	저연령 소년의 비행실태 및 대책	개인특성, 가족, 학교, 동료 등	10~12 초등학생	설문조사/ 심층면접	전영실/ 기광도
2013	청소년 강력범죄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강력범죄	청소년강력범	통계분석/ 설문조사/ 심층면접	최수형/ 박현수
2015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사이버폭력	일반청소년/ 전문가그룹	설문조사	이승현/ 강지현/ 이원상

19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 들어 청소년들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경험의 폭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PC를 사용한 인터넷 이용, 그리고 2007년 애플의 iPhone이 출시되면서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온라인 이용 과정에서 관련 비행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청소년들은 온라인 PC 게임에 열광하면서 많은 욕구를 투영했다. 게임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살인, 폭행을 저지르거나⁴⁾ 게임 아이템을 놓고 사기 사건이 횡행하였다.⁵⁾

온라인 공간은 청소년들에게 익명성이라는 장막을 제공했고, 채팅 활동에서 폭언, 욕설, 협박 등의 문제가 비일비재했다. 게임중독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제행동이 사회적인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김종범 외, 2001). 인터넷을 매개로 한 성매매가 발생하는가 하면 소프트웨어 불법다운로드나 저작권 침해 등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장준오, 2003).

스마트폰의 보급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부추기게 되었는데, 스마트폰이 손 안의 PC와 같은 역할을 하여 이동성이 극대화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언제 어디에 있든 온라인 세계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고, 섹스팅(sexting) 등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비행의 가능성은 더욱 확대되었다(이창훈 외, 2009).

4) 동아일보(2001.3.6.). “인터넷 유해정보 차단대책 시급…청소년 모방범죄 부추겨”

(<http://news.donga.com/3/all/20010306/7658441/1>, 2018년 11월 30일 최종 접속).

5) 한국경제(2002.12.9.).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 '폭발'...폭력, 사기등 사회문제 우려”.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02120917961>, 2018년 11월 30일 최종 접속).

3. 결과 종합 및 비판

새로운 현상이 발생했을 때 조기에 파악을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연구원'에서는 청소년들의 비행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 비행 발생 추세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를 수행해 왔다. 사회학, 심리학, 생물학 등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서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온 것은 의미 있는 작업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들은 언론을 통해서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냈고 사회적인 해결 노력을 촉진하였다. 물론 '연구원'에서의 연구는 사회적인 현상이 충분히 문제로 인식될 만큼 사회적인 주목을 받은 경우에 연구주제로 채택이 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연구주제를 선정할 수 있었던 계기로 볼 수 있다.

청소년 비행 동향에 대한 연구의 흐름을 보면 새로운 청소년 비행의 발생은 많은 경우 기술과 문화의 변화에 동반한 사회적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향후에도 청소년 비행의 발생이 새로운 문물과 이에 수반되는 문화현상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청소년 비행은 여러 관점에서 파악되고 있지만 다양한 정상적 활동의 부산물이라는 관점(일상활동이론, Cohen et al., 1979)에서 봤을 때 특정 행위 유형들이 증가할 경우 이와 관련된 일탈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연구방법과 관련해서는 국내 청소년 비행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이동원 외, 1999)의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연구원'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문헌연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던 외부 연구들에 비해서 경험적인 연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방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외국의 이론과 사례를 인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국내 현실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첫 번째 의미의 연장선상에서,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 이러한 실태와 원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소년 범죄 동향 분석에서는 대부분의 연구가 발생 실태 파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원인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조사하지 못하고 이론에 기초하여 추론하는 경향이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제3절 소년범죄 발생원인 분석

1. 발생원인 연구의 흐름

‘연구원’에서는 시대별로 중요한 청소년 비행 실태연구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파악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89년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공부압력을 중심으로」(김준호 외, 1989)를 시작으로 1990년대 19종, 2000년대 이후 7종의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공부압력을 청소년 비행의 원인으로 본 연구가 ‘연구원’에서 수행한 청소년 비행 연구의 시작이었다는 점은 흥미로운 지점이다. 이 시기 한국 사회의 청소년 비행에 대한 문제의식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청소년 비행 원인연구에서도 긴장이론, 사회학습이론, 사회통제이론, 낙인-갈등이론과 그 하위 이론 등 외국에서 확립된 이론을 재검증하는 연구가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결과를 비행으로 놓는 원인연구의 구조적 특성상 시대를 대변하는 각종 특징적 현상들이 청소년 비행의 원인으로 꼽혔다.

청소년 비행 연구에서 그 원인은 크게 개인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의 경우 개인과의 거리에 따라서 몇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청소년들은 발달상의 특성상 중요한 타인이나 소속을 가지게 되는데, 청소년 비행과 관련해서는 전통적으로 가족, 친구, 학교, 지역환경 등이 여기에 속한다.

2. 주요원인의 변화 양상

1990년대에는 청소년 비행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했던 만큼 ‘연구원’에서도 범죄원인에 대한 연구가 상당수 수행되었다. 이들 연구는 다양한 원인들을 가설로 세우고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를 실제로 검증하였다.

먼저 가족을 중시하는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우리나라의 특성 상 가족 요인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가정교육(박성수, 1990)이나 가정환경(김준호 외, 1992), 가정폭력(민수홍, 1997) 등 가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인을 연구하거나 가출(김준호 외, 1991), 공부압력(김준호 외, 1989), 초기사회문화 요인(원호택, 1990) 등 가족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요인들이 광범위하게 연구되었다. 이들 연구 결과는 대부분 일관

되게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서 비행 청소년들의 가정환경이 부정적인 상태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청소년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친구의 영향에 관해서도 연구되었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더 강력한 낙인⁶⁾을 경험한 청소년 집단일수록 친구의 비행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친구의 비행성이 본인의 비행 정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병재, 1990). 김준호 등(1992)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 공범율이 공식통계보다 높았고, 비행에 있어서 친구 관련 요인이 다수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의 더 큰 의의는 개인적 요인과 환경 요인들 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하여 내가 비행을 저지르는 경험이 비행친구의 영향을 받는 과정에 선행한다는 것(비행선행론 vs. 비행친구 선행론)을 확인한 것이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주요 시기가 중고등학교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복합적인 의미에서 학교생활은 청소년 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의 만남, 선생님과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곳도 학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를 정상적으로 잘 다니는 것은 비행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지만 그 관계를 단순하게 예측하기는 힘들 것 같다. 학교를 중퇴한 학생들은 소속감 상실 등을 통해서 비행 빈도가 증가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일반 중퇴생들은 소년원생 집단과 달리 비행 빈도가 오히려 감소하기도 했다(김준호·박선미, 1991).

지역 환경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요인들이 연구되었다. 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은 학교주변 환경의 유해성(김준호·박정선, 1991), 대중매체의 폭력성(윤진 외, 1990), 음란물(김준호 외, 1993), 대중문화의 선정성(김은경, 1997), 이 외에도 낙인과 처벌, 긴장 등 다양한 형태의 예측 요인들과 이론들이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서 검증되었다. 이들 요인에 대한 결과들은 연구자의 가설과는 달리 그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있었고, 조건을 구체화하거나 비행의 유형을 구분하였을 때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거시적 환경들은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빈번하

6) 연구자들은 비공식 낙인(가정에서의 낙인), 준공식 낙인(학교에서의 낙인), 공식 낙인(형사사법절차에서의 낙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고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미시적 환경에 비해 실제로 그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거시적인 환경들의 경우 개인별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분포수준이 다르고 그 효과뿐만 아니라 유효한 환경들을 측정하는 것부터 어렵다. 따라서 이 결과만을 놓고 거시적 환경들의 효과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 거시적 환경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보다 통제된 조건 하에서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I-1-6] 1990년대 소년범죄 원인연구

발간연도	연구 제목	범죄원인	연구 대상자	연구 방법	연구자
1989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공부압력을 중심으로	공부압력	일반청소년	설문조사/ 심층면접	김준호/ 노성호/ 고경임/ 최원기
1990	가정교육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심층적 면접에 의한 분석	가정교육	소년원생	심층면접	박성수
1990	대중매체의 폭력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사회인지이론에 의한 실험적 접근	대중매체 폭력성	일반청소년/ 소년원생	실험	윤진/ 곽금주
1990	청소년 범죄행동 유발 요인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개인성격/ 초기사회 문화적요인/ 상황요인	일반청소년/ 소년원생	설문조사	원호택
1990	청소년 친구집단과 비행 간의 상관성 연구: 낙인과정 설명을 중심으로	친구집단	일반청소년/ 소년원생/ 보호관찰대상	설문조사	전병재
1991	중퇴와 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중퇴	일반학생/ 일반중퇴생/ 소년원생	설문조사/ 심층면접	김준호/ 박선미
1991	청소년 음주와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음주	일반고3	설문조사	김동일
1991	청소년의 가출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가출	일반청소년/ 소년원생	설문조사/ 집단면접/ 질적방법	김준호/ 박정선
1992	가정환경과 청소년비행	가정환경	일반청소년	설문조사	김준호/ 김순형
1992	친구와 비행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친구	일반남학생/ 소년원생	설문조사/ 심층면접	김준호/ 박미성

발간연도	연구 제목	범죄원인	연구 대상자	연구 방법	연구자
1992	학교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학교	일반청소년/ 교사	설문조사/ 유사실험	김준호/ 노성호
1993	음란물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음란물	일반청소년	설문조사 (집단면접)	김준호/ 박해광
1994	처벌의 낙인효과에 관한 연구	낙인효과	비행경험일반 학생/보호관찰 대상/소년원생	설문조사	최인섭/ 이성식
1995	비행의 조기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발달심리학적 요인	초등학생	설문조사/ 담임평가	민수홍
1995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실태 및 비행과의 관계	학교 유해환경	일반청소년	설문조사	김준호/ 박정선
1996	청소년의 긴장과 비행	긴장(좌절)	고등학생	설문조사	김준호/ 이동원
1997	가정폭력이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가정폭력	일반남자고등 학생/보호관찰 대상/각각의 보호자	설문조사	민수홍
1997	대중문화의 선정성이 청소년 성범죄에 미치는 영향	대중문화 선정성	일반학생/ 비행집단	설문조사	김은경
1999	체벌의 실태와 영향에 관한 연구: 학교체벌을 중심으로	학교체벌	일반청소년/ 교사	설문조사	김은경

2000년대 이후에는 '연구원'에서 수행된 청소년 비행 관련 연구들이 대폭 감소하였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비행이나 그 원인에 대한 연구보다는 기존의 비행과 원인을 구체화하는 형태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의 원인에 관한 한 연구에서는 사회학적인 이론 대신 학습/예측/모멸감과 같은 심리학적인 원인에 주목했다(이순래, 2002).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비행에 관한 한 연구에서는 사이버범죄의 유형에 따라서 상이한 결과를 확인하였다(이성식, 2007). 사이버공간 상에서의 지위비행, 폭력범죄, 재산범죄, 신종범죄는 각각 주요 영향요인도, 통제요인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사이버범죄에 있어서 상황적인 요인의 중요성을 발견한 것은 이 연구의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된다.

이 시기에 새롭게 주목을 받은 것은 다문화가정이다. 한때 단일 민족의 환상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인종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했었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증가한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부적응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의 기능에 있어서도 문제가 컸다. 개인적으로도 부정적인 심리상태에 있었고,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도 컸다(전영실 외, 2012). 그러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는 아직 완전히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숫자가 증가하고, 성인으로 성장한 경우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관심을 가져야할 분야이다.

또한 피학대경험과 청소년의 비행 간 관계에 대한 연구(전영실, 2008)는 기존의 가정환경 문제 또는 가정폭력을 새롭게 정의하고 범위를 규정한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기존에는 주로 가정의 구조적인 결핍이나 물리적인 폭력에 관심을 가졌던 반면에, 학대의 범위를 방임, 정서적·신체적 학대로 확대해서 연구에 적용하였다. 이 연구는 가족의 기능에 대해서 시대적인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연구이며, 과거의 연구주제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표 III-1-7] 2000년대 이후 소년범죄 원인연구

발간연도	연구 제목	범죄원인	연구대상자	연구방법	연구자
2002	학교폭력의 원인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학습, 애착, 모멸감	일반청소년	설문조사	이순래
2003	청소년들의 인터넷음란물 접촉실태 및 영향에 관한 연구	인터넷 음란물 접촉	일반청소년	설문조사	이성식
2004	청소년 비행의 태도에 관한 연구: 법의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법의식	인문계, 실업계 일반학생	설문조사	김준호
2007	청소년 사이버범죄 유형별 원인 및 통제요소에 관한 통합적 연구	원인요소/ 통제요소	일반중학생	설문조사	이성식
2008	피학대경험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피학대 경험	일반청소년	설문조사	전영실
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 및 가해에 대한 연구	다문화가정	일반청소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설문조사	전영실/ 신동준
2013	Self-control and Delinquency in Socio-Cultural Context : Formulating and Assessing an Elaborated 'General Theory of Crime'	자기통제	일반청소년	문헌연구	연성진/ Messner, S. F.

3. 연구결과 종합 및 비판

1990년대 들어서 청소년 비행의 원인으로 지목된 요인들은 가정교육(가정환경), 대중매체의 폭력성, 중퇴, 음주, 음란물 등이다. 국내 청소년 비행의 원인은 청소년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각종 환경요인에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 및 가치관, 가정환경 및 양육방식, 친구의 비행성, 대중매체 등 주변 환경이다. 이들 요인들은 외국의 연구들을 통해서 검증된 변인들이지만 국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변인을 구체화하여 동일한 이론 하에서도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 지점들을 구분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이다. 다수의 연구들이 단일 이론을 차용하여 관련 변인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이론들과 여기에서 도출된 변인들을 사용하여 상대적인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통해 검증하는 경우에 인과관계에 대한 설정은 다소 작위적일 수 있는데, 몇몇 연구들에서 그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음란물 이용과 비행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면 비행 유발 효과를 검증하였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이 결과만으로 음란물이 비행 발생 과정에서 인과적 관계가 있는지 확정적으로 밝혀지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 비행이 복합적인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관계의 파악이 쉽지 않고, 연구자에 의해 요인들 간의 선후관계가 가정되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종속변인과 공동의 원인을 가지는 허위 상관관계에 있다는 논란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음주: Felson et al., 2008; 약물: Clayton et al., 1982).⁷⁾

마찬가지로 청소년 비행의 원인 연구에서 청소년 비행의 범주에 포함되는 약물남용, 폭력물 시청, 음주 등 지위비행을 다른 청소년 비행의 원인으로 파악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특히 실험 등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입증하거나 다수의 연구를 통해서 이미 인과관계가 검증된 경우가 아니라면 그 관계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7) 이들 연구에 따르면 일부 범죄 유형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음주 또는 약물과 범죄 간에는 허위 상관관계(spurious relationship)가 확인되기도 한다.

제4절 요약 및 추후 연구 방향

1. 연구의 의의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비행은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해 왔다. ‘연구원’에서는 청소년 비행의 발생 실태를 파악하고 형사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왔다. 이를 통해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기존 연구를 분석하여 연구주제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 문제의 개선을 위한 단초를 제공해 왔다.

국내의 현상과 원인에 주목함으로써 외국과는 다른 현상, 그리고 원인들을 발견한 것도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일 것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 비행에서 긴장이론의 설명력을 확인한 연구(김준호·이동원, 1996)에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긴장(부모관련 긴장, 공부 및 학교관련 긴장)과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긴장(친구관련 긴장, 외모관련 긴장)이 있었는데, 성적 및 시험 관련 긴장의 경우 오히려 비행과는 역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적 향상에 열을 올리는 학생들은 비행의 기회조차 없다는 웃지 못할 현실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보고서를 통해서 제안된 대책들이 실제 제도화되고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사례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의 원인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학교연계 경찰관제(liaison officer, LO)라고 하는 학교 파견 경찰관 제도를 제안하고 있는데, 실제로 경찰에서는 2012년에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 SPO) 제도를 도입하여 점차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은 그동안 ‘연구원’에서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가진 연구진 등 적절한 연구자원을 투입하여 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문헌연구 중심이던 학계의 일반적인 연구방식(이동원 외, 1999)에서 벗어나 소년원, 보호관찰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경험적인 연구 위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연구주제 및 대상의 선정, 연구설계 등에 있어서 더 정교한 방식을 추구할 수 있었다. ‘연구원’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그동안 학문적 기여뿐만 아니라 실무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기여를 하면서 발전해 왔으며,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 온 것으로 보인다.

2. 연구의 한계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하는 과제연구의 특성상 몇 가지 한계가 발견된다. 경험적인 연구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한계에 대해서는 굳이 다룰 필요가 없겠지만, 향후 연구에 참고하기 위한 건설적 비판도 필요할 것으로 보아 몇 가지 한계를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다수의 연구들이 대량 조사 결과를 나열적으로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결과에 대한 해석이 부족하여 연구결과들로부터 충분한 함의를 발견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발견된다. 기존의 이론에 반하는 결과를 발견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러한 결과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추적 연구를 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의외의 결과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면 연구결과의 정책적인 함의를 더욱 높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시리즈 연구가 기획된 경우가 아니라면 1회적인 연구수행으로 종료하는 ‘연구원’의 연구절차로 인한 한계로 보인다.

둘째, 대안에 있어서도 추상적인 주장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연구 결과와는 상관없는 일반적인 대책을 주장한다든지 원인 분석에서 확인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대책이 실효성이 없는 경우들이 발견된다. 경험적인 연구들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일반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대표적인데, 이러한 대책은 반복적인 주장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지 못하고, 수행한 연구결과와도 무관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연구들이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수행되어 유사한 방법의 연구가 반복되거나 특정 학문 분야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그 자체로 연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다. 경험이 많은 연구자가 표준화된 방법을 통해서 차별적인 연구주제에 대해서 결과를 검증해 나가는 것은 연구결과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권장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특정 학문 분야에 치우친 연구를 하는 것은 접근방식 및 연구결과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3. 추후 연구 방향

과거 퇴학생, 자퇴생으로 불렸던 청소년들에게 ‘학교 밖 청소년’이란 용어를 사용한 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 최근 가출 청소년에 대해서는 ‘가정 밖 청소년’(이창훈 외, 2017)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러한 용어 변화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에 대한 시선과 발생 원인에 대한 관점도 바뀌고 있는 시점이다. 이제는 청소년 비행 연구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관점의 변화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최근 청소년 성매매, 사이버범죄 등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상의 현상들의 특징을 요약하면 가정 밖, 학교 밖, 사이버 공간 등 제도적인 통제를 벗어난 청소년들의 문제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제도적인 노력을 통해 청소년의 비행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청소년의 사회적 회복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이창배, 2016), 오히려 제도권 밖의 청소년을 발생시키는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책적 대안의 측면에서 청소년 비행 또는 비행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도 필요하다. 비행청소년 역시 일반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비행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구분하고, 단점을 제거하려는 노력보다는 장점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비행청소년을 선도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이는 2000년대 들어서 심리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긍정심리학의 접근 방식(Seligman et al., 2000; Snyder et al., 2001)에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최근의 해외 연구 경향을 보면 형사정책적으로 고려할 새로운 비행의 유형이 발생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비슷한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고(半田勝久, 2018), 미국 등지에서도 비행의 유형들은 기존의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비행의 원인에 있어서도 새로운 원인을 밝히기보다 비행 원인에 관한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또는 청소년 비행을 위협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정교화하거나 위험요인들을 구조화하는 연구들이 눈에 띄는 정도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청소년들의 비행 요인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어야 가능한 연구 분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축적된 연구들을 토대로 변인들 간의 관계를 구조화하고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연구를 위해서는 한국 사회에서의 비행에 대해서 다수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구조적인 관점, 그리고 원인과 결과에 대한 과정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연구 주제 선정시 대규모의 다학제적 연구가 가능한 ‘연구원’의 장점을 살릴 필요가 있다. ‘연구원’은 대내적으로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다수의 인력풀을 구축하고 있고, 형사사법절차와 관련된 다수의 기관들과 협력관계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 검찰, 법원, 교정, 사회단체 등 여러 기관의 연계 하에서 수행이 필요한 연구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소년법 개정을 통한 소년 연령의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계속해서 소년법의 연령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사회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이는 형사사법 정책의 영역이지만 과연 이러한 주장에 근거가 있는지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범죄학 분야에서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실제 실태를 분석하고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통찰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서 청소년의 비율, 그리고 소년 범죄의 비율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청소년 개개인의 중요성은 더 커진 만큼 이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에 있다. 지금은 ‘연구원’에서 청소년 비행에 대한 연구의 기능이 대폭 축소된 상황이지만 ‘연구원’이 청소년에 대한 형사사법 정책 수립을 위한 범죄학적 연구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정혜(2005).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267-280.
- 김교현·최훈석(2008). “인터넷 게임중독”,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3): 551-569.
- 김동일(1991). 청소년 음주와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상희·최영신(1990). 청소년의 약물남용과정에 관한 연구: 소년원생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성언(2000). 범죄에 대한 청소년의 가치관과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성언·노성호(1999). 청소년범죄 추세분석: 1966-199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영희·최보영·이인희(2013). 학교밖 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욕구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5(4), 1-29.
- 김은경(1997). 대중문화의 선정성이 청소년 성범죄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1999). 체벌의 실태와 영향에 관한 연구: 학교체벌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종범·한종철(2001). “인터넷 중독 하위 집단의 특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207-219.
- 김준호(2004). 청소년 비행의 태도에 관한 연구: 법의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김순형(1992). 가정환경과 청소년비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김은경(1994). 여자청소년의 비행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김은경(1995). 법의식과 비행의 관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노성호(1992). 학교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노성호·고경임·최원기(1989).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공부압력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노성호·곽대경(1991). 한국의 청소년 비행집단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본과제 보고서.
- 김준호·노성호·이성식·곽대경·박정선·이동원·박철현·황지태·박성훈·최수형(2018). 청소년비행론(제4판). 서울: 청목출판사.
- 김준호·박미성(1992). 친구와 비행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박정선(1991). 청소년의 가출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박정선(1994). 청소년의 약물남용실태에 관한 연구: 술, 담배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박정선(1995).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실태 및 비행과의 관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박정선·김은경(1996). 학교주변 폭력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박해광(1993). 음란물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이동원(1995). 한국의 청소년 비행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이동원(1996). 청소년의 긴장과 비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박선미(1991). 중퇴와 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본과제 보고서.
- 문용린·조영달·강윤정·박성혁(1992). 청소년의 도덕성, 법의식 발달, 비행 경향성 및 법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민수홍(1995). 비행의 조기에측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민수홍(1997). 가정폭력이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성수(1990). 가정교육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심층적 면접에 의한 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정선(2004). 소년법의 범죄화 과정 및 보호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성진(2005). 청소년비행의 종단적 연구를 위한 패널설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성진·Messner, S. F.(2013). Self-control and Delinquency in Socio-Cultural Context : Formulating and Assessing an Elaborated 'General Theory of Crime',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원호택(1990). 청소년 범죄행동 유발 요인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윤진·곽금주(1990). 대중매체의 폭력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사회인지이론에 의한 실험적 접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동원·김지선(1999). 한국의 청소년비행 연구동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동진(2003). 청소년 폭력집단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성식(2003). 청소년들의 인터넷음란물 접촉실태 및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성식(2007). 청소년 사이버범죄 유형별 원인 및 통제요소에 관한 통합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순래(2002). 학교폭력의 원인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승현·강지현·이원상(2015).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창배(201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선 방안: 학교장과 학교전담경찰관의 인식 비교”. 한국범죄심리학회지, 12(4): 237-256.
- 이창훈·김은경(2009). 청소년의 휴대폰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 실태 및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창훈·안계원·김원기(2017). “가정 밖 청소년의 범죄 가해 및 피해와 관련된 요인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13: 1-14.
- 장준오(2003). 사이버상의 청소년 일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병재(1990). 청소년 친구집단과 비행 간의 상관성 연구: 낙인과정 설명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영실(2008). 피학대경험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영실·기광도(2009). 저연령 소년의 비행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영실·신동준(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 및 가해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수형·박현수(2013). 청소년 강력범죄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영신(2003). 청소년 약물남용의 행태 변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이성식(1994). 처벌의 낙인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황지태(2005).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학생 및 교사들의 인지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Burfeind, J., & Bartusch, D. J. (2015). *Juvenile delinquency: An integrated approach*. Routledge.
- Clayton, R. R., & Tuchfeld, B. S. (1982). The Drug-crime Debate: Obstacles to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Journal of Drug Issues*, 12(2): 153-166.
- Cohen, L. E., & Felson, M.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4): 588-608.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arrington, D. P. (1986). Age and crime. *Crime and justice*, 7: 189-250.

- Felson, R., Savolainen, J., Aaltonen, M., & Moustgaard, H.(2008). Is the association between alcohol use and delinquency causal or spurious?. *Criminology*, 46(3), 785-808.
- Hall, S.(1904). *Adolescence: Its psychology and its relations to physiology, anthropology, sociology, sex, crime, religion and education*, 1/2. New York: Appleton.
- Hirschi, T., & Gottfredson, M.(1983). Age and the explanation of crim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9(3), 552-584.
- Jolliffe, D., & Farrington, D. P.(2009). A systematic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impulsiveness and later violence. In *Personality, Personality Disorder, and Violence*(pp. 41-61). London(GB): John Wiley & Sons, Inc.
- Merton, R. K.(1938). Social structure and anomi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5), 672-682.
- Seligman, M. E., & Csikszentmihalyi, M.(2014).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In *Flow and the foundations of positive psychology*(pp. 279-298). Springer, Dordrecht.
- Siegel, L. J., & Welsh, B. C.(2014). *Juvenile delinquency: Theory, practice, and law*. Cengage Learning.
- Snyder, C. R., & Lopez, S. J.(Eds.).(2001).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 半田勝久(2018). 일본의 청소년 문제행동 및 대책, 한국청소년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8(6), 153-161.
- 동아일보(2001.3.6.). “인터넷 유해정보 차단대책 시급...청소년 모방범죄 부추겨” (<http://news.donga.com/3/all/20010306/7658441/1>, 2018년 11월 30일 최종 접속).
- 한국경제(2002.12.9.).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 '폭발'...폭력. 사기등 사회문제 우려”.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02120917961>, 2018년 11월 30일 최종 접속).

제 2 장



소년사법정책 관련 연구

장 안 식

소년사법정책 관련 연구

지난 30년 동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으로 함)의 소년사법정책에 대한 연구는 질과 양에서 꾸준한 성장을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질적 양적 성장은 한국 사회에서의 소년사법에 대한 관점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연구원’의 소년사법정책 연구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대응이었고 때로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탐색과 검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원’의 소년사법정책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고찰할 수 있다. 하나는 소년사법정책 일반에 대한 것으로 소년 사법 정책에 대한 세계적 흐름과 정책적 동향의 탐색 그리고 사회적 요구가 큰 특정 이슈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두 번째는 소년보호에 특화된 연구 형태로 소년원, 소년 보호관찰, 다양한 소년보호처분 등에 이르는 다양한 소년보호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실태 검증과 실증연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소년사법 실무에서의 실천과 행정에 대한 연구로 소년사법에서 사용되는 분류 및 위험성 평가 혹은 현재 운용되거나 새로 도입된 제도 등에 대한 평가와 개발연구라 할 수 있다.

각 연구의 흐름은 몇 가지 시기적 단계로 고찰할 수 있다. 연구의 흐름은 소년사법정책 일반에 있어서는 다양한 해외 소년사법 정책의 흐름을 탐색했던 탐색기(1992~2004)의 시기를 거쳐 모색기(2006~2008)에는 소년사법 대응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모색의 시기였고 2010년대 이후에는 발전기의 특성을 띠며 연구의 다양화로 이어졌다. 소년보호에 대한 연구는 소년보호의 생활과 실태(1990~1994)에 대한 이해로 시작되어, 소년원과 그 후의 보호처분에 대한 이해(2002~2004)를 거쳐 다양한 소년보호처분(2010~2018)에 대한 소개로 이어지는 행보를 보였다. 소년사법 실무 및 행정에 대한 연구는 시기적으로 구분하긴 어렵지만, 분류 및 위험에

대한 평가 연구와 제도 운영 및 평가에 대한 연구로 구분되어 1990년대 이래로 지금까지 그 연구의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다.

제1절 소년사법 정책 일반

소년사법정책 일반에 대한 연구는 지난 30년 동안 총 11종의 연구로 파악된다. 명확한 시기적 발전과정이라기보다는 연구지향의 변화를 통해서 11종의 소년사법정책 일반에서 세 가지의 연구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소년사법정책에서 첫 번째 연구 방향은 소년사법정책의 탐색적 성격과 목적을 나타내며 「외국의 소년범죄처리제도와 실태」(김승구, 1992), 「외국의 새로운 소년법 처우제도-가족회합제도를 중심으로」(노성호, 2000), 「각국의 회복적 소년사법 정책동향」(김은경, 2004)에서는 해외 각국의 소년사법 흐름과 변화에 대한 고찰을 통해 새로운 소년사법정책의 탐색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0년대 들어 소년사법정책 일반에 대한 연구는 탐색의 수준을 넘어 보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과 경험적 검증을 동시에 탐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년사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회복적 사법에 대한 관심은 2006년의 「학교폭력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소년사법 실험연구」(김은경·이호중, 2006)로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되었는데, 처음으로 중장기 연구과제가 등장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으로서 회복적 사법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는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I)」(김은경 외, 2007)의 3부작 연구와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II)」(김은경 외, 2008)로 이어져 소년사법의 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소년사법정책에 대한 연구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30년간 소년사법정책 일반에서 사회적 요구에 대한 대응은 특정한 이슈에 대한 소년사법정책에 대한 고찰과 탐색 그리고 개선방안의 제시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흐름에서 최초의 연구는 「성매매 청소년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김지선, 2001)였고, 2010년대에 들어서는 새로운 사회문제적 요구로서 「청소년 따돌림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이승현·노성호, 2013)과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 동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이승현·박성훈, 2017)로 이어졌다.

1. 소년사법 정책 일반에 대한 탐색

소년사법정책 일반에서 가장 먼저 시도된 연구 분야는 소년사법정책에 대한 탐색이었다. 「외국의 소년범죄처리제도와 실태」(김승구, 1992), 「외국의 새로운 소년범 처우제도 -가족회합제도를 중심으로」(노성호, 2000), 「각국의 회복적 소년사법 정책동향」(김은경, 2004)에서는 해외 각국의 소년사법 흐름과 변화에 대해서 고찰했다. 노성호(2000)와 김은경(2004)의 연구에서는 새로운 소년사법정책의 탐색에 주력하였는데, 회복적 사법에 대한 소개와 대표적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인 가족집단회합과 가족회합을 소개하였고 영미와 유럽 각국의 회복적 소년사법 정책 동향을 심도 있게 고찰하였다.

[표 III-2-1] 소년사법 정책에 대한 탐색

연도	연구 제목	연구 방법
1992	외국의 소년범죄처리제도와 실태	문헌
2000	외국의 새로운 소년범 처우제도 - 가족회합제도를 중심으로 -	문헌
2004	각국의 회복적 소년사법 정책동향	문헌

소년사법 정책에 대한 고찰이 전무하던 시기에 ‘연구원’의 태동과 더불어 소년사법의 전체적인 제도적 조망을 가능케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소년사법정책 분야에서 ‘연구원’의 최초 연구보고서라 할 수 있는 「외국의 소년범죄처리제도와 실태」(김승구, 1992)는 당시 폭증하는 소년 범죄의 파고 속에서 소년범죄를 사회가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자 하였다. 1988년 소년법 개정을 통해서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보호관찰 등의 다양한 소년 사법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아직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한국의 제도에 전범이 되어줄 수 있는 선진 주요 국가의 소년범죄 발생추세와 소년범죄의 특질을 살펴보았는데, 김승구(1992)의 연구는 일본의 소년사법 제도와 실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주요 서구국가에서의 소년사법의 흐름과 변화를 보여주었다.

소년사법 자체가 생소할 수 있던 시기에, 이러한 연구는 소년범죄의 의미 설명하고 소년범죄처리제도의 의미를 설명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이 소년범죄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소년사법제도를 어떻게 발전시켜왔는지를 각국의 사회적 맥락에서 제도 발전의 역사성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였다는 성과가 있다. 또한 소년사법의 국제화란 측면에서 한국 상황에서 도입이 필요한 다이버전, 소년 신병의 문제, 그리고 사회내처우 등과 같은 소년사법 제도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1992년 처음 출간된 소년사법 관련 연구보고서 이후, 첫 연구보고서는 당대 소년사법의 새로운 흐름이었던 회복적 사법에 대한 소개였다. 회복적 사법은 범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즉, 소년사법 대응의 패러다임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대 가장 최신의 흐름을 파악하고 정책적 탐색을 했다는 측면에서 「외국의 새로운 소년법 처우제도」(노성호, 2000)는 큰 의미를 가진다.

새로운 정책적 탐색이라는 측면에서 노성호(2000)의 「외국의 새로운 소년법 처우제도」 연구는 소년사법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회복적 사법의 발전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고 패러다임 전환의 근거논리를 충실히 검토하였다. 또한, 회복적 패러다임 전환의 대표적인 국가인 뉴질랜드와 호주의 회복적 실천의 구체적인 예를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이 연구의 보다 긍정적인 측면은 회복적 사법의 한국적 적용 가능성을 비판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이다.

2000년도에 처음 소개된 회복적 사법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각국의 회복적 소년사법 정책동향」(김은경, 2004)은 보다 구체적으로 회복적 소년사법 모델의 정책적 유용성과 의의를 검토했다. 김은경(2004)은 회복적 소년사법 모델이 비교적 활발하게 논의되고 시행되고 있던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영국 등의 영미사법권 5개국과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그리고 벨기에 등의 대륙법계 5개국의 소년사법제도 변화와 정책 동향을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비교 제시하였다. 이러한 비교 분석은 매우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는데, 각국의 회복적 소년사법을 각국의 법률적 토대(legal base), 범위(scope), 수행(implementation), 그리고 평가(evaluation)의 차원에서 매우 심도 있는 분석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흥미로운 점은 회복적 소년사법 각 모델의 이념과 원칙뿐만 아니라 각 모델의 발달과 특성을 심도 있게 비교 제시했다는 점이다. 또한, 이 연구는 각국의 회복적

소년사법 정책적 특성을 영미권 국가와 대륙법계 국가의 큰 틀에서 비교하고 각 5개국별 구체적인 법률적 토대, 범위, 실행과 평가를 깊이 있게 비교하였다는 장점이 있다.

단순한 정책적 특성의 비교를 넘어 이 연구의 또 다른 공헌은 회복적 실천모델의 경험적 효과성에 대해서 다양한 차원의 경험적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경험적 차원에서 회복적 사법 실천 모델의 효과성에 대한 메타분석적인 결과제시와 주요 비판적 쟁점들 역시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였다.

2.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과 소년사법 개혁

2006년에서 2008년은 소년사법정책 연구에서 새로운 패러다임과 소년사법 개혁을 모색하는 시기였다고 평할 수 있다. 3개년 중장기연구로 소년사법정책 일반에 대한 연구는 탐색의 수준을 넘어 보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을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경험적 검증과 평가를 동시에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6년의 「학교폭력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소년사법 실험연구」(김은경·이호중, 2006)는 학교폭력에 대한 새로운 대응방안으로서의 회복적 사법 실험을 시도했다. 이러한 회복적 사법 활용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I)」(김은경 외, 2007)의 3부작 연구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검토되었으며,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II)」(김은경 외, 2008)에서는 보다 혁신적인 방법으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표 III-2-2】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과 소년사법 개혁

연도	연구 제목	연구 방법
2006	학교폭력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소년사법 실험연구	실험
2007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I): 제Ⅰ부 청소년비행 및 소년사법정책 현황 분석	문헌
2007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I): 제Ⅱ부 새로운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사법의 실제와 전망 -회합 실험연구를 중심으로-	실험 Pilot Study
2007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I): 제Ⅲ부 대안의 모색	설문 델파이 문헌
2008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II): 회복적 소년사법 실천모델의 효과성 연구	평가연구 실험

2000년대 들어 회복적 사법으로 대변되는 소년사법의 혁신적 대응방안에 대한 관심은 3개년 중장기연구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중장기 연구의 한 부분은 당대 가장 심각했던 사회문제 중 하나였던 학교폭력 대응의 문제에 대한 회복적 소년사법의 실천 가능성을 혁신적인 연구방법을 통해서 제시하였다.

「학교폭력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소년사법 실험연구(I)」(김은경·이호중, 2006)에서 혁신적인 연구방법은 모의실험이라 할 수 있는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족회합 모델의 실행방법을 기반으로 학교폭력사건을 대상으로 한 모의실험을 진행하였다. 김은경과 이호중(2006)은 이러한 실험의 방법을 통해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점과 쟁점을 확인하고 향후 제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한국형 가족회합’ 모델을 제시한 점은 정책적 고민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을 보다 구체화한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2007년 개정된 소년법은 소년사건 적용 연령부터 화해권고 등과 같은 새로운 소년사법 제도들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연구원’은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라는 연속 연구 기획을 발표하였다. 2007년 ‘연구원’은 소년사법 정책과 관련해서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I)」라는 제목 하에서 「제Ⅰ부 청소년비행 및 소년사법정책 현황 분석」, 「제Ⅱ부 새로운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사법의 실제와 전망-회합 실험연구를 중심으로」, 그리고 「제Ⅲ부 대안의 모색」 등의 모두 3종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미래지향적 소년사법제도의 모색이라는 목표 하에서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I): 제Ⅰ부 청소년비행 및 소년사법정책 현황」 분석에서는 한국의 청소년 비행과 범죄 추세를 살펴보고 한국의 청소년 비행 예방 정책을 분석하고 진단하였다. 한국의 청소년비행 예방정책의 변화를 규제에서 복지의 차원으로 설명하였고, 청소년 비행에 대한 대응정책 분산의 문제점과 소년비행 및 범죄 법규의 중복과 혼란을 지적하였다.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I): 제Ⅱ부 새로운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사법의 실제와 전망-회합 실험연구를 중심으로」(김은경 외, 2007)는 소년사법에 대한 새로운 대응으로서의 회복적 ‘회합’ 실천의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실험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접근했다. 이러한 연구는 그 자체로 혁신적이라 할 수 있는데, 회복적 사법을

단순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동하는 이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과 실천방식으로 간주하여 실증적인 검증을 시도하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Ⅰ): 제Ⅲ부 대안의 모색」(김은경 외, 2007)에서는 현재의 소년사법 대응체계에 대한 대안 모색을 위하여 전문가 조사를 통한 진단과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소년사법의 개혁 동향과 정책적 모델을 정리하였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년사법 개혁을 검토하여 한국사회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냈다. 회복적 사법의 철학과 더불어 소년사법 분야에서 개선되어야 할 주요원칙과 가치를 재고하고 개혁의 쟁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소년사법의 개혁에서 전문소년법원, 다이버전, 소년사법 기관의 전문화와 회복적 사법의 적용 등과 같은 정책적 제언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성공적인 소년사법 정책을 위한 원칙과 개입전략을 정리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균형적/회복적 사법이념의 추구, 다이버전의 확대,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도입, 소년사법체계와 복지행정체계의 유기적 연대, 단계적 처우체계의 구조화 등의 소년사법 개혁을 위한 원칙 천명은 소년사법 개혁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2008년의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Ⅱ): 회복적 소년사법 실천모델들의 효과성 연구」(김은경·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2008)에서는 처벌위주의 소년사법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는 회복적 사법 패러다임의 실천모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당대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들을 검토하고 한국형 회복적 화합 모형을 개발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는 것은 진일보한 성과로 보인다.

3. 특정 사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 모색

정책적 차원에서 소년사법정책에 대한 연구는 필연적으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 응답해야 하는 위치에 놓일 경우가 많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소년사법정책에 대한 연구는 본질적으로 사회 문제에 대한 정책적 응전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지난 30년간 소년사법정책 연구의 대응은 특정한 이슈에 대한 소년사법정책에 대한 고찰과 탐색 그리고 개선방안의 제시로 나타났다. 2001년의 「성매매 청소년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김지선, 2001)는 당시 가장 큰 사회문제였던 청소년의 성매매

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검토하였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은 2010년대에 들어서는 새로운 사회문제적인 요구로서 「청소년 파도림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이승현·노성호, 2013)과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 동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이승현·박성훈, 2017)로 이어졌다.

[표 Ⅲ-2-3] 특정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

연도	연구 제목	연구 방법
2001	성매매 청소년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공식통계
2013	청소년 파도림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설문
2017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동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	문헌

1990년대 후반부터 10대 청소년의 성매매가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었고, 이에 대응하는 대책들이 등장하였다. 2000년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 시행되었지만, 다양한 입법적 미비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성매매 청소년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김지선, 2001)는 성매매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된 처분과 처우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기하였다. 김지선(2001)은 한국에서의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검토하였고 주요 국가들의 성매매 정책 동향을 비교 검토하였다. 실질적으로 성매매 청소년들에게 부과된 처분과 처우의 실태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각 처분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처분과 처우의 현황과 운영의 실태를 파악한 후, 이 연구에서는 성매매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정책적 관점과 원칙의 재정립과 실질적인 제도적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2013년 학교폭력 종합대책에서 제기되었던 대책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부재하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청소년파도림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이승현·노성호, 2013) 연구는 청소년 파도림 현상을 심도 있게 진단하고 당시 도입된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청소년 파도림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사회적 대응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당시 광풍처럼 몰아치던 청소년파도림에 대해서 이 연구는 청소년파도림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그 파도림의 구체적인 유형은 무엇이고 어떠한 피해/가해의 영향이 존재하는지 파악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 파도림

의 개념 규정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제기뿐만 아니라 사회적 대응이 얼마나 시급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지를 문제 제기하였다.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행해지는 따돌림 규제에 대한 기본적 법률과 예방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의 따돌림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 방안과 구체적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7년 연이은 소년강력사건을 계기로 소년강력범죄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소년법 폐지 청원 등으로 이어졌고, 국회에서는 형사처벌 연령 인하와 소년법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의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에 보다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을 위한 연구로서,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동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이승현·박성훈, 2017)는 소년강력범죄로 비슷한 경험을 겪었던 일본과 미국, 영국, 독일, 노르웨이 등에서 진행되었던 소년강력법에 대한 대응과 정책을 검토하여 한국 상황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각국에서 소년강력범죄에 대응했던 다양한 사례를 검토한 후 소년강력법에 대해서 들끓어오르는 강력처벌의 요구와 형사책임 인하의 여론 물이로서는 소년강력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결론 맺는 이 연구의 결론은 매우 인상 깊다. ‘연구원’에서 제기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연구의 결과로 소년강력법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여론에 휘둘리는 입법이 아닌 합리적인 시스템적 대응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각국의 성공적 사례를 기반으로 마련한 것은 매우 높게 평가할 수 있다.

4. 소결

지난 30년간 소년사법 정책 일반 분야의 연구는 우리나라 소년사법 정책의 역사에서 매우 큰 역할을 했다. 소년사법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혹은 연구로부터 영감을 받은 수많은 연구자들의 저작에서 지난 30년간의 소년사법 정책 일반의 연구 성과는 꽃을 피웠고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성과를 위해서 생각해볼 지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11종 연구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대다수의 연구가 보수적 대응이라는 점이다. 많은 연구는 각 시기별 소년법의 개정(예: 1988년의 소년법 개정과 2007년의 소년법 개정)의 변화에 맞춰 진행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소년사법 정책 일반의 특징은

보수적이고 대응적이라 평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연구가 보수적이라 할 순 없다. 보다 선도적인 정책적 대응과 개발의 의지는 2000년대 들어 폭넓게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7년부터 시작된 소년사법 개혁을 위한 3부작의 연구와 같은 시도는 매우 선도적인 정책적 개발 연구였다고 할 수 있다.

소년사법의 정책은 많은 경우 해외 사례의 기반 하에 새로운 것을 제안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향은 지난 30년간 소년사법 정책 일반 분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방법론적으로 대부분의 소년사법 정책 일반의 연구에서 다양성이 나타나진 않는다. 소년사법 정책 일반 분야에서 가장 주도적인 연구방법은 문헌이라 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문헌은 해외 사례 검토가 주를 이룬다. 하지만, 이러한 해외 사례 검토는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고 기술적으로 많은 정보를 보여주지만, 설득력이 결여된 무분별한 해외 사례의 남발은 오히려 연구의 의미를 퇴색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문헌 연구를 통한 해외 사례의 적용에서 보다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한국적 상황에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고민의 지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2절 소년보호

지난 30년간 소년사법정책 분야의 연구에서 아마도 가장 활발하게 연구된 분야는 소년보호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소년보호 연구 분야는 소년원부터 소년보호관찰 혹은 다양한 보호처분과 사회복귀 후 보호처분 등을 포괄한다. 지난 30년간의 소년사법정책 연구에서 가장 명확하게 시기적 구분이 나타나는 분야 또한 소년보호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소년보호에 대한 연구는 소년보호의 생활과 실태(1990~1994)에 대한 이해로 시작되어, 소년원과 그 후의 보호처분에 대한 이해(2002~2004)를 거쳐 다양한 소년보호처분(2010~2018)에 대한 소개로 이어지는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소년보호에 대한 연구는 총 19종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시기인 1990년부터 1994년까지는 주로 소년보호의 생활과 실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시기의 연구들은 아주 기본적인 소년보호처분의 개론적 연구부터 시작하여 참여관찰을 통한 소년원에

대한 관찰, 소년위탁(수탁)시설의 처우에 대한 평가, 그리고 소년원 교정 프로그램 운영과 생활실태 등에 대한 탐구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연구로는 「소년보호처분의 효과분석」(이윤희, 1990), 「소년원 교육에 대한 참여 관찰 연구-직원의 직무와 원생의 생활을 중심으로-」(김영환, 1990), 「소년보호관찰의 평가와 효율성분석-서울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최인섭 외, 1992), 「소년수탁시설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아동복지시설과 소년보호시설을 중심으로-」(김준호·이순래, 1993), 「소년원 교정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이훈규·김성언, 1994), 「소년원생의 생활실태 및 교육에 관한 연구」(이병기·김성언, 1994) 등이 포함된다.

소년보호에 대한 연구의 두 번째 시기(2002년~2004년)에서 대다수의 연구들은 소년원과 그 이후의 보호처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연구의 대표적인 주제는 소년원 가퇴원자 보호관찰에 대한 연구부터 출원생의 사후보호 방안 연구, 해외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집중적 검토 등을 포함한다. 2002년 「각국의 소년원제도에 관한 연구」(정재준, 2002)에서 시작된 한국의 실정에 도입 가능한 구체적 사례들에 대한 검토는 소년원을 넘어 다양한 사후 소년보호 연구로 이어진다. 이 시기의 연구들은 「소년원 가퇴원자 보호관찰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성철, 2002), 「소년원 교육과정의 평가와 개선방안」(최영신, 2002), 「소년원 출원생의 사후보호에 관한 연구」(김지선, 2004), 「주요 국가의 소년보호관찰제도 연구-미국, 영국, 일본의 소년보호 관찰제도를 중심으로-」(김양곤, 2004) 등으로 나타났다.

2010년대 들어 소년보호에 대한 연구는 본격적으로 다양한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연구의 시기로 접어들었다. 이 시기의 연구는 다양한 소년보호처분과 제도에 초점을 둔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주요 연구들은 「소년원의 처우방안에 대한 연구-8호 처분을 중심으로」(이승현·강경래, 2010), 「8호처분 교육과정의 성과분석을 통한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이승현, 2014), 「소년원교육에서 보호소년의 변화요인 탐색에 관한 연구」(김지영 외, 2016),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효과적인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권수진·유진, 2016), 「소년범 대상 중간처우제도의 활성화 방안: 6호 처분을 중심으로」(이승현·박선영, 2017) 등이라 할 수 있다. 2017년 이후 새로운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소년원 이후의 삶을 보다 새로운 이론적 관점 하에서 조망하는 종합적인 종단적 추적 연구가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

지원 방안 연구(Ⅰ)」(박성훈 외, 2017)와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Ⅱ)」(박성훈 외, 2018)로 나타났다.

1. 소년보호의 생활과 실태 (1990~1994)

소년보호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소년보호 생활과 운영 실태에 대한 이해는 필수였다. 소년보호에 대한 연구에서 1990년대는 소년보호의 생활과 실태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소년보호처분의 효과분석」(이윤희, 1990), 「소년원 교육에 대한 참여 관찰 연구-직원의 직무와 원생의 생활을 중심으로-」(김영환, 1990), 「소년보호관찰의 평가와 효율성 분석-서울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최인섭 외, 1992), 「소년수탁시설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아동복지시설과 소년보호시설을 중심으로-」(김준호·이순래, 1993), 「소년원 교정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이훈규·김성언, 1994), 「소년원생의 생활실태 및 교육에 관한 연구」(이병기·김성언, 1994) 등은 소년보호처분 효과 검증과 소년원 내의 생활에 대한 이해와 보호관찰제도 운영에 대한 고찰 그리고 소년원 교정교육 운영 실태를 검토 고찰하였다.

[표 Ⅲ-2-4] 소년보호의 생활과 실태

연도	연구 제목	연구 방법
1990	소년보호처분의 효과분석	설문
1990	소년원 교육에 대한 참여 관찰 연구 -직원의 직무와 원생의 생활을 중심으로-	참여관찰 민속지학
1992	소년보호관찰의 평가와 효율성분석 -서울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	평가연구
1993	소년수탁시설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아동복지시설과 소년보호시설을 중심으로-	문헌 사례연구
1994	소년원 교정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문헌
1994	소년원생의 생활실태 및 교육에 관한 연구	설문

1990년대 들어 양적 증가를 이어오던 청소년 범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증폭되었고, 이에 청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에 눈을 뜨기 시작하였다. 청소년범죄자가 처벌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라는 이념을 담고 있는 1989년의 소년법 개정에 맞춰 다양한 보호적 처분과 처벌적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년보호처분의

효과분석」(이윤호, 1990) 연구는 보호처분에 대한 논란이 팽배한 상황에서 보호처분의 효과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시도하였지만, 본격적 효과성 검증을 위한 평가 연구라기보다는 보호처분의 효과에 대한 기술적이고 환기적인 연구였다고 할 수 있다.

1990년 소년처분의 가장 대표적인 처분이라 할 수 있는 소년원 처분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는 또 다른 연구가 진행되었다. 「소년원 교육에 대한 참여 관찰 연구-직원의 직무와 원생의 생활을 중심으로」(김영환, 1990)는 소년원에서의 삶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내부자의 관점이라는 독특한 접근으로 풀어냈다. 내부자 관점이라는 독특한 접근법 아래서 이 연구는 소년원의 제도적 공간적 환경은 어떻게 구성되고 그러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소화되고 이해되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소년원이라는 환경을 이해하는데 있어 민속지학적 참여관찰이라는 독특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분야의 연구에서 매우 유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적용한 김영환(1990)의 연구는 소년원 내의 삶을 원생의 삶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삶까지도 비교적 생생하게 비추어주면서 소년원이라는 소년사법의 한 단면을 사회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 연구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한계는 존재했지만, 민속지학적 참여관찰의 시도는 '연구원'의 방법론적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사회내처우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는 보호관찰제도는 1989년 우리나라에 도입되며 본격적인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시행된 소년보호관찰제도의 운용실태와 그 제반 사항들에 대한 분석이 전무하였고, 이에 대응하듯 1993년 '연구원'은 「소년보호관찰의 평가와 효율성 분석」(최인섭 외, 1992)이라는 연구를 진행하고 출간하였다. 당시 한국에서 처음 시행되고 있는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운영 실태와 구체적인 특성에 대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소년보호 연구사적인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보호관찰 대상의 구체적인 특성부터 재범에 이르는 분석으로부터 연구진들은 보호관찰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인적, 물적, 제도적, 사회적 측면에 이르는 다층적 제언의 시도를 하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1988년의 「소년법」 개정은 소년원 수용처우를 단기와 장기로 세분화하였고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의 새롭고 다양한 처우들이 도입되었다.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위탁하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대한 첫 분석은 「소년수탁시설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김준호·이순래, 1993)로 나타났다. 소년범죄자에 대한 중간처우의 성격을 가지는 보호처분 위탁시설 처우는 보호관찰보다 더 적극적인 사회내처우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연구는 당시 상대적으로 새롭던 소년수탁시설 처우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소년보호 위탁시설의 이론적 기초와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였고 당대 시행되고 있는 소년보호 위탁시설의 실태를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를 기초로 이 연구는 수탁시설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과 새로운 수탁시설모형을 성공적으로 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소년원의 성패는 교정교육의 성과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매우 어려운 작업일 수 있다. 「소년원 교정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이훈규·김성언, 1994) 연구는 범죄청소년에 대한 시설 내 처우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 소년원 교정교육의 운영실태를 프로그램의 목표와 수행기준에 준거하여 그 효율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교정프로그램의 효과가 단순한 성공과 실패의 이분법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전제 하에서, 이 연구는 소년원 내에서 운용되는 구체적인 교정 프로그램들의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행기준을 판별하고 실질적인 효용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불분명한 기준 하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성 연구의 맹점이 때때로 과학적이지 못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이훈규와 김성언(1994)의 연구는 교정프로그램의 수행(performance)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방법 속에서 이들의 연구는 프로그램의 의도(교정처우의 종류와 목적, 목표, 수행수단)와 결과가 일치하는지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을 찾을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태생적으로 독특한 형태를 띠 수밖에 없는 소년원의 특성에서 「소년원생의 생활실태 및 교육에 관한 연구」(이병기·김성언, 1994)는 소년원의 진단에서 독특한 관점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구금으로 대변되는 처벌의 요소와 교육으로 대변되는 보호의 요소가 중첩되는 공간인 소년원에서 이 연구는 구금적 요소와 보호적 요소를 대비시켜 검토해야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러한 접근은 소년원에서 시행되는 교육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존재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접근이었다 할 수 있다.

2. 소년원과 이후의 보호처분 (2002~2004)

2000년대 초반 소년보호 연구의 주도적 경향은 소년원과 그 이후의 보호처분에 집중했다. 2002년 「각국의 소년원제도에 관한 연구」(정재준, 2002)에서는 소년원 제도가 각국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특성을 담지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다양한 국가의 소년원 제도들을 검토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한국적 실정에 도입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한 검토는 소년원을 넘어 다양한 사후 소년보호 연구로 이어지는데, 소년원 이후의 보호처분으로 확장된 이 시기의 연구는 「소년원 가퇴원자 보호관찰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성철, 2002), 「소년원 교육과정의 평가와 개선방안」(최영신, 2002), 「소년원 출원생의 사후보호에 관한 연구」(김지선, 2004), 「주요 국가의 소년보호관찰제도 연구-미국, 영국, 일본의 소년보호 관찰제도를 중심으로-」(김양곤, 2004)등으로 나타났다.

[표 III-2-5] 소년원과 이후의 보호처분

연도	연구 제목	연구 방법
2002	각국의 소년원제도에 관한 연구	문헌
2002	소년원 가퇴원자 보호관찰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문헌 설문
2002	소년원 교육과정의 평가와 개선방안	공식통계 문헌 설문
2004	소년원 출원생의 사후보호에 관한 연구	문헌 공식통계 이차자료분석
2004	주요 국가의 소년보호관찰제도 연구 -미국, 영국, 일본의 소년보호관찰제도를 중심으로-	문헌

소년원 제도는 각 나라별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특성을 담지 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서, 「각국의 소년원제도에 관한 연구」(정재준, 2002)는 다양한 국가들의 소년원제도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한국 소년원 제도와 유사성과 차이점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인 소년원의 특성을 영미 제도와 대륙법권의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대만과 일본의 소년원제도를 구분하였고 각 나라별로 구체적인 소년원 제도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이 연구의 독특한 접근은 각 나라별 소년원 제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한국의 실정에서 도입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종합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소년원 이후의 삶에 대한 연구는 「소년원 가퇴원자 보호관찰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성철, 2002)가 시작을 알리었다. 이성철(2002)의 연구는 소년원 가퇴원자들의 재범률이 높은 상황에서 가퇴원 제도의 운영취지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가퇴원자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보호관찰중인 가퇴원자와 이들을 감독하는 보호관찰관 등에 대한 의식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서 가퇴원자에 대한 지도실태와 프로그램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1988년의 소년원법 개정을 통해 교과교육 위주의 학교화 체제를 구축한 소년원은 2000년 소년원 특성화를 통해서 특성화학교 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체제 전환을 통해서 소년원생들은 직업능력을 높이기 위한 특성화교육을 받게 되었고 소년원 특성화교육은 직업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재편되었다. 소년원이 특성화학교체제로 전환한지 얼마 되지 않던 당시 상황적 요구에 의해서 「소년원 교육과정의 평가와 개선방안」(최영신, 2002) 연구는 특성화학교체제로 전환한 소년원 교육과정의 운영상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공식통계와 문헌연구 그리고 메타분석과 설문 등을 통해서 이 연구는 특성화학교체제로 전환한 소년원 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효과적으로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소년원 이후의 프로그램이나 제도에 대한 연구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의 높은 재범률에 있다 할 수 있다. 범죄청소년에 대한 소년원 처분은 10% 미만으로 양적으로는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그들의 재범률은 상당히 높은 형편이다. 단기간의 소년원 수용으로 이전에 심화된 반사회적 성향이 일소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년원 출원 이후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년원 출원생의 사후보호에 관한 연구」(김지선, 2004)는 소년원 출원생의 출원 이후의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고, 40%에 이르는 출원생의 재범률이 이들이 사회복귀의 어려움과 기존의 출원 이후 사후보호제도의 실패를 반증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서 김지선(2004)의 연구는 처벌에 경도되어 있는 기존의 소년범죄자에 대한 소년사법 대응정책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소년원으로 대변되는 공식처벌 이후 삶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즉, 처벌 이후의 삶을 고려하지 않는 기존 소년정책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소년범죄자의 사후보호 문제의 중요성을 환기하며 새로운 실천방향을 제기하였다.

사회내처우로서 보호관찰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후, 사회내처우의 가장 전형적인 제도로써 보호관찰제도는 보다 인도적인 제도이며 소년범죄자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보다 효과적인 제도로 알려졌다. 보호관찰제도는 양적으로 형사사법체제의 중추로 자리 잡았지만, 보호관찰제도가 얼마나 잘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소년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제도가 양적으로 감소하고 있던 상황에서, 「주요 국가의 소년보호관찰제도 연구」(김양곤, 2004)는 보호관찰분야의 운용을 재검토하고 각국의 제도와 비교하며 그 전문적 이해를 넓혀 소년보호관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도는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다양한 소년보호처분 (2010~2018)

2010년대 들어 소년보호에 대한 연구는 본격적으로 다양한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연구의 시기로 접어들었다. 소년원 중심으로 논의되던 소년보호 연구의 주제는 다양한 보호처분으로 확장되었고, 소년원생에 대한 연구도 정신질환 소년원생과 소년원생의 사후정착 등으로 확장된 시기로 평가된다. 이 시기의 연구들은 「소년원의 처우방안에 대한 연구-8호 처분을 중심으로」(이승현·강경래, 2010), 「8호처분 교육과정의 성과분석을 통한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이승현, 2014), 「소년원교육에서 보호소년의 변화요인 탐색에 관한 연구」(김지영 외, 2016),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효과적인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권수진·유진, 2016), 「소년법 대상 중간처우제도의 활성화 방안: 6호 처분을 중심으로」(이승현·박선영, 2017) 등은 6호와 8호 등 여러 보호처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며 다양한 소년보호처분과 다양한 제도로 연구의 초점을 옮겼다. 2017년 이후 새로운 연구는 보다 새로운 이론과 방법론으로 무장하며 등장했는데, 소년원 이후의 삶을 생애과정의 관점 하에서 조망하며 종단적 추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I)」(박성훈 외, 2017)와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II)」(박성훈 외, 2018)가 이러한 연구 방향의 결과로 나타났다. 「민영소년원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연구」(김지영 외, 2018)는 새로운 제도

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로서 민영소년원 운영과 교육 프로그램 모델을 제시하였다.

[표 Ⅲ-2-6] 다양한 소년보호처분

연도	연구 제목	연구 방법
2010	소년원의 처우방안에 대한 연구 -8호 처분을 중심으로-	설문 심층면접 문헌
2014	8호처분 교육과정의 성과분석을 통한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설문 심층면접
2016	소년원교육에서 보호소년의 변화요인 탐색에 관한 연구	설문 집단면접 공식통계
2016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효과적인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심층면접 설문 문헌
2017	소년법 대상 중간처우제도의 활성화 방안 : 6호 처분을 중심으로	설문 심층면접 문헌
2017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Ⅰ)	심층면접 설문 문헌 육구조사
2018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Ⅱ)	패널조사 설문 FGI
2018	민영소년원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연구	문헌

소년사법에 있어 2007년은 새로운 변화를 경험했던 시기였다. 2007년의 소년법 개정은 보호처분 대상 변경으로 촉법소년이 10세로 낮아졌고 소년보호대상도 19세로 낮아졌다. 또한, 소년사법에 회복적 사법이 도입되어 화해권고제도, 다이버전의 확대를 위한 기소유예제도와 다양한 보호처분이 도입되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보호처분 중 하나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송치를 의미하는 8호 처분이라 할 수 있다. 집중적 단기간의 개별처우를 통한 재사회화와 교정 효과 극대화를 위해 도입된 8호 처분은 다양한 비판에 직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년원의 처우방안에 대한 연구 -8호 처분을 중심으로」(이승현·강경래, 2010)는 새로 도입된 8호 처분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와 진단의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8호 처분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소년

원의 처우방안에 대한 연구 -8호 처분을 중심으로」(이승현·강경래, 2010)는 8호 처분의 운영방식과 내용 등을 검토하고 해외의 비슷한 처분과 비교 검토 후 8호 처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효과적으로 도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8호 처분이 도입된지 6년을 맞이하는 2014년 「8호 처분 교육과정의 성과분석을 통한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이승현, 2014)는 수용 인원의 증가와 함께 비판도 증가하던 8호 처분의 프로그램 효과성 진단을 위해서 진행되었다. 처음 도입된 이래로 8호 처분은 수용인원이 급속도로 증가하였지만, 8호 처분의 단기수용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의구심 역시 높았다. 이로 인해 당시 8호 처분의 이용은 양적으로 감소하고 프로그램의 내용과 성격이 변화하고 있던 형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승현(2014)의 연구는 8호 처분의 운영실태와 수용대상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 인식과 효과에 대한 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서 8호 처분의 교육과정을 면밀히 평가하였다.

소년보호의 이념에 바탕을 둔 소년사법체계는 범죄청소년에 대해서 처벌보다는 선도와 교육을 우선시한다. 소년원 역시 이러한 이념에 근간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소년원의 목표는 범죄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선도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재통합해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년원의 교육 프로그램의 성공은 단순히 재범의 유무로 판단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소년원교육에서 보호소년의 변화요인 탐색에 관한 연구」(김지영 외, 2016)는 소년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그에 따라 변화를 추동하는 긍정적 변화의 요인들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단순한 재범의 유무만으로 소년원 교육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원 생활에서 원생들의 긍정적 변화요인을 찾아 소년사법정책에 보다 유의미한 정책적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2010년대에는 소년보호처분에서 매우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도 중 하나는 정신질환 소년원생에 대한 연구였다. 당시 소년원 환경에서 소년원생 중 정신질환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원생의 비율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당대 소년원 환경에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의료적 처우가 실시되기에는 매우 열악한 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효과적인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권수진·유진, 2016)는 정신질환 소년원생 처우에 관한 제도와 운영상황을 파악하고 외국의 정신질환 소년원생 관련 제도와 비교 검토

하였다. 또한, 처우 당사자인 정신질환 소년원생들과 담당 직원들에 대한 심층면접과 설문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처우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한국에는 정신질환 전문 소년원이 없는 형편에서 정신질환 소년원생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처우를 고민하는 적절한 연구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에서 소년법에 근거한 보호처분은 10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1호부터 10호 보호처분까지 모든 보호처분의 목적은 비행청소년과 범죄청소년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데 개별적 상황과 요구에 맞는 개별적 처우를 고안하고자하는 데 있다. 하지만, 이러한 10가지의 보호처분 중에서 몇몇의 보호처분의 편중 현상은 비행 청소년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개별적 처우를 어렵게 만든다. 2016년 「소년법 대상 중간처우제도의 활성화 방안」(이승현·박선영, 2016) 연구는 현재 소년법에 규정된 보호처분 중 6호 처분의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중간처우제도가 할 수 있는 6호 처분은 청소년의 안정적 사회 정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소년법 대상 중간처우제도의 활성화 방안」(이승현·박선영, 2016) 연구는 한국에서 운영되는 6호 처분 시설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종사자와 전문가에 대한 설문과 심층면접을 통해서 중간처우시설로서 6호 보호처분시설의 개선점을 시설운영부터 프로그램, 관리감독, 사후관리, 지역사회연계 측면에서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범죄청소년의 재범 문제는 소년사법 정책에서 항상 최우선의 관심사였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난제와도 같은 주제였다. 재범에 대한 실증연구는 대개가 재범의 유무, 즉 결과의 문제에만 천착했다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2017년 ‘연구원’은 소년사법 연구에서 혁신적인 발걸음을 보였는데, 3년간의 중기연구과제를 통해서 소년원에 입소부터 출원하여 사회에 정착하는 모든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데, 소년법의 사회복귀와 소년범죄자의 사후보호와 범죄의 중단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발전범죄학적 접근을 가능케 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I)」(박성훈 외, 2017)는 비행청소년이 소년원 출원 이후에 건강한 시민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소년원 재원생과 출원생 그리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연구는 소년보호기관의 제도와 프로그램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소년

원생에게 특화된 대안적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3년간 연구의 첫 번째 연구로서 이 연구는 발전범죄학적 관점을 도입하였고, 사회정착지원제도 및 프로그램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였고,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사회정착지원 제도를 파악한 후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시하였다.

소년보호라는 이념에도 불구하고 소년원 수용은 소년범죄자 중에서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재범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시민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교육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년원 수용을 통해서 범죄중단이나 건강한 사회복귀로 이어진다고보다는 소년원을 거쳐 갔던 많은 소년들이 오히려 범죄지속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인생의 길에서 범죄중단의 길이 아닌 범죄지속의 경로를 택하는 많은 소년들의 삶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탐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2017년부터 시작된 중기연구과제로서 1차년도 연구가 제도적 측면에서의 소년원 출원생들의 사회정착을 돕는 프로그램과 제도를 검토했다면,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II)」(박성훈 외, 2018)는 구체적으로 소년원생의 사회정착 과정을 면밀히 추적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범죄학과 소년사법에서 큰 획을 그었던 많은 연구들이 종단적 연구의 결과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년간 종단적 추적조사설계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회정착의 인생 경로를 탐구하고자 하는 이 연구의 시도는 매우 높게 평가할 수 있다.

2018년에는 아주 색다른 연구가 시도되었는데, 「민영소년원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연구」(김지영 외, 2018)는 2018년 「민영소년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민영소년원 설립추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이미 운영 중인 민영교도소의 사례와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하였다. 민영소년원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기존의 소년원과 차별성을 가지는 모델을 모색하여 제시하고 있다. 향후 민영소년원에 대한 의견이 논란과 격론을 거칠 때, 이 연구가 제시한 정신건강으로 특화된 민영소년원 모델은 좋은 논의의 시작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소결

30년간의 소년사법정책 연구에서 소년보호 분야는 아마도 경험적인 연구가 가장 붓물처럼 풍성했던 분야라 할 수 있다. 또한 19종에 이르는 연구가 뚜렷하게 시기적 구분이 이루어지고 연구 영역의 구분이 명확히 드러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소년보호의 생활과 실태(1990~1994)에 대한 이해로 시작하여, 소년원과 이후의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이해(2002~2004)를 거쳐 다양한 소년보호처분(2010~2018)에 이르는 연구의 전체 과정은 매우 유기적인 조합으로 보인다.

방법론적으로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는 점 또한 매우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모든 연구주제를 관통하는 방법론적 만능키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년보호 연구분야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방법론적 시도들은 매우 높게 평가할 만하다. 예를 들어, 민속지학적 참여관찰로부터 심층면접과 설문, 전문가 조사, FGI, 패널조사에 이르는 다양한 방법론적 시도는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긍정적인 공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소년보호 연구는 보수적이고 반응적 일뿐 아니라 단발성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단발성의 연구에서 주장하는 효과성 검증의 다양한 정의는 오히려 그 효과성 검증에 대한 의구심을 낳는다. 2010년 후반부터 효과성 검증과 평가 연구를 위한 종단적 설계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보다 심도 있는 실효성 검증을 위해선 단발성 연구를 지양하고 종단적 혹은 추적 연구 설계의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제3절 소년사법 실무 및 제도 행정

지난 30년간 소년사법 실무 및 행정에 대한 연구는 10종으로 나타났다. 소년사법 실무 및 행정에 대한 연구는 시기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하지만, 연구의 내용은 분류 및 위험에 대한 평가 연구와 제도 운영 및 평가에 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시기적으로 구분되는 연구 동향이 발견되지는 않지만, 1990년대 이래로 지금까지 분류 및 위험에 대한 평가 연구와 제도 운영 및 평가에 대한 연구로 구분되는 연구의 전통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분류 및 위험성 평가

소년 분류 및 위험성 대한 연구는 지난 30년 동안 총 4종의 연구로 파악된다. 이러한 분류에 속하는 연구들은 모두 보호처분과 밀접하게 관련된 소년 분류와 위험성 진단에 대한 평가 혹은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 III-2-7] 분류 및 위험성 평가

연도	연구 제목	연구 방법
1993	비행소년 감별기준에 관한 연구	설문 전문가조사
2000	소년보호처분유형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문헌 심층면접 2차자료
2005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분류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문헌 2차자료 평가연구
2009	소년범의 검사 결정전조사제도를 위한 위험성평가도구 개발연구	설문 심층면접

소년사법에서 분류심사는 비행청소년과 주변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으로 처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서구의 분류심사 역사는 매우 오래 되었지만, 한국에서의 소년심사의 역사는 매우 짧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창기 소년사법 연구가 시작되던 1993년 「비행소년 감별기준에 관한 연구」(김준호·이동원, 1993)는 비행청소년에 대한 분류심사와 감별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 기준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김준호와 이동원(1993)은 제도적인 차원에서 미국과 일본의 분류심사 체계를 고찰한 후 제도적인 개선점을 모색하였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류심사 자료를 분석하여 기존의 분류심사 방식의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소년사법 실무와 관련한 ‘연구원’ 최초의 연구로서 실무개선과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의 초기 형태로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소년보호처분제도는 소년보호라는 이념에 근거하고 소년범을 건강한 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년범죄자를 성인범죄자와 다르게 처우하고자 한다. 한국의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시설 수용부터 사회내처우에 이르는 다양한 소년

보호처분이 존재한다. 소년의 개별적 필요에 적합한 처우를 결정하는 것은 보호처분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작업이다. 청소년의 보호처분이 형사사법적인 처벌의 성격과 복지적·교육적 성격의 보호처분 모두 포괄하고 있는 형편에서 합리적인 소년보호처분 유형의 결정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소년보호처분유형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김지선, 1993)는 공식통계와 기록, 그리고 심층면접을 토대로 합리적인 보호처분 결정 요인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보호처분의 결정에서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의 영향까지 포괄하여 각 처분유형별 특성을 종합한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

소년사법에서 보호관찰은 대표적인 사회내처우로서 비행청소년에 대해서 지역사회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처우를 기대할 수 있고 이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사회내처우로서 보호관찰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보호관찰 처우의 시작부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분류 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김양곤 외, 2005)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분류평가단계에서 개별 대상자가 가진 실질적인 필요성에 근거한 보다 정교한 평가와 분류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위험성 진단이라고 하는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이 연구는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의 다양한 위험요인과 욕구들을 파악하고 처우의 선택과 분류를 위한 인상적인 방안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2007년 개정된 소년법에 의해 도입된 결정전조사제도는 소년범 사건에서 검사의 처분결정에 앞서 해당 소년에 대해서 품행, 경력, 환경 등에 대해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결정전조사제도는 소년범이 연루된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할지 보호사건으로 처리할지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해당 소년에 보다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소년범의 검사 결정전조사제도를 위한 위험성평가도구 개발연구」(홍영오 외, 2009)는 실제로 시행되는 결정전조사의 운영주체인 소년범 담당 검사와 보호관찰관 그리고 소년원 담당자들에 대한 설문과 심층면접을 통해서 결정전조사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재범위험성평가도구는 몇몇 논란의 지점이 존재하지만 표준화된 평가기준이라는 점에서 결정전조사제도가

보다 타당하고 일관성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한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2. 제도 운영 및 평가

소년사법 제도 운영 및 평가에 대한 연구는 6종의 연구로 나타난다. 소년사법 제도 운영 및 평가는 소년사건처리절차로부터 소년법상 자원보호자제도, 소년범 결정전조사제도, 소년조사제도의 개선방안, 소년분류심사원, 소년 국선변호인 그리고 소년범 조건부기소유예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년사법 제도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의 모색에 초점을 두고 있다.

[표 III-2-8] 소년사법 제도 운영 및 평가

연도	연구 제목	연구 방법
1994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문헌
2002	소년법상 자원보호자제도에 관한 연구	문헌 설문
2011	소년조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설문 심층면접
2015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강화방안	문헌 설문
2016	소년 국선보조인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문헌 설문 심층면접
2018	소년범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내실화방안 연구	전문가조사 문헌

소년사법의 개념이 생소하던 시기에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오영근·최병각, 1994)는 당시 소년법제상 소년사건처리절차와 소년사건의 실태를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소년법 절차의 개선점을 찾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소년법의 적용대상, 소년사법의 구조와 권한 배분, 소년에 대한 미결구금과 조사, 적법절차원칙의 보장 등에서의 실무나 제도상의 문제점을 찾아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비록 소년사법의 역사는 짧지만, 1985년 사회내처우의 하나로 고안된 자원보호자 제도는 매우 한국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소년보호처분 중 1호 처분으로 알려진

자원보호처분은 2000년 당시 전체 보호처분 중 약 5%에 이르고 단독 1호 처분 중 약 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범죄 청소년 중에는 보호자 감호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1호 처분은 이러한 경우에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에게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혹은 자원보호자에게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자원보호자제도는 소년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깊은 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원보호자제도의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나 연구가 부재했고 그에 따른 논의도 부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년법상 자원보호자제도에 관한 연구」(이동진, 2002)는 자원보호자와 소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해외의 비슷한 제도와 사례를 통해서 한국 상황과 비교 논의 하였다.

전세계적으로 소년사법에서 소년법에 대한 개별처우를 위한 각종 조사는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다양한 조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소년조사제도는 경찰, 검찰, 법원 그리고 교정 단계에서 각각 수행되고 있어 절차적으로 중복되고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으로 인해 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해서 「소년조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홍영오·황태정, 2011)는 소년법에 대한 조사제도의 중복과 지연으로 인한 효율성의 문제와 전문성을 재고하여 소년조사제도의 전문성 강화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당시 실제 시행중인 각종 조사의 운영 실태와 운영당사자인 검사와 판사, 그리고 조사관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서 각종 조사의 제도상 문제점을 찾아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소년사법의 주요 제도로서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법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소년법에게 개별적 처우를 가능하게 한다. 소년법에게 개별적 처우는 소년법의 교화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사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한국의 소년분류심사원은 전국에 1개소만 존재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는 1개의 소년분류심사원 역시 이미 위탁소년의 과밀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소년분류심사원의 과밀화로 인한 분류심사의 부실화뿐만 아니라 범죄학습 등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강화방안」(이승현·박성훈, 2015) 연구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운영실태와 역할과 기능에 대한 분석을 면밀히 진행하고 개선방

안을 찾고자 하였다. 소년분류심사원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일본, 미국, 독일 등의 소년분류심사 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소년분류심사원의 비행진단, 교육, 수용 등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2007년 소년법 개정 이후 시행되고 있는 소년 국선변호인제도에 대한 실태 파악과 운영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 연구는 없었다. 현재 우리나라 국선보조인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비판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년 국선보조인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황지태 외, 2016)는 국선보조인제도 관련 국내외 법률과 해외 제도를 살펴보고, 국선보조인 관련 당사자들인 소년사범, 국선보조인, 소년부 판사, 소년분류심사관 등에 대한 심층면접과 설문을 통해서 국선보조인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소년법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전환처우인 다이버전의 한 형태로 시설내처우보다 다양한 처우가 가능하며 소년법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소년법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내실화방안 연구」(이승현 외, 2018)는 1978년부터 약 30여 년간 운영되고 있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소년범들에게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는지와 실제의 기소유예가 향후 재범 방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해위 사례를 검토하고 조건부 기소유예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설문과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내실화 방안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였다.

3. 소결

지난 30년간 소년사법 실무 및 행정에 대한 연구는 10종의 연구를 통해서 소년사법의 전반적 향상에 큰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다 과학적인 분류와 위험성 평가에 대한 노력은 하나의 평가기준이나 감별기준이 성과를 낳았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스템의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볼 수 있다.

소년사법 실무와 행정 분야에서 역시 다양한 방법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소년사법 실무에서의 제도와 운영에 대한 평가에서 다양한 방법론적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분석과 결과의 제시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보다 분석적인 제시가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 제시는 해외 사례를 통한 함의를 제시하는 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서, 특정 소년사법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 위에서 개선방안과 강화방안을 제시한다면, 그 제안은 보다 더 엄밀하고 분석적이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제4절 결론 및 향후 연구 전망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지난 30년간 ‘연구원’의 소년사법정책에 대한 연구는 질과 양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다. 이러한 성장은 한국사회에서의 소년사법에 대한 관점의 변화에 ‘연구원’이 신속히 대응하고 사회적 요구에 충실히 부응해 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소년사법 정책의 세계적 흐름과 정책적 동향과 우리 사회의 정책적 대응의 모색으로 대변되는 소년사법정책 일반에 대한 연구로부터 다양한 소년보호에 대한 검증과 분석인 소년보호 연구 그리고 소년사법 실무와 제도적 개선을 위한 소년사법 실무와 행정에 대한 연구는 각 시대적 요구에 맞춰 지금까지 연구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소년사법정책 일반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외 소년사법과 정책의 흐름을 탐색했던 탐색기(1992-2004)의 시기를 거쳐 모색기(2006-2008)에는 소년사법 대응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모색의 시기였고 2010년대 이후에는 발전기의 특성으로 띠며 연구의 다양화와 다변화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에 대한 연구는 소년보호의 생활과 실태(1990~1994)에 대한 이해로 시작되어, 소년원과 그 후의 보호처분에 대한 이해(2002~2004)를 거쳐 다양한 소년보호처분(2010~2018)에 대한 소개로 이어졌다. 소년사법 실무 및 행정에 대한 연구는 분류 및 위험에 대한 평가 연구와 제도 운영 및 평가에 대한 연구로 구분되어 1990년대 이래로 지금까지 그 연구의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 검토를 기반으로 향후 연구를 위해 제언하면 선도적인 연구와 장기과제의 필요성, 연구 성과의 축적을 위한 고민, 그리고 해외 사례 검토의 체계화와 방법론적 다양화로 요약할 수 있다.

1. 선도적인 연구와 장기과제의 필요성

소년사법정책 연구들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대다수의 연구가 현안 대응적이고 보수적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많은 소년사법정책 연구는 각 시기별 소년법의 개정(예: 1988년의 소년법 개정과 2007년의 소년법 개정)에 맞춰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태생적 보수성을 극복하고 보다 선도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소년사법정책 연구 중에서 2007년의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을 위한 중장기 연구는 매력적인 중장기과제의 장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중장기과제의 장점은 단발성의 연구가 취할 수 없는 깊이의 연구 설계와 과제 설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론과 방법론적 차원에서도 장기과제는 매력적이다. 2017년 ‘연구원’에서 진행했던 3년간의 중기연구 과제는 발전범죄학적 관점과 방법론을 동시에 가능케 했다는 점은 다시 한 번 장기과제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장기과제의 성공은 소년사법정책 연구에서 ‘연구원’의 선도적인 역할을 보다 더 강화해줄 것이라 확신한다.

2. 연구성과의 축적

30년간의 소년사법정책 연구는 붓물처럼 쏟아졌지만, 연구의 성과는 그만큼 축적되었다고 볼 수 없다. 연구의 성과가 다소 모호한 개념일 순 있지만, 지난 연구에서 이전에 진행되었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더 발전하는 연구로 진행된 연구를 찾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는 단발성 연구 설계의 문제라 할 수도 있지만, 연구 시스템의 문제일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의 전체 과정이 보다 더 유기적으로 조직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원’의 이전 연구가 현재 연구의 기반이 되고 비판의 지점이 되고 미래 연구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3. 해외사례 검토의 체계화/표준화 그리고 방법론적 다양화

지난 30년간 소년사법정책 연구의 많은 부분은 해외 사례의 홍수 속에 존재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소년사법정책 연구의 많은 부분이 해외 사례 검토와 그에 대한 비교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홍수처럼 소개되는 수많은

해외 사례들은 오히려 설득력이 결여된 무분별한 해외 사례의 남발로 이어지고 중국에는 연구의 의미를 퇴색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각국별 사례를 다양한 차원에서 검토하고 왜 특정 사례가 각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특성을 나타내는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준다면, 해외 사례 검토의 효과는 보다 더 커질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더 한국적인 제도 연구와 프로그램 연구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문헌 연구를 통한 해외 사례의 적용에서 보다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한국적 상황에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고민의 지점을 제공하는 연구를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은 소년사법 연구에서 방법론적 다양성을 보다 책임 있게 실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다양한 방법론적 시도는 매우 큰 성과였다. 모든 연구주제를 관통하는 방법론적 만능키는 존재할 수 없듯이, 모든 과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연구 설계 또한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소년보호 연구 분야에서 연구 주제에 적합한 다양한 방법론적 시도는 연구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권수진·유진(2016).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효과적인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승구(1992). 외국의 소년범죄처리제도와 실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양곤(2004). 주요 국가의 소년보호관찰제도 연구 -미국, 영국, 일본의 소년보호 관찰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양곤 외(2005).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분류 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영환(1990). 소년원 교육에 대한 참여 관찰 연구 - 직원의 직무와 원생의 생활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2004). 각국의 회복적 소년사법 정책동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이호중(2006). 학교폭력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소년사법 실험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 외(2007).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I): 제I부 청소년비행 및 소년사법정책 현황 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 외(2007).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I): 제II부 새로운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사법의 실제와 전망 -회합 실험연구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 외(2007).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I): 제III부 대안의 모색(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 외(2008).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II): 회복적 소년사법 실천모델의 효과성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이동원(1993). 비행소년 감별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이순래(1993). 소년수탁시설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아동복지시설과 소년보호시설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2000). 소년보호처분유형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2001). 성매매 청소년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2004). 소년원 출원생의 사후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영 외(2016). 소년원교육에서 보호소년의 변화요인 탐색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영 외(2018). 민영소년원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노성호(2000). 외국의 새로운 소년법 처우제도-가족회합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성훈 외(2017).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 (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성훈 외(2018).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 (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오영근·최병각(1994).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동진(2002). 소년법상 자원보호자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병기·김성연(1994). 소년원생 생활실태 및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성철(2002). 소년원 가퇴원자 보호관찰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승현(2014). 8호처분 교육과정의 성과분석을 통한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승현·강경래(2010). 소년원의 처우방안에 대한 연구 -8호 처분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승현 외(2018). 소년법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내실화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승현·노성호(2013). 청소년 따돌림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승현·박선영(2017). 소년법 대상 중간처우제도의 활성화 방안 : 6호 처분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승현·박성훈(2015).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강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승현·박성훈(2017).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 동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윤호(1990). 소년보호처분의 효과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훈규·김성연(1994). 소년원 교정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재준(2002). 각국의 소년원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영신(2002). 소년원 교육과정의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 외(1992). 소년보호관찰의 평가와 효율성분석 - 서울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홍영오 외(2009). 소년범의 검사 결정전조사제도를 위한 위험성평가도구 개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홍영오·황태정(2011). 소년조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황지태 외(2016). 소년 국선보조인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 3 장

범죄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연구

최 지 선

범죄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연구

전 세계적으로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는 범죄자와 범죄가해에 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늦게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으로 함)에서도 1989년 설립 이후 30년간 피해조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범죄 피해 관련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연구원’이 수행해 온 범죄피해와 관련된 연구를 검토하여 피해자 연구에 대한 흐름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범죄피해조사

범죄피해조사는 암수범죄를 파악할 수 없는 공식범죄통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세계적으로 1960-70년대부터 수행되어오고 있다(Lynch & Addington, 2006). 피해조사는 14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일반범죄 피해실태를 조사하는 만큼 피해자의 구체적인 실태와 특수한 상황별 피해 연구, 아동·청소년 피해자 대상 조사를 함께 진행해 왔다.

1. 범죄피해조사 개념 도입

‘연구원’에서는 범죄피해조사의 개념을 소개하고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가장 먼저 발간했다(김준호 외, 1990). 이 보고서는 범죄피해조사의 목적과 활용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초기의 범죄피해조사와 미국·영국 및 세계범죄피해조사에 대

해 소개함으로써 조사의 유용성과 국내 적용가능성을 시사했다.

무엇보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범죄피해조사의 연혁을 전국수준, 지역수준, 세계수준으로 구분하면서, 지리적 범위의 수준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국내 적용에 있어 단계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범죄피해조사를 통한 다각적인 유용성을 제시하여 차후 조사 설계에 있어 방향성도 제시했다.

2. 범죄피해 및 실태조사

가. 전국범죄피해조사

전국범죄피해조사는 ‘연구원’ 개원 이래 총 12회의 조사를 진행해오면서 더욱 견고하고 신뢰도 높은 범죄피해조사로 거듭나고 있다. 12회의 범죄피해조사는 크게 세 분기로 나누어 그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탐색기에는 서울의 범죄피해조사, 세계 범죄피해 조사의 일부로 진행된 국내 범죄피해 조사 등, 초기 범죄피해조사를 포함한다. 이후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범죄피해조사가 질적으로 발전하는 시기인 발전기와, 범죄피해조사가 국가통계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면서 안정적으로 전국 범죄피해조사가 수행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를 안정기로 분류했다.

1) 탐색기(1990년대)

국내 범죄피해조사 중 가장 처음으로 수행된 조사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심영희 외, 1991). 이는 공식범죄통계를 활용한 범죄현상의 연구에 대한 한계극복을 위한 노력으로, 1990년 1년 동안 서울시민들이 경험한 범죄피해 수준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서울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설계 하여 응답단위가 가구이면서 개인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각각의 범죄 분야별 피해율과 신고율을 동시에 분석하였다. 또한, 범죄피해가구와 범죄피해자의 특성을 범죄학 이론을 적용한 요인들(사회경제적 요인, 범죄피해 예방/회피 요인, 일상생활 요인)로 분석함으로써 이론 적용의 기반 또한 다졌다.

더불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조사해 인구사회학적 특성 별로 개인 범죄 두려움을

분석했으며, 가구의 범죄예방조치와 범죄 피해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초기 범죄피해조사의 구조적 틀을 마련했다.

이후 1993년, '연구원'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했던 범죄피해조사의 조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 전국범죄피해조사를 실시했다(최인섭·박순진, 1993). 또한, 전화로 진행한 이전 설문과는 다르게 질문지를 활용하여 교육받은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 면접 조사를 진행하였다.

전국범죄피해조사로 확대된 모집단에, 1991년 연구에 활용되었던 구조화된 설문과 대부분 일치하는 조사들을 활용하였다. 범죄피해의 종류는 8가지에서 9가지로, 이전 조사에서 개인범죄피해의 성희롱피해 항목을 강간과 성희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는데, 이는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심각성이 강조되면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1993년 연구의 의의는 지역적인 이전 연구에 비해 전국적으로 그 범위를 넓혀 조사 연구를 진행하였고, 전화조사 대신 면접조사를 활용해 설문의 정확도를 높였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모집단이 서울시에서 전국단위로 범위가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표본수는 2,029로 이전 서울 대상 피해조사의 표본수 2,000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후 1996년, 첫 전국범죄피해조사인 1993년 이후 3년 만에 두 번째 전국범죄피해조사가 진행되었다(최인섭·기광도, 1997). 이전 조사에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이용한 점,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점, 2,000명의 표본을 선정한 점 등이 이전 조사와 일치하는 형태를 보인다. 범죄피해 유형은 다시 8개 유형으로 변형되었는데, 강간과 성희롱피해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두 번째 조사인 만큼, 첫 조사와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해당 보고서에서는 주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때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조사 사례수를 늘려 탐색적 조사를 벗어나 범죄피해조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공식통계와의 비교 또한 가능하게 하는 등의 변화의 필요가 절실함을 강조한 것이 조사의 가장 큰 시사점이라고 하겠다.

세 번째 전국범죄피해조사는 2년 후인 1998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박순진·최영신, 1999). 초기 두 번의 전국범죄피해조사가 3년 간격으로 이루어진데 반해 2년 만에

이루어진 범죄피해조사는 사례 규모를 포함해 기존 두 번의 조사와 구조와 조사·분석 방법 등이 일치한다. 이전 보고서에서 생략된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와 범죄로부터의 안전감에 대한 평가 분석을 추가한 점이 세 번째 보고서의 특이점이다.

또한, 조사가 이루어진 때가 우리나라가 IMF라는 국가적 위기를 겪은 시기였다는 특성을 가진다. 국가적 위기를 겪으면서 범죄피해가 증가했을 것이라는 가설은 조사를 통해 오히려 감소했다는 결론으로 반박되었다.

서울의 범죄피해조사를 포함하는 총 네 번의 탐색적 범죄피해조사는 초기 범죄피해 조사의 큰 구조를 마련했는데 그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탐색적 조사가 대부분이었던 만큼 조사 사례수가 모집단인 서울시민이나 전 국민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성평등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조사에서 나타났다. 성범죄피해는 1차 전국조사에서는 성적희롱피해로, 2차 전국조사에서는 강간과 성희롱으로 나뉘었다가 3차에서는 성폭력피해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초기에는 성범죄피해에 대한 인식이 가벼운 희롱의 수준으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성범죄가 단순 이분화되어 강간과 성희롱으로 구분되었지만, 성범죄피해의 종류는 이보다 다양하다는 인식을 반영하여 마침내 성폭력범죄가 포괄적으로 다양한 피해를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기의 범죄피해조사에서 성폭력피해는 여성과 남성 모두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항에 대해 남성은 답할 수 없었다. 성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이 범죄피해조사에도 나타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초기 범죄피해조사는 그 탐색기를 성공적으로 거쳐 전국범죄피해조사가 발전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등 피해자연구 분야에 큰 의의를 가진다.

2) 발전기(2000년대)

1990년대의 피해조사가 탐색적 의의를 가진다면, 2000년대의 조사는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초기 피해조사가 3년, 2년 간격으로 이루어진 것을 살펴보았을 때 2년을 주기로 조사를 진행한다면 2000년이 네 번째 전국범죄피해조사가 수행될 시기였다. 그러나 2000년 전국범죄피해조사는 국제연합(United States, UN)에서 진행한 세계범죄피해조사의 일부로 대체되었다(장준오, 2000).

해당 조사는 세계범죄피해조사의 구조에 맞추어 이루어졌으며, 조사 대상 사례 수는 2,043명, 총 13종류의 범죄¹⁾를 조사하였다. 이는 8가지 범죄피해유형을 활용했던 기존 조사와는 다른 유형으로, 세계범죄피해조사를 위해 UN으로부터 주어진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크게 인구사회학적 특성, 범죄피해, 경찰신고 실태, 범죄피해의 심각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질문의 유형은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항목에서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해당 조사에서는 국내 범죄피해조사가 다루지 않았던 사기나 부패범죄피해를 다루면서 우리나라의 범죄피해 현황을 더욱 다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세계범죄피해조사의 일부로 조사된 만큼 국제 상황에서의 비교 분석 등이 포함되었다면 타 국가들과의 비교로 국내 범죄피해현상을 더욱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 피해조사와는 다른 기준과 구조를 활용함으로써 이전 피해조사들과의 비교가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이를 대체하는 국내 자체의 피해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해당 년도의 조사는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연속성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이후 구조적 일관성을 가지는 1993년, 1996년, 1998년의 범죄피해조사의 추세를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었다(최인섭 외, 2002). 이 연구는 초기 탐색적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범죄피해의 추세를 알아보고 조사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단일 년도의 횡단 분석뿐만 아니라 종단적인 면을 살피는 추세 분석은 피해조사에 있어 새로운 분석과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는 주요 연구이다(Rennison, 1999). 해당 보고서에서는 범죄피해의 추세는 공식통계의 범죄발생 추세와 상반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는 등, 단일 년도 조사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또한, 피해조사자료를 통해 공식통계자료를 보완하고 사회의 범죄현상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함을 지적하며 조사의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제안하였다.

발전기인 2000년대에 이전 전국범죄피해조사와 구조 등에서 일관성을 나타내는 조사를 실시한 것은 총 3회(2002년, 2005년, 2008년)이다. 1998년 조사 이후 2002년

1) 차량절도, 차량 부품/물품 절도, 차량 손상, 오토바이 절도, 자전거 절도,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절도 미수, 강도, 대인절도, 성폭력범죄, 폭행·상해·협박범죄, 소비자 사기, 부패 등

조사는 4년 후에 이루어졌다(최인섭 외, 2003). 이전 3회의 조사와 동일한 구조와 방법을 사용했으며, 사례수도 2,048로 유지되었다.

동일한 맥락의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2002년 조사에서의 괄목할만한 사항은 지역별 범죄피해실태 분석이 한 부분으로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이전 피해조사에서는 경미하게 다루었던 요소로 새로이 집중적인 분석이 수행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을 서울시, 광역도시, 중소도시로 구분하여 각 지역별 피해율을 비교하는 등 분석을 나타내 피해조사에 있어 지리적 분석이 가능함을 시사했다.

그러나 여전히 낮은 수준의 조사 사례수는 전 국민의 대표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며, 전체적으로 동일 구조의 조사들 사이 간격이 균등하지 않게 수행되어(3년-2년-4년) 추세 분석에 있어 균일성을 가지기 어렵다.

또한, 1998년 조사에서 IMF라는 국가위기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율이 낮아졌음을 시사한 것과는 반대로 2002년 연구에서는 '1998년에는 범죄피해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한 반면 2002년에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사회통합에 기여한 행사들로 인해 범죄피해율이 낮아졌다'고 결론을 도출해 이전 조사들에 대한 재해석의 입장인지 명확하지 않다.

2005년 조사는 3년 간격으로 범죄피해조사를 정기화하여 범죄피해현상에 대한 하나의 지표로 자리 잡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김지선 외, 2005). 그러나 기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동일한 도구와 방법으로 진행되어 사례수가 충분하게 확보된 표준화되고 정례화 된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전국범죄피해조사의 가장 급진적인 발전은 2008년 수행된 6차 조사에서 이루어졌다(김은경 외, 2009). 조사는 이전 5회의 조사를 거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고, 통계청의 승인 조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국가통계로서 신뢰도를 높였다.

보고서의 구성 또한 1편 「전국범죄피해조사 개편방안」과 2편 「2008년 범죄피해조사결과」로 나누어 전면적인 개편에 대한 과정 또한 상세히 기술하였다. 이는 표준화된 조사가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갖추는 과정과 범죄피해라는 주제와 범죄피해 항목,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요소를 재검토하는 과정을 동시에 서술하여 피해조사의 질적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또한, 기존 조사에서는 회당 사례수가 2,000여 건 이었고 가구가 동시에 개인이 되는 수집을 진행한 반면, 가구와 가구원에 대한 조사지를 따로 구성해 목표 표본 가구 수 4,500가구와 가구원 9,450명으로 조사를 수행하여 사례수의 규모도 증가했다. 최종적으로 4,710가구, 10,671명이 조사되었다. 더불어 이전까지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에 반해 해당 조사부터 모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표본에 대해 사후층화가중치를 부여했다.

조사수행도 이전 조사에서 각 지역별 대학이나 공무원, ‘연구원’ 인력을 활용했던 것에 반해 국가승인통계 지위를 획득하면서 통계청 조사대행과를 통해 조사 실사가 이루어졌다. 이어 조사 원자료(raw data)를 국가통계로 처리하고 관리하여 공식 데이터로서의 활용성 또한 높였다.

자료는 보다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개인특성과 가구특성, 범죄피해특성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한 만큼 실질적으로 국내 범죄피해 현황을 확연히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서 자리매김을 하였다.

추가로 ‘특별주제’를 정해 범죄피해조사 시에 이슈가 되는 범죄피해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2008년 특별주제는 피싱 및 신용도용 피해로, 이는 전통적인 범죄피해의 유형이 아닌 현대화되면서 나타나는 범죄에 대한 현상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조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조사는 표준화된 조사인 범죄피해조사가 가지는 한계점에 피해유형의 다양성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이며, 다양한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와 시사점을 제시하는 시도이다.

이렇듯 2000년대 발전기의 범죄피해조사는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더욱 견고하고 표준화된 조사로 거듭났다. 특히, 불규칙했던 조사주기를 2년으로 고정하였고, 이전 범죄피해조사가 가졌던 한계점인 성범죄에 대한 인식 또한 발전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2008년 종합 개편작업을 통해 범죄피해조사가 국가통계로서 승격되어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조사로서의 자격 요건을 갖추는 등 우리나라 범죄피해현상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지표로서의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어낸 것은 ‘연구원’의 역량이 나타난 사례라 할 수 있겠다.

3) 안정기(2010년대)

2008년 범죄피해조사가 국가공식통계로 승격 된 이후 2010년대에는 2년 간격으로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4회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다(김지선·홍영오, 2011; 김은경 외, 2013; 최수형 외, 2014; 최수형·조영오 2017). 탐색기와 발전기를 거치면서 범죄피해조사는 견고해진 구조로 표준화된 조사가 되어 보고서의 구조 또한 일관성 있게 수행되었다.

안정기의 범죄피해조사는 각각 이전 조사에서의 한계점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조사 방법에서의 개선과 보완사항을 살펴 연구계획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어 주요 지표범죄²⁾의 피해율과 지역별 범죄피해율, 범죄피해의 특성과 피해 현황, 신고율과 사건처리,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과 범죄피해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보는 맥락을 갖게 유지하면서 일관성 있는 표준화된 범죄피해조사로 안정적인 현상 분석을 보여준다.

개편 이후 수행한 피해조사의 경우 모두 표본수가 10,000이상³⁾으로, 확률비례추출 방법에 의해 표본 조사구를 추출하고, 계통표집을 통해 각 조사구별 10가구를 추출하여 가중값을 계산하여 적용, 대표성을 갖추도록 하였다. 또한, 동일한 조사표와 조사방법을 유지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결과의 비교가 용이하며, 2년 간격으로 조사 간격 또한 일정해 추세를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탁월하다.

전국범죄피해조사는 안정적으로 표준화된 조사를 이어오면서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왔다. 2010년 조사 이후 2012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부터 ‘범죄피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환시키기 위해 조사 명칭을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로 변경하였고, 2016년에는 특별주제로 난폭/보복 운전피해를 포함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4)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전국피해조사의 역사

전국범죄피해조사는 1990년 범죄피해를 조사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연구원’과 역사를 함께해오고 있다. ‘연구원’에서 발간한 피해조사 보고서와 관련 통계자료 등은 다양한 연구에 활용되어 범죄피해 연구에 일조해오고 있다.

하나의 지표가 사회적으로 신뢰 있는 지표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2) 절도, 강도, 폭행·상해, 성폭력, 사기, 협박·괴롭힘, 손괴 등.

3) 2008년 10,671, 2010년 16,577, 2012년 13,317, 2014년 14,976, 2016년 13,257.

이겨낼 수 있는 수행주체의 뛰어난 역량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원’은 범죄피해조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우수한 연구력을 활용해 전국범죄피해조사를 현재 수준의 안정성 있는 지표로 만들었다는데 역사적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범죄피해조사가 탐색기, 발전기, 안정기를 거쳐 온 만큼, 이제는 ‘안정 속의 성장’을 목표로 할 때이다. 표준화된 조사로 주기적인 일반적 피해 현황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주요범죄피해 항목이 포함하지 못하는 특별주제와 같은 다양한 범죄피해항목의 조사를 통해 다변화되는 사회에 범죄피해 현황을 살펴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범죄피해율 수준이 낮은 피해범죄(예: 폭력범죄)는 조사에서 그 사례 수가 적어 피해현상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범죄의 경우 더욱 밀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여 조사를 보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가 계속되기를 바란다.

나. 피해실태조사

전국피해조사는 전국적 단위의 조사로 거시적인 규모로 진행되며, 조사 결과 또한 일반적인 수준의 동일한 질문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연구원’은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범죄피해와 범죄피해자의 실태를 심층적으로 조사하는 연구 또한 진행해 왔다.

1) 범죄피해 두려움 조사연구

처음으로 범죄피해조사와 별개로 범죄피해 실태와 관련해 상세한 연구를 진행한 것은 서울시민의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연구이다(최인섭·김지선, 1996). 사회에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만연할 경우 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개인적,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될 수 있음 주지하며 범죄 두려움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밝혔다.

이전 연도의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살펴보고 있지만, 개략적인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이에 반해 해당 보고서는 범죄 두려움을 중심으로 실태와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범죄에 대한 반응을 살펴봄으로써 효율적인 범죄두려움 감소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범죄두려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이후 전국범죄피해조사에도 포함되어 함께 분석되고 있다. 범죄 두려움에 대한 막연하고 추상적인 대책이 아닌 과학적인 근거를 밝힌 해당 연구를 활용해 범죄두려움 수준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제언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범죄피해실태와 피해자지원 욕구 조사연구

특정범죄 피해자가 아닌 일반적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연구가 미흡함을 파악하고, 2006년 ‘연구원’은 일반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의 내용과 다양한 경험, 그들의 감정과 의식,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인식과 필요욕구를 파악하는 실태조사연구를 진행하였다(최인섭 외, 2006). 해당 연구에서는 이전까지 조사·연구되지 못했던 일반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피해에 대한 적극적이고 알맞은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또한, 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 보호관찰소)의 피해자 본인에게 취해진 조치나 가해자에 대한 조치 그 어느 것 에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개선이 시급함을 밝혔다.

그러나 해당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범죄유형과 같은 독립변수로 활용하여 실태와 욕구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범죄유형을 동시에 다차원적으로 활용하여 실태와 욕구를 분석 할 수 있다면 좀 더 정교한 분석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전면 개정되어 201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제언을 위한 피해실태와 지원욕구에 대한 조사가 재 실시 되었다(황지태·노성호, 2010). 해당 조사에서는 이전 연구에서의 표본수의 한계 극복을 위해 조사 대상기관을 다변화하여 1,158사례를 수집하였다. 이전 연구와 유사하게, 조사된 자료의 통계분석을 실시하고 시사점을 제시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피해실태 뿐만 아니라 피해 후 치료 실태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며, 각 기관과 피해지원 서비스에 대한 경험 여부와 만족도 등을 조사하면서 구체적인 대안 또한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이전 연구와는 차별화되게 인구사회학적 특성보다는 범죄의 유형에 따른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여 일반범죄유형 전체와 범죄유형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고, 범죄피해자센터가 생겨난 이후 기관별 피해지원 실태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문에 다양한 각도의 객관적인 분석을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욕구에 대한 시사점 보다 범죄피해자지원기관들의 특성 분석과 발전방향을 더욱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등 연구 목적과 상이한 방향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와 피해실태 연구를 통해 타 연구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실질적인 범죄 피해자의 실태와 욕구를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국내 범죄피해 현상 파악에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다가선 것으로, 범죄피해연구와 정책에 큰 이바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

3) 범죄피해자 생활실태 및 지원현황 조사연구

2014년에 실시된 범죄피해자 실태 관련 조사는 이전 조사와 사례 표집을 달리한다(최수형 외, 2014). 이전 조사에서 범죄피해지원기관을 활용했기 때문에 피해자 중에서도 범죄피해지원기관만을 이용한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던 반면, 해당 보고서는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범죄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례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조사를 실시해 조사협조를 받은 후 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 뿐만 아니라 기관종사자를 대상으로도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심층면접도 실시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했다. 무엇보다 이전 조사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범죄피해자지원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피해자에 대한 파악도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해당 연구는 다양한 사례 수집과 연구방법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우리나라 범죄피해와 피해 실태, 피해자의 지원 욕구와 기관의 현황과 한계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선도적인 정책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범죄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그에 따라 범죄 피해의 특성과 필요한 지원항목 또한 다를 것이다. 범죄피해에 있어서도 이러한 급변하는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을 위해 이러한 연구가 앞으로도 다양한 각도로 진행되길 기대한다.

다. 피해조사 방법론

‘연구원’에서는 1994년부터 20년 동안 진행되어온 전국 대상 범죄피해조사의 연구 조사방법에 대한 고찰과 대안제시가 이루어졌다(최수형·탁종연, 2014). 해당 보고서는 범죄피해조사가 2009년 대규모 표본조사로 탈바꿈하면서 표준화된 지표로 개편되

었지만, 개편 전후 범죄피해조사에 대한 평가나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또한, 기술의 발전과 응답 대상자의 편의성을 위하여 온라인 조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점을 지적하며 실제로 다양한 방식의 설문방식⁴⁾을 실시하여 조사표와 온라인조사의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범죄피해조사가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춘 만큼, 앞으로는 더욱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해당 연구는 범죄피해조사가 갖는 개편 전·후의 강점과 한계를 제시하고, 향후 온라인 조사방식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등 범죄피해조사 발전에 있어 큰 의의를 가진다.

라. 소결

범죄피해조사는 ‘연구원’과 역사를 함께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연구원’의 개원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하며 조사·연구되어왔다. 탐색적인 소규모 조사에서 시작된 범죄피해조사는 30여 년의 성장을 거치면서 국가지표로서의 자격을 갖춘 범죄피해조사로 자리매김했다. 조사의 소개 및 도입, 탐색기와 발전기를 거쳐 안정기에 이르기까지 채 30년이 되지 않는 시간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낸 것은 ‘연구원’의 미래를 내다보는 선도적인 방향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갖춘 연구진들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일 것이다.

이후 범죄피해조사는 지표로서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성장 및 확장해 나아갈 것이라 예상된다. 최근 10여 년의 조사에서 구조를 일관적으로 유지하면서 조사표와 연구방법 등의 발전을 꾀해온 만큼, 미래의 범죄피해조사가 범죄피해실태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는 동시에 효율성 또한 높은 조사로 발전될 것이라 여겨진다.

4) A형: 개편 전 조사표 + 가구방문 오프라인 면접조사, B형: 개편 후 조사표 + 가구방문 오프라인 면접조사, C형: 개편 후 조사표 + 가구방문 온라인 조사.

3. 공간·상황별 피해조사

일반적인 범죄피해조사는 만 14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를 모집단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범죄피해실태를 조사하기 때문에 특정한 공간이나 상황에 따른 일반적이지 않은 환경에서의 범죄피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데 한계⁵⁾를 가진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구원’에서는 다양한 공간과 상황에서 어떠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로 사이버 공간, 대학 캠퍼스, 상업시설에서의 피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조사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생활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높였지만, 동시에 이전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는 형태의 범죄유형이 생겨났다. 이러한 변화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피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요구 또한 불러일으켰다. 이에 ‘연구원’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피해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조사를 진행하였다(이민식, 2000).

연구의 조사 대상자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네티즌인 만큼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사이버범죄에 의한 피해경험과 사이버범죄에 대한 인식, 지각, 감정 및 행동적 반응 등 피해자학적인 이슈를 중점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피해경험의 유형은 11가지로 다양한 사이버 범죄와 일탈행위를 포함한다.⁶⁾ 또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반응과 관련된 변수들과 인구사회학적 특성도 함께 수집·분석되었다.

연구는 사이버범죄의 특성과 실태에 대해 다차원적인 분석으로 그 현상을 명확히 파악한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일탈행위도 포함하여 조사한 것은 인터넷이라는 특성과 사이버범죄의 특이점을 파악하였다.

5)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범죄피해조사에서는 조사 내부에 특별주제로 2008년 피싱과 신용도용 피해를 살펴보기도 했고, 2016년에는 난폭운전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함께 실시해 분석하기도 하는 등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6) 1.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 인터넷 사기 피해, 2. 사이버 성희롱·성폭행(음란물 수신, 매매춘 제의 포함), 3. 사이버스토킹(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괴롭힘), 4.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 5. 사생활유포(몰래카메라 등), 6. 인신공격·언어폭력·협박, 7. 개인신용정보의 도용에 의한 피해(신용카드, 사이버증권, 사이버뱅킹 등), 8. 사이버절도(게임아이템 절도 등), 9. 전자문서(웹 콘텐츠 포함)의 도용·변조·파괴, 10.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피해, 11. 스팸메일(원치 않는 또는 정체불명의 전자우편).

사이버범죄는 2000년 이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인해 인터넷은 더 이상 컴퓨터를 활용하는 네티즌만의 활동이 아닌 현대인의 일상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이버범죄에 대한 기본 연구 틀을 마련한 해당 연구를 발전시켜 최근의 사이버범죄 피해 현황을 살펴보는 시도가 필요하다.

나. 캠퍼스에서의 피해조사

국내에서는 대학 캠퍼스에서의 범죄와 그 피해에 대한 조사가 별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교가 대학경찰(Campus Police)을 운영하고 있고(Bordner & Petersen, 1983; Sloan, 1992), 자체적으로 범죄를 접수하고 해결하기도 하는 등 그 활동이 활발하지만 국내에서는 캠퍼스 내에 별도의 청원경찰을 두지 않으며, 대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도 일반 범죄와 같이 경찰에 의해 처리된다.

그에 따라 대학 내에서의 범죄피해가 일반 범죄피해와 그 특성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도 캠퍼스에서의 범죄와 피해를 별도로 집계하거나 조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연구원’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파악하고 대학교 캠퍼스 내의 피해조사를 조사한 연구를 진행하였다(박철현, 2001). 연구는 국내 캠퍼스 범죄의 실태를 범죄피해조사를 통해서 파악하고 여러 요인들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동시에 이러한 결과를 외국 사례와 비교하여 향후 캠퍼스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에서는 국내외 캠퍼스범죄피해를 비교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과의 비교를 위해 조사표까지 미국의 범죄피해조사를 참고했다. 그러나 국내의 대학 캠퍼스의 환경과 조건, 대학문화의 차이 등 다수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만을 기준으로 비교를 시도한 것으로 보여 이를 통한 제언이 갖는 시사점에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통제가 어려운 외국대학과의 범죄피해 비교가 아닌 국내 대학생들의 캠퍼스 내·외 범죄피해 분석에 집중하였으면 더욱 국내 상황에 알맞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상업시설에서의 피해조사

사업체에서의 범죄피해는 상업시설이라는 특수성과 연계된 일반범죄와는 다른 유형의 범죄피해를 포함한다. 또한, 공식범죄통계에서도 상업시설에서의 범죄를 구분하여 집계하거나 조사하지 않아 그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특수성과 한계를 이해하고 사업체에서의 범죄피해를 살펴본 ‘연구원’의 상업범죄 피해조사는 2016년 전국범죄피해조사와 함께 조사가 진행되었고, 범죄피해조사의 일부로 구성되었다(김지선 외, 2016).

연구는 우선 체계적이고 국내 상황에 알맞은 조사연구를 위하여 먼저 해외 상업범죄피해조사⁷⁾를 대상으로 연구방법을 분석하고 검토하였다. 이후 조사표 초안 구성을 위해 경찰 및 사업체의 업주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해 업종별로 경험한 피해유형과 피해경험별 취약성 요인, 범죄의 발생과 조치, 경찰신고 여부 및 대응 만족도 등을 파악하였고, 인지면접조사를 통해 조사표의 타당성을 검증한 후 사업체를 대상으로 범죄피해를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는 그동안 부재하다시피 했던 범죄피해 분야에서의 사업체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다수의 사업체가 범죄피해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아냈다. 일반범죄피해에서는 구분하여 고려하지 않았던 직원에 의한 절도나 횡령, 매장 내 절도 등에 대한 실태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피해를 당한 사업체는 평균 한 해 동안 5.5건의 피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나 재피해 예방이 시급함을 시사했다. 일반범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피해 신고율(18.4%)을 보여 신고율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함도 제안하는 등 면밀한 실태파악을 하였다.

이렇듯 조사와 관련된 문헌적 연구부터 조사표의 타당성을 갖추고 조사를 수행하고 분석하기까지, 타 연구에서 참고할 만한 정도로 단계별로 체계를 갖추어 진행되었다. 이는 향후 국내의 특수 상황이나 환경에서의 범죄피해를 조사할 시, 모델이 되는 방법론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7) 유엔(UN), 유럽연합(EU), 영국, 웨일즈, 스위스, 미국, 호주 등.

4. 청소년 피해조사

아동과 청소년 범죄피해자는 일반범죄피해자와는 다르게 대부분 학교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특성이 있고, 스스로 범죄피해를 인지하고 신고하기보다는 보호자나 교사 등이 발견하여 범죄피해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 등 일반적인 피해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 분리 조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가. 초기 청소년 범죄피해조사 (1990년대)

‘연구원’에서는 1990년부터 총 5회에 걸친 청소년 범죄피해조사를 진행했다. 초기 청소년 피해조사는 ‘연구원’ 개원과 함께 청소년 범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피해조사가 서울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김준호 외, 1990).

범죄피해의 종류는 폭력범죄(금품갈취, 폭행, 협박), 재산범죄(절도, 소매치기, 사기), 여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피해(성적 희롱, 가벼운 추행, 심한 추행, 강간)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피해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더불어 피해에 대한 불안측정을 위해 상황을 제시하여 불안감을 측정하였다.

이후 실시된 청소년범죄피해조사 연구는 1990년에 실시된 조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9년 사이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노성호 외, 1999). 이전 조사와 마찬가지로 범죄피해의 상황과 대응, 범죄피해자의 특성,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 등을 분석하여 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범죄피해 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이전 조사와의 비교 또한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이전보다 청소년 범죄피해율이 줄어든 것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보고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중복피해가 늘어나 소수의 피해자가 여러 번의 피해를 받으면서 범죄피해가 확산에서 집중으로 변화하는 형태를 나타낸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등 청소년 범죄피해 예방에 큰 이바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기 범죄피해조사와 마찬가지로 성범죄 피해의 대상은 여성 학생으로 한정해 조사하였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성적 피해를 당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이유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적으로 성숙하기 때문(김준호 외, 1990)’이라는 등의 조사

분석과 관계성이 낮은 서술하기도 하고, ‘노출 및 유인성과 관계가 있으므로 스스로의 활동이 범죄피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예방책이라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노성호 외, 1999)’는 등 피해자에게 피해 책임을 지우는 등의 한계를 나타냈다.

또한, 두 피해조사 모두 전국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사된 피해 현상을 전국에 있는 청소년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대상 청소년 피해자조사가 진행된다.

나. 피해자조사 개편 이후 청소년 범죄피해조사 (2008년 이후)

전국범죄피해조사의 2008년 개편 이후, 청소년 범죄피해조사 또한 변화를 맞았다. 이전 연구들이 1990년과 1999년으로 거의 10년 간격으로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후 청소년범죄피해조사도 거의 10년여가 지난 2008년에야 이루어졌다(홍영오, 2008).

90년대의 조사에서는 서울소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전국 대상 청소년 피해를 나타낼 수 없었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2008년 조사에서는 제주도를 포함한 만 13세에서 18세 청소년 중 2,500명을 표본추출 하여 전국단위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2008년 조사에서는 대검찰청에서 발행한 「범죄분석」에서의 청소년범죄 실태를 검토하고 이와 비교하여 자가 설문조사인 이번 조사에서 공식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암수범죄피해를 내는지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고 있었던 비재학생들의 범죄피해 실태를 나타내는 시도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주목할 점은 이전 조사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가정폭력, 또래폭력, 간접피해의 피해율 또한 분석하여 공식통계에는 집계되지 않아 실태를 알 수 없던 범죄에 대한 피해 또한 알 수 있었고,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지역별 특성 또한 확인할 수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성범죄 피해항목에서는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만이 조사되었고, 비재학생을 포함하는 시도는 좋으나 표집된 수가 74명으로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져 향후 조사에서 비재학생의 범죄피해 특성을 살펴보는 심층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했다.

이후 청소년 범죄피해조사는 1990년, 1999년과 2009년 피해조사가 10여년 간격으로 이루어진데 반해 5년여 만에 수행되었다(홍영오·연성진, 2014). 2008년 조사와의 차별화된 점은 사회변화에 맞추어 사이버폭력피해⁸⁾를 포함하여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이전 연구보다 조사 사례수를 3배 이상 늘려 7,1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조사의 신뢰도를 높였다. 무엇보다 해당 연구에서는 청소년 문화의 급속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범죄피해조사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청소년 범죄피해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낮은 신고율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과 학교 내에서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범죄피해를 경험한 학생이 가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책도 필요함을 시사했다.

가장 최근에 수행된 청소년범죄피해조사는 2017년을 대상으로 조사된 「전국범죄피해조사(VIII) :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 2017」이다(전영실 외, 2018). 해당 조사에서는 이전 조사보고서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전국범죄피해조사가 수행되지 않는 홀수 해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전국 대규모 표본조사를 통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초등학생까지 포함하여 아동의 범죄피해도 살펴 보았다. 또한, 대규모 표본조사를 위해 이전 조사표에서 조사표를 수정하여 더욱 청소년의 특성에 알맞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고, 이전 조사에서 74명이었던 학교 밖 청소년의 사례 수도 440으로 확장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를 더욱 상세히 파악할 수 있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가장 최근의 범죄피해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에게 알맞은 조사표를 활용하고, 온라인 조사를 활용하는 등 향후 아동·청소년 범죄실태조사에서 활용될 본보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다. 청소년피해조사의 미래

일반 범죄피해조사가 2~3년의 간격으로 진행된 것에 비해 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는 대략 5년에서 10년 간격으로 이루어져오고 있다. 첫 조사가 이루어진 1990년에 비해 가장 최근 조사인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청소년 범죄피해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8)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신상정보유출, 사이버따돌림.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며, 이러한 변화에 ‘연구원’의 보고서들과 제언들이 제도와 정책에 근간이 되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향후 청소년 범죄피해 실태조사를 5년이나 10년보다는 전국범죄피해조사와 번갈아 2년마다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변화하는 청소년 범죄 실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5. 소결

공식통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암수범죄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인 범죄피해조사는 국내에 그 개념을 소개한 이후 탐색기, 발전기, 안정기를 거쳐 현재 국가승인통계로 범죄피해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피해조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알아내기 어려운 피해자실태를 피해자를 사례로 하여 별개로 조사하는 등 구체적으로 범죄피해자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지원이 필요한가를 면밀히 밝혔다. 이와 동시에 사이버공간, 대학 캠퍼스, 사업체 등 특수 공간에서의 피해조사와, 청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한 청소년 조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범죄피해실태를 나타낼 수 있는 범죄피해조사가 이루어졌다.

시대별로 연구경향과 범죄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의 차이, 성 인지 정도에 따른 조사·분석의 상이, 최신 범죄의 추가 등의 변화가 있어왔지만 이 모든 변화들에서는 범죄피해조사가 더욱 견고하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2절 피해대상별 연구

‘연구원’에서는 특정한 범죄 피해자 유형의 경우 대상별 연구가 더욱 밀도 있게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구를 진행해왔다.

1. 아동

가. 아동학대 연구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책을 연구한 조사는 1991년, 2000년, 2015년에 걸쳐 각각 진행되었다(전진영, 1991; 전영실, 2000; 강은영·김한균, 2015). 가장 먼저 1991년에 실시된 아동학대의 실태조사는 저학년(3학년)과 고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서울시 내 6개 구⁹⁾에서 각 1개의 초등학교를 선정해 총 97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가정환경과 가정의 인적환경, 아동학대 피해경험, 반사회적 행동과 공감발달에 관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진행되었다.

‘연구원’에서 처음 진행된 아동학대 실태조사 연구인만큼 피해유형에 대한 범위도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여러 유형의 아동학대를 조사할 수 있었으며, 가정의 불화가 아동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아동학대는 아동의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자 중 심각한 수준의 학대를 받고 있는 아동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연구조사인 특성상 자료를 수집하는 것과 실질적인 대응은 달리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담뱃불로 몸을 지지거나 칼로 위협하거나 찔리는 피해를 당한 아동의 경우에는 적절한 개입이 시급해 보인다. 조사 시 이러한 위급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되어있다면 향후 유사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설문조사에서는 부모님의 직업, 가족의 월수입과 같은 정보를 묻고 있는 것으로 보인데,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학생이 얼마나 정확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인지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9) 관악구, 서대문구, 도봉구, 중구, 서초구, 동대문구.

약 10년 후인 2000년에 수행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피해실태연구는 서울시 거주 초중고생 1,6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방임,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의 학대 유형과 관련 요인과 영향요인 등을 함께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에서는 미국의 프로그램들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전 연구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대책 마련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한 연구의 의의이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피학대 '아동'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초·중·고등학생을 모두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아동은 초등학생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중·고등학생은 청소년으로 포함된다. 또한, 해당 연구의 제목이 「피학대아동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이지만 보호방안을 다루는 부분은 정책적 제언으로 간략히 이루어져 보호방안보다는 실태파악에 대한 연구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전반적인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지 약 15년 만에 아동학대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강은영·김한균, 2015). 연구에서는 공식통계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되고 있는 아동학대 발생통계 현황을 분석하고 가해의 원인과 피해 아동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5년간(2010년~2015년) 동안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기록 검토를 실시하여 총 572개의 사건을 분석하였고,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아동학대 사망과 관련한 신문 기사를 검색, 총 75건의 아동학대 살인사건 기사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전 조사가 아동의 자가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파악에 중점을 두었다면, 2015년에 수행된 연구는 수사와 재판기록을 검토함으로써 실제 형사정책시스템 내부에서의 아동학대가 처리되고 있는 방식이나 절차, 한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기록 조사와는 별개로 아동학대 살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 약 12년간의 신문 및 뉴스에 보도된 아동학대 살인사건을 75건을 조사한 것은 전체 연구에 어떠한 시사점을 나타내는 것인지 그 목적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다. 수사 및 재판 기록의 조사 대상이었던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해당하는 아동학대 살인의 경우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누락된 2005년부터 2010년 이전까지의 아동학대 살인의 경우를 포함하기 위함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통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

지 못했다. 오히려 아동학대 살인이 뉴스에 노출되는 방식이나 특성을 분석했다면 그 나름의 시사점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사와 재판기록을 분석한 연구인만큼 아동학대에 있어 조기개입을 위한 법제 등 법제 개선방안에 있어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법에 적용될 수 있는 제언이 가능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나. 아동대상 성범죄 연구

2000년에는 이전 조사에서는 간과되고 있던 아동성학대의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를 진행하였다(강은영, 2000). 해당 연구는 아동성학대가 사회에서 묵인되고 은폐되어온 만큼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킴과 동시에 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쟁점들을 논의하고 해외 제도와 관련법령을 검토하는 등 체계적으로 연구를 구성하였다.

보고서는 아동대상 성폭력에 대한 조사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었던 범죄 피해에 대해 면밀히 알아보았고 대부분의 아동 성폭력 범죄 피해가 아는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보고서 말미에 제시된 다양한 법과 제도의 경우 모르는 사람이 가해자일 때 활용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아는 사이의 가해자일 경우에 강력하게 예방 혹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더욱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단어인 ‘아동성범죄피해’를 사용하지 않아 조사연구가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 개념의 확장으로의 성학대로 고려될 수 있어 개념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하다.

다. 저소득층 아동 범죄피해 연구

전체 아동에 대한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 또한 중요하지만 ‘연구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범죄피해에 취약한 계층으로 조사되어오는 저소득층 아동의 범죄피해 실태를 파악할 필요성을 파악하고, 탐색적인 조사를 수행하였다(전영실·노성훈, 2011).

해당 조사는 탐색적 조사인 만큼 저소득층 아동의 범죄피해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는데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특히 보고서는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아동 학대가 발생했을 시 일반가정의 아동에 비해 신고와 대응 등에 취약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등 의미 있는 정책적 제언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라. 아동실종 및 유괴범죄 연구

아동 실종 및 유괴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태가 조사되어오지 않았다. ‘연구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아동 실종과 유괴범죄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강은영·박지선, 2009).

해당 연구는 연구 방법에 있어 단순히 자료를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종사건 수사 전담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통신추적 수사기법이나 탐문 및 목격자 진술 등 실질적으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었던 부분이나 인력확충과 수사 절차 체계화, 주민협조와 사회적 인식 필요 등 향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사와 분석 또한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아동실종 및 유괴범죄에 대한 대책에 대한 현황과 미국과 캐나다의 아동 유괴 및 실종 관련 대책과 사건처리원칙 등을 소개하며, 우리나라 아동실종 및 유괴범죄의 예방과 발생시의 빠르고 안전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제언하였다.

해당 연구는 현황을 상세히 검토하고 문제점에 대해 실질적으로 해당 업무를 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을 조사함으로써 파악하였으며, 유괴의 유형을 범죄자·유괴목적·피해자 별로 나누어 다각적으로 현상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적용 가능한 해외 사례를 제안하여 유괴의 예방과 해결에 관련된 국내 제도와 정책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특수상황 피해

‘연구원’에서는 일반 범죄피해와 청소년·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뿐만 아니라 교실 내 교사의 폭력 피해와 내국인 남성의 국제결혼 피해 등 특수한 상황의 피해자에 대한 연구 또한 수행하였다.

가. 교실폭력 교사피해

학교 내 범죄피해 조사의 경우 대부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왔지만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사폭력문제가 대두되면서 ‘연구원’에서는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다(장준오 외, 2012).

먼저 해당 보고서는 국내에서 처음 이루어진 교실 내 교사 폭력피해에 대한 연구로 전국적 실태조사를 수행한데 가장 큰 의의가 있으며, 분석에 있어 사회통제이론, 사회해체이론과 억제이론을 적용하여 교사의 폭력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 후 예방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105개 중·고등학교 교원 1,054명에 대한 설문조사 및 폭력피해 경험 교사 심층면접을 통해 지난 2년간 학교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한 정책제언으로 보고서는 학생 및 교사의 ‘올바른 언어생활’ 교육, 수업진행과 학생지도를 위한 행동강령 마련, 교사의 피해 이후 즉각적 대처, 관련 책임성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제안했다.

해당 연구는 교내의 교사의 폭력피해는 심각한 문제이며 해결되어야 할 사항임이 확실한 시점에 조사·연구된 보고서로 시의적절한 시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교사의 피해에 대하여 조사연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가해자의 범행의 원인을 밝히는 이론에 해당하는 사회통제이론, 사회해체이론과 억제이론을 적용하여 교사의 범죄피해를 밝히고자 했던 것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가해한 이유나 원인에 대해 밝혀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해당 이론을 적용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진행하거나 사건으로 접수된 기록을 분석하여 가해 원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내국인남성 국제결혼 피해

국내 남성의 국제결혼의 수가 늘어나면서 국제결혼으로 인한 사기피해 또한 늘어나는 추세이다. ‘연구원’은 이에 대한 현황 파악과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대책마련을 하는데 의의를 가지고 조사를 진행하였다(김지영·안성훈, 2013). 조사를 위해 2012년에서 2013년 중반까지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접수된 국제결혼중개업체 서비스불만 사

레 833건을 분석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피해 종류는 9가지 유형¹⁰⁾으로 분류되며, 심층면접 대상자 18명 중 가장 심각한 피해는 자녀를 데리고 가출한 사례로 나타났다.

내국인남성이 결혼의 목적을 가지고 중개상과 외국인 여성에 비용을 지불하고 결혼하여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이미 결혼을 하나의 상업적 계약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바탕이 된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계약의 불이행(예: 중개업체의 의무 불이행, 결혼한 여성이 도망가는 것 등)에 따른 불이익에 공정성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결혼을 상업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은 ‘연구원’ 보다는 자료를 수집한 소비자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욱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는 서론에서 연구의 목적을 ‘자국민 보호와 국민의 안녕과 복지라는 국가의 기본책무와 직결되기 때문이며, 무차별한 결혼 이후 결혼 후 도망 등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이혼한 국제결혼 부부간에 태어난 자녀의 문제로 국가적 부담을 우려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고 밝힌다. 국내 남성이 본인이 계약한 바와 같이 국제결혼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자국민의 보호이고 국민의 안녕이라는 해석은 과장된 경향이 있는 듯하다. 또한, 이혼한 국제결혼 부부간에 태어난 자녀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자녀는 양육에 있어 부부 양측의 책임이 필요하고, 국제결혼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라도 부부 어느 측에서라도 자녀가 양육될 수 있다. 명확한 연구목적 제시를 위해 국제결혼부부의 자녀가 국내결혼 부부의 자녀와는 별개로 국가적 부담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연구는 연구의 목적과 범죄의 항목, 연구 방법 등이 ‘연구원’이 수행해오던 여러 범죄피해 실태연구들과 다수의 상이점을 보이는 연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10) 중개업체 서비스 불이행, 중개업체 문제로 인한 계약 해지시 환급 문제, 본인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 위약금 문제, 중개업체 비용처리문제, 신부의 입국지연 및 거부, 신부의 가출 및 위장결혼, 중개업체의 허위정보제공, 중개업체의 입국수속 처리지연, 업체폐업 및 연락두절.

3. 해외체류 내국인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내국인의 피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연구는 1998년 내국인의 재중동포에 대한 조사로, 이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동남아(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내국인의 피해조사로 이어졌다.

가. 재중동포에 대한 범죄피해 연구

1998년 당시 남북분단 상황에서의 주요 역할을 해줄 재중동포에 대한 기대와 함께 내국인의 재중동포에 대한 범죄, 특히 국내로의 입국과 관련된 사기나 불법입국 알선, 불법체류자 관련 범죄 등이 빈번함에 따라 현황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가 수행되었다(신의기, 1998).

연구는 각종 문헌과 통계자료를 2차분석하여 종합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에 따르면 재중동포의 경우 다른 지역과는 달리 19세기 중엽부터 이주하기 시작했지만 우리나라와 한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민족전통을 계승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에 거주하기 보다는 국내로 입국하여 경제적인 여유를 얻고자 하는 재중동포가 늘어나면서 국내 브로커들이 입국과 관련한 사기, 수수료 횡령을 행하거나 입국한 재중동포의 경우 산재보상사기 또한 겪게 되기도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재중동포 대상 범죄의 해결을 위해 정부의 직접적인 대응은 활발하지 않으며 각종 단체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종합적인 재중동포정책을 재정립해야함을 강조한다.

조사는 방대한 문헌을 활용한 조사로 구체적으로 국내로의 입국을 원하는 재중동포들이 국내 중재인 등으로 인해 어떠한 범죄피해를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재중동포의 적극적인 포용을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조사·분석되었기 때문에 해결책 또한 재중동포의 적극적인 포용을 위한 문제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나. 동남아시아 지역의 한국인 범죄피해 연구

세 번에 걸친 동남아시아 거주 한국인 범죄피해 연구는 2011년 필리핀과 태국,

2013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2014년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장준오 외, 2011; 장준오 외, 2013; 송주영 외, 2014). 세 연구의 연구 틀은 문헌연구,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조사로 대체로 유사하며 각국을 방문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먼저 실태조사로 각 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해당 국가와 국민에 대한 태도와 범죄피해 요인과 예방 대책, 피해지원 욕구 등에 대해 설문과 심층면접 조사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결과는 대체적으로 유사하였는데, 국내에 비해 범죄피해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았고,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범죄피해와 관련하여 법률자문서비스와 대사관의 용이한 신고접수 및 처리 서비스 등의 요구가 있었다.

피해조사에 있어 다양한 접근방법과 조사연구가 필요하고 이미 명백한 사실도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확인을 통해 명제를 검증하는 맥락으로 필요성을 염두에 둔다면 해당 연구들의 새로운 시도가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연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3종의 조사 모두에서 제언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내용이 유사하게 대사관의 정보 제공의 충실성 확보와 신고를 용이하도록 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하는 것 등인 만큼 이를 활용하여 동남아시아 거주 우리 국민의 범죄피해가 예방되고 감소하기를 바란다.

4. 소결

‘연구원’에서는 지표화된 범죄피해조사뿐만 아니라 피해대상별 소수집단에 대한 피해 실태 조사 또한 수행해 왔다.

먼저 아동에 대한 학대와 유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범죄 실태 구체적으로 연구되었고, 학교 내 교사폭력이나 내국인남성 국제결혼 피해 등 특수한 상황의 특수 피해자, 해외 체류 내국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피해자 연구의 다양한 부분을 포함하는 등 ‘연구원’의 다양한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돋보인다.

제3절 피해자보호 및 지원방안 연구

‘연구원’에서는 피해실태의 조사연구와 함께 피해자 보호와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피해자 지원 제도와 정책에서의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구와 피해자 지원과 구조제도에 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진행되었고, 아동과 청소년과 같은 특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성범죄와 같은 특수 범죄에 대한 지원,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에 대한 범죄피해 지원 연구도 수행되었다.

1. 피해자 지원 제도 및 정책

‘연구원’에서는 수사와 재판 등 형사절차상에서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의 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피해 이후의 의료적·경제적·정서적 지원 등 다양한 방면으로의 지원과 구조제도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단순히 피해의 실태만을 조사하는 것이 아닌 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

가.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과거 형사사법체계에서의 피해자는 진술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적인 경향으로, 증거 획득을 위한 대상으로만 취급되었다. 그러나 ‘연구원’이 개원되었던 시기 이전부터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하며, 피해자의 이익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이러한 형사사법체계 내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인식에 공감하며 ‘연구원’은 보호방안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다(이재상·이호중, 1991). 연구에서는 먼저 현행법의 일부는 피해자의 이익을 위한 제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근원적으로 피해자가 형사소송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친고죄의 적용범위를 재구성하여 피해자가 형사절차를 원하지 않을 경우 회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신문 절차를 대폭 개선하여 부담스러운 참고인 혹은 증인으로 신문 받는 절차에서 안전하고 인권에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피해자의 사생활이 공개되지 않도록 공개주의 원칙을 수정하여 이익이 침해될 경우 공개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제언한다. 또한 법률적으로 피해자의 적극적인 지위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의 수정 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1991년에 수행되었던 연구이지만, 현재 많은 부분 형사사법체계에 적용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공개주의 원칙의 공개주의 배제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제언한 사항은 이후에 적용되어 오면서 점진적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강화하고 2차 피해를 줄이는 등 연구의 적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2002년에는 수사경찰의 피해자대책의 현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장규원, 2002). 이전 연구가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보호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다면, 2002년의 연구는 수사단계에서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검토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피해자에 대한 수사단계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간접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과 상황을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규정 등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수사기관의 부주의한 태도로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의 방지를 위해 수사시점부터 피해자 변호인제도의 운영하는 것을 제언하였다.

이어 2008년에는 피해자의 권리 보장의 확대를 위해 의견진술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우리나라에서의 피해자의견진술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김지선, 2008). 피해자의견진술제도(Victim Impact Statement: VIS)는 피해자의 개입을 통해 양형, 유죄협상심리, 가석방심리, 보석심리 등의 형사절차단계에서 피해자 진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피해자 참여 권리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피해자의견진술제도의 찬성론과 반대론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효용성에 대해 검토하여 국내 적용의 적절성을 강조한다.

범죄피해자의 권리보장은 기본권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서 피해자의견진술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부정적인 우려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해당 연구는 제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부정적인 우려에 대한 논리적인 대응책 또한 적절히 제공하고 있다. 향후 제도적인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피해자의견진술제도가 도입되기를 바란다.

또한, 가장 최근 형사사법체계 내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행된 연구 주제는 가정폭력범죄에 있어서의 경찰 개입에 대한 것이다(전현욱 외, 2017). 가정폭력과 아동범죄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오랜 시간 계속되어오고 있고, 이러한 범죄피해자를 적절히 보호하기 위하여 영장 없는 주거 내부 진입, 가해자 즉시체포를 통한 격리 등 국가의 물리적 유력 행사에 대한 경찰법적 논의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연장으로 현행법상 경찰개입의 한계요인을 다각도로 검토하였고, 해외사례를 조사함과 동시에 설문조사와 그룹인터뷰를 통한 현행법상의 문제점들과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에 거주하게 되면서 지속적인 피해가 일어날 수 있어 이를 인지했을 시의 경찰의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가해자와의 격리는 가정폭력을 중단시키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며 이에 대한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진 정책적 제언을 한 연구보고서로, 향후 법제도 개정의 기초자료의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나. 피해자 지원 및 구조 제도와 정책

범죄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지원·구조 제도와 정책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다. 그러나 피해자를 지원함에 있어 과거 관심이 부족했던 수준에서의 법제도를 유지해서는 불가능한 지점이 많아 특히 2000년대 중반 관련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에 관한 ‘연구원’의 첫 연구는 1999년에 수행되어 기존 「범죄 피해자구조법」에 대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을 위한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으며(이건호, 1999), 이후 추가적으로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제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적 정비와 더불어 지원 기관과 서비스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송기오·강경래, 2005). 또한, 범죄피해자

의 보호조치가 체계 없이 산발적인 수준으로 여러 법¹¹⁾에서 다루고 있어 효율적인 형법체계 구축을 위한 정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황태정, 2006). 해당 보고서에서는 추가로 수사절차, 공소제기절차, 공판절차에 있어서의 관련제도를 살펴 모두에 적용 가능한 제도를 고찰하였다.

이후 피해자보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미국의 사례를 조사·검토하여 국내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분석연구가 수행되었다(박미숙, 2005). 이전까지의 연구가 피해자의 법적지위와 형사사법체계에서의 피해자의 인권 등에 대한 고려를 중점적으로 했다면, 해당 연구에서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각종 지원임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미국의 사례를 통해 범죄피해지원이 향후 국내 피해지원제도의 발전 방향을 시사했다.

이는 기존 형사사법체계 내에서의 범죄피해자 지위와 인권에 관련된 피해자 중심의 권리 추구에서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필요한 재정적이고 물리적인 지원에 대해 논하고 있어 한 단계 더 발전한 움직임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과 더불어 정부에서는 2003년 처음 설립된 이후 2004년 말부터 2005년 초까지의 단기간에 전국 검찰관할지역을 중심으로 한 54개의 범죄피해자지원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 이후지원센터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활성화 방안을 고려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김지선·이동원, 2006).

각 지역 센터의 운영에 있어 초기 단계인 만큼 자생력과 전문성, 회원과 자원봉사자 확보 및 센터 간·지역 내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 지원센터는 특정유형의 범죄피해자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범죄피해 유형에 대비되어있어야 하며 이는 광범위한 인력과 물리적 자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시급하게 기관이 설치·운영되기 시작한 만큼 적절한 시기에 초기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시기적절한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11)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 「특정범죄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다. 범죄피해자 기본계획

「범죄피해자보호법」의 2005년 시행 이후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법적근거에 따라 1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을 2006년 수립해 2007년~2011년 5년간 시행되었으며 2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은 2012년~2016년 5년간 시행되었다.

‘연구원’에서는 3차 기본계획(2017년~2021년)의 기본계획을 위해 1·2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의 성과를 분석하고 3차 기본계획에서 참고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김지선 외, 2015). 계획을 위한 분석 과정은 광범위한 피해 전체 상황과 제도 운영 현황, 이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한 성과 검토, 이를 토대로 한 계획까지 국내 범죄피해에 대한 법제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총망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책영역별 주요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제3차 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현재까지 ‘연구원’이 진행해온 다수의 연구결과를 활용하면서 ‘연구원’ 전체의 연구과제 활용에 탁월했음을 보인다.

2. 아동·청소년 피해 지원

가. 아동 피해 지원

범죄피해 아동 중에서도 성범죄 피해아동의 경우 일반적인 범죄피해와는 구별되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대안마련을 위해 ‘연구원’에서는 관련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황만성, 2004). 연구는 아동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선제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수사 절차의 개선, 재판절차의 개선, 피해자를 위한 지원과 보호에 대해 분석하여 필요한 개선 및 지원 사항을 제언하였다.

먼저 수사 절차의 개선을 위해 수사 담당자들의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고 아동의 2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면접을 진행하고, 법정대리인이 진술을 전달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재판절차에서도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구성, 아동이 정서적으로 편안할 수 있는 환경을 법정에 마련하는 것 등의 제언을 하였다.

해당 연구는 아동 성범죄 피해자를 위하여 종합적으로 제도적 법률적 한계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변화가 법률적·제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 청소년 피해 지원

범죄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여러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아동과 유사한 문제점을 가진다. 2006년 진행된 범죄피해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전체 폭력범죄 피해자의 7.4%이고 전체 강간피해자의 28.8%를 차지하고 있는 범죄 피해 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수행되었다(홍영오·이수정, 2006).

결과에 따르면 현재 범죄피해자 지원체계에서는 일부의 센터 이외에는 청소년 피해자에게 특화된 지원체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부모에 대한 교육이나 치료 및 지원 또한 부재한 상태이다. 또한, 청소년 범죄피해자는 경찰서의 불친절, 사건회상과 반복된 진술에 의한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 정서적으로 사춘기를 경험하는 시기에 범죄피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더욱 어려운 회복 과정을 거쳐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범죄피해지원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청소년 범죄 피해 지원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데 무엇보다 큰 의의를 가지는 연구이다.

3. 성범죄 피해지원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강화된 보호를 위하여 2013년 6월 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전면 시행되었다.

이러한 개정에 따른 시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의 신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이승현 외, 2013). 해당 보고서는 성폭력범죄의 신고죄 폐지를 앞두고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현상과 문제점을 추론하고, 이를 미리 대응하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는 신고죄 폐지 이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폭력피해 신고에 대비해 상담소 접근성을 개선하고 보호시설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함을 강조했다.

다수의 법 개정 이후, 인한 종합적인 제도의 변화로 인한 수사실무의 변화와 실태를 파악하여 법개정이 실제로 피해자를 위한 법으로 개정이 되었는지 그 실효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장다혜 외, 2015). 특히 개정 항목 중 신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폐지,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의 도입에 대한 실무상의 변화를 검토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인 제언을 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유관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개정에 따른 변화와 평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제도의 급격한 변화와 그에 따른 효용성 평가는 법의 제·개정 이후에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조사·연구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수의 성폭력 관련 법 개정 이후 실무적인 변화와 평가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제안하여 법 개정의 효용성을 높이는 가치가 높은 연구로 판단된다.

4.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국내 거주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범죄 피해자 또한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에 대한 파악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범죄피해자는 일반 국민보다 취약한 집단으로 보호 및 피해 지원에 있어서도 검토된 바가 없다.

국내 거주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태파악과 정당한 피해지원을 위하여 ‘연구원’에서는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최영신 외, 2017). 연구는 범죄피해사례 분석 결과를 크게 외국인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으로 나누어 범죄피해 지원현황을 살펴보았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범죄피해 지원은 먼저 제도로의 접근이 취약하고 피해자가 지원제도 자체를 알고 있지 못하거나 비자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주여성의 경우 사법기관 접근에 있어서 차별과 배제로 인한 소외, 체류 지위의 불안정으로

인한 지원의 한계, 인신매매 및 성매매 강요 피해자에 대한 지원 미비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이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지원 실태 조사와 분석을 통해 현재 외국인 범죄피해자가 가장 필요한 사법기관으로의 접근성 확대, 이주 여성의 국내 지위 확보, 인신매매 및 성매매 관련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성 향상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5. 재외국민 피해지원

2017년 기준 해외동포 750만 명, 해외출국자가 2,600만 명을 넘어 재외국민이 그 어느 때보다 규모가 커짐에 따라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범죄피해에 대한 지원 실태와 개선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재외국민의 범죄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한 현행 제도와 법을 검토하고, 피해지원의 실태와 쟁점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홍영오 외, 2018).

연구는 중국과 필리핀 거주 재외국민을 중심으로 범죄피해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필요한 지원과 제도 및 지원 주체와 원칙에 대한 고려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져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 있다. 해당 연구는 필리핀과 중국에서 우리 국민이 범죄피해를 경험했을 때 실질적으로 자국의 제도와 법으로 인한 국가적 개입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알맞은 대응책을 제시한 것에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중국과 필리핀에 국한된 범죄피해 지원의 한계와 대응을 재외국민 전체로 확장하여 고려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향후 다양한 국가에서의 재외국민 연구가 확장되어 진행되어 재외국민의 피해지원에 대해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를 예상된다.

6. 소결

‘연구원’의 피해자 보호와 지원관련 연구는 우선적으로 형법과 형사사법체계 내에서의 피해자의 위상과 권익보호,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이후 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하고 관련한

해외 제도 검토를 통해 국내의 적용을 통해 피해자의 지원에 힘써야함을 강조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 피해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성범죄 지원에 있어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한 사전 및 사후 연구를 진행하여 제도적 변화에 대비하고 변화 이후의 법개정 효용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해외 거주 우리 국민의 피해에 대한 지원의 현황과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도 진행하여 다양한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대한 학술적 검토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제4절 결론 및 제언

개원 이후 지난 30년 간 ‘연구원’은 쉬지 않고 범죄피해 실태와 현황을 조사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며 정책적 제언을 하는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먼저 암수범죄를 파악할 수 없는 공식범죄통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범죄피해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어온 범죄피해조사는 ‘연구원’의 개원과 동시에 시작되어 탐색·발전·안정기를 거쳐 현재 국가승인 공식통계로서 우리나라 범죄피해를 나타내는 대표 지표로 자리 잡았다. 더불어 범죄피해율이나 피해 현황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는 조사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생활 실태와 지원욕구 등에 대해서도 조사·분석하여 현황을 파악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시사하였다. 또한, 특수공간인 사이버 공간, 캠퍼스, 상업시설 등에서의 피해와 더불어 청소년, 아동, 해외체류 내국인 피해 등 대상별 범죄피해를 살펴보는 실태조사도 수행하여 각각의 특성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연구원’에서는 피해와 피해자의 실태파악 및 대책뿐만 아니라 법제도와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의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였으며,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피해자 지원 또한 특성에 맞게 이루어져야 함을 파악하고 면밀하고 상세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나아가 성범죄 피해와 관련된 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시행 이전과 이후에 대비책에 대한 연구와 개정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를 각각 진행하여 한 발 앞서나가는 연구로 피해자를 위한 제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범죄피해와 피해자, 관련 제도와 정책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연구원’은 지난 30년 간 ‘연구원’과 연구진이 가진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범죄피해 관련 연구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었고, 법과 제도, 정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범죄 피해의 범위가 넓어지고 종류는 다양해지고 있다. ‘연구원’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범죄피해를 줄이고 피해자를 지원·보호하기 위하여 알맞은 정책과 제도, 지원과 대응, 나아가 예방까지 내다보는 종합적인 시각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원을 아낌없이 투자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은영(2000). 아동 성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강은영·김한균(2015). 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강은영·박지선(2009). 아동 실종 및 유괴 범죄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최수형·박정선(2009).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 연구(V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황지태·황의갑·노성훈(2013).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심영희·조정희(1990). 범죄피해조사란 무엇인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노성호·오수정·정은숙(1990).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2008). 피해자의견진술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김지영·홍영오·박미숙(2006).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 연구(V),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강태경·노성훈(2016). 전국범죄피해조사(VI) : 상업범죄 피해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김성언(2015). 제3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2017년~2021년)의 방향과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이동원(2006). 범죄피해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활성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홍영오(2011). 전국범죄피해조사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영·안성훈(2013). 내국인 남성의 국제결혼 피해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노성호·김성언·이동원·김지선(1999).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미숙(2005). 형사사법모델간 피해자보호 프로그램 비교분석 - 미국의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순진·최영신(1999).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 연구(I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철현(2001). 캠퍼스에서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송기오·강경래(2005).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송주영·이완수·고성혜(2014). 동남아시아 지역의 한국인 범죄 실태와 보호 방안 -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신의기(1998). 재중동포에 대한 범죄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심영희·김준호·최인섭·조정희·박정선(1991). 서울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진영(1991).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건호(1999).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민식(2000).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피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승현·박학모·김정혜(2013).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내실화 방안, 한국형사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재상·이호중(1991).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규원(2002). 수사경찰의 피해자대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다혜·박학모·장응혁(2015). 2012년 성폭력관련법 개정 이후 수사실무의 변화실태 및 개선방안 : 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준오(2000). 세계범죄피해조사 : 한국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준오·이완수·고성혜(2011). 동남아시아 지역의 한국인 범죄 실태와 보호 방안 - 필리핀과 태국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준오·유홍준·이완수(2012). 교실 내 폭력의 현황과 대책 - 교사의 폭력피해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준오·이완수·최호림·홍석준(2013). 동남아시아 지역의 한국인 범죄 실태와 보호 방안 -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영실(2000). 피학대아동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영실·유진·노성훈(2018). 전국범죄피해조사(VIII) :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 20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영실·노성훈(2011). 저소득층 아동의 범죄피해실태 및 보호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현욱·정철우·김학경·유주성·박병욱·김혁(2017).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개입의 한계요인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수형·황지태·장다혜·이동원(2014). 전국범죄피해조사(IV) - 2014년 범죄피해자 생활실태 및 사회적 지원현황 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수형·김지영·황지태·박희정(2015). 전국범죄피해조사 20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수형·조영오(2017).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수형·탁종연(2014). 전국범죄피해조사(IV) - 범죄피해조사 방법론 비교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영신·장다혜·오경석(2017).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박순진·기광도(2002). 한국의 범죄피해조사 : 추세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이순래·조균석(2003).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 연구(IV),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이순래·조균석(2006). 범죄피해자 실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기광도(1997).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김지선(1996). 범죄의 두려움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박순진(1993).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홍영오(2008). 2008년 청소년 대상 범죄피해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홍영오·박준희·박우·추지현(2018).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지원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홍영오·연성진(2014). 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홍영오·이수정(2006). 범죄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방안 및 지원체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황만성(2004). 형사절차상 성범죄 피해아동의 보호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황지태·노성호(2010).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 및 피해지원욕구 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황태정(2005). 범죄피해자보호 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Bordner, D. C., & Petersen, D. M.(1983). Campus Policing: The Nature of University Police Work. University Press of America, 4720 Boston Way, Lanham, MD 20706.
- Lynch, J. P., & Addington, L. A. (Eds.).(2006). Understanding Crime Statistics: Revisiting the Divergence of the NCVS and the UC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ennison, C. M.(1999). Criminal Victimization, 1998: Changes 1997-98 with Trends 1993-98.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 Sloan, J. J.(1992). The modern campus police: An analysis of their evolution, structure, and function. Am. J. Police, 11, 85.

제 4 장

소수집단의 범죄와 범죄피해 관련 연구

장 현 석

소수집단의 범죄와 범죄피해 관련 연구

제1절 서론

지난 30년간 한국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방면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규범가치에 대한 혼란도 공존하게 되어 법규 위반이 늘어나고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범죄는 대표적인 사회문제로서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하지만, 범죄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고 따라서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단순히 처벌하는 법률을 엄격하게 개정하고 단속하는 경찰관의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1989년 개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으로 함)은 범죄의 다양한 양상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범죄는 남성이면서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iegel, 2013). 따라서 범죄연구의 대다수도 남성을 위주로 한 사회의 주류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소수집단에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범죄 가해가 아닌 범죄피해 측면에서 보았을 때 소수집단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다 심각하다고 볼 수도 있다. 사회적 약자로서 소수집단은 연구에서도 외면받기 쉬운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연구원'은 비록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사회적 약자인 소수집단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수행하였다. 이 장에서는 '연구원' 개원 이래 30년 동안 수행한 소수집단에 대한 범죄 및 범죄피해 연구의 성과를 검토하고 앞으로 나아갈 연구방향에 대하여 제언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소수집단을 여성, 노인,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외국인 집단으로 나누고 이들 집단에 대하여 지난

30년 간 이루어진 연구 결과물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연구가 시사하는 점, 그리고 보완되었으면 하는 사항들을 살펴보고 현재와 미래 한국사회의 모습을 고려하여 소수 집단에 대한 범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소수집단 범죄 및 범죄피해의 개념

소수집단(Minority group)은 특정 분류 기준으로 집단 지워진 사람들로서 그들이 가진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로 인해 사회적 지위나, 부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없고, 차별이나 편견의 대상이 되기 쉬운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박철현, 2010). 분류 기준을 성별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약자인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는 여성들을 소수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연령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청소년이나 노인을 소수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분류하자면 빈곤층, 국적을 기준으로 하면 외국인이 소수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수집단은 특정 사회 내에서 개념 지워 질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동일한 사람이 어떤 사회에서는 주류집단으로 분류되다가 다른 사회로 옮겨갔을 때는 소수집단에 소속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에서 대학을 나오고 직장생활을 하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 외국인 노동자로 일을 하는 경우, 본국에서는 주류집단으로 분류되었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소수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존재할 수 있는 여러 소수집단들 중에서 범죄와 관련하여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집단으로 분류된 몇몇의 소수집단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청소년도 소수집단으로 볼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3부 제1장에서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그리고 제3부 제3장에서 청소년의 범죄피해에 대하여 별도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그리고 최근 문제의 심각성을 보이고 있는 아동에 대한 범죄피해 관련 연구도 제3부 제3장에서 검토되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여성, 노인,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외국인이 이 장의 소수집단에 포함되었다.

소수집단 범죄 및 범죄피해란 소수집단에 포함된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와 이들이

경험하는 범죄피해를 말한다. 범죄의 가해와 피해는 양상이 사뭇 다르기 때문에 각각 나누어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나 ‘연구원’의 지난 30년간 연구에서 소수집단의 범죄 가해행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몇몇 소수집단들에서만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 장에서는 소수집단 범죄에 대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예외적으로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결과도 포함되어 있을 경우 같이 분석하는 것으로 한다.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분석의 틀

소수집단의 범죄와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많이 진행되어 왔다. 이 장에서는 ‘연구원’ 개원 이래 2018년까지 수행한 연구들 중에서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연구원’의 과거 연구들 중 소수집단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다른 기준으로 분류되어 별도로 연구가 진행된 것은 이 장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¹⁾. 이 장에 포함된 소수집단들은 상대적 사회적 약자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상당히 이질적인 소수집단들이 포함되어 이들 모두를 하나의 소수집단으로 묶어 분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소수집단 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를 검토할 때 각각 개별 소수집단별로 나누어서 분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각각의 소수집단 연구로 분류된 보고서들은 체계적인 검토를 위하여 몇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해당 연구들을 분류하고 특징들을 정리하였다. 분석을 위해 사용한 기준으로 1) 대상 범죄 및 범죄피해의 종류, 2) 연구목적, 3) 이론적 배경, 4) 연구대상의 범위, 5) 연구방법(양적/질적/혼합), 그리고 6) 공식통계자료 분석 여부가 포함된다. 아래에 각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첫째, 대상 범죄 및 범죄피해의 종류별로 구분한 이유는 해당 소수집단의 범죄 또는 범죄피해 중에서 어떠한 범죄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주로 해당 소수집단의 일반적인 범죄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지만, 낙태죄 또는 폭력범

1) 예를 들어, 청소년, 빈곤층, 성소수자 등은 다른 분류 기준에 따라 연구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음.

죄 등 구체적인 범죄만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도 있었다. 또한 범죄피해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경우도 있어 어떠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연구목적에 따라서 분류하였다²⁾. 형사사법 연구는 연구목적에 따라서 탐색연구(exploration), 실태파악연구(description), 원인분석연구(explanation), 그리고 정책분석연구(application)로 나눌 수 있다(Maxfield & Babbie, 2012). 탐색연구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범죄 현상에 대하여 문제에 대하여 기초적인 지식을 형성하기 위하여 시도하는 연구이다. 실태파악연구는 범죄현상의 범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어느 정도 심각한지 파악하는 것이 목적인 연구이다. 탐색연구가 잘 알지 못하는 범죄 현상에 대하여 기본적인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에 실태파악연구는 탐색연구를 통하여 알려진 범죄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규모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공식통계나 대표성 있는 전국단위 설문조사 등을 주로 사용한다. 다음 단계인 원인분석연구는 범죄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거나 “왜”라는 질문에 답을 구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에서 원인과 결과 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원인이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앞설 것, 원인과 결과 간에 상관관계가 있을 것, 그리고 제3의 경쟁요인에 의한 영향을 통제할 것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Shadish, Cook & Campbell, 2002).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연구는 통상적으로 실험 설계를 통한 연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정책분석연구는 연구의 목적이 정책의 효과성분석 즉 정책이 원인이 되어 범죄의 감소라는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알아 보는 연구이거나, 미래 어떠한 정책을 적용할 것인지 미리 특정 정책 적용 시 발생할 결과를 예측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정책분석연구는 원인분석연구를 정책에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정책과 그에 따른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 빠진 단순히 정책이나 대안을 제안하는 연구는 정책분석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Maxfield & Babbie, 2012). ‘연구원’에서 실시한 소수집단의 범죄 및 범죄피해 연구를 Maxfield and Babbie(2012)가 제시한 연구목적에 따라 분류해 보는 것은 연구 결과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2) ‘연구원’의 모든 연구는 기본적으로 ‘정책제안’을 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Maxfield and Babbie(2012)의 분류에 따른 연구목적 분류에서 정책제안은 기본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분류할 때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셋째, 이론적 배경에 따라 분류하였다. 범죄학은 여러 가지 이론으로 범죄현상을 설명한다. 소수집단의 범죄에 대한 연구에서 어떠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했는지 알아보는 것은 이론 적용의 패턴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넷째, 연구대상의 범위에 따라 분류하였다. 연구대상의 범위는 연구가 소수집단을 얼마나 잘 대표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모집단이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보다 제한된 범위의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파악하였다. 이를 통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다.

다섯째, 연구방법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주로 사용한 연구방법이 대규모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양적연구인지, 소규모 사람들을 심층면담 한 질적 연구인지,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한 혼합연구인지, 그리고 언론자료, 수사자료, 법원자료 등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이 주요 연구방법인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연구의 방법론에 대하여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공식통계자료 분석은 연구가 정부나 기관에서 작성하는 공식통계를 사용하였는지, 사용했다면 어떤 공식통계를 주로 사용하였는지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소수범죄자 연구에 주로 사용되는 공식통계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 분석의 기준을 바탕으로 각 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하고 소수집단별로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향후 필요한 연구의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제4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소수집단 범죄 및 범죄피해 연구 검토

1. 여성 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연구원’은 1990년 심영희 외(1990)의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여성범죄 연구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다섯 번의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중 김지영 외(2011)의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에 대한 연구여서 외국인으로 분류 될 수 도 있지만 여성 범죄피해 연구로 분류하였다. [표 III-4-1]은 이들 연구를 요약한 것이다.

먼저 범죄 및 범죄피해의 종류별로 구분했을 때 낙태죄, 여성범죄일반, 폭력범죄, 그리고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심영희 외(1990)의 연구는 낙태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시기였던 1990년대 초에 낙태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그리고 실제 어느 정도의 규모로 낙태가 발생하고 있는지 조사한 것으로 여성범죄에 대한 '연구원'의 초창기 연구로서 의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낙태에 대한 연구는 20여년 후인 2011년에 한 번 더 이루어졌는데(박형민, 2011),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성들의 인식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 낙태의 규모에 변화가 있었는지 보여주었다.

1992년에는 여성범죄일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전반적인 발생실태를 파악하고 여성범죄 대책을 세우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최인섭 외, 1992). 이후 전영실(2003)은 여성의 폭력범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예상과 달리 여성범죄 중에서 폭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폭력범죄만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깊이 있게 분석하였다. 김지영 외(2011)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른 연구들은 모두 여성의 범죄에 대한 연구였으나, 이 연구는 결혼이주 여성의 신체, 정신, 성폭력 피해를 조사한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였다.

여성범죄에 대한 연구들은 모두 실태파악(description)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여성범죄의 원인을 분석한 연구나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 또한 없었다.

[표 III-4-1] 여성 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들

연구자 (연도)	제목	범죄·범죄피해 종류	연구목적	이론적 배경	연구대상의 범위	연구방법	공식통계자료 분석
심영희 외 (1990)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낙태죄	실태 파악	낙태에 관한 선택우선론 생명우선론 범죄학이론 없음	서울 남녀 1200명, 확률표집	양적연구 (설문조사)	없음
박형민 (2011)	낙태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낙태죄	실태 파악	없음	전국(제주도 제외) 여성 1000명, 확률표집	혼합연구 (설문조사+ 심층면접)	없음
최인섭 외 (1992)	여성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여성범죄 일반	실태 파악	생물학적/심리학적/ 사회학적 이론 (여성주의 시각)	전국여성(공식통계) 전국 여성수행자 308명 전수조사 (비교대상: 일반여성, 남성수행자)	양적연구 (설문조사)	「범죄분석」 1965~1990 추세, 특성 분석
전영실 (2003)	여성의 폭력범죄 실태에 관한 연구	폭력범죄	실태 파악	없음	전국여성(공식통계) 서울 여성폭력 사건 수사재판기록 347건 비확률표집 (비교대상: 남성 폭력 사건)	양적연구 (내용분석)	「범죄분석」 1980~2002 추세, 특성 분석; 서울소재 지방검찰청 「수사재판기록」
김지영 외 (2011)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인권침해 전반 신체·정신· 성폭력 피해 등	실태 파악	결혼이주에 관한 배출-흡인이론/노동 이주론/초국가주의론/ 이주의 여성화이론	비확률표집 베트남,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 841명 비교대상으로 내국인 여성 400명	혼합연구 (설문조사+ 심층면접)	없음

연구들에 사용된 이론적 배경을 조사한 결과 심영희 외(1990)의 연구는 이론적 배경으로 낙태에 관한 선택우선이론과 생명우선이론을 들어서 설명하였고, 일반적인 범죄학 이론을 들어서 낙태범죄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최인섭 외(1992)의 연구에서 일반적인 여성범죄를 설명하면서 이론적 배경으로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범죄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이론 검증을 위하여 관련 이론적 요인들을 설문 문항으로 측정하여 서구에서 도입된 범죄학 이론이 한국여성의 범죄를 설명하는지 검증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범죄학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는 결혼이주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범죄학 외적인 이론을 소개하였다(김지영 외, 2011).

연구대상의 범위는 대체적으로 전국여성을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연구결과를 도출하려고 시도하였다. 다만 결혼이주여성 대상 연구는 베트남 등 외국에서 이주해온 여성만이 대상이었다. 공식통계자료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여성범죄가 대상이기 때문에 전국 여성이 연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여성범죄 연구에서 시도한 설문조사는 여성 교도소수형자 또는 여성사건 수사재판기록 등이 대상이어서 전국 여성 범죄자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다만, 최인섭 외(1992)의 연구에서처럼 남성수형자를 비교대상으로 삼아 연구를 진행한 것은 여성 범죄자의 특징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한다.

연구방법은 양적연구인 설문조사가 주로 사용되었고, 전영실(2003)의 연구는 다수의 수사재판기록을 사용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심층면접 자료를 보완하여 혼합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김지영 외, 2011; 박형민, 2011). 낙태의 경우 공식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공식통계자료 분석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다른 연구들에서는 공식통계자료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여성범죄의 규모와 변화추세를 분석하였다. 이처럼 여성범죄에 대하여 공식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연차별로 여성범죄의 증감을 분석하는 것은 형사정책적으로 여성범죄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지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설문조사나 심층면접조사를 함께 사용하여 거시적 변화뿐만 아니라 개별 범죄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발생하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와 같이 혼합 방법론적 접근을 사용한 것은 범죄현상을 다각도로 살펴보려는 시도로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연구원’에서 실시한 여성범죄에 대한 연구는 여성범죄의 실태를 분석하여 정책입안의 근거 자료를 제시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겠다. 특히 낙태와 같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여성관련 문제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한 것은 연구주제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혼합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다각적으로 문제를 파악하려고 시도한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대부분의 연구가 실태파악에 집중하여 원인을 분석하려는 시도는 미흡했다고 생각된다. 연구의 발달 단계를 탐색연구를 통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발견된 문제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는 실태파악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그 다음 단계는 어떠한 원인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여성범죄와 관련하여 향후 연구를 추진할 때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주제를 잡고 그에 맞는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가 추진되었으면 한다.

2. 노인 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 인구의 고령화는 범죄에도 영향을 미쳐서 연령과 범죄의 관계에서 서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폭력범죄는 젊은 계층에서 저지른다고 보고하고 있으나³⁾, 한국의 경우 2017년 기준 가장 범죄율이 높은 연령대가 50대였다⁴⁾. 그리고 2008년에서 2017년까지 전체 범죄의 연령별 추세를 분석했을 때 다른 연령대는 지속적으로 발생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61세 이상의 연령대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50대의 경우 2008년에 발생비가 20, 30, 40대에 비하여 낮았으나, 2017년에는 가장 높은 발생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인구구조가 6·25 전쟁 후 베이비부머 세대가 근래 60대를 넘어서고 있어서 과거의 60대에 비하여 같은 코호트 내에서 많은 수의 인구가 분포되어 보다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된 것이 원인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젊은 층의 범죄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전후 베이비부머

3) 미국 FBI의 NIBRS 자료 분석결과와 연방교정국의 수용자 연령을 보면 3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https://ucr.fbi.gov/nibrs/2017/resource-pages/nibrs-2017_summary-11-6-2018.pdf, 2019년 2월 25일 최종 접속; https://www.bop.gov/about/statistics/statistics_inmate_age.jsp, 2019년 2월 25일 최종 접속).

4) 대검찰청 2018 범죄분석 “연령별 범죄 발생비 추이”(<http://www.spo.go.kr/spo/info/stats/stats02.jsp>, 2019년 2월 25일 최종 접속).

세대 이후 1980년대 까지 인구가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출산이 줄어들어 현재 20, 30대에 해당하는 코호트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인구가 존재한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연령별 범죄양상을 크게 바꾸어 놓게 되어 한국의 경우 노인범죄에 관심을 가져야 하기에 '연구원'은 노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III-4-2]에 노인 범죄 및 범죄피해 연구에 대하여 정리한 것을 제시하였다.

노인 대상 연구의 경우 범죄와 범죄피해도 함께 연구를 수행한 경우가 두 번 있었다. 이건종 외(1994)의 연구는 인구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1990년대의 시대상을 반영하여 노인들의 범죄행동과 범죄피해 실태를 파악하였다. 인구 고령화가 보다 진행된 2000년대 후반의 연구인 장준오 외(2008)의 연구에서는 노인범죄의 연평균 증가율이 68.4%를 보여서 빠른 증가 추세를 확인하였고, 강력범죄의 증가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III-4-2] 노인 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들

연구자 (연도)	제목	범죄·범죄피해 종류	연구목적	이론적 배경	연구대상의 범위	연구방법	공식통계자료 분석
이건종 외 (1994)	노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노인범죄일반/ 범죄피해	실태 파악	없음	전국노인(공식통계)/ 노인 범죄자/서울시 거주 노인(확률표집)	양적연구 (공식통계+ 설문조사)	대검찰청 「범죄분석」 지방감찰청 「수사재판기록」
김지영 (2005)	세대간 갈등과 노인학대	노인학대피해 신체적, 심리-언어적, 재정적 학대/ 방임	실태 파악	세대갈등에 대한 거시적/미시적 설명	서울시 노인학대예방센터 상담사례 184건/ 서울시 거주 노인 300명 성인자녀 300명(비확률표집)	혼합연구 (상담사에 대한 인터뷰/ 설문조사)	없음
장준오 외 (2008)	노인범죄 및 범죄피해와 노인환경의 유해성 연구	노인범죄일반/ 범죄피해	실태 파악	가해이론: 사회학설/ 사회통제/아노미이론 피해이론: 생활양식/ 일상생활이론 등	전국노인(공식통계) 전국피해자 조사 (확률표집)/노인 수형자 (비확률표집)	혼합 (공식통계+ 설문조사+ 심층면접)	대검찰청 「범죄분석」 법무부 교정국 「인본장」

또한 노인의 범죄피해도 역시 공식통계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특히, 노인대상 강력범죄와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지영(2005)의 연구는 노인학대 피해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우리나라 노인학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과 성인자녀들 간의 세대갈등을 학대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조사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모두 실태파악을 위한 연구였고, 인과관계 분석이나 정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연구는 아니었다. 이론적 배경은 장준오 외(2008)의 경우 전통적인 범죄학 이론을 적용하여 노인범죄 가해와 피해 이론을 소개하였다. 김지영(2005)의 연구는 노인학대 발생 노인과 성인자녀 세대 간의 갈등으로 촉발된다고 보고 세대갈등의 원인을 설명하는 거시적 시각과 미시적 시각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통적인 범죄학 이론들은 주로 청소년비행이나 성인범죄를 바탕으로 발달하였다. 범죄학 이론 중에서 상대적으로 노인 범죄와 노인 범죄피해를 더 잘 설명하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향후 이러한 부분이 노인 연구에 포함되면 보다 우수한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연구대상의 범위는 공식통계를 분석한 경우 전국 노인을 모집단으로 볼 수 있고, 피해에 대한 설문조사는 서울거주 노인만 모집단으로 한 연구(김지영, 2005; 이건종 외, 1994)와 전국노인을 모집단으로 한 연구(장준오 외, 2008)가 있었다. 사용한 방법론은 노인범죄에 대한 초창기 연구의 경우 공식통계분석과 설문조사를 병행한 양적연구였으나, 2005년과 2008년 연구는 양적, 질적 연구를 모두 사용한 혼합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혼합방법론적 접근은 노인 범죄와 범죄피해 실태를 보다 다각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노인 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는 세 종만 진행되어 상대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 아쉽다. 또한 가장 최근의 연구가 2008년에 진행되어 다시 한 번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인구고령화는 그 속도가 빠르고 은퇴한 노인 인구들은 빈곤, 실직 등 범죄 유발요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연구원’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3. 장애인 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정신장애인을 중심으로

‘연구원’은 지난 30년 동안 장애인의 범죄와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를 다섯 중 실시하였는데, 이중 네 종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것이고 하나가 장애인 일반에 대한 것이었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이들의 범죄적 위험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장애인 일반을 연구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범죄피해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를 하였다. 정신장애인의 범죄는 범죄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과 처우의 어려움 때문에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2018년 12월 31일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도중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살해당하였다⁵⁾. 또한 비슷한 시기에 20대의 정신질환자가 주택가 길거리에서 산책 중이던 80대 여성을 폭행하여 의식불명이 되었다⁶⁾. 이러한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형법상 심신미약·심신상실 규정⁷⁾에 의하여 처벌이 감경되거나 면제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들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통계상으로 보면 일반인의 범죄율보다 낮아서 상대적으로 이들의 범죄는 덜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예측하기가 어렵고 법률상 처벌을 할 수 없거나 약하게 처벌 되어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일반인과는 다른 원인에 의하여 범죄가 발생하고 처분 또한 의료, 복지 영역과 협업이 필요해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대상자이다. ‘연구원’에서 지난 30년간 실시한 정신장애인과 장애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를 분류기준에 따라 정리한 것을 [표 III-4-3]에서 찾을 수 있다.

-
- 5) 한겨레, 환자흉기사망 의사는 우울증 명의 임세원 교수. 2019년 1월 1일자(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6569.html, 2019년 2월 25일 최종 접속).
- 6) 연합뉴스, 80대 할머니 무차별 폭행한 정신질환자 퇴원후 체포. 2019년 1월 7일자(<https://news.v.daum.net/v/20190107161820867>, 2019년 2월 25일 최종 접속).
- 7)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 위협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 III-4-3] 장애인 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들

연구자 (연도)	제목	범죄·범죄피해 종류	연구목적	이론적 배경	연구대상의 범위	연구방법	공식통계자료 분석
정동원 (1990)	정신병환자의 범죄성에 관한 연구: 강력범죄를 범한 피치로감호자와 일반 강력범죄자와의 비교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방화, 폭행 및 상해)	실태 파악	없음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치로감호자 (비교대상: 일반 범죄자)	양적 (공식통계)	대검찰청 「범죄분석」
정진수 (2005)	형사절차상 취약계층 보호방안 -정신장애자 처우를 중심으로-	정신장애 범죄일반/ 처우방안	실태 파악	없음	정신장애 범죄자	질적연구 (문헌조사)	대검찰청 「범죄분석」
권수진 외 (2016)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효과적인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정신질환 소년 범죄일반	실태 파악	없음	정신질환 소년원생/ 소년원 직원/소년원생	혼합 (공식통계+ 설문조사+ 심층면접)	법무부 소년과 자체 통계
안성훈 외 (2018)	정신질환자 범죄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내 관리방안	정신질환 범죄일반	실태 파악	없음	정실질환자 보호관찰 담당자 설문조사/ 치료명령 대상자 530명, 치료감호 기종료후 보호관찰 대상자 769명,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각부 기소유에 대상자 237명 등의 KICS, K-PLIS 사건기록	혼합 (공식통계+ 설문조사+ 내용분석)	대검찰청 「범죄분석」 「사법연감」
김지영 외 (2018)	장애인 범죄피해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장애인 범죄피해 일반	실태 파악	취약성이론/사회문 화적환경이론	전국대상 장애인이 피해자인 사건의 범위 판결문 사례분석 1,302건/ 상담사례분석 12건/ 장애인지원기관과 경찰관에 대한 FGI 8명	혼합 (공식통계+ 사례분석+ 심층면접)	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인권상담 분석보고서」

연구의 대상은 성인 정신질환자로서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치료감호중인 자(장동원, 1990)들과 소년원에 수용중인 원생으로서 정신질환을 가진 자(권수진 외, 2016)들 그리고 정신질환 범죄로 보호관찰 중인 성인(안성훈 외, 2018)이 각각 연구의 대상이었다. 세 연구 모두 정신장애자의 범죄만 조사하였고, 범죄피해에 대하여는 다루지 않았다. 이는 정신장애인들의 사회적 위험성만 주로 부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진수(2005)의 연구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형사적 강제절차가 남용의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한 인권침해가 예상되므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적 처우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김지영 외(2018)의 「장애인 범죄피해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부족했던 장애인들의 범죄피해실태에 대한 연구로서 늦었지만 꼭 필요했던 연구를 ‘연구원’에서 수행한 것으로서 향후에도 장애인들의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 범죄의 실태파악, 정신장애인 강제처우제도의 실태파악, 장애인들의 범죄피해 실태파악을 목적으로 하였고, 원인분석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실태분석을 통하여 정책제안을 하였다.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 연구는 드물었는데, 김지영 외(2018)의 연구는 장애인들이 범죄피해를 당하는 이유로 취약성이론을 들어 설명하였고 또한 거시적 요인으로 사회환경적 원인을 제시하였다. 정신장애인 연구에서 이론적 배경 제시가 드문 이유는 범죄의 원인을 ‘정신장애’라고 추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연구에 포함된 대상의 범위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모집단 파악의 어려움, 또한 자료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그 범위가 제한적이다. 방법론을 살펴보면 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식통계와 기관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특히 장애인 복지 관련 연구를 주로 수행하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자료를 재분석한 경우가 많았다. 권수진 외(2016), 안성훈 외(2018), 그리고 김지영 외(2018)의 연구는 혼합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언급했듯이 앞으로는 장애인의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4.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통일부의 집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3만 2천여 명을 넘어서고 있다⁸⁾. 이들은 전혀 다른 체제에서 살다가 생활의 모든 면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남한으로 이주하여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예상된다. 국가통제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자유 경쟁을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 체제에 적응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국내의 높은 실업률, 빈부간의 소득격차 등이 이들에게 범죄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연구원’에서는 다른 소수집단 연구에 비하여 비교적 최근에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표 III-4-4]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에 대한 ‘연구원’의 연구들을 분석의 틀에 따라 검토한 것이다.

모두 네 종의 연구가 있었는데, 연구주제는 북한이탈주민의 전반적인 범죄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장준오 외, 2006), 범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장준오 외, 2010), 범죄 대신에 범의식 실태를 조사한 연구(최영신 외, 2017), 그리고 북한이탈 여성 인신매매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였다. 장준오 외(2010)의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데 반하여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영신 외(2017)의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의식 실태를 파악하고 낮은 범이해도와 범상식이 이들을 불법행위로 이르게 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장준오 외(2006)과 연성진(2018)은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실태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의 연구로서 탐색이나 실태파악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표 III-4-4]에서 알 수 있듯이 경찰이나 여타 정부기관에서 북한이탈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한 범죄나 범죄피해 공식통계를 생산하지 않고 있다.

8)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st/>, 2019년 2월 25일 최종 접속).

[표 III-4-4]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에 대한 연구들

연구자 (연도)	제목	범죄·범죄피해 종류	연구목적	이론적 배경	연구대상의 범위	연구방법	공식통계자료 분석
장준오 외 (2006)	북한 이탈주민의 범죄피해에 대한 실태 연구	범죄피해 일반	실태 파악	없음	전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214명	양적 (설문조사)	없음
장준오 외 (2010)	북한이탈주민 범죄실태 및 대책	범죄 일반	실태 파악	아노미이론 차별기회이론 제도적 아노미이론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교도소 수용자	내용분석	없음
최영신 외 (2017)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식 실태와 준법의식 제고 방안 연구	없음	실태 파악	없음	서울, 경기, 인천 거주 북한이탈주민 (비교대상으로 일반국민)	혼합 (설문조사+ 심층면접조사)	없음
연성진 (2018)	북한이탈주민 탈북과정에서의 인신매매범죄 피해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인신매매 범죄피해	탐색연구/ 실태 파악	임상활동이론 등 범죄피해이론	수도권 5개 지역 북한이탈여성 200명/ 인신매매피해여성 15명 심층면접	혼합 (설문조사 +심층면접조사)	없음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나 범죄피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경찰이나 검찰과 협의를 통하여 통계작성에 대하여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장준오 외(2010)의 연구는 전통적인 범죄학 이론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연성진(2018)의 연구는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인 인신매매를 설명하기 위한 피해자이론을 적용하였다.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이들의 범죄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무엇일지 밝혀보는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는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대표성이 있고 일반화가 가능한 연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연구 대상의 범위는 다른 소수집단 연구에 비하여 연구대상에 접근이 쉽지 않아서 교도소 수용 북한이탈주민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 북한이탈주민이 주로 연구의 대상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의 범죄를 별도의 항목으로 집계하여 공표하지 않고 있어서 연구 보고서들도 공식통계를 이용한 실태 분석은 포함하지 않았다.

최근 남북대화가 진전되고 남북정상회담이 실시되는 등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다. 이는 남북 간 교류가 늘어나고 통일시대가 올 수 있음을 말해준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거주하면서 저지르는 범죄와 범죄피해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 통일시대에 예상되는 범죄문제에 대한 정책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된다.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와 범죄피해 연구 또한 보다 세밀한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5. 외국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에 의한 사회문제 발생은 1980년대 초반까지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있었으나, 장기체류 외국인의 숫자는 많지 않았다. 이러한 양상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먼저 1988년 서울올림픽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1992년 한중수교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 조선족들의 방문이 증가하였고, 건설이나 힘든 육체노동이 필요한 부분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국내 산업계에서 외국인 노동자 숫자

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설동훈, 2006). 출입국사범의 증가, 불법취업 문제, 불법체류 문제 등이 발생하였고, 외국인 범죄 문제도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외국인 범죄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1992년 3월 발생한 파키스탄 조직폭력배 간의 살인 사건이다(최인섭 외, 1993). 불법취업 알선과 관련된 이권을 다투다가 폭력조직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것인데, 외국의 조직폭력배가 한국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따라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였다. 이에 '연구원'에서 1993년 보다 포괄적으로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대책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후 꾸준히 연구가 축적되어 최근까지 십 회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표 III-4-5]는 '연구원'에서 실시한 외국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들을 정리한 것이다.

대상 범죄 및 범죄피해의 종류는 외국인 범죄일반을 다룬 연구들, 불법체류와 출입국사범 관련 연구들, 그리고 폭력 또는 조직범죄에 관한 연구, 그리고 범죄피해 및 범죄두려움을 다룬 연구들이 있었다. 체류 외국인의 숫자는 2017년 12월 기준 2백만 명을 넘어섰다⁹⁾. 외국인들은 신분상 제약을 받기 때문에 비자의 종류, 그리고 국내 체류 시 노동 가능 여부, 체류기간 등에 따라 출입국사범이 되기도 한다. 불법체류 자체가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식은 좋지 않다. 하지만, 이들은 취약한 신분상태 때문에 범죄피해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외국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 실태 파악과 그중 불법체류자의 범죄 실태는 향후 외국인 정책수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연구라고 하겠다.

9) e-나라지표, 체류 외국인 현황(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6, 2019년 2월 25일 최종 접속).

[표 III-4-5] 외국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들

연구자(연도)	제목	범죄·범죄피해종류	연구목적	이론적 배경	연구대상의 범위	연구방법	공식통계자료 분석
최인섭 외 (1993)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대책	외국인 범죄 일반	실태 파악	없음	전국 체류 외국인	양적연구 (공식통계 중심)	「종합신사분석」, 「사법연감」, 「외국인 범죄 정보보고」, 「법무연감」, 「출입국관리통계연보」
조병인 (1995)	국내체류 외국인의 범죄피해 및 보호실태	외국인 범죄피해 일반	실태 파악	없음	외국인 500명, 비교대상으로 내국인 500명	양적연구 (공식통계+설문조사)	경찰청 「범죄분석」
조병인 외 (1997)	불법체류 외국인의 실태와 대책	불법체류 범죄	실태 파악	없음	전국 불법체류 외국인	양적연구 (공식통계 중심)	법무부 「출입국관리통계연보」
정준오 (2002)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	불법체류 범죄/ 외국인 범죄 일반	실태 파악	외국인 이주에 관한 1) 발생론 2) 양속화론 3) 적응론	전국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혼합연구 (면접조사 + 사례분석)	법무부 「출입국관리통계연보」
조병인 외 (2010)	국내거주 외국인의 조직범죄 실태와 대책 연구	조직범죄	실태 파악	없음	외국인 조직범죄자	질적연구 (신문기사 + 수사기관 실무자 심층면접)	경찰청 「경찰백서」
최영신 외 (2012)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와 치안실태 연구	외국인 범죄 일반	실태 파악	없음	전국 외국인 밀집지역 서울·경기·외국인 밀집지역 (구로구, 영등포구, 안산시, 시흥시)	혼합연구 (공식통계 + 심층면접, 현장조사)	경찰청 외사과와 외국인 범죄 통계
김대근 외 (2013)	출입국관리상 인권제고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 불법체류외국인을 중심으로	출입국 사법/ 외국인 범죄피해/ 범죄피해 두려움	실태 파악	없음	국내 체류 불법체류 외국인 (비교대상으로 합법체류 외국인)	혼합연구 (공식통계 + 설문조사 + 법학연구방법)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최영신 외 (2016)	외국인 폭력범죄에 관한 연구	외국인 폭력범죄 기해/피해	실태 파악	사회해체 차별기회 일반인장	국내 체류 9개국 출신 합법/불법체류 외국인 (비교대상으로 내국인)	혼합연구 (공식통계 + 설문조사 + 심층면접)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경찰청 외사과와 외국인 범죄 통계
최영신 외 (2017)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방안	실태 파악	없음	범죄피해지원센터의 외국인 지원사례 87건: 이주민 지원기관 사례 20건: 여타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례 21건	혼합연구 (문헌연구+사례분석+ 공식통계분석)	「출입국·외국인정책 내부용 통계월보 2017년 10월호」
김대근 외 (2018)	인권지향적 형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 외국인의 절차보장 강화를 중심으로	외국인 범죄 일반	실태 파악	없음	출입국관리법, 형사소송법, 난민법 등 외국인의 형사사법절차에 관련된 법들	현장방문 + 문헌조사 + 전문가지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범죄백서」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급감 때문에 노동력부족이 예상되는 국내실정을 고려하면 앞으로 외국인의 숫자는 더욱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외국인 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연구목적은 실태파악을 목적으로 한 연구가 있었고, 원인분석 또는 정책검증을 위한 연구는 없었다. 외국인 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한 연구도 지속되어야 하겠지만, 원인분석을 위한 연구도 시도될 필요가 있겠다. 특히, 불법체류 관련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어 왔는데, 이들 정책이 과연 불법체류자 감소를 가져왔는지 이것이 범죄 소라는 결과를 가져 왔는지에 대하여 분석하는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외국인 범죄 또는 범죄피해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사용한 연구는 비교적 적었다. 해외 연구의 경우 외국인의 범죄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적 배경을 소개하고 있다(예를 들어, Bursik, 2006; Mears, 2001 등의 연구 참조). 향후 이러한 외국인 범죄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검증하는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정책은 성공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Welsh & Harris, 2013).

외국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 연구 또한 연구대상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아 방법론상 어려움이 있다. 먼저 연구 대상의 범위는 공식통계의 경우 전국에 있는 외국인이 모집단으로 볼 수 있고, 설문조사의 경우 전국 또는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있다. 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설문조사는 조사의 어려움 때문에 주로 비확률표집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또한 외국인 밀집지역의 지역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있었다(최영신 외, 2012). 연구방법은 초창기 연구는 공식통계를 분석한 연가 주를 이루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설문조사, 면접조사, 심층면접, 현장조사 등이 복합적으로 사용된 혼합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모든 연구에서 공식통계를 사용하였는데, 「출입국관리통계연보」와 법무부, 경찰의 외국인 범죄통계 등이 사용되었다. 외국인 범죄 및 범죄피해 연구는 학제간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범죄학자와 법학자(조병인 외, 2010), 김대근 외, 2013), 그리고 건축학자(최영신 외, 2012)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한 경우가 있었다.

외국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는 소수집단에 대한 연구 중에서 비교적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 대하여 제안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다양한 형태의 거주 신분을 가지고 있다. 유학생, 노동자, 결혼 이주자, 중도입국 청소년, 불법체류자 등 다양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 이처럼 다양한 집단의 외국인과 이들의 범죄 및 피해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민과 범죄에 관한 해외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이민 1세대의 경우 범죄율이 내국인보다 낮은 경우가 많은데, 이민 2세대의 경우 이민 1세대에 비하여 범죄율이 증가하고, 내국인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Sampson, 2006, Wadsworth, 2010). 따라서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족 자녀들, 이민 2세대들, 또 다른 형태의 체류외국인들의 자녀들과 범죄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민 2세대들이 청소년기를 지나 성년이 되었을 때 범죄와 범죄피해와 관련하여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파악하여 사회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제5절 결론 및 제언

지난 30년 동안 ‘연구원’에서 수행한 소수집단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소수집단의 범죄 실태와 범죄피해 실태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잘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소수집단이라는 특성 때문에 연구에서도 상대적으로 주류집단에 비하여 주목을 덜 받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난 30년간 ‘연구원’의 소수집단에 대한 연구의 개수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아래에서는 제4절에서 검토했던 소수집단 연구들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향후 연구방향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이 장에서 검토한 연구과제들은 하나의 과제를 제외하고 모두 기본연구과제였다. 즉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 지식을 형성하기 위하여 각 소수집단의 범죄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연구의 주요 임무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수집단에 대한 ‘연구원’의 연구성과는 상당히 우수하다고 판단한다. 소수집단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제기 되고 형사사법기관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자료를 비교적 적기에 제공하여 각 기관에서 유용한 자료

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가 각 소수집단의 전반적인 범죄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범죄를 다룬 경우는 여성연구에서 낙태죄 외국인연구에서 불법체류(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범죄 정도가 있고 다른 연구들은 모두 범죄일반이거나 폭력범죄 또는 강력범죄 등 비교적 포괄적인 범죄들을 다루었다.

이러한 포괄적인 접근방식은 전반적인 범죄실태를 파악하여 현재 소수집단의 범죄 상황이 어떠한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잘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 범죄 실태에 대한 조사 방식이 연구목적이나 주제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 같기도 하다. [표 III-4-1]에서 [표 III-4-5]까지 살펴보면 연구목적에서 원인분석 연구라고 분류된 연구가 없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기본과제로서 실태 파악에 집중하다보니 소수집단 범죄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연구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범죄 연구기관이다. 연구의 단계로 보자면 탐색연구로 새로운 범죄현상에 대한 기초지식을 형성하고 실태파악연구를 통하여 범죄의 심각정도를 조사한다. 그 다음 단계는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지를 파악하는 원인분석에 대한 연구이다(Maxfield & Babbie, 2012). 물론 ‘연구원’의 소수집단 연구에도 설문조사를 통하여 범죄에 대한 원인으로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고서에서 원인으로 고려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이나 평균차이 분석 정도만 실시하고 원인변수들과 종속변수(범죄) 사이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교적 최근에는 설문조사가 포함된 연구에서 범죄의 원인을 추정하기 위한 회귀분석이 포함되기도 하였으나(최영신 외, 2012; 최영신 외, 2016), 이러한 연구가 많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회귀분석을 통하여 범죄나 범죄피해의 원인을 추정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방향성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여전히 원인분석 연구로서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Shadish et al., 2002). 사회과학에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연구는 Shadish et al., (2002)에서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 중에서 원인이 결과보다 먼저 주어지고 나중에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는 조건은 기본적으로 종속변수에 대하여 두 번의 측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원인에 해당 하는 변수가 시간적으로 최종 측정되는 종속변수보다 먼저 측정이 되어야한다. 이러

한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를 위해서는 실험설계연구를 수행하던지, 아니면 패널조사 방식의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고전적 실험설계 연구 방식의 경우 내적타당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Hagan, 2006). 다만, 소수의 참가자를 상대로 실험을 하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약이 있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실험설계 연구의 경우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한다. 소수집단의 경우 장기간 추적관찰을 요하는 패널연구 수행이 어렵더라도 시차를 두고 두 번 정도 측정하는 종단연구 설계를 도입한다면 원인분석을 위한 연구를 충분히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까지 소수집단 범죄나 범죄피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잘 진행되어져 왔다고 생각하나 향후 보다 나은 지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원인분석을 시도하는 연구가 도입되었으면 하는 제안을 해 본다.

두 번째, ‘연구원’의 소수집단 범죄와 범죄피해 연구들은 많은 경우에서 이론적 배경이 생략된 것을 발견하였다. 물론 대다수 과제의 연구의 목적이 실태파악이어서 굳이 회귀분석을 하지 않게 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지 않는데 범죄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을 연구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이처럼 실태파악에 치중하다보니 이론적 배경을 제외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나름 판단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소수집단의 범죄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적 배경은 가급적이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이론적 배경을 포함하면서 소수집단에 대한 비교적 최신 범죄학 이론을 소개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이론이 제시하는 것을 통하여 다양한 원인을 짐작해볼 수 있고, 이를 변수화해서 측정한다면 향후 연구자료를 이용한 2차자료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후속연구가 파생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소수집단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하나의 목차로 잡아서 포함시키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세 번째, 소수집단 연구에서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하여 실태를 파악하였다. 특히, 공식통계자료를 통한 추세분석과,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포함하여 양적, 질적 연구를 모두 포함하는 혼합연구방법을 대부분 도입하여 범죄 및 범죄피해 실태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하거나 소수집단의 거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경기·인천 등 광역도시들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적

대표성 있는 연구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전문 설문조사업체가 연구에 참여하여 표본 추출과 설문이 비교적 전문적으로 이루어져 연구의 질을 잘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심층면접을 포함하여 양적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연구의 우수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방법 이외에도 향후 가능하다면 형사사법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내부 자료를 좀 더 활용하는 연구가 있었으면 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대상 연구의 경우 이들에 대한 공식 범죄 자료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집계되지 않고 있다.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에 도움을 주기 위한 연구를 위해서 향후 경찰 또는 검찰과 협의를 해서 이들에 대한 공식범죄 가해 또는 피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타 연구에서도 범죄의 발생위치 자료를 경찰로부터 확보할 수 있다면 범죄지리학적 측면에서 소수집단 범죄 발생과 범죄피해 발생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네 번째, 최근에 많은 연구분야에서 융합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범죄 연구에도 다양한 융합적 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범죄학은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학문이다. 심리학, 사회학, 생물학, 법학 등 다양한 학자들이 범죄의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다학제적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 학문분야의 연구진들이 서로 협업하기에 적합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연구원’의 소수집단 연구에서도 일부 학제간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대부분인 범죄학자들로만 구성된 연구가 많았다. 향후 다양한 학문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범죄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학제적인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면 한다. 이를 통하여 범죄의 다양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섯 번째, 이 장은 과거 ‘연구원’에서 진행된 소수집단의 범죄 또는 범죄피해와 관련된 연구들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인 ‘성소수자’ 또는 ‘난민’ 등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한 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도 새로운 주제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수집단의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도 이 장을 통하여 드러났으므로 소수집단의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도 향후 확대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소수집단 범죄 및 범죄피해에만 국한 되지는 않고 ‘연구원’의 정책제안 연구 전반에 대하여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다. ‘연구원’의

연구는 다양한 범죄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안한다. 많은 경우에 다른 나라에서 시행했거나 시행중인 범죄 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에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동일한 범죄 문제에 대하여 다른 나라에서 이미 시행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새롭게 제도를 고안해 내는 것 보다 훨씬 쉽게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때문에 실제 형사사법기관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제도를 소개할 때 그 제도가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는 대부분 하지 않고 단순히 제도를 소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 미국과 영국 등의 나라에서 형사사법과 관련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그 제도의 효과성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 증거들을 수집하여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학계에서 증거기반 형사사법정책(evidence-based criminal justice policy) 운동이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가 1996년에 미국 의회가 법무부장관에게 법무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형사사법 정책들과 프로그램들에 대한 효과성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평가한 증거들을 제시하라고 명령하였다(Sherman, 1998). Sherman과 동료들이 미국에서 실시했던 다양한 형사사법 정책과 프로그램들에 대한 효과성에 대하여 과학적 기준을 바탕으로 검증한 보고를 발간하였다(Sherman et al., 1998). 이후 증거기반 형사사법 정책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쳐 확산되었고, 현재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각 기관에서 실시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효과적인지 비용대비 효용성은 어느 정도인지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는 www.crimesolutions.gov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웹사이트는 형사사법 각 분야별로 시행된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분석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개별 형사사법기관에서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도입할 때, 증거를 통하여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정책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서 다른 나라의 제도를 소개할 때 이러한 증거들을 같이 소개하면 우리나라 형사사법기관들이 더 나은 정책을 도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 범죄학계나 형사사법 기관들에서 논의하고 있지 않은 “증거기반 형사사법 정책(Evidence-based criminal justice policy)”을 도입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권수진·유진(2016).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효과적인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대근·전영실·이정민·주현경·김정규(2013). 출입국관리상 인권제고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 불법체류외국인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대근·김경찬(2018). 인권지향적 형사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 외국인의 절차보장 강화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인숙(1991). 여성출소자들의 재사회화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학회.
- 김지영(2005). 세대간 갈등과 노인학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영·최훈석(2011).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실재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영·최수형·이권철·이진국·김강원·최정규(2018). 장애인 범죄피해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철현(2010). 사회문제론. 박영사.
- 박형민(2011). 낙태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설동훈(2006). 인구정책:한국-이민정책, 『인구대사전』, 한국인구학회편, 2006
- 심영희(1987). 여성범죄의 추세, 19780-1980: 산업화와 여권운동의 맥락에서, 비판범죄론 범문사.
- 심영희·박선미(1990).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건중·전영실(1994). 노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안성훈·정진경(2018). 정신질환자 범죄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내 관리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성진(2018). 북한이탈주민 탈북과정에서의 인신매매범죄 피해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동원(1990). 정신병환자의 범죄성에 관한 연구: 강력범죄를 범한 피치로감호자와 일반 강력범죄자와의 비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준오(2002).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준오(2008). 노인범죄 및 범죄피해와 노인환경의 유해성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준오·고성호(2010). 북한이탈주민 범죄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준오·이정환(2006).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실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영실(2003). 여성의 폭력범죄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진수(2005). 형사절차상 취약계층 보호방안: 정신장애자 처우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형숙(1992). 여성범죄에 관한 연구, 법무연구.
- 조병인(1995). 국내체류 외국인의 범죄피해 및 보호실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병인·박광민·최응렬·김종오(2010). 국내거주 외국인의 조직범죄 실태와 대책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병인·박철현(1997). 불법체류 외국인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영신·김대근·채경희(2017).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실태와 준법의식 제고 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영신·강석진(2012).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와 치안실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영신·장다혜·오경석(2017).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영신·장현석(2016). 외국인 폭력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전영실(1992). 여성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최영신(1993).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Adler, F.(1975). *Sister in crime*. McGraw-Hill.
- Bursik, R. J.(2006). Rethinking the Chicago school of criminology. *Immigration and crime: race, ethnicity, and violence*. New York University Press, New York, 20-35.
- Dalton, K.(1961). Menstruation and crime, *British Medical Journal*, 2: 1752-1753.
- Hagan, F. E.(2006). *Research methods in criminal justice and criminology*. 7th edition. Boston, MA: Pearson Education, Inc.
- Maxfield, M. G., & Babbie, E. R.(2012). *Basics of research methods for criminal justice and criminology*. 3rd edition. Belmont, CA: Cengage Learning.
- Mears, D. P.(2001). The immigration-crime nexus: Toward an analytic framework for assessing and guiding theory, research, and policy. *Sociological Perspectives*, 44(1), 1-19.

- Sampson, R.J.(2006). Open doors don't invite criminals: Is increased immigration behind the drop in crime? *New York Times* March 11. Retrieved from: http://www.nytimes.com/2006/03/11/opinion/11sampson.html?_r=0&pagewanted=print.
- Shadish, W. R., Cook, T. D., & Campbell, D. T.(2002). Experimental and quasi-experimental designs for generalized causal inference. Boston: Houghton Mifflin.
- Sherman, L. W.(1998). Evidence-based policing. Washington, DC: Police Foundation.
- Sherman, L. W., Gottfredson, D. C., MacKenzie, D. L., Eck, J., Reuter, P., & Bushway, S. D.(1998). Preventing Crime: What Works, What Doesn't, What's Promising. Research in Brief.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 Simpson, G. E. & Yinger, J. M.(1985). Racial and Cultural Minorities: An Analysis of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New York: Plenum.
- Wadsworth, T.(2010). Is immigration responsible for the crime drop? An assessment of the influence of immigration on changes in violent crime between 1990 and 2000. *Social Science Quarterly*, 91(2), 531-553.
- Welsh, W. N., & Harris, P. W.(2013). Criminal justice policy and planning. 4th Edition. Waltham, MA: Anderson Publishing.
- 미국 FBI의 NIBRS 자료 분석결과와 연방교정국의 수용자 연령(https://ucr.fbi.gov/nibrs/2017/resource-pages/nibrs-2017_summary-11-6-2018.pdf, 2019년 2월 25일 최종 접속; https://www.bop.gov/about/statistics/statistics_inmate_age.jsp, 2019년 2월 25일 최종 접속).
- 대검찰청 2018 범죄분석 “연령별 범죄 발생비 추이”(<http://www.spo.go.kr/spo/info/stats/stats02.jsp>, 2019년 2월 25일 최종 접속).
- 한겨레, 환자흉기사망 의사는 우울증 명의 임세원 교수. 2019년 1월 1일자(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6569.html, 2019년 2월 25일 최종 접속).
- 연합뉴스, 80대 할머니 무차별 폭행한 정신질환자 퇴원후 체포. 2019년 1월 7일자(<https://news.v.daum.net/v/20190107161820867>, 2019년 2월 25일 최종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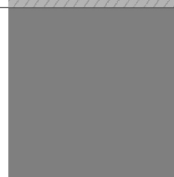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fectorsPolicy/status/lately/>, 2019년 2월 25일 최종 접속).

e-나라지표, 체류 외국인 현황(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6, 2019년 2월 25일 최종 접속).

제 4 부



범죄예방 및 대책 연구의 성과와 과제



제 1 장



범죄예방 관련 연구

박 현 호

범죄예방 관련 연구

제1절 서론

우리나라 형사정책 및 범죄학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연구 썩크탱크이며 각종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국가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법무·형사정책 분야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으로 함)이 개원 30돌을 맞이하였다. 이러한 기념적인 시기에 맞춰 지난 30년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정책실무와 이론연구의 결합,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수준 높은 국책연구기관이자, UN 범죄방지형사사법 연구기관 네트워크 회원기관으로서 글로벌 수준의 위상에 걸맞는 정책연구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연구원’에서는 2019년에 이제까지 1천종에 달하는 연구보고서 등의 성과에 대한 자기검열(self - censorship)적 리뷰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장에서는 ‘연구원’이 개원 년도인 1898년 이래 지난 30년 간 수행하여 발간된 기본과제, 일반과제, 수시과제, 협동과제 등 각종 연구과제 중에서 경찰 범죄예방, 협력방범활동, 민간경비, CPTED, 감염병/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빈곤층 밀집지역 등 안전사고 예방, 범죄예방 정책 및 프로그램 등 범죄예방 분야 연구총서 총 54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전망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이 장에서는 범죄예방 연구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과 분석방법을 먼저 설명하고, ‘연구원’에서 다루어진 범죄예방 분야 연구의 특징과 동향, 그리고 수행된 연구들의 성과에 대한 비판적이고 회고적인 평가, 나아가 ‘연구원’이 미래적으로 수행하거나 추진하게 될 범죄예방 분야 연구의 전망을 논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분석방법론

1. 범죄예방의 이론적 분류

Brantingham과 Faust는 질병예방의 공중보건 모델과 유사한 세 가지의 범죄예방 유형을 제시하였다.¹⁾ 먼저 1차적 범죄예방은 물리적, 사회적 환경 중에서 범죄원인이 되는 조건들을 가장 초기 단계에서 포괄적으로 완화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일탈과 범죄에 관련된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를 포함하는 예방활동으로 “사회적 예방”이라 할 수 있는데, 환경설계(신규 건축물 등 도시환경의 계획과 디자인), 이웃감시, 민간 경비, 일반예방, 개인 안전, 범죄와 범죄예방 교육, 등과 형사사법기관의 활동은 1차적 범죄예방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차적 범죄예방은 잠재적 범죄자를 초기에 발견하고 범죄 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2차적 범죄예방은 우범지역에 초점을 맞춘다. 1차적 예방의 프로그램이 범죄행위를 야기할 가능성을 가진 문제들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2차적 예방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요인들과 범죄/비행을 조장하는 미시적 요인들에 더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2차적 예방활동은 취약한 구체적 우범환경요소나 우범자를 대상으로 이들과 많이 접하는 지역사회, 교육자, 부모에 의해 이루어진다.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아온 물리적 디자인 변경(취약한 기존 건축물이나 환경의 개선), 사회적 행동 변화, CCTV 등 영상감시 강화, 지역사회경찰활동, 등 “상황적 범죄예방(situational prevention)”이라 할 수 있다.

반면 3차적 범죄예방은 실제 범죄자를 대상으로 범죄자들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체포, 기소, 교도소구금, 치료, 사회복귀와 같은 것이 3차적 예방과 관련되는 것이다. 3차적 예방활동의 대부분은 교정,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 법무부가 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이론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예방활동은 ①사전활동, 즉 범죄사건 이후에 대응하는 활동이 아니라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수행되는 행위이고, ②실제의 범죄 및 공중에게 인지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활동이며, ③범죄환경에 대한 직접적 통제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활동(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적 기회를 제거하는 활

1) Brantingham, P. J. & F. L. Faust, A conceptual model of crime prevention, *Crime and Delinquency* 22, 1976, p. 292.

동뿐만 아니라, 범죄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개선시키는 활동, 실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자들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활동)도 포함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3차적 예방인 재범방지는 제외하고 주로 1차적 예방과 2차적 예방 활동이나 전략 또는 체계에 대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분류 및 분석하였다. 즉, 경찰 범죄예방, 협력방범활동, 민간경비, CPTED, 감염병/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빈곤층 밀집지역 등 안전사고 예방, 범죄예방 정책 및 프로그램 등이 주요 리뷰 대상이다.

또한 이 장의 특성이 53종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의 연구보고서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유사 연구사례가 많지 않고 연구방법이 뚜렷하지 않은 한계로 인하여 제한되지만 유사한 접근을 한 연구논문들을 참고하였다. 하영원 외 (2016)의 「마케팅연구」 30년 : 게재논문의 특성과 연구주제 추세분석과 김연성(2016)의 「품질경영학회 50주년 특별호: 서비스품질 분야 연구 리뷰」가 참고 되었고, 특히 정규석 외(2016)의 「품질경영학회 50주년 특별호: 품질경영 분야 연구 리뷰」는 보다 분석의 체계성이 돋보여서 이 장의 분석에 큰 도움이 되었다.

2. 분석방법

가. 분석 대상

이 분석 연구는 개원 이후 1989년부터 발간된 '연구원'의 기본과제, 일반과제, 수시 과제, 협동과제 등 각종 연구과제 별로 생산된 범죄예방 분야 연구총서 총 53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범죄예방 주제별로는 공공-민간 협력범죄예방 및 민간경비 분야는 14종이었고,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분야는 22종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 분야는 2015년부터 연구가 시작된 분야라서 7종에 불과하였다. 범죄예방 정책 및 (교육) 프로그램은 1993년 이후 10종의 연구총서를 발간하였다. 다만 이 중에서 연구 보고서가 아닌 대국민 홍보용 자료로 작성된 「범죄예방을 위한 일상생활의 지혜」(박경래·정영오, 2008; 박경래·박미랑, 2010) 2종은 그 특성 상 분석에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51종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다만 ①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III) : 학교 및 학교주변 범죄예방

을 중심으로」(5종), ②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IV) : 공원 및 문화재 관련시설 범죄예방을 중심으로」(3종), ③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III)」(3종), ④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 실효성 검증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I) : 국민 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을 중심으로」(2종), ⑤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II) : 1인가구 밀집지역의 안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2종)는 1개의 주제에 대한 단년의 연구를 편의상 보고서 분권화 한 것으로서 연구방법별 일부의 분류 및 분석에서는 각각 1종으로 산정하였다.

나. 연구의 분류

1) 연구방법별 분류

연구방법별로는 ① 이론적 연구, ② 제도 및 정책 연구, ③ 실증적 연구, ④ 복합적 연구로 나누었다. 여기서 이론적 연구에는 이론 개발이나 문헌리뷰와 같이 실증연구 없이 이론정립을 주목적으로 하는 논문이 포함되었다. 제도 및 정책 연구는 가설 검증이나 이론적 논의가 아닌 범죄예방 관련 현 제도나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 분석이나 새로운 제도나 정책 개발 및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이다. 실증적 연구는 수집된 자료에 근거해 제시하는 이론, 가설, 모형을 검증하는 연구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사용된 연구디자인에 따라 실험(experimentation), 계량적 설문(survey) 통계분석, 2차자료분석, 공간통계분석, 면접조사 등 질적(qualitative) 연구 등이 있다. 복합적 연구는 방법론 별로 '① + ②', '① + ③', '② + ③' 또는 '① + ② + ③' 등의 형태로 연구방법이 혼합된 연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살펴볼 때 [표 IV-1-1]과 같이 공공-민간 협력범죄예방 및 민간 경비 분야는 제도 및 정책 연구가 6종으로 가장 많았고,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분야는 통섭적 성격을 반영하듯 복합연구(9종)가 가장 많았다. 안전 분야는 제도 및 정책 연구와 복합연구만 2종씩 있었고, 범죄예방 정책 및 프로그램 연구는 이론 연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연구방법이 고루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 범죄예방 연구방법별 분류

대분류	연구방법	종수	계	실제 편수
공공-민간 협력범죄예방 및 민간경비	① 이론 연구	1	15	15
	② 제도 및 정책 연구	6		
	③ 실증 연구	5		
	④ 복합 연구	3		
범죄예방환경설계	① 이론 연구	0	12	21
	② 제도 및 정책 연구	0		
	③ 실증 연구	3		
	④ 복합 연구	9		
안전 일반	① 이론 연구	0	4	6
	② 제도 및 정책 연구	2		
	③ 실증 연구	0		
	④ 복합 연구	2		
범죄예방 정책 및 (교육) 프로그램	① 이론 연구	0	9	9
	② 제도 및 정책 연구	3		
	③ 실증 연구	3		
	④ 복합 연구	3		
합계		40	40	51

* 실제 종수는 분권화 보고서의 편수를 반영한 것을 의미함.

2) 연구주제별 분류

이 장은 크게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을 포함한 공공-민간 협력범죄예방 및 민간경비,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안전 일반, 범죄예방 정책 및 (교육) 프로그램 등 4개의 주제로 구성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공공-민간 협력범죄예방 및 민간경비 분야에서는 경찰의 방법활동, 민간경비산업, 지역자율방범대 등 자율/자위 방법활동, 지역 사회경찰활동(파트너십)로 구분하였고, 범죄예방환경설계 연구 분야는 CPTED 제도, 학교 CPTED, 공원/문화재 CPTED, 범죄위험평가도구 개발, CPTED 효과성 분석, 방범용 CCTV 등으로 분류하였다. 안전 분야는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 예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국민 체감안전도 개선대책, 범죄예방 정책 및 (교육) 프로그램, 범죄예방 정책, 약물남용, 청소년 범죄 및 비행, 범죄예방 교육 등으로 구분하였다.

[표 IV-1-2] 범죄예방 연구주제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공공-민간 협력범죄예방 및 민간경비	경찰의 방법활동	지역경찰, 순찰활동, 치안활동, 무기사용, 민생치안
	민간경비	민간경비산업 육성, 민간경비의 성장
	자율/자위 방법활동	현금다액취급업소 방법
	지역사회경찰활동(파트너십)	시민참여
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제도	외국 사례, 관련 법규, 정부 정책
	학교 CPTED	학교 CPTED 체크리스트 학교 범죄, 불안감 특성
	공원/문화재 CPTED	공원/문화재 CPTED 체크리스트 공원/문화재 범죄 특성
	범죄위험평가도구	주거지역, 상업지역, 성폭력/학교폭력, 지하철역사
	CPTED 효과성 분석	범죄 효과성, 범죄 두려움 효과성
	방법용 CCTV	CCTV 운영실태, 운영 개선안
안전 일반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	다중인명피해사고, 형사정책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감염병, 형사정책
	국민 체감안전도	정책방안, 1인가구 안전
범죄예방 정책 및 (교육) 프로그램	범죄예방정책	외국 사례, 범죄예방 제도
	약물남용	청소년 실태, 약물남용
	청소년	청소년 비행, 가출청소년 비행, 청소년 참여법정
	범죄예방 교육	초등생 사이버범죄,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제3절 범죄예방 연구의 특징 및 동향

1. 범죄예방 연구의 개괄적 특징 및 동향

가. 10년 주기 별 범죄예방 연구의 특징

10년 단위로 크게 3주기로 연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1주기에는 88서울올림픽 이후 민간경비 산업의 성장이 가속화 되고, 김영삼 문민정부 출범 이후 사회, 경제적인 민주화의 가속화 그리고 급속한 경제의 성장에 따른 현금 강절도 등의 민생침해 범죄

증가를 반영하듯 민간경비에 대한 연구와 사후 대책보다 사전 예방 시스템에 대한 외국사례에 대한 연구가 태동하였다. 그리고 지역사회경찰활동 체계를 조명하면서 주거시설 CPTED에 대한 초기단계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다년도 과제는 전혀 없이 단년도 과제만이 존재하였고, 연구보고서도 단권에 그쳤으며 실증 연구보다는 이론, 제도/정책 위주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2주기에는 IMF외환위기로 길거리범죄, 생계형 민생침해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민간경비서비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으며, 치안불안으로 인한 자위/자율 방법 활동이 강조되었고, 2003년 8월에 몇 개의 파출소를 통폐합한 순찰지구대에 의한 지역경찰제가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청소년 비행, 약물남용 문제가 심화되고 있었고, 2000년대 초반 연쇄살인 범죄가 창궐하면서 공공용 방범CCTV가 노상에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곧 이어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를 보였다. 더불어 학교폭력 만연으로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시대상에 부응하여 ‘연구원’에서는 순찰지구대 체계에 대한 연구, 시민의 경찰활동 참여에 대한 연구, 자율방범활동 활성화에 관한 연구, 그리고 주거지역 외에 다양한 시설과 장소에서의 CPTED에 대한 복합적 연구가 활발하게 시작되었다.

이어 3주기에는 미국발 금융위기와 세계경제의 혼란이 커져갔고, 2012년에는 수원 오원춘 토막 살인사건 발생으로 전 국민들이 범죄에 대한 불안이 매우 커졌고 이를 반영하듯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자치단체의 2013년 이후 CPTED자치조례가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확산되었다. 범죄안전 환경 구축을 위한 국회의 노력도 이어지면서 2014년 건축법 개정으로 ‘범죄예방건축 기준’ 고시가 발표되고 전국적으로 CPTED사업이 크게 확대되었다. 2014년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안전 문제가 사회적/정치적으로 쟁점화되는 계기가 되었고, 2015년에는 메르스 감염병 사태로 국민 불안감이 확산되었다.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간에는 소위 촛불혁명을 통해 대통령 탄핵 및 평화적 정권 교체에 따라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되었다.

마찬가지로 3기의 이러한 사회 상황에 발맞추어 ‘연구원’에서는 협동연구 과제가 등장하고 점차 이러한 형태의 연구가 증가해 왔으며 당연히 연구 예산 규모도 커져가고 있다. 단년도에 그치던 연구도 다년도 과제로 변모하고 있으며 연구 대규모화에 따라 연구참여자 수도 커졌다. 연구보고서는 단권으로 커버하기에 그 분량이 커져서

분권화 추세로 이어졌고, 특히 학제적 특성으로 인해 CPTED 분야 연구가 활성화 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건축·지리 등 융복합/통섭 연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범죄예방 및 범죄 문제 저감의 성과/효과 평가에 대한 연구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범죄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와 1인 가구 취약계층의 증대로 인해 1인 가구/빈곤층 안전 연구도 시작되었다.

【표 IV-1-3】 범죄예방 연구의 시대 주기별 특징

주기	기간	시대적 특징	연구의 특징
1주기	1989-1998년 10년	88서울올림픽 이후 민간경비 산업의 성장 - 문민정부 출범 이후 사회, 경제적 민주화 - 급속한 경제의 성장에 따른 현금 강절도 범죄 증가	- 민간경비에 대한 연구 시작 - 사후 대책보다 사전 예방 시스템에 대한 외국사례 연구 시작 - 지역사회경찰활동 체계를 조명 - 주거시설 CPTED 초기단계 연구 - 단년도 과제만 존재함 - 단권의 연구보고서 - 이론, 제도/정책 연구 위주
2주기	1999-2008년 10년	- IMF외환위기로 길거리범죄, 생계형 민생침해 범죄 급증으로 민간경비 수요 급증 - 치안불안으로 자위/자율 방법 활동 강화 2003년 8월 순찰지구대에 의한 지역경찰제 시행 - 청소년 비행, 악물남용 문제 심화 2000년대 초반 연쇄살인 범죄 창궐 - 공공용 방범CCTV의 등장 및 확산 - 학교폭력 만연으로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 순찰지구대 체계연구 - 시민의 경찰활동 참여 연구 - 자율방범활동 활성화 연구 - CPTED 복합적 연구의 시작
3주기	2009-2018년 10년	- 미국발 금융위기와 세계경제 혼란 2012년 수원 오원춘 살인사건 발생으로 국민 범죄불안 증폭 2013년 이후 CPTED자치 조례 확산 2014년 건축법 개정으로 '범죄예방 건축 기준' 고시 및 CPTED사업 확대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로 안전문제가 사회적/정치적 쟁점화 2015년 메르스 감염병 사태로 국민 불안감 확산 2016년 10월 - 2017년 4월 촛불혁명, 대통령 탄핵 및 정권 교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 협동연구 과제의 등장 및 증가 - 연구 예산 규모의 확대 - 다년도 과제의 등장 및 증가세 - 연구참여자 수의 확대 - 연구보고서의 분권화 추세 - CPTED 분야 연구 활성화, 대규모화, 실증 및 복합 연구 증가 - 도시, 건축, 지리 등 융복합/학제 연구 증가 - 성과/효과 평가연구의 증가세 - 범죄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활성화 1인가구/빈곤층 안전 연구 시작

나. 연구총서의 양적 증가

범죄예방 및 국민안전 분야의 연구보고서인 연구총서들은 [표 IV-1-4]와 같이 1989년~1993년간에는 10종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이후 10년 간 2003년까지는 겨우 7종에 불과하여 범죄의 사전적 예방에 대한 ‘연구원’의 연구 투자가 부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시 2004년에서 2008년 간 5종, 특히 2009년과 2013년 사이에는 18종으로 급증하게 되었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12종으로서, 보고서 분권화를 감안하더라도 확연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2004년 이후부터 범죄에 대한 사후 수사나 대처보다는 사전 예방에 대한 연구 수요가 증가하고 또한 그 수요에 부응하여 확대 및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할 것이다.

[표 IV-1-4] 범죄예방 관련 연구총서 종수의 추세

번호	연도	연구총서 종수	비고
1	1989-1993 (5년)	10	
2	1994-1998 (5년)	2	
3	1999-2003 (5년)	4	
4	2004-2008 (5년)	5	
5	2009-2013 (5년)	18	
6	2014-2018 (5년)	12	
합계		51	

다. 저자 수

범죄예방 및 국민안전 분야의 연구총서들을 기준으로 할 때 참여 연구자들의 수가 점차 확대되어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즉 1주기 때인 1989년부터 1998년까지는 11종의 연구총서에서 1인의 연구자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많아 봐야 2인 정도였다. 2주기인 1999년에서 2008년 사이에도 대부분 1-2인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부터 「범죄예방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신의기 외, 2007)를 통해 처음으로 3인 이상의 다인(6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2009년 이후에는 도시공학, 건축공학, 범죄학, 지리학 등 다양한 학문 및 연구 분야가 어우러진 CPTED를 중심으로 분야 간 협동 및 융복합·학제 연구가 활발

해지면서 연구 예산 규모와 연구 범위가 커지는 경향을 보이면서 저자수가 급증하게 되었다. 특히 협동과제보고서인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Ⅲ) : 학교 및 학교주변 범죄예방을 중심으로」(강은영 외, 2010)와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 실효성 검증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Ⅰ) - 상 : 국민 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을 중심으로」(전영실 외, 2016),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Ⅲ) : 빈곤층 밀집지역의 안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박준휘 외, 2018)의 경우 참여 연구자가 각각 14명, 16명, 15명으로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다.

2. 공공-민간 협력범죄예방 및 민간경비 연구의 동향

공공-민간 협력방법 및 민간경비 분야는 이론 및 정책 중심 연구 비중이 가장 큰 편으로 분석되었다. 2010년대 들어서는 실증연구 비중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긴 하였다. 그러나 2013년 이후에는 이 분야 연구가 거의 중단되었는데, 이는 협력범죄예방이나 민간경비는 주로 경찰청 소관 사무이고 본청과 경찰대학 치안정책 연구소와 같은 연구기관의 자체 용역 과제 예산이 점차 확대되면서 경찰청과 산하 연구기관들이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전문 연구를 대신하는 경향으로 인해 그 분야 연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연구의 동향

범죄예방환경설계 분야는 범죄학, 경찰학, 도시공학, 건축설계, 지리정보 다양한 학문 간의 융합적 접근이 긴요한 학제적 성격을 반영하듯 참여 연구자들이 상당히 많고 연구 예산과 규모가 큰 협동과제의 비중이 가장 큰 분야이다. 물론 「공동주택의 범죄방어공간 도입에 관한 연구」(도건효, 1991)나 「주택지에서 범죄발생공간의 유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 동구의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박강철, 1994)에서 보는 바와 같이 90년대는 CPTED 분야에 대해 단 1명의 연구자만 존재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CPTED는 서울시에서 2011년과 2012년에 마포구 염리동과 강서구 공진중학교 등에서 범죄예방디자인 공공사업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성과 평가 연구를 ‘연구원’에 의뢰하여 수시과제로 범죄와 두려움 저감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시 공진중학교 사례 이후에는 학교폭력예방디자인의 후속 사업으로 은평구 충암중학교 주변의 지역에 ‘안심통학로’ 사업을 추진하여 ‘연구원’이 안심통학로 사업의 효과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한편 CPTED의 한 축으로 이해되고 있는 범죄예방용 공공 CCTV가 2002년 이후 급속하게 확대 설치되어 왔는데 이러한 공공 CCTV의 운영 실태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즉, CPTED 분야는 실험사례나 운영 실태를 분석, 평가하는 연구가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4. 안전 관련 연구의 동향

안전 분야에서는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2014년 판교테크노벨리 축제 환풍기 붕괴 사고, 2015년 발발한 감염병인 메르스 등 직접적인 위협요소로 작용한 사건 및 사고에 따라 그러한 안전 문제에 대한 형사처벌과 양형, 제재 등 형사정책적 대응 현황과 방안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경향이 한 축으로 보여진다.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시기에 실제 많은 위협보다는 간접적·심리적 위협요소인 ‘체감안전도’와 관련하여 체감안전지수를 개발하고 형사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이 체감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체감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 정부의 10조 규모의 빈곤지역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응하는 빈곤층 밀집지역 안전실태와 개선안 도출 연구는 그러한 범죄 불안을 중심으로 본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한 각론적 연구가 CPTED와 같은 안전 환경 개념을 배경으로 하여 본격화되고 있음을 반영해주고 있다 할 것이다.

5. 범죄예방 정책 및 프로그램 연구의 동향

범죄예방 정책 및 프로그램 분야에서는 1993년 각국의 포괄적인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2007년에 일반적인 약물남용 교육 실태에 대한 분석 연구가 있었다. 청소년 분야 범죄예방 연구에서는 2003년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소년보호교육기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 2004년 가출청소년 비행예방에 관한 연구, 이후 10년이 지나 2014년에는 청소년 참여법정의 성과분석 연구가 있었다. 2007-2011년 사이에는

범죄예방 차원의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가 초등생 사이버 범죄,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주제별 매뉴얼 및 교안(강의안)도 개발이 되었다.

이처럼 범죄예방 정책 및 프로그램 연구 분야에서는 정책 연구 차원을 넘어서 예방 교육 프로그램과 강의안까지 구체적으로 개발 및 도출하는 실용적인 연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보인다.

제4절 범죄예방 연구의 성과 평가

1. 공공-민간 협력방법 및 민간경비 연구의 성과 평가

경찰 등 공공-민간 협력방법 및 민간경비 분야에서는 80년대와 90년대에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나 민경 파트너십, 로컬 치안시스템 등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외국사례와 인식조사 분석에 그치는 등 큰 성과를 보여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구의 규모가 커지는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특히 「지역공동체내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조병인, 2016)의 경우 경찰청이 국회보고자료로 활용하는 중요한 정책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국민과 함께하는 범죄예방 체계 구축」이라는 제목의 경찰청 국회보고자료(2015년 주요추진업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근거자료가 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²⁾

- 주민요구·사건발생 지역 등에 범죄예방 진단팀 투입, 방법 컨설팅 서비스
- CPTED 예산 확보 추진
- 자치단체 등과 협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안전장비 지원
- 베스트자율방법대 선정 등 자율방법대 활성화

이 밖에도 지역치안협의회 운영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경찰-보호관찰 파트너십 확대 방안, 그리고 경찰-민간경비 파트너십 제고 방안을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연구원'에서 제공한 기관평가 자료를 참고하였다.

해주는 등의 실적을 보여 주었다.

다만, 아쉬움을 한 가지 지적하자면 무엇보다 이 연구들이 협력방법과 민간경비의 활성화와 육성의 현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은 맞지만 그 관점이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국가차원의 범죄예방기구를 설립하여 국가적이고 장기적인 비전과 로드맵을 수립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연구 및 논의되지 못하여 단편적이고 테마식 연구에 그친 느낌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대통령과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범죄 대책 관련 새로운 이름과 전략의 공약을 남발하면서 통일성 있고 일관된 정책과 전략을 계획, 수립하고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한계로 인해 연구도 ‘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그러한 경향을 맞추어 온 점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하지만 근본적인 차원에서 범정부적인 협력범죄예방의 체계를 제시하고 장기적인 국가범죄예방전략 수립을 위한 대안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2.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연구의 성과 평가

CPTED 분야는 90년대에는 ‘연구원’의 연구가 예산이나 인력의 한계로 인해 미미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1년 CPTED 연구는 그 시점을 고려할 때 1992년에 국토교통부의 「방법설계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오늘날 건축법에 범죄예방건축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는데 작은 초석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11년까지 이어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CPTED)의 제도화 방안 시리즈(I-III) 연구들은 국내외 셉테드 정책, 프로그램, 법규 등 사례와 당시 크게 사회문제 이슈로 대두되었던 학교폭력 문제와 도시공원 내의 범죄와 무질서를 경감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셉테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현장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셉테드 개선안을 도출함으로써 교육부와 자치단체 등이 관련 학교안전환경 지침이나 조례를 마련하거나 개정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어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시리즈(I-III) 연구들은 셉테드의 가장 중요한 단계이면서 국제표준 ISO 31000 위험관리의 핵심요소인 범죄위험평가(crime risk assessment)

톨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학교, 지하철 역사 등의 다양한 범죄 취약공간과 주요 시설에 대하여 체크리스트 방식을 기초로 개발하였다. 이는 경찰,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사업주체가 제한된 셉테드의 자원을 무분별하게 투입하거나 낭비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과학적이고 비용효과적이며 합리적인 셉테드의 자원 배분 의사결정을 돕는 기준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밖에 구체적인 사업추진 사례로서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의 소금길 CPTED 사업은 국내의 많은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었고 실제로 전국적으로 이 사례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공진중학교 사례도 2014년 교육부 방침에 포함되어 전국 각 학교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나름의 성공 사례는 염리동의 소금길 사업과 공진중학교의 셉테드 사업이 얼마나 범죄와 두려움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었는지 설문 조사에 의한 실증조사 분석 결과가 중요한 부분이었고, '연구원'에서 이 성과 연구를 통해 '범죄 완화와 두려움 감소, 그리고 지역주민 유대감 및 공동체 의식 등 집합효율성의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후속 사업으로 은평구 충암중학교 주변 지역에 '안심통학로' 사업의 효과성 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성과(높은 시설 만족도, 이용 정도, 욕설이나 언어폭력 감소 효과 등)를 확인해주고, 학교폭력 예방사업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콘텐츠 제작 등 문제점과 개선점을 설문조사,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견하여 제시해준 점은 나름의 큰 성과로 판단된다.

가장 최근인 2018년에는 「범죄예방 목적의 공공 CCTV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한민경 외, 2018)를 통해 2002년부터 꾸준히 큰 폭으로 증가해 온 범죄예방용 공공 CCTV의 확산 실태를 조사 및 분석하여 그러한 추세가 얼마나 합리적인 근거와 과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졌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무분별한 확대 설치를 지양하고 개선되어야 할 점들을 체계적이고 실증적으로 가이드 하는 역할을 하였다.

다만,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자면 먼저 대형 과제에서 각 세부 과제들을 연구진이 종합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어려웠는지 연구보고서가 다소 지나치게 편익상 분권화된 점(예를 들면,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Ⅲ) : 학교 및 학교주변 범죄 예방을 중심으로」)이다. 구체적인 1개 주제에 대하여 연구총서가 총 5권이나 발간되다 보니 아무래도 독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면이 있고, 2-3권 정도로 충분히 통합

또는 압축할 수 있는 정도의 연구라고 생각된다.

또한 본질적으로 가급적 적은 사회적 비용으로 범죄와 두려움이라는 삶의 질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공동체의 소박한 노력인데 최근의 자자체가 중심이 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들은 대부분 CCTV 설치를 필수적으로 보면서 조명(특히 고보조명), 벽화 등 다소 지나치게 물리적이고, 천편일률적이고, 가시적이며 고비용의 옵션들을 중심으로 추진해 왔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그간의 '연구원'의 연구총서 내용과 분석 결과를 엄격하게 살펴보면 CPTED의 사업성과에 대해 다소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표현들이 주가 된 반면 날카롭고 비판적인 해석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한민경 외(2018)의 연구를 보면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CCTV 설치의 가치에 의구심을 품고 가급적 CCTV 설치를 하지 않기 위한 CPTED 원칙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많은 수의 CCTV 설치는 실패한 CPTED의 증거로 제시할 정도로 우리 사회와 인식의 괴리가 있다. 이처럼 다소 전시행정적이고 보여주기식 CPTED가 범죄 문제 해결에 대한 만능이라는 잘못된 오해와 편견이 완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가진 범죄예방을 위한 한정된 자원이 지나치게 편중 투자되지 않도록 보다 냉정하고 비판적인 해석과 연구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특히 '연구원'과 같은 국책연구기관은 국민의 혈세가 불합리하게 낭비되는 것을 감시하고 견제, 비판해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3. 안전 관련 연구의 성과 평가

안전 분야에서는 각종 다중인명피해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대응으로서 일반예방 또는 억제효과를 위한 형사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주가 되었다. 이 중에서 특히 「실효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이천현, 2015)는 **법령, 지침 등 제·개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5.12.29. 법률 제13639호 일부개정)에서 사망자 시신에 관한 규정 제20조의2 신설을 제안하였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1.6. 대통령령 제26865호 일부개정) 중 역학조사반의 구성에 관한 제15조 제2항의 개정을 제안하여 실제 개정하였다. 2015년 11월 30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최 국제포럼, 2015년 9월 3일 법무연수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최 「제6회 형사사

법포럼: 재난없는 안전사회를 위한 형사정책적 과제」 등 새로운 이론 및 정책개발을 위한 학술대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였고, 2015.12. KIC ISSUE PAPER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형사정책방안」을 발간 및 배포하는 등 국가 및 사회발전을 위한 새로운 지식과 정책 제안에 기여하였다.

또한 2016년도부터 시작된 5개년 간의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 실효성 검증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시리즈 연구는 ①2016년에는 국민의 체감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의 연구를 통해 우선적으로 체감안전 지수를 개발하고, 형사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이 체감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체감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②2017년 1인 가구 밀집지역의 안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1인 가구 범죄 현황, 범죄두려움 수준, 그리고 범죄자의 행태가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분석하였으며, 법제분야 연구를 통해 현행 우리나라 1인 가구 정책을 개관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으며, ③국내 빈곤층 밀집지역의 범죄문제가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를 실증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최근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하자면 5개년 간의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 실효성 검증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시리즈 연구에 ‘1인 가구 밀집지역의 안전실태와 개선방안’과 ‘국내 빈곤층 밀집지역의 범죄문제’를 별도의 주제로 구분하여 연구를 한 점이 다소 의문이다. 왜냐하면 빈곤층 밀집지역 내에 범죄나 안전에 취약한 1인 가구가 밀집되어 있고 이는 연구의 중복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1인 가구 밀집지역의 안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대부분 물리적 디자인과 CPTED 요소에 집중되었다. 물론 범죄 불안감이 1인 가구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공동체 연대, 교육, 교류, 보건위생 등 사회적 예방(social prevention)의 접근방법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반면 상대적으로 물리적 디자인 변경에 다소 편중된 연구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4. 범죄예방 정책 및 프로그램 연구의 성과 평가

범죄예방 정책 및 프로그램 분야에서는 초기 「각국의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연구」(이건중·전영실, 1993)를 통해 우리나라의 범죄예방정책에 필요한 내용을 적절히 제시하였다. 특히, 그 연구결과로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25년여의 세월이 흐른 2019년 1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현재 매우 중요시하는 정책들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언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줄 정도이다. 즉, 제안 내용의 핵심은 정부 범죄예방전담기구의 설치, CPTED 연구개발, 청소년비행예방 프로그램 개발, 민간자율방범활동 육성, 민간경비산업 육성, 범죄다발 핫스팟 구역 분석에 의한 집중적 범죄예방활동, 경찰의 범죄예방 기능 강화, 재범방지 활동 강화인데 이는 현 정부, 법무부, 경찰이 가장 중시하는 치안 및 범죄예방 정책이자 전략에 속한다.

이러한 예언적 제안에 맞춤식 대응이라도 하듯이 ‘연구원’의 범죄예방 분야들은 그러한 내용들 위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청소년비행예방 프로그램 연구의 일환으로 「청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소년보호교육기관의 역할확대 및 강화방안」(정재준·원혜옥, 2003), 「가출청소년의 비행예방에 관한 연구」(연성진·민수홍, 2004), 「청소년 참여법정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김지선 외, 2014)는 청소년의 가출 행위, 약물남용 등 각종 비행 및 범죄를 예방하거나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정부부처, 경찰, 사법기관, 관련 시민단체, 법원, 교육기관들이 수립해야 할 정책과 해야 할 일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한 축인 「약물남용 예방교육의 실태와 효율화 방안」(강은영, 2004) 연구에서는 약물남용 예방 정책과 교육의 실태와 현황을 분석하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유관 기관 종사자 인식 증진, 예방 교육 인력 확보, 예방교육 콘텐츠 개선, 수용자 등 고위험군 집중 교육, 약물치료과의 연계, 금연금주운동의 확대 등 구체적인 처방을 제시한 데 기여하였다.

한편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3종의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리즈 연구 중에서 「초등 학생을 위한 사이버범죄 예방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최수형·이원상, 2009)는 기존의 프로그램들은 강사의 강의, 교육자 대상 교육을 위한 내용에 국한되어 진행되는 반면 ‘연구원’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ICT를 활용하여 교육담당자에게 편의를 제공

할 뿐 아니라 초등학생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ICT 방식 프로그램을 보급하였고, 교육담당자들을 위한 가이드북도 함께 제공하는 등 초등학생 사이버범죄 예방에 기여하였다.

이밖에도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범죄피해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북한이탈주민(청소년 프로그램, 성인 프로그램),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 프로그램 매뉴얼과 강사 교안(강의안)도 개발하여 이러한 계층의 범죄 피해 예방과 재범 방지에 이바지 하였다.

다만 범죄예방 정책 및 프로그램 분야에 대한 연구가 주로 개별 문제에 대한 단편적인 예방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에 치중되는 양상이 있어서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국가범죄예방정책 체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재난과 화재의 경우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소방기본법」 등이 제정돼 있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는 것에 반하여 우리나라에는 범죄예방을 위한 기본법이 부재하다. 물론 소방은 주로 그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관련 정부부처가 소방방재청 등 뚜렷하게 구분되지만 범죄예방의 경우에는 경찰청,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고, 이로 인해 협력범죄예방 체계가 중요한 영역인 것은 사실이다. 「범죄예방정책기본법」 제정을 위한 준비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추진하였고, 경찰청이 유사한 법안을 의원입법형식으로 발의하면서 상호 충돌하면서 실현되지 못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연구원’에서는 특정 정부부처가 아닌 총리실이나 대통령직속의 ‘국가범죄예방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하는 기본 법안을 도출하고 제시하는 보다 큰 범위의 연구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할 것이다.

제5절 범죄예방 연구의 전망과 방향

1. 공공-민간 협력방법 및 민간경비 연구의 전망과 방향

지역경찰의 방범순찰, 시민 자율방범활동, 공공-민간 협력방법 및 민간경비 분야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13년 이후 이 분야 연구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협력범죄예

방이나 민간경비 사무는 주로 경찰청 소관으로서 경찰청이나 치안정책연구소와 같은 연구기관이 이 분야 자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도 연구 중복성 문제로 ‘연구원’이 직접 이 분야 연구를 수행하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최근에 경찰청이 산하에 국립치안과학원 설립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³⁾ 경찰대학 부설인 치안정책연구소를 확대·개편하고 경찰청 부속기관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이러한 기획안이 경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오는 5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예산과 인력 충원안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국립치안과학원이 설립이 되어 이 분야 연구를 주도하게 될 경우에는 ‘연구원’의 이 분야 연구의 수요는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재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 법안 통과로 실제 이 제도가 시행이 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범죄예방에 대한 연구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연구원’에 경찰청 인력이 파견되어 협력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이 분야 연구는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어 생활안전과 범죄예방의 기능이 자치행정에 의해 심화될수록 일선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단위 예방서비스의 양태와 체계, 성과평가 시스템 등에 대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사무 중첩이나 충돌에 대응하는 배분과 상호 협업체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연구의 전망과 방향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범죄예방환경설계 분야는 그 어느 분야보다 연구의 수요가 더욱 크게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CPTED는 현 지방자치단체의 종합행정 중에서 도시계획 및 관리, 건축, 도시재생, 도시안전, 낙후지역 활성화 등과 직결되는 요소나 이슈들이 많아서 선출직 자치단체장들에게는 안전도시 인증 등과 연계된 CPTED 사업수요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장에게 범죄안전 및 치안에 대한 책임과 권한까지 확보하게 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안전지수의 공표)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7개 분야(① 교통사고, ② 화재, ③ 범죄, ④ 자연재해, ⑤ 생활안전,

3) 연합뉴스 TV [2019-01-22일자], 경찰, 국립치안과학원 설립 추진…TF 구성(<http://www.yonhapnewstv.co.kr/MYH20190122010600038/?did=1825m>, 2019년 1월 21일 최종 접속).

⑥ 자살, ⑦ 감염병)에 대한 지역안전등급을 공개하게 되면서 도시의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 개선에 참여한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CPTED는 위해지표인 5대범죄(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를 낮추고, 경감지표인 범죄예방 CCTV대수를 늘리거나 설치 위치를 최적화하기 위해 더욱 정밀한 구역 단위 조사연구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CPTED는 주민들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범죄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 해소에 기여해 주고 있는데 불안감 수준이 어떤 셉테드사업에 의해 얼마만큼이나 개선되었는지 등에 대한 성과와 추세 파악도 과학적인 연구조사가 필수적이다. 더욱이 2002년에 수원시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안전도시 인증을 받은 이래 여러 지자체가 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다. WHO 국제안전도시란 1989년 스웨덴 제1회 사고손상 예방 학술대회에서 태동된 개념으로서, 지역사회(Community) 모든 구성원들이 사고 손상⁴⁾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한다(제주자치도 홈페이지 www.jeu.go.kr 참고). 이 국제인증 취득했다는 의미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라는 것을 공인해주는 것으로 인식되어 도시브랜드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들이 앞을 다투어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신청하고 이를 획득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와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수원시가 처음 안전도시 인증을 받을 때에는 안전도시의 인증 기준에 교통안전, 재난안전, 보건자살 예방, 재해안전, 학교 안전 등이 추가 되었고, 범죄안전은 심사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었다. 그러나 범죄문제가 2003년 이후 연쇄살인범죄 발생 등 범죄안전의 문제가 부각되자 범죄도 안전도시의 한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2009년에 충북, 강원도 원주시가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되었고 공인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관할 경찰과의 범죄안전협력 차원에서 CPTED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점도 그동안 서울시를 위해 CPTED 성과 평가 연구를 주관해 온 ‘연구원’에게는 취약지역 별 CPTED 솔루션 전략, CPTED 성과 등에서 보다 많은 CPTED 연구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연구원’은 CPTED가 너무 CCTV 등 전자감시나 위협도 대비하여 불필요하게

4) 손상(injury)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 행위(예: 폭력, 자살 등)로 인해 초래되는 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로서 사고나 폭력 그 자체와는 구별.

고비용 옵션을 지향하지 않도록 인권친화적이고, 환경친화적이며 비용효과성이 높은 옵션과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안전 관련 연구의 전망과 방향

안전 분야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 감염병과 같은 위협요소와 체감안전도와 같은 심리적 위협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방안과 범죄취약지역의 안전환경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 시행되고 있는 5개년 간의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 실효성 검증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시리즈 연구는 앞서 지적인 바와 같이 물리적 디자인 변경에 편중된 연구보다는 물리적 안전환경 구축 외에 공동체 연대, 교육, 교류, 보건 위생 등 보다 종합적이고 사회적 예방(social prevention)이 균형 있고 조화롭게 어우러진 방향으로 연구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4. 범죄예방 정책 및 프로그램 연구의 전망과 방향

범죄예방 정책 및 프로그램 분야에서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각종 범죄 및 비행의 예방 전략과 정책에 대한 연구, 마약 등 약물남용 예방, 종합적인 범죄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소년 참여법정 프로그램의 성과 분석 연구」(김지선 외, 2014)와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 등 범죄취약계층에 대한 법교육 프로그램과 정책들이 얼마나 투입 비용 대비 범죄예방 효과를 거두었는지 실증적인 성과 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지적인 바와 같이 ‘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보다 거시적이며 근본적인 차원에서 국가범죄예방위원회 등 범정부적인 협력범죄예방의 체계를 제시하고 장기적인 국가범죄예방전략 마스터플랜과 로드맵 수립을 위한 심도 있는 기초 연구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제6절 결론

지금까지 ‘연구원’에서 지난 30년간 수행해 온 연구 분야 중에 경찰 범죄예방, 협력 방법활동, 민간경비, CPTED, 감염병/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빈곤층 밀집지역 등 안전사고 예방, 범죄예방 정책 및 프로그램 등 1차적 예방과 2차적 범죄 예방 전략 또는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총 53종을 리뷰하여 분석결과를 논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정부와 사회에 국내외 선진 사례를 발굴하고 실증조사 분석을 통해 범죄예방과 안전 관련한 법제도와 정책의 대안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서울시 등 주요 자치단체의 공공사업을 지원하는 등 많은 여러 기여를 한 것으로 평할 수 있다. 범죄예방 연구 과제 별 연구자 및 총서의 수도 크게 증가하였고, 연구의 규모도 커져 왔으며 범죄학에 국한되지 않고 도시공학, 지리학 등 다양한 분야 간 통섭연구도 증가하여 왔는데, 특히 CPTED나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연구의 증가는 가히 괄목할 만하다.

다만 그러한 연구들을 통한 기여가 종합적이고 거시적이며 장기적인 마스터플랜과 로드맵을 기반으로 방향성 있게 진행되기 보다는 아직은 단편적이고 일시적이며 이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연구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현재 발생하거나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범죄 및 안전 문제에 ‘연구원’이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기적이지만 실질적인 처방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임은 인정한다. 그러나 특정 정부 부처에 국한하지 않고 범정부적인 범죄예방 패러다임을 법, 제도, 정책, 프로그램 차원에서 정교하게 기획하고, 디자인하며 이를 확립해 나아가는 것이 부인하기 어려운 ‘연구원’의 중대한 미래적 과제라 할 수 있다.

금번 ‘30년 성과와 과제’ 사업을 계기로 그러한 굳건한 범죄예방 패러다임의 토대 위에서 각론적 분야 별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원’의 연구거버넌스 체계도 보다 면밀하고 깊이 있게 고민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 강은영(2004). 약물남용 예방교육의 실태와 효율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강은영(2010).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III) : 학교 및 학교주변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학교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방안(총괄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강은영·Richard Schneider·김민경(2010).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III) : 학교 및 학교주변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국외전문가 초청 '학교 안전 진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강은영·박미랑·김상미(2010).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III) : 학교 및 학교주변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학교 및 학교주변 범죄위험·보호요인 : 학생 및 지역주민 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강은영·박미랑·박현호·강석진(2010).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III) : 학교 및 학교주변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학교 CPTED 가이드라인 : 학교 시설물 및 관리 실태 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강은영·박성철·조동현·이민식·옥태범·유석범·설선국·김기정(2010).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III) : 학교 및 학교주변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학교 및 학교주변 CPTED 효과성 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상희·강대형(1990). 파출소단위 방범활동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성언(2002). 한국의 민간경비 : 성장과 함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성언(2003). 경찰의 역할변화에 대한 조사연구 :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연성(2016). 품질경영학회 50주년 특별호: 서비스품질 분야 연구 리뷰, 한국품질경영학회보, 44(1), 265-276.
- 김지선·박혜석·송현종(2014). 청소년 참여법정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형청(1990). 경찰순찰활동의 실태와 발전적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도건효(1991). 공동주택의 범죄방어공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문영호·조병인(1992). 현금다액취급업소의 방범대책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강철(1994). 주택지에서 범죄발생공간의 유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동구의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경래·박미랑(2010). 범죄예방을 위한 일상생활의 지혜(개정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경래·정영오(2008). 범죄예방을 위한 일상생활의 지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경래·최인섭·강은영·박성훈·김용길·김상미(2013).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의 예비 효과성 분석 -마포구 염리동 및 강서구 공진중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경래·최인섭·박성훈·고충열·강용길·박현호·공주대산학협력단(2012).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경래·황정인·박노섭·안정민(2009).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대응 기준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성훈·최수형(2015). 서울시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사업의 정책 활용을 위한 평가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준휘·강용길·김도우·정진성(2014).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III) -성폭력 및 학교폭력 발생 지역·공간 특성분석 및 정책대안 개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준휘·김한균·유진·한민경·이성규·최지선·윤상연·강용길·박재풍·이춘삼·김도형·박준승·조운오·박형아(2017). [별책부록]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II) : 1인가구 밀집지역의 안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준휘·김한균·유진·한민경·이성규·최지선·윤상연·강용길·박재풍·이춘삼·김도형·박준승·조운오·박형아(2017).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II) : 1인가구 밀집지역의 안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준휘·신의기·홍영오·박준희·정지혜·임완섭·박형준·이경환·김도형·이창훈·조운오·김빛나·박형아·강용길·윤상연(2018).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III) : 빈곤층 밀집지역의 안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준휘·최인섭·김재운·장지현·박현호·손원진·신영철(2013).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II) -상업지역을

-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형민·황지태·황정인·황의갑·박경돈(2009).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CPTED)의 제도화 방안(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서재근(1990). 민간경비의 육성과 방법능력 증대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신의기·박경래·정영오·김걸·박현호·홍경구(2008).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신의기·박미랑·강석진·강용길·박현호(2011).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IV) : 공원 및 문화재 관련시설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공원안전 강화를 위한 CPTED 적용-,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신의기·박미랑·이준우·장민선·강석진·강용길·박현호(2011).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IV) : 공원 및 문화재 관련시설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총괄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신의기·박준휘·이경훈·강석진·강용길·김도우·정진성(2014).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III) -총괄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신의기·박현호·이준우·장민선(2011).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IV) : 공원 및 문화재 관련시설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문화재의 효율적 활용과 재난 예방-,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신의기·이경훈·강석진·박형아(2014).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III) -지하철 역사에 대한 범죄위험성 평가 및 정책대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신의기·이천현·김지선·강은영·이범호·안상국(2007). 범죄예방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신현주(1989). 민생치안범죄규제의 전략과 이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성진·민수홍(2004). 가출청소년의 비행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건종·전영실(1993). 각국의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기현·기광도(1994). 미국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기호(1991). 경찰활동과 무기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천현(2015). 실효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천현·임정호·김형길·류현숙·정지범·오윤경·황미영·박두용·주현경·김슬기(2015).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영실(2005). 지역주민의 자율방범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자율방범대활동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영실·승재현·전현욱·유진·박준희·안미영·배상균·심희섭·박두용·양천수·Bernd Heinrich·김중길·정호경·이진수·마정근·이정훈(2016).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 실효성 검증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I) - 하 : 국민 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영실·승재현·전현욱·유진·박준희·안미영·배상균·심희섭·박두용·양천수·Bernd Heinrich·김중길·정호경·이진수·마정근·이정훈(2016).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 실효성 검증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I) - 상 : 국민 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규석·신완선·백동현·주용준(2016). 품질경영학회 50주년 특별호: 품질경영 분야 연구 리뷰, 44(1), 43-60.
- 정재준·원혜욱(2003). 청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소년보호교육기관의 역할확대 및 강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병인(2001). 경찰활동과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병인(2012). 지역공동체내 범죄예방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병인·이윤(2011). 우리나라 지역경찰의 치안활동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수형·이원상(2009).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I) -초등학생을 위한 사이버범죄 예방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영신·윤정숙·손행선·채경희·김윤나·이원상·이윤미(2010).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II)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영신·최민영·강성의·강혜숙·한일남(2011).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III)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진수명(1993).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민간인 참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하영원·정재학·석관호 (2016). 「마케팅연구」 30년 : 게재논문의 특성과 연구주제 추세 분석. 마케팅연구, 31(1), 5-29.

한민경·박현호·Webster, Carr(2018). 범죄예방 목적의 공공 CCTV 운영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Brantingham, P. J. & F. L. Faust(1976). A conceptual model of crime prevention, Crime and Delinquency, 22, 284-295.

연합뉴스 TV [2019-01-22], 경찰, 국립치안과학원 설립 추진…TF 구성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90122010600038/?did=1825m>,
2019년 1월 21일 최종 접속).

제 2 장

교정정책(Ⅰ) : 행형 관련 제도 및 정책 관련 연구

윤 옥 경

제2장

교정정책(I) : 행형 관련 제도 및 정책 관련 연구

제1절 서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으로 함)이 1989년 개원한 이래로 형사정책과 관련한 방대한 양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1989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는 총 1,087종이며 이 중에서 범죄학 분야 연구로 분류된 연구보고서의 수는 526종이었다. 제4부 제2장 교정정책(I)은 그 중에서 교정관련 법령과 수용자 처우관련 제도 및 정책, 그리고 교정행정 및 조직으로 분류되는 34종의 보고서를 정리하고 성과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교정은 범죄자 교정교화와 성공적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는 형사사법의 마지막 단계로 교정의 성공 여부는 재범율과 사회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시민들의 범죄피해 수준과 깊은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체계적인 연구와 증거기반의 연구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각 보고서의 연구를 요약, 소개하는 과정에서 각 보고서가 제시한 개선방안들이 교정정책에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연구성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물론 정책 반영율을 정량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정성적으로는 평가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연구보고서의 제언 부분과 실무정책의 발전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 장은 먼저 각 보고서를 연구주제와 방법론, 연구내용,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요약하고, 그 다음 법령이나 교정정책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연구보고서의 성과를 입체적으로 평가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30년 동안의 연구성과에 더해서 앞으로의 30년 동안 수행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되는 연구주제들과 연구방향을 제안해 볼 것이다.

제2절 행형 관련 제도 및 정책 연구 보고서 분석

1. 분석대상과 방법

먼저 총 34종의 연구보고서를 시기별로 보면 1990년대에 12종, 2000년에서 2010년까지 13종, 2011년부터 현재까지 9종으로 평균 1년에 한 개의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30년간의 경향성을 크게 나누어 보자면 초기 10년은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눈에 띈다. 2010년 이후에는 범죄자에 대한 재범을 막고 과학적 처우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위험성 평가도구의 개발이 수행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우리나라 교정정책과 수용자 처우가 국제적 기준에 어느 정도나 부합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가 있다. 교도소 과밀현상이나 교정시설 신설을 둘러싼 지역사회와의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 연구 등 교정분야의 시급한 현안과제에 대한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다양한 주제로 방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던 만큼 그것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정리하는 것이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기초로 30년간의 교정 관련 연구보고서의 내용과 성과를 정리하기 위해 34종의 연구보고서를 세 개의 범주로 분류하여 소개하기로 한다.¹⁾

- 가. 우리나라와 해외의 교정관련 법·규범에 대한 연구 : 7종
- 나. 수용자 처우제도에 관한 연구 : 12종
- 다. 교정 관련 제도 및 교정현안 : 15종

2. 연구보고서 분석

연구보고서를 요약, 소개하는데 있어 중점을 두는 부분은 연구방법, 연구내용과 정책제언 부분이다. 특히 정책제언에서 나온 제언들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3절에서는

1) 물론 이 분류는 완전히 상호배타적이지는 않다. 수용자 처우나 교정정책과 관련한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행형법이나 해외의 교정관련법을 소개하고 있을 수 있고, 수용자 처우에 관한 연구의 내용으로 교정이념과 교정정책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세가지 범주는 연구검토를 위한 임의적인 분류라는 점을 밝힌다.

이러한 제언들이 실무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지를 소개하면서 연구의 성과를 논의할 것이다.

가. 우리나라와 해외의 교정관련 법·규범에 대한 연구

국내의 행형법, 그리고 외국의 행형법과 국제규범에 대한 연구는 7종이다. 「현행 행형법의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장규원, 1994)에서는 1994년에 국회에 제출되고 1995년 1월에 공표된 제5차 개정 행형법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행형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개방처우의 도입 등 달라진 교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된 제5차 행형법이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규정을 기결수용자와는 구분한 점, 점견과 서신에 대한 제한을 크게 완화한 점, 외부통근작업과 개방시설에서의 수용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점, 그리고 징벌의 종류를 조정하고 어려운 한자말을 우리말로 개선하고 정비한 점이 제5차 개정 행형법의 의미라고 보았다. 하지만 여전히 수형자의 권리장전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시설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의 개정방향을 위한 정책제언으로 첫째, 수용자의 기본권 보장과 불복기회 보장, 수용자의 인간존엄과 가치의 강조, 처우의 개방화와 시설 내 처우와 사회내처우의 조화, 각종 국제기준에 맞는 행형제도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독일 행형법에 관한 연구」(장규원, 1996)는 1990년에 개정된 독일행형법을 조문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행형시설 및 조직을 소개하고 있다. 연구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행형은 독일의 행형제도와 유사한 점이 많으며 독일행형법의 내용이 국제기준을 많이 반영하고 있어 우리나라 행형법의 발전에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찾고 있다. 독일행형법을 조문별로 살펴본 후 이 연구는 개방처우의 지향, 국제기준의 반영, 수형자의 법적 지위 보장에 대한 규정이 잘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행형법 개정시에 참고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수형자의 법적 권리에 관한 연구」(정진수, 2002)도 행형법에 대한 논의의 연장으로 법제도적 차원에서 수용, 교도작업, 교육, 외부교통, 위생과 의료, 징벌 등의 측면에서 수형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독일, 일본 등의 법규정과 판례 등을 활용하여 수형자의 권리 보장의 방안을 살펴 본 후 결론에서 저자는

수형자의 권리에 대한 과감한 인식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전통적으로 수형자의 법적인 권리는 “특별권력관계론”에 의해 무제한적으로 제한받았다. 하지만 이제 법치주의를 기초로 하여 법률상 수형자의 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며 권리침해시 구제방안도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행형법의 목적을 수형자의 재사회화와 수형자 인권보장을 조화롭게 달성하는데 두어야 한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행형법 개정시안에 관한 검토보고서 : 교정시설 수용자처우 등에 관한 법률」(이천현 외, 2005)은 1950년 3월에 제정된 행형법에 대하여 2005년 전면 개정을 앞두고 현행법 및 개정안을 각 조문별로 상세하게 비교하면서 검토하였다. 개정안에 대하여, 인권존중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① 수용자 인권신장, ② 수용자 외부교통권 및 사회적응력 강화, ③ 수용관리역량 강화, ④ 교정행정 효율성 증대, ⑤ 교정행정 투명성 제고 등을 목표로 행형법의 전면 개정이 추진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다만, 접견/서신/전화통화 등에 대한 제한 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함을 지적하면서,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규정을 통해 수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조문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2014년에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교정처우 관련 국제규범연구」(이승호 외, 2014), 「국제규범 이행실태와 개선방안」(최영신 외, 2014), 그리고 「총괄보고서」(최영신 외, 2014)의 세 가지 연구보고서는 교정처우 관련 다양한 국제규범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교정처우가 이러한 국제기준에 어느 정도나 부합하는지의 실태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적용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제규범 연구」에서는 23개의 교정관련 국제규범을 1) 인권에 관한 규범, 2) 수용자 처우와 시설관리에 관한 국제규범, 3) 여성 및 소년 교정에 관한 국제규범으로 분류하여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행실태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정처우에 있어 국제기준 이행실태를 평가한 후 교정시설의 소규모화 등 시설선진화, 수형자 처우의 내실화, 직원들 직무교육 강화, 의료처우 선진화, 독립기관에 의한 감찰, 소년과 여성수용자를 위한 입법 미비사항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총괄보고서」에서는 국제규범 연구 보고서와 이행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후 이행실태 평가표를 작성하여 국제규범의 이행실태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제규범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자료를 통해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았지만 이 연구들을 통해 국제규범의 내용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그 기준들이 실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시도한 점, 특히 소수 수용자라고 할 수 있는 소년수용자와 여성수용자에 대한 국제기준들을 정리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소년과 여성에게 특수한 욕구(needs)를 반영한 처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 연구였다. 교정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에 대한 연구들의 기본 관점은 수형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교정관련 법과 국제규범에 관한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공통 핵심어는 ‘수형자 기본권’, ‘수형자의 법적 지위’, ‘수형자의 인권보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과 규범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형 집행법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발전하도록 만드는데 좋은 가이드라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표 IV-2-1] 교정관련 법, 규범 연구

제목	발간연도	연구방법	연구내용	정책제언
헌법 행정법의 문제와 개선방안	1994	문헌연구	- 행정법 제개정 내용 - 행정법 개정의 기본방향 - 행정법의 구체적 개선방안	- 수용자 기본권 보장과 불복기회 보장 - 행정법의 목적으로서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강조 - 처우의 개방화,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의 조화 - 각종 국제기준에 맞는 행정제도 도입
독일행정법에 관한 연구	1996	문헌연구	- 독일행정법의 기본적 이해: 행정법장별, 조문별 제시 - 행정시설 및 조직 - 수용자처우와 권리구제제도	- 개발처우의 지향 - 국제기준 반영 - 수형자 법적 지위 보장
수형자의 법적 권리에 관한 연구	2002	문헌연구	- 법제도적 차원에서 수형자의 권리보장 강화방안 모색 - 수용, 교도작업, 교육, 외부교통, 위생의료, 징벌 등의 측면에서의 수형자 법적 권리 보호방안	- 수형자 권리에 대한 과감한 인식전환 - 국제인권기준을 준수
행정법 개정신안에 관한 검토 보고서 : 교정시설 수용자처우 등에 관한 법률	2005	문헌연구	- 현행법·개정안 비교 - 개정이유 검토 - 개정안(법조문)별 검토의견 제시	- 수용자 권리 제한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보완 필요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 교정처우관련 국제규범 연구	2014	문헌연구	- 우리나라 교정처우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국제규범들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 - 23개의 교정관련 국제규범을 1)인권에 관한 국제규범 2) 수용자 처우와 시설관리에 관한 국제규범 3) 여성 및 소년교정에 관한 국제규범으로 분류하여 내용을 소개	- 국제규범은 최소한의 기준임 - 여성과 소년수용자를 위한 국제규범을 우리 교정 현실에 반영하려는 노력 요구

제목	발간연도	연구방법	연구내용	정책제언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와 개선방안	2014	서면조사, 각종 통계자료 활용, 인권위 지정 사건 분석 등	- 국제규범이 우리나라 교정처우에 있어서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 지에 대한 이행실태 평가와 개선방안 제시	- 시설 선진화 - 수형자 처우의 내실화 - 직무교육 강화 - 의료처우의 선진화 - 독립기관에 의한 감찰 - 소년과 여성 수용자를 위한 입법미비사항 개선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 총괄보고서	2014	문헌연구	- 교정처우 관련 국제규범 정리 - 국내 이행실태 및 개선방안 정리 - 이행평가표 제시	- 입법미비사항 개선 - 소년 및 여성수용자 처우개선 - 시설선진화, 의료처우 내실화, 직원 인권교육 강화 등

나. 수용자 처우 관련 정책과 제도연구

수용자 처우 관련 정책과 제도연구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개방교도소를 주제로 한 3종의 연구보고서와 교정교화활동에서의 민간참여, 교화활동, 교정처우모델, 피보호 감호자에 대한 교정처우 프로그램, 경비등급별 처우모델, 범죄자 처우의 과학화를 위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과 적용, 중국의 교정처우 등을 주제로 한 12종이다.

개방교도소와 개방처우에 관한 3종의 연구는 각각 1989년과 1994년, 그리고 2018년에 수행되었는데 모두 문헌연구와 함께 조사연구 또는 심층면담의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 「개방교도소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이정수 외, 1989)는 각국의 개방처우 운영실태를 제시하고 천안개방교도소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였으며 개방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재소자, 출소자, 직원의 의견을 조사하여 현행 개방교도소의 운영상의 문제점, 예를 들어 수형자 자치회의 운영강화, 외부통근 인원 확대 등을 제언하였으며 행형법 개정시 개방처우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하도록 하고 주말구금제와 부부접견제도의 도입을 제언하였다. 「개방처우제도에 관한 연구」(이병기 외, 1994)는 천안개방교도소의 실태와 함께 가석방예정자생활지도관, 외부통근제도, 귀휴제도를 개방처우의 유형으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또 직원과 수형자의 개방처우에 대한 의식도 함께 조사하여 정책제언으로 개방처우대상자 도주시 차별조항을 신설할 것, 시설 및 예산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할 것을 주문하였다. 외부통근확대, 부부접견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귀휴의 확대도 제언하였다. 가장 최근에 수행된 「개방처우제도 연구」(권수진 외, 2018)에서는 천안개방교도소, 소망의 집, 희망센터 등의 운영현황과 귀휴 등 개방처우의 운영현황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후 개방교도소 추가설치, 사회적응 프로그램 다양화, 개방처우 현실화, 소망의 집과 희망센터 개선 등을 제언하였다.

「교정교화분양의 민간참여에 관한 연구」(한인섭, 1991)는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에서의 민간참여 현황을 분석하고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행 민간참여제도의 문제점으로 참여인원의 부족, 형식적이고 비전문적인 참여를 지적하였고, 출소자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였다. 같은 해 연구된 「교정시설의 교화활동에 관한 연구」(김상희 외, 1991)는 교도소 내에서의 수형자 대상 모든 활동, 즉 학과교육, 종교지도, 생활지도, 직업훈련, 민간참여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교정청의 설치, 교정공무원

증원 및 교화예산 확대, 교화전문요원 증원과 상담요원 확보, 석방 전 처우를 위한 시설 도입, 교화위원의 전문성 확보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제언들은 앞서 언급 하였던 개방교도소 연구와 민간참여 연구에서도 제기되었던 방안으로서 그 중요성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피보호감호자의 사회적응 증진과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조성희 외, 1996)와 「교정처우 모델에 관한 연구」(장규원, 2003)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상습누범자에 대한 처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먼저 피보호감호자를 위한 프로그램 연구에서는 교정상담과 심리치료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미국 교정프로그램의 이론적 기초가 되고 있는 RNR model(Risk - Need - Responsivity)의 요소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제안된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사후검사와 추적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더불어서 교정치료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소단계에서부터 프로그램 대상 선정을 위한 분류기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도 제기하였다.

“치료”의 의미는 「교정처우 모델에 관한 연구-사회치료적 처우를 중심으로」(장규원, 2003)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연구는 독일에서는 사회치료적 처우를 상습누범자에 대한 처우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독일의 사회치료는 폭력성 누범자에 대해 짧은 구금 후 지역사회의 개방적 시설에서 사회복귀를 모색하도록 하는 처우의 형태로서 한국의 상습누범자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탐색한 연구이다. 범죄자의 사회복귀의 측면에서 볼 때 누범에 대한 형의 가중이 그들의 사회복귀에 효과적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회복귀”의 가치에 방점을 찍는 교정처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재소자 분류수용 제도에 관한 연구」(권태정, 1991)는 현행 분류수용의 실태분석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외국의 분류제도를 살펴보았으며, 직원과 수형자를 대상으로 분류에 대한 인식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수형자의 특성을 고려한 과학적 분류제도의 도입, 분류전문가 확보, 심리검사도구의 체계화, 표준화, 교정시설의 단계화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초기의 연구는 이후 연구보고서와의 관련이 깊다. 2010년 형집행법 개정을 계기로 경비처우 등급별 차별화된 처우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등급별 처우를 위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차등화 처우모델 개발」(김지영 외, 2010)은 등급별 차별화된 처우를 위한 전제조

건인 해외의 분류제도와 우리나라 분류제도를 살펴본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과학적 분류지료를 개발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경비등급이 결정되도록 하여야 하며, 경비등급별 교정시설의 지정과 차별화된 물리적 안전체계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또 등급별로 개별화된 처우가 제공되어야 하고 수형자 개인의 특성과 욕구, 개선정도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 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이수정 외, 2010)과 그 후속연구(이수정, 2011)는 처우의 과학화, 처우의 개별화를 지향하는 현실을 반영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위험성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형사사법의 여러 단계에서 활용하고 있었던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중반이후로 범죄자를 위한 심리도구의 개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객관적 평가도구의 개발을 모색하고 노력 중이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수행된 이 연구는 해외의 위험성 평가도구들을 조사하고 고위험군 범죄자의 역동적 재범요인을 찾아내어 “한국판 위험성 평가도구(KORAS-G)”를 개발하였고 그 다음 년도에는 개발된 위험성 평가도구의 예측력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 결과 개발된 위험성 평가도구의 예측타당성이 “만족할 만한 수준”임을 확인하였고 추후 지속적인 연구를 제안하였다. 2014년의 연구인 「한국과 중국의 형사사법과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정진수 외, 2014)에서는 2012년 형사소송법을 대폭 개정한 중국의 형사사법의 개요와 형사절차를 소개하고 중국의 교정처우의 특징을 살펴 본 후 우리나라 교정처우의 수준과 비교하여 의료처우 수준이 높고, 접견이 자유로우며 작업생산성이 우리나라에 비해 높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의 주제들을 보면 수형자 처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보다 구체적인 수준으로 변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특히나 치료개념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것, 그리고 위험성 평가도구의 개발은 처우의 과학화와 개별화의 경향과 맥을 같이하는 핵심주제로 평가할 수 있다.

[표 IV-2-2] 수용자 처우 관련 정책과 제도연구

제목	발간연도	연구방법	연구내용	정책제언
개방교도소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개방처우를 중심으로	1989	문헌연구 설문조사	- 개방처우의 본질과 형태와 각국의 개방처우 운영 실태 분석 - 천안개방교도소 운영실태 조사 - 개방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재소자, 출소자, 직원 의견 조사	- 수형자 자치회의 기능강화, 외부통근인원의 확대, 수용대상자 범위확대 등 - 행정법 개정시 개방처우에 관한 명확한 규정 - 수형자 자치회 강화, 직원 자질 향상 - 주말구금제와 부부접견제도 도입
교정교화 분야의 민간참여에 관한 연구	1991	문헌조사 통계자료 활용	- 범죄예방에 있어서의 지역사회의 참여 현황 분석 - 과 개선방안 도출 - 시설내 처우에서의 민간참여와 사회내 처우(갱생 보호와 보호관찰)에서의 민간참여 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 - 민간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 현행 민간 참여의 문제점: 참여인원 부족, 형식적이고 비전문적 참여 - 출소자 활용 방안 모색 필요 - 교정의 민영화:
교정시설의 교화활동에 관한 연구	1991	문헌연구 설문조사 현장관찰	- 수형자 교화활동의 실태파악, 문제점 도출, 개선 방안 제시 - 학과교육, 종교지도, 생활지도, 직업훈련, 민간인 참여를 중심으로 고찰 - 미국, 일본, 독일 교정조직의 구조, 현황, 교화활동 소개	- 교정조직의 개편(교정청 설치) - 교정공무원 증원 및 교화예산 확대 - 외부통학 확대, 독학취득제도 도입 - 상담전문요원 확보 - 석방전 처우를 위한 시설 마련 - 교화위원의 전문성 확보 필요
재소자 분류수용 제도에 관한 연구	1991	문헌연구 통계자료 조사연구	- 현행 분류수용제도의 실태분석 및 문제점 진단 - 외국의 분류제도: 미국, 일본, 대만, 프랑스 - 직원과 수형자를 대상으로 분류에 대한 인식 조사	- 수형자 개인의 적성과 특성을 고려한 과학적 분류제도 - 분류 전문가 확보 - 심리검사도구의 체계화, 표준화 - 교정시설의 단계화
개방처우 제도에 관한 연구 - 운용실태와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1994	문헌연구 조사연구	- 개방처우제도의 연혁과 유형 - 해외의 개방처우제도: 미국, 영국, 스위스, 호주, 일본	- 개방처우자 도주시 처벌조항 신설 - 시설 및 예산 확대 및 프로그램 개발 - 외부통근 확대

제목	발간연도	연구방법	연구내용	정책제언
			- 우리나라 개방처우 실태: 개방교도소, 가석방에 정자생활지도관, 위부통근, 귀류 - 우리나라 개방처우제도에 대한 직원과 수형자의식조사	- 귀류확대, 부부접견 도입
피보호감호자의 사회적응 증진과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1996	문헌연구	- 범죄의 심각성과 재범위험성이 높은 피보호감호감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정 프로그램의 실태를 파악 - 선진국의 교정 프로그램 현황과 평가연구에 대한 분석 - 현행 교정프로그램 개선안 도출	- 프로그램 대상 선정을 위한 분류기준안 마련 - RNR model을 반영한 프로그램 제안 -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사후, 추적평가를 권고
교정처우 모델에 관한 연구 - 사회치료적 처우를 중심으로	2003	문헌연구	- 독일의 사회치료적 처우 소개: 사회치료는 폭력성 누범자에 대해 짧은 구금 후 지역사회로의 개방적 시설에서 사회복귀를 모색하도록 하는 처우의 형태 - 한국의 상습누범자에 대한 사회치료적 처우의 가능성 탐색	- 상습누범자에 대한 형의 가중에 대한 개선 필요 - 누범자에 대해 보안처분으로서의 사회치료적 처우 적용하여 사회복귀 확대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차등화 처우모델 개발	2010	문헌연구	- 2010년 개정 형집행법에 따라 경비처우 등급별 차별화된 처우 필요성 대두 - 우리나라 경비처우 등급 결정을 위한 분류심사 제도 및 처우 실태 파악 - 미국, 스웨덴, 네덜란드, 일본의 교정처우 실태 분석	- 과학적 분류지표 개발하여 적정의 경비등급 결정이 이루어져야 함 - 경비등급별 차별화된 물리적 안전체계 구축 - 경비등급별 차등화되고 개별화된 처우가 제공되어야 하고 수형자 개인의 특성과 욕구, 위험성의 진전정도를 반영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 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1) -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2010	문헌연구 실험연구 조사연구	- 형사절차의 여러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종합적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 해외의 위험성 평가도구 조사 - 신경학적 실험을 통해 고위험군의 역동적 위험요인 탐색	- 한국판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KORAS-G)

제목	발간연도	연구방법	연구내용	정책제언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 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Ⅱ) -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2011	조사연구	- 교도소와 보호관찰 대상 남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요인 조사 - 개발된 KORAS-G에 대한 추적연구: 재범 예측력의 타당도 검증 - 송치된 기록과 유죄판결 기록으로 재범 측정	- ROC 분석 결과 AUC값이 .667 - 14개월의 추적연구를 통해 재범예측력 확인
한국과 중국의 형사사법과 교정처우에 관한 비교연구	2014	문헌연구	- 2012년 형사소송법을 대폭개정한 중국의 형사사법의 개요 소개 - 중국의 교정처우 특징 - 한국과 중국의 형사사법과 교정처우 비교	- 의료처우 수준이 높음 - 자유로운 접견 - 작업생산성이 한국에 비해 높음
개방처우제도의 개선방안	2018	문헌연구 현장조사 조사연구 심층면담	- 천안개방교도소, 소망의 집, 희망센터의 운영현황 - 귀류 등 개방처우 운영현황 -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개방처우 실태 분석	- 개방교도소 추가설치 - 사회적응 프로그램과 개방처우 다양화, 현실화 - 소망의 집과 희망센터 개선

다. 교정 관련 제도 및 교정현안

교정관련 제도 및 교정현안에 관한 연구로 분류된 보고서는 총 15종이다. 「갱생보호사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이정수 외, 1989)은 ‘연구원’이 문을 연 첫해에 수행된 연구이다. 1989년은 소년과 가출소자에 대한 보호관찰이 시행되기 시작한 해이며 갱생보호와 보호관찰소의 관계정립이 필요한 해라는 점에 주목하여 수행된 연구이다. 갱생보호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갱생보호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갱생보호회의 연력과 기능을 알아 본 후 갱생보호위원, 갱생보호대상자, 갱생보호 직원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 한 후 국가의 갱생보호사업 활성화, 민간갱생보호 법인의 활성화와 함께 보호관찰의 전면실시를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교정공무원의 의식에 관한 연구」(박재운, 1991)와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박성래, 2003)는 범죄와 교정 전반에 걸친 일반시민과 교정공무원의 인식을 살펴본 연구이다. 「교정공무원의 의식에 관한 연구」에서는 범죄에 대한 그리고 교정에 대한 인식과 직무만족도 등을 파악하여 교정공무원의 선발과 처우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정책제언으로 교정대학과 교정학과의 증설, 신규채용시 인성검사의 도입, 교정직과 교회, 분류직의 통합을 제안하였다.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는 교정에 대한 이해도, 교정에 대한 이미지, 질서유지에 대한 태도, 수용자 교정교화 가능성에 대한 생각, 수용자 생활조건과 교정교화 이념에 대한 태도 등을 조사하였는데 국민들은 한편으로 범죄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전과자에 대한 냉대라고 생각하면서 교정교화 기능의 강화를 원하고 수용자들의 생활여건에 대해서도 긍정적이 태도를 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확실한 질서의 확립을 요구하는 이중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교정의 가장 큰 과제로 교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제안하고 있다.

가석방제도와 관련한 연구는 두번 수행되었다.²⁾ 1991년의 「가석방 실태와 활성화 방안」(장영민 외, 1991)에서는 각국의 가석방제도와 우리나라 가석방 법규 및 절차를 파악하고 가석방 운용현황 및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전문 분류센터 도입, 성인범에 대한 보호관찰 확대 실시 선생보상제도 도입과 형 집행 법원 도입을

2) 가석방 관련 연구는 실제 3번 수행되었으나 「가석방 심사체제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장규원 외, 1997)는 수탁과제로 수행되어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제안하였다. 2004년의 「가석방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박성래, 2004)은 현행 가석방 허가율과 재입소율 등 현황을 분석하고 가석방에 대한 수형자와 직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기한 정책제언을 보면 먼저 과학적 분류와 단계적인 교정처우를 위해서 교정시설의 소규모화가 필요하며, 체계적인 사회 적응 훈련을 제공해야 하고, 가석방을 확대해야 하고, 가석방 심사기준을 계량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민영교도소에 대한 연구도 두 개가 있는데 1993년에 수행된 「시설교도소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연구」(김용진, 1993)에서는 시설 교도소의 등장배경과 계약시 고려사항, 도입 및 운영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교정의 사회화, 낙인의 최소화, 자원의 효율적 활동의 측면에서 시설교도소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 도입을 한다면 운용비용의 절약보다는 종교교도소로 시작할 것을 제안하였다.

「미국의 교정현황에 대한 연구」(연성진, 2002)에서는 미국 교도소 인구현황, 가석방자와 사형수 현황, 청소년 수용자 현황 등 개괄적인 미국 교정의 인구구성을 주로 보여주었다. 「미국의 민영교도소에 대한 연구」(연성진, 2004)에서는 민영교도소 출현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는 미국의 민영교도소 운영실태와 관련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미국에서도 국가형벌권에 대한 민간이양에 대해 쟁점이 있으며 민영교도소가 비용절감효과가 기대한 만큼 존재하는 것인지, 그리고 서비스의 질이 국영보다 나은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교정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정진수 외, 2004)은 교정공무원이 범죄인에 대한 교화 및 재사회화를 주 업무로 담당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의 업무와 다르므로 그 자질이 현저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 당시 현안이 된 이슈들을 선별하여 교정공무원에 대한 ① 채용 및 승진, ② 교육훈련, ③ 보수 및 처우, ④ 조직 및 인력구조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교정사고의 처리실태와 개선방안」(박형민 외, 2006)은 교정사고의 발생은 교정의 목표인 교정교화 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와 사건들에 대한 추이를 파악하고 교정사고의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교정사고의 유형과 발생실태, 그리고 처리과정을 살펴보고 교정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용질서 확립을 위한 직원들의 노력과 함께 수용

자 처우의 합리화를 제언하였다.

2009년에 수행된 「교정정책과 보호정책의 연계성 강화방안」(정진수 외, 2009)에서는 교정과 보호의 분리로 인한 범죄자 관리의 취약성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있다. 특히 고위험 범죄자와 출소자를 위한 교정보호 연계방안에 대해 중점을 두고 영국의 NOMS(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ervice)나 MAPPA(Multi-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 미국의 Re-entry 정책을 소개하면서 교정과 보호의 연계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교정과 보호조직의 연계의 한 방안으로 교정보호청 설치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최근 들어 교정 현안에 대한 두 개의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하나는 과밀수용 해소방안에 대한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교정시설의 이전, 신축을 둘러싼 지역사회와의 갈등 해결방안에 대한 것이다. 교도소 과밀수용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어 수년 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긴급성이 있는 주제이며 교정보호시설의 입지갈등에 대한 연구는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교정시설과 보호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모색이다.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현황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안성훈, 2016)에서는 교도소 과밀의 현황과 과밀수용의 원인 및 배경에 대해 검토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해결방안으로 자유형의 대체형벌의 개발하는 입구전략과 가석방을 활용하는 출구전략을 제안하였다. 교정시설의 과밀이 교정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사법 모든 단계에서의 운용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교정보호시설의 입지갈등과 대응방안 연구」(김민영 외, 2018)에서는 교정보호시설 이전 및 신축을 둘러싼 갈등의 사례를 분석하고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을 시도하고 교정보호시설에 대한 주민인식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정책제언으로 갈등관리법을 법제화하고 교정보호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며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강화할 것, 그리고 교정보호시설에 대한 인식제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치료감호시설에 대한 효율적 계호방안연구」(권수진 외, 2015)는 2015년에 발생한 치료감호 대상자의 도주사건을 계기로 치료감호소의 감호체계에 대한 진단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수행된 연구이다. 진단결과 감호인력이 부족하고 업무전문성이 부족하며 감호인구가 노령화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호인력을 증원하고 타 기관과의 협업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교정관련 제도 및 교정현안으로 분류된 연구보고서들은 교정정책관련 세가지 영역 중 조사연구가 가장 활발히 진행된 영역이다.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현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증거기반의 정책(evidence-based correctional policy) 수립과 집행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또한 교도소 과밀, 교정청 독립이나 교정보호시설 신설을 둘러싼 지역주민과의 갈등 문제 등 신속히 해결해야 할 현안에 대한 연구들도 여럿 진행되었다.

[표 IV-2-3] 교정 관련 제도 및 교정현안

제목	발간연도	연구방법	연구내용	정책제언
갱생보호사업의 실태와 활성화방안	1989	문헌연구 조사연구	- 갱생보호의 개념, 역사, 필요성 연구 - 우리나라 갱생보호회의 연혁과 기능 파악 - 갱생보호위원, 갱생보호대상자, 갱생보호 직원 을 대상으로 의식조사	- 국가의 갱생보호사업 활성화 - 민간갱생보호법인 활성화 - 보호관찰 전면 실시
가석방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1991	문헌연구 조사연구	- 가석방의 본질과 기능 - 각국의 가석방제도 - 우리나라 가석방 법규 및 절차 - 가석방 운용현황 및 실태조사	- 전문 분류센터 도입 - 장인범에 대한 보호관찰 확대 실시 - 선형보상제도 도입 - 형집행법원 도입
교정공무원의 의식에 관한 연구	1991	조사연구	- 범죄에 대한 의식, 교정에 대한 인식, 직무만족도 등	- 교정대학과 교정학과 신설 - 신규채용시 인성검사 도입 - 교정직과 교회, 분류직의 통합
사설교도소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연구	1993	문헌연구	- 사설 교도소 등장배경 - 계약사 고려사항; 도입 및 운영절차 - 사설교도소 모델 제시	- 교정의 사회화, 낙인의 최소화, 자원의 효율적 활 용 등의 측면에서 사설교도소 도입의 필요성 대두 - 종교에 기반한 민영교도소 도입 가능성 제안
미국의 교정현황에 관한 연구	2002	문헌연구	- 미국 교정제도 현황; 수용자 현황, 가석방자 현황, 사형수 현황 등 - 교정에 대한 이해도, 교정이미지, 질서유지, 수용 자 교정교화, 수용자 생활조건, 교정교화 이념에 대한 시각 등을 조사	- 인종별 차이, 연소화 등 미국 범죄자 인구의 특성 및 추이 분석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03	조사연구		- 교정에 대한 적극적 홍보
한국과 선진국의 교정조직 구성 및 운영의 차이에 관한 연구	2003	문헌연구 통계자료	- 미국, 독일, 일본의 교정조직 구성과 운영의 특성 분석 - 한국 교정을 위한 시사점 도출	- 독립 교정조직의 필요성 - 교정시설의 소규모화와 전문화 - 교정의 특수성 반영한 교육훈련제도 개편
가석방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2004	문헌연구 통계자료 조사연구	- 가석방율, 집행률, 재입소율 등 현황 분석 - 가석방에 대한 수용자와 직원의 인식 조사	- 체계적인 사회적응 훈련 제공 - 가석방의 확대 - 가석방심사기준의 개량화
미국의 민영교도소에 관한 연구	2004	문헌연구	- 미국의 민영교도소의 운영실태와 관련 쟁점에 대 한 연구	- 국가형벌권의 민간이양에 대한 쟁점 - 민영교도소의 비용절감효과와 서비스의 질에 대 한 확산 부족

제목	발간연도	연구방법	연구내용	정책제언
교정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2004	문헌연구	- 교정공무원의 인사·조직관리에 대한 국내현황 파악 및 문제점 분석 - 교정공무원에 대한 외국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미국·프랑스·독일 등) - 교정공무원의 인사·조직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 필기시험성적이라는 획일적인 선발방식을 지양 하고, 시험과목 및 선발절차 재조정 및 행정고시 제도 개선 - 교정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조정을 통해 승진적제 해소 -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전환 - 교정국과 보호국을 통합하여 교정보호청 신설 - 근무자세 확립 - 수용질서 확립 - 처우 합리화 - 지속적 시설점검
교정사고의 처리실태와 개선방안	2006	문헌연구 통계자료 조사연구	- 교정사고의 유형과 발생실태 - 교정사고 처리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직원 의견조사	- 교정보호의 단절로 인한 범죄자 관리 취약성 및 문제점 진단 - 교위합범죄자, 출소자를 위한 교정보호 연계방안 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 영국과 미국의 교위합범죄자, 출소자 관리정책 사례연구
교정정책과 보호정책의 연계성 강화방안	2009	문헌연구 조사연구	- 교정보호의 시설, 조직, 수용과 호송 현황 - 치료감호시설의 계호체계 문제점 진단 - 해외사례 연구: 독일, 영국, 미국, 일본	- 교정보호의 단절로 인한 범죄자 관리 취약성 및 문제점 진단 - 교위합범죄자, 출소자를 위한 교정보호 연계방안 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 영국과 미국의 교위합범죄자, 출소자 관리정책 사례연구
치료감호시설의 효율적 계호방안에 관한 연구	2015	문헌연구 통계자료	- 치료감호시설의 계호체계 문제점 진단 - 해외사례 연구: 독일, 영국, 미국, 일본	- 교정보호의 단절로 인한 범죄자 관리 취약성 및 문제점 진단 - 교위합범죄자, 출소자를 위한 교정보호 연계방안 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 영국과 미국의 교위합범죄자, 출소자 관리정책 사례연구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현상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2016	문헌연구 통계자료	- 교도소 과밀수용현황과 문제점 - 과밀수용의 원인 및 배경 - 과밀수용 해소방안	- 교정보호시설 이전 및 신설을 둘러싼 입지갈등의 사례분석 - 해외사례 분석: 일본과 독일 - 교정보호시설에 대한 주민인식조사
교정보호시설의 입지갈등과 대응방안 연구	2018	문헌연구 설문조사 전문기자문	- 교정보호시설의 입지갈등과 대응방안 연구	- 교정보호시설에 대한 인식제고 방안 모색

제3절 교정정책의 변화로 살펴 본 연구의 성과

1. 형 집행법 개정내용으로 본 연구성과

지난 30년 동안 ‘연구원’이 수행한 교정분야 연구의 성과는 얼마나 되는가? 지금까지 살펴 본 ‘연구원’의 교정정책 분야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언과 실제 교정정책의 변화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을 검증하기는 어렵고 이 점 때문에 정책의 변화를 연구의 성과로 바로 연결시키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책기관의 주요기능이 정부정책의 분석 및 지원이라고 본다면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성과는 실제 정부정책과 제도의 변화가 지표가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교정관련 법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과거 행형법이 수용자의 교정교화보다는 질서확립과 관리에 초점을 두다보니 수형자의 기본권, 인권보호 등의 가치에 대해서는 선언적 규정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 행형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학계와 법조계, 인권단체 등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였다. 1994년의 현행 행형법의 문제와 개선방안, 그리고 1996년의 「독일행형법에 관한 연구」(장규원)는 수형자의 기본권보장,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천명, 개방처우의 지향, 국제기준의 반영 등이 법 개정에서 반영할 것을 제언하였는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년의 제7차 개정에서 수용자의 기본적인 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국적·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였다(법 제1조의3). 그 밖에도 계구사용요건의 강화, 접견참여와 서신검열의 완화, 전화통화 허용 등은 수용자의 기본권 보호차원에서 도입된 제도하고 할 수 있다.

2002년의 「수형자의 법적 권리에 관한 연구」(정진수)는 다시 한 번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수용, 교도작업, 교육, 외부교통, 의료, 징벌 등 모든 측면에서 수형자 법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였다. 행형법이 수용자 관리지침에서 범죄자의 재사회화와 수용자 인권보호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2007년의 제10차 개정에서 대거 반영되었다. 법률의 명칭부터 행형법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에 관한 법률”로 바꾸었고 종전에는 수용자 처우에 있어서 국적·성별·종교 및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금지만을 규정하였으나, 장애, 나이, 출신지역, 출신민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차별금지사유로 추가하였다. 또한 종전에는 수용자의 서신은 원칙적으로 검열할 수 있었고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문학·학술 등에 관한 집필을 할 수 있었으나, 서신내용의 검열 원칙을 무검열 원칙으로 전환하고 집필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폐지하는 등 수형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개정 노력을 현실화하였다(표 IV-2-4) 참조).

개방교도소를 포함한 개방처우에 관한 연구보고서들은 기본적으로 개방처우의 확대, 개방처우의 다양화, 출소 후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등을 제언하고 있다. 1989년의 「개방교도소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이정수 외)에서는 행형법 개정 시 개방처우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개방시설 수용과 처우에 대한 법적 근거는 2015년 제15차 개정에 포함되었다.

[표 IV-2-4] 형 집행법 주요 개정내용

구분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제6차 개정	1996.12.12.	• 일선교정기관의 가석방심사위원회 폐지,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 설치(공정성·투명성 확보)
제7차 개정	1999.12.28.	• 수용자에 대한 인권존중의 원칙 천명 • 민영교도소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 • 계구사용요건의 강화 • 접견참여 및 서신검열의 완화(필요적 사항에서 임의적 사항으로 변경) • 수용자의 전화통화 허용 • 집필의 허가 및 제한 규정 신설 • 귀휴허가요건 완화 및 특별귀휴 신설 • 교도관에 의한 강제력행사의 근거규정 마련 • 징벌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 허용, 징벌집행의 유예제도 도입
제10차 개정	2007.12.21.	• 차별금지사유의 확대 • 서신의 검열제도 개선 및 집필 사전허가제 폐지 • 여성·노인·장애인 및 외국인수용자 처우규정 신설 • 수형자 개별처우 계획 수립 등 규정 신설 • 분류심사 결과를 반영한 경비등급별 수용 • 분류전담시설 지정 • 미결수용자의 무죄추정 및 합당한 지위보장 규정 신설 • 마약류사범·조직폭력사범 등에 대한 특별관리 규정신설 • 보호실·진정실 수용규정 신설 • 청원제도의 다양화 • 교정자문위원회제도 도입
제11차 개정	2008.12.22.	• 사형확정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소년수용자 기준 연령을 만19세 미만으로 조정

구분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 사형확정자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규정 명시 • 사형확정자의 교육, 작업 등 처우에 관한 규정 명시
제12차 개정	2010.05.04.	• 야간 또는 공휴일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간호사의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 마련
제13차 개정	2011.10.19.	•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 공개
제14차 개정	2014.12.30.	• 여성수용자 건강검진에 부인과검사를 포함 • 여성수용자에게 위생물품 지급
제15차 개정	2015.06.28.	• 신입자 건강진단 의무화 • 석방시 영치품 1개월 내 보관신청 가능토록 함 • 소년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 규정 신설 • 개방시설 수용과 처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제16차 개정	2016.01.06.	• 가석방심사위원회와 징벌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과 같은 벌칙을 적용
제17차 개정	2016.12.02.	•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 대해 수사, 재판참석시 사복착용 허용 • 금치처분자에게 실외운동 원칙적 허용
제18차 개정	2018.06.20.	• 체포된 피의자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고정시설에 유치하는 경우 간이 입소절차를 통해 피의자 인격권 보장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에서 발췌, 정리함(2018년 11월 30일 최종 접속).

2. 교정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본 성과

법률의 개정내용을 통해서 연구원이 정책제언의 현실화 정도를 살펴보는 것과 함께 교정정책의 변화에서도 연구 성과를 찾아볼 수 있다. 개방처우의 확대는 1993년부터 누진계급 2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만남의 날 행사가 시작되어 대상자를 점차 확대하였으며 1999년 안양, 대전, 광주, 대구교도소에 부부만남의 집이 설치되고 나중 에 가족만남의 집으로 확대되었다(법무부 교정국, 2003: 68; 법무부, 2005: 222). 2009년에는 안양교도소에 중간처우의 집인 소망의 집이 설치되었고, 2009년에는 천안개방교도소를 기능 전환하여 사회적응 훈련원으로 개원하여 출소를 앞둔 수형자들의 사회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법무연감, 2010: 225). 2011년에는 영월교도소가 수형자자치체 전담교도소로 지정되어 개칭하였다. 2013년에 밀양희망센터를 시작으로 출소예정자들을 위한 중간처우 시설이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2018년의 「개방처우 제도의 개선방안」(권수진 외, 2018)에서는 개방교도소 추가 설치와 사회적응 프로그램

램 다양화, 소망의 집과 희망센터 개선이 다시 제언으로 도출 된 바 앞으로도 개방처우에 대한 정책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석방에 대한 연구도 그동안 두 차례 진행되나, 1991년의 「가석방 실태와 활성화 방안」(장영민 외, 1991)에서는 전문 분류센터 도입, 선행보상제도 도입, 형 집행법원 도입 등의 새로운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는데, 선행보상제도나 형 집행법원의 도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전문 분류센터는 2015년 남부구치소 설치를 시작으로 각 청마다 1개소씩 설치가 되었다. 물론 분류센터의 역할이 가석방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라기 보다는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진단과 처우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는 점에서 연구 보고서가 제안한 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범죄자 선별의 중요성의 측면에서는 동일한 목표를 가진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가석방 운용실태와 개선방안」(박성래, 2004)에서 제안한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직접면담 등 심사필요성, 가석방 심사체제의 일원화, 가석방 확대 등이 제기되나 2011년의 제13차 개정의 내용을 보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을 공개하는 법개정이 있었다. 물론 가석방과 관련한 정책변화의 필요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으며 최근 들어 교도소 과밀과 관련하여 가석방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바 가석방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제언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분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1991년 재소자 분류수용 제도에 관한 연구에서 시작하여 1996년의 「피보호감호자의 사회적응 증진에 대한 연구」(조성희 외, 1996)에서도 언급되었고, 2010년의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차등화 처우모델 개발」(김지영 외, 2010)에서도 지적이 되었으며 이 세 연구보고서는 모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류를 위해 객관적 분류도구의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002년 교정심리검사 도구가 개발되고 2007년 12월의 행형법 전면개정에 따라 범수에 의한 수용에서 분류심사 결과가 반영된 경비등급별 수용으로 바뀌면서 수형자 개별처우계획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고, 2013년 수형자에 대한 집중인성교육이 시작되면서 분류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으며 「경비등급별 분류지표」나 「교정재범예측지표(Correctional Recidivism Prediction Index, co-repi)」를 개발하게 되었다. 또 2015년 고위험범죄자 선별을 위한 분류센터가 남부구치소 설치를 시작으로 청마다 1개소씩 개설하였다(법무연감, 2018: 262-263).

한편 교정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도 연구보고서에 나타나고 있는데 1996년의 「피보호감호자 사회적응 증진과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조성희 외, 1996)나 2003년의 「교정처우 모델에 관한 연구」(장규원, 2003)는 범죄자의 사회복귀와 교정교화를 위해서는 심리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치료(treatment)”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범죄의 심각성이나 상습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치료”해 주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러한 변화위에서 다양한 교정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RNR Model을 소개한다거나 증거기반의 정책 정립을 위해 평가연구가 필요하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다. 교정본부도 이처럼 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폭력사범, 알코올관련 사범, 정신질환자, 아동학대 사범 및 동기 없는 범죄자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였다. 2011년 남부교도소에 심리치료센터를 구축한 이래로 센터의 수를 확대하고 있으며 맞춤형 심리치료와 사전사후 평가연구를 통한 검증을 하고 있다고 한다(법무연감, 2018: 281). 이로서 “치료적 교정 프로그램”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이연담(2015: 57-58)은 2008년 행형법 전면개정부터 현재까지를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도입 시기로 규정하면서 교정심리치료센터 설치, 집중인성교육의 실시, 개별처우의 확립을 교정치료 이념을 반영한 제도로 평가하고 있다. 윤옥경(2018)도 과학적 분류심사, 재범위험성 평가, 치료적 개입을 교정의 전문화 추세로 보고 이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1993년의 「사설교도소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연구」(김용진, 1993)에서는 사설교도소 등장의 배경을 살펴보고 사설교도소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비용절약 차원에서의 민영교도소 보다는 종교교도소로 시작할 것을 제언에 담았는데, 1999년에 민영교도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고 2004년 기독교 재단인 아가페 재단이 설립한 소망교도소가 문을 열게 되어 큰 성과를 보았다.

출소자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연구」(이정수 외, 1989)에서는 출소자를 위한 정책을 펴나가기 위해서 조직의 정비, 규정의 정비를 통해 국가적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교정정책과 보호정책의 연계방안 연구」(정진수 외, 2009)는 고위험 수형자와 출소자를 위한 정책을 펴나감에 있어 교정영역과 보호영역의 정책 연계에 대한 제언을 하고 있다. 현행 조직구조 상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들은 교정본부의 정책대상이고 출소자는 범죄예방정책국의 정책대상이다. 정책대상은 같은 사람이지만 출소 전후에 따라 관련 부처가 달라지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교정본부에서 출소자는 정책대상이 아니고, 범죄예방정책국에서는 교도소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정책대상이 아니라고 하다 보니 출소자, 특히 고위험 출소자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조직의 연계나 통합에 대한 주장은 단일한 것이 아니다. 연구보고서에서는 교정보호청의 신설을 제언하였지만 교정의 독자적인 조직 독립을 주장하기도 하고, 교정과 보호의 통합을 주장하기도 하고, 또 다른 주장은 교정과 보호의 통합이 필요하되 한쪽으로는 흡수에는 동의하지 않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권해수, 2014, 윤옥경, 2018). 범죄예방과 지역사회 안전을 목표로 하는 두 조직의 연계에 대해서는 기능상, 조직구조상 최선의 해법을 찾아가야 하는 과제가 아직 남아있다.

요약하건대 ‘연구원’에서 수행된 교정정책 관련 연구들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우리나라 교정정책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학의 한 세부 영역으로서 교정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인력이 전체적으로 많지 않아 교정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연구원’의 연구는 이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주는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직 교정공무원과 보호직공무원이 파견되어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함께 하고 있고 범죄자에 대한 심리적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자도 확보되고 있다는 점은 교정관련 연구가 앞으로도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한다. 다만 예전에 존재했었던 교정보호연구실이 범죄예방과 치우연구실로 개편된 것을 볼 때 교정에 대한 연구가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염려와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래에서는 교정에 대한 연구에서 고려해 주었으면 하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제안을 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제4절 향후 연구전망 및 과제

15년 전 윤옥경(2004)은 교정에 관한 연구를 대표하는 학회지인 「교정연구」에 실린 학술논문 207편(1991-2003)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교정연구가 교정행정과 정책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교정프로그램의 효과나 교정상담과 분류, 갇혀있음, 수용자의 생활세계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평가하였다. 최근에는 정병수와 김은주(2018)가 언어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방법론을 통해 창간호부터 2017년까지의 「교정연구」 논문 693편을 키워드 중심의 분석을 한 후 초기(1991-2000)에는 주로 교정관련 제도나 정책이념이 강하게 부각되었다면 두 번째 시기(2001-2010)에는 지역 사회 교정, 개별처우 등이 부각되었고, 2011년 이후에는 가석방, 재범, 치료 등의 키워드가 많이 등장하였다고 결론을 맺었다. 이러한 교정관련 연구의 동향이 ‘연구원’의 연구주제에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기의 연구에서는 「교정시설의 교화활동(1991)」, 「교정공무원의 의식(1991)」, 「현행 형행법의 문제와 개선방안(1994)」등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문제를 훑어보는 연구들이 보이는 반면 시간이 지나면서 「범죄자 처우의 과학화: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연구(2011)」 시리즈에서 보듯이 한국형 위험성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그 타당성을 점검하는 평가연구가 나타나고 처우 등급에 맞는 교정처우 프로그램 개발 등 조금 더 구체화되고 세분화되는 경향을 띄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교정보호시설 입지갈등에 대한 연구(2018)」와 같이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앞으로의 연구도 일반론적 접근 보다는 구체적인 세부적인 주제를 더 많이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범요인 연구나 치료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등은 계속 수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새로이 등장하는 현안에 대한 발빠른 연구도 많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앞으로의 연구과제에 대한 제언을 몇 가지로 제시하자면,

첫째, 교정정책은 매우 빨리 변하고 있고 따라서 제도의 한계점이나 개선점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가석방 제도는 변함없이 있지만 가석방의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은 변화하고 있다. 초기의 가석방제도는 누진제도와 연결되어 시행되었지만 최근의 가석방 제도는 경비처우 등급별 소득점수와 소 내 생활, 그리고

재범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가석방 확대에 대한 요청이 많이 있는 반면에 가석방 확대의 문제점도 나타날 수 있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범죄피해두려움의 문제, 죄형법정주의의 판결을 행정처분으로 변경하는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개방처우도 유사하다. 개방처우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변하고 있고 따라서 변화하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도수정의 기반을 위한 연구를 '연구원'이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교정정책의 발전을 따라서 한 주제에 대해 주기적으로 연구를 반복해 주기를 바란다.

둘째, 지속적으로 교정 '현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주시기를 바란다. 고령화와 과밀, 교정 전문화를 위한 직무훈련방안 등 사회의 변화와 함께 찾아오는 문제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고령화는 의료비 지출 등의 비용적 측면뿐 아니라 생산작업 등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것이다. 교도작업 특별회계에 미칠 영향과 대안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교도소 과밀의 문제나 교도소 신축이전을 둘러싼 갈등의 해결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

셋째, 정책적으로 소외된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여기에 출소자도 포함이 된다.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출소자에 대한 정책은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방위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주제이다. 조직구조의 문제, 예산의 문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출소자 관련해서 존재한다. 정신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대책, 지적장애자에 대한 대책, 성소수자에 대한 대책 등 특별한 욕구가 있는 수용자(special need prisoners)의 욕구(need)와 위험요인(risk) 그리고 수용성(responsivity)을 고려한, 즉 RNR 모델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도 많이 수행이 되었으면 한다.

넷째, 방법론적으로 질적 연구를 채용하는 연구가 많아졌으면 한다. 교도소내의 생활세계를 연구한다거나 교도관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맥락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참여관찰이 좋은 방법이다. 참여관찰을 포함한 질적 연구는 시간과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요구되면서 과학적 엄정성을 지켜내기 어려운 방법이지만 보다 효율적인 교정정책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들이 있는 일선의 그 세계로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최근 들어 범죄자의 재범가능성을 측정하는 객관적 지표들이 많이 개발되

고 있다. ‘연구원’에서 개발한 KORAS-G와 같은 여러 평가도구들에 대한 지속적 평가 연구(evaluation study) 필요하다. 증거기반의 교정(evidence - based corrections)은 교정의 전문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윤옥경, 2018: 61). 맞춤형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적용되면서 이제는 질 관리(quality control)도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교정영역에서도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연구를 넘어 메타분석(meta analysis)과 같은 보다 종합적이고 실무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김빛나, 2018: 11-15).

여섯째, 교정정책에서 혁신적인 제도의 도입 등에 관한 선도적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정영역에서의 여성직원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연구 같은 것이다. 지금까지는 범죄자나 교도소 수용자는 대부분이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직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가 우세했지만 군인이나 경찰 등에서의 성차는 점차 좁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남성이 다수라는 이유로 교정직에 여성의 진입을 막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교정교화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 남성에게 못지않다는 연구결과가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작용을 과대 해석하여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해외의 많은 사례에서 보듯이 많은 국가에서 직원들의 성별에 관계없이 수용자들을 관리하고 처우한다. 물론 고용상의 평등이라는 직원들의 권리와 수용자들의 사생활을 누릴 권리사이에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성 교차 감독(cross-gender supervision)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교정의 전문화의 연장선에서 여성 교도관들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함께 부가적인 문제들에 대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도 ‘연구원’에서 수행할 가치가 있는 연구주제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교정학 교과서를 공신력 있는 기관인 ‘연구원’에서 집필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교정학 교과서는 미국의 교과서를 그대로 번역하거나 다양한 서적들을 조합해서 만든 것이 대부분이다. 더구나 교정학이 시험과목이다 보니 학원가에서 만들어진 수험서가 교과서처럼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그 내용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용이나 출처없이 검증되지 않거나 더 이상 타당하지 않은 주장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연구원’이 교정학 교과서를 발간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를 통해 교정 용어를 정의하고 바로잡는 일도 함께 진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교정용어인 “교정사고”는 그 곳에 포함된 사건과 사고들을 제대로 포섭하고 있는 용어인가? 사고는 우연히 발생한 일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폭행이나 도주, 싸움, 자살 등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관리의 부족이나 교도소 환경에 의해 초래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고”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 교정용어로 활용되고 있는 사회적 처우, 중간처우, 개방처우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도 공식기관의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 권수진·권창모·오영근(2018). 개방처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권수진·최준혁(2015). 치료감호시설의 효율적인 계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권태정(1991). 재소자 분류수용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권해수(2014). “우리나라의 교정행정 발전방안 연구,” 교정연구 제63호: 7-25.
- 김민영·배상균·박경규(2018). 교정보호시설의 입지갈등과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빛나(2018). “범죄학에서의 체계적 고찰과 메타분석의 활용 및 연구동향: 미국 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소식 2018 winter, vol 148: 11-15.
- 김상희·이인순·윤영철(1991). 교정시설의 교화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용진(1993). 사설교도소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영·박선영·윤창식(2010).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차등화 처우모델 개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성래(2003).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성래(2004). 가석방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재운(1991). 교정공무원의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형민·류종하(2006). 교정사고의 처리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법무부 교정국(2003). 「국민의 정부 교정행정 개선: 1998-2002」.
- 법무부(2005). 「법무연감」.
- 법무부(2010). 「법무연감」.
- 법무부(2013). 「공정한 법치, 따뜻한 사회, 희망찬 미래: 정책자료집」, 2008.2-2013.2.
- 법무부(2018). 「법무연감」.
- 안성훈(2016).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현상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성진(2004). 미국의 민영교도소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윤옥경(2004). “교정연구 게재논문 분석을 통해 본 교정학의 연구영역과 연구동향,” 교정연구 제22호: 65-89.

- 윤옥경(2018). “교정조직 독립의 필요성과 과제,” 교정연구 제28권 제2호: 47-78.
- 이병기·승성신(1994). 개방처우제도에 관한 연구 -운영실태와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수정(2011).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II) -위험성 평가도구의 개발에 관한 연구(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수정·황의갑·박선영(2010).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I) -위험성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승호·윤옥경·금용명(2014).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III) -교정처우 관련 국제규범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연담(2015). “한국교정 70년의 회고,” 교정연구 제69호: 41-79.
- 이정수·신의기·김효정·최창식(1989). 갇혀있는 사람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정수·정동진·장석현·이윤호(1989). 개방교도소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개방처우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천현·류혁상·이진국·도중진(2005). 행형법 개정시안에 관한 검토보고서 -교정시설 수용자처우 등에 관한 법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규원(1994). 현행 행형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규원(1996). 독일 행형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규원(2003). 교정처우 모델에 관한 연구 -사회 치료적 처우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영민·탁희성(1991). 가석방의 실태와 효율적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병수·김은주(2018). “교정연구의 연구경향 분석과 과제: 언어 네트워크 방법론을 활용한 시기별 비교를 중심으로,” 교정연구 제28권 제3호: 85-108.
- 정진수(2002). 수형자의 법적 권리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진수·김기환·유병철·이창한(2009). 교정정책과 보호정책의 연계성 강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진수·박성래·박정선(2004). 교정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진수·하태훈·최균용·김광호(2014). 한국과 중국의 형사사법과 교정처우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성희·김보경·김종률(1996). 피보호감호자의 사회적응증진과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 처우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영신·이승호·윤옥경·금용명(2014).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 (Ⅲ)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영신·이승호·윤옥경·금용명(2014).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 (Ⅲ) -총괄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유성·전창화·최무현(2003). 한국과 선진국의 교정조직 구성 및 운영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인섭(1991). 교정교화분야의 민간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홍남식(2002). 미국의 교정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에 관한 법률, 제·개정 이유(2018년 11월 30일 최종 접속).

제 3 장

교정정책(Ⅱ) : 시설 내 처우 관련 연구

박 선 영

교정정책(Ⅱ) : 시설 내 처우 관련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으로 함)에서 수행한 교정정책: 시설 내 처우 연구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장에서는 국/내외 및 ‘연구원’의 연대별 교정연구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연구원’의 시설 내 처우 연구 보고서를 세 개의 하위영역으로 분류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시설 내 처우 연구의 학문적, 정책적 성과와 함께 한계점을 진단하고, 향후 연구에 관한 제언도 제시하였다.

제1절 교정연구 동향

국/내외 교정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원’이 첫 보고서를 발간한 1990년을 시작으로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의 연구원의 시설 내 처우 연구와 국내 대표적인 학술지인 교정연구¹⁾와 교정담론²⁾, 미국의 국가 연구 기관인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³⁾의 연구를 검토하였다.

교정과 관련한 국내 연구는 학회인 “교정학회”와 “아시아 교정포럼”이 각각 학술지인 “교정연구”와 “교정담론”을 통해 이루어졌다. 다른 범죄관련 학술지(예를 들어 형사정책 연구, 한국경찰 연구, 한국범죄심리 연구 등)들이 대부분 형법, 범죄전반, 경찰 관련 연구이며 교정연구는 극히 드물게 게재된 반면, 교정연구와 교정담론은 교정과 행형법 연구가 주를 이루어 우리나라 교정연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1) 한국 교정학회 홈페이지 참조(<http://www.krscs.or.kr/>, 2018년 11월 30일 최종 접속).

2) 아시아 교정포럼 홈페이지 참조(http://www.correctionforum.or.kr/html/sub3_01.html, 2018년 11월 30일 최종 접속).

3) 미 법무연구원 홈페이지 참조(<https://www.nij.gov/Pages/welcome.aspx>, 2018년 11월 30일 최종 접속).

교정학회는 1990년에 창립되어 그해 5월에 첫 학술지 “교정연구”를 발간하였으며, 1999년까지는 연 1회, 200년부터 2001년까지는 연 2회, 2002년부터 현재까지는 연 4회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아시아 교정포럼은 교정학회보다는 다소 늦은 2007년 3월에 창립되어 2007년 12월에 첫 학술지 “교정담론”을 발간하고 2008년~2014년까지는 연 2회,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연 3회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학회활동과 교정연구를 수행하는 학자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형법학자와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 ‘연구원’의 연구자가 주된 역할을 수행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외에 1990년대에 전국적으로 경찰행정학과가 증가하면서, 경찰행정학과 교수들 역시 범죄나 경찰관련 연구 외에도 교정과 관련된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정연구나 교정담론 학술지를 살펴보면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교도소, 교정청, 교정본부 등 교정현장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상당한 연구를 진행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실무자들이 법학과, 행정학과, 교정보호학과, 경찰행정학과에서 석, 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실무와 학문을 겸비한 실제적인 연구결과물 들을 배출해 냈다.

외국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교정에 관한 가장 많은 연구를 국가 주도로 실행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미국은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 산하에 국가 연구소인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이하 NIJ)을 통해 다양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NIJ의 연구영역은 교정(correction), 법원(court),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마약과 범죄(drug & crime), 법과학(forensic science), 경찰(law enforcement & policing), 기준들(standards), 기술(technology), 소수인 정의(tribal justice), 범죄피해(victimization) 등 10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이 장에서는 교정영역에서 연도별 수행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1. 1990년대: 1990년~1999년

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년과 1999년 사이에 본 영역에서는 총 18종의 연구로 시설 내 처우 전체 40종 가운데 45%에 해당되며 이후 2000년대, 2010년대와 비교했을 때 이 시기에 시설

내 처우에 관해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표 IV-3-1] 참조).

본 연구의 하위 영역으로 분류한 세 가지 영역으로 볼 때, 교정처우 전반 및 특정처우(7개), 특정집단(7개), 특정제도 및 주제(4개)이다. 교정처우 전반 및 특정처우는 전체 13종의 연구 가운데 54%에 해당되는 7종이 90년대에, 특정집단은 전체 18종 가운데 38.9%에 해당되는 7종, 특정제도 및 주제는 전체 9종 가운데 44%에 해당되는 4종이 90년대에 실시되었다. 2019년 연구가 2010년대 연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시설 내 처우 연구의 상당부분이 90년대에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교정처우 전반과 특정처우의 경우 전체처우와 가장 기본적인 교도작업, 직업훈련, 의료보건, 교정교육이 이 시기에 실행되었다. ‘연구원’ 내의 연구자뿐만 아니라, 파견된 실무자 등과 함께 교정시설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모든 처우와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세하고 방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국책연구원이라는 특수성에 맞게 개인 연구자가 접근하기 힘든 교정시설의 자료들이 분석되고, 대규모 설문조사가 실시되어서, 기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교정시설에 관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정집단과 관련해서는 교정시설의 대표적인 집단인 누범자, 미결수, 강력수형자, 소년수형자, 피보호감호자, 여성수형자 등이 집중적으로 연구되었다. 반면에 노인이나 출소 전 수형자, 마약사범은 이 시기에 단 한편도 다루어지지 않아서, 90년대 시설 내 처우 연구의 주된 연구대상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특정주제와 관련해서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수용자 생활실태, 수용자 폭력행위가 연구되었으나, 이후에는 다시 연구되지는 않았다.

연구방법을 살펴보면 18종 가운데 11종의 연구가 설문조사나 심층면접을 실시한 실증연구이며, 7종은 문헌연구로만 진행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실시된 연구들은 거의 모든 연구가 설문조사나 심층면접을 사용한 실증연구로 진행되었다.

[표 IV-3-1] 1990년대(1990~199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시설내 처우 연구물

발간 연도	연구제목	연구자	연구방법	연구목적
1990	교정처우의 현황과 개선방안	김상희 정동진 윤영철	문헌연구	교정행정과 교정처우 전반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교정행정과 진일보된 교정처우 개선안 제시

발간 연도	연구제목	연구자	연구방법	연구목적
1990	재소자의 생활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심영희 윤서은 임희철 김치곤	문헌연구 설문조사 (수용자, 교도관)	수형자의 현재 생활 상태와 향후 계획을 조사하여 안정적인 수용생활과 사회복귀 자원을 위한 방안 제시
1991	누범수용자의 효율적 관리방안	임 웅	문헌연구	누범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교정시설 내 처우와 출소후 지원모색
1992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연구	신양균	문헌연구	형이 확정되지 않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 현황을 분석하고, 이들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 제시
1992	보호감호의 실태와 개선방안	장규원	문헌연구	보호감호 제도 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안 제시
1992	수형자 직업훈련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문영호 이인순 박강우	문헌연구 설문조사 (수용자, 직업훈련교사 , 출소자)	현행 수형자의 직업훈련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효과성있는 직업훈련 방안 제시
1993	강력범 수형자의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이병기 승성신 여하은	문헌연구 설문조사 (강력사범, 교도관)	강력사범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처우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대응방안 제시
1993	치료감호에 관한 연구	장규원 진희권	문헌연구	치료감호제도의 효과성을 증진하고 치료감호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회복귀 방안을 제시
1994	수용자의 보건의료실태 및 관리방안	손명세 박종연 허영주	문헌연구 설문조사 (수용자) 심층면접 (의료인력)	교정시설의 보건의료 현황을 파악하고, 수용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의료인력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
1994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정치료 및 보호에 관한 연구	장영민 박강우	문헌연구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처우 현황을 분석하고 법적인 정비방안을 제시
1995	교도작업의 실태와 개선방안	조준현 김성언	문헌연구 설문조사 (교도작업 참여 수형자)	교도작업 제도와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교도작업에 참여한 수형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실효성있는 교도작업 개선안 모색
1995	소년수형자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이훈규 이정규	문헌연구 설문조사 (소년수형자, 교도관)	소년교도소 수형자 처우 현황을 파악하고 소년수형자와 교도관 설문조사를 통한 효과적인 관리방안 및 출소지원 방안 제시
1995	여성수형자의 수형생활실태	김두섭 전영실	문헌연구 설문조사 (여성 수형자)	여성수형자의 수용생활 현황을 검토하고, 여성수형자 설문조사 통해 안정된 수용생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방안을 제시

발간 연도	연구제목	연구자	연구방법	연구목적
1995	외국의 수형자 직업훈련제도에 관한 연구	장규원	문헌연구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수형자 직업훈련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제도를 분석
1996	수용자 교정교육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이훈규 이정규	문헌연구 설문조사 (수형자, 직원)	교정교육 실태를 진단하고, 안정된 수용생활과 출소후 재범억제를 위해 교정시설 내 교정교육의 효과성을 증진하는 방안을 제시
1997	피보호감호자의 교정처우실태	김종정 (교정관)	문헌연구 설문조사 (수형자, 교도관)	피보호 감호자의 처우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 관리방안과 지원방안을 제시
1998	수형자 외부통근제도에 관한 연구	김종정 (교정관)	문헌연구 설문조사 (외부통근 수형자, 교도관, 외부업체 직원)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중요한 요소인 외부통근제도의 확대와 효과성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
1999	교도소 내 수용자폭력행위에 관한 연구	임재표 (교정관)	문헌연구 설문조사 (수형자) 심층면접 (폭력으로 징계받은 수형자)	안정적인 수용생활과 출소후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수용시설 내 폭력의 양상과 실태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제시

나. 국내의 연구

교정연구에 관한 대표적인 학술지인 교정연구와 교정담론의 경우, 교정담론은 2007년에 학회가 성립되었지만, 교정연구는 ‘연구원’과 동일하게 1990년에 첫 학술지를 발간하였다. 학술지 교정연구의 1990년대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법학자들을 중심으로 형벌의 본질과 처우, 형행법 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법학, 교정학,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교정처우 전반, 교정행정 등 특정한 처우나 특정집단이 라기 보다는 전체적이고 이론적인 논의들이 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NIC의 연구를 살펴보면 출소자 지원연구가 대다수를 이루며, 교정시설 치료프로그램 평가, 직업훈련, 약물중독, 우울증 수형자 관리 연구가 이루어져서, 우리나라 보다 먼저 수형자 사회복귀에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2. 2000년대: 2000년~2009년

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년부터 2009년 사이에 수행된 시설 내 처우 연구는 15종으로 전체 40종의 37.5%에 해당되며 90년대에 비해 감소하였다(표 IV-3-2 참조).

소주제별 연구현황을 살펴보면 (1) 교정처우 전반 및 특정처우는 3종으로 전체 13종 가운데 23%로 전년 대 대비 감소하였으며, (2) 특정집단 연구는 9종으로 전체 18종 가운데 50%로 전년 대 대비 한편 증가하였으며, (3) 특정제도 및 주제는 3종으로 총 9종 가운데 33.3%로 전년 대 대비 한편 감소하였다. 교정처우 전반 및 특정처우로는 의료보건과 외부 교통만이 연구되었으며, 다른 처우는 연구되지 않았다.

특정집단과 관련해서는 90년대에 이어 미결수, 정신질환자 연구가 다시 한 번 수행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 처음 연구된 집단으로 여자 청소년, 노인 수형자, 출소전 수형자, 장기 수형자, 마약사범이 연구되어 노인인구의 증가와 수형자 사회복귀의 중요성, 강력처벌 경향으로 인한 장기수 증가, 마약사범의 증가가 연구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연구 방법적으로는 15종 가운데 12종이 설문조사나 심층면접을 활용하였으며, 3종만이 문헌연구를 활용하여 실증연구의 비중이 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표 IV-3-2] 2000년대(2001~200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시설내 처우 연구물

발간 연도	연구제목	연구자	연구방법	연구목적
2001	노인 수형자의 특성 및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강은영	문헌연구 심층면접 (노인수형자, 교도관)	노인 수형자 처우 현황 파악과 수형자와 교도관 심층면접을 통한 효과성 있는 처우 방안을 제시
2001	마약류관련 수용자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홍남식	문헌연구 설문조사 (수형자, 교도관)	마약사범에 대한 교정처우 현황을 진단하고 재범억제를 위한 처우와 지원 방안 제시
2001	출소전 수형자의 의식조사	탁희성	문헌연구 설문조사 (출소전 수형자)	출소전 단계의 수형자에 대한 현황파악과 설문조사를 통해 실효성있는 사회복귀 지원방안 제시
2002	여자 비행청소년의 교정처우실태에	전영실	문헌연구 심층면접	여성비행청소년의 처우현황을 진단하고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처우와

발간 연도	연구제목	연구자	연구방법	연구목적
	관한 연구		(여자비행청소년) 설문조사 (여자비행청소년)	지원방안 제시
2003	21세기 교정비전과 처우의 선진화방안	정진수 김종정 박양빈 이윤호 이종택	문헌연구 설문조사 (일반시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이 기대하고, 진일보된 교정행정과 수형자 처우방안을 분석
2003	미결수용자 처우에 관한 연구	정진수	문헌연구 설문조사 (미결수용자)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 실태 파악과 효과적인 처우 방안 제시
2003	범법정신장애자 등에 대한 법적 처우에 관한 연구	원범연 조성용	문헌연구 현장방문	정신장애 수용자의 관리안 개선과 치료감호소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제시
2003	소년미결구금제도 에 관한 연구	김지선	문헌연구	미결 구금된 미성년자에 대한 처우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제시
2004	수용자 외부교통 확대방안 연구	조병인 원혜옥 민수홍 이경재	문헌연구 설문조사 (수형자, 교도관)	접견, 귀휴, 가족만남의 집, 외부통근작업 등 수형자의 외부교통에 관한 개선방안 제시
2004	수용자처우에 대한 시민감시제도 연구	조병인	문헌연구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시설 내 처우를 위한 시민의 감시와 모니터링 방안 제시
2005	여자 청소년의 비행과 처우에 관한 연구	최영신	문헌연구 설문조사 (남/녀 비행청소년)	여자비행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여 성별에 맞는 효과적인 맞춤형 처우방안 제시
2005	장기수형자 처우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승만 신연희	문헌연구 설문조사 (남/녀 장기수형자)	장기수형자의 처우현황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관리감독 방안 제시
2006	장기수형자 처우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정영진 신연희	문헌연구 설문조사 (남자 장기수형자, 직원)	장기수형자의 처우현황을 분석하여 실효성있는 관리감독 모델 제시
2008	수용자의 보건·의료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성진 노용준 김안식 정영진	문헌연구 설문조사 (의료직 직원, 수형자)	수용자에 대한 보건·의료처우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제시
2009	수형자의 법질서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연성진 노용준 신경우	문헌연구 설문조사 (수형자)	수용자의 준법정신 강화를 통해, 수용시설 내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고, 출소 후 재범억제 방안을 제시

나. 국내외 연구

학술지 교정연구의 2000년대의 특이한 점은 이전 연대에서 법학과 교정학 교수, 실무자들에 의해 연구들이 주로 행해졌다면, 이러한 기존의 연구집단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인 경찰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학과, 심리학과 교수들로 교정 연구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이에 교정시설 내의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과 특정 수형자 집단연구, 외국제도 소개 연구가 증가하였으며, 노인 수형자, 외국인 수형자, 여성 수형자에 대한 연구도 빈번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실무자의 연구 참여가 많은 이유로 인해 교정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연구가 상당히 많이 실시되었다.

2007년 창간된 교정담론은 학회의 이념에 맞게 교정에 대한 철학적, 인문학적 논의들이 주되게 이루어졌으며, 북한 교정, 교도소 건축특성 등 그간 시도되지 않았던 특별한 주제들이 많이 다루어졌다. 교정교화 프로그램, 사회복지, 여성청소년 등 일반적인 주제들도 연구되었다.

미 NIC는 90년대에 비해 2000년대 들어서 연구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수형자 사회 복귀에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전년 대와 유사하게 약물중독 수형자 치료, 교정시설 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특이한 점은 교정시설 내 수형자 폭력과 성폭력 연구가 2006년에 상당수가 진행되었으며, 금지물품, 교도소 안전, 부모의 구금 등이 연구되었다.

3. 2010년대~현재

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년도 연구가 포함되지 않아서 앞선 90년대와 2000년대와의 정확한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시설 내 처우 연구가 상당히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표 IV-3-31 참조). 전체 연구 40종 가운데 17.5%에 해당되는 7종이 수행되어서, 다른 연대와 비교할 때, 가장 적은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교정처우 전반 및 특정처우는 전년 대와 동일하게 3종이 진행되었으며 의료보건의 2017년에 연구되어서 유일하게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모두 연구된 처우였다.

2014년에 수형자 집중인성교육제도가 도입되면서 2015년에 인성교육 연구가 진행되었고, 교도작업 연구가 한편 수행되었다. 특정집단에 관한 연구는 가장 적은 양인 2종이 실행되었는데, 가장 높은 재범률을 보이는 유형인 마약사범 연구, 노인인구 증가로 계속 증가 일로에 있는 노인수형자 연구가 전년 대에 이어 다시 한 번 수행되었다.

특정주제로는 치료감호제도가 93년에 이어 다시 연구되었으며, 수용자 자녀문제에 관한 연구가 처음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방법론적으로는 7종 가운데 3종이 심층면접이나 설문조사를 활용하였으며, 4종은 문헌연구를 활용하였는데 이는 법적 정비방안이나 외국사례 분석으로 인함이라고 볼 수 있다.

[표 IV-3-3] 2010년대(2010~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시설내 처우 연구물

발간 연도	연구제목	연구자	연구방법	연구목적
2010	교도작업의 개선방안 연구	탁희성 안성훈	문헌연구	실효성있는 교도작업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방안 제시
2011	치료감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안성훈	문헌연구	치료감호자 처우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법적·제도적 정비방안 제시
2012	마약류사범 재활센터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강은영 신성만	문헌연구	마약류 사범의 특성을 진단하여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개발안 제시
2012	수용자 자녀문제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분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박선영 신영희	문헌연구	수용자 자녀에 대한 특성분석과 국외의 수용자 자녀지원 현황과 제도 제시
2013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수형자 처우방안	강은영 권수진 원혜옥	문헌연구 심층면접 (노인수형자) 설문조사 (교도관)	노인수형자 처우 현황을 파악하고 실효성있는 처우와 지원방안 제시
2015	수형자 집중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연구	최영신 박선영	문헌연구 설문조사 (수형자, 외부강사)	현행 수형자 집중인성교육 제도의 운영현황을 진단하고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제시
2017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XI) : 교정시설 의료처우에 관한 연구	권수진 한민경 권창모 주영수	문헌연구 설문조사 (수형자, 일반인) 심층면접 (수형자, 의무관)	교정시설 의료처우 실태를 분석하고 의료처우 개선방안 제시

나. 국내외 연구

대표적인 학술지의 교정연구에서는, 90년대와 2000년대 보다 연구 주제가 더 세분화 되고 전년 대와 유사하게 다양한 학문의 연구자와 실무자가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출소자의 재범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서 사회복귀 연구,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교정시설 내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연구가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및 노인 수형자, 여성 수형자, 비행청소년, 수형자 가족관계에 관한 연구가 상당수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학술지 교정담론은 전년 대와 유사하게 교정을 인문학, 철학 등과 접목한 연구들을 주로 게재하였으며, 교도소 관리를 위한 첨단과학의 이용과 로봇 교도관 등의 주제들도 다루고 있다. 또한 수형자 사회복귀, 세부적인 교도소 내 교정교화 프로그램, 음악 및 미술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진단, 수용자 자녀와 가족관계에 관한 연구, 회복적 사법을 교정에 접목시키는 시도들, 교정공무원 역량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2010년대 미 NIC의 연구는 전년 대 대비 2배로 증가되었으며, 여전히 수형자 사회복귀에 관한 연구, 교정시설 내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연구가 주되게 이루어졌다. 구금이 재범에 미치는 영향 및 구금이 자녀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연구, 독방구금 효과성, 교도소 내 피해경험, 수형자 적응문제, 금지물품, 교도소 안전, 화상접견 등의 연구가 다수 행해졌다.

제2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분석

지난 30년간 ‘연구원’에서 수행된 교정에서의 성인사범 대상 시설 내 처우관련 연구는 총 40종이다. 40종의 연구를 다시 분류하면 [표 IV-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교정처우 전반 및 특정처우 (2) 특정집단 (3) 특정제도 및 특수주제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표 IV-3-4] 교정정책 시설내 처우 소분류와 연구 편수

	소분류	주요 내용	연구 종수
1	처우 전반 및 특정처우 (13종)	교정시설 내 수용자 처우 전반	2종
		교도작업, 직업훈련, 의료보건, 교정교화 및 인성교육, 외부교통	5개 처우 11종
2	특정집단 (18종)	누법, 미결수, 강력범, 약물남용, 정신질환자, 소년수, 여자청소년, 노인, 여성, 출소전, 피보호감호자, 장기수	12개 집단 18종
3	특정제도 및 특수주제 (9종)	보호감호제도, 치료감호제도, 소년미결구금제도	3개 제도 4종
		수형자 생활실태/폭력행위/법질서, 수용자 처우 시민감시, 수용자 자녀	5개 주제 5종

1. 교정처우 전반 및 특정처우: 13종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다양하다. ‘연구원’이 수행한 시설 내 처우 연구 가운데 특정 주제나 처우, 특정 집단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교도소 내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수용자 처우 전반과 교정행정을 다룬 연구는 2종이며 특정처우는 11종이다([표 IV-3-5] 참조).

처우 전반을 다룬 두 편의 연구는 각각 1990년, 2003년에 실시되어서 90년대와 2000년대의 교도소와 수용자 처우에 대한 자세한 현황을 알 수 있다. 특히 2003년에 실시된 연구는 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교정의 방향을 조사함으로써 시민의 인식을 조사하고, 시민의 지지를 받는 교정비전을 수립코자 하였다. 특정주제나 특정집단 등 세부적이고 집중적 연구도 필요하지만, 10년 단위로 교정처우 전반을 검토하는 포괄적인 연구도 실시되어야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2010년대는 포괄적 연구가 실시되지 않았으므로, 2020년대에는 교정 시설의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정한 처우를 중점적으로 연구한 것은 11종이다. 연구자들이 주목한 처우는 교도작업, 직업훈련, 의료처우, 교정교육 및 인성교육, 외부와의 교통 등 5개 주제이다. 가장 많은 연구는 의료보건, 교도작업 등에 관련하여 3종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직업훈련과 교정교육 및 인성교육은 2종, 외부교통은 1종이 수행되었다. 출소 후 사회 정착에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교도작업과 직업훈련과 관련된 연구는 편수로서는 많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교도작업의 마지막 연구는 2010년, 직업훈련은 1995년을

이후에는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았으며, 교정교화 교육 역시 1996년 이후로는 연구되지 않았다. 수형자 집중인성교육이 도입이 얼마 되지 않아 관련 연구도 1종이다. 법적 지위와 외국사례를 제외한 모든 연구들이 설문조사, 심층면접 등의 실증연구를 실시하여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제적인 분석과 접근을 가능케 하고 있다.

[표 IV-3-5] 소분류 1: 교정처우 전반 및 특정처우

분류	연도	제목	연구방법
처우 전반	1990	교정처우의 현황과 개선방안	문헌연구
	2003	21세기 교정비전과 처우의 선진화 방안	문헌연구, 시민 설문조사
교도 작업	1995	교도작업의 실태와 개선방안 -재소자의 노동소외 문제를 중심으로-	문헌연구, 수용자 설문조사
	1998	수형자 외부통근제도에 관한 연구	문헌연구, 수용자 및 외부직원 설문조사
	2010	교도작업의 개선방안 연구 -교도작업의 법적 지위-	문헌연구
직업 훈련	1992	수형자 직업훈련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문헌연구, 수용자 및 교도관 설문조사
	1995	외국의 수형자 직업훈련제도에 관한 연구	문헌연구
의료 보건	1994	수용자의 보건의료실태 및 관리방안	문헌연구, 수용자 설문조사
	2008	수용자의 보건·의료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문헌연구, 수용자 및 의료직원 설문조사
	2017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XI) : 교정시설 의료처우에 관한 연구	문헌연구, 수용자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일반인 설문조사, 의무관 심층면접
외부 교통	2004	수용자 외부교통 확대방안 연구	문헌연구, 수용자 및 교도관 설문조사
교정 교육 및 인성 교육	1996	수용자 교정교육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학교교육 등 교정교육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문헌연구, 수용자 및 직원 설문조사
	2015	수형자 집중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연구	문헌연구, 수용자 및 외부강사 설문조사

교정처우 전반 및 특정처우에 관한 국/내외 연구와 비교해보면 ‘연구원’에서는 교정 시설에서 실시되고 있는 치료프로그램, 교육 등에 관한 효과성 연구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이나 출소 전 법교육 프로그램들이 재범예방 분류에 속해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특정처우 면에서 기본 처우에 해당되는 교정교화 교육, 특정범죄자 집단 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용자 권리, 가족만남, 상담, 접견 등에 관한 연구도 시행되지 않아서 최근에 교정본부에서 수용생활 안정과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주력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것으로 보인다.

학술지 교정연구는 특정처우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된 연구는 상담, 교육, 치료, 인성교육 등 교정교육(37종), 직업훈련(9종), 가족관계(4종), 의료처우(4종), 교도작업(4종), 외부교통/접견(4종)이며 외부통근은 1종이었다. '연구원'과 비교할 때 가족관계 강화가 많이 연구되었다. 교정담론도 교정연구와 마찬가지로 상담, 교육, 치료, 인성교육 등 교정시설에서 실시되는 교정교육에 관한 연구가 1종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관계 3종, 직업훈련 2종, 교도작업 1종 등이었다.

미국 NJ의 경우 가장 많은 특정처우로서는 마약 및 약물치료프로그램 연구가 17종,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이 14종, 의료처우가 3종, 가족관계 강화 3종, 접견 3종이며 외부통근, 직업훈련, 귀휴, 교도작업이 각각 1종이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가장 재범률이 높으며, 수형자 비율이 높은 마약 및 약물치료를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은 것이 두드러지며, 일반 교정교화 프로그램과 가족관계에 대한 처우가 많은 것도 주목할 만하다.

2. 특정집단 처우 : 18종

'연구원'이 수행한 시설 내 수용된 수용자들을 특정한 집단으로 구분하고 그들의 처우에 관련되어 진행된 연구들은 총 18종이다(표 IV-3-6 참조). 특정 대상자는 12개 집단으로, 누범자, 미결수용자, 강력수형자, 마약사범, 정신질환자, 소년수형자, 여성수형자, 피보호감호자, 노인수형자, 출소전 수형자, 여자 청소년, 장기수형자 등이다.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된 집단은 마약사범, 미결수용자, 정신질환수용자, 여자 청소년수용자, 장기수형자, 노인수형자는 각각 2종이 수행되었으며, 나머지 집단인 누범자, 강력범, 소년, 여성, 피보호감호자, 출소전 수형자들은 각각 1종씩 연구가 수행되었다. 소년사범의 경우 이 장에서는 소년 교도소에 수용된 청소년만이 검토되었으며, 보호처분되고 시설에 수용된 소년사범은 다른 영역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에 1종만 수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 청소년 수용자의 경우에는 전체 연구에서도 2종만 다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30년간 교정행정의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한다면, 10년 주기로 특정 집단에 관한 연구는 반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헌으로만 연구된 경우에도 동일한 주제로 설문조사나 심층면접이 시행되는 실증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수형자, 피보호감호자, 소년수형자에 대한 연구 역시 90년대에 시행된 후 2000년대에 들어서는 단 한편도 수행된 바 없어서 향후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 연구이다. 외국인 수형자나 사형수도 역시 소수이지만 시설 내 처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집단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IV-3-6] 소분류 2: 특정집단 처우

	연도	연구	방법
누법자	1991	누법수용자의 효율적 관리방안	문헌연구
미결 수용자	1992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연구	문헌연구
	2003	미결수용자 처우에 관한 연구	문헌연구, 수용자 대상 설문조사
강력 수형자	1993	강력범 수형자의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문헌연구, 수용자 및 교도관 설문조사
마약 사범	2001	마약류관련 수용자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문헌연구, 수용자 및 교도관 설문조사
	2012	마약류사범 재활센터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문헌연구
정신 질환자	1994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정치료 및 보호에 관한 연구	문헌연구
	2003	범법정신장애자 등에 대한 법적 처우에 관한 연구	문헌연구, 시설방문
소년 수형자	1995	소년수형자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처우실태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문헌연구, 수용자 및 교도관 설문조사
여자 청소년	2002	여자비행청소년의 교정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문헌연구, 수용자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2005	여자 청소년의 비행과 처우에 관한 연구	문헌연구, 수용자 설문조사
피보호 감호자	1997	피보호감호자의 교정처우실태	문헌연구, 수용자 및 교도관 설문조사
노인 수형자	2001	노인 수형자의 특성 및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문헌연구, 수용자 및 교도관 설문조사
	2013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수형자 처우방안	문헌연구, 수용자 심층면접, 교도관 설문조사
출소전 수형자	2001	출소전 수형자의 인식조사	문헌연구, 수용자 설문조사
장기 수형자	2005	장기수형자 처우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문헌연구, 수용자 설문조사
	2006	장기수형자 처우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문헌연구, 수용자 및 교정직원 설문조사

	연도	연구	방법
여성 수형자	1995	여성수형자의 수형생활실태	문헌연구, 수용사 설문조사

특정집단에 대한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면, 학술지 교정연구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특정집단은 여성수용자로 11종이며 그중 9종은 여성 수용자, 1종은 여자 무기 수형자, 1종은 여성마약 수용자 연구이다. 다음으로는 소년수형자와 외국인 수용자가 각각 10종이며, 노인수용자는 9종, 마약/약물 남용수용자 8종, 성범죄 수용자 4종, 가정폭력 사범 3종, 출소자 3종, 정신장애 수용자 3종, 강력사범과 상습범, 군수용자가 2종이었다. 누범자, 피보호감호자, 미결수, 아동학대 사범, 장기수형자, 가석방자는 각각 1종의 연구논문이 게재되었다. ‘연구원’ 연구와 비교할 때 두드러진 점은 여성수용자, 소년수형자, 외국인 수형자에 대한 연구가 많다는 점과, 대상자를 좀 더 세분화하여 아동학대사범, 가정폭력사범, 군수용자 등에 관한 연구가 실시된 점이다.

학술지 교정담론에서 가장 많이 다룬 특정집단은 성범죄자와 여성 수형자로 각각 4종이며, 정신질환자, 소년수형자, 출소자는 각각 2종, 사형확정자, 노인수형자, 가정폭력 사범, 장애인 수형자는 각각 1종이었다. ‘연구원’과 비교할 때 사형 확정자와 장애인 수형자를 다룬 것이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NIC의 연구는 수형자 사회복귀와 교정시설 내 특정 교정교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연구가 가장 많이 실시되었다. 특정집단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은 여성수형자로 16종이며, 성범죄자 6종, 약물/마약중독 수형자, 정신질환 수형자가 3종, 고위험군, 중범죄자, 인디언 수형자, 아버지 수형자, 자녀부양의무 수형자 등이 각각 2종이며, 이 외에 가정폭력 사범, 신입수형자, 우울증 수형자가 각각 1종씩이었다. ‘연구원’ 연구와 비교할 때, 부모 수형자, 신입 수형자 등에 대한 연구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3. 특정제도 및 특수주제 : 9종

‘연구원’이 수행한 기타 연구로는 교정관련 특정제도와 특수주제에 대한 연구가 각각 4종씩 수행되었다(표 IV-3-7 참조). 특정제도로는 보호감호연구 1종, 치료감호연구 2종, 소년미결구금제도 1종씩 수행되었다. 보호감호, 치료감호, 소년미결구금 등 모두 문헌연구로 진행되었으며 최근에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소년미결의 경우

2015년 소년분류심사원 연구가 실증연구로 실행된 반면(소년사법 연구로 분류됨), 성인 미결 구금에 해당되는 연구로는 앞에서 언급된 1992년과 2003년의 미결수용자 처우 연구만이 진행되었고, 미결수를 수용하는 구치소 연구는 최근에 실시되지 않았다.

특수주제로는 수용자의 시설 내 생활과 관련된 3가지 주제인 생활실태와 의식, 폭력행위, 법질서 확립 등이 각각 1종씩 연구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서 문헌뿐만 아니라 수용자와 교도관이 참여하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연구가 진행되어 해당 주제에 관한 심도 깊은 탐색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용자 처우에 대한 외부 시민들의 관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다룬 연구와 수용자 자녀문제에 관한 외국사례가 문헌연구로 진행되어 수용자 처우로만 그치던 연구 영역을 확대하였다.

[표 IV-3-7] 소분류 3: 특정제도 및 특정주제

	연도	제목	연구방법
1	1990	재소자의 생활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문헌연구, 수용자 및 교도관 설문조사
2	1992	보호감호의 실태와 개선방안	문헌연구
3	1993	치료감호에 관한 연구	문헌연구
4	1999	교도소 내 수용자폭력행위에 관한 연구	문헌연구, 수용자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5	2003	소년미결구금제도에 관한 연구 (1)	문헌연구
6	2004	수용자 처우에 대한 시민감시제도 연구	문헌연구
7	2009	수형자의 법질서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문헌연구, 수용자 설문조사
8	2011	치료감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문헌연구
9	2012	수용자 자녀문제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분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문헌연구

특정제도와 특정주제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면, 학술지 교정연구의 경우 본 영역에서 다루어진 특정제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본 영역과 관련된 특정주제들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연구원’ 연구에서 다루어진 수용자 자녀에 관한 주제 역시 2014년에 다루어졌다. 특이한 주제로는 교도소 수용자 적응문제와 수용자 심리상태, 수형자의 교정시설 내 폭력 경험, 교정시설 하위문화, 독거구금, 수형자와 교도관 간의 심리적 관계, 수용자 리더십 등이다.

학술지 교정담론의 경우 ‘연구원’에서 연구된 수용자 자녀에 관한 연구가 총 7종이 연구되어서 특수주제로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 이 외에 교도관과 수형자 관계성(2종), 보호감호자(1종), 교도소 하위문화(1종), 수형자 직업포부(1종), 구금의 고통과 규율위반(1종), 사형수 신드롬(1종), 수형자 폭력성(1종) 등이었다. 수형자와 자녀 및 가족관계에 관한 연구, 수형자 폭력성과 구금의 고통 등에 관한 연구가 향후 연구되어야 할 분야이다.

미국 NIC는 ‘연구원’에서도 연구된 주제인 교도소 수감이 자녀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장 많이 연구된 특정주제로 6종이었다. 또한 교도소 수용자 폭력행위 역시 99년에 연구되었는데, 미국의 경우 교도소 내 피해경험 4종, 교도소 내 성폭력 피해경험 연구도 4종이 연구되었다. 수형자 부적응 문제도 2종, 아동의 교도소 방문 2종, 수형자가 자신의 구금을 납득하는 연구가 1종, 수형자의 형벌에 대한 인식이 1종이었다. 특정 주제로 구금이 자녀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구금의 대물림에 관한 연구가 많은 점과, 교도소 내 폭력/성폭력 피해경험에 관한 연구가 많은 점은 향후 ‘연구원’의 연구계획 수립에 시사점을 준다.

제3절 연구성과

1. 학문적 기여

‘연구원’은 시설 내 처우 연구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책 연구소로서의 유리한 접근성과 인적 물적 자원이 학문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이다.

첫째, 교정시설에 대한 접근성에 바탕한 현장 실증 연구 수행

교정연구, 특히 시설 내 처우 연구는 교정시설의 폐쇄성, 안전의 이유로 인해 개인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공간이다. 해당 교정시설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료공유, 관련자의 자문이 없이는 연구가 진행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술지에서는 연구 능력을 갖춘 현장 실무자가 자신이 속한 시설에

한해서 연구를 진행하거나, 교정과 관련된 공식적인 데이터만을 사용한 연구들이 주로 다루어졌다. 국책 연구원이라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연구원’은 해당 교정시설에 대한 참관, 현장 관찰, 실무자 면접 및 자문, 수형자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등을 수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개인 연구자들이 할 수 없는 연구들이 수행됨으로서 우리나라 교정의 학문적 진보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총체적 연구 수행

‘연구원’은 양질의 인적 자원과 풍성한 물적자원으로 개인 연구자들이 진행할 수 없는 대규모 연구와,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연구들을 수행할 수 있었다. ‘연구원’ 내 파견된 실무자인 교정본부의 교정관과 연구능력을 갖춘 법학, 사회학, 범죄학, 심리학 연구진들은 물론, 해외 우수 학자와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연구 성과물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또한 개인 연구자로서는 한계가 있는 물적 자원을 통해 대규모 설문조사, 심층면접,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등이 실시될 수 있어서 교정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된다.

2. 정책적 기여

‘연구원’이 지난 30년간 수행한 교정분야의 시설 내 처우 연구를 통해 제시된 정책제언의 상당 부분은 법, 제도, 프로그램, 인식의 개선 및 변화를 이끌어 냈다. ‘연구원’의 연구가 정책에 기여한 점을 검증하기 위해 개정 형형법⁴⁾,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⁵⁾, 교정본부 홈페이지⁶⁾, 범죄백서(2018, 2017), ‘연구원’의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8, 2017, 2016, 2015, 2014), 한국 교정의 변화를 다룬 이연담(2015)의 연구 등을 검토하였으며, ‘연구원’이 기여한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 [표 IV-3-8]과 같다.

4) 국가 법령정보센터 참조(<http://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9D%98%20%EC%A7%91%ED%96%89%20%EB%B0%8F%20%EC%88%98%EC%9A%A9%EC%9E%90%EC%9D%98%20%EC%B2%98%EC%9A%B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2018년 11월 30일 최종 접속).

5) 국가 법령정보센터 참조(<http://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11868#J63:0>, 2018년 11월 30일 최종 접속).

6) 교정본부 홈페이지 참조(<http://www.corrections.go.kr/corrections/1058/subview.do>, 2018년 11월 30일 최종 접속).

연구 보고서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외부통근작업, 직업훈련, 의료처우, 외부교통, 가족관계 강화, 수형자 개별처우, 교정교육 및 인성교육, 마약 중독자 치료, 수형자 사회복지지원, 여성 수형자 및 노인 수형자에 대한 처우 개선, 미결 수용자의 인권보장, 정신이상 수형자에 대한 지원, 치료감호 수형자에 대한 처우 개선, 수형자 처우에 대한 시민 감시, 수형자 자녀에 대한 관심과 지원 등 교정행정과 수형자 처우 전반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즉, 행형법 개정, 기존의 제도 개선, 새로운 제도와 프로그램 도입을 이끌어 내는데 있어서 ‘연구원’에서 제시한 연구결과와 정책제언들이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이에 ‘연구원’은 증거에 기반한 정책수립(evidence-based policy making)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IV-3-8] 시설 내 처우 연구보고서의 정책반영 사례

연도	제목	반영
1990	교정처우의 현황과 개선방안	- 95년 5차 행형법 개정에 외부통근작업의 근거 규정 신설 - 2006년 교정시민옴부즈맨 운영규정제정(예규 제750호) - 2007년 10차 개정 행형법 “수형자 개별처우 계획 수립 등 규정신설”
1992	수형자 직업훈련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 95년 5차 행형법 개정에 외부통근작업의 근거 규정 신설 - 2004년 청송직업훈련 교도소, 2009년 화성직업훈련 교도소 설치 및 전문화 - 2013 취업에 용이한 단기훈련과정 개설 - 2013 현장위주 기술교육 강화 - 2016 33개 모든 교정시설에 직훈, 직업훈련 직종 확대
1992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연구	- 95년 5차 행형법 개정에서 “처우강화와 변호인 접견시 입회금지” - 98년 미결수용자 사복착용제도
1993	강력범 수형자의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 2007년 10차 개정 행형법 “수형자 개별처우 계획 수립 등 규정 신설” - 2013년 집중인성교육 실시
1993	치료감호에 관한 연구	- 2016년 의료재활교육과 직업훈련 다양화
1994	수용자의 보건의료실태 및 관리방안	- 2009년 기관별 원격진료 통합네트워크 구축 - 2011년 신입수용자 건강검진 의무화
1995	소년수형자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 2007년 10차 개정 행형법 “수형자 개별처우 계획 수립 등 규정신설”
1995	여성수형자의 수형생활실태	- 2004, 2007, 2011, 2018년 여성수형자 직업훈련 전담기관 지정 - 2007년 10차 행형법 개정에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수용자 처우규정 신설” - 2016 여성수형자 특성을 고려한 직업훈련실시

연도	제목	반영
1996	수용자 교정교육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 2004년 방송통신대학교정 신설 - 2013년 집중인성교육 실시
2001	마약류관련 수용자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 2003년 약물중독 재활센터 - 2007년 10차 개정 행형법 상에 “마약류 사범, 조직폭력 사범 등에 대한 특별관리 규정신설”
2001	노인 수형자의 특성 및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 2007년 10차 행형법 개정에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수용자 처우규정 신설”
2001	출소전 수형자의 의식조사	- 2008년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수립 - 2017 출소 예정자 교육강화
2003	21세기 교정비전과 처우의 선진화 방안	- 2007년 10차 개정 행형법 “수형자 개별처우 계획 수립 등 규정신설” - 2007년 10차 행형법 개정에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수용자 처우규정 신설” - 2007년 10차 행형법 개정에 “서신검열제도 개선” “청원 제도의 다양화” - 2007년 10차 개정 행형법 상에 “교정자문위원회 제도 도입” 반영 - 2016년 전자 경비 시스템 구축
2003	범법정신장애자 등에 대한 법적 처우에 관한 연구	- 2012 정신보건센터 개원
2003	미결수용자 처우에 관한 연구	- 95년 5차 행형법 “처우강화와 변호인 접견시 입회금지” - 2007년 10차 행형법 개정에 “미결수용자의 무죄추정 및 합당한 지위보장 규정 신설”
2004	수용자 외부교통 확대방안 연구	- 2006 무인접견시스템 구축 - 2007년 행형법 특별휴가 귀휴제도 - 2008년 행형법 6개월 이상 복역자 귀휴가능 - 2009년 가족만남의 집을 전국으로 확대
2004	수용자 처우에 대한 시민감시제도 연구	- 2007년 10차 행형법 청원제도의 다양화 - 2007년 10차 개정 행형법 교정자문위원회 제도 도입
2008	수용자의 보건·의료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2008. 2010 혈액투석실 구축 - 2009년 기관별 원격진료 통합네트워크 구축 - 2010 공중보건의사 배치 - 2011년 신입수용자 건강검진 의무화
2011	치료감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2012.9.11,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1721호, 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에 반영 - 2012.10.4,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2127호,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에 반영 - 2011.12.9,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개정에 반영 - 2016년 의료재활교육과 직업훈련 다양화
2012	수용자 자녀문제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분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사업 강화 - 2018년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시 “수용자 자녀행복미래만들기” 조항 신설

연도	제목	반영
2012	마약류사범 재활센터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2016년 약물중독 재활센터의 전문의료진 - 2017년 심화치료프로그램 도입
2013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수형자 처우방안	- 대전교도소, 노인전담 처우프로그램 실시 - 대구교도소, 노인수형자 인지프로그램 실시 - 경주교도소, 노인수형자 인지프로그램 실시 - 법무부, 노인수형자 가족접견 프로그램 시행 - 법무부, 노인수형자 가석방 기준 완화 - 교정본부, 교도소에 노인수형자 처우개선 시설 확대

제4절 연구의 한계

‘연구원’에서 지난 30년간 수행한 시설 내 처우에 관한 연구가 학문적, 정책적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할 한계점들이 있다.

1. 방법론적 한계

첫째, 초기 연구들을 중심으로 실행된 문헌연구들의 경우, 실제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실효성있는 정책을 제기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후 대다수의 연구들이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등의 실증연구를 함으로서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연구하는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가 충분히 논의되고 분석되지 않은 연구들이 많았다. 이는 선행연구가 다소 부족해서 일 수도 있다. 그러나 특정 분야에 대한 효과성을 진단하는 연구에서조차도 효과성을 측정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지 않았으며, 효과성 진단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어떠한 항목을 측정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선행연구를 실시하지 않고 연구자가 임의로 변수를 선정한 연구도 있었다.

셋째, 설문조사 시 뚜렷한 탐구주제, 연구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연구들이 있으며, 심층면접을 실시했지만, 심층면접의 탐구주제나 결과를 제시하지 않은 연구들이 있었다. 이는 연구를 위한 관련자 자문과 심층면접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했지만 조사 결과를 정책제언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연구들이 많았다. 또한 외국사례를 조사했지만, 이러한 사례들이 한국의 법과

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서 제시하지 못한 연구들이 많으며, 또한 정책제언에 충분히 반영을 하지 못한 연구들이 있었다.

다섯째, 특수집단 처우에 관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제시한 정책제언들이 특수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제언이 아닌 수형자 전체에 대해 적용되는 일반적인 제언들이 많았다.

여섯째, 법학, 사회학, 파견 공무원 등 단일 학문의 연구자가 단독 혹은 2명 정도 연구를 진행하여 논의가 다소 협소하고 다양한 시각을 담아내지 못한 연구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각 영역별 전문가가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다양한 시각과 제언을 제시하고 있었다.

일곱째, 모든 연구들이 한 시점에서만 조사가 이루어진 횡단연구이며,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종단연구가 실시되지 않았다.

2. 교정연구에 대한 ‘연구원’의 관심과 이해 부족

시설 내 처우 연구는 90년대 18종, 2000년대 15종, 2010년대 7종으로 해마다 연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는 교정연구에 대한 ‘연구원’의 관심과 이해부족, 교정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원의 부족 등으로 인함으로 분석된다. 교정정책의 흐름과 향후 방향을 분석하여 포괄적인 시각으로 다년도 계획을 수립하여 연구를 실행하는 것이 아닌 해당 연도의 상황과 필요성에 따라 연구가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연대별 반복해야할 연구가 반복되지 않으며, 내용이 중복되는 연구들이 단기간에 실시되기도 하였다.

제5절 연구제언

‘연구원’이 지난 30년간 수행한 40종의 시설 내 처우 연구, 국내외 연구를 분석한 결과 향후 좀 더 발전적인 시설 내 처우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계획 수립, 대규모 정기조사, 종단연구 시행, 연구주제의 다양화를 향후 필요한 사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중장기적 연구 계획의 수립

교정연구에 대한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30년간 실시된 시설 내 연구를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로 살펴봤을 때 지속적으로 연구수가 감소하였다. ‘연구원’이 설립된 해인 90년대에는 교정처우 전반은 물론 특정집단과 특정처우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들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는 교정시설 내 가장 중요한 처우에 해당되는 교도작업, 직업훈련, 교정교육에 관한 연구는 실시되지 않았으며, 직업훈련은 2010년대 연구에서도 다뤄지지 않았다. 90년대 연구되었던 강력수형자, 누범자, 피보호감호자, 여성수형자는 이후 단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다. 미결수, 여자비행청소년, 장기수,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되는 출소 전 수형자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 2010년대는 다시 연구되지 않았다. 특정주제 역시 매년 대 연구가 감소하며 새롭고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가 발굴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0종에 대한 연도별, 주제별 연구를 분석한 결과, 학문적·정책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처우와 집단에 대한 연구가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으며, 국내외 연구 동향을 살펴볼 때 새롭게, 선도적으로 다뤄야할 주제들이 진행되지 않아서 향후 시설 내 처우에 대한 법과 제도 개선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교정처우 별, 대상 집단별로 주기적으로 시행되어 업데이트 되어야할 연구들이 필요하며, 연구되지 않은 분야의 주제들도 적극적으로 발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들은 연구계획 수립을 통해 달성 될 수 있다. 연구계획 수립 시에 전체 교정의 균형을 고려하기 위해 시설 내 처우에만 국한 된 계획이 아닌, 교정정책 전반, 시설 내 처우, 사회 내 처우, 재범 예방 등 모든 교정연구를 포함한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정연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NIJ가 실시하고 있는 6개년 계획인 “교정 전략적 연구계획(Corrections Strategic Research Plan 2018-2023)”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2. 대규모 정기적 조사 연구 시행의 필요성

교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대규모, 정기적 조사 연구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교정시설은 폐쇄된 공간이며,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개인 연구자의 접근성이 상당히 제한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책 연구소인 '연구원'은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시설 내 처우에 관해서 대규모로 정기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성매매 실태조사, 전국 범죄피해조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등과 같이 법에 정한 의무조사가 아니더라도, 교정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책연구원으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매년 혹은 격년으로 대규모 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했던 수용자 인권조사, 소년사범 인권조사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미국 사법통계국(Bureau of Justice Statistics)에서 실시하는 시설 내 수용자 조사 및 시설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 등이 격년으로 실시된다면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미국이 교도소 강간방지법(Prison Rape Elimination Act)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교정시설 내 성폭력 실태조사 또한 정기적으로 실시된다면 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3. 종단연구의 실시

지난 30년간 실시된 40종의 연구는 모두 횡단연구(cross-sectional)였다. 횡단연구도 정책수립의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긴 하지만, 사안이나 주제에 따라서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종단연구(longitudinal)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소년 수형자의 경우 교정본부에서는 별도로 재범을 측정하고 있지 못하다. 소년 수형자 재범을 측정하여 성인범죄자로의 전이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출소한 소년 수형자에 대한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교정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주제인 수형자 사회복귀에 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출소자 패널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패널조사"는 이런 면에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종단연구 역시 개인이 할 수 있는 연구가 아니므로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유의미한 주제에 대한 종단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할 것이다.

4. 연구 주제의 다양화 모색

시설 내 처우에 관한 연구 주제가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화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연구원’ 보고서의 특성상 그간 수행된 연구들은 포괄적이고 큰 규모의 주제들을 다루어 왔다. 이러한 점은 개인 연구자가 접근할 수 없는 교정시설 및 교정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와 총괄적인 연구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된다. 반면에 학술지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연구주제가 그간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단점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내외 연구에서 주되게 다루어지고 있는 교정시설 내 성폭력 및 폭력문제, 수용자 자녀지원, 특정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수형자 적응문제, 구금의 고통, 수형자와 교도관 관계 등은 교정시설 내 수용생활 및 수형자의 출소 후 재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국내외 연구에서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이다. 향후 시설 내 처우 연구를 위해서는 국내외 연구에서 조사된 다양한 주제들을 반영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세분화된 주제를 심도 깊게 다루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은영(2001). 노인 수형자의 특성 및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강은영·권수진·혜옥(2013).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수형자 처우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강은영·신성만(2012). 마약류사범 재활센터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권수진·한민경·권창모·주영수(2017).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XI) : 교정시설 의료처우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두섭·전영실(1995). 여성수형자의 수형생활실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상희·정동진·윤영철(1990). 교정처우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승만·신연희(2005). 장기수형자 처우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종정(1997). 피보호감호자의 교정처우실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종정(1998). 수형자 외부통근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2003). 소년미결구금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 외 18인(201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 외 19인(2017).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문영호·이인순·박강우(1992). 수형자 직업훈련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선영·신영희(2012). 수용자 자녀문제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분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준휘 외 30인(201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법무연수원(2017). 범죄백서.
- 법무연수원(2018). 범죄백서.
- 손명세·박종연·허영주(1994). 수용자의 보건의료실태 및 관리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신양균(1992).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심형희·윤성은·김치곤·임희철(1990). 재소자의 생활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안성훈(2011). 치료감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성진·노용준·김안식·정영진(2008). 수용자의 보건·의료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성진·노용준·신경우(2009). 수형자의 법질서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원범연·조성용(2003). 범법정신장애자 등에 대한 법적 처우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병기·승성신·여하은(1993). 강력범 수형자의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연담(2015). “한국교정 70년의 회고”, 교정연구 69: 41-79.
- 이천현 외 18인(201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훈규·이정규(1995). 소년수형자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처우실태와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훈규·이정규(1996). 수용자 교정교육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학과교육 등 교정교육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임웅(1991). 누범수용자의 효율적 관리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임재표(1999). 교도소내 수용자폭력행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규원(1992). 보호감호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규원(1995). 외국의 수형자 직업훈련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규원·진희권(1993). 치료감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영민·박강우(1994).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정치료 및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영실(2002). 여자비행청소년의 교정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영실 외 17인(2015).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영진·신연희(2006). 장기수형자 처우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진수(2003). 미결수용자 처우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진수·김종정·박양빈·이윤호·이종택(2003). 21세기 교정비전과 처우의 선진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병인(2004). 수용자처우에 대한 시민감시제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병인·원혜욱·민수홍·이경재(2004). 수용자 외부교통 확대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조준현·김성언(1995). 교도작업의 실태와 개선방안 -재소자의 노동소외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영신(2005). 여자 청소년의 비행과 처우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영신·박선영(2015). 수형자 집중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탁희성(2001). 출소전 수형자의 의식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탁희성·안성훈(2010). 교도작업의 개선방안 연구 -교도작업의 법적 지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홍남식(2001). 마약류관련 수용자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 교정학회 홈페이지(<http://www.krscs.or.kr/>, 2018년 11월 30일 최종 접속).

아시아 교정포럼 홈페이지(http://www.correctionforum.or.kr/html/sub3_01.html, 2018년 11월 30일 최종 접속).

미 법무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nij.gov/Pages/welcome.aspx>, 2018년 11월 30일 최종 접속).

국가 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9D%98%20%EC%A7%91%ED%96%89%20%EB%B0%8F%20%EC%88%98%EC%9A%A9%EC%9E%90%EC%9D%98%20%EC%B2%98%EC%9A%B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2018년 11월 30일 최종 접속).

국가 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11868#J63:0>, 2018년 11월 30일 최종 접속).

교정본부 홈페이지(<http://www.corrections.go.kr/corrections/1058/subview.do>, 2018년 11월 30일 최종 접속).

제 4 장

교정정책(Ⅲ) : 사회 내 처우 관련 연구

조 윤 오

교정정책(Ⅲ) : 사회 내 처우 관련 연구

제1절 서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으로 함) 30주년을 맞아 사회내 처우 분야에서 보여준 눈부신 연구 성과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고자 한다. ‘연구원’이 지금까지 발표한 총 25종의 사회내처우 관련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범죄자 지도, 감독 방식 및 재범 방지 대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두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범죄 대응정책 최후의 보루에 속하는 사회내 처우야말로 ‘연구원’이 범죄자 교정과 사회문제 원인 진단, 대책제시를 위해 가장 활발하게 연구하여 종합적인 국가 범죄예방 정책수립을 제시해 준 주요 분야에 속한다.

지금부터 살펴 볼 25종의 사회내 처우 관련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와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전자감독제도, 그리고 다양한 중간처우제도의 역사적 궤를 결정짓는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해 주었다. 이 장에서는 이런 맥락에서 ‘연구원’이 실시한 연구 결과들을 개별 사회내 처우 제도 중심으로 고찰해 볼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회내 처우는 범죄자나 비행청소년을 구금시설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범죄자가 지켜야 할 특정 준수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자유롭게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지역사회 중심의 교정 활동(Community-Based Corrections)을 말한다. 형의 유예단계에서 보호관찰이라는 사회내 처우를 통해 범죄자 관리 및 처우, 치료활동이 이루어지고, 가석방 및 가퇴원 단계에서도 전자감시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교정활동이 실시되기에 사회내 처우야말로 형사정책의 꽃이자 범죄예방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다(전영실·김지영, 2017; 이성철,

2003). 이러한 사회내 처우는 우리나라에서 짧은 기간 급격하게 성장,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처음 보호관찰이라는 제도가 생긴 이후,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의 비약적인 양적, 질적 발전이 이루어졌고, 동시에 그 전에는 없었던 성범죄자 신상정보제도와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와 같은 새로운 사회내 처우들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

지금부터는 1980년대 이후 급격하게 성장한 우리나라의 사회내 처우제도들이 어떻게 ‘연구원’의 진단, 평가를 통해 성장, 발전해 왔는지 검토해 보고, 개별 제도들이 ‘연구원’의 정책적 제언 속에서 어떻게 변화, 확대되어 갔는지 검토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일반 보호관찰제도와 수강명령제도, 사회봉사명령제도, 전자감독제도, 중간처우제도, 기타 형벌 관련 사회내처우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연구원’의 뜻과 노력을 통해 발전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동시에 이 장에서는 ‘연구원’의 정책적 제언이 보호관찰관 등 사회내 처우 분야 실무자들의 범죄자 재범방지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결론 부분에서는 종합적인 “총평”을 통해 개별 사회내 처우제도의 성과를 보다 입체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향후 사회내 처우 연구 동향에 대해 기술할 것이다.

사회내 처우를 보호관찰제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전자감독, 중간처우제도, 기타 형벌제도로 구분하여 개별 교정제도로 구분하여 검토하는 기술 방식이 사회내 처우가 갖고 있는 다양한 제도적 특성을 보다 섬세하게 검토,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본다. 이에 이 장에서는 ‘연구원’이 제시한 사회내 처우 관련 정책 제시의 의의, 그리고 ‘연구원’이 지난 30년 동안 기여한 사회내 처우 제도 발전의 노고를 개별 제도(보호관찰제도, 수강명령제도, 사회봉사명령제도, 전자감독제도 등) 별로 구분하여 검토할 것이다.

제2절 보호관찰을 통한 사회 내 처우의 발돋움

사회내 처우 관련 ‘연구원’ 보고서 중 정책적 제언이 가장 실질적으로 큰 힘을 발휘한 분야가 바로 “보호관찰제도” 부분이라고 하겠다. 처음 제도가 등장하게 된 이후부

터 줄곧 보호관찰의 역사는 ‘연구원’의 체계적인 보호관찰 운영 방법과 과학적인 범죄자 진단 방법, 지역사회 자원 활용 등 다양한 정책 제시로 시대 상황에 맞게 적절히 변화, 발전되어 갈 수 있었다.

범죄자에 대한 새로운 사회내 처우 전략으로 등장한 “보호관찰제도”는 교도소나 구치소 등의 교정 구금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범죄자를 감시, 감독하며 재범을 방지하도록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재범방지를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시설내 구금보다는 지역사회에서 범죄자의 잘못된 행동습관을 전문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으로 수정, 변화시킨다는 의의를 갖고 있는 것이다(장규원, 1998).

먼저, 1995년에 발표된 「보호위원의 보호관찰 활동에 관한 연구」(김준호·이동원, 1995)를 보면,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보호관찰제도의 의의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제도적 활용 가능성을 “지역사회 자원 활용” 중심에서 논의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보호관찰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강조하면서, 보호관찰 내 “자원봉사위원” 활용의 문제 속에서 지역사회 인적 자원 활용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켰다.

1988년 12월 31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보호관찰법”이 제정된 이후, 사회내 처우 제도를 자원봉사자 차원에서 평가한 첫 연구보고서가 ‘연구원’을 통해 발표되었다는 것은 지역사회 교정(community based corrections) 발전의 이론적, 실무적 초석을 쌓는데 ‘연구원’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보호관찰제도 자체가 아닌 자원봉사자에 해당하는 보호위원 자원봉사자들을 연구했다는 의미에서 이 보고서는 그 내용면에서 매우 광범위한 수준에서 보호관찰의 문제점과 관련 제반 이슈들을 분석했다고 볼 수 있다. 형사정책의 마지막 보루이자, 꽃이라고 여겨지는 사회내 처우를 “일반 시민 자원봉사자” 입장에서 검토했기에, 이 보고서에서는 사회내 처우 예산 지원의 문제와 자원봉사자 선정의 문제, 대상자 교육 및 활용 적절성 문제 등이 심층적으로 다루어졌다.¹⁾

한편, 보호관찰 분야의 두 번째 연구로 1996년에 발표된 「보호관찰제도의 성인범 확대실시를 통한 예비연구」(최인섭·진수명, 1996)라는 보고서를 살펴볼 수 있다.

1) 또한, 보호위원과 관련된 사회내 처우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종합적인 보호관찰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다루었다. 이후 전개된 우리나라 보호관찰 운영 및 발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보호관찰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 방법, 유지, 관리 방향이 폭넓게 언급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서는 “성인범죄자에 대한 사회내 교정” 문제가 잘 다루어졌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보호관찰 자원봉사자 보호위원회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내 처우의 큰 흐름 및 발전 과정을 성인 보호관찰제도의 전문화라는 주제 속에서 “성인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여 새롭게 논의되었다. 일반인들의 접근이 용이한 보호관찰소가 양적으로 더 많이 증설되어야 한다는 이 보고서의 결론은 오늘날 큰 이슈가 된 지역 주민들의 “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 논거로 사용될 수 있다. 교정시설들이 지역 주민들의 오해로 인해 기피시설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역사회 보호관찰” 이념을 현장에서 올바르게 실현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의미 있는 보고서라고 하겠다. 동시에 이 보고서는 보호관찰이 지역사회에서 성인범과 소년범에게 어떤 방식으로 서로 다르게 각각의 욕구에 맞게 차별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탐색하게 만들어 준 연구보고서라고 하겠다.²⁾

1998년에는 성인 보호관찰의 문제를 뛰어 넘어 마침내 전체 소년, 성인 범죄자를 아우르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종합 평가 연구 보고서가 ‘연구원’에 의해 발표되었다. 바로 세 번째 사회내 처우 연구에 해당하는 장규원(1998)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1998년 10월부터 11월까지 약 두 달 동안 보호관찰대상자 692명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인 제도 평가 연구를 시행했다.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연구원’의 보호관찰 관련 보고서들은 더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방법을 택하기 시작했고, 연구 주제도 더욱 세분화, 구체화되어 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성인범 보호관찰의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김혜정, 2001)에서는 1997년부터 성인범에게 확대 실시된 보호관찰 제도를 더욱 깊이 있게 분석, 평가하는 노력을 시도했다. 이 연구에서 저자는 사회내 처우제도를 폭넓게 진단, 분석하려는

2) 사실, 1989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보호관찰법은 소년범을 대상으로 한 보호관찰이었기에, 1997년부터 우리나라에 보호관찰이 처음으로 성인 범죄자에게까지 확대 실시되는 상황에서 그 준비과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연구가 절실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보호관찰이 성인범에게 적용되기 전에 어떤 실무적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가를 실질적으로 탐색해 보는 시의 적절한 기회를 제공했다. 인력 차원의 문제와 보호관찰 성인 대상자 예측 수요의 문제, 보호선도위원 활용 필요 문제, 보호관찰 교정 프로그램 전문화 및 다양화 문제 등을 폭넓게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이 보고서에서 지역사회 교정을 대표하는 “보호관찰”이 전액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최대한 지역사회 내 교정 자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오늘날 강조되고 있는 “지역사회 보호관찰(Community Probation)” 모델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시도를 보여주었는데, 보호관찰 제도를 운영하는 실무자(보호관찰관)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연구를 동시에 실시했다. 다음으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활용 문제와 판결전조사의 문제점까지 보호관찰 효과성 평가 범위에 포함시켜 사회내 처우 연구 영역을 최대로 확장시키는 체계적, 종합적인 연구방법을 시도했다.

한편, 진수명(2001)은 「집중보호관찰활동 성과에 관한 연구」를 통해 사회내 처우의 특정 세부 영역을 집중 조명한 의미 있는 결과물을 발표했다. 과거에 제시되었던 사회내 처우 연구가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및 타당성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 연구에서는 보호관찰 세부 활동 내용 중의 하나인 “집중보호관찰”에 관심을 한정시켜 특정 보호관찰 활동 하나만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한편, ‘연구원’은 2000년대에 접어들어 미시적 차원의 개별 범죄자 행동 수정에도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거시적 차원의 제도 평가 연구만 시행한 것이 아니라, 특정 범죄자 유형에도 초점을 두어 개별화, 전문화 처우 전략의 기초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약물사범 보호관찰에 관한 연구」(강은영, 2002)는 “약물사범”에만 초점을 두어 사회내 처우 제도의 새로운 발전 방향과 처우 프로그램의 개별화, 전문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사실, 1989년과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이 처음 공식화된 이후, 1997년 성인범 확대 시기까지 대부분의 연구 초점은 “사회내 처우” 제도 자체에 대한 도입, 확대 논의와 필요성 혹은 전반적인 효과성 검토에 한정되었다. 이 연구는 과거의 일반적인 논의를 뒤로 하고, 오직 약물사범에만 주안점을 두어 신선한 눈으로 사회내 처우 프로그램의 전문화 문제를 언급했다는데 큰 연구 의의가 있다.³⁾ 또한, 이 연구는 범죄 유형 별 보호관찰 지도, 감독이 필요하고 특정 범죄 유형 내에서도 범죄자 특성에 따라 “개별화

3) 2001년 기준, 전체 보호관찰대상자 중 약물사범은 전체의 4.6%에 해당하는 3,98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주로 저지르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적용 사건은 감소하는 반면 대마나 향정신성 사범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성과 달리 여성 약물사범이 마약 투약, 사용, 중독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를 통해 약물사범이 일반 범죄자와 확연히 다른 특성과 욕구를 갖고 있고, 마약사범 내에서도 연령과 성별에 따라 매우 독특한 특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체 약물사범 중 약 10%가 직접 약물을 자신의 몸에 투약한 단순 사용자이거나 약물 중독자라고 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개별화된 치료 및 사회내 처우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강은영(2002)의 연구는 미국과 일본이 약물사범에 대한 어떤 사회내 처우를 실시하고 있는지 소개하고, 우리나라 보호관찰의 동향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유익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된 처우”가 반드시 필요함을 보호관찰 자료를 통해 직접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미국의 집중보호관찰 및 약물법원을 통한 약물사범 관리 방안에 대한 소개는 우리나라 약물사범에 대한 사회내 처우 방향의 밑거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주었다.

한편, 「한국보호관찰의 현황과 과제」(이성철, 2003)에서 “보호관찰의 효과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용기 있게 전면에 내보였다. “보호관찰 활동이 재범률에 효과가 있는가?”라는 결과 차원(impact)의 단순한 질문보다는 “어떤 활동이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는가?”라는 과정 차원(process)의 문제를 제기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하겠다. 사회내 처우제도에 대한 불필요한 부풀려짐이나 맹신, 혹은 정확치 않은 근거를 기반으로 한 불신을 지양하고 내실화된 보호관찰 지도, 감독 활동을 정의하고 제대로 측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기에 일반인들에게도 “근거 중심의 보호관찰(Evidence Based Probation)”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었다.⁴⁾

특히, 보호관찰 종류 후 2년 이내의 추적조사 연구를 통한 재범률 조사에서는 무려 재범 비율이 전체의 25%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이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전체 대상자의 1/4 정도는 2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심각한 상황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보호관찰 활동의 필요성을 객관적인 재범률 수치로 직접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객관적인 보호관찰 실태 자료와 예리한 평가, 솔직한 분석으로 보호관찰 및 사회내 처우 프로그램의 실태 및 효과성을 정확하게 전달한 연구결과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성인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분류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이법호·박성수, 2006)에서는 보호관찰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확한 범죄자 위험성 평가 및 분류평가 도구 개발이 사회내 처우의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외국의 보호관찰이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범죄자 분류평가도구를 상세히 소개

4) 무엇보다도 이 보고서는 보호관찰 실무자의 솔직하고 대담한 의견을 생생하게 담아내는 연구 방법을 택했기에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 연구 보고서를 통해 묘사된 ‘느슨한 보호관찰’의 문제점이 어디에서부터 연유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제도가 가진 내재된 한계점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 연구를 통해 향후 사회내 처우가 해결해야 할 전반적인 문제점이 명쾌하게 정리되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과거 5년 동안의 보호관찰 실제 데이터를 직접 “보호관찰 통합정보시스템(PIIS)”에서 추출하여 객관적으로 제시, 분석한 것 역시 연구 방법을 차원에서 매우 높게 평가될 수 있다.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률이 전체 대상자의 23.9%에 해당한다는 점은 향후 재범 감소 차원에서 어떤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그리고 보호관찰대상자 500명을 대상으로 재범 위험성 요인이 개별 욕구 등을 실증적으로 조사했다는 연구 방법론상의 참신성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범죄유형과 교육상태, 음주경력, 과거 전과, 범죄행동에 대한 태도 등을 통해 보호관찰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류평가 방법의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평가했다는 것도 이 연구가 가진 큰 의의이다.

한편, 지난 30년 동안 보호관찰의 개별화, 전문화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연구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분명 높게 평가할 일이다.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이 무려 30%에 이른다는 사실을 근거로 2017년에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바로 「마약류 사범 보호관찰 확대 등 사후관리 방안 연구」(전영실·김지영, 2017)가 그것이다. 여기에서 사회내 처우가 어떤 방향으로 마약사범에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⁵⁾

제3절 수강명령제도를 통한 사회 내 처우의 전문화

사회내 처우의 전문화는 범죄자 특성과 범죄 유형 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수강명령제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약물사범과 교통사범, 가정폭력사범 등 범죄 유형 별로 교육 내용을 달리 하면서 지역사회 전문 인력과 유기적으로 함께 변천, 발전해 온 수강명령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내 처우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발전 가능성을 가장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연구원’에서는 지금까지 수강명령제도와 관련하여 총 세 종의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하 세 종의 연구 성과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원’은 「수강명령제도와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이병기·노성호, 1994)를 발표하며 수강명령의 효과성에 대해 실증적으로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1989년 처음 시행

5) 특히, 항정신성 의약사범은 5년간의 재범률이 50%를 상회하고 있어 지역사회 교정 내 치료와 수강명령을 통한 문제행동 수정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에서 이 연구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 주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내 처우 과정에서 어떤 사후관리가 필요한지를 이론적, 실무적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하였고, 약물사범의 재범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언급하였다. 마약류 사범의 증가에 따라 획일적인 강경대응으로 교정 비용을 증가시키는 전략을 선택하기보다는 우리나라 마약류 사범의 특징과 실태 및 재범 현황에 맞게 매우 현실적인 시각에서 재범 방지 대책을 고민하고, 효과적인 약물사범 보호관찰 지도, 감독 방법을 제시했다고 하겠다.

된 소년범 대상 수강명령제도를 최초로 평가, 분석한 보고서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내 처우 교정 분야에서 수강명령은 교육을 통해 범죄자의 문제행동과 비행습벽을 수정, 교화시킨다는 의의를 갖고 있기에, 그 효과성 평가는 향후 어떤 내용의 수강명령을 운영할지, 그리고 어떤 절차로 수강명령을 집행할지를 결정짓는 관건이 되고, 더 나아가 수강명령을 통한 범죄자 재범방지의 첩경이 된다고 하겠다. 영국과 미국의 선진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수강명령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세심하게 제시했고, 동시에 평가 분석을 위한 시도로써 수강명령 대상자를 상대로 직접 연구진이 수강명령 참가자들의 태도 및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어 그 연구 방법의 세련미가 특히 돋보인다.⁶⁾

한편 「수강명령프로그램의 운영 실태와 개발방향」(손동권·최영신, 1997) 연구에서는 성인범에게 확대 실시된 수강명령을 가장 먼저 체계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1988년에 제정된 수강명령 근거 법령이 소년범에게 한정된 것이었다면, 1997년 이후의 수강명령은 성인범에게도 적용되어 그 효과성 확인이 새로운 관점에서 진행될 필요가 커졌다. 즉, 성인범에게도 수강명령이 확대 시행되게 되었는바, 새롭게 성인에게 적합한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인 범죄자는 소년과는 전혀 다른 학습 능력과 범죄경력 및 범죄수법을 갖고 있기에 성인범에게 적합한 수강명령 내용을 개발, 적용할 필요가 크기에 그 효과성 역시 새로운 결과변수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평가, 분석해야 한다. 특히, 초기 사회내 처우에서 나타난 외부 위탁 수강명령보다는 보호관찰소 자체 운영 중인 수강명령에 초점을 두어 수강명령의 실태와 문제점을 탐색한 점은 사회내 처우 분야의 우수한 연구 공로로 인정된다.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X)-수강명령제도의 운영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김지영·박성훈·노성호·이상원·전은주·김현정, 2016)에서는 우리나라 수강명령제도를 광범위한 수준에서 폭넓게 진단·평가하였다. 무엇보다도 수강명령을 직접

6) 수강명령에 참여한 소년범들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프로그램 참여경험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내용이 지루하고 따분하며 중복되는 것들이 많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이는 향후 수강명령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질적 면담 연구를 통해 매우 세심한 부분까지 연구진이 모두 밝혀내어 수강명령의 운영 시간과 수강 업무 보호관찰 담당자의 행정적 애로사항까지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 주었다는 점은 반드시 긍정적 평가를 받아야 할 점이다.

경험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수강명령 참여 경험과 교육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측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연구는 수강명령을 개발, 총괄 운용하는 보호관찰 직원의 입장에서 조사하여 수강명령 참가 범죄자와 운영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는 강점을 갖는다.

이에 우리나라 수강명령의 실태 및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려는 체계적인 연구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수강명령 자체를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등으로 세분화시켜 그 사전-사후 변화 값을 양적으로 비교, 평가한 점은 통계적 분석을 시도한 훌륭한 평가 방법이라고 하겠다. 참신한 연구 설계를 통해 이 연구 보고서는 다양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유형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고, 수강명령 프로그램들이 가진 장점과 단점을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검토했다.⁷⁾

제4절 사회봉사명령제도를 통한 사회내 처우 다양화

사회봉사명령제도는 무보수로 범죄자를 특정 사회봉사 영역에 봉사토록 하는 제도이다. 원래 교도소 등 시설 내에서 형기 생활을 마쳐야 하는 범죄자에게 다시 한번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대신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동을 일반 시민에게 봉사활동으로 되갚도록 강제하는 제도인 것이다.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사회내 처우가 일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고, 타인을 위해 무언가 좋은 일을 한다는 속죄의 기회를 범죄자에게 제공한다는 긍정적 의미가 나타나게 되었다. 지금까지 ‘연구원’에서는 총 한 종의 사회봉사명령제도가 발표되었다. 아래에서 그 내용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원’은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의 시행 성과와 발전방안」(안정훈·박정일, 2011)을 발표하며 우리나라 사회봉사명령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발전방안에

7) 이 연구가 다른 사회내 처우 효과성 분석 연구와 달리, 재범 여부를 조사하면서 범죄자의 종료 후 태도변화까지 파악했다는 점은 가장 큰 공헌점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추적조사를 통해 재범률을 조사함에 있어 재범이 경찰에 발각되지 않거나 공식적으로 보호관찰소에 알려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 정확한 제도 성패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연구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직접 수강명령 종료 범죄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려고 노력했다.

대해 논리적으로 평가하였다. 이 연구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2009년부터 시행된 벌금 대체 사회봉사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연구 방법론 차원에서 사회 봉사 벌금대체 이행자(범죄자)와 사회봉사 수혜자, 그리고 보호관찰 담당자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를 정확히 표현하려고 했다는 점은 제도 평가 연구 분야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일반적인 사회봉사명령과 달리, 벌금대체 사회봉사명령이 가진 제도적 특징을 충분히 고려함과 동시에 사회봉사명령이 가진 운영상의 문제점을 세심하게 잘 설명했다고 하겠다.

제5절 전자감독제도를 통한 사회내 처우 과학화

범죄자를 교도소가 아닌, 자유로운 사회 속에 풀어 놓으면서 24시간 실시간으로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새로운 사회내 처우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사회내 처우의 감독 기능 강화 및 처우 과학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연구원’에서는 이러한 혁신적인 사회내 처우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지금까지 총 일곱 종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모두 활용함과 동시에 법무부 자료를 인용한 공식데이터 분석까지 실시하는 등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활용해 체계적인 제도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하 일곱 종의 보고서를 평가해 보면 아래와 같다.

「전자감독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비연구」(김혜정, 2000)에서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전자감독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탐구하였다. 즉, “강력한 형태의 새로운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기 시작하면서 점차 우리나라 교정학 분야에서도 “전자감독(Electronic Monitoring)” 도입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원’에서는 전자감독이라는 외국의 선진 범죄자 위치 확인 및 추적 시스템을 소개하는 시도를 했다.⁸⁾

8) 다시 말해 세심한 문헌고찰을 통해 해당 제도의 의의를 탐색하는 노력을 보여주었다고 하겠다. 이 연구는 전자감독제도가 교도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부담스러운 국가 교정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정확히 언급하면서, 동시에 전자감독제도 가진 부작용도 함께 조심스럽게 언급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논리적으로 잘 보여 주었다. 전자감독제도를 통해 불필요한 형사사법 망의 확대가 우려되고, 사회내 처우가 치료와 사회복귀보다는 자칫 “감독과 통제”로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냈다.

한편, ‘연구원’이 발표한 「상습적 성폭력범죄자 거세법에 관한 연구」(강은영·황만성·이상훈, 2010)에서는 화학적 거세라는 새로운 사회내 처우 교정 활동을 학문적, 체계적으로 평가, 분석하였다.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성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도 증가하게 되었는바, 이 연구는 상습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엄벌주의 정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연구 의의가 있다. 처벌 수위를 높이고 교도소에서 성범죄자를 구금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난다고 해도 재범률이 감소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화학적 거세”와 같은 극단적인 의료모형을 활용해 사회내 처우의 다양성과 탄력성을 강화시키는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사실 “특정 호르몬 치료방법”을 활용한 새로운 사회내 처우 제도를 성폭력범죄자에게 적용한다는 아이디어를 학문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우리나라 교정 현장에 맞게 잘 적용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연구원’은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 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I)-전자감독에 관한 연구」(박선영·심희기·이춘화, 2010)를 통해 다차원적인 교정 처우 과학화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연구원’에서는 전자감독제도가 시행된 직후 만 2년 만에 종합적으로 해당 제도를 다각적으로 분석한 의미 있는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볼 수 있다. 제도를 시행한 지 만 3년이 넘지 않았다는 시기적 특성으로 인해 연구진은 심층면접이라는 질적 연구를 통해 체계적으로 전자감독 제도를 평가하여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잘 포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전자감독을 보호관찰 현장에서 운영하는 담당자의 입장과 전자감독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범죄자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 보고서 내에서 양쪽의 목소리를 모두 경청하려고 한 것은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현장의 특징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하겠다.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내 처우제도가 전자감독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강화되었는데, 신상정보제도가 또 다른 큰 축으로 작용했다. 이에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관한 평가 연구(I)-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연구」(김지선·강지현·김정명·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를 통해 성범죄자 지역사회 교정에 대한 새로운 효과성 측정 연구를 시도하였다. 흥미롭게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법적 쟁점과 신상등록대상자들의 인식, 일반시민들의 태도와 피해자 가족들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보고서를 ‘연구원’이 처음 시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⁹⁾

또한, ‘연구원’은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연구(II)-전자감독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김지선·장다혜·김정명·김성언·한영수·강호성·문희갑·한국행정연구원, 2013)를 통해 강력한 지도, 감독 전자감시 전략을 통한 재범 방지 효과성 결과를 **재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연구원’에서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연구 시리즈 중의 하나로 “전자감독제도”에 초점을 둔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볼 수 있다. 성급한 형벌 엄격주의에 반발하며 연구진은 전자감독제도가 가진 진정한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자감독제도 시행 5년 후를 맞이하여 과거에 있었던 평가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범위에서 제도를 분석, 평가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전자장치 이슈”와 관련된 독립된 장을 만들어 측위기술의 정확성과 안정성, 전자장치 사이즈, 오작동(false alarm), 그리고 배터리의 성능 등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한 것은 기술이 가진 한계를 정확히 진단하여 그에 상응한 사회내 처우 운영 방안을 모색하려는 발전적인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¹⁰⁾

한편, 「전자감독제도 운영성과 분석 및 효과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연성진·유진, 2015)에서는 전자감독제도의 효과성 분석을 연구방법론 차원에서 고도화, 다양화시키는 전략을 사용했다. 즉, 2008년에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작했던 전자감독제도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해 감에 따라 “효과성 여부”에 대한 관심이 함께 고조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원’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전자감독 평가방법 연구들과 달리 철저히 “보호관찰 운영자”의 입장에서 새로운 접근방법을 가지고 전자감독제도를 분석한 의미 있는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다.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복잡한 욕구를 가진 다수의 범죄자를 추적, 감독해야 하는 상황에서 확대된 전자감독제도가 어떻게 본연의 제도 취지를 살릴 것인가는 바로 “보호관찰 조직 운용

9) 신상정보제도가 성범죄자와 주변 일반인들, 그리고 가해자 가족들 및 관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폭넓게 검토해 봤다는 연구 의의가 있다. 신상공개제도는 일반인들의 알 권리와 특별 예방 효과라는 두 가지 장점을 지닌 제도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로 일반인들이 성범죄 알리미 시스템의 정보와 고지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재범방지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연구이 관건이라고 하겠다.

10) 한편, 결과평가와 과정평가, 그리고 비용-편익 평가 세 가지 전략을 모두 동원하여 전자감시제도를 입체적으로 평가한 것은 매우 훌륭한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평가이론”에 입각하여 한 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진의 노력이 돋보인 보고서였다. 더 나아가 보호관찰 조직 차원의 문제점도 함께 숙고하며,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운영 개선방안과 전자감독 담당자의 과도한 업무량 증가를 지적한 것은 실무자들을 위해 현장에서 향후 전자감시제도를 어떻게 원활하게 운영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의미 있는 방향 제시였다.

의 합리성과 효율성"에 달려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가 보호관찰대상자의 인식변화나 재범률이 아닌 "보호관찰 직원의 입장"에 주안점을 두어 확대적용된 전자감독제도가 운영성과를 논의한 것은 시의적절한 시도였다고 본다.¹¹⁾

결국 전자감독 역시 다양한 중간처우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일찍이 '연구원'이 발표한 「중간처우제도에 관한 연구」(이백철, 1995)를 되돌아보면, 1990년대 우리나라 지역사회 교정활동이 어떤 가치체계를 중요하게 다루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중간처우제도의 의미를 찾기 위해 "지역사회 교정론"과 "교정의 민영화 추세" 등을 이론적 배경에서 소개했고, 다양한 제도들을 하나의 사회내 처우제도로 간주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미국 미시간 및 텍사스 州에 한정된 문헌 연구이나, 초기 지역사회 교정에 대한 외국의 성공사례를 우리나라에 알리고, 우리나라 교정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공헌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구금 이전을 중간처별로 간주하고, 구금 이후의 범죄자 사후관리는 중간처우로 명명했다. 두 가지 활동을 구분하여 중간처벌제도와 중간처우제도가 가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 폭넓게 알려줌으로써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의 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초석을 만들었다.

제6절 중간처우(개방처우)를 통한 사회내 처우 개별화

사회내 처우는 지역사회에서 범죄자 특성과 지역사회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활용 시점 역시 매우 다양한데, 교정시설 구금 전의 집행유예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앞문 정책(front-door)' 방식의 사회내 처우도 존재하고, 시설 구금 이후의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후문 정책(back-door)' 방식의 사회내 처우도 존재한다.

'연구원'에서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사회내 처우가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을 개발하는데 앞장서 왔다. 또한, 사회내 인적, 물적 자원을 어떻게 효과

11) 성폭력사범에게 한정되었던 전자감독제도가 빠른 속도로 미성년자유괴범, 살인범, 그리고 강도사범에게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조직 운영 차원의 고찰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가 보호관찰관 및 신속대응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자감독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상세하게 고찰한 것은 바람직한 연구 방향이었다.

적으로 활용하여 재범방지라는 궁극적 목표를 극대화시킬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다. 지금까지 ‘연구원’이 발표한 중간처우 관련 연구 보고서는 세 종이 있는데, 그 내용을 연구 성과 중심에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내 처우 연결망 구축 및 자원 동원화 방안」(김성언, 2004)을 보면 ‘연구원’이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얼마나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강조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사회내 처우가 강조되면서 점차 보호관찰제도가 가진 의의와 장점, 활용 정도가 전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증가하게 되었다.¹²⁾

한편, 「사회내 제재수단의 도입 및 활성화방안」(이진국, 2004)을 보면 ‘연구원’이 교정활동이 가진 엄격한 법 준수 역할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원’에서는 이 보고서를 통해 사회내 제재수단에 속하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제도, 원상회복제도, 전자감시제도 등의 활용방안을 폭넓게 다루었다. 연구진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벌금형이라는 형벌 수단도 같이 언급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광의의 사회내 처우를 “사회내 제재”라고 칭했다. 그러나 결국 범죄자의 사회복귀와 재통합, 그리고 개별화된 처우를 목적으로 적절한 국가 형벌 정책을 고민한다는 점에서 교정학 내의 “사회내 처우”로 볼 수 있다. 이에 벌금제도와 유예제도 역시 시설내 처우와 구분되는 또 다른 하나의 사회내 처우의 한 형태로 봄이 옳다. 교정학과 법학, 혹은 다른 관련 학문 분야에서 사회내 처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되돌아보게 한 흥미로운 연구 보고서라고 하겠다.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범죄자 신상공개」(이병희, 2001)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치열한 법적 고민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련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보고서이면서, 동시에 어떤 기본권 침해 갈등 문제가 사회내 처우에서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고민한 연구이기도 하다.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개인 정보를 대중에게 알림으로써 “범죄 예방 및 일반인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이점을 얻었지만, 한편으로는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연구원’은 이런 갈등 상황을 선진 해외 국가의 신상공개제도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12) 2004년에 ‘연구원’에서 발표된 이 보고서는 1990년대 이후의 보호관찰이 “사후 제재, 처벌 위주의 감독”이 빈번하게 활용되는 분위기에 발맞추어 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 내 “처우나 보호”보다는 “통제와 감독”이 강조되는 보호관찰 실무의 현상을 예리한 눈으로 비판했다.

꼼꼼하게 검토했고, 우리나라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세심한 분석 및 정책 제시를 논리적으로 잘 풀어냈다.¹³⁾

제7절 기타 형벌 정책을 통한 사회내 처우 확대

‘연구원’은 지난 긴 시간 동안 다양한 형벌 정책을 다루면서 사회내 처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해 왔다. 「소액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서주연·최영신, 2014)에서는 노역장 유치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하면서, 사회내 처우의 새로운 활용 방안까지 함께 고찰했다. 이 연구는 벌금형의 환형처분으로 활용되고 있는 “노역장 유치”제도를 체계적으로 잘 분석한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국가형벌권 집행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재범 방지와 사회방위는 유지될 수 없고, 범죄는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노역장 유치를 통해 안정적인 국가 형벌권 집행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함을 보고서 속에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었다.

한편, 2018년에 발표된 「전자감독에서의 특별준수사항 효과성 연구: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중심으로」(박형민·박준희·황만성, 2018)에서는 청소년 범죄자의 행동수정 및 재범방지를 위한 새로운 사회내 처우 활동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이 연구는 전자감독 시 부가되는 특별준수사항의 효과성을 분석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많은 준수사항 중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는 의의가 있다. 사회내 처우를 받고 있는 일부 범죄자가 어떤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적응 및 사회 통합 정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¹⁴⁾

13) 2001년 8월 처음으로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성범죄자 169명에 대한 신상공개가 이루어졌는데, 형사법 차원에서 어떤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 연구가 갖는 프라이버시 보호의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의 해외 신상공개 제도를 소개한 것은 향후 우리나라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초석을 다지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4) 무엇보다도 이 연구가 연구방법론 차원에서 보호관찰대상자와 담당 보호관찰관들에 대한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질적인 연구 방법론을 활용했다는 점은 매우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추가로 이 연구는 법무부에서 제공받은 범죄자 6,544명의 공식 데이터를 분석하여 양적 연구 방법론도 동원하여 연구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기에, 연구 결과의 설명력을 높였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제8절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의 사회내 처우는 1990년대 이후 빠른 시간 내에 급속하게 변화·발전되었다. ‘연구원’은 새로운 법률 제정과 개정 과정이 있을 때마다 사회내 처우제도의 도입 타당성과 사후 효과성 평가 연구를 시의 적절하게 시행해 주었다.

사회내 처우에 속하는 많은 활동 중 보호관찰은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지역사회 교정 활동에 속한다. 사실, 보호관찰이 가진 의미는 범죄자 개인에게 적합한 개별화된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문제행동을 수정시켜 구금으로 인한 국가교정 경비 지출을 감소시키며, 범죄자가 시설구금 경험으로 인해 느끼게 될 사회단절, 고립감 및 악풍감염을 최소화시킨다는데 있다(김혜정, 2001). 따라서 사회내 처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사회내 처우 서비스를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범죄자에게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느냐에 달려 있다(강은영, 2002; 이성철, 2003; 김성연, 2004).

지금까지 ‘연구원’이 발표한 사회내 처우 연구 보고서들은 균형 잡힌 시각에서 다양한 사회내 처우제도들을 종합적으로 소개, 평가했고, 그 결과를 통해 객관적인 근거-중심의 교정학(Evidence-Based Corrections)을 만드는 초석을 제공했다. 즉, ‘연구원’의 노력과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 짧은 기간 내 사회내 처우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사실, ‘연구원’의 객관적인 근거-기반의 교정정책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사회내 처우 제도는 제대로 시행될 수 없었을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연구원’은 사회내 처우와 관련된 효과성 평가 연구들을 시행하며, 개별 연구들이 진행 절차 및 연구 방법론 차원에서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었고, 다양한 연구 성과도 거두어 주었다. 정책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교정학과 범죄학, 사회과학 전반이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해 주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25종의 사회내 처우 관련 연구결과들을 총평해 보면, 중요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할 때마다 ‘연구원’이 사회내 처우의 비약적인 발전을 객관적인 눈으로 평가, 진단해 주었고, 새로운 제도 도입 때마다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재범방지 정책들을 제시해 주었다고 하겠다.

특히, 2008년에 발생한 정성현의 안양 초등생 살인사건과 조두순의 초등학교 성폭행 사건, 그리고 2019년 김길태 살인사건 등으로 전자감독제도가 적용 대상범위를 확대시키게 되었을 때 ‘연구원’은 사회내 처우의 발전방향을 시의 적절하게 지적해 주었다. 전자감독제도 부착기간이 30년으로 상향조정되는 “형벌 강경화 정책(Get tough policy)”과 “형벌 파퓰리즘(Penal populism)”이 조성되었을 때, ‘연구원’은 사회내 처우가 가진 진정한 제도적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결단 있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했다(연성진·유진, 2015).

사회내 처우는 1990년대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범죄자 지도, 관리, 치료, 처우의 활동을 맡고 있어 그 활동 전체를 평가,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속도가 빨라 형사정책 내에서 연구 대상 주제로 삼기에 어려움이 많은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사회내 처우와 관련된 연구 주제들을 시의 적절하게 검토해 왔다. 즉, 광범위한 수준에서 우리나라 교정 프로그램의 발전과 효과성, 특정 교정 프로그램 도입 타당성 등을 폭넓게 연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구원’은 지난 30년 동안 범죄 유형 별로 우리나라 사회내 처우가 어떤 식으로 “전문화(specialization)”되어야 하는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세를 보여 주었다. 거시적 차원에서 특정 제도 도입의 타당성이나 효과성 평가만 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성인범죄자,” “재범 고위험 범죄자,” “약물범죄자,” “성범죄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개별화된 사회내 처우제도 연구도 활발히 진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김혜정, 2001; 진수명, 2001; 강은영, 2002; 이법호·박성수, 2006; 전영실·김지영, 2017). 즉, ‘연구원’이 시행한 사회내 처우 분야 내 25종의 연구 결과들은 우리나라 사회내 처우의 연혁을 보여 주는 지역사회 교정의 모든 발자취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연구원’이 수행한 수강명령 관련 연구들은 우리나라 수강명령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설계를 시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수강명령제도가 가진 장단점을 입체적으로 보여주었고, 제도가 가진 문제점과 강점 등 정확한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사회내 처우 분야에 다루어지는 많은 제도 분석 연구들이 그 효과성을 분석함에 있어 ‘연구원’이 수행한 수강명령 관련 연구와 같이 양적, 질적 조사방법을 모두 종합적으로 활용한다면 보다 체계적인 분석

결과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정리하면, 우리나라의 수감명령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분석, 검토했다는 점에서 위에서 검토한 연구들이 연구 설계 및 조사방법의 체계성과 세련됨이 높이 평가되는 연구 보고서들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회내 처우의 핵심은 지역사회의 자원을 처우 개별화 원리에 맞게 적재적소에서 잘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연구원’의 초반 연구 보고서들이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방향을 1990년대 초반부터 잘 강조해 주었고, 사회내 처우 방향 설계에서부터 탁월한 예견을 보여주었다고 하겠다(김준호·이동원, 1994; 이성철, 2003; 김성언, 2004).

동시에 ‘연구원’의 보고서 상당수가 사회내 처우 운영 방향에 있어서 탄력적이고 융통적인 개별화된 처우(individualized treatment)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강조했다(서준연·최영신, 2015; 전영실·김지영, 2017; 강은영·황만성·이상훈, 2010; 김지선·강지현·김정명·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이러한 주장들은 우리나라 사회내 처우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 사회내 처우가 나아갈 밑그림을 그리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재범 가능성이 낮고, 초범이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지역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허용하면서 일정 준수사항의 조건을 담보로 한 사회내 처우를 실시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 교정경비를 절약할 수 있고, 구금 경험으로 인한 사회 단절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 범죄자 당사자에게는 일정한 준수사항을 부가함으로써 범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내 처우에는 전문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추가로 수감명령과 사회봉사명령, 전자감시제도, 신상등록제도 등 다양한 형벌제도 및 교정 치료 프로그램도 더욱 활발히 동원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일련의 흉악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나라는 강화된 형태의 사회내 처우가 범죄자이 문제행동을 수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해법으로 사용해 왔다. 성범죄자 신상정보제도나 전자감시제도 등 새롭게 도입된 일부 사회내 처우들은 그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지만, 아직 정확히 연구 결과를 명확히 단정지어 말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사회내 처우 연구 방법론 차원에서 보면, 단독으로 보호관찰 처분만 받는 경우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이나 전자감독제도 등 다양한 사회내 처우를 복합적으로 부가 받는 경우도 많기에 단독으로 하나의 제도만 구분해서 그 효과성을 평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보호관찰관이 대면접촉을 통해 실시하는 제도의 효과성 측정이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과 만남을 전제로 하기에 단순한 양적 데이터 분석이나 접촉 횟수만으로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특정 교정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이론적, 실무적으로 완벽히 평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발간 된 총 25종의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내 처우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훌륭한 근거가 된다. 지금까지 ‘연구원’이 발간한 연구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개별 보고서들의 주제를 하위 세부 주제 여섯 개(보호관찰, 수감명령제도, 사회봉사명령, 전자감독제도, 중간처우, 기타)로 구분했는데, 한편으로는 앞으로 ‘연구원’이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사회내 처우 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를 시행해 어떤 활동이 사회내 처우 내에서 가장 의미 있고 비용-편익 차원에서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메타 분석 등 체계적인 사회내 처우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국가 교정경비가 어떤 방향으로 쓰여야 하는지, 보다 큰 그림 속에서 ‘연구원’이 개별 제도 평가 연구를 심도 있게 계속 다루어주면 좋겠다.

또한, 앞으로는 ‘연구원’이 사회내 처우의 효과성 및 확대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양적 연구와 함께 질적 연구 방법도 더욱 활발히 사용해 주길 바란다. 진정으로 어떤 사회내 처우가 범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양적인 연구와 함께 인류학적인 고찰이 반영된 질적 연구도 꼭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 ‘연구원’이 사회내 처우와 관련된 더 많은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동시에 이를 통해 사회내 처우 종단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많은 연구자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사회내 처우 분야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공개제나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 등이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 성범죄 발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성충동 약물치료”와 같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효과성 분석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성범죄 유형 내에 불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도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교정학적 차원”의 새로운 접근법과 평가

전략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기존 형벌 제도가 달성하지 못한 성범죄 문제를 새로운 사회내 처우가 달성할 수 있다면, 국가 교정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성범죄자의 문제행동 수정이라는 궁극적인 교정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될 수 있다. 과거 2010년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이후, 본격적으로 법안이 시행되는 2011년 7월을 앞두고 ‘연구원’이 다양한 관련 준비 연구를 시행한 것 역시 이런 맥락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시도였다고 본다. 우리나라 법률 안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와 외국의 운영 사례, 그리고 앞으로 예견될 운영상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지적인 연구진의 노력은 제도 시행에 큰 도움을 주는 근간을 마련해 주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총 25종의 사회내 처우 관련 연구 보고서들이 ‘연구원’의 탐과 노력으로 이루어졌음에 깊이 감사드린다. 지난 30년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근거-중심의 교정 정책(Evidence-Based Correctional Policy)의 발전을 이루는 초석이 되어 주었다. 앞으로도 ‘연구원’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사회내 처우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 효과적인 교정 정책이 실무에서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일반인이 알고 있는 범죄자에 대한 왜곡된 미신과 인간 본성에 대한 잘못된 신념이 불필요한 국가 교정 경비를 교정 프로그램에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연구원’이 꾸준히 과학적인 연구 방법론을 가지고 교정정책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연구원’이 발표한 시의적절한 사회내 처우 관련 연구 보고서의 공헌과 학문적 노력, 그리고 균형 잡힌 정책 제시에 감사함을 표한다.

참고문헌

- 강은영(2002). 약물사범 보호관찰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강은영·황만성(2010). 상습적 성폭력범죄자 거세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성연(2004). 사회 내 처우 연결망 구축 및 자원 동원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이동원(1994). 보호위원의 보호관찰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강지현·김정명·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2).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I)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장다혜·김정명·김성연·한영수·강호성·문희갑(2013).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 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II) -전자감독제도에 관한 평가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영·박성훈·김현정·노성호·이상원(2016).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 (X) : 수강명령제도의 운용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혜정(2000).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혜정(2001). 성인범 보호관찰의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선영·심희기·이춘화(2010).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I) : 전자감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형민·박준희·황만성(2018). 전자감독에서의 특별준수사항 효과성 연구 :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손동권·최영신(1997). 수강명령프로그램의 운용실태와 개발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안성훈·박정일(2011).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의 시행 성과와 발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성진·유진(2015). 전자감독제도 운영성과 분석 및 효과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백철(1993). 중간처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법호·박성수(2006). 성인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분류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병기·노성호(1994). 수강명령제도와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병희(2001).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범죄자 신상공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성칠(2003). 한국보호관찰의 현황과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진국(2004). 사회내 제재수단의 도입 및 활성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규원(1998).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실태 및 개선방안 -성인범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영실·김지영(2017). 마약류사범 보호관찰 확대 등 사후관리 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진수명(2001). 집중보호관찰활동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영신·서주연(2015). 소액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진수명(1995). 보호관찰제도의 성인범 확대 실시를 위한 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 5 장



재범예방 관련 연구

박 미 랑

재범예방 관련 연구

제1절 서론

범죄학 영역에 발을 내딛은 지도 꽤나 시간이 흘렀지만 범죄가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겠다. 범죄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가장 먼저 돌아오는 답변은 ‘법을 어기는 것’일 텐데, 무엇이 먼저 존재했는가만 따져봐도 이것은 맞는 답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법을 어기는 행동에 대해서만 공식적 처벌을 할 수밖에 없기에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칭할 때 법을 옆에 두고 기준으로 삼아야하는 현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범죄는 그렇다 쳐도, 범죄를 또 다시 저지르는 행위를 칭하는 재범을 이야기할 때는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진다. 경찰, 검찰, 법원, 교정, 어느 단계를 거친 것이 재범이란 말인가? 일단 범죄를 저지르기만 해도 재범인건가? 아니면 경찰에게 체포되는 순간부터 재범인건가? 아님 다시 한 번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야 재범인건가 말이다. 범죄 연구는 어렵다. 그러나 범죄라는 개념이 난해한 것만큼 그와 연결된 재범에 관한 연구는 더욱 어렵다. 재범의 개념을 찾아가는 것부터 재범에 대한 자료를 획득하고 해석하는 과정은 어두운 터널이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러한 난해함이 조금씩 그리고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이 장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으로 함)이 수행한 30년의 연구 중 재범에 관한 연구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재범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왔는지, 재범 예방과 재사회화와 관련한 정책적 대안들은 어떻게 제시되어왔는지, 소년범죄자의 재범 연구는 어떻게 다뤄졌는지 살핌으로써 우리나라의 재범에 대한 연구를 정리하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이를 위해 이 장에서는 ‘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 보고서 중 재범연구와 관련된 연구 48종을 대상으로 연구의 구조와 연구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현상적 모습을 살피기 위해서는 총 48종의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연구의 연구진, 연구 방법과 같은 공통적 내용을 코딩하고(연구책임자 전공, 연구진 구성, 정책 참고 국가, 보고서 인용지수 등), 연구 내용의 측면에서는 각 세부 분야별(재범연구, 재범예방 및 재사회화, 청소년 재범) 내용을 간추려 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성과의 확산 측면에서는 연구보고서가 외부에 의해 양적·질적으로 활용된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제2절 재범연구

1. 재범의 정의

재범연구는 정의의 문제와 자료의 문제에서부터 난관이 시작된다. 하지만대다수의 재범을 주요 연구 문제로 다루는 논의들이 절대 생략할 없는 개념이 재범에 관한 정의이다.

“재범을 간단히 정의하면 “개인이 범죄행동을 다시 범하는 것”(Maltz, 2001), 이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재범은 “반복적인 범죄행동”을, 재범자는 “반복적으로 범죄 행동을 범한자”를 기술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홍영오 외, 2012: 33)

그러나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개념적 정의가 사회과학 연구방법이라는 프리즘을 통과할 때 거쳐야하는 조작적 정의를 만나면 그렇게 만만한 대상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다. 누가 초범인지에 대한 물음부터, 재범 발생 기준, 연관되는 형사사법 기관까지 계속 물음표를 던진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의 난해함은 측정 자료와 활용자료와도 직결되어 연구의 어려움을 가중한다. 때문에 재범을 다루는 모든 연구들은 연구 대상과 자료에 대한 한계에 부딪히면서 연구를 시작하고 종료하게 된다. 이러한 난해한 과정을 통해 재범을 그 자체 연구 대상으로 삼은 연구들의 구조와 내용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한다.

2. 연구의 구조

재범 자체에 대한 고민을 다룬 ‘연구원’의 연구는 지난 30년간 총 9종의 보고서가 출간되었다. 1992년부터 2012년까지 연구년도 범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대다수의 연구들은 1990년대 초반에 거의 진행이 되었고, 2000년대에 2종,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1종의 재범에 대한 논의가 존재하였다. 그리고 9종에 해당하는 보고서는 모두 기본 연구 유형으로 수행되었다.

[표 IV-5-1] 재범연구 보고서 구조

	구분	빈도	비율
보고서 수행년도	1992	1	11.1
	1993	2	22.2
	1994	3	33.3
	2000	1	11.1
	2003	1	11.1
	2012	1	11.1
	합계	9	100.0
공동연구진 수	.00	2	22.2
	1.00	6	66.7
	2.00	1	11.1
	합계	9	100.0
연구책임자 전공	사회학·범죄학	8	88.9
	심리학	1	11.1
	합계	9	100.0
공동연구진 전공(중복)	법학	1	11.1
	사회학, 범죄학	4	44.4
	심리학	0	0
	실무자	2	22.2
	기타	0	0

재범연구들은 문헌연구가 아닌 100% 양적통계분석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연구책임자의 주 연구 분야가 모두 양적 연구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과학 영역이었다.

단독으로 진행된 연구는 2종이다. 대부분이 2명의 연구진에 의해 공동집필 되었고, 3명에 의해 공동 집필된 연구는 1종에 불과하였다. 총 9종의 보고서 중 1종만을 제외

하고 모든 보고서가 사회학 혹은 범죄학 전공자에 의해 집필되었고, 1종의 경우 심리학 전공자에 의한 집필이었다. 공동연구자들의 전공은 법학 1종, 사회학 혹은 범죄학 4종, 그리고 실무자 2종이었다. 서구에서 발전된 범죄학 이론을 기저이론으로 하여 국내의 재범 현상을 통해 검증하거나 이해하려는 특성상, 연구진들은 100% 국내 연구진들에 의해서만 진행되었다.¹⁾

재범에 대한 연구는 앞서 지적한대로 재범에 대한 정의의 개념이 늘 중요한 측정과제가 된다. 재범에 대한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재범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한 연구가 1종 존재하였지만 나머지 8종의 연구는 모두 최소 3년에서 최대 평생까지 재범에 있어 기간을 열어두고 측정한 것을 알 수 있다.²⁾ 1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재범을 추적한 연구가 7종 이상이라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다.

[표 IV-5-2] 재범연구 보고서별 측정 재범기간

재범기간(월)	빈도	비율
.00(인식조사)	1	11.1
36	1	11.1
60	1	11.1
72	3	33.3
120	1	11.1
720(생애경험)	2	22.2
합계	9	100.0

이러한 재범을 연구에 기저 이론으로 활용한 이론들은 낙인이론, 억제이론, 합리적 선택이론이 주를 이룬다. 생애범죄나, 모집단 이질론, 상황의존론 등도 간헐적으로 사용되기는 하였지만 처벌의 엄격성, 확신성, 신속성을 따지는 억제이론, 그리고 범죄 이득에 대한 논의를 다루는 합리적 선택이론, 사회적 낙인에 대한 논의를 하는 낙인이론이 대부분이었다.

1)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이들의 영역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공분야 사람수가 아닌 영역수로 계산함. 2명의 공동연구자가 모두 법학이었을 경우도 참여 연구진의 영역 위주로 살펴본 관계로 1종의 보고서로 계산함.

2) 720개월은 60년을 기준으로 저자가 임의로 수치화함.

[표 IV-5-3] 재범연구 활용 이론

이론	빈도 (중복)
낙인이론	3
모집단 이질론	1
상황의존론	1
생애범죄론	1
합리적선택이론	2
억제이론	3
합계	12

재범이론 검증에 대한 연구는 재소자에 대한 설문조사 혹은 재소자에 대한 공식 기록조사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설문조사가 3종, 기록조사가 6종으로 기록조사 형식으로 진행하는 형식이 다수를 이루었다. 그 중 절반가량이 종단연구 방식의 추적조사 방식을 선택한 것은 매우 인상적이다.³⁾

획득된 조사 자료는 주로 추론통계를 활용하여 검증되었다. 하지만 ANOVA 분석과 같이 매우 단순한 응답의 차이 정도만을 보여주는 추론통계에서부터 만코프체인, Q방법론 등의 연구방법까지 그 통계기법의 난이도에는 연구 과제별 차이가 있었다. 다만 재범여부가 주요 종속변수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연구 내용상,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주요 통계분석 기법으로 활용되었다. 1990년대 연구에서는 비례적 위험 모델이 함께 활용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 연구에서는 잘 활용되지 않았다.

3. 연구 내용

재범과 관련한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내는 전통적인 이론검증 방식으로 주로 진행되었다. 재범 연구를 범죄 경력의 측면에서 조명한 이병기와 류철원(1992)의 연구에서는 재범횟수와 재범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입건 횟수가 많을수록 재범 기간이 짧아지고, 구금기간이 증가하였다. 전문화가 진행되는 범죄유형은 절도와 폭력, 사기 범죄이고 전문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낮은 범죄 유형은 강도와 강간임을

3) 횡단연구는 5종(55.6%), 종단연구는 4종(44.4%)에 해당하였다.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범죄 유형이 다른 범죄 유형으로 변환되지 않는 범죄 유형으로
 는 절도 폭력, 사기 강간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다른 요인보다도 입건횟수
 에 주목하면서 낙인이론을 접목하여 범죄경력자들의 재범을 논하였다(이병기, 류철원
 1992). 이병기와 류철원의 연구는 범죄군을 구분하지 않은 채 진행하였다면, 이후
 진행된 최인섭과 박철현(1993)의 연구는 강력범죄를 대상으로 선고형량이 재범방지
 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다. 선고형량 자체가 처벌의 엄격성의 조작적 정의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들이 사용한 주요 이론은 억제이론이었다. 6년간의 추적 조사를 통해
 강력범죄자들의 재범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는데, 범죄경력이라는 법적 요인보다
 생활수준이나, 가족과 같은 사회적응 요소와 개인의 배경이 재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사회적응 요소로는 취업의 문제를 가시화 시키면서 전과자에 대한 편견
 이 이들로 하여금 취업을 제한하게 하고 사회적응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과
 자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한 사회적 의식이나 사회적응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
 을 주장하였다(최인섭·박철현, 1993). 그렇다면 소년의 모습은 다른가? 같은 해인
 1993년도에는 소년법의 재범에 관한 연구가 함께 진행되었는데, 소년범이 성인범죄
 자로 전이되는 과정 역시도 개인의 범죄성향이 아닌 “상황”임을 주장하였다(이병기·
 노성호, 1993).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통제가 실패함으로 인해 불량친구를 접촉이 발생
 하며 범죄에 접하게 되나 이후 사회적 차별과, 범죄 문화의 접촉이 이들로 하여금
 취업의 기회를 제한하면서 성인범죄자로의 전이를 낳는다고 주장하였다(이병기·노성
 호, 1993). 그러나 성인범죄자나 소년범죄자에 대한 재범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
 는 사회적 제도나 구조의 문제를 벗어나 범죄수익 자체에 대한 논의를 펼친 연구도
 존재한다. 박철현(2000)의 연구는 사회적 제도나 편견만으로 재범을 설명할 수 는
 없고, 범죄로부터 얻는 수익이 중요한 요인임을 주장하였다. 합리적 선택이론을 지지
 하면서 재산범죄자나 폭력범죄자들은 개인과 사회적 배경이외에도 범죄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이 중요한 재범요인임을 주장하였다.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로서 재산범의
 이익환수 등의 논의를 시작하였다. 특히 재산범의 경우 전문화가 진행되는 경향이
 높으므로 이익을 환수하고 재소당시 사회복귀 교육이 아닌 출소이후의 꾸준한 관리정
 책을 펴야한다고 주장하기도하였다(최인섭·박철현, 1993). 그렇다면 억제이론과 같은
 처벌의 모습을 논하는 이론들은 재범억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까? 연성진(2003)은

처벌의 범죄억제 효과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안타깝게도 형법학자들이 주로 논의하는 처벌의 비례성의 논의와 먼 거리에서 재소자들은 처벌의 위협은 재범억제에 주요 요인이 아니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처벌 경험이 중요할 뿐 처벌 자체의 억제효과는 미비하였다. 오히려 교도소에서 어떠한 생활을 하였는가, 즉 적응을 잘하였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였는가가 재범에 영향이 있음을 보여주면서 처벌이 아닌 교정정책의 모습 변화를 주장하였다(연성진, 2003).

제3절 재범 예방 및 재사회화에 연구

재범에 관한 연구들이 단순히 사회학 및 범죄학 영역의 억제이론, 낙인이론, 합리적 선택이론에 근거하여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냈다면, 재범 예방 및 재사회화 연구는 단순한 이론 검증에서 더 나아가 다각도 측면에서 제도와 정책을 제언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 이들의 연구 구조는 어떠하며 어떠한 내용을 주로 다루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1. 연구의 구조

수행된 연구 유형을 살펴보면 재범예방 및 재사회화와 관련된 연구들은 일반 연구와 협동연구에 의해서 진행된 경우가 많았다. 협동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속한 국책연구기관들이 협력하여 연구 보고서를 집필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보고서가 넓고 깊게 다뤄지는 특징이 있다. 재범에 관한 요인과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책이 단순한 형사정책으로만 이루어 질 수 없기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는 협동연구는 재범 예방 및 재사회화 연구에 매우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표 IV-5-4] 재범 예방 및 재사회화 연구 보고서 구조

	구분	빈도	비율
보고서 구분	일반	8	30.8
	기본	5	19.2
	수시	2	7.7
	협동	10	38.5
	연구개발	1	3.8
	합계	26	100.0
보고서 수행 년도	2004	1	3.8
	2006	1	3.8
	2007	1	3.8
	2009	1	3.8
	2010	4	15.4
	2011	4	15.4
	2012	5	19.2
	2013	4	15.4
	2014	2	7.7
	2015	1	3.8
	2017	1	3.8
	2018	1	3.8
	합계	26	100.0
연구 책임자 전공	법학	12	46.2
	사회학·범죄학	4	15.4
	심리학	6	23.1
	기타	4	15.4
	합계	26	100.0
공동 연구진 전공(중복)	법학	11	42.3
	사회학·범죄학	10	38.5
	심리학	8	30.8
	실무자	10	38.5
	기타	8	30.8
국외 연구진 공동연구	국내	22	84.6
	국외	4	15.4
	합계	26	100.0
공동연구자 수	.00	1	3.8
	1.00	11	42.3
	2.00	4	15.4

	구분	빈도	비율
	3.00	3	11.5
	4.00	1	3.8
	5.00	2	7.7
	6.00	2	7.7
	7.00	1	3.8
	8.00	1	3.8
	합계	26	100.0
인용국가(중복)	미국	20	76.9
	영국	14	53.8
	독일	7	26.9
	캐나다	5	19.2
	일본	7	26.9
	기타	5	19.2

이러한 연구들은 2000년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는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다양한 범죄 예방 정책과 범죄자 재사회화 연구들이 다각도에서 검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재범에 대한 연구들은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수행되었고 관련 이론들이 범죄학 이론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재범 예방 및 재사회화에 대한 책임 연구들은 연구진들의 전공도 다양할뿐더러 참여한 공동연구진들의 전문 분야 역시도 연구 주제에 맞게 전문화되어 있다. 재범연구는 국내연구진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반면에 재범 예방 및 재사회화 연구에서는 15.4%에 해당하는 연구에 외국 공동연구자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가 다양한 연구에 골고루 분포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 연구(윤정숙의 성범죄자 치료 연구, 정진수의 교정정책 과학화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단독으로 진행된 연구는 단 1종에 불과하였고, 공동연구자가 1명으로 총 2명에서 수행된 연구가 42.3%, 공동연구진이 2명(총 3명)인 연구는 4종(15.4%), 공동연구진이 3명(총 4명)인 연구는 3종(11.5%)에 해당되었다. 공동연구자들의 주요 전공 분야를 살펴보면 법학 전공자가 11명(42.4%), 사회학 혹은 범죄학 전공자가 10명(38.5%), 심리학 연구자가 8명(30.8%), 실무자가 10명(38.5%) 그리고 기타(복지학, 교육학 등) 분야가 8명으로 30.8% 비율을 보였다.⁴⁾

4)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이들의 영역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공분야 사람수가 아닌 영역수로 계산함. 2명의 공동연구자가 모두 법학이었을 경우도 참여 연구진의 영역 위주로 살펴본 관계로 1종의 보고서로 계산함.

재범 예방과 재사회화 연구에서 인용한 해외의 사례 혹은 정책들을 살펴보면 관련 국가가 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국가로 좁혀진다. 이중 76%의 이상의 연구 보고서가 미국을 인용하였고, 영국은 58%, 독일은 26% 캐나다는 19%, 일본은 26%의 보고서에서 인용되었다. 우리나라 재범관련 연구들의 다수가 미국 혹은 영국의 재범 관련 제도 검토를 통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구진의 구성과도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사회학과 범죄학, 심리학 전공자들의 경우 그 기저 이론들이 미국과 영국에서 발전한 경향들이 있을뿐더러 영문 원서로 된 자료들이 풍부한 까닭에 영미권 국가들의 인용이 용이했을 것이고, 법학자들이 연구책임자나 공동연구진으로 포함되어 있을 경우 독일이나 일본의 제도 검토가 가능했을 것이라 짐작 된다.

재범연구에 비하여 주제가 더욱 특정 범죄자 집단으로 세분화 되어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경향이 있는 관계로 특정 분야의 반복성 있는 이론을 공통적으로 찾아내는 작업은 무의미하였다. 다만 연구진의 전공에 따라 활용되는 이론의 분야나 범죄자나 범죄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이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심리학자에 의해 주도된 연구의 경우 제목에서부터 해결책으로서 “치료”의 방법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⁵⁾

특히 윤정숙의 연구는 특정 범죄군에 대한 재범예방 접근방법으로서 개별적인 치료 방안을 큰 틀에서 제시하고 있고, 왜 치료적 접근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⁶⁾. 윤정숙에 의하면 치료적 접근은 감금과 처벌위주가 아니라 범죄 행동을 유발한 심리적 이상성을 진단하고 이러한 요인 교정에 초점을 맞춘 교정방식을 뜻한다. 그녀는 치료받기에 적합하고 치료가 필요한 범죄자가 치료 없이 석방되는 경우의 위험성을 기술하고 있다(윤정숙, 2011). 이러한 치료적 접근의 대안적 가능성

5)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연구」,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 방안 I」,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 방안 II -교정시설내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아동학대 행위자 치료프로그램개발-행위자 특성 조사 및 기초매뉴얼 개발」,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 방안 III- 치료프로그램 이수자의 사후관리 방안 연구」가 대표적인 예이다.

6) “독일의 경우 성폭력 범죄자를 심리적인 장애를 가진 자로 이해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설에 수용하여 치료처우를 중시하는...”(윤정숙, 2011: 87)
 “범죄자 자신의 감정, 인지, 혹은 의지 능력의 손상이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고, 그러한 손상에 대한 복구는 적절한 심리적 개입을 통해 가능하다 ... 이러한 치료적 접근을 통해 단기간의 교정·교육 프로그램에 머물러 있던 성범죄자에 대한 처우 프로그램이 그들의 범죄행동과 관련된 이상성을 장기적으로 치료하는 단계로 심화되었다”(윤정숙, 2011: 88).

은 성범죄 뿐만아니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서도 적용가능 하다고 본다.

기타 구체적인 범죄 군에서도 치료적 개입의 논의는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2004년에 수행된 「약물사범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에서는 약물 사범, 즉 마약범죄자에 대한 재범억제방안으로서 약물법원 도입을 주장하며 지속적인 치료적 접근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분노형 범죄에 대한 정책대안으로서도 가상현실 치료(VRT)적 접근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범죄학에서는 분노형 범죄에 대하여 개별적인 접근보다는 사회제도적 아노미를 문제 삼으며 사회가 큰 틀에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Messener의 제도적 아노미 이론 참고), 분노형 범죄에 대하여도 개별적 치료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바라보는 시각이 참신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효과성과 그 방향성의 측면에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2. 연구방법론

큰 틀에서 재범 예방 및 재사회화와 관련된 연구들이 수행된 연구방법론을 살펴보면, 해외의 정책들을 살피거나 우리나라의 제도들을 개괄하는 문헌연구만으로 진행된 연구는 14종으로 53.8%를 차지하였다. 설문조사만을 시행한 연구와, 심층면접만으로 진행된 연구, 그리고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동시에 진행한 연구는 각 4종으로 15.4%씩을 차지하였다. 앞선 재범연구에서는 재범여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범죄자의 기록 조사에 의존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에 비하여, 재범 예방 및 재사회화 연구들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욕구를 청취하거나, 이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 혹은 일반인들과 차이점 비교 측면에서 일반인들의 생각 등을 함께 살피는 방법이 적절 한 까닭에 기록조사보다는 설문이나 관련자 심층면담 형식이 다수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IV-5-5] 재범예방 및 재사회화 연구 방법

	연구방법	빈도	비율
연구 방법	문헌	14	53.8
	설문조사	4	15.4
	심층면접	4	15.4
	설문+심층	4	15.4
	합계	26	100.0
통계분석	기술통계	4	33.3
	기술+추론통계	8	66.7
	합계	12	100.0

문헌 연구가 아닌 경험적 조사 연구들의 경우 대다수가 횡단(Cross - sectional) 연구방식을 선택하였지만 매우 드물게 종단(longitudinal) 연구도 진행되었다. 조사방식의 양적 연구 방법론을 사용한 연구의 경우 조사에 사용된 샘플 수는 최소 20명에서 최대 1500명에 대한 조사까지 분포한다. 20명에 샘플을 활용한 연구는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 처우의 과학화 연구」(정진수, 2010) 중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연구이고, 최대 샘플수에 해당하는 연구는 전영실과 정진성이 수행한 「음주운전억제방안 연구」이다. 일반인 인식조사가 진행된 까닭에 그 표본수를 상당히 넉넉히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⁷⁾

재범 예방 및 재사회화와 관련한 연구들의 조사는 개인 연구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기관의 협조를 통해 획득된 자료들이 단순히 기술통계 보고 형식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연구 방법상 추론통계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연구자가 논문을 통해 더욱 세련된 추론 통계 기법을 통해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대로 일반적인 개인 연구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인 만큼 연구의 방법론을 고도화 하거나 자료 이용의 자유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각 보고서는 각기 다른 샘플수를 활용하였고 20명, 30명, 60명, 109명, 115명, 218명, 270명, 360명, 478명, 515명, 1500명으로 분포하였다.

3. 연구의 내용

가. 범죄유형별 재범 예방연구

범죄 유형별 재범 예방연구 내용은 약물, 음주운전, 성범죄, 아동학대, 분노형 범죄, 그리고 무동기 범죄로 구분되어 집필되었다. 약물범죄의 경우 김성이와 김은아(2004)가 「약물사범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실질적인 약물 치료 프로그램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형법과 사회학, 범죄학자들에 의해 주로 집필된 보고서가 범죄자, 혹은 가해자라고 칭하는 사항을 범법자라고 칭하는 사항이다. 약물 범죄를 위법행위로 보는 것에는 동의하나 약물 사범을 다른 범죄자와 동일시하는 것에 대한 관련 연구진의 부담감과 고민이 반영된 단어라고 여겨진다.

음주운전 연구에서는 일상화된 현상으로 쉽게 그 심각성을 간과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의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범죄적 현상을 다루었다(전영실·정진성, 2010). 음주운전이 억제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고 제안을 제시한 전영실과 정진성(2010)의 연구는 예방과 단속과 홍보를 중시하는 종합적 대책을 매우 세부적인 지침들과 함께 제시하였다. 특히 단속의 측면에서는 포화순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음주운전의 주요 원인을 폭음과 음주습관과, 음주에 대한 우호적 태도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음주에 대한 사회적 홍보와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 함을 주장하였다. 문제적 사회현상을 단순히 형사정책적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않고 교육과 홍보, 치안 협력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성범죄와 아동학대, 분노형 범죄와 무동기 범죄 유형에 대한 재범 연구 및 재사회화 연구는 “치료”라는 접근방식의 공통분모를 갖는다.

다만 범죄유형별 치료 내용이 상이하고 병행되어야 할 법적·제도적 틀이 조금씩 다를 뿐이다. 윤정숙이 4년 동안 진행한 성범죄자 연구에서는 1) 실태조사를 통해 치료자와 치료 대상자의 현주소를 진단하였고, 2) 제도화 방안으로 측정도구를 만들었으며, 3) 교정기관에서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성범죄자의 치료적 접근방식의 효과성을 확인한 이들은 마지막으로 교정시설내 구금기간 동안만이 아니라 출소 후 지역사회 내에서의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그와 동시에 법원 판결에서 형 집행방식까지 연결되는 법과 관련 제도의 변화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동기 없는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 연구에는 K-RCC(Korean Random Crime Checklist) 측정도구를 통해 집단유형을 구분하였다. 그 결과 묻지마 범죄 행위자의 경우 전위보 복형이 높고, 현실불만형이 높다는 특성을 발견하고 이들에 대한 RNR(Risk, Needs, Responsivity)원칙에 근거한 치료적 개입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동기 없는 범죄 행위자에게 진정한 동기가 없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는다. 범죄자에 대한 연구의 근본적인 방향은 왜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데 현상학적 특징들을 나열하고 이들의 이상성을 교정하고 치료하겠다는 접근 방법은 동어반복(tautology)이라는 사회학 혹은 범죄학의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계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성범죄자, 동기 없는 범죄자, 정신질환자 연구를 통해 결과적으로 제시하는 치료적 접근의 재범억제 효과성의 증거들은 이들이 재범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는 필요적 형사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일반시민과 기존의 형사정책 관련자들을 충분히 설득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여겨진다. 더 나아가 동어반복이라는 비판 앞에서도 이 치료적 접근방법 역시도 지역사회와의 연계프로그램과 파트너십이 핵심 전략이라고 설명하는 연구자의 입장은 현재 형사정책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나. 범죄자별 재범 예방연구

범죄자별 연구는 여성 집단으로만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여성출소자의 사회적응 지원방안연구」(최영신·황정임, 2006)는 범죄 집단에서 소외되었던 여성 범죄자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데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공평한 처우와 동일한 처우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다른 접근방식을 취해야하는 여성 범죄자를 이해하려 한다. 여성범죄자 연구에서는 남성 범죄자와 연령분포가 상이하다는 점, 절대 다수의 죄명이 사기횡령, 살인, 절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수형기간이 3년 미만이 다수라는 점, 초범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통계적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학대 피해 경험과 약물 남용, 성매매 경험과 범죄성의 상관성을 논하였다. 출소 후 사회적응 지원의 욕구가 다르며 지원방안도 차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안정적 주거 지원 방안은 남성과 동일한 지원 대책이지만 모자가정 지원 방안, 심리치료 제공 등에 대한 내용은 남성의 재범 방지대책과 사뭇 다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남성 범죄자의 경우 범죄 유형별로

상당히 세분화되어 연구가 수행되고 그들의 재범 요인들을 밝히고 있는 것과 달리, 여성 범죄자의 경우 총체적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 그리고 사회 제도적 원인보다는 개인적인 경험과 상관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점이 아쉽기도 하다. 여성의 빈곤화와 범죄화, 가부장적 사회와 여성의 범죄화 등과 같이 거시적(macro) 접근도 함께 제시될 수 있다면 단순 제도적 보완만으로 재범억제를 확인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시적인 효과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다. 재범예방을 위한 형사사법기관 단계별 접근 및 대안

재범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 중에서 범죄자의 개인적인 요인이 아닌 형사사법기관의 역할 변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연구」와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 처우의 과학화에 대한 연구」 시리즈에서 다양한 함의들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범죄자 처우 프로그램의 표준화 연구를 통해 이들은 위험성 평가의 필요성과 그 의미를 부각시켰다. 특히나 한국형 범죄자 위험성평가 도구 모델을 제시하였다. 보안처분의 집행에 있어 대상자에 대한 감시적 기능과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원호적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정교화와 치료, 재활을 위한 처우와 함께 대상자의 취업지원 및 주거지원등의 활동의 필요성을 담았다. 또한 시설 수용 보안처분과 사회내 보안처분이 유기적으로 연동되어야 하며, 전자감독과 보안처분제도가 어떻게 정비되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보안처분 대상자에 대한 재범위험성 감소를 위해 어떠한 처우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검토하였다. 더 나아가 과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조해오던 형사사법기관이 현대사회에서는 범죄자관리에 허점을 노출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도소, 보호관찰소, 경찰과 같은 형사사법 기관들의 긴밀한 연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신고 있었다. 이러한 범죄자 처우의 과학화의 내용은 범죄자 위험성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와 기관협력모델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기관 협력모델의 강조 과정에 집중적으로 언급되는 모델은 영국의 지역사회 파트너십(MAPPA : Multiple 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 모델이다.

라. 재범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모델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 선진화 방안 연구」는 다년차로 진행하면서 교정제도의 다양한 제도들을 고민하였다. 특히 2년차 연구에서는 교정보호에 있어 민영화와 민간 참여 확대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선진국의 교정보호 측면에서의 민영화 동향을 분석하고, 교정 비용절감과 범죄자 관리 측면에서 민영화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단순히 기관의 민영화 뿐만 아니라, 범죄자 처우 프로그램의 운영, 갇생보호 시설의 민영화, 그리고 사회 내 교정의 민영화 등의 문제에 대한 고민도 던져주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구금을 대체할 수 있는 형태의 중간처우 시설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이를 관리하고 협조하는 기관들의 민영화 가능성도 모색해본 연구였다. 더 나아가 연구 당시 이미 운영 중이었던 소망교도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직원들의 급여 및 처우의 개선, 운영 방식과 투명성의 확보, 소망교도소가 다양한 외부 의료기관 및 지역 보고소와 연계를 통해 진료 서비스를 확대해야한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취업훈련, 교회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의 강화 등의 제언들도 담았다. 이들은 종교 단체가 이러한 교정교화의 민영화에 핵심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았고, 출소자 주거 지원과 직업알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단순 출소자 고용형 사회적 기업에서 더 나아가 “기업의 직장 단위당 1인 출소자 고용 정책”이라는 매우 공격적인 출소자 지원 정책을 제안하였다.

제4절 청소년범죄 재범

1. 연구의 구조

청소년의 재범을 다룬 연구는 총 13종이다. 이들을 연구 시기별로 살펴보면 1990년대에는 2종의 연구가 집필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2000년대 이후에 수행되었다. 특히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연구 청소년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 된 점은 인상적이다. 청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그와 연관된 다양한 법제 개편 논의들과 더불어 ‘연구원’에서 해외 제도들의 소개는 물론 관련 제도들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증거에 기반을 둔 연구들을 시도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5-6] 청소년 범죄 연구 구조

	구분	빈도	비율
보고서 구분	일반	2	15.4
	기본	10	76.9
	수시	1	7.7
	합계	13	100.0
보고서 수행년도	1991	1	7.7
	1995	1	7.7
	2000	1	7.7
	2001	2	15.4
	2002	1	7.7
	2005	1	7.7
	2008	1	7.7
	2009	2	15.4
	2010	1	7.7
	2012	1	7.7
	2014	1	7.7
	합계	13	100.0
연구 책임자 전공	법학	2	15.4
	사회학범죄학	5	38.5
	기타	6	46.2
	합계	13	100.0
공동연구자 전공(중복)	법학	1	7.7
	사회학·범죄학	3	15.4
	심리학	0	0
	실무자	2	15.4
	기타	3	23.1
공동연구자 수	.00	7	53.8
	1.00	3	23.1
	2.00	2	15.4
	3.00	1	7.7
인용국가(중복)	미국	12	92.3
	영국	1	7.7
	독일	1	7.7
	캐나다	0	0
	일본	1	7.7
	기타	1	7.7

청소년범죄의 재범을 다룬 연구들은 기본연구의 유형으로 진행되었고, 단기적 수치 연구로는 1종만이 진행되는데 이를 통해 청소년 재범에 관한 연구들은 시의적 상황에 의한 연구가 아닌 이전부터 연구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계획적으로 시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관련 형법 혹은 사회범죄학적 이론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낙인이론, 혹은 다이버전에 대한 철학적 기초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욕구, 좌절, 공격성 등과 같은 요인들을 청소년범죄를 검토하는데 활용하고 있었다.

연구책임자의 전공을 살펴보면 법학은 2종에 불과하였고, 사회학 혹은 범죄학 전공자가 5명, 기타 전공자가 6명에 해당하였다. 하지만 연구책임자와 연구방법론이 상관성을 갖지는 않았다. 법학 연구자들은 교육학 공동연구자들을 통해 양적연구방법론을 진행하기도 하였고(이승현), 사회학 전공자들이 단순 해외 제도들을 검토하기도 하였다(최인섭, 김지선). 하지만 공동연구자들을 선택할 경우 모두 국내 연구진들로만 구성이 되었다. 단독으로 진행된 연구는 7종이었고 공동연구자 수는 1명에서 3명까지 분포하였지만 1명의 공동연구자와 함께 진행된 연구가 53.8%로 가장 많았다.

이들 공동연구진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법학자를 포함한 연구는 1종, 사회학 및 범죄학자를 포함한 연구는 3종, 실무자를 포함한 연구는 2종, 그리고 기타 분야(교육학 등)의 연구자를 포함한 연구는 3종이었다.⁸⁾

청소년범죄 관련 정책들을 인용한 보고서들이 참고한 주요 국가의 정책을 보면 미국이 12종으로 92%, 영국이 1종 독일이 1종, 일본이 1종으로 대다수가 미국의 청소년관련 정책들을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연구에 사용된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조사연구가 혼재되어 있다. 앞선 문헌연구의 비율은 38.5%에 해당하였고 나머지 61.5%의 연구들이 모두 설문조사나 심층면접, 혹은 그 두 가지 방법이 혼재된 연구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8)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이들의 영역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공분야 사람수가 아닌 영역수로 계산함. 2명의 공동연구자가 모두 법학이었을 경우도 참여 연구진의 영역 위주로 살펴본 관계로 1종의 보고서로 계산함.

[표 IV-5-7] 청소년 범죄 연구 방법

연구 방법	빈도	비율
문헌	5	38.5
설문조사	2	15.4
심층면접	4	30.8
설문+심층	2	15.4
합계	13	100.0

눈여겨 볼 것은 한국의 범죄연구들이 실질적으로 종단연구가 시행되는 것이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총 8종의 청소년 재범에 관한 연구에서 25%의 연구들이 종단연구로 진행이 되었다는 점이다.⁹⁾

심층면접일 경우 그 샘플수는 10명~13명 정도에 해당하였지만 조사연구일 경우 133~641명까지 분포하였다. 「약물남용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김성이, 1991)에 활용된 심층면접의 경우 10명으로 가장 적었고, 이승현(2014)에 의해 진행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 정책의 효과성 분석 연구」가 641명에 대한 조사로 가장 많은 샘플수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¹⁰⁾

2. 연구의 내용

청소년 재범과 관련한 연구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심리학적 치료방법이나 해외의 사례 소개가 주를 이루었으나, 이후에는 이론검증, 해외사례 소개, 그리고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평가 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정책 보고서로 발전한다.

청소년 재범연구의 경우 초기에는 범죄 유형별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약물남용 청소년들에 관한 연구에서는 집단 치료적 접근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처벌의 관점보다는 약물 남용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청소년의 재범을 심리학의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관점에서 조명한 연구에서는 비행과 성격의 연결점을 찾으려는 시도를 보여주었다. 비행청소년을 위한

9) 횡단연구 6종(75%), 종단연구 2종(25%)이다.

10) 총 8개의 보고서는 각기 다른 10명, 12명, 13명, 133명, 261명, 553명, 612명, 641명의 샘플수가 활용되었다.

MBTI 성장 프로그램을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범죄자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비행은 반사회적 성격이나 이상성격과 관계가 깊다는 점, 내향형 보다는 외향형들이 비행경향이 높으며 직관형보다는 감각형, 감정형 보다는 사고형, 그리고 판단형 보다는 인식형이 비행이 높았다. 이를 통해 비행청소년이 행동지향적이며, 학업에서 흥미를 쉽게 상실하고, 현실적 자극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여자 비행청소년의 경우 외향경향과 사고 경향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훨씬 높다. 이는 더 행동지향적이고 자기표현적이며 정서적인 면에서 자기단절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MBTI 진단방식은 앞서 지적한 재범연구에서와 같이 단순 현상을 명명하여 진단할 뿐, 그 원인과 억제 대안을 제공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최영신이 수행한 재적응 연구는 중고등학교 중도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고민을 담았다. 해당 보고서에는 미국이 시행하였던 학습부진의 해소,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 부모교육, 가정학교의 연계, 학교- 직장의 연계 직업기술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대부분 학업지원, 진로상담, 가족관계 개선, 사회적 유대강화가 핵심내용이다. 최영신은 진로지도와 상담기능의 강화, 학생징계절차의 민주화, 대안학교에 대한 정보 제공, 복교에 대한 상담 기능, 학습부진 해소 제도 등이 비행청소년이 학교에 성공적으로 재적응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전영실의 「청소년 성범죄자 재활프로그램의 실태와 개선방안연구」(2001)는 수강명령 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연구가 수행된 2001년 당시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부재를 지적하였는데 이는 2019년을 맞이한 현재에도 진행 중인 고민이라 여겨진다. 앞서 성인 범죄자의 성범죄 재범을 다룬 윤정숙(2011~2014)은 성범죄자를 치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과 연계된다면 청소년 성범죄자 재활 프로그램의 발전 방안 역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유사한 방식으로 최영신(2001)은 같은 해 「청소년 폭력범죄자 재활 프로그램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영실의 주장과 유사하게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개선과 사회봉사명령 프로그램 개선방안(대인형),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폭력 예방 프로그램 실시와 분노조절 프로그램 확대 실시를 제안하였다. 이들 연구는 결론적으로 미국과 호주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 폭력 예방

제도들을 큰 틀로 두고 구체적인 대안을 한국적 상황에 맞추어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김지선은 비행청소년을 위한 멘토링(mentoring)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역시나 미국 법원의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소개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부모책임이라는 광범위한 맥락에서 부모교육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의 부모책임법의 구체적인 내용, 도입배경, 실시현황 그리고 효과 등을 제시하였고, 우리나라의 부모교육명령제도의 도입 타당성 및 도입여건을 검토하였다. 단순히 요약적 제도 소개에 그치지 않고, 완벽하게 매뉴얼을 번역한 연구도 존재하는데, 매우 구체적으로 미국 OJJDP(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의 청소년 재범예방을 위한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면밀한 고찰도 최인섭과 이성식(2010)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들의 연구는 미국의 청소년 재범 관련 제도가 우리나라의 실무가와 형사사법 전문가들에게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그 내용을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 재범 방지 대책이 다단계 제재 및 처우이어야 한다는 점, 예방과 조기개입이 중요하다는 점, 위험성 평가도구의 활용의 필요성, 다기관 연계 및 협력 체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내용만큼이나 운영방식도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마지막으로 2014년에 수행된 이승현의 연구는 법학자와 교육학자의 공동연구로 교육현장과 형사정책적 목표를 모두 원만히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 목소리를 담고 있다. 과연 현재 운영 중인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정책들이 가해행위를 억제하거나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가에 대하여 그렇지 못하다는 진단을 내면서 응보형으로 진행되는 가해학생 관련 제도들이 변화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일률적인 징계를 세분화 하여야 하고, 자치위원회의 전문성강화, 학교폭력 내용의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방향성, 선도교육 전담 기관의 마련, 재심 및 행정심판절차의 개선 등의 필요성을 연구를 통해 도출·제시하였다.

제5절 연구성과의 확산

1. 학술적 확산

RISS(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의 통합 검색을 통해 연구보고서의 활용수치를 정리하였다.¹¹⁾ 우선 보고서 제목을 통해 검색을 할 경우, 학술지, 단행본, 연구보고서의 항목에서 보고서가 각기 검색이 되는데 그 인용 수치가 모두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 활용된 인용수치는 학술지, 단행본, 연구보고서 기준으로 검색하였을 경우 가장 수치가 높은 수치를 활용하였다. 간혹 단행본 한 항목에만 인용수치가 검색되는 보고서들이 있는데, 그러한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인용 수치가 낮게 검색되었음을 밝힌다.¹²⁾

재범관련 연구는 35회, 재범예방 재사회화 연구는 90회, 비행청소년 재범예방은 64회 정보가 조회되었다. 하지만 평균 정보 조회 수치에 대한 표준편차가 평균치를 상회하는 경우가 다수인지라, 연구 영역간, 연구 보고서간 그 정보조회의 활용도의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IV-5-8] 재범 연구분야별 인용지수

연구분류	정보조회 평균	정보조회 표준편차	원문다운 평균	원문다운 표준편차
재범관련연구	34.55	23.18	25.88	20.43
재범예방 재사회화	82.34	89.80	47.50	57.46
비행청소년 재범예방	46.76	47.88	66.25	78.70
합계	63.75	73.49	48.14	59.42

11) 2019년 2월 26일 기준.

12) 홍영오 외(2012). 「강력범죄 재범률 및 재범예측에 대한 연구」, 김태명 외(2009).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I)」, 전영실·정진성(2010). 「음주운전 억제 연구」, 정진수 외(2010).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 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I) - 사회내구금에 관한 연구」, 정진수 외(2013).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방안 연구(II) - 교정민간 자위봉사 활동의 활성화 방안」, 한상암·송재현(2012).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방안(I) 고위험범죄자 관리에서 경찰, 보호관찰, 교도소의 협력방안」, 정진수 외(2012).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고위험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제도의 정비방안」, 연성진 외(2012).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I) - 출소자 주거 및 취업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업 설립육성방안·선진화」에 해당하는 연구보고서가 단행본으로만 검색되면서 정보조회 수치와 다운로드 수치가 현저히 낮게 보고되었다.

이들 보고서가 검색 이후 실질 다운로드 된 횟수를 살펴보면, 평균 26회가 검색되었고, 재범예방 및 재사회화 연구는 48회, 비행청소년 연구는 평균 67회 정보가 다운로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들 이외에도 정책적 기여부분에서도 그 파급력을 확인 할 수 있다.

2. 정책적 기여

‘연구원’에서 수행한 재범에 관한 연구들은 범죄에 대한 관점 전환은 물론 실질적 제도개선과 입법화라는 연구 확산 효과를 낳았다. 2007년에 수행된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처우 연계」(최영신 외 5, 2007) 보고서는 최초의 출소자 지원기본법 및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제정 2008. 12.22. 법무부 예규 제814호, 개정 2009.5.25. 법무부 예규 852호)등의 입법화 성과는 물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영되는 정책기여를 보여주었다.

2011년부터 3년 동안 진행된 성범죄 재범방지 관련 연구는 2011년도에 수행된 윤정숙 외 2명의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이들의 연구는 이후 성범죄자 재범방지 치료의 범정부부처의 정책화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합동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성폭력 가해자 치료 교육 강화 및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교육 전문 인력 육성사업 추진에 동력을 가하였다. 기존의 성범죄자 교정치료시간이 100시간으로 확대되는 즉각적인 정책적 기여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 방안을 연속과제로 진행하면서 이들은 사후 치료 도입을 위한 법률적 제고를 제시하였고, 증거 기반의 성범죄자 치료제도 운영을 위한 사법제도, 그리고 사후 치료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사법 단계별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성범죄자의 치료적 욕구를 파악하는 법무부 산하 분류센터 신설 및 심리치료과 신설 등의 국가 정책 계획 수립에 일조하였다.

2014년 수행된 이승현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 정책의 효과성 분석 연구 역시도 사회적 논란 이전에 수행되어 정책의 방향성을 잡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구체적인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면 실질적인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에 자치위원회 전문화 고양과 재심절차의 일원화 등이 포함되었으며 실질적인 가해학생 관련 새로운 정책 추진에 보고서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핵심 내용으로 반영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초등학생을 위한 맞춤형 학교 폭력대책의 발표와 가해학생 조치별 세부기준 고시안 등은 이승현(2014)의 연구 제언이 직접적으로 사회 정책과 연결되는 성과이다.

제6절 결론

이 장은 ‘연구원’ 30주년을 기념하여 형사정책연구 분야 중 재범연구에 관한 30년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본다는 큰 의도 하에 진행되었다. 지난 30년 동안 ‘연구원’에서 수행한 재범예방 관련 연구들은 재범 자체에 대한 연구, 재범 예방 및 재사회화에 관한 연구 그리고 청소년 재범에 관한 연구로 크게 분류되었다. 재범 자체를 다룬 연구는 1990년대에 주로 진행된 반면, 2000~2010년 사이에는 청소년의 재범에 관한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었고, 2010년~현재까지는 재범 예방 및 재사회화에 관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는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재범과 관련한 연구들은 법학적 접근보다는 범죄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진단에 기반하여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연구의 목적으로 인해 규범적인 접근 보다는 양적 접근, 즉 범죄 및 사회학적 접근 방법이 우세하였다. 구체적으로 재범 자체에 대한 연구는 모두 사회학 혹은 범죄학을 전공한 연구진들에 의해 경험적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았고 재범 예방 및 재사회화 연구 부분은 실무자와 기타 다른 분야의 전문연구진들과 협업하여 조사 연구를 진행한 경우가 많았다. 청소년 범죄의 재범의 경우 영미권의 청소년 제도를 고찰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한 한국형 모델을 검증하는 형식이 다수이나, 최근에는 한국 청소년 범죄 문제를 조금 더 다각도로 조명하며 대안방안을 구체적인 정책제언으로 가시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범 자체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범죄 사회학적 분야의 이론 검증 방식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처벌의 기능, 범죄자의 법적 요인, 혹은 개인 사회학적 요인의 상대적 요인을 살폈다면, 재범 예방 및 재사회화 연구는 사회범죄학적 측면의 조명에서 더 나아가 성격, 심리, 복지, 보건 등의 측면에서 논의되는 이론들을 함께 살폈고, 해결 방안 역시도 단순 처벌이나 형사사법기관의 역할 논의에서 더 나아가 치료적 접근이

나 교정의 과학화를 위한 범죄자 유형분류, 교정 처우의 선진화를 위한 기관 협력체계, 혹은 민간 협력체계 구성, 지속가능한 예방정책을 위한 사후관리 등을 제시하는 다각 도적 조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한 과정에는 협력연구라는 기관 공동 연구방식과 종단적 연구 기획이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범죄, 그리고 재범이라는 난해한 분야를 범죄학이라는 한 분야의 제한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연구진의 반성과 자각, 그리고 현실적 타협이 범죄예방과 재사회화 연구의 방향을 이상적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확산성과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이러한 연구들은 범죄 정책과 학계와 매우 긴밀한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재범연구들은 범죄 유형에서도 현실과 밀접성을 가져야한다. 강력범죄는 두렵지만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타자화된 시각이 많이 담길 수밖에 없다. 향후 재범과 재사회화에 대한 연구는 일반인들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개입된 수많은 과실범, 경미범 연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타자화 된 시각을 벗어내고 신뢰 사회로 나아가는 데 '연구원'이 더욱 지속적인 기여를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성이(1991). 약물남용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성이·김은아(2004). 약물사범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윤동호(2012).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훈방의 법제화 방안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훈방의 법적 근거와 절차마련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이순래(1994). 소년범죄자의 성인범죄자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2002). 비행청소년을 위한 멘터링에 관한 연구 -미국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2005). 법원의 부모교육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태명·백승흠·조진우(2009).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I) -출소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철현(2000). 교도소 재입소자의 재범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승재현·조운오(2013).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방안 연구(II) -교정 민간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심혜숙·김명권(1995). 비행청소년을 위한 MBTI 성장프로그램 개발 -보호관찰 수강명령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안성훈·정진경(2018). 정신질환자 범죄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내 관리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성진·류창현(2015). 분노형 범죄에 대한 새로운 정책대안으로서의 가상현실치료(VRT)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성진·최진규·유영재·장홍근(2012).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방안 연구(I) -출소자 주거 및 취업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업 설립·육성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성진(2003). 처벌의 범죄억제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유병철(2010).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I) : 고위험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관리 모델에 관한 연구 : 영국, 미국의 범죄자관리

- 모델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윤정숙·Raymond A. Knight(2013).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방안
(II) -교정시설내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윤정숙·William L.Marshall·Judith Sims-Knight·이수정(2012).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 방안(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윤정숙·김재현·박은영(2017). 동기 없는 범죄 수용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적 개입
및 제도화 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윤정숙·박성훈·김진석(2014). 아동학대 행위자 치료프로그램 개발 -행위자 특성조사
및 기초매뉴얼 개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윤정숙·박정일·여운철(2011).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연구 -프
로그램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윤정숙 외(2014).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 방안(III) -치료프로그
램 이수자의 사후관리 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병기·노성호(1993). 소년범의 재범예측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병기·류철원(1992). 범죄경력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승현·정제영·강태훈·김무영(2014).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정책의 효과성 분석 연
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원복·김미숙·박민선·박혜련(2011).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II) -출소자재범방지를 위한 민간전문시설 확충방안 : 종교단체의 참여확
대방안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영실(2001). 청소년 성범죄자 재활 프로그램의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영실·정진성(2010). 음주운전 억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진수·박선영·송주영·최진규·Edward J. Latessa·유영재·허경미(2013).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방안 연구(II) - 교정민영화의 쟁점과 과제,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 정진수·박선영·승재현·조운오·송주영·최진규·Edward J.Latessa·유영재·허경미(2013).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방안 연구(II) -총괄보고서,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 정진수·박선영·심희기·유병철·윤창식·이수정·이춘화·황의갑(2010). 재범방지를 위
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I)(총괄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진수·승재현(2012).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방안 연구(Ⅰ) -고위험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제도의 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진수·연성진·한상암·승재현·최진규·유영재·이상원·장홍근(2012).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방안 연구(Ⅰ) -총괄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진수·윤창식(2010).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Ⅰ) : 사회내 구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진수·조운오·이원복·김미숙·박민선·박혜련·이수정(2011).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Ⅱ) -총괄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운오·정진수(2011).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Ⅱ) -범죄자처우프로그램의 표준화와 과학화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영신(2000). 비행청소년의 학교 재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영신(2001). 청소년 폭력범죄자 재활 프로그램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영신·김기환·최지영·황태정(2008). 비행청소년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청소년의 범법행동과 법적 제재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영신·김윤나·김용성(2009).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Ⅰ) : 비행청소년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평가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영신·홍영오·이법호·정영진·이창한·김안식(2007).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처우 연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영신·황정임(2006). 여성 출소자의 사회적응 지원 방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박철현(1993). 강력범죄에 대한 선고형량이 재범방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상암·이상원(2012).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방안 연구(Ⅰ) -고위험범죄자관리에서 경찰·보호관찰소·교도소의 협력강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홍영오·강호성·노일석(2012). 강력범죄의 재범률 및 재범예측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Maltz. M. D.(2001). Recidivism. Academic Press, Inc., Orlando, Florida. Internet edition available at <http://www.uic.edu/depts/lib/forr/pdf/crimjust/recidivism.pdf>

부록

[부록 1] 형사정책연구 30년 범죄학 분야 연구보고서 목록(연도별)

연도	번호	종류	연구보고서 제목(저자)
1989	1	기본	개방교도소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개방처우를 중심으로- (이정수/정동진/장석현/이윤호)
	2	기본	갱생보호사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이정수/신의기/김효정/최창식)
	3	기본	메스암페타민사범의 실태와 대책 (이정수/조병인/최영신/백월순)
	4	기본	민생치안범죄규제의 전략과 이론 (신현주)
	5	기본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심영희/윤성은)
	6	기본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공부압력을 중심으로- (김준호/노성호/고경임/최원기)
1990	1	기본	가정교육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심층적 면접에 의한 분석- (박성수)
	2	기본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심영희/박선미/백월순/김혜선)
	3	기본	경찰순찰활동의 실태와 발전적 개선방안 (김형청)
	4	기본	교정처우의 현황과 개선방안 (김상희/정동진/윤영철)
	5	기본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심영희/박선미)
	6	기본	대중매체의 폭력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사회인지이론에 의한 실험적 접근- (윤진/곽금주)
	7	기본	민간경비의 육성과 방법능력 증대방안 연구 (서재근)
	8	기본	범죄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김준호/이동원)
	9	기본	범죄피해조사란 무엇인가 (김준호/심영희/조정희)
	10	기본	소년보호처분의 효과분석 (이윤호)
	11	기본	소년원 교육에 대한 참여 관찰 연구 -직원의 직무와 원생의 생활을 중심으로- (김영찬)
	12	기본	유흥업소 주변의 습관중독성물질 오·남용 실태 연구 (김경빈)
	13	기본	재소자의 생활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심영희/윤성은/김치곤/임희철)
	14	기본	정신병환자의 범죄성에 관한 연구 -강력범죄를 범한 피치료감호자와 일반 강력범죄자와의 비교- (장동원)
	15	기본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김준호/노성호/오수정/장은숙)
	16	기본	청소년 범죄행동 유발 요인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원호택)
	17	기본	청소년 친구집단과 비행 간의 상관성 연구 -낙인과정 설명을 중심으로- (전병재)
	18	기본	청소년의 약물남용과정에 관한 연구 -소년원생을 중심으로- (김상희/최영신)
	19	기본	파출소단위 방범활동의 개선방안 연구 (김상희/강대형)
1991	1	기본	가석방의 실태와 효율적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장영민/탁희성)
	2	기본	가정파괴범죄에 관한 연구 (김상희/조병인)
	3	기본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시의 남편의 아내폭력 현황을 중심으로- (김익기/심영희/박선미/김혜선)
	4	기본	강간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최인섭/전영실/이종택)
	5	기본	경찰활동과 무기사용에 관한 연구 (이기호)

536 형사정책연구 30년의 성과와 과제(I) : 범죄학 연구

연도	번호	종류	연구보고서 제목(저자)
	6	기본	공동주택의 범죄방어공간 도입에 관한 연구 (도건호)
	7	기본	교정공무원의 의식에 관한 연구 (박재윤)
	8	기본	교정교화분야의 민간참여에 관한 연구 (한인섭)
	9	기본	교정시설의 교화활동에 관한 연구 (김상희/이인순/윤영철)
	10	기본	누범수용자의 효율적 관리방안 (임웅)
	11	기본	사회구조와 범죄 -경제발전과 인구성장을 중심으로- (박순진/최인섭)
	12	기본	살인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김상희/이태원)
	13	기본	서울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심영희/김준호/최인섭/조정희/박정선)
	14	기본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연진영)
	15	기본	약물남용범죄와 약물공급범죄에 관한 연구 (김익기/류철원/주은우)
	16	기본	약물남용의 실태와 통제방안 -미국의 경우- (심영희)
	17	기본	약물남용자의 치료상 문제점과 대책 : 약물남용자의 심리사회적 요인과 치료자의 치료경험을 중심으로 (이근후)
	18	기본	약물남용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김성이)
	19	기본	재소자 분류수용제도에 관한 연구 (권태정)
	20	기본	조직폭력의 실태와 대책 (문영호/정진수)
	21	기본	중퇴와 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김준호/이동원/박미선)
	22	기본	청소년음주와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김동일)
	23	기본	청소년의 가출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김준호/박정선)
	24	기본	한국의 청소년 비행집단에 관한 연구 (김준호/노성호/곽대경)
	25	기본	한국의 환경오염 및 환경범죄의 실태와 대책 (김익기/김성연)
	26	기본	한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연구 (김준호/김선애)
	27	기본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방안 (이재상/이호중)
1992	1	기본	가정환경과 청소년비행 (김준호/김순형)
	2	기본	강·철도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심영희/김성연)
	3	기본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연구 (신양균)
	4	기본	방화범죄에 대한 연구 (최인섭/진수연)
	5	기본	범죄경력에 관한 연구 (이병기/류철원)
	6	기본	보호감호의 실태와 개선방안 (장규원)
	7	기본	사기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김준호/차종천/김성연)
	8	기본	소년보호관찰의 평가와 효율성분석 -서울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 (최인섭/진수명/김영진)
	9	기본	수형자 직업훈련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문영호/이인순/박강우)
	10	기본	약물남용과 범죄와의 관계 (차종천/최영신)
	11	기본	여성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최인섭/전영실)
	12	기본	외국의 소년범죄처리제도와 실태 (김승구)
	13	기본	인신매매의 실태에 관한 연구 (차종천/김익기/김은경/진수명)
	14	기본	청소년의 도덕성, 법의식 발달, 비행 경향성 및 법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문용린/조영달/강윤정/박성혁)

연도	번호	종류	연구보고서 제목(저자)
1993	15	기본	친구와 비행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김준호/박미성)
	16	기본	학교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준호/노성호)
	17	기본	현금다액취급업소의 방범대책 연구 (문영호/조병인)
	1	기본	각국의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연구 (이건중/전영실)
	2	기본	강력범 수형자의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이병기/송성신/여하은)
	3	기본	강력범죄에 대한 선고형량이 재범방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최인섭/박철현)
	4	기본	도시성장과 범죄 -범죄율의 도시별 분포를 중심으로- (최인섭/박순진)
	5	기본	범죄발생의 추세분석 : 1964-1991 (이상철/기광도)
	6	기본	비행소년 감별기준에 관한 연구 (김준호/이동원)
	7	기본	사설교도소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연구 (김용진)
	8	기본	소년범의 재범예측에 관한 연구 (이병기/노성호)
	9	기본	소년수탁시설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아동복지시설과 소년보호시설을 중심으로- (김준호/이순래)
	10	기본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대책 (최인섭/최영신)
	11	기본	음란물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김준호/박해광)
	12	기본	음란물의 유해성과 그 규제실태에 관한 연구 -음란비디오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김준호/김은경)
	13	기본	중간처우제도에 관한 연구 (이백철)
1994	14	기본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민간인 참여 (최인섭/진수명)
	15	기본	치료감호에 관한 연구 (장규원/진희권)
	16	기본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최인섭/박순진)
	1	기본	가석방자와 만기출소자의 재범요인비교 (최인섭/진수명)
	2	기본	개방처우제도에 관한 연구 -운영실태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이병기/송성신)
	3	기본	개인의 자기통제력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 (김두섭/민수홍)
	4	기본	노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이건중/전영실)
	5	기본	미국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연구 (이기현/기광도)
	6	기본	보호위원의 보호관찰활동에 관한 연구 (김준호/이동원)
	7	기본	소년범죄자의 성인범죄자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김준호/이순래)
	8	기본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오영근/최병각)
	9	기본	소년원 교정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이훈규/김성연)
	10	기본	소년원생의 생활실태 및 교육에 관한 연구 (이병기/김성연)
	11	기본	수강명령제도와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 (이병기/노성호)
	12	기본	수용자의 보건의료실태 및 관리방안 (손명세/박종연/허영주)
	13	기본	여자청소년의 비행실태에 관한 연구 (김준호/김은경)
	14	기본	재산범 출소자의 재범에 관한 연구 -강력범과의 비교연구- (최인섭/박철현)
	15	기본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정치료 및 보호에 관한 연구 (장영민/박강우)
	16	기본	주택지에서 범죄발생공간의 유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동구의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박강철)
	17	기본	처벌의 낙인효과에 관한 연구 (최인섭/이성식)

연도	번호	종류	연구보고서 제목(저자)
1995	18	기본	청소년의 약물남용실태에 관한 연구 -술, 담배를 중심으로- (김준호/박정선)
	19	기본	현행 행형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장규원)
	20	기본	화이트칼라범죄에 관한 연구 -유형과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최인섭/최영신)
	1	기본	교도작업의 실태와 개선방안 -재소자의 노동소외 문제를 중심으로- (조준현/김성언)
	2	기본	교통범죄 양형에 관한 실태분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건을 중심으로- (김두섭/기광도)
	3	기본	국내체류 외국인의 범죄피해 및 보호실태 (조병인)
	4	기본	도박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김석준)
	5	기본	범죄의 상황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이성식)
	6	기본	법익식과 비행의 관계 (김준호/김은경)
	7	기본	보호관찰제도의 성인범 확대실시를 위한 예비연구 (최인섭/진수명)
	8	기본	비행의 조기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민수홍)
	9	기본	비행청소년을 위한 MBTI 성장프로그램 개발 -보호관찰 수강명령 대상자를 중심으로- (심혜숙/김명권)
	10	기본	상점절도에 관한 연구 (노성호)
	11	기본	소년수형자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처우실태와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이훈규/이정규)
	12	기본	어린이 유괴범죄에 관한 연구 (최인섭/최영신)
	13	기본	여성수형자의 수형생활실태 (김두섭/전영실)
	14	기본	외국의 수형자 직업훈련제도에 관한 연구 (장규원)
	15	기본	음주운전의 규제에 관한 연구 (최인섭/박철현)
1996	16	기본	존속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최인섭/김지선)
	17	기본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실태 및 비행과의 관계 (김준호/박정선)
	18	기본	한국의 청소년 비행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김준호/이동원)
	1	기본	독일 행형법에 관한 연구 (장규원)
	2	기본	범죄의 두려움에 관한 연구 (최인섭/김지선)
	3	기본	사회계층과 범죄발생에 관한 연구 (최인섭/기광도)
	4	기본	서울시 자가운전자의 음주운전에 관한 연구 (조병인/박철현)
	5	기본	수용자 교정교육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학과교육 등 교정교육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이훈규/이정규)
1997	6	기본	청소년의 긴장과 비행 (김준호/이동원)
	7	기본	피보호감호자의 사회적응증진과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처우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조성희/김보경/김종률)
	8	기본	학교주변 폭력의 실태와 대책 (김준호/박정선/김은경)
	1	기본	가정폭력이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민수홍)
	2	기본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와 대책 (연성진/김지선)
	3	기본	대중문화의 선정성이 청소년 성범죄에 미치는 영향 (김은경)
	4	기본	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1964-1996 (박승진/이동원/박순진)
	5	기본	불법체류 외국인의 실태와 대책 (조병인/박철현)
	6	기본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Ⅱ) (최인섭/김성언)
	7	기본	수강명령프로그램의 운용실태와 개발방향 (손동권/최영신)

연도	번호	종류	연구보고서 제목(저자)
1998	8	기본	자동차절도의 실태와 대책 (조병인/전영실)
	9	기본	피보호감호자의 교정처우실태 (김종정)
	10	기본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Ⅱ) (최인섭/기광도)
	1	기본	권력형 부정부패의 구조와 통제방안 (연성진)
	2	기본	법조비리에 관한 연구 (김성언)
	3	기본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실태 및 개선방안 -성인범을 중심으로- (장규원)
	4	기본	부정부패에 대한 사회문화적 고찰 (박철현)
	5	기본	수형자 외부통근제도에 관한 연구 (김종정)
	6	기본	재중동포에 대한 범죄와 대책 (신의기)
	7	기본	지역특성과 범죄발생에 관한 연구 (최인섭/진수명)
	8	기본	체제통합에 따른 사회변화와 범죄양상 -독일통일과정을 중심으로- (기광도)
1999	9	기본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음란물 접촉실태와 대책 (노성호)
	10	기본	학원부조리 실태에 관한 연구 -춘지관행을 중심으로- (전영실)
	11	기본	허위·과장광고의 규제실태 및 개선방안 (김지선)
	1	기본	"IMF" 시대에 따른 범죄양상과 대책 (최인섭/기광도)
	2	기본	90년대 돈세탁 : 국제적 추세와 국내 실태 (장준오)
	3	기본	공무원범죄의 추이에 관한 연구 (연성진)
	4	기본	교도소내 수용자폭력행위에 관한 연구 (임재표)
	5	기본	범죄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살인과 폭행, 상해를 중심으로- (박순진)
	6	기본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이건호)
	7	기본	실직자의 일상활동 및 범죄행위에 대한 연구 (기광도/최영신)
	8	기본	직장내 성희롱의 실태와 대책 (전영실)
	9	기본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Ⅱ) (노성호/김성언/이동원/김지선)
	10	기본	청소년범죄 추세분석 : 1966-1998 (김성언/노성호)
2000	11	기본	체벌의 실태와 영향에 관한 연구 -학교체벌을 중심으로- (김은경)
	12	기본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Ⅲ) (박순진/최영신)
	13	기본	한국의 청소년비행 연구동향 (이동원/김지선)
	1	기본	교도소 재입소자의 재범과정에 관한 연구 (박철현)
	2	기본	범죄에 대한 청소년의 가치관과 태도에 관한 연구 (김성언)
	3	기본	비행청소년의 학교 재적응에 관한 연구 (최영신)
	4	기본	사이버경찰에 관한 연구 -사이버범죄의 규제를 중심으로- (조병인)
	5	기본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피해 (이민식)
	6	기본	성의 상업화가 성의식 및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 (김은경)
	7	기본	세계범죄피해조사 : 한국편 (장준오)
	8	기본	소년보호처분유형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김지선)
2000	9	기본	스토킹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박철현/이상용/진수명)
	10	기본	신도시지역의 범죄발생상황에 관한 연구 (진수명)
	11	기본	아동 성학대의 실태 및 대책 (강은영)

540 형사정책연구 30년의 성과와 과제(Ⅰ) : 범죄학 연구

연도	번호	종류	연구보고서 제목(저자)
2001	12	기본	외국의 새로운 소년법 처우제도 : 가족회합제도를 중심으로 (노성호)
	13	기본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비연구 (김혜정)
	14	기본	피학대아동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전영실)
	1	기본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위기 개입 방안연구 (김은경)
	2	기본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연구 (김성언)
	3	기본	경찰활동과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조병인)
	4	기본	규제개혁정책과 부정부패(Ⅰ) -경찰, 소방분야- (연성진/이민식/이천현)
	5	기본	규제개혁정책과 부정부패(Ⅱ) -건설, 건축, 환경분야- (이천현/연성진/이민식)
	6	기본	규제개혁정책과 부정부패(Ⅲ) -식품위생, 세무분야- (이민식/연성진/이천현)
	7	기본	노인 수형자의 특성 및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강은영)
	8	기본	농촌지역의 농작물, 가축, 그리고 농기계의 절도피해실태 및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기광도)
	9	기본	마약류 확산실태와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 (조은석/김광준)
	10	기본	마약류관련 수용자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홍남식)
	11	기본	부패 : 1980-90년대 정경유착 (장준오)
	12	기본	성매매 청소년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김지선)
	13	기본	성인범 보호관찰의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김혜정)
	14	기본	집중보호관찰활동 성과에 관한 연구 (진수명)
	15	기본	청소년 성범죄자 재활 프로그램의 실태 및 개선방안 (전영실)
	16	기본	청소년 폭력범죄자 재활 프로그램의 실태와 개선방안 (최영신)
	17	기본	출소전 수형자의 의식조사 (탁희성)
2002	18	기본	캠퍼스에서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박철현)
	19	기본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범죄자 신상공개 (이병희)
	1	기본	각국의 소년원제도에 관한 연구 (정재준)
	2	기본	마약류 사범 처리 실태 : 수사 및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신의기/강은영/이민식)
	3	기본	미국의 교정현황에 관한 연구 (홍남식)
	4	기본	불법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 (최영신/장준오)
	5	기본	비행청소년을 위한 멘터링에 관한 연구 -미국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김지선)
	6	기본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현황과 법적 대응방안 (김은경)
	7	기본	소년법상 자원보호자제도에 관한 연구 (이동진)
	8	기본	소년원 가퇴원자 보호관찰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성철)
	9	기본	소년원 교육과정의 평가와 개선방안 (최영신)
	10	기본	수사경찰의 피해자대책의 현황과 과제 (장규원)
	11	기본	수형자의 법적 권리에 관한 연구 (정진수)
	12	기본	약물사범 보호관찰에 관한 연구 (강은영)
	13	기본	여자비행청소년의 교정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전영실)
	14	기본	총기강도 사건의 실태와 대책 (황지태)
	15	기본	컴퓨터사용 사기범죄의 현황과 처리실태에 관한 연구 (박형민)
	16	기본	학교폭력의 원인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이순래)

연도	번호	종류	연구보고서 제목(저자)
2003	17	기본	한국의 민간경비 : 성장과 합의 (김성언)
	18	기본	한국의 범죄발생 추세분석 : 1964-2001 (최인섭)
	19	기본	한국의 범죄피해조사 : 추세분석 (최인섭/박순진/기광도)
	1	기본	21세기 교정비전과 처우의 선진화방안 (정진수/김종정/박양빈/이윤호/이종택)
	2	기본	가정폭력범죄 대응동향과 정책제언 -외국의 입법 및 정책동향을 중심으로- (김은경)
	3	기본	경찰의 역할변화에 대한 조사연구 :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중심으로 (김성언)
	4	기본	교정처우 모델에 관한 연구 -사회 치료적 처우를 중심으로- (장규원)
	5	기본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박성래)
	6	기본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과 피의자의 방화행위에 대한 범죄·심리학적 분석 (성한기/박순진)
	7	기본	마약류 지정기준에 관한 연구 (신의기)
	8	기본	마약조직의 생존행태 연구 (조병인)
	9	기본	미결수용자 처우에 관한 연구 (정진수)
	10	기본	법법정신장애자 등에 대한 법적 처우에 관한 연구 (원범연/조성용)
	11	기본	사이버상의 청소년 일탈에 관한 연구 (장준오)
	12	기본	살인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II) (박형민)
	13	기본	소년미결구금제도에 관한 연구 (김지선)
	14	기본	아내구타자의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 (조은경)
	15	기본	아동 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연구 (강은영)
	16	기본	여성의 폭력범죄 실태에 관한 연구 (전영실)
	17	기본	지리정보시스템과 공간분석을 활용한 범죄연구 (김기득/곽대훈)
	18	기본	지하철 내 범죄에 관한 연구 (황지태)
	19	기본	처벌의 범죄억제 효과에 관한 연구 (연성진)
	20	기본	청소년 약물남용의 행태 변화 (최영신)
	21	기본	청소년 폭력집단에 관한 연구 (이동진)
	22	기본	청소년들의 인터넷음란물 접촉실태 및 영향에 관한 연구 (이성식)
	23	기본	청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소년보호교육기관의 역할확대 및 강화방안 (정재준/원혜옥)
	24	기본	한국과 선진국의 교정조직 구성 및 운영의 차이에 관한 연구 (최유성/전창화/최무현)
	25	기본	한국보호관찰의 현황과 과제 (이성철)
	26	기본	한국사회의 폭력에 대한 연구 (최인섭/박형민/이순래/노성호/조은경/박순진/박정선/박철현)
	27	기본	한국의 범죄추세 분석 (최인섭)
	28	기본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IV) (최인섭/김지선/황지태)
	29	수시	납치범죄에 관한 연구 (이동진/김성언)
2004	1	기본	Crime in Korea (장준오)
	2	기본	가석방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박성래)
	3	기본	가출청소년의 비행예방에 관한 연구 (연성진/민수홍)
	4	기본	각국의 회복적 소년사법 정책동향 (김은경)
	5	기본	강·절도범의 범행대상 선택에 관한 연구 (황지태)

542 형사정책연구 30년의 성과와 과제(I) : 범죄학 연구

연도	번호	종류	연구보고서 제목(저자)
	6	기본	미국의 민영교도소에 관한 연구 (연성진)
	7	기본	방화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박형민)
	8	기본	사회 내 처우 연결망 구축 및 자원 동원화 방안 (김성언)
	9	기본	사회내 제재수단의 도입 및 활성화방안 (이진국)
	10	기본	소년범의 범죄화 과정 및 보호방안 연구 (박정선)
	11	기본	소년원 출원생의 사후보호에 관한 연구 (김지선)
	12	기본	수용자 외부교통 확대방안 연구 (조병인/원혜욱/민수홍/이경재)
	13	기본	수용자처우에 대한 시민감시제도 연구 (조병인)
	14	기본	약물남용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강은영/이성식)
	15	기본	약물남용 예방교육의 실태와 효율화 방안 (강은영)
	16	기본	약물사범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김성이/김은아)
	17	기본	음주운전의 실태에 관한 연구 (전영실)
	18	기본	주요 국가의 강력범죄 발생추세 비교분석 (최인섭)
	19	기본	주요 국가의 소년보호관찰제도 연구 -미국, 영국, 일본의 소년보호관찰제도를 중심으로- (김양곤)
	20	기본	형사절차상 성범죄 피해아동의 보호방안 (황만성)
	21	수시	교정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정진수/박성래/박정선)
	22	수시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 타당도 분석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조은경)
	23	수시	청소년 비행의 태도에 관한 연구 : 범의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준호)
2005	1	기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송기오/강경래)
	2	기본	법원의 부모교육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김지선)
	3	기본	세계 주요도시의 범죄발생추세 비교분석 (최인섭)
	4	기본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분류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김양곤/이수정/이민식)
	5	기본	여자 청소년의 비행과 처우에 관한 연구 (최영신)
	6	기본	인터넷 유해사이트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박형민)
	7	기본	장기수형자 처우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승만/신연희)
	8	기본	지역주민의 자율방범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자율방범대활동을 중심으로- (전영실)
	9	기본	청소년비행의 종단적 연구를 위한 패널설계 연구 (연성진)
	10	기본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학생 및 교사들의 인지도 연구 (황지태)
	11	기본	행형법 개정시안에 관한 검토보고서 -교정시설 수용자처우 등에 관한 법률- (이천현/류혁상/이진국/도종진)
	12	기본	형사사법모델간 피해자보호 프로그램 비교분석 -미국의 모델을 중심으로- (박미숙)
	13	기본	형사절차상 취약계층 보호방안 -정신장애자 처우를 중심으로- (정진수)
	14	협동	마약류 사범 치료재활을 위한 형사사법체계와 보건의료체계의 협력활성화 방안 (황만성/한동운)
	15	협동	마약류 사용사범에 대한 형사절차상 치료적 개입방안 (김은경)
	16	협동	마약류 수요억제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김한균/박장우)
	17	협동	마약범죄 통제를 위한 예산정책 연구 (권오성/서성아/김윤수)
	18	협동	세대간 갈등과 노인학대 (김지영)

연도	번호	종류	연구보고서 제목(저자)
2006	19	협동	집단별 약물남용 실태와 수요감소전략 (강은영/이성식)
	20	협동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박철현)
	21	협동	한국인의 갈등해소방식 : 폭력을 중심으로 (최인섭/이순래/노성호/박순진/박형민)
	1	기본	공무원범죄의 추이에 관한 연구(Ⅱ) (연성진)
	2	기본	교정사고의 처리실태와 개선방안 (박형민/류종하)
	3	기본	범죄피해자 실태 조사연구 (최인섭/이순래/조균석)
	4	기본	범죄피해자보호 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 (황태정)
	5	기본	북한 이탈주민의 범죄피해에 대한 실태연구 (장준오/이정환)
	6	기본	성인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분류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이법호/박성수)
	7	기본	여성 출소자의 사회적 지원 방안연구 (최영신/황정임)
	8	기본	장기수형자 처우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정영진/신연희)
	9	기본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V) (김지선/김지영/홍영오/박미숙)
	10	협동	마약 및 조직범죄의 형사정책적 현안과 종합적 대응방안 (신의기/김한균/이경재/강은영/권수진/주호노)
	11	협동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실태와 효율적 관리방안 (신의기/주호노)
	12	협동	마약류감시원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강은영/이경재)
	13	협동	범죄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방안 및 지원체계 연구 (홍영오/이수정)
	14	협동	범죄피해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활성화방안 (김지선/이동원)
	15	협동	조직폭력배의 소득원에 관한 연구 : 재소자에 대한 설문 및 심층면접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박경래/손석천)
2007	16	협동	폭력조직의 서식환경 연구 (조병인/최응렬)
	17	협동	폭력조직의 하위문화 연구 (최응렬/송병호/김연수)
	18	협동	학교폭력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소년사법 실험연구(Ⅰ) (김은경/이호중)
	1	기본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Ⅰ) : 제Ⅲ부 대안의 모색 (김은경/김지선/이승현/김성언/원혜옥/이호중/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2	기본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Ⅰ) : 제Ⅱ부 새로운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사법의 실제와 전망 -회합 실험연구를 중심으로- (김은경/김지선/이승현/김성언/원혜옥/이호중/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3	기본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Ⅰ) : 제Ⅰ부 청소년비행 및 소년사법정책 현황 분석 (김은경/김지선/이승현/김성언/원혜옥/이호중/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4	기본	범죄통계 활용기반 구축
	5	기본	부패사법 통제체계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성진/김용세/김혁래/유홍준/추형관)
	6	기본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 (전영실/강은영/박형민/김혜정/황태정/정유희)
	7	기본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처우 연계 (최영신/홍영오/이법호/정영진/이창환/김안식)
	8	기본	조직폭력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 (조병인/신의기/김광준/강석구/윤해성/최응렬/허경미/송봉규)
	9	수시	NIBRS의 소개와 범죄통계 개선방안 (박정선)
	10	수시	범죄예방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신의기/이천현/김지선/강은영/이법호/안상국)
	11	수시	청소년 사이버범죄 유형별 원인 및 통제요소에 관한 통합적 연구 (이성식)
	12	수시	한국 근로자의 직장절도에 대한 태도 : 경험과 인지 (유홍준/장준오)

544 형사정책연구 30년의 성과와 과제(Ⅰ) : 범죄학 연구

연도	번호	종류	연구보고서 제목(저자)
2008	13	수시	한국의 자살실태와 대책 (박형민)
	1	기본	2008년 청소년 대상 범죄피해 조사연구 (홍영오)
	2	기본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Ⅱ) : 회복적 소년사법 실천모델의 효과성 연구 (김은경/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3	기본	노인범죄 및 범죄피해와 노인환경의 유해성 연구 (장준오/유홍준/정태인/이완수/노용준)
	4	기본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Ⅰ) (신익기/박경래/정영오/김결/박현호/홍경구)
	5	기본	비행청소년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청소년의 범법행동과 법적 제재를 중심으로-(최영신/김기환/최지영/황태정)
	6	기본	살인범죄의 실태와 유형별 특성 :연쇄살인, 존속살인 및 여성 살인범죄자를 중심으로 (강은영/박형민)
	7	기본	수용자의 보건·의료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성진/노용준/김안식/정영진)
	8	기본	피학대경험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전영실)
	9	기본	피해자의건진술제도에 관한 연구 (김지선)
	10	기본	한국사회 폭력문화의 구조화에 관한 연구 (연성진/김왕배/원영신/이경용/홍영오)
2009	11	수시	범죄예방을 위한 일상생활의 지혜 (박경래/정영오)
	1	기본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Ⅵ) (김은경/최수형/박정선)
	2	기본	교정정책과 보호정책의 연계성 강화방안 (정진수/김기환/유병철/이창한)
	3	기본	소년범의 검사 결정전조사제도를 위한 위험성평가도구 개발연구 (홍영오/노성호/이수정)
	4	기본	수형자의 법질서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연성진/노용준/신경우)
	5	기본	아동 실종 및 유괴 범죄의 실태와 대책 (강은영/박지선)
	6	기본	연쇄성폭력범죄자 프로파일링과 프로파일링 제도 연구 (김지영/박지선/박현호)
	7	기본	저연령 소년의 비행실태 및 대책 (전영실/기광도)
	8	기본	청소년의 재범예방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최인섭/이순래)
	9	수시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대응 기준과 개선방안 (박경래/황정인/박노섭/안정민)
	10	수시	청소년의 휴대폰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 실태 및 원인에 관한 연구 (이창훈/김은경)
	11	일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Ⅰ) : 비행청소년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평가 연구 (최영신/김윤나/김용성)
	12	일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Ⅰ) -초등학교를 위한 사이버범죄 예방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최수형/이원상)
	13	일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Ⅰ) -출소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김태영/백승흠/조진우)
2010	14	협동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CPTED)의 제도화 방안(Ⅱ) (박형민/황지태/황정인/황의갑/박경돈)
	1	기본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 및 대책(Ⅱ) (홍영오/김범준/구현아)
	2	기본	교도작업의 개선방안 연구 -교도작업의 법적 지위- (탁희성/안성훈)
	3	기본	국내거주 외국인의 조직범죄 실태와 대책 연구 (조병인/박광민/최응렬/김종오)
	4	기본	남편살해 피학대 여성의 사회심리적 특성에 따른 형법적 대응방안 (김지영/강우예/김성규)
	5	기본	미국 OJJDP의 청소년재범예방을 위한 개별 프로그램의 운영사례 연구 (최인섭/이성식)
	6	기본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 및 피해지원욕구 조사 (황지태/노성호)

연도	번호	종류	연구보고서 제목(저자)
	7	기본	북한이탈주민 범죄실태 및 대책 (장준오/고성호)
	8	기본	소년원의 처우방안에 대한 연구 -8호 처분을 중심으로- (이승현/강경래)
	9	기본	음주운전 억제방안 연구 (전영실/정진성)
	10	기본	폭력범죄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박형민/황정인/탁종연)
	11	수시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차등화 처우모델 개발 (김지영/박선영/윤창식)
	12	수시	국내외 투자사기의 유형과 대책에 관한 연구 (황지태/박정선/양승돈)
	13	수시	상습적 성폭력범죄자 거세법에 관한 연구 (강은영/황만성)
	14	연구 지원	범죄예방을 위한 일상생활의 지혜(개정판) (박경래/박미량)
	15	일반	범죄통계·정보 DB시스템 구축사업
	16	일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Ⅱ)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최영신/윤정숙/손행선/채경희/김유나/이원상/이윤미)
	17	협동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Ⅲ) : 학교 및 학교주변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학교 및 학교주변 CPTED 효과성 분석- (강은영/박성철/조동현/이민식/육태범/유석범/설선국/김기정)
	18	협동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Ⅲ) : 학교 및 학교주변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국외전문가 초청 '학교 안전 진단' - (강은영/Richard Schneider/김민경)
	19	협동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Ⅲ) : 학교 및 학교주변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학교 CPTED 가이드라인 : 학교 시설물 및 관리 실태 조사- (강은영/박미량/박현호/강석진)
	20	협동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Ⅲ) : 학교 및 학교주변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학교 및 학교주변 범죄위험·보호요인 : 학생 및 지역주민 조사- (강은영/박미량/김상미)
	21	협동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Ⅲ) : 학교 및 학교주변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학교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방안(총괄보고서)- (강은영)
	22	협동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Ⅰ) : 고위험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관리 모델에 관한 연구 : 영국, 미국의 범죄자관리 모델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유병철)
	23	협동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Ⅰ) : 사회 내 구금에 관한 연구 (정진수/윤창식)
	24	협동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Ⅰ) : 전자감독에 관한 연구 (박선영/심희기/이춘화)
	25	협동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Ⅰ) -위험성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이수정/황의갑/박선영)
	26	협동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Ⅰ)(총괄보고서) (정진수/박선영/심희기/유병철/윤창식/이수정/이춘화/황의갑)
2011	1	기본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김지영/최훈식)
	2	기본	낙태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박형민)
	3	기본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연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윤정숙/박정일/여운철)
	4	기본	소년조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홍영오/황태정)
	5	기본	우리나라 지역경찰의 치안활동 연구 (조병인/이윤)

연도	번호	종류	연구보고서 제목(저자)
	6	기본	저소득층 아동의 범죄피해실태 및 보호방안 (전영실/노성훈)
	7	기본	중오범죄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김지영/이재일)
	8	기본	치료감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안성훈)
	9	기본	위조범죄의 실태 및 유형별 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황지태/류전철)
	10	수시	동남아시아 지역의 한국인 범죄 실태와 보호방안 -필리핀과 태국을 중심으로- (장준오/이완수/고성혜)
	11	수시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의 시행 성과와 발전방안 (안성훈/박정일)
	12	수시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 경계인으로서의 노숙인 연구 (장준오/유홍준/정태인/이완수)
	13	일반	범죄통계·정보시스템구축(Ⅳ)
	14	일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Ⅲ)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최영신/최민영/강성의/강혜숙/한일남)
	15	일반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Ⅱ) -범죄자처우프로그램의 표준화와 과학화에 관한 연구- (조윤오/정진수)
	16	일반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Ⅱ) -총괄보고서- (정진수/조윤오/이원복/김미숙/박민선/박혜련/이수정)
	17	일반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Ⅱ) -출소자재범방지를 위한 민간전문시설 확충방안 : 종교단체의 참여확대방안을 중심으로- (이원복/김미숙/박민선/박혜련)
	18	일반	전국범죄피해조사 2010 (김지선/홍영오)
	19	협동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Ⅳ) : 공원 및 문화재 관련시설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공원안전 강화를 위한 CPTED 적용- (신의기/박미량/강석진/강용길/박현호)
	20	협동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Ⅳ) : 공원 및 문화재 관련시설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문화재의 효율적 활용과 재난예방- (신의기/박현호/이준우/장민선)
	21	협동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Ⅳ) : 공원 및 문화재 관련시설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총괄보고서- (신의기/박미량/이준우/장민선/강석진/강용길/박현호)
	22	협동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Ⅱ) -위험성 평가도구의 개발에 관한 연구(Ⅱ)- (이수정)
2012	1	기본	강력범죄의 재범률 및 재범예측에 대한 연구 (홍영오/강호성/노일석)
	2	기본	교실 내 폭력의 현황과 대책 -교사의 폭력피해를 중심으로- (장준오/유홍준/이완수)
	3	기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 및 가해에 대한 연구 (전영실/신동준)
	4	기본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대응모델 개발 연구 (강은영/채종민/홍해숙)
	5	기본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와 치안실태 연구 (장준오)
	6	기본	지역공동체내 범죄예방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조병인)
	7	수시	경찰 「범죄통계」 활용도 제고방안 (강지현/김지선/김한균/박형민/안성훈/이원상/최수형/홍영오)
	8	수시	마약류사범 재활센터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강은영/신성만)
	9	수시	수용자 자녀문제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분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박선영/신영희)
	10	수시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훈방의 법제화 방안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훈방의 법적 근거와 절차마련 방안- (김은경/윤동호)
	11	일반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 방안(Ⅰ) (윤정숙/William L.Marshall/Judith Sims-Knight/이수정)

연도	번호	종류	연구보고서 제목(저자)
	12	일반	연쇄 강력범죄 실태조사(Ⅰ) -연쇄 방화- (박형민/최수형/김재운)
	13	협동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Ⅰ) (박경래/최인섭/박성훈/고충열/강용길/박현호/공주대산학협력단)
	14	협동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Ⅰ)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연구- (김지선/강지현/김정명/한국여성정책연구원)
	15	협동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방안 연구(Ⅰ) -고위험범죄자관리에서 경찰·보호관찰소·교도소의 협력강화 방안- (한상암/이상원)
	16	협동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방안 연구(Ⅰ) -고위험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제도의 정비방안- (정진수/송재현)
	17	협동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방안 연구(Ⅰ) -총괄보고서- (정진수/연성진/한상암/송재현/최진규/유영재/이상원/장흥곤)
	18	협동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방안 연구(Ⅰ) -출소자 주거 및 취업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업 설립·육성방안- (연성진/최진규/유영재/장흥곤)
	2013	1	기본
2		기본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수형자 처우방안 (강은영/권수진/원혜옥)
3		기본	공범이 있는 범죄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 강·절도를 중심으로 (강지현/김슬기)
4		기본	동남아시아 지역의 한국인 범죄피해실태와 보호방안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장준오/이완수/최호림/홍석준)
5		기본	청소년 강력범죄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최수형/박현수)
6		기본	청소년 따돌림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이승현/노성호)
7		기본	출입국관리상 인권제고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 -불법체류외국인을 중심으로- (김대근/전영실/이정민/주현경/김정규)
8		수시	내국인 남성의 국제결혼 피해실태와 대책 (김지영/안성훈)
9		수시	문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윤정숙/박지선/안성훈/김민정)
10		수시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의 예비 효과성 분석 -마포구 염리동 및 강서구 공진중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박경래/최인섭/강은영/박성훈/김용길/김상미)
11		수시	성폭력범죄의 신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내실화방안 (이승현/박학모/김정혜)
12		일반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방안(Ⅱ) -교정시설내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윤정숙/Raymond A. Knight)
13		일반	연쇄 강력범죄 실태조사(Ⅱ) -연쇄 성폭력- (박형민/김지영/김태명)
14		일반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김은경/황지태/황의갑/노성훈)
15		협동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Ⅱ)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박준휘/최인섭/김재운/장지현/박현호/손원진/신영철)
16		협동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Ⅱ) -전자감독제도에 관한 평가연구- (김지선/장다혜/김정명/김성연/한영수/강호성/문희갑)
17		협동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방안 연구(Ⅱ) -교정 민간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방안- (송재현/조윤오)
18		협동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방안 연구(Ⅱ) -교정민영화의 쟁점과 과제- (정진수/박선영/송주영/최진규/Edward J.Latessa/유영재/허경미)
19		협동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방안 연구(Ⅱ) -총괄보고서- (정진수/박선영/송재현/조윤오/송주영/최진규/Edward J.Latessa/유영재/허경미)

548 형사정책연구 30년의 성과와 과제(Ⅰ) : 범죄학 연구

연도	번호	종류	연구보고서 제목(저자)
2014	1	기본	동남아시아 지역의 한국인 범죄피해실태와 보호방안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송주영/장준오/이창훈/안선근/김하늘)
	2	기본	약물사용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Ⅱ) (강은영/조소연)
	3	기본	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 (홍영오/연성진)
	4	기본	청소년 참여법정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지선/박혜석/송현중)
	5	기본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정책의 효과성 분석 연구 (이승현/정재영/강태훈/김무영)
	6	기본	한국의 자살 발생의 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 자살교사, 자살방조 (박형민)
	7	기본	현행 가정폭력처벌특별법의 운용실태 및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김은경/김혜정/박소현/유숙영)
	8	수시	8호처분 교육과정의 성과분석을 통한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이승현)
	9	수시	범죄백서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김지선/박미숙/홍영오)
	10	수시	아동학대 행위자 치료프로그램 개발 -행위자 특성조사 및 기초매뉴얼 개발- (윤정숙/박성훈/김진석)
	11	일반	범죄통계 DB 구축사업(Ⅸ) (황지태/최수형/김유근/박희정)
	12	일반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 방안(Ⅲ) -치료프로그램 이수자의 사후 관리 방안 연구- (윤정숙/최이문/류부근/윤달남/최관/최결/강태경)
	13	일반	연쇄 강력범죄 실태조사(Ⅲ) -연쇄 강도- (김지영/박혜석/박지선/김지연)
	14	일반	전국범죄피해조사(Ⅳ) -2014년 범죄피해자 생활실태 및 사회적 지원현황 조사- (최수형/황지태/장다혜/이동원)
	15	일반	전국범죄피해조사(Ⅳ) -범죄피해조사 방법론 비교연구- (최수형/탁중연)
	16	일반	한국과 중국의 형사사법과 교정처우에 관한 비교연구 (정진수/하태훈/최균용/김광호)
	17	협동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Ⅲ) -성폭력 및 학교폭력 발생 지역·공간 특성분석 및 정책대안 개발- (박준휘/강용길/김도우/정진성)
	18	협동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Ⅲ) -지하철 역사에 대한 범죄위험성 평가 및 정책대안 연구- (신의기/이경훈/강석진/박형아)
	19	협동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Ⅲ) -총괄보고서- (신의기/박준휘/이경훈/강석진/강용길/김도우/정진성)
	20	협동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Ⅲ) -교정처우 관련 국제규범에 관한 연구- (이승호/윤옥경/금융명)
	21	협동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Ⅲ)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와 개선방안- (최영신/이승호/윤옥경/금융명)
	22	협동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Ⅲ) -총괄보고서- (최영신/이승호/윤옥경/금융명)
	23	협동	조직범죄단체의 불법적 지하경제 운영실태와 정책대안 연구(Ⅰ) -불법사행산업을 중 심으로- (박준휘/윤해성/조성현/박정선/강소영/최성락/문병욱/인제평/썬진난/로진)
2015	1	기본	2012년 성폭력관련법 개정 이후 수사실무의 변화실태 및 개선방안 : 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활용을 중심으로 (장다혜/박학모/장응혁)
	2	기본	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강은영/김한균)
	3	기본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홍영오/연성진/주승희)
	4	기본	제3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2017년~2021년)의 방향과 과제 (김지선/김성연)

연도	번호	종류	연구보고서 제목(저자)
	5	기본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이승현/강지현/이원상)
	6	수시	분노형 범죄에 대한 새로운 정책대안으로서의 가상현실치료(VRT)에 관한 연구 (연성진/류창현)
	7	수시	서울시 학교폭력에방디자인 사업의 정책 활용을 위한 평가연구 (박성훈/최수형)
	8	수시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강화방안 (이승현/박성훈)
	9	수시	소액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영신/서주연)
	10	수시	실효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이천현)
	11	수시	전자감독제도 운영성과 분석 및 효과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성진/유진)
	12	수시	치료감호시설의 효율적인 계호방안에 관한 연구 (권수진/최준혁)
	13	일반	범죄통계 DB 구축사업(X) (김지영/최수형/황지태/김유근/최결/박희정)
	14	일반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Ⅰ) : 인구고령화와 형사정책의 변화 (박형민/서주연)
	15	일반	수형자 집중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연구 (최영신/박선영)
	16	일반	전국범죄피해조사 2014 (최수형/김지영/황지태/박희정)
	17	적립금	최근 부패방지법의 쟁점에 관한 연구 : 청탁금지법에 관한 법리적 검토 및 국민의식조사 (황지태/김유근/박준희)
	18	협동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이천현/임정호/김형길/류현숙/정지범/오윤경/황미영/박두용/주현경/김슬기)
	19	협동	조직범죄단체의 불법적 지하경제 운영실태와 정책대안 연구(Ⅱ) -전통적 소득원을 중심으로- (강석구/김민영/조성현/조병인/박형아/송봉규/최성락)
	20	협동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Ⅰ) : 한국사회 부패범죄 발생구조 및 변화트렌드 분석 (김은경/신동준/이정주/이선중)
2016	1	기본	소년 국선보조인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황지태/김지영/원혜옥/김지연)
	2	기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강은영/김혜정/황태정)
	3	기본	외국인 폭력범죄에 관한 연구 (최영신/장현석)
	4	수시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현상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안성훈)
	5	수시	소년원교육에서 보호소년의 변화요인 탐색에 관한 연구 (김지영/황지태/조영오)
	6	수시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효과적인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권수진/유진)
	7	수시	한국범죄분류 개발 기초연구 (장다혜/임석순/지유미)
	8	일반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 실효성 검증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Ⅰ) - 상 : 국민 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을 중심으로 (전영실/송재현/전현옥/유진/박준희/안미영/배상균/심희섭/박두용/양천수/Bernd Heinrich/김중길/정호경/이진수/마정근/이정훈)
	9	일반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 실효성 검증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Ⅰ) - 하 : 국민 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을 중심으로 (전영실/송재현/전현옥/유진/박준희/안미영/배상균/심희섭/박두용/양천수/Bernd Heinrich/김중길/정호경/이진수/마정근/이정훈)
	10	일반	범죄통계 DB 구축사업(XI) (김지선/장다혜/추지현/박희정)
	11	일반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Ⅱ) : 다문화사회의 확산과 형사정책의 변화 (박형민/조성현/김선희)
	12	일반	성희롱 실태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윤정숙/박미숙)

550 형사정책연구 30년의 성과와 과제(Ⅰ) : 범죄학 연구

연도	번호	종류	연구보고서 제목(저자)
2017	13	일반	전국범죄피해조사(VI) : 상업범죄 피해조사 (김지선/강태경/노성훈)
	14	일반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X) : 수감명령제도의 운용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김지영/박성훈/김현정/노성호/이상원)
	15	협동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황지태/김경찬/서울시립대학교)
	1	기본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실태와 준법의식 제고 방안 연구 (최영신/김대근/채경희)
	2	기본	소년법 대상 중간처우제도의 활성화 방안 : 6호 처분을 중심으로 (이승현/박선영)
	3	기본	신종마약류범죄 발생실태와 통제정책 (전영실/김슬기/배상균/주현경)
	4	기본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개입의 한계요인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현욱/정철우/김학경/유주성/박병욱/김혁)
	5	수시	마약류사범 보호관찰 확대 등 사후관리 방안 연구 (전영실/김지영)
	6	수시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동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 (이승현/박성훈)
	7	수시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최영신/장다혜/오경석)
	8	연구 개발	동기 없는 범죄 수용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적 개입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윤정숙/김재현/박은영)
	9	일반	[별책부록]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Ⅱ) : 1인가구 밀집지역의 안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박준휘/김한균/유진/한민경/이성규/최지선/윤상연/강용길/박재풍/이춘삼/김도형/ 박준승/조윤오/박형아)
	10	일반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Ⅱ) : 1인가구 밀집지역의 안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박준휘/김한균/유진/한민경/이성규/최지선/윤상연/강용길/박재풍/이춘삼/김도형/ 박준승/조윤오/박형아)
	11	일반	범죄통계 DB 구축사업(XII) (강은영/최수형/박희정)
	12	일반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Ⅲ) : 경제적 양극화와 형사정책의 변화 (홍영오/박준희/금현섭/박성민/김빛나)
	13	일반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 (최수형/조영오)
	14	일반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XI) : 교정시설 의료처우에 관한 연구 (권수진/한민경/권창모/주영수)
2018	15	협동	가정 내 폭력범죄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관한 연구 (윤정숙/이승현/김미숙/김유경/김지민/박미량)
	16	협동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Ⅰ) (박성훈/김지영/조영오/김현정/황여정/김정숙/배상균/고나영)
	17	협동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Ⅲ) (황지태/윤해성/김철/김혁/장진희/이선중/권우덕)
	1	기본	2018년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강은영/조영오/박희정)
	2	기본	개방처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권수진/권창모/오영근)
	3	기본	교정보호시설의 입지갈등과 대응방안 연구 (김민영/배상균/박경규)
	4	기본	범죄예방 목적의 공공 CCTV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한민경/박현호/Webster Carr)
	5	기본	소년법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내실화방안 연구 (이승현/권해수)
	6	기본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지원방안 (홍영오/박준희/박우/주지현)
	7	수시	북한이탈주민 탈북과정에서의 인신매매범죄 피해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연성진)

연도	번호	종류	연구보고서 제목(저자)
	8	수시	인권지향적 형사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 - 외국인의 절차보장 강화를 중심으로 (김대근/김경찬)
	9	수시	전자감독에서의 특별준수사항 효과성 연구 :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중심으로 (박형민/박준희/황만성)
	10	일반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Ⅲ) : 빈곤층 밀집지역의 안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박준휘/신익기/홍영오/박준희/정지혜/임완섭/박형준/이경환/김도형/이창훈/조윤오/김빛나/박형아/강용길/윤상연)
	11	일반	범죄통계 DB 구축사업(XⅢ) (강은영/최수형/박희정)
	12	일반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Ⅰ) : 브로커형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 (황지태/정지혜/김정연/강우예)
	13	일반	장애인 범죄피해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김지영/최수형/이권철/이진국/김강원/최정규)
	14	일반	전국범죄피해조사(VⅢ) :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 2017 (전영실/유진/노성훈)
	15	일반	정신질환자 범죄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내 관리방안 (안성훈/정진경)
	16	적립금	민영소년원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연구 (김지영/조영오/유진/김기영)
	17	협동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Ⅱ) (박성훈/조영오/김정숙/황여정/이주영)

[부록 2] 형사정책연구 30년 범죄학 분야 수탁보고서 목록(연도별)¹⁾

연도	번호	연구과제명	발주처
1996	1	가석방심사체제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법무부
	2	법무부 대친절운동 여론조사 보고서	법무부
1998	1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평가연구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본부
1999	1	경찰분야 부패방지 대책	국무조정실
	2	청소년의 집단따돌림에 관한 연구	법무부
	3	여성수용자의 처우실태 및 개선방향 연구	법무부
	4	성폭력범죄의 양형실태에 관한 연구	법무부
	5	법무부 대친절운동 여론조사 보고서	법무부
	6	보호관찰대상자의 과학적 분류처우에 관한 연구	법무부
	7	청소년보호연령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법무부
	8	유엔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위원회(UNCCPCJ) 등 관련연구	법무부
	9	고소제도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법무부
2000	1	준법의식의 실태 및 준법운동의 전개방향에 관한 연구	법무부
	2	여성수용자 직업훈련에 관한 연구	법무부
	3	유엔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위원회(UNCCPCJ) 등 관련 연구	법무부
	4	부동산서비스와 거래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	주요외국의 가출청소년 대책 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6	청소년보호실태 및 대책	자녀안심이 서울협의회
2001	1	양형시스템 구축을 위한 양형모델 연구	법무부
	2	여성출소자 취업실태와 취업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법무부
	3	각국의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에 관한 연구	법무부
	4	유엔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위원회(UNCCPCJ) 등 관련 연구	법무부
	5	청소년 성보호 현황과 대책 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2002	1	4호처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법무부
	2	주요국의 자금세탁개념·범죄구성 요소·판례 등에 대한 비교연구	재정경제부
	3	교통사범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활성화 방안	손해보험협회
	4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예측에 관한 연구	법무부
	5	제3차 반부패세계포럼의 회의형식 의제와 향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법무부
	6	제11차 유엔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위원회(UNCCPCJ) 관련 연구	법무부
	7	성산업규모 및 성매매실태에 관한 전국조사	여성부
	8	형사 미성년 성범죄 가해자 선도방안 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2003	1	자금세탁 범죄수익 몰수기금의 설립과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재정경제부
	2	수용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	일탈 및 범죄청소년의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재범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

1) 계약체결 시기 순서대로 정렬함.

연도	번호	연구과제명	발주처
2004	4	제12차 유엔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위원회(UNCCPCJ) 관련 연구	법무부
	1	신상공개대상 범죄자료 종합분석 연구	국무총리
	2	UNCCPCJ 관련연구	법무부
2005	1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원
	2	성폭력·성매매가해자의 교정·교화프로그램 연구	법무부
	3	성매매 사범 특성 및 유형 연구와 수감명령 표준 프로그램 개발	법무부
	4	유엔범죄총회·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위원회 의제 등 검토	법무부
	5	국제기구의 활동과 NGO와의 관계	한국행정연구원
	6	불법체류자 문제를 포함한 외국인 범죄의 현황과 대책	법무부
	7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대책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8	APEC 사이버범죄 전문가회의	대검찰청
2006	1	가정·학교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한국청소년개발원
	2	불법감청설비 유통실태조사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3	교정공무원의 직무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 방안	법무부
	4	동북아시아 치안확보를 위한 공동범죄통제기구의 설치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5	사이버밀수 단속 통합모델에 대한 연구	관세청
	6	UNCCPCJ를 중심으로 한 유엔 형사사법 동향 연구	대검찰청
	7	UN 반부패협약 이행 입법안 마련 연구	국가청렴위원회
	8	경비교도대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9	마약류 예방사업 및 마약류중독자 사회복귀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	1	제12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자료 분석	국가청소년위원회
	2	청소년 희망 세상 비전 2030 (환경분과)	국가청소년위원회
	3	제16차 UNCCPCJ 등 관련 연구	법무부
	4	경찰관서 인권상황 평가지표 개발연구	국가인권위원회
	5	가정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지침서	여성가족부
	6	전국 가정폭력 성폭력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보호관찰 조직진단 및 합리적 인력운용 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보호관찰소
	8	수형자 가족관계 건강성 실태조사 및 향상방안 연구	법무부
	9	인터넷 성매매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국회
	10	민생침해범죄 피해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대검찰청
	11	법관임용방식의 발전과정과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12	제13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자료 분석	국가청소년위원회
	13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운영 타당성 조사	여성가족부
	14	양형제도 및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사항 설계	법원행정처
2008	1	UN Virtual Forum against Cybercrime	UNODC
	2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3	법질서 확립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연구	법무연수원
	4	공판관련 조직구조 및 직무개편	대검찰청

연도	번호	연구과제명	발주처
2009	5	국가 범죄통계관리 개선방안	대검찰청
	6	검찰의 여성폭력범죄, 초국가범죄, 인신매매범죄 대응의 선진화를 위한 최신 국제 형사사법 동향연구(제17차 UNCCPCJ 연구)	대검찰청
	7	산업스파이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체계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8	친족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보호지원체계 점검	보건복지가족부
	1	특별사법경찰의 효율적 직무수행 방안에 관한 연구 : 수사장구 사용 및 불심검문을 중심으로	대검찰청
	2	사설경마의 실태와 대응전략 연구	한국마사회
	3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가 공공안전에 미치는 영향	대검찰청
	4	국제 경제사기 및 신원도용 범죄 등 (제18차UNCCPCJ연구)	대검찰청
	5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6	범죄백서 및 범죄분석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검찰통계업무 개선방안 연구	법무연수원
2010	7	해바라기 아동센터 및 여성·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평가 및 기능강화 연구	여성부
	8	강력범죄 피해자의 피해자 가족의 피해실태 사례연구	법무부
	9	부패범죄에 있어 관용지수(TQ)의 개발과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1	국내·외 아동성범죄 특성 분석 및 아동보호시스템 연구	여성부
	2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2010)	여성가족부
	3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성과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법무부
	4	공판검사의 효율적 공소수행 방안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5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문제 실태 및 대책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	여성아동 성폭력피해자 지원 체계 연구	여성가족부
	7	국제적인 범죄예방과 형사사법정책방향 등 연구(제19차 UNCCPCJ 연구)	대검찰청
2011	8	경찰청 인력진단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감사원
	1	2011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2	불법 스포츠 배팅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스포츠도토
	3	동남아시아 지역의 한국인 범죄 실태와 보호방안: 필리핀과 태국을 중심으로	법무부
	4	범죄피해자지원 교육사업을 위한 기본교육과정 교재개발 연구 및 교육운영사업	법무부
	5	대한민국 반부패 형사정책의 운영경험	한국개발연구원
	6	건축·건설 분야 부패실태 조사·분석	대검찰청
	7	범죄피해자 운영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한국형사소송법학회
	8	인터넷 도박의 증가원인과 대처방안 연구	대검찰청
	1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공생의 사회구현 실행방안 연구 -수형자 사회복귀에 대한 국민의 인식조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2	2	형사판결에 나타난 '의심'에 관한 실증적 연구	법무연수원
	3	청소년폭력 위기에 대한 단기적 대응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4	국민체육법 개정 이후 체육진흥투표권사업 매출규모 변화에 관한 연구	스포츠도토
	5	지방자치단체의 법질서 확립활동 활성화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	법무부

연도	번호	연구과제명	발주처
2013	6	음란물과 성범죄간의 상관관계 연구	법무부
	7	우리나라 폭력수준 실태 및 개선방안	경찰청
	8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대상자의 특성분석 연구	서울보호관찰소
	9	불법사설경마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마사회
	10	범죄 및 형사정책 지표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1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활동성과 분석 및 활성화 방안(Ⅱ)	법무부
	12	보험범죄 형사판례 연구	손해보험협회
	13	2013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매뉴얼 개발	여성가족부
	14	성폭력예방교육 기본안 마련	교육과학기술부
	1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중단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의 성과평가제도 연구	법무부
	3	2013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중앙관리기관 운영	여성가족부
	4	창조, 융합, 안전을 지향하는 형사정책의 새로운 도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5	2013년 성매매 실태조사 사업	여성가족부
2014	6	2013년 지역연대 안전프로그램 관리기관 운영	여성가족부
	7	경기도민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및 대응체계 구축방안 연구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8	정신질환자 관리 실태와 범죄예방 대책	대검찰청
	9	4대 사회악 근절 정책 추진을 위한 추정 소요예산 분석	한국행정연구원
	10	단위학교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 가이드라인 이슈페이퍼 연구용역	충청북도교육청
	11	불법스포츠포드박 실태분석 및 근절대책에 관한 연구	스포츠포드토(주)
	12	성범죄자 등 범죄인의 재범률 재정립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3	범죄피해자 심리지원체계의 구축과 치료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4	디자인 재능 나눔 적용대상지 사전·사후 평가 사업	서울시
	1	2014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중앙관리기관 운영 위탁	여성가족부
	2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중단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셉테드(CPTED) 위탁교육	법무부
	4	형사부 팀제 효율성에 대한 통계적 분석 (팀제 검사실과 단독 검사실의 비교 분석)	대검찰청
	5	보복범죄의 원인 및 분석을 통한 피해자 신변보호강화 방안 연구	대검찰청
	6	중요 형사사법통계 공개 확대를 위한 공개 사례 및 공개수요 조사 연구	대검찰청
	7	고위험군 성범죄자의 체계적 이해를 통한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 상당 강화 방안 연구	서울보호관찰소
	8	2014년 지역연대 안전프로그램 컨설팅	서울특별시
	9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원사업-국민안전분과	부산대학교
	10	범죄피해자 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개선 방안	법무부
	11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구조금 상향 필요 여부 검토	법무부
	12	범죄피해자 지원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법무부
	13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CPTED) 사이버 교육 콘텐츠 개발	법무부
	14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대검찰청

556 형사정책연구 30년의 성과와 과제(I) : 범죄학 연구

연도	번호	연구과제명	발주처
2015	15	도박범죄의 사회적 비용추계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6	2014년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 적용대상지 사전·사후 평가	서울특별시
	1	2015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중앙지원센터 운영 위탁	여성가족부
	2	범죄분석 활용도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	대검찰청
	3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Ⅲ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	안산시 여성·아동 안전지표 개발	안산시
	5	성폭력 방지 대책의 성과·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대검찰청
	6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법무부
	7	범죄피해자 권리고지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법무부
	8	성범죄 원인 및 발생환경 분석을 통한 성범죄자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법무부
	9	인권침해 신고센터의 발전방안	법무부
	10	대형 안전사고의 발생 실태와 대책	법무연수원
2016	11	국제표준범죄통계분류체계(ICCS)의 국내적용방안 기초연구	대검찰청
	12	2015년 법교육 프로그램 효과 평가 연구용역	법무부
	1	2016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중앙지원기관 운영 위탁	여성가족부
	2	제3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법무부
	3	사행산업 전자카드제도 시행 모델 검증 연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4	안산시 여성·아동 안전지표 적용방안 연구	안산시
	5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방안(Ⅱ)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6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중 주민참여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법무부
	7	동작구 CCTV 설치 5개년 종합계획 연구	동작구
	8	부정훈련 및 부정수급 방지체계 발전방안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9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법무부
	10	소년원 내 규율위반자의 처우 개선방안 연구	법무부
	11	보험범죄의 발생 실태와 대책	법무연수원
	12	마약밀수 차단을 위한 효과적 관세행정 대응방안 연구	관세청
2017	13	2016년 범죄예방디자인 사전·사후 평가	서울특별시
	14	2017년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중앙지원기관 운영 위탁	여성가족부
	1	노인학대행위자 상담·교육 커리큘럼 개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	주민 참여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법무부
	3	여성안전지표 개발 연구	여성가족부
	4	대검찰청 지능형범죄예방 범죄유형분석	(주)솔트룩스
	5	국방법무백서	국방부
	6	교정시설 수용인원 추계 예측 지표 개발	법무부
	7	지역별 아동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형사사법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방안	법무부
	8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CPTED) 사업 효과성 분석	동작구
	9	해외 장애인 대상 범죄의 발생 원인, 유형 및 그 방지대책 연구 (미국, 일본, 독일,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대검찰청
	10	반부패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등 민관협력형 부패방지 체계 연구	국민권익위원회

연도	번호	연구과제명	발주처
2018	11	군기교육제도 운영방법 연구	국방부
	12	2018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중앙지원기관 운영 위탁	여성가족부
	1	주민참여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	법무부
	2	효율적 마약통제시스템 연구 (외국의 마약통제시스템과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대검찰청
	3	성충동 약물치료의 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 용역	법무부
	4	전자감독 전담직원 직무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법무부
	5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2018년)	여성가족부
	6	치료감호소 인력 운영의 효율화 방안 연구	법무부
	7	과실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확대 방안 연구	법무부
	8	인공임신중절 관련 모자보건법령 개정방안	보건복지부
	9	범죄예방디자인(CPTED) 사업 효과성 분석	동작구청

[부록 3] 형사정책연구 30년 번역물 및 기타자료 목록(연도별)

1. 번역물

1-1. 번역연구과제

번호	제 목	저 자	발간연도
1	미국 연방 형사소송규칙 및 증거규칙	류혁상(역)	2007
2	형사특별법 정비방안[12] 주요선진국의 형사특별법제 연구 : 독일의 부수형	Hans-Heiner Kuhne/김정환(역)	2008
3	형사특별법 정비방안[13] 주요 선진국의 형사특별법제연구 : 일본 특별형법(형사형법)의 입법 동향과 개정에 관한 제문제	이다 마코토/장성숙(역)	2008

1-2. 번역총서

번호	제 목	저 자	발간연도
1	형사정책(양장본)	박상기/김영환/허일태	1993
2	양형론(양장본)	이기현/최윤석	1997
3	미국의 형사절차	정 완	2000
4	청소년 비행의 이해	노성훈/김성언/이동원/김지선	2002
5	가해자-피해자-조정	이진국	2002
6	미국 형사사법사(양장본)	장영민	2007
7	스위스 형법전	김유근	2009
8	중국형법총론 연구(양장본)	한상돈	2009
9	범죄인의 탄생(양장본)	이경재	2010
10	독일법의 기초	박상기/홍기수/홍무원	2010
11	범죄현장의 재구성(양장본)	홍성욱/최용석	2010
12	독일행형법(양장본)	신양균/김태명/조기영	2010
13	국가형벌론	장영민	2012
14	일본형사소송법(양장본)	조균석	2012
15	안전사회-21세기의 사회통제	윤재왕	2012
16	르네상스의 갈림길 -배심재판과 조서재판-	김희균	2012
17	규범, 인격, 사회 -법철학에 관한 프로그램적 고찰-	김일수/변종필	2013
18	여성범죄인(양장본)	이경재	2013
19	독일청소년형법	김성은/박학모/윤재왕	2014
20	회복적 정의의 비판적 쟁점	변종필	2015
21	일본행형법	금용명/안성훈	2016

1-3. 해외 유관기관(유엔 등) 번역총서

번호	제 목	저 자	발간연도
1	유엔 형사사법 핸드북 : 구금형 대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2	유엔 형사사법 핸드북 :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3	유엔 형사사법 핸드북 : 테러리즘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4	유엔 형사사법 핸드북 : 여성과 구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5	문제해결을 위한 범죄분석 60단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6	유엔 형사사법 핸드북 : 신원관련 범죄에 대한 핸드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7	유엔 형사사법 핸드북 : 경찰의 책무와 감독 및 청렴에 관한 핸드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1-4. 연구물 외국어(영어/독일어) 번역

번호	제 목	저 자	발간연도
1	2012년 VFAC(Virtual Forum Against Cybercrime : Annual	이원상/이승진/손희준/ Michael Joyce	2012
2	Begutachtung des Regierungsentwurfs des koreanischen Strafgesetzbuchs (2011) aus deutscher Perspektive (※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VI) -형법총칙개정안에 관한 국제비교, 평가연구-」의 독일어판 번역임)	Ambos/Duttge/Jehle/ Murmman	2012
3	Improving the DNA Identification Act in South Korea	최민영	2012
4	Virtual Forum Against Cybercrime (I)	Cybercrime Research Unit	2012
5	국제공동연구 : Cyberterrorism : Trends and Reponses (영문)	윤해성/윤민우/Joshua Freilich/Steven Chermak/ Robert G. Morris	2012
6	Cybercrimes in the Republic of Korea I : Law and Policy on Cybercrime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7	Towards Asiajust achievemets and the way ahead	김은경/장인식	2012
8	Cybercrime in the Republic of Korea II : Criminal Justice and International a Cooperation for Cybercrime Prevention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9	Reports from the World Crime Forum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10	2014 Terrorism in the Republic of Korea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2. 교과서 및 자료집

번호	제 목	저 자	발간연도
1	刑法 : 刑事法令制定資料集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2	刑事訴訟法令制定資料集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3	형사정책(제11판 개정판, 제9쇄) ※ 제1판 출판연도 : 1999년	박상기/손동권/이순래	2016

형사정책연구 30년의 성과와 과제(Ⅰ) : 범죄학 연구

발 행 | 2019년 5월

발 행 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 행 인 | 한 인 섭

등 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 화 | (02)575-5282

홈페이지 | www.kic.re.kr

인 쇄 | (주)케이에스센세이션 02-761-0031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함.

